

2018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우리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급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세대의 성장을 도와야 하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서 필요한 인성과 자질을 개발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이자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 그리고 정부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어제의 기록에서 내일로 향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5년 첫 청소년백서 발간 이후 매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황과 청소년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청소년백서'는 청소년정책의 특성을 진단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바로 바라보는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의 청소년 활동·참여·복지·안전·보호 등 분야별 성과, 그리고 관련 통계 등을 담은 「2018 청소년백서」의 발간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백서가 정부부처, 지자체, 학계, 시설·단체 등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목소리와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 정책에 잘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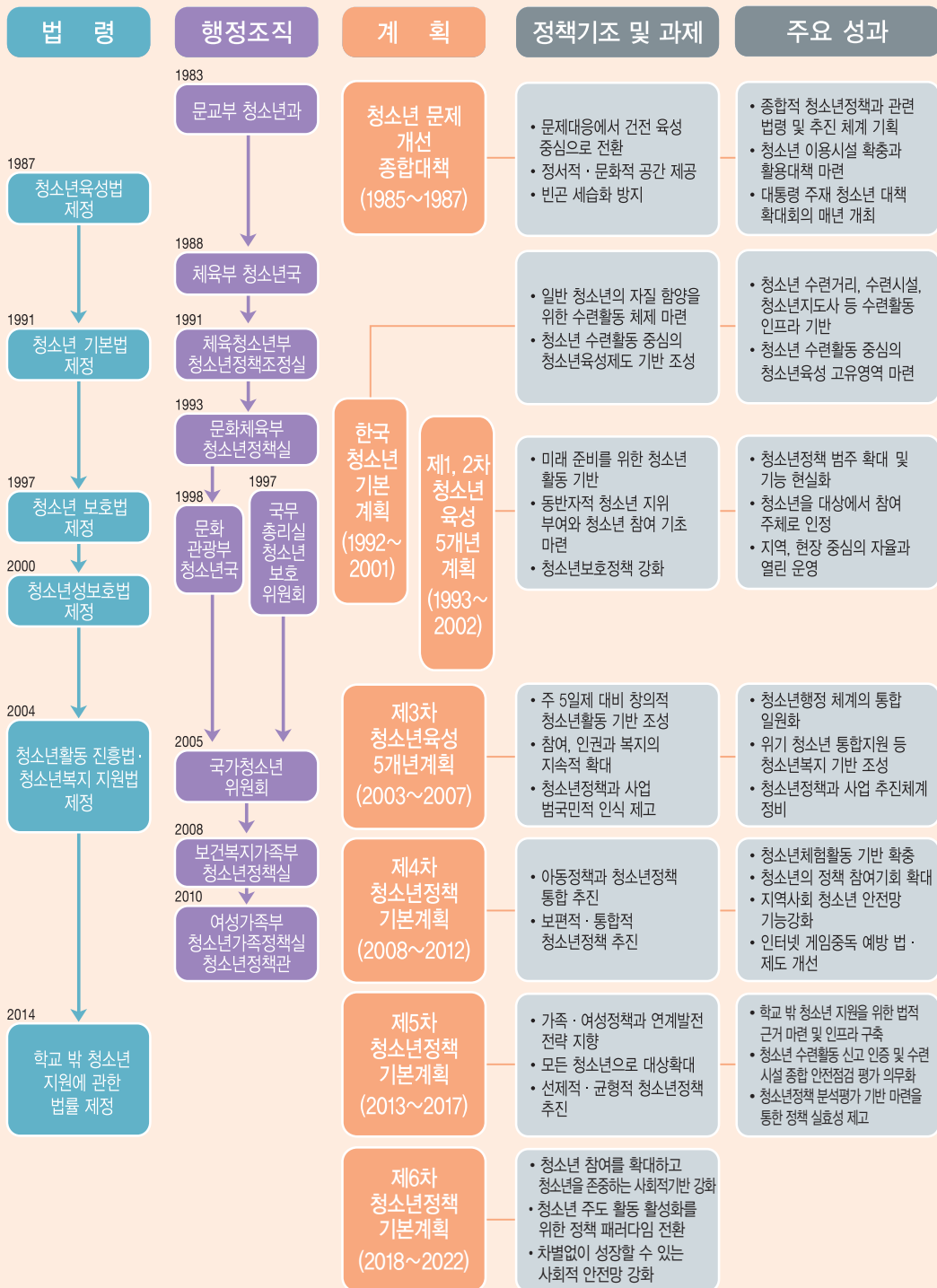
백서 발간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의 미래이자 거울인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장관 **진 선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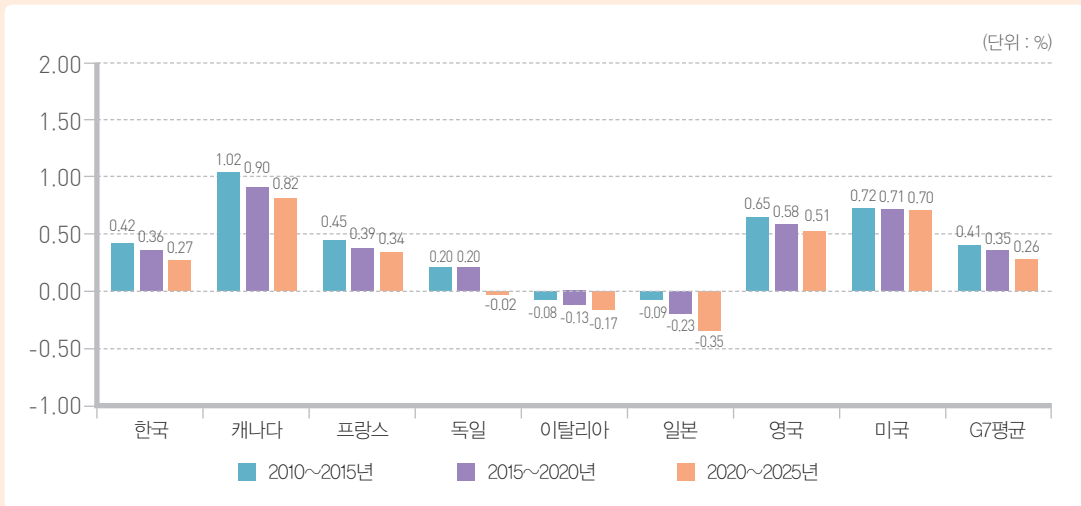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1 국제 비교 지표

[인구 성장률]



주 : 인구 성장률(%)은 특정 연도간의 평균 인구 증가(감소)율을 의미하며, $\ln(Pt/P0)/t$ 로 계산함.
 자료 : UN(2018). World Population Prosp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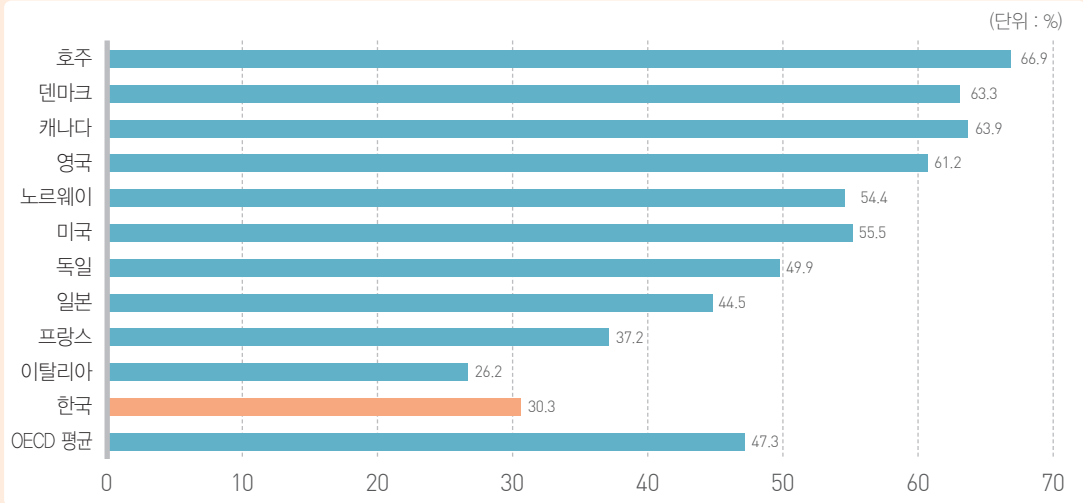
[전체 인구 대비 아동·청소년(0~24세) 인구]



주 : 2017년 기준 <https://www.cia.gov>에서 2018. 12. 5. 인출.
 자료 : CIA World Factbook(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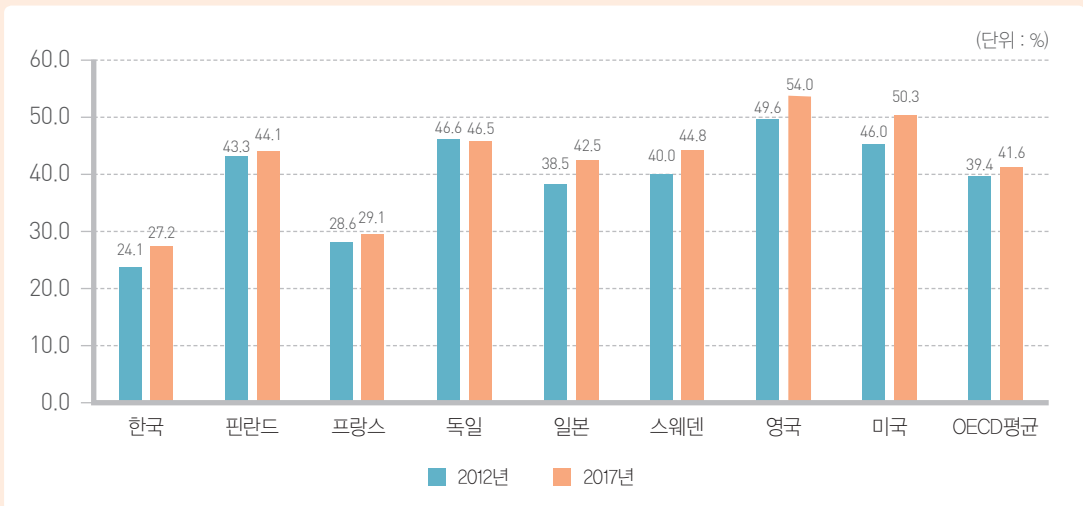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2017년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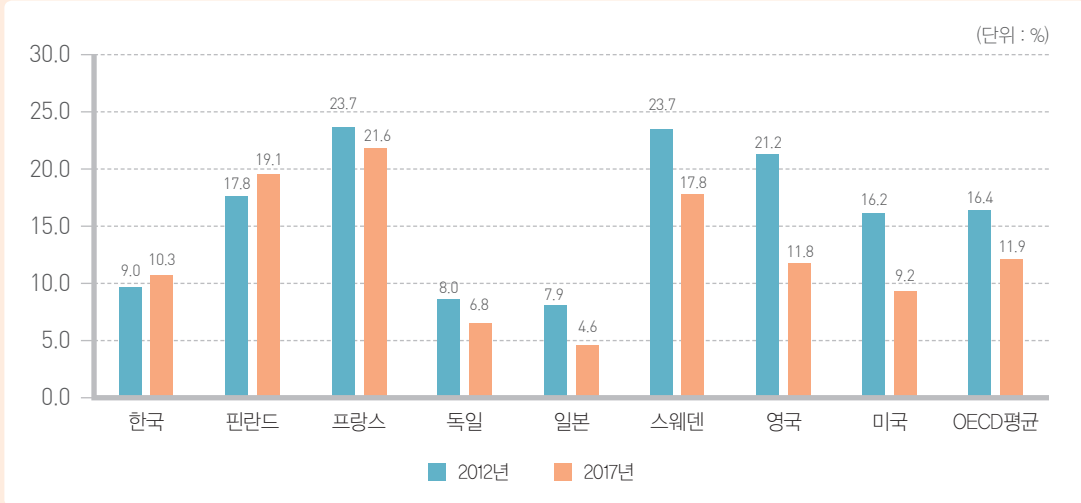
자료 : OECD(2018). Labour Force Statistics.

[청소년(15~24세) 고용률(201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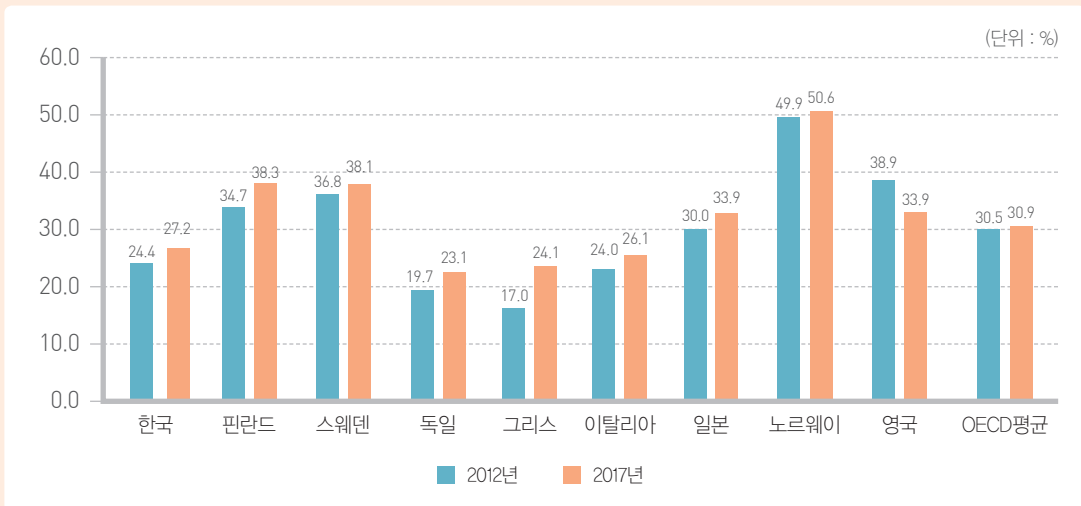
자료 : OECD(2018). Labour Force Statistics.

[청소년(15~24세) 실업률(2012/2017)]



자료 : OECD(2018). Labour Forc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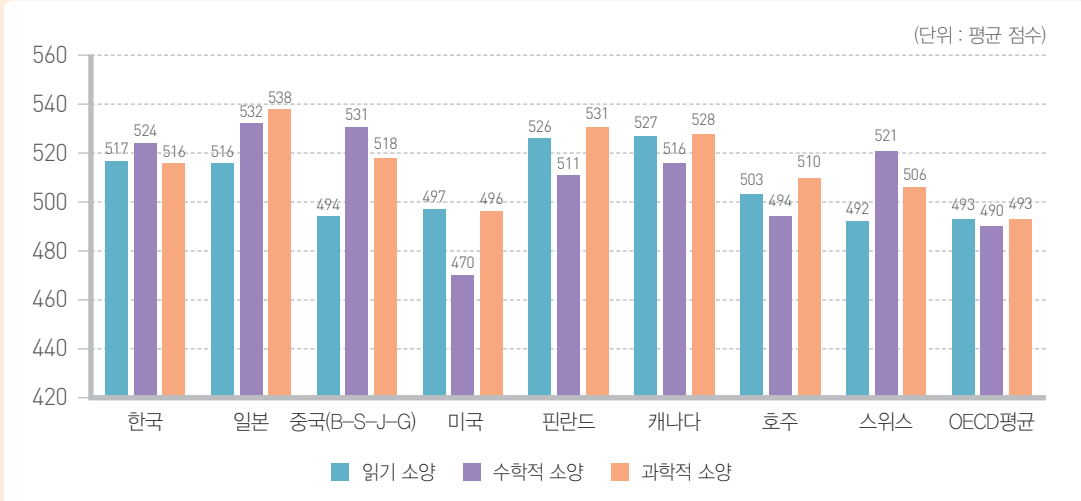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12/2017)]



자료 : OECD(2018). Labour Force Statistics.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PISA 결과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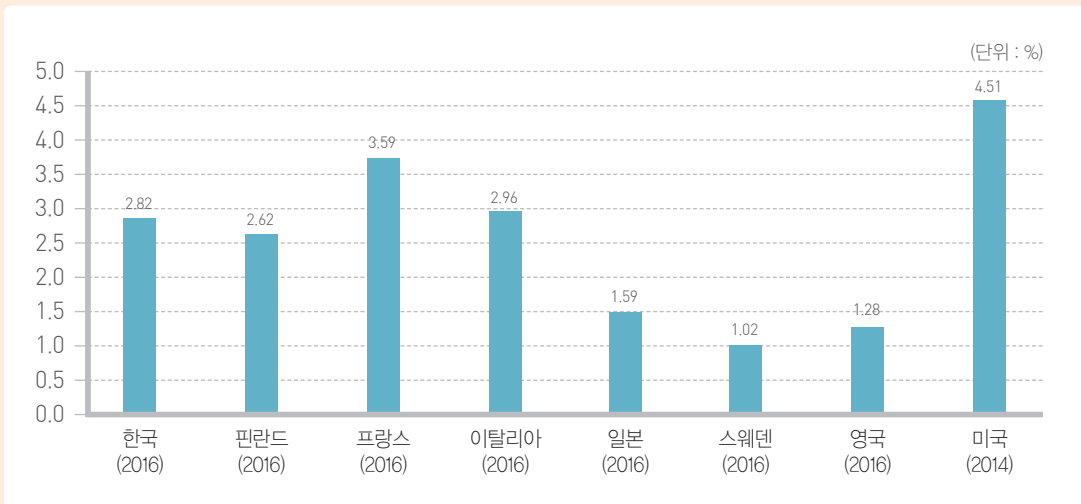


주 : 1)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는 3년 주기로 실시함.

2) B-S-J-G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광둥성 지역을 의미함.

자료 : OECD(2016), PISA 2015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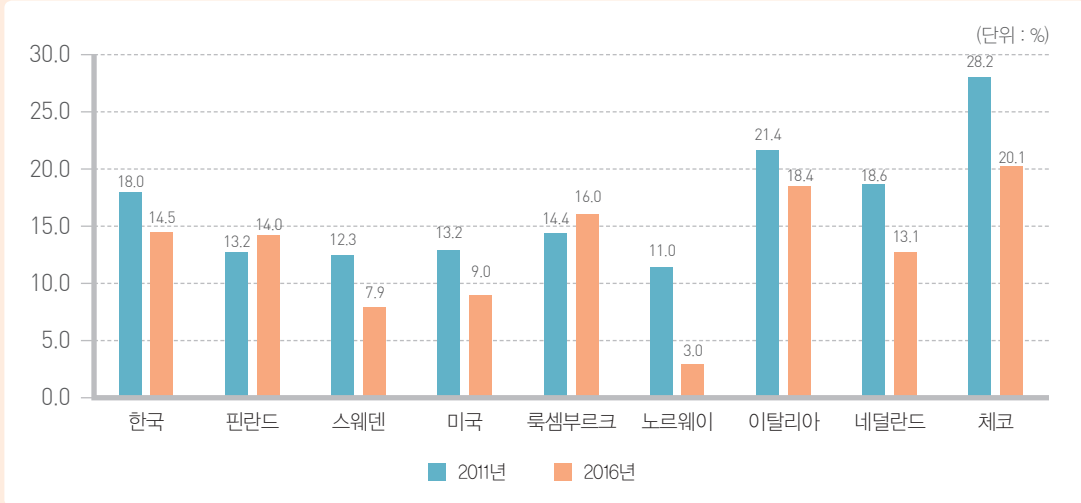
[중등교육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



주 : 국가별 중등교육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을 산출하는 연령 대상에 대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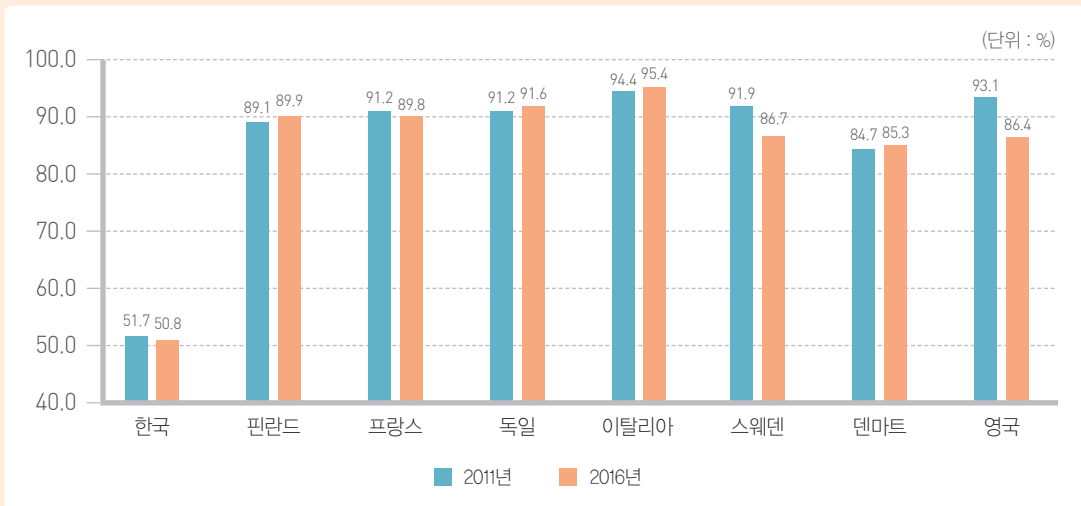
자료 : UNESCO(2018), UIS Statistics. Education.

[청소년(15~24세) 흡연율(2011/2016)]



주 : 1) 흡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일 또는 30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2) 2018년 11월 기준 <https://stats.oecd.org>에서 2018. 12. 4. 인출.
 자료 : OECD(2018). 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

[청소년(15~24세)의 주관적 건강상태(201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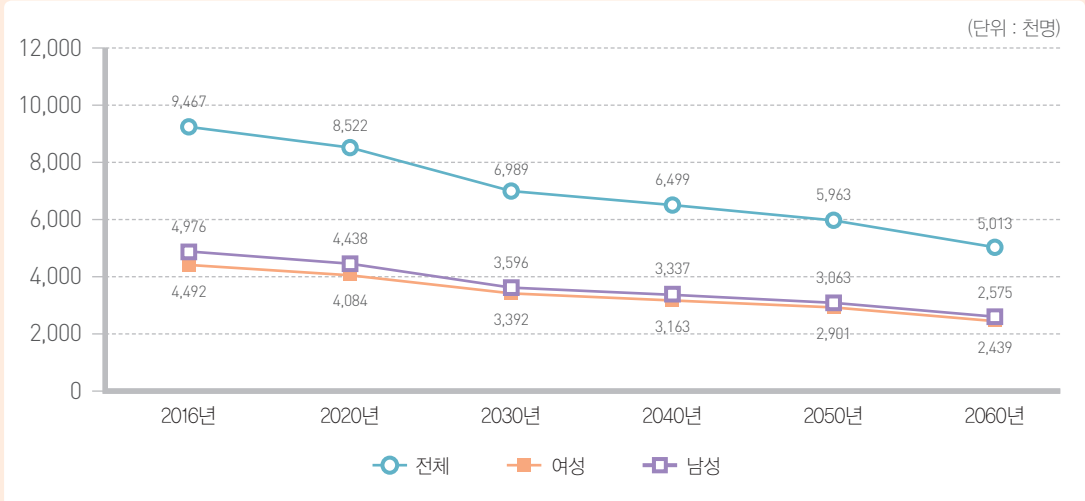
주 : 1)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
 2) 2018년 11월 기준 <https://stats.oecd.org>에서 2018. 12. 4. 인출.
 자료 : OECD(2018). Health Status.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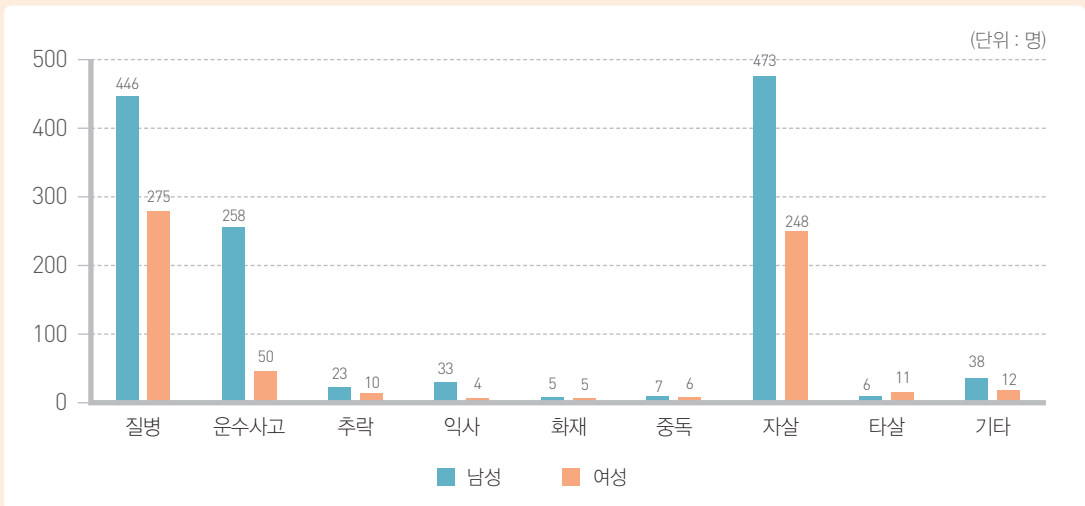
국내 지표

[청소년(9~24세)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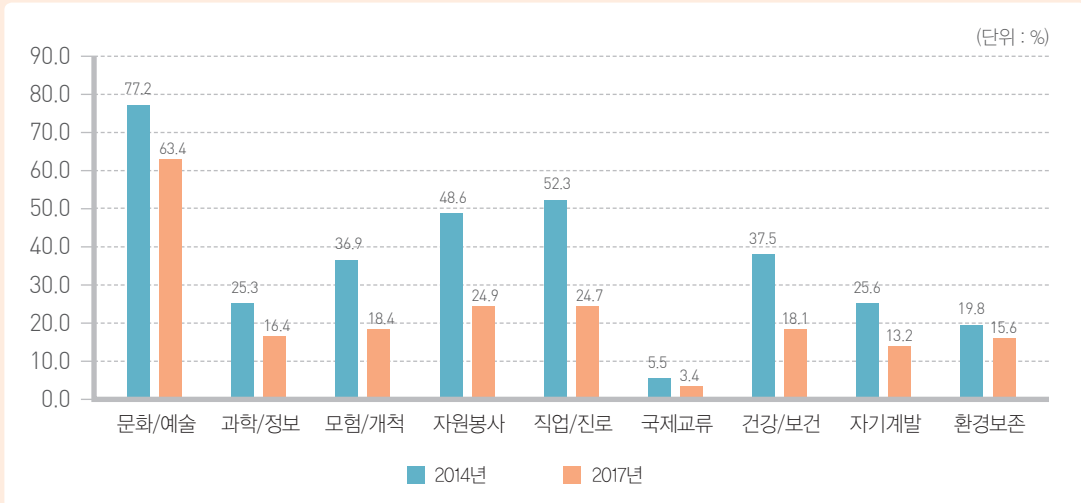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청소년(10~24세) 사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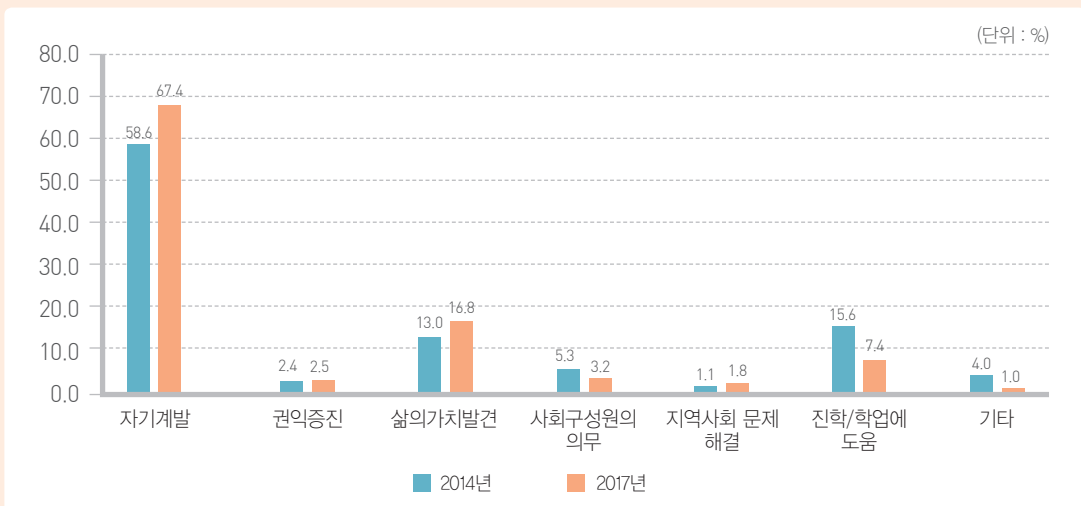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8). 2017년 사망원인통계.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유형]



자료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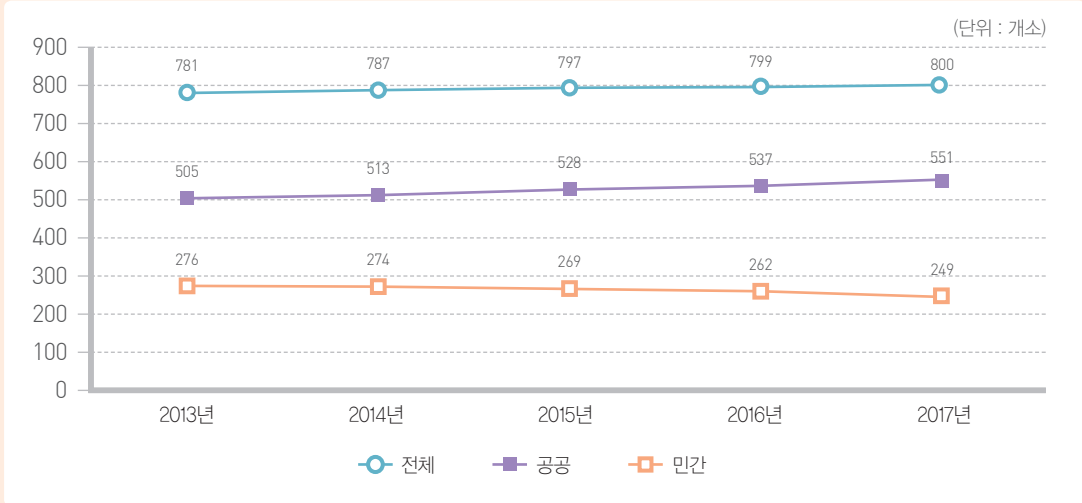
[청소년 활동 참여 이유]



자료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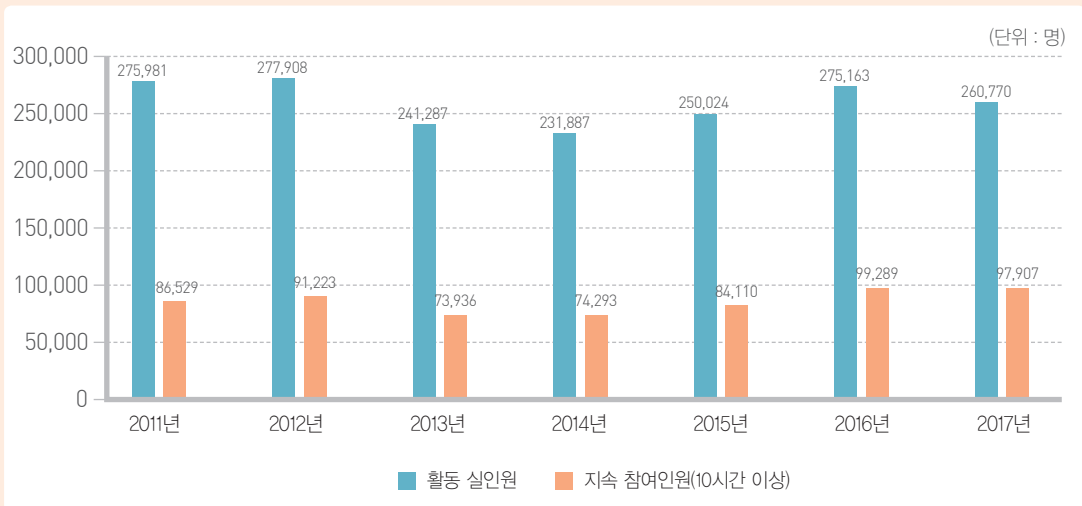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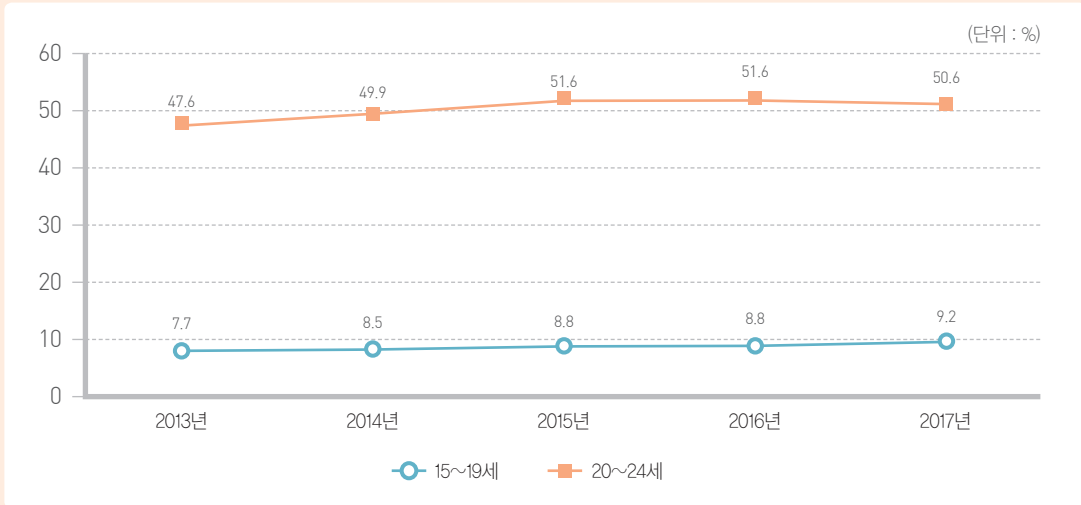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조사결과(2017. 12. 31. 기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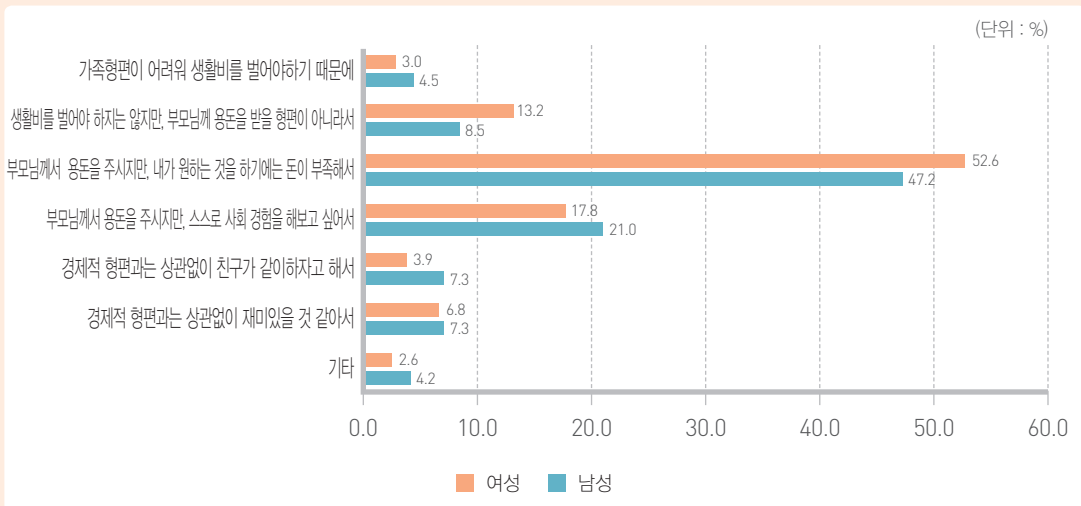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각 년도).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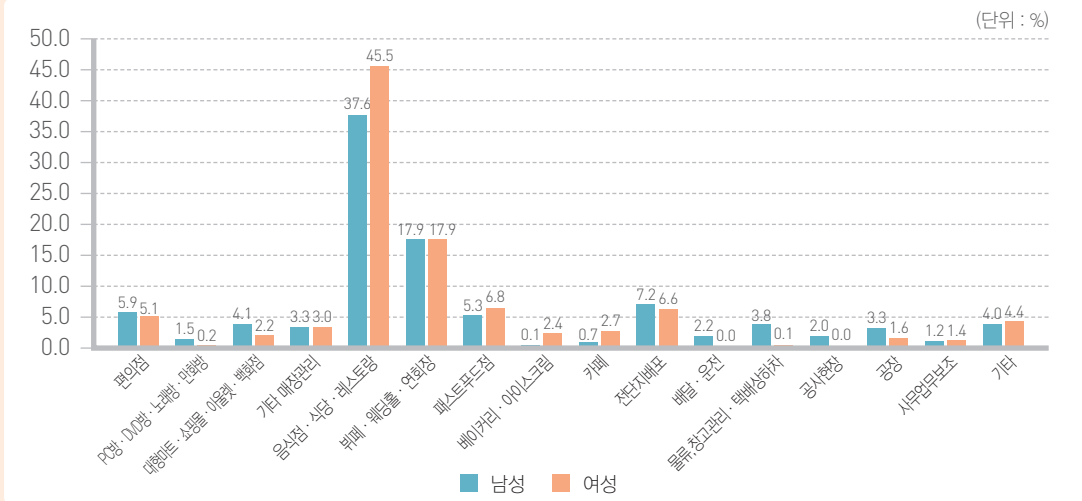
[청소년(만10~18세) 아르바이트 목적]



자료 :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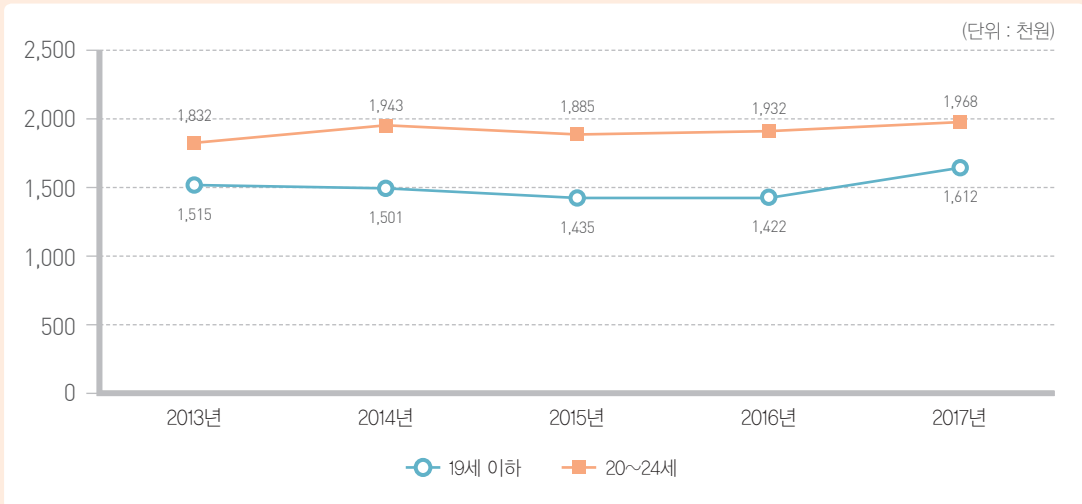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청소년(만10~18세) 아르바이트 업종별 참여율]



자료 :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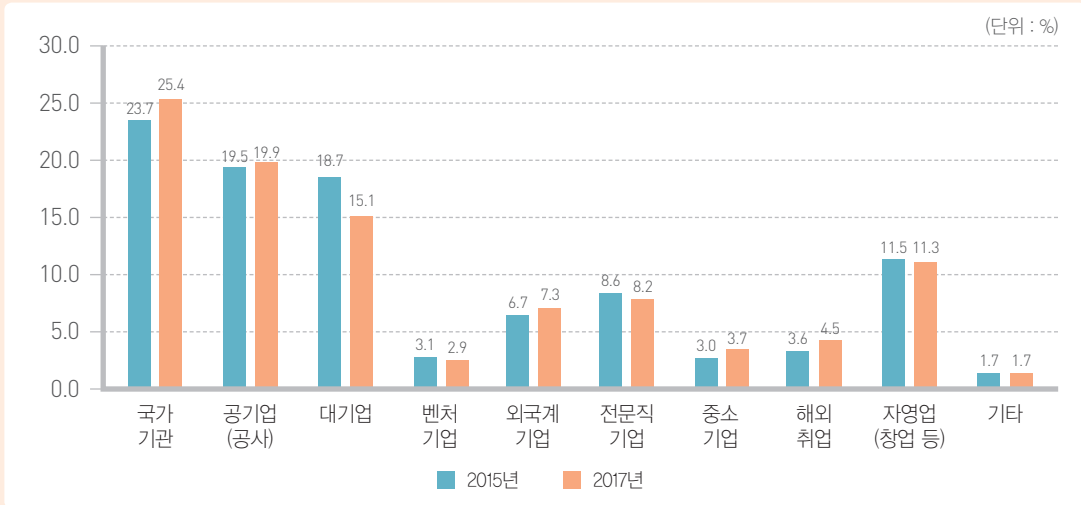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수준]



주 : 임금 수준은 월 임금 총액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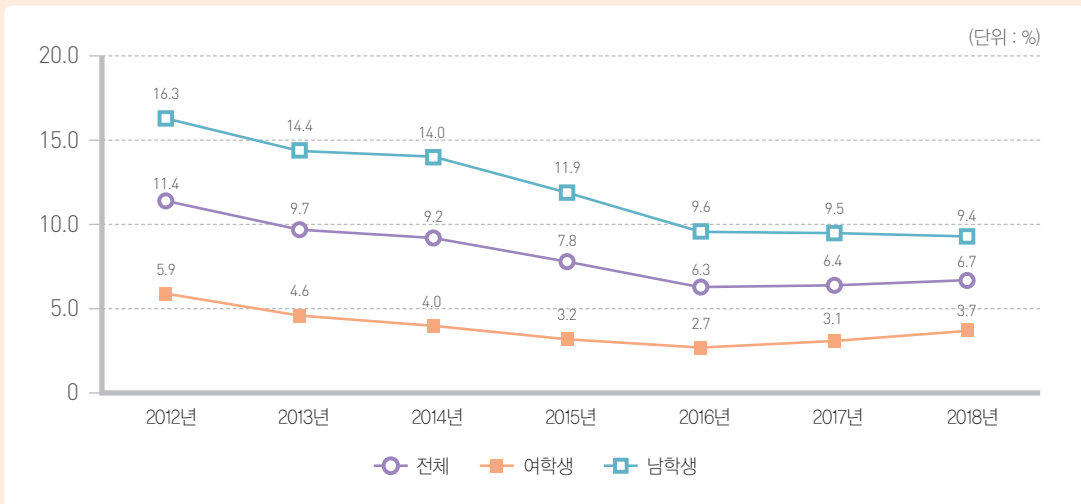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각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청소년(13~29세)이 선호하는 직장]



자료 :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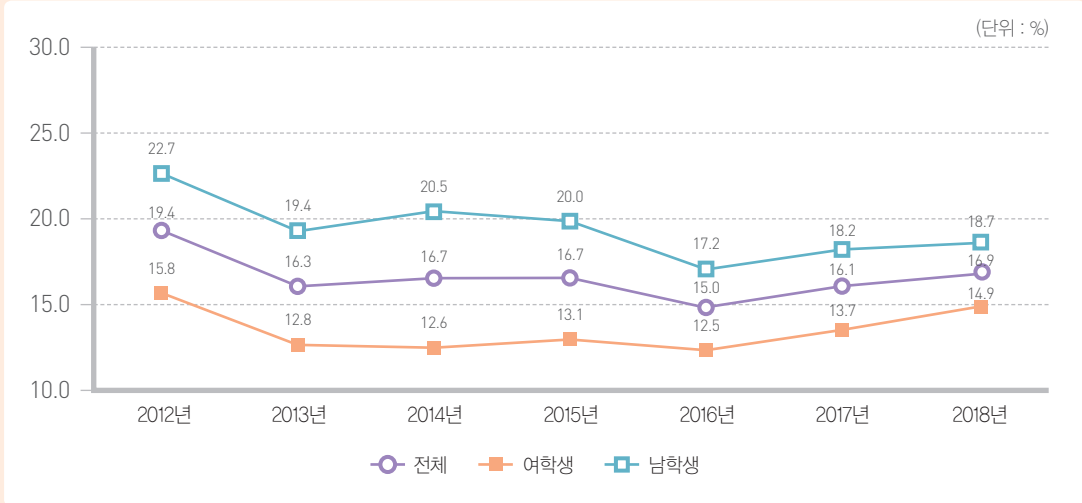
[청소년(중·고생) 현재 흡연을 추이]



주 : 청소년 현재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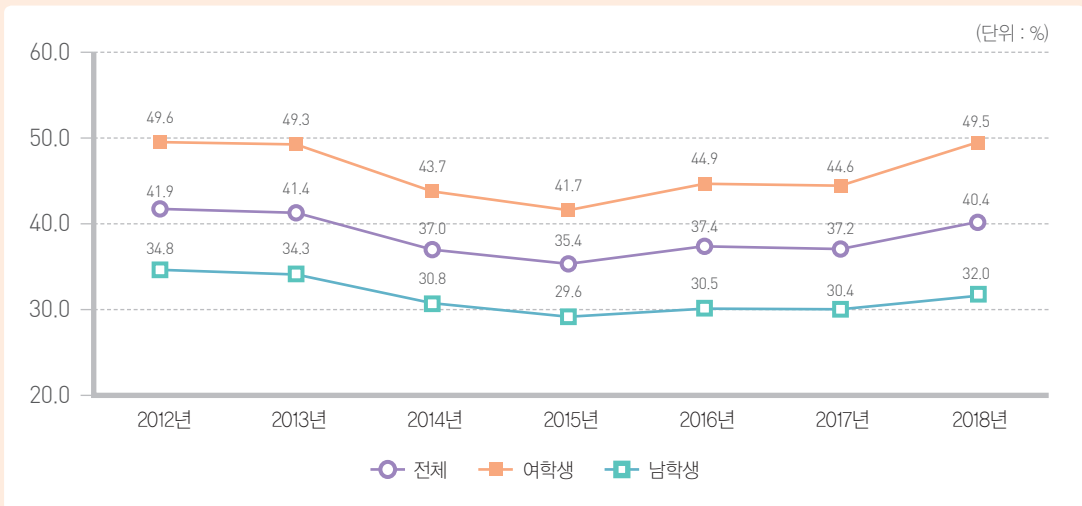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청소년(중·고생) 현재 음주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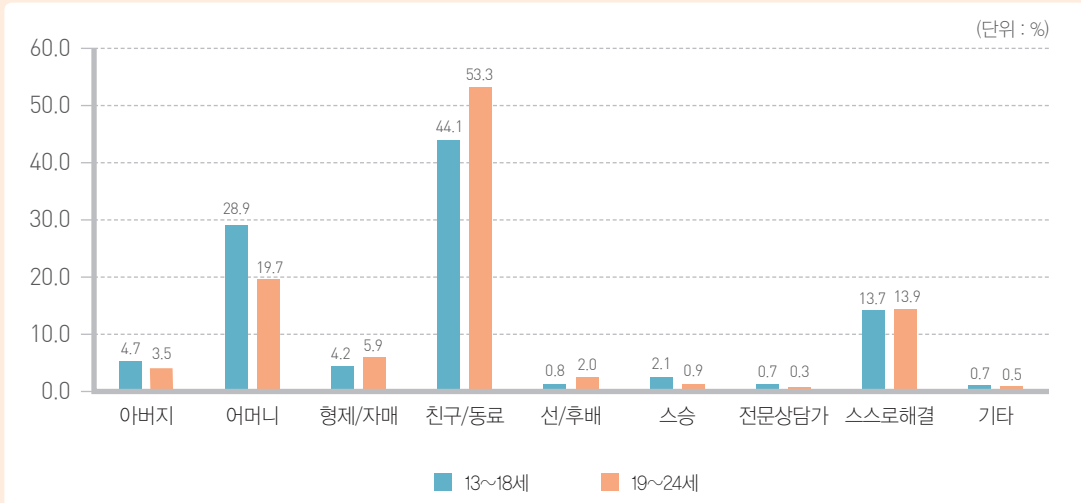
주 : 청소년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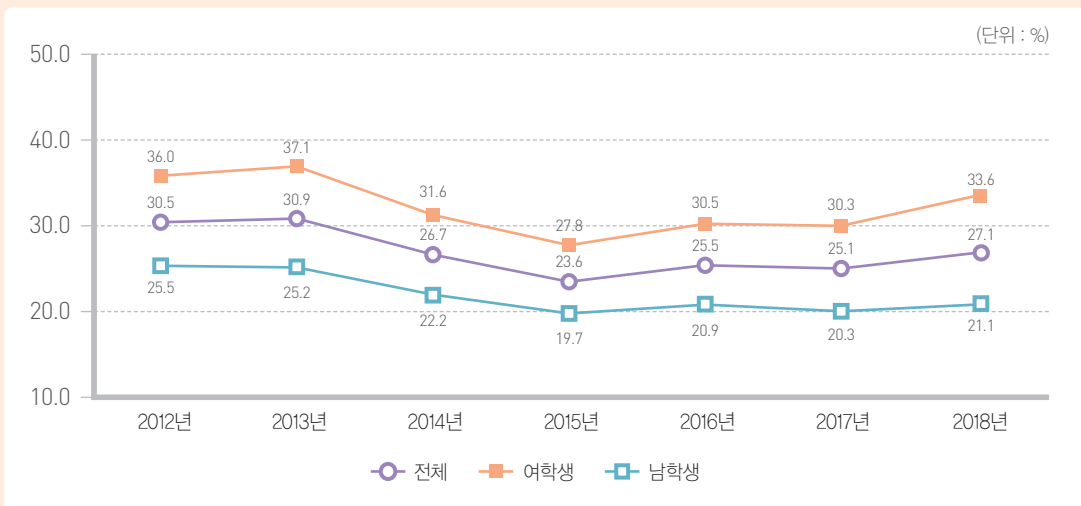
주 :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



자료 : 통계청(2018). 사회조사.

[청소년(중·고생) 우울감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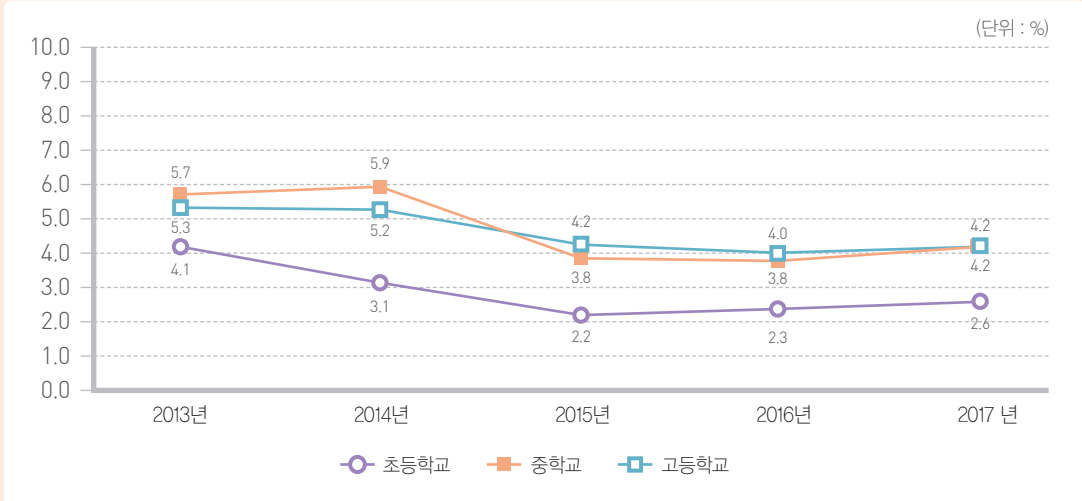


주 :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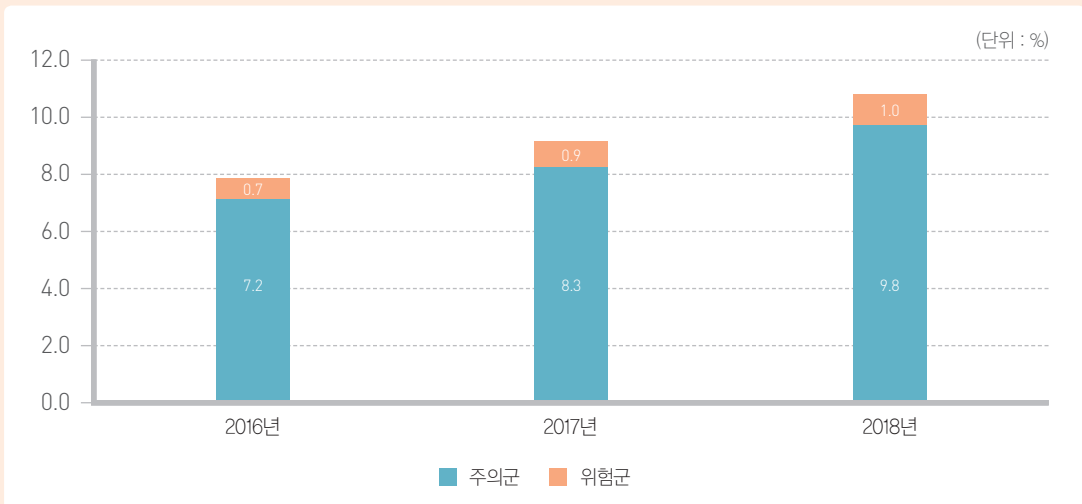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청소년 가출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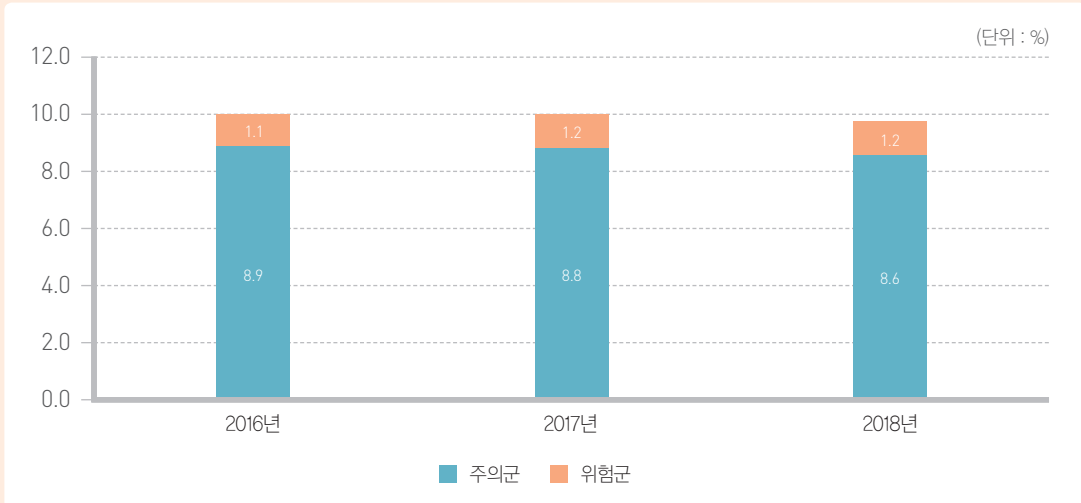
주 : 청소년 가출 경험률은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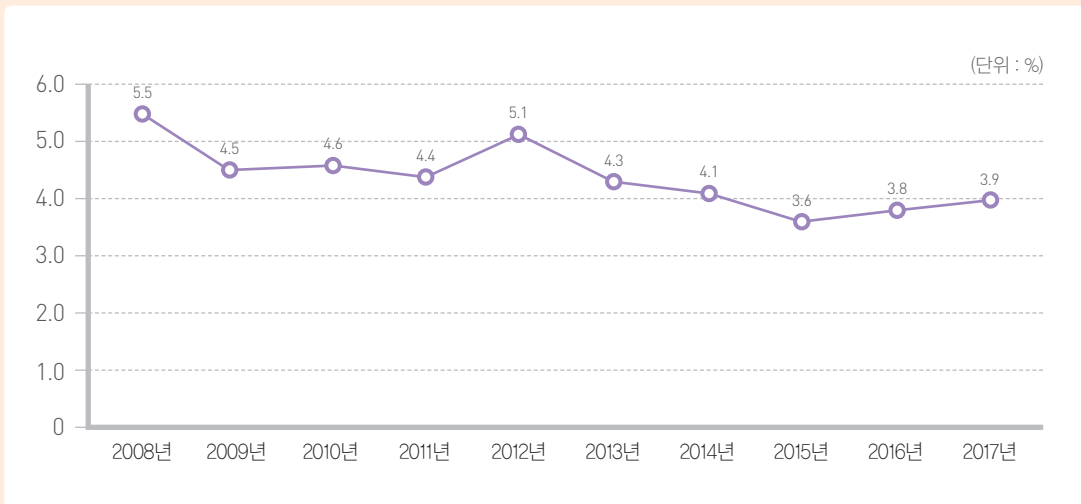
주 : 설문대상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결과.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주 : 설문대상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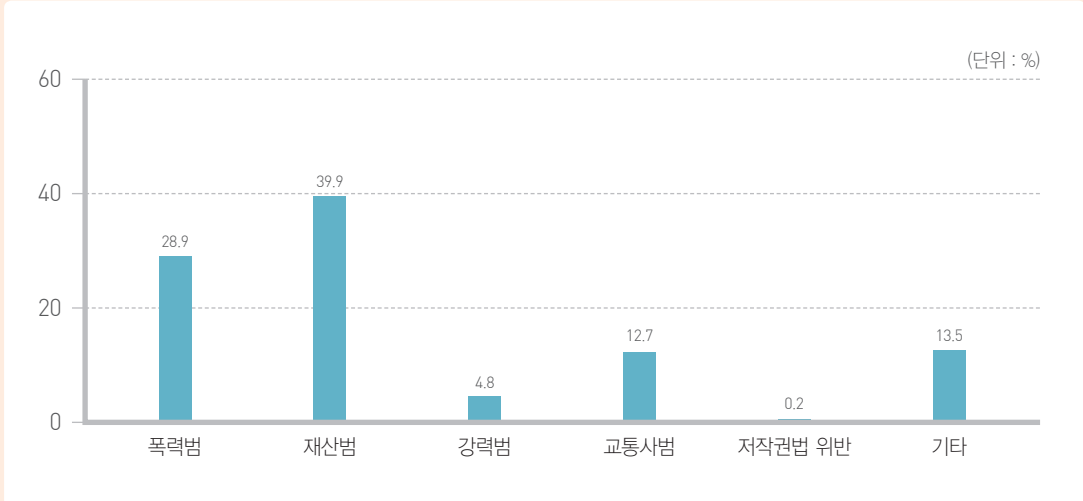
[전체범죄대비 소년범죄의 비율 추이]



자료 : 대검찰청(2009~2018). 범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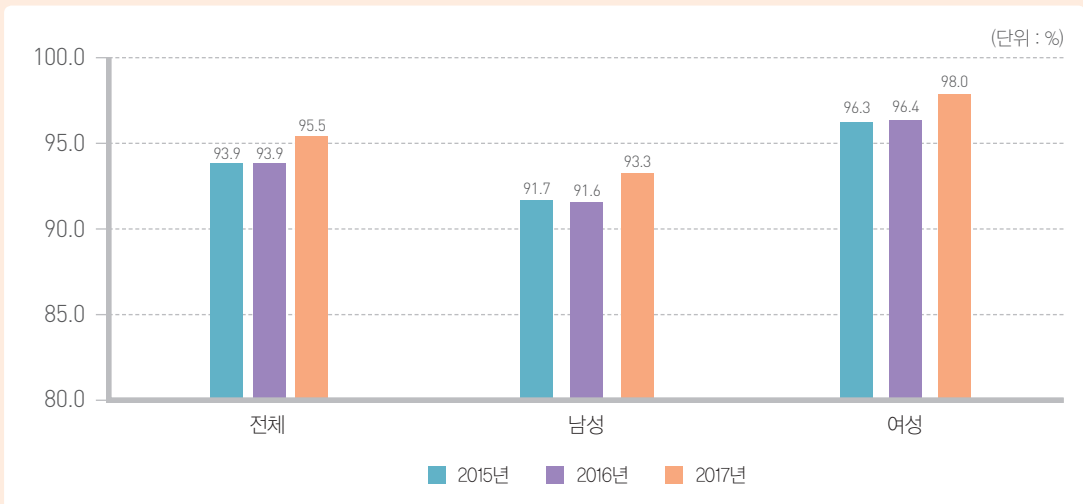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청소년범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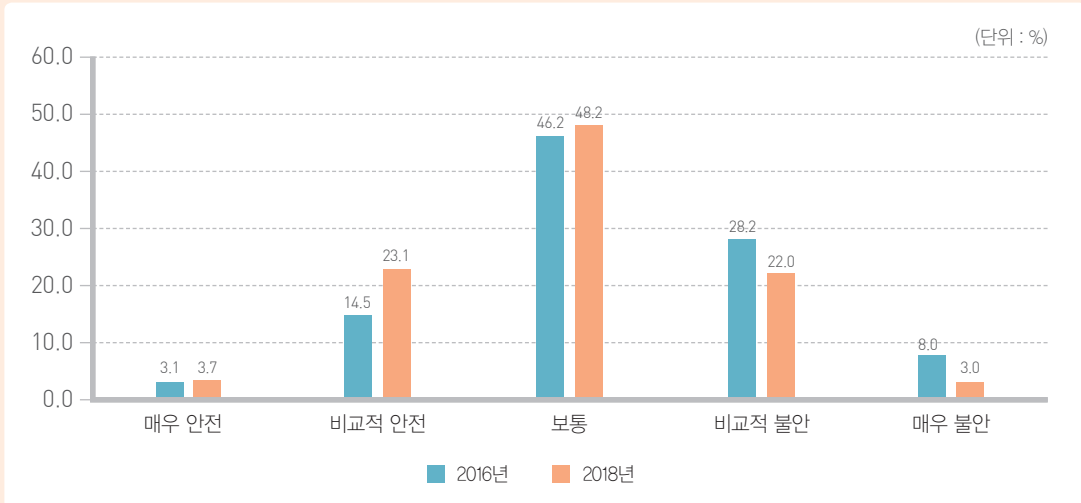
자료 : 대검찰청(2018). 범죄분석.

[양성평등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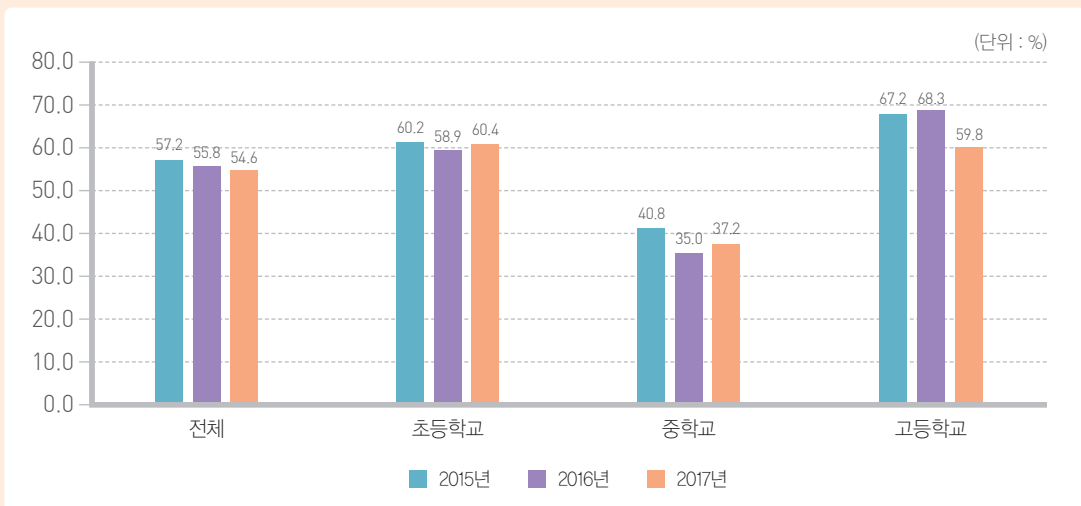
주 : 양성평등의식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합계를 산출하였음.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13~19세)]



자료 :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방과후학교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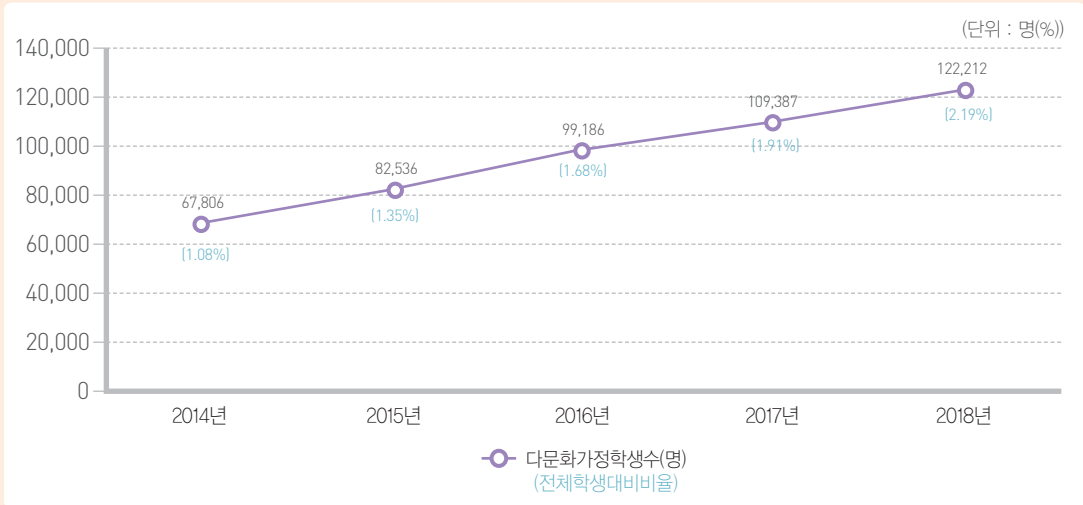


주 :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유상' 및 '무상'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합한 값임.

자료 : 통계청(2018), 2017 사교육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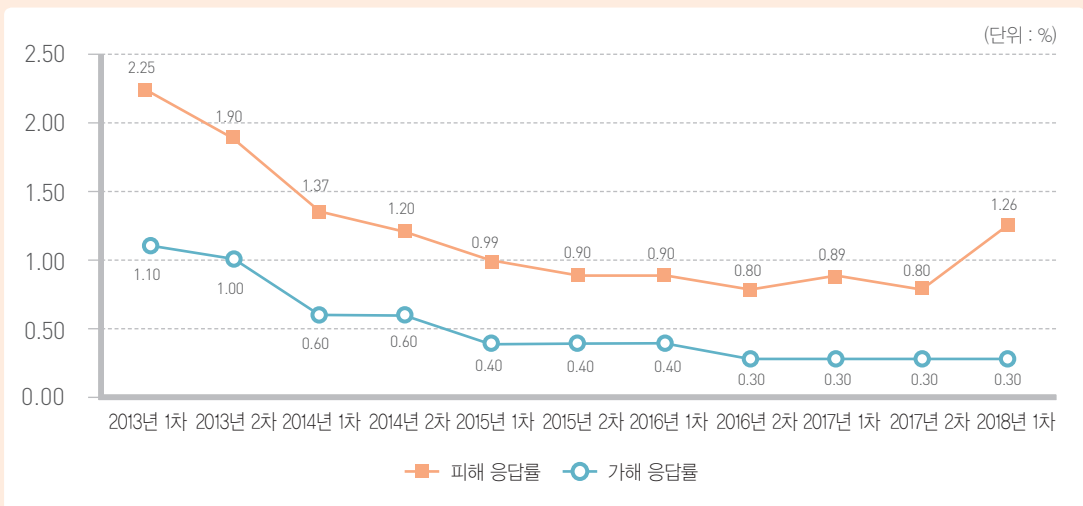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다문화가정 학생 수, 비율]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비율]



주 : 1) 설문대상은 초4~고3 재학생(1차 조사), 초4~고2 재학생(2차 조사)임.

2) 피해응답률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3) 가해응답률은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자료 : 교육부(각년도), 학교폭력실태조사 주요 결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044-415-2162



목 차

제1부 총론

제1장 청소년정책 연혁	2
1. 청소년정책의 범주	2
2.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3
제2장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7
1. 총괄	7
2. 추진방향	9
제3장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18
1.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청소년 연령 현황	18
2. UN 청소년정책 현황	22
3. 주요 국가 청소년정책 현황	27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생활환경

제1장 청소년 인구	50
1. 청소년 인구 현황	50
2. 청소년 인구 전망	51
3. 청소년 인구동태	54
제2장 청소년 생활환경	63
1. 가족환경	63
2. 학교환경	80
3. 미디어환경	86



제3부 청소년 권리·참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98
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98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99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99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103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111
1. 청소년의 달 행사	111
2.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117
3. 청소년푸른성장대상	120

제4부 청소년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지원	126
1.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활동분야)	126
2. 청소년문화활동	127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129
4.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136
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140
6.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Korea Achievement Award)	142
7.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145
제2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148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도입 배경	148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 현황	148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154
1. 청소년 국제교류	154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160
3. 민간단체 주관 청소년국제행사 지원	162
4. 세계스카우트잰버리(2023년) 유치	162

제5부 청소년 복지

제1장 대상별 청소년 현황	170
1. 아동빈곤율 현황	170
2. 한부모가구 현황	173
3. 다문화가족 및 아동 현황	175
4. 보호대상아동 현황	178
제2장 대상별 청소년 지원	182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182
2. 가출 청소년 지원	186
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90
4. 청소년 특별지원	191
5.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193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95
7. 지역아동센터 운영	197
8. 드림스타트 사업(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202
9.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208
10.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210
11. 아동 급식 지원	218
12. 보호대상아동 조기 발견·지원(e아동행복지원시스템)	220



목 차

제3장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222
1. 상담서비스	222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229
3. 청소년전화 1388	231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234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235
제4장 청소년의 건강	241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241
2. 청소년의 영양	249
3.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252
4. 청소년의 정신건강	255

제6부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260
1.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260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65
3.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280
4.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287
5.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290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296
1.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296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301

제3장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311
1.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311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316
제4장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318
1.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대응	318
2.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실시 및 효과	324
제5장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327
1.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선도보호(재유입방지교육)	327
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329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333
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335
5.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시	339

제7부 청소년의 교육

제1장 학교교육 현황	344
1. 학령인구	344
2. 학생 인구 및 학교 수	346
3. 조기유학 현황	351
4. 대안교육 학교	352
5. 진학률	354
6. 학업중단율	356
7. 교육재정	357
제2장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362
1.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362
2.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368



목 차

제3장 교육복지정책	370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370
2. 방과후학교	374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378
4. 다문화학생 교육	384
5. 탈북학생 교육 지원	391

제8부 청소년 노동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404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404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408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409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414
5. 임금 및 노동시간	417
6. 청소년 아르바이트	421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424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424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425
3.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426
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상황	426
제3장 청소년의 고용·직업·진로정책	430
1.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430
2. 청소년 창업지원 대책	435
3. 청소년고용촉진대책	438

제9부 청소년 범죄

제1장 청소년범죄의 현황	452
1. 청소년범죄의 동향	452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457
3. 학생범죄의 동향	459
제2장 청소년범죄 예방활동	461
1. 경찰의 예방활동	461
2. 검찰의 예방활동	468
3. 법무부의 예방활동	475
제3장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481
1. 경찰단계의 사건처리	481
2. 검찰단계의 사건처리	483
3.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비행진단 및 처우	485
4. 소년법원에서의 사건처리	489
5. 형사법원에서의 사건처리	494
제4장 청소년범죄에 대한 교정교육	496
1. 소년원의 교정교육	496
2. 소년교도소의 교정교육	504
3. 보호관찰소의 교정교육	508



제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제1장 청소년시설	520
1. 청소년활동시설	520
2. 청소년보호·복지시설	526
제2장 청소년지도자	530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530
2. 청소년지도사	531
3. 청소년상담사	537
제3장 청소년 단체	543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543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545
제4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547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547
2. 청소년관련 업무 추진기관	552
3. 청소년관련 시·도 행정조직	555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556
5. 정부 산하기관	557
제5장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560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60
2. 청소년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관련 연구기관	565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567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571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571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	573

부록

[부록1]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578
[부록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582
[부록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587
[부록4]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608
[부록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613
[부록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625
[부록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626
[부록8] 청소년백서 용어집	639



표 목 차

〈표 1-1-1〉 청소년정책의 변천	3
〈표 1-3-1〉 UN 및 UN기구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18
〈표 1-3-2〉 미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19
〈표 1-3-3〉 영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19
〈표 1-3-4〉 독일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20
〈표 1-3-5〉 일본 청소년, 청년 연령 기준 및 근거 법률	21
〈표 1-3-6〉 유럽연합 Youth Strategy(2010~2018)의 8개 분야	28
〈표 1-3-7〉 일본 아동·청년비전의 우선과제(priority issues)	42
〈표 1-3-8〉 2014년 및 2018년 MSF 주요 아동·청소년정책	46
〈표 2-1-1〉 2018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50
〈표 2-1-2〉 총 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52
〈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54
〈표 2-1-4〉 연도별 인구동태율 추이	56
〈표 2-1-5〉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57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58
〈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59
〈표 2-1-8〉 2017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구성비	61
〈표 2-2-1〉 연도별 가구 수 및 가구원 수	63
〈표 2-2-2〉 세대구성유형별 가구 수 현황	65
〈표 2-2-3〉 자녀에 대한 견해(찬성비율)	67
〈표 2-2-4〉 양육관련 만족도 : 현재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	68
〈표 2-2-5〉 자녀의 의견 존중	69
〈표 2-2-6〉 자녀양육책임의 범위(2009년, 2012년, 2015년)	70
〈표 2-2-7〉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70
〈표 2-2-8〉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72
〈표 2-2-9〉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복수응답)	73

〈표 2-2-10〉 부모님과 대화여부 및 대화시간(1일 평균)	75
〈표 2-2-11〉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	76
〈표 2-2-12〉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	77
〈표 2-2-13〉 부모님으로부터의 비용 지원	78
〈표 2-2-14〉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	80
〈표 2-2-15〉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82
〈표 2-2-16〉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82
〈표 2-2-17〉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83
〈표 2-2-18〉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84
〈표 2-2-19〉 진로교육 경험 :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85
〈표 2-2-20〉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평균 이용시간	87
〈표 2-2-21〉 인터넷 이용용도(복수응답)	89
〈표 2-2-22〉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복수응답)	90
〈표 2-2-23〉 스마트폰 이용 빈도	91
〈표 2-2-24〉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음성통화 제외)	92
〈표 2-2-25〉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	93
〈표 2-2-26〉 필수 매체 인식	93
〈표 2-2-27〉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률	94
〈표 3-2-1〉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104
〈표 3-2-2〉 2018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104
〈표 3-2-3〉 2018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106
〈표 3-2-4〉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107
〈표 3-2-5〉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2010년 이후 '행복e음시스템'으로 발급)	110
〈표 3-3-1〉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 현황	111
〈표 3-3-2〉 '청소년의 달 기념식' 주요 행사내용	112
〈표 3-3-3〉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행사개요 및 구성	113



표 목 차

〈표 3-3-4〉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황	114
〈표 3-3-5〉 ‘성년의 날’ 기념행사 현황	116
〈표 3-3-6〉 유공자 포상 현황	118
〈표 3-3-7〉 역대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118
〈표 3-3-8〉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개최 현황	121
〈표 4-1-1〉 2018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126
〈표 4-1-2〉 전국 청소년동아리 지원 현황	127
〈표 4-1-3〉 전국 시·도별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현황(2011~2017년)	128
〈표 4-1-4〉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133
〈표 4-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유형 구분	134
〈표 4-1-6〉 연도별 인증제 운영 현황	134
〈표 4-1-7〉 기관 유형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현황	134
〈표 4-1-8〉 인증수련활동 보유기관별 운영 현황	135
〈표 4-1-9〉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요건	137
〈표 4-1-10〉 지역별 신고 수리 현황	138
〈표 4-1-11〉 시설 유형별 신고 현황	139
〈표 4-1-12〉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140
〈표 4-1-13〉 국제청소년성취 포상제 운영 현황	142
〈표 4-1-14〉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143
〈표 4-1-15〉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 현황	144
〈표 4-1-16〉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145
〈표 4-1-17〉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내용	146
〈표 4-2-1〉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150
〈표 4-2-2〉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연간 프로그램 제공 수	150
〈표 4-2-3〉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실인원 및 지속 참여인원	151
〈표 4-2-4〉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YVP) 추진경과	152

〈표 4-3-1〉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6개국)	154
〈표 4-3-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 및 교류 현황	155
〈표 4-3-3〉 한·중 청소년 교류 현황	157
〈표 4-3-4〉 한·중 청소년 교류 지원사업 프로그램 현황	159
〈표 4-3-5〉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현황	160
〈표 4-3-6〉 2018년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161
〈표 4-3-7〉 2018년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현황	161
〈표 4-3-8〉 2018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162
〈표 4-3-9〉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역대 개최 현황	163
〈표 4-3-10〉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요	166
〈표 5-1-1〉 연도별 아동빈곤율 현황	171
〈표 5-1-2〉 연도별 한부모가구 현황	174
〈표 5-1-3〉 다문화가족 자녀 수 연령별 현황	175
〈표 5-1-4〉 부 또는 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현황	176
〈표 5-1-5〉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177
〈표 5-1-6〉 2017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 현황	178
〈표 5-1-7〉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179
〈표 5-1-8〉 보호대상아동 보호 현황	181
〈표 5-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혁	182
〈표 5-2-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	183
〈표 5-2-3〉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인원	184
〈표 5-2-4〉 청소년쉼터의 발전단계	187
〈표 5-2-5〉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188
〈표 5-2-6〉 쉼터의 종류 및 기능	189
〈표 5-2-7〉 연도별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	189
〈표 5-2-8〉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 및 내용	190



표 목 차

〈표 5-2-9〉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192
〈표 5-2-10〉 특별지원 종류 및 지원내용	192
〈표 5-2-11〉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193
〈표 5-2-12〉 북한이탈청소년 재학 현황	194
〈표 5-2-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195
〈표 5-2-14〉 지역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196
〈표 5-2-15〉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198
〈표 5-2-1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및 운영 현황	201
〈표 5-2-17〉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203
〈표 5-2-18〉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및 사례관리 아동 수	205
〈표 5-2-19〉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특징	207
〈표 5-2-20〉 연도별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209
〈표 5-2-21〉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211
〈표 5-2-22〉 연도별 가정위탁 보호 현황	212
〈표 5-2-23〉 연도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215
〈표 5-2-24〉 국내·외 입양 현황	217
〈표 5-2-25〉 국내 입양가정 지원제도 현황	217
〈표 5-2-26〉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219
〈표 5-2-27〉 위기의심 아동 현황	221
〈표 5-2-28〉 현장조사 완료 현황	221
〈표 5-3-1〉 2017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224
〈표 5-3-2〉 2018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226
〈표 5-3-3〉 2017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별 상담실적	227
〈표 5-3-4〉 2017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228
〈표 5-3-5〉 연도별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	230
〈표 5-3-6〉 연도별 CYS-Net 지원서비스 이용건수	231

〈표 5-3-7〉 2017년 청소년전화 1388 주요 실적	232
〈표 5-3-8〉 연도별 청소년전화 1388 호소문제 유형별 이용건수	232
〈표 5-3-9〉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현황	234
〈표 5-3-10〉 2018년 또래상담 사업 실적	235
〈표 5-3-11〉 또래상담 기본교육 프로그램 내용	237
〈표 5-3-12〉 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내용	238
〈표 5-3-13〉 2017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성 분석	240
〈표 5-4-1〉 성별·연령별 신장의 추이	241
〈표 5-4-2〉 성별·연령별 체중의 추이	243
〈표 5-4-3〉 성별·연령별 50m달리기의 추이	245
〈표 5-4-4〉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246
〈표 5-4-5〉 성별·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247
〈표 5-4-6〉 성별·연령별 윗몸일으키기의 추이(2011-윗몸말아올리기)	248
〈표 5-4-7〉 성별·연령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추이	248
〈표 5-4-8〉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	249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	250
〈표 5-4-10〉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251
〈표 5-4-11〉 아침식사 결식률	252
〈표 5-4-12〉 흡연 관련 지표	254
〈표 5-4-13〉 음주 관련 지표	255
〈표 6-1-1〉 분야별 점검등급 구분(2018년 기준)	261
〈표 6-1-2〉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주요 내용(2018년 기준)	261
〈표 6-1-3〉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평가기준(2018년 기준)	262
〈표 6-1-4〉 2018년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2018년 기준)	264
〈표 6-1-5〉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중점과제	267
〈표 6-1-6〉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 추진계획」의 중점과제	270



표 목 차

〈표 6-1-7〉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의 4대 중점 추진과제 및 12개 세부 추진과제	274
〈표 6-1-8〉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의 5대 개선과제 및 11개 세부 추진과제	275
〈표 6-1-9〉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282
〈표 6-1-10〉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83
〈표 6-1-11〉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2017)	284
〈표 6-1-12〉 현장조사동행현황	286
〈표 6-1-13〉 실종 일반아동·장애아동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	288
〈표 6-1-14〉 연도별·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291
〈표 6-1-15〉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국제 비교	293
〈표 6-1-16〉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주요 내용	295
〈표 6-2-1〉 청소년 현재 흡연율, 평생 흡연 경험률 및 처음 흡연 연령	297
〈표 6-2-2〉 청소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및 처음 음주 연령	297
〈표 6-2-3〉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299
〈표 6-2-4〉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300
〈표 6-2-5〉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	301
〈표 6-2-6〉 2018년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302
〈표 6-2-7〉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303
〈표 6-2-8〉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304
〈표 6-2-9〉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2018년 6월 기준)	306
〈표 6-2-1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2018년 6월 기준)	308
〈표 6-2-1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309
〈표 6-3-1〉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312
〈표 6-3-2〉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313
〈표 6-3-3〉 청소년 유해음반 결정·고시 현황	315
〈표 6-5-1〉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328
〈표 6-5-2〉 교육프로그램 구성	328

〈표 6-5-3〉 교육 실시 현황	329
〈표 6-5-4〉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실적	337
〈표 6-5-5〉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338
〈표 6-5-6〉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	338
〈표 6-5-7〉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341
〈표 6-5-8〉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341
〈표 7-1-1〉 연도별 학령인구	345
〈표 7-1-2〉 학교급별 학생 수	347
〈표 7-1-3〉 학교급별 학교 수	348
〈표 7-1-4〉 교원 1인당 학생 수	350
〈표 7-1-5〉 연도별·학교급별 출국 현황	352
〈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353
〈표 7-1-7〉 학교급별 진학률	355
〈표 7-1-8〉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356
〈표 7-1-9〉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358
〈표 7-1-10〉 GDP 대비 교육재정	359
〈표 7-1-11〉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4)	360
〈표 7-1-12〉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361
〈표 7-2-1〉 중학교 3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363
〈표 7-2-2〉 고등학교 2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365
〈표 7-2-3〉 중학교 3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366
〈표 7-2-4〉 고등학교 2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367
〈표 7-2-5〉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369
〈표 7-3-1〉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377
〈표 7-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377
〈표 7-3-3〉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378



표 목 차

〈표 7-3-4〉 2004~2018년 농어촌교육 지원정책 개요	379
〈표 7-3-5〉 농어촌학교 ICT 지원 사업 개요	382
〈표 7-3-6〉 농어촌 학교 특색활동 운영 지원 사업	383
〈표 7-3-7〉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 현황	384
〈표 7-3-8〉 다문화학생 유형별·학교급별 현황	385
〈표 7-3-9〉 탈북학생 지칭 용어 및 지원 비교	391
〈표 7-3-10〉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392
〈표 7-3-11〉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 현황	392
〈표 7-3-12〉 탈북청소년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393
〈표 7-3-13〉 지역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18. 4)	394
〈표 7-3-14〉 정규학교 재학 탈북학생 출생지별 재학현황	395
〈표 7-3-15〉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395
〈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405
〈표 8-1-2〉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406
〈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현황 추이	408
〈표 8-1-4〉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410
〈표 8-1-5〉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416
〈표 8-1-6〉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418
〈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419
〈표 8-1-8〉 연령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420
〈표 8-1-9〉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 및 근로조건 현황(2016년)	422
〈표 8-2-1〉 2018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424
〈표 8-2-2〉 2018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425
〈표 8-2-3〉 2018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426
〈표 8-2-4〉 2017년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427
〈표 8-3-1〉 2018년 청년일자리 대책(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440

〈표 8-3-2〉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	444
〈표 8-3-3〉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의 직업심리검사 개요	444
〈표 9-1-1〉 연도별 청소년범죄자 현황 및 구성비	452
〈표 9-1-2〉 청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2008~2017)	454
〈표 9-1-3〉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2008~2017)	455
〈표 9-1-4〉 청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456
〈표 9-1-5〉 청소년범죄의 성별 현황	457
〈표 9-1-6〉 청소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2008~2017)	458
〈표 9-1-7〉 청소년 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2008~2017)	458
〈표 9-1-8〉 연도별 학생범죄 현황	460
〈표 9-2-1〉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2012~2017)	461
〈표 9-2-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	462
〈표 9-2-3〉 연도별 학교전담경찰관 주요 활동성과	463
〈표 9-2-4〉 연도별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	464
〈표 9-2-5〉 연도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현황	465
〈표 9-2-6〉 연도별 명예경찰소년단 현황	466
〈표 9-2-7〉 연도별 명예경찰소년단 활동 현황	467
〈표 9-2-8〉 학교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현황(2016~2017)	468
〈표 9-2-9〉 연도별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실적	469
〈표 9-2-10〉 연도별 학교담당검사제 활동실적	470
〈표 9-2-11〉 연도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471
〈표 9-2-1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2012~2017)	472
〈표 9-2-1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2012~2017)	473
〈표 9-2-1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474
〈표 9-2-15〉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임무	475
〈표 9-2-16〉 청소년꿈키움센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476



표 목 차

〈표 9-2-17〉 대안교육 실시 현황	477
〈표 9-2-18〉 연도별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현황	478
〈표 9-2-19〉 연도별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479
〈표 9-2-20〉 연도별 보호자교육 실적	480
〈표 9-3-1〉 청소년범죄자 유형별 검거현황(2012~2017)	481
〈표 9-3-2〉 연도별 청소년범죄자의 재범 현황	482
〈표 9-3-3〉 연도별 청소년범죄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현황	483
〈표 9-3-4〉 연도별 청소년범죄 처리 현황	484
〈표 9-3-5〉 연도별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 현황	486
〈표 9-3-6〉 연도별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분류심사 실시 현황	487
〈표 9-3-7〉 연도별 청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	488
〈표 9-3-8〉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접수 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490
〈표 9-3-9〉 연도별 소년보호사건의 처분현황	491
〈표 9-3-10〉 소년보호사건의 유형별 현황(2012~2017)	492
〈표 9-3-11〉 연도별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 현황	494
〈표 9-4-1〉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497
〈표 9-4-2〉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499
〈표 9-4-3〉 연도별 보호소년 수용현황	500
〈표 9-4-4〉 연도별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	500
〈표 9-4-5〉 연도별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501
〈표 9-4-6〉 연도별 상급학교 진학 현황	501
〈표 9-4-7〉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2008~2017)	503
〈표 9-4-8〉 연도별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	504
〈표 9-4-9〉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08~2017)	505
〈표 9-4-10〉 청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2008~2017)	506
〈표 9-4-11〉 연도별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507
〈표 9-4-12〉 청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2008~2017)	507

〈표 9-4-13〉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 비율	510
〈표 9-4-14〉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 실시현황	510
〈표 9-4-15〉 연도별 청소년대상자 보호관찰 성적에 따른 조치 현황	512
〈표 9-4-16〉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형태(2008~2017)	513
〈표 9-4-17〉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2008~2017)	514
〈표 9-4-18〉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2008~2017)	515
〈표 9-4-19〉 연도별 청소년대상자 판결(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실적	516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521
〈표 10-1-2〉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522
〈표 10-2-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531
〈표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532
〈표 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534
〈표 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535
〈표 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537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538
〈표 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540
〈표 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540
〈표 10-2-9〉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541
〈표 10-4-1〉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549
〈표 10-4-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 현황	551
〈표 10-4-3〉 청소년정책 영역별 소관부처 현황	552
〈표 10-4-4〉 시·도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현황	555
〈표 10-4-5〉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556
〈표 10-5-1〉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회원 현황	568
〈표 10-6-1〉 연도별 청소년 예산	571
〈표 10-6-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574



그림 목차

[그림 1-2-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비전, 목표 및 중점과제	8
[그림 2-1-1]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53
[그림 2-2-1] 주중 아버지와 대화시간(1일 평균)	74
[그림 2-2-2] 주중 어머니와의 대화시간(1일 평균)	74
[그림 3-2-1] 청소년특별회의 추진 절차	106
[그림 3-2-2] 청소년증 발급 절차	109
[그림 4-1-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절차	132
[그림 4-1-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수리 절차	138
[그림 4-2-1] 연도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실인원 및 지속 참여인원 비율	151
[그림 5-1-1] 아동빈곤율 국제 비교(2015년, 중위소득 50%)	173
[그림 5-1-2] 한부모가구비율 추이	174
[그림 5-1-3]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추이	180
[그림 5-2-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184
[그림 5-2-2] 국가건강검진 추진체계	186
[그림 5-2-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절차	191
[그림 5-2-4]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199
[그림 5-2-5]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199
[그림 5-2-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200
[그림 5-2-7]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	204
[그림 5-2-8] 드림스타트 개입을 통한 영유아의 발달 산물 변화(2015년, 2017년 비교)	205
[그림 5-2-9] 드림스타트 개입을 통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발달 산물 변화(2015년, 2017년 비교)	206
[그림 5-2-10] 드림스타트 개입을 통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발달 산물 변화(2015년, 2017년 비교)	206
[그림 5-2-11] 드림스타트 개입을 통한 양육자의 적응지표 변화(2015년, 2017년 비교)	206
[그림 5-2-12]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208
[그림 5-2-13]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추진 체계	220
[그림 5-3-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체계도	229

[그림 5-3-2] 2017년 청소년전화 1388 월별 이용실적	233
[그림 5-3-3] 2017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학교폭력예방 효과성)	239
[그림 5-4-1] 학년별 현재 흡연율	253
[그림 5-4-2] 학년별 현재 음주율	254
[그림 5-4-3]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256
[그림 5-4-4]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257
[그림 6-1-1]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272
[그림 6-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8년도 시행계획」 중점 과제	276
[그림 6-1-3]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중점 과제	278
[그림 6-1-4] 신고접수건수 비율	281
[그림 6-1-5]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14세 이하)	291
[그림 6-1-6]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14세 이하)	292
[그림 6-3-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절차도	313
[그림 6-3-2]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청구 절차	315
[그림 6-4-1] 여성가족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319
[그림 6-5-1]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 시설 배치도	336
[그림 7-1-1] 연도별 학령인구	344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 수	350
[그림 7-1-3] 학교급별 진학률	354
[그림 7-1-4]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2017)	361
[그림 7-3-1] 방과후학교 비전·목표·전략	375
[그림 7-3-2] 다문화가정 학생 구분	385
[그림 7-3-3] 2017년 다문화 중점학교 및 일반학교 다문화 수용성 변화 비교	389
[그림 7-3-4] 탈북학생 단계별 교육지원 체계	397
[그림 7-3-5] 2018년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	398
[그림 8-1-1] 2017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406



그림 목차

[그림 8-1-2] 2016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407
[그림 8-1-3]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중 청소년 비중	410
[그림 8-1-4] 청소년(15~24세)의 비정규직 비중·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411
[그림 8-1-5] 청소년(15~24세)의 학력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412
[그림 8-1-6] 청소년(15~24세)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 추이	412
[그림 8-1-7]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413
[그림 8-1-8]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413
[그림 8-1-9] 연도별 청소년 실업률 추이	414
[그림 8-1-10] 2017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415
[그림 8-1-11] 2017년 성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417
[그림 8-1-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2016년)	421
[그림 8-1-13]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2016년)	421
[그림 8-2-1] 고등교육기관 성별, 성별·학제별 취업률	428
[그림 8-2-2]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취업률(2016년·2017년 비교)	428
[그림 8-2-3]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취업률(2016년·2017년 비교)	429
[그림 9-1-1] 연도별 전체범죄자 대비 청소년범죄자 구성비	453
[그림 9-1-2] 범죄유형별 청소년범죄 현황(2017)	453
[그림 10-1-1]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	520
[그림 10-2-1]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530
[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533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539
[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548
[그림 10-5-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직 현황	563

제1부 요약

‘제1부 총론’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연혁 및 기본방향,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 간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성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현황 및 국가별 청소년 연령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사회 환경과 현실문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4대 정책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12대 중점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2022년까지 추진할 전망이다.

4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12대 중점과제로는 우선 청소년 참여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및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혁신하고,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며,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위기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보호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로는 청소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에서는 UN 등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청소년 연령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UN을 비롯해 유럽연합,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의 청소년정책 변화와 흐름, 청소년정책 담당 기구 및 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 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UN은 2015년 9월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빈곤종식과 건강한 삶, 불평등 완화 등 17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역사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여전히 주요 그룹으로 여겨지고,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조해 왔다. 유럽연합,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도 각기 청소년세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관련 법령을 구축 및 정비하고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주요 핵심 추진 기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제1부 총론

제1장 청소년정책 연혁

제2장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제3장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제1장 | 청소년정책 연혁

1 청소년정책의 범주

청소년정책의 범주는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개념의 정의에 따라 크게 광의적 범주와 협의적 범주로 나눈다. 먼저 청소년정책의 범주를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국가정책이란 의미로 여기에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과 관계된 중앙정부 각 부처의 청소년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모두 포괄한다. 실제로 1965년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편낸 청소년백서는 당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사회교육 정책을 포함해 복지, 노동, 비행 및 농어촌 청소년지도 등 청소년과 관계된 범정부 차원의 정책 모두를 청소년정책의 범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7년까지 발간된 청소년백서에도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각 부처의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관련 업무를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상 정책영역별로 분류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정책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은 「청소년 기본법(제9조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있다.

청소년정책을 좁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안전과 보호, 청소년의 교육, 청소년과 노동,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청소년정책 추진체제 등 대체로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협의적 범주의 청소년정책들을 말한다. 물론 청소년 유관부처인 ‘보건복지부(청소년복지의 일부 업무)’, ‘교육부(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청소년의 교육 중 일부 업무)’, ‘고용노동부(청소년과 노동의 일부 업무)’ 등이 일부 청소년관련 정책 및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와 정책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들 협의적 범주의 청소년정책은 대체로 「청소년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중장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한편, 대상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해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정책으로 살펴보기도 한다. 반면에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근거 법률, 즉

「아동복지법」 및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0~18세 미만)과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른 청소년(9~24세)의 연령을 나누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구분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상호 중첩되는 연령, 즉 9~17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정책은 각기 정책의 수립과 추진부처에 따라 아동정책 혹은 청소년정책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백서에서는 청소년정책을 협의적 범주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유관된 아동정책(예: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사업,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아동급식사업 등)을 포함한 청소년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위주로 삼고 있다.

2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중앙정부 청소년정책 담당부처 및 주요 관계 법령 제정과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 1-1-1>과 같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표 1-1-1> 청소년정책의 변천

단계	시 기	특 성	명 칭	주무부처(기구)	주요 관계 법령
1단계	1948. 8. ~ 1964. 9.	부처별 산발추진	부처별 관련업무 추진	각 부처	
2단계	1964. 10. ~ 1977. 8.	부처차원의 조정	청소년보호 대책위원회	내무부 무임소장관실	
3단계	1977. 8. ~ 1988. 6.	정부차원의 조정	청소년 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문교부	「청소년육성법」 제정
4단계	1988. 6. ~ 2005. 4.	정부차원의 조정, 부처차원의 총괄 집행	청소년 육성위원회	체육부/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정 「청소년 보호법」 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

단계	시 기	특 성	명 칭	주무부처(기구)	주요 관계 법령
5단계	2005. 4. ~ 2008. 2	청소년조직 통합, 단일청소년 전담 조직 출범	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무총리실	
6단계	2008. 3. ~ 2010. 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7단계	2010. 3. ~ 현재	여성가족부 개편 및 이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자료 : 여성가족부(2016).

1단계는 1948년 8월부터 1964년 9월까지로, 이 기간은 특별히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정부행정기구나 전담기구가 없던 시기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은 각 부처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였다.

2단계는 1964년 10월부터 1977년 8월까지 약 13년간의 시기다. 이 시기에 내무부 및 무임소장관실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주요 업무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 및 보호위주 정책으로 이 시기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부처차원의 조정과 규제·보호위주의 청소년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3단계는 1977년 8월부터 1988년 6월까지 11년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부차원의 청소년 관계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즉,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 조정이 시작되었으며, 1983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 청소년정책이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1985년 2월 국무총리실로 이전되었다. 이 때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5~1987)」이 수립되었고, 3단계의 막바지인 1987년 11월 28일에 청소년정책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1988년 7월 1일에 동 법률이 시행되었다.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단계는 요보호 중심과 청소년일탈 및 비행예방, 규제와 보호 등 청소년의 긍정적 개발보다는 청소년을 비행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피해의 주요 대상이 되는 존재로 간주하여 이들을 선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관점이 우세하였다.

4단계는 1988년 6월부터 2005년 4월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청소년육성법」의 시행과 함께 출발하였다. 「청소년육성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비로소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수립과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청소년육성법」의 시행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그쳐 실질적인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한계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 청소년관련 전담조직이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와 전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 이는 곧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되었으며, 구 「청소년현장」이 제정(1990. 5. 12.)되었다.

1990년 12월 체육부에서 다시 체육청소년부로 부처명이 바뀌면서 청소년업무의 영역이 확장되고 청소년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1991. 6. 27.)되었고,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1993. 6.)되었으며,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는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1991. 12.)되었다. 이후 1993년 문화체육부로 통합되면서 청소년정책조정실은 청소년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8년 10월 25일 새로운 「청소년현장」이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정책 전담기구 조정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8년 2월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을 전담하는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를 전담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분리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청소년에 관한 주요 관계법령의 제정과 시행이 이어졌고,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 중장기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개발(참여와 권리존중)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5단계는 2005년 4월 청소년정책 조직의 통합과 단일 청소년전담조직이 출범한 이후부터 2008년 2월까지의 시기이다. 그동안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의 곤란과 함께, 새로운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를 갖게 되었고, 나아가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역할에도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기능(육성 및 보호)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소속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고,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시기에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청소년복지기반이 조성되었고, 청소년참여와 인권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청소년정책 전담부처의 통합 일원화 등 행정체계가 정비되었다.

6단계는 200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이 추진되면서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된 이후 2010년 2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하지만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추진은 상당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다시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7단계는 2010년 1월 18일 가족 해체 및 다문화가족 등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2010. 3. 19.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는 시기다. 이 기간에 여성정책의 조정과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이 일층 강화되었다. 그러면서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정책과 연계하는 발전 전략을 지향하게 되었다. 2014년 5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5년 5월 동 법률이 시행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포괄하여 모든 청소년으로 청소년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는 해병대 캠프 사고, 세월호 참사 등의 안전사고들로 인해 청소년정책 및 사업에 있어 청소년의 안전이 무엇보다 강조되었다. 한편,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와 청소년의 주도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적극적 정책을 기조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강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제2장 |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1 총괄

우리나라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 1993년부터 5년마다 법정부적 차원의 중장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2017년까지 추진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 5대 영역(‘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15대 중점과제와 7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그동안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구축을 통한 청소년활동 기반 강화, 청소년 체험활동 다양화로 건강한 성장지원, 청소년 정책참여의 기회 확대,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보호·치료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가족구조의 다양화와 가족 기능의 위축, 뉴미디어와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매체환경의 급변과 이로 인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위험 증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청년 노동시장의 위축 및 고용 불안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청소년정책을 새롭게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관심의 부족, 공급자 중심의 수요 예측과 계획에 의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개, 위기 청소년의 예방·보호·자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지원의 부족, 지역 중심의 성과 지향적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미흡 등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학계, 시설, 단체, 청소년,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에서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12대 중점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본 장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1-2-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비전, 목표 및 중점과제



〈4대 정책목표, 12개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

자료 : 여성가족부(2018).

2 추진방향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은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현재 삶을 영위하는 존재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도전·적응하며 협력하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격차와 빈곤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 아래 성인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지역과 현장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청소년시설의 체질을 성과 지향적 조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청소년활동, 청소년보호 및 복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등의 주요 영역별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첫 번째 정책목표인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및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시·도 및 시·군·구가 청소년 참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컨설팅, 운영모델 제공,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며,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급하고,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동아리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참여 및 자기개발 관점의 자기주도형 자원봉사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위원 구성 방법을 다원화하여 청소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실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참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의견 제안 등 학교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며,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청소년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에 청소년(19~24세) 위원의 위촉을 권고하며, 청소년특별회의가 제안하는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는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며, 청소년참여 프로젝트 공모·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로 청소년 인권 및 권리의식 제고,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및 청소년 신체건강권 보호 등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청소년 인권 및 권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인권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청소년 인권 및 참여 증진법(가칭)의 제정을 논의하는 등 청소년 권리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및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권리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권리교육을 활성화하며, 청소년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수칙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여 운동선수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상담채널을 통한 근로권익 상담, 근로감독관·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근로권익 침해 구제 지원 및 부당해고 구제 등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처우 구제를 지원하며, 최저임금 미준수 등 청소년 근로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근로 동의 발급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권익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청소년

근로권익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을 위해 가정에서의 놀이문화 확산, 학교에서의 놀이·여가 시간 확보 권장, 지역사회, 가정, 학교와 연계한 아동·청소년 놀이·여가 필요성 홍보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시간 확보 및 문화 확산을 도모하며, 다양한 문화·놀이·여가 프로그램 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연계·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관심군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며, 정서·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내실화하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상담복지체계를 활용한 자살예방 및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신체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체제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건강증진학교 운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련시설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식생활 안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토론능력과 정치참여 의식 증진을 위한 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의 운영을 확대하며, 디지털 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세대 간 상호이해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보급 및 다문화중점학교 확대,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 및 일반 청소년과의 교류 촉진,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로 양성평등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진단기준 개정 및 활용, 청소년 연령대별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청소년 활동과 연계한 양성평등 프로그램 확산, 이성애에 대한 상호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평등 캠페인 실시 등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교육 전문교사 양성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등 양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청소년 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활동과 연계한 인성함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인성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보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언어순화 저해 매체환경 대응 강화 등 청소년의 언어문화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된 주요 과제는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이다.

첫째,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가 제시되어 있다.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역량지표 개발을 통해 역량중심 청소년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민주시민, 사회정서활동, STEAM·메이커 활동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창의적·융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활동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하며, 역량기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등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며, 청소년체험활동의 지역사회 연계모형을 개발하고 자기도전성취포상제 운영 시 학교 기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연계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청소년이 기획하고 과제를 개발하는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활동을 연계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를 확산하며, 프로젝트 기반 청소년활동 및 아이디어 창출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확대하고 운영과목을 다양화하며, 청소년이 직접 선택해서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는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학습 시스템을 마련하고,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성과를 집적하고 공유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계와 과학교육 간 연결고리를 통한 과학·기술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적 기술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며, 창의역량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 혁신 및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하여 종합시설로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둘째,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어울림마당 활성화 등을 통한 청소년 문화활동의 장려, 문화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 등에서의 청소년 우대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운동 흥미를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과 청소년에 적합한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강사 및 인프라를 확대하며,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 장려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며, 청소년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함과 더불어 2023년에 개최 예정인 세계 잼버리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통일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의 신고·인증 활성화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교육과정에 안전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종사자 안전교육을 확대하며, 수련활동과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활동 현장 배치 확대, 위험도 높은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의 내실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등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초·중·고 자유학기제를 연계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동아리 등 자율적 진로활동을 활성화하며, 진로관련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확산할 예정이다. 진로탐색-개발-취업을 연계한 대학생 진로활동을 위해 지역산업계·대학·고용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직업체험장을 구축하며, 찾아가는 진로 교육이나 원격진로 특강·상담·멘토링 등을 통하여 진로체험 기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작업장과 내일이룸학교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취·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동기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 강화를 통해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워크넷과 연계한 정보 제공, 청소년(청년) 특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청소년(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이상을 청소년(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 내실화 등을 통해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활동 내실화, 대학창업펀드 조성 등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청년 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 확산 등을 통하여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내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협동조합 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시설 내 청소년협동조합활동을 장려하며, 청소년시설 내 카페 등을 청년 사회적 경제활동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 청소년의 자립과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안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위기 유형별 청소년에 대한 상담, 회복, 자립지원까지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체계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CYS-Net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서비스 제공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를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위기 유형에 따른 필수연계 기관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기 청소년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환경 구축, 위기청소년 평가 및 진단도구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굴·진단·분석평가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청소년전화 1388, 문자, 사이버상담, 성매매피해상담 등의 24시간 연계 가동 및 찾아가는 거리상담 등을 통해 조기 개입을 확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하여 학교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청소년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상담서비스 질 제고,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 상담 지원 강화, 청소년 동반자를 통한 정서·심리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주거 우선의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한 청소년(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비진학 또는 미취업 후기 청소년(19~24세)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원을 내실화하고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및 운영 확대 등을 통하여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및 예방교육을 체계화하고, CCTV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아동·청소년 실종예방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 취약·위기 가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확대하며, 가족 사랑의

날, 가족친화인증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및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가해·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을 확대하며, 부모를 위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을 시도하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하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존감 회복 및 관계형성 증진을 위한 전문 적응지원 상담프로그램 제공,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학습 및 학력인정 지원, 건강증진 지원, 직업체험 및 전문화된 직업훈련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청소년쉼터를 입소기간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며, 청소년쉼터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청소년쉼터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쉼터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취약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한 주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직업훈련 등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의 회전문을 차단하고자 한다.

비행 청소년의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적 선도 활동을 활성화하고, 검찰 기소유예자 및 조건부 기소유예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 및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비행 청소년의 조기 선도를 강화하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다문화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등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및 사회적응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미혼모 시설의 양육환경을 개선하며, 양육비 이행 신청 및 확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를 추진하며, 공동생활 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취업지원, 청소년 한부모 대상 특화형 내일이룸학교 훈련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환경이 구비된 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학생 미혼모 전담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교육비 및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취업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 취업 청소년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을 위해 초등돌봄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며,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서 우선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학원밀집지역 내 유해업소 점검·단속 강화 등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술·담배 판매 업소의 청소년 대상 불법판매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의 유해약물에 대한 노출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유해약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재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종 유해·불법 정보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웹툰, 인터넷신문 광고 등의 청소년 유해성 상시 모니터링, 음란정보 및 사이버도박 등 불법·음란정보 차단 및 유통사업자 처벌, 청소년 매체환경보호센터를 내실화하고자 한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및 게임시간 선택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건강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체계적 발굴 및 기숙치유프로그램과 가족치유캠프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고위험군의 적기 전문적 치유 서비스 제공 및 진단·발굴·치유지원·사후관리 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치유기관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효과적인 상담·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라.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강화를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업무를 가족정책과 연계하여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증거기반 정책분석을 위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상담 분야 빅데이터, 인공지능 도입 등 디지털화 작업을 기획·설계하는 청소년사업디지털화 기획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청소년관련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도 단위의 청소년 관련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활동과 상담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편을 유도하여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며,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청소년 육성기금의 수입 재원 다각화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정책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지정을 늘리고,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지역사회 공공시설을 연계한 찾아가는 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공공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터전을 확충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 인구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점차 늘어나고 전문화되어 가는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청소년정책 전담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고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청소년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의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으로써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학습 문화를 조성하며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다양화, 지역 내 협력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역량 확보에 부응하도록 청소년분야 국가자격검정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실습을 연수과정에 추가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기준표를 마련하는 등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향후 지자체 청소년정책 성과평가 도입 시 임금기준표 적용 여부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제회 설립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 3 장 |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1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청소년 연령 현황

유엔(United Nation)은 국제협약 및 청소년관련 정책과 사업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청소년(youth)’은 15~24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등 UN 국제기구들은 ‘청소년(youth)’ 통계를 산출할 때 15~2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동(child)’을 12세 미만으로, ‘청소년(youth)’을 12~24세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UN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CRC)」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역시 18세 미만으로 아동을 규정하고 있다.

〈표 1-3-1〉 UN 및 UN기구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기관	대상	연령구분
UN 청소년 세계 실천 프로그램 (UN's World Program of Action for Youth)	청소년(youth)	15~24세
국제노동기구 (ILO), 세계보건기구 (WHO)	청소년(youth)	15~24세
	청소년(adolescent)	10~19세
	청소년(young person)	10~24세
세계은행 (World Bank)	아동(child)	12세 미만
	청소년(youth)	12~24세
UN아동권리협약 (UNCRC)	아동(child)	18세 미만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청소년정책리포트 제2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미국은 「연방 청소년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 2008(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2008)」에 따라,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의 법령별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가출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은 21세 이하로, 「인력투자법(The Workforce Investment Act)」에서 청소년은 14세 이상 21세 이하이다. 아동은 대체로 18세 미만인데,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의 아동은 13세 미만이다.

〈표 1-3-2〉 미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연방 청소년 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 2008(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2008)	청소년(Youth)	24세 이하
가출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청소년(Youth)	21세 이하
인력투자법(The Workforce Investment Act)	청소년(Youth)	14세 이상 21세 이하
아동시민법(Child Citizenship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표준소년법(Uniform Juvenile Court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아동(Child)	13세 미만
공정노동표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자료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청소년정책리포트 제2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김정숙, 김기현, 황세영(2015).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5-R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영국은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 Act)」에 근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서는 아동을 13세 미만의 연령으로, ‘청소년(young person)’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1-3-3〉 영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아동 및 청소년(Child and Young person)	18세 미만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아동(Child)	13세 미만
	청소년(Young person)	18세 미만

자료 : 1) 김기현(2012). 청소년관련법령 연령기준 개정방향(안). 여성가족부.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청소년정책리포트 제2호에서 재인용.

독일 연방정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Ministry of Family, Senior, Female, and Youth)’와 독일 ‘연방청소년협의회(German Federal Youth Council)’가 규정한 청소년의 연령은 12~26세이다. 기본적인 규정은 「아동·청소년 서비스관련 사회법」, 흔히 「8번째 사회법(Achtes Sozialgesetzbuch VIII: SGB)」이라 불리는 법률에 근거한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관련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Jugendschutzgesetz)」은 14세 미만 연령을 ‘아동(kind)’으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령을 ‘청소년(Jugendliche)’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gesetz)」에서 ‘청소년(Heranwachsender)’ 연령은 18세 이상 21세 미만이며 「연소근로자보호법(Judendarbeitsschutzgesetz)」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이 청소년(Jugendliche)이다. 「아동·청소년강화법(kinder-und Jugendstärkungsgesetz)」에서 아동은 14세 미만이고, 청소년(Heranwachsender)은 18세 이상 21세 미만이다. 참고로 ‘청년(Junge Volljährige)’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다. 독일에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이고, 자녀수당은 17세까지 지급되며, 18세부터 26세까지 자녀수당은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표 1-3-4〉 독일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청소년 보호법 (Jugendschutzgesetz)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gesetz)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Heranwachsender)	18세 이상 21세 미만
연소근로자보호법 (Judendarbeitsschutzgesetz)	아동(Kind)	15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강화법 (kinder-und Jugendstärkungsgesetz)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청년(Junge Volljährige)	18세 이상 27세 미만

자료 : 1) 김기현(2012). 청소년관련법령 연령기준 개정방향(안). 여성가족부.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청소년정책리포트 제2호에서 재인용.

3) 장주리(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개편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여름 창간호.

일본은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未成年者)’, ‘소년(少年)’, ‘아동(児童)’, ‘연소자(年少者)’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근거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정하고 있다. 「민법(民法)」의 미성년자와 「소년법(少年法)」상 소년, 「미성년자음주금지법(未成年者飲酒禁止法)」 및 「미성년자흡연금지법(未成年者喫煙禁止法)」상의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刑法)」상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는 만 14세 미만이며,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등의 법률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일본 내각부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을 제정하고, 기존 ‘청소년(靑少年)’이라는 명칭 대신 ‘청년(若子)’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정책 대상을 30세 미만까지 대폭 확대시켰다. 이 법령이 제정되면서 일본정부는 영유아기, 학령기 및 사춘기 아동·청소년, 청년기(약 18~30세 미만)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였으며 나아가 포스트 청년기(청년기를 지났지만 원활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세 미만의 청년)에 놓인 연령대도 포함하는 종합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표 1-3-5〉 일본 청소년, 청년 연령 기준 및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민법(民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형법(刑法)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	만 14세 미만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	학령아동(学齡児童)	6세 이상 12세 이하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연소자(年少者)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소년(少年)	소학교 취학시기에서 만18세에 이르지 않은 자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아동(児童)	18세 미만
아동매춘·아동 포르노 관련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아동(児童)	18세 미만
모자 및 과부 복지법(母子及び寡婦福祉法)	아동(児童)	13세 미만
소년법(少年法)	소년(少年)	20세 미만

법률	호칭	연령구분
청소년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청소년(青少年)	18세 미만
미성년자음주금지법(未成年者飲酒禁止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미성년자흡연금지법(未成年者喫煙禁止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아동과 청년(若者)	규정 없음 (지원시책은 30세 미만도 포함)

자료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청소년정책리포트 제2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김정숙, 김기현, 황세영(2015).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UN 청소년정책 현황

UN은 1942년 1월 26개국 대표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기본선언문을 발표한 후, 1945년에 창설되었다. UN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국가 간 우호관계 발전', '경제·사회문화·인도적 문제 해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도모'를 목표로 삼는다. 글로벌 담론을 주도하며 UN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분담금과 기여금을 재원으로 삼는다. UN회원국은 1945년 창설 당시 51개국으로 구성되었다가 2018년 현재 총 193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UN의 청소년정책은 국제평화를 위한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함께 청소년의 권리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정책의 방향은 1964년 '세계 청소년회의'와 1965년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 간 상호 존중과 이해 증진에 관한 선언」, 그리고 1985년 '세계 청소년의 해' 제정과 1995년 '세계청소년의 해' 10주년 기념을 맞아 발표한 「2000년과 그 이후의 세계청소년행동계획」, 1998년 「리스본 선언」, 그리고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와 2015년 '지속가능 발전목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64년 유엔 전문기구인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가 프랑스 그레노블(Grenoble)에서 개최한 '세계 청소년회의'는

학교교육의 보완책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교육의 필요성과 기능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제기하였다.

- ▶ 국제청소년위원회의 설립
- ▶ 청소년지도자와 전문가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전문가의 자질향상과 이를 통한 정보문헌 조사 연구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센터의 설치
- ▶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이러한 요소들의 통합 조정과 관련된 연구와 조사활동의 활성화
- ▶ 이 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지역회의 형태나 혹은 이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심층 연구하는 연구모임 형태의 협의기구 설립
- ▶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국 청소년지도자의 지역모임 혹은 국제모임의 소집
- ▶ 청소년문제를 검토하고 학교 밖 청소년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의 요청에 따른 전문가의 파견
- ▶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교육도 포함시킴으로써 개발도상국에 있는 지역들도 자신들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전문가를 지원받도록 하는 것
- ▶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것

자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원(1995), 프랑스 그레노블 세계청소년회의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어 UN은 1965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청소년의 평화이념과 국민 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을 채택하였다. UN은 이 선언문에서 청소년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청소년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모든 재능을 개발하고, 그들이 보다 높은 도덕적 자질을 획득하며 평화·자유·만인의 존엄과 평등의 고상한 이상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의 창조적 업적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고취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은 자신들이 관리하도록 소명 받은 이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의식하여야 하며, 인류행복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고무되어야 한다.”

UN은 1985년을 ‘참여(participation)’, ‘개발(development)’, ‘평화(peace)’를 주제로 하여 ‘세계청소년의 해’로 결의하면서 각 회원국이 청소년정책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당시 UN은 청소년의 연령을 15~24세로 정의하고, 청소년을 ‘어른이 될 세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만이 아닌, 지금 현재 살아 있고 일을 하며 가정과 공동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현 세대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UN은 인구, 교육, 고용, 보건 등에 관한 모든 발간물과 통계에서 이 연령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UN은 각국의 사정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의 연령 정의 역시 존중하고 있다. 청소년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사회적·문화적·심리적 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3~19세의 십대와 20세부터 24세까지의 초기 성인기(early adulthood)를 차별화 하는 경우도 있다.

UN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이념은 이후 1995년 ‘세계청소년의 해’ 10주년을 맞아 채택한 「2000년과 그 이후의 세계청소년행동계획」, 1998년 「브라가 청소년실천계획」과 동년에 개최된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 2000년 9월 ‘밀레니엄 정상회의(summit)’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2014년 ‘청소년정책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서 채택한 「청소년정책에 대한 바쿠 선언」, 그리고 2015년 9월 25일 세계 123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으로 지속되었다.

청소년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계획과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한 실행지침은 「2000년과 그 이후의 세계 청소년행동계획(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에서 구체화되었다. UN, 각 회원국 정부, 정부 간 혹은 비정부간 조직, 특히 다양한 차원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기관에 대해 향후 청소년분야가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적절한 후속조치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채택되었다. 주요 목적은 ‘세계 청소년의 해’의 주제인 ‘참여·개발·평화’와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고, 의사결정 참여자와 일반 대중들에게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청소년의 요구 및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며, 사회·경제발전의 맥락에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청소년과 청소년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평화의 이상과 상호 이해 및 존중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실행지침에서는 청소년을 단순한 인구집단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하위집단 즉, 도시와 비도시 청소년, 어린 여성, 인종차별을 받는 청소년, 어린 노동자, 학생, 어린 이주자와 난민, 장애청소년, 소년범법자, 소아 약물중독자의 집합체로 청소년집단을 조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 분야를 교육, 고용, 기아 및 빈곤, 건강, 환경, 마약, 청소년비행, 여가활동, 여성 및 청소년, 사회생활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참여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청소년의 삶에 대한 개입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8년 8월 세계 150개국 청소년들과 청소년단체의 대표 등이 참석하여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열린 제3회 ‘UN 세계 청소년포럼’에서 채택된 「브라가 청소년실천계획(Braga Youth Action Plan)」은 ▲청소년정책(청소년정책 분야 간 통합, 국가 내 청소년 업무관련 NGO 간 협력, 빈곤추방 및 청소년 개발), ▲청소년참여(모든 청소년들의 참여, 청소년 조직과 UN기구, 21세기를 대비한 교육, 사회개발을 위한 청소년 고용, 건강과 청소년 개발), ▲청소년인권(인권증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청소년 권리 헌장과 청소년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동년 8월 158개국 청소년업무 담당 장관,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리스본에서 열린 제1회 ‘청소년업무 담당 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은 국가 수준의 ‘청소년정책’, ‘청소년참여’, ‘청소년개발’, ‘청소년과 평화’, ‘청소년교육’, ‘청소년 고용’, ‘청소년 건강’, ‘마약과 약물남용’ 등을 포함하면서 각 의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

한편,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세계 빈곤퇴치 및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2000년 9월에 참여한 191개 UN회원 국가는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산모건강의 증진 ▲환경지속성 보장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MDGs는 201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새로운 발전목표로 이어지게 된다.

2014년 10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청소년정책을 위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for Youth Policies)’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바쿠 선언(Baku Commitment to Youth Policies)」을 채택하고 청소년 권리증진에 청소년정책이 기반을 두어야하며, 모든 청소년들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에 입각한 정책이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증거에 기반을 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2015년 9월 25일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지난 2000년에 채택되어 이행해 온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 시한이 2015년으로 종료되면서, 이를 대신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새로운 발전목표이다.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역사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주요 그룹으로 간주되어 왔고,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며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조해 왔다. SDGs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계승되었다. SDGs의 우선순위 과제에는 ‘청소년의 권한 강화’, ‘참여’, ‘역량강화’, ‘교육’, ‘고용’, ‘기업가정신’, ‘성평등’, ‘건강권’, ‘기후변화’,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 ‘빈곤’, ‘이행 기제’ 등이 폭넓게 제시되었다. SDGs의 17개 목표를 살펴보면, ▲빈곤 퇴치 ▲기아 해소와 식량 안보 ▲보건 증진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과 일자리 ▲인프라와 산업화 ▲불평등 해소 ▲도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자원 ▲육상 생태계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한다.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증진시킨다.
5. 성 평등을 달성하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6. 모든 사람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7.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확립한다.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완전한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9.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진흥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양식을 확립한다.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을 시행한다.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며,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확대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17.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8호.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내용을 재구성.

UN은 산하에 다양한 전문기구 및 보조기구를 두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과 관련하여 각 기구별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유엔사무국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봉사단(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등이 있다. 유엔 각 기구별 청소년관련 사업들은 ‘유엔 사무총장 청소년 특사 사무국(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s envoy on youth)’에서 협력 지원을 받고 있다. 2018년 현재 청소년 특사 사무국은 ‘지속가능발전’, ‘인권’, ‘평화와 안보’, ‘인도주의적 활동과 지원’이란 네 가지 핵심영역(pillars)을 중심으로 UN 차원의 청소년참여와 권리옹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주요 국가 청소년정책 현황

가. 유럽연합(EU)

유럽 내 국가 연합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의 정치·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 따라 출범하였다. 유럽연합의 정부형태는 국가연합이며,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 각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회원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EU)’, 각종 정책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 4개 기관이 유럽연합의 핵심기구를 형성한다. 이외에도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COR)’,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유럽옴부즈맨(European Ombudsman)’,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등의 기관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각료이사회’는 정책분야별로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관계 장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외교, 일반(general affairs), 경제·재무, 사법·내무, 고용·사회정책·보건·소비, 경쟁력(competitiveness), 교통·통신·에너지, 농업·수산, 환경, 교육·청(소)년·문화·체육이사회 등 10개의 각료이사회로 구성된다.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회원국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청(소)년관련 정책은 청(소)년을 비롯해 교육과 문화 등 유관 분야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경우 youth를 15~29세의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어 여기서는 청(소)년이라고 표기하였다.

과거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2007~2013)’과 ‘청(소)년 전략(Youth Strategy: 2010~2018)’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에서 유럽 내 청(소)년을 위해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유럽 시민의식과 젊은 유럽인들 간의 연대감·관용의식을 고취하고, 유럽연합의 미래 형성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삼았다. 또한 청(소)년의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젊은 세대의 유럽연합 회원국 간 이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은 ▲유럽의 청(소)년(Youth for Europe) ▲유럽봉사활동서비스(European Voluntary System: EVS) ▲세계의 청(소)년(Youth in the World) ▲청(소)년지원 시스템(Youth support system) ▲청(소)년분야에서 유럽협력을 위한 지원(support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youth) 등 5개의 행동주제로 구성되었다.

한편, 유럽연합의 ‘청(소)년전략(2010~2018)’은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많은 평등한 기회제공과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시민이 되고 참여하도록 장려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유럽 내 청년실업률이 점증하고 있어 청년세대의 고용 및 취업·창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시민성 함양은 유럽공동체의 유지와 관련된 주제이기도 하다. 유럽연합 ‘청(소)년전략(2010~2018)’에 도달하기 위한 8개 분야의 정책영역과 세부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6〉 유럽연합 Youth Strategy(2010~2018)의 8개 분야

분야	세부 정책
교육과 훈련 - 젊은이들에게 모든 수준에서 양질의 교육과 훈련, 평생학습 기회의 지원	- 조기 학교이탈 감소 - 청(소)년 일자리와 비형식교육 기회 지원 - 모든 젊은이의 학습을 위한 이동(learning mobility) 장려 - 젊은이의 혁신, 창의성,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위한 지원에서 학습 촉진
고용 및 기업가 정신 - 피고용인 또는 사업가로서 청(소)년 노동시장 통합 지원	- 고용에 요구되는 기술 제공 -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의 효과 고려 - 진로지도와 상담의 제공 - 청(소)년의 자유로운 이동, 이동성 - 기업가정신 교육 - 견습 제도와 인턴제도의 질 제고
건강과 웰빙 - 청(소)년 건강과 웰빙 촉진	- 건강과 신체활동 -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웰빙 - 건강한 성 - 건강교육과 인식제고 - 건강과 뉴미디어(이력과 위험)
참여 -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서 청(소)년의 참여 촉진	- 대의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 촉진 - 시민참여와 뉴미디어 - 청(소)년과 정책입안자들 간의 정치적 대화 지원
자원봉사활동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인정 및 지원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습득한 기술의 인정(승인) - 자원봉사활동가들의 이동성 촉진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세대간 연대 촉진

분야	세부 정책
사회통합 - 청(소)년 빈곤과 사회적 배제 타파	- 청(소)년 일자리와 청년센터 촉진 - 빈곤을 다루기 위한 범부문별 접근 수용 - 개방성과 문화상호주의적 이해 제고 - 청(소)년 가족(young family) 지원
청(소)년과 세계 -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정치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	- 청(소)년 사이에서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 - 국제회의에 청(소)년 대표 참여 - 교류, 세미나, 훈련과정을 통한 문화 상호주의적 이해 제고
창의성과 문화 - 창의적 역량과 기회, 그리고 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 기회 지원	- 문화 활동을 통한 창의성 촉진 -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 뉴미디어 이용을 통한 창의성 제고

자료 : Ecorys(2011). Assessing practices for using indicators in fields related to youth. <http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30da1f09-8800-4091-a844-f79b680ae8e6>에서 2018년 9월 25일 인출.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유럽연합 정책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교육·문화부서(Directorate-General Education and Culture: EAC)’에서 담당한다. ‘EAC’는 ▲교육과 훈련 ▲문화와 미디어 ▲청(소)년 ▲스포츠 등 4가지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교육과 훈련, 청소년, 스포츠분야의 유럽연합 예산지원 프로그램
- ▶ 젊은 기업가들을 위한 에라스무스(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프로그램
- ▶ SALTO-YOUTH: 유럽 청소년을 지원하고 배움과 훈련을 향상시키는(Support, Advanced Learning and Training) 프로그램으로 에라스무스 플러스와 연계하여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을 위한 무형식 학습자원을 제공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프로그램(online tools for youth work and training)
- ▶ 청소년 포털(Youth portal): 청소년 대상 유럽 내 사회적 포용, 봉사, 여행, 보건, 학습, 노동에 관한 포털 서비스 정보 지원
- ▶ 유럽봉사활동서비스
- ▶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 일자리 구하기(Looking for work in another EU country)
- ▶ 지역·국가·유럽차원에서의 선거에서 투표하기(Voting in local, national and European election)

자료 : https://ec.europa.eu/info/topics/youth_en에서 2018년 9월 25일 인출.

오늘날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사회적 포용, 청소년의 고용과 기업가정신, 청소년의 보건과 웰빙, 시민사회에서의 참여, 봉사활동,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이란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각 회원국별 다양한 문화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종차별’과 ‘빈곤문제’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난민 등의 새로운 이주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의 유럽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유례없는 실업과 사회적 배제 및 빈곤의 위기를 안겨준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 영국의 탈퇴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의제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유럽 시민들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조직적 대응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EUROPE 2020’을 설정하고, 청소년의 조기 학교중도탈락 방지와 고등교육 이수 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정책을 따로 분리해 진행할 수 없으며 필수적으로 고용, 교육, 훈련, 건강, 문화, 디지털미디어,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권, 스포츠와 같은 정책들과 협력하고 상호·보완하여야 함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난민, 니트(NEET)족, 장기실업자 등 어려움에 처한 많은 청(소)년들이 유럽사회의 완벽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전망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향후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유럽사회가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 영국

영국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면서 재정 악화와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후 영국의 국가 채무는 2010년 78.5%까지 치솟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경제 성장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후 2010년에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정부는 긴축 정책을 펼치며 정부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전체 지출예산의 15~17%를 차지하는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총액한도를 1,000억 파운드로 설정하고, 경찰, 보건, 의료 등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행정관리 비용은 축소하는 개혁에 나섰다. ‘Big society’라고 불리는 당시 영국 정부의 정책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사회를 부각시키고,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를 국가에서 민간과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영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 기조 하에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적은 재원으로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위하여 재구조화되었다. 그 특징으로, 첫째,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지속가능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술과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며, 둘째,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배경이나 생활환경에 관계없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기회를 얻도록 하고 셋째,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와 그들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청소년참여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철저하게 성과 지향적으로 개편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한편, 참가청소년이 성취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비스 과정은 물론 성취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2011년 12월 19일 영국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사회: 13~19세의 청소년을 위한 범정부정책의 새로운 접근(Positive for Youth: A new approach to cross-government policy for young people aged 13 to 19)」(동명의 정책보고서는 2012년 2월 출판)이란 청소년정책을 선언하고, 청소년을 정책 의사결정의 중심에 놓는 가치실현을 다짐하였다. 이어 2013년 7월 청소년정책은 이전의 교육부 중심에서,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이끌기 위해 수상 직속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로 이관되었다. 국무조정실로의 이관은 정부부처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시민사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청소년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의 성공에 필요한 지지적 관계 구축 등의 청소년의제(youth agenda)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영국 정부가 청소년정책 입안과정에서 청소년과 청년그룹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정책 이관 이후 국무조정실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로 국가 시민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장과 청소년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캠페인 지원, 청년참여 증진, 지역 청소년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영국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Youth in Action'은 국가수준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유럽연합'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으로 '영국문화원'이 참가자 선발과 파견, 평가의 역할을 한다. 당초 '유럽연합'은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유럽사회의 통합과 유럽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Youth in Action'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시민성을 함양하여 이를 통해 고용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 둘째, 취약계층 청소년이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해외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청소년대상 복지지원의 역할을 한다. 셋째, 참여청소년은 물론이고 청소년이 방문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에도 문화감수성을 높여 성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주요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사회(Positive for Youth: PfY)', '국가시민성 함양 프로그램(National Citizen Service)', '국제개발과 청소년(Putting young people at the heart of development)', '사회참여촉진 캠페인(i will campaign)'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PfY는 13~19세의 청소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청소년과 각종 협의회, 자선단체와 기업 등 사회의 모든 부문들이 PfY의 비전을 개발·지원하는데

참여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서비스 영역에서 지방정부, 청소년기관, 지역사회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한다. PfY는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예산 지원: 청소년들에 의한 국가정책 감시조직 설립 등 ▶헬프 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부모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지방정부 법령에 근거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서비스 운영 ▶청년 취업지원(교육훈련, 인턴제도, 고용주 교육 등) ▶청소년 봉사활동 장려 ▶청소년문제 조기개입 촉진을 통해 취약 계층 지원 ▶보건서비스제도 개혁 ▶청소년 노숙자 예방 및 개입 ▶청소년 폭력 예방 ▶청소년 실천그룹(Youth Action Group)을 통해 9개 부처 간 협력 등이 그것이다.

‘국가시민성 함양 프로그램(NCS)’은 15~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책임 하에 추진되는 국가 차원의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봄, 여름, 가을에 운영되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리더십, 팀워크,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기술을 습득하며 자기개발 및 사회성 개발을 장려한다. NCS는 3~4주 동안 네 단계(adventure - discovery - social Action - celebration)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은 웹사이트인 NCS Opportunity Hub를 통해 교육, 워크숍, 자원봉사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개인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 청소년들은 NCS 청소년위원회에 가입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인턴십은 물론 학위취득까지 제공하는 ‘Get my First job’ 프로젝트 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제개발과 청소년’은 영국 정부부처 중 하나인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에서 2016년에 발표한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을 국제개발의 중심에 세우자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목에서부터 밝히고 있다. 국제개발부에서 시행 중인 영국의 해외원조 전략(British Aids Strategy)은 일찍이 ‘세계평화 거버넌스의 강화’, ‘위기대응력 강화’, ‘개발도상국의 변영’, ‘취약계층 지원’ 등의 4가지 목표를 설정해 왔다. 하지만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각국의 분쟁과 난민 문제,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실업문제, 빈곤과 문맹을 겪고 있는 세계 청소년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영국정부는 세계 청소년 문제해결이야말로 영국 원조전략의 목표와 직결되고 이러한 문제해결의 중심에 청소년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원조전략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국제개발부는 국제개발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면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참여를 보장·지원하고 있다. 실행 전략으로는 첫째, 청소년팀을 조직해 연구를 위탁하여 정책개발에 반영하고, 둘째, UN과의 파트너십으로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셋째, 청소년들을 지역, 국가, 국제수준에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참여촉진 캠페인’은 ‘step up to serve’로도 불렸는데, 10~20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I will campaign’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청소년들의 사회행동이 그들의 성격과 기술(skill)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을 입증하고 전달할 것 ▶학교 정규교육과 기타 청소년활동(유소년 클럽, 스포츠클럽, 청소년단체, 예술 및 문화활동)을 통해 10~20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에게 사회행동을 전파할 것 ▶영국 전역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우수한 청소년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캠페인을 대표하는 50명의 청소년 대사를 선출하여 온라인을 통해 다른 청소년들을 멘토링하거나 지역 청소년행사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00개 이상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 교육, 건강 등의 영역에서 청소년들에게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조직으로는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Agency)’와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영국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 등이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영국의 청소년활동을 조직·지원하고 정부와 민간단체를 연결하는 역할과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 자격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비록 민간단체이지만 정부 정책과 사업을 전달·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단위 청소년사업의 파트너로서 ‘NCS’, ‘I will campaign’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단체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영국문화원’은 1934년에 설립되었고, 1940년에는 ‘영국왕실인가(Royal Charter)’를 제정하여 현재 영국을 포함하여 110개의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영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유럽연합의 ‘Youth In Action Programme’의 영국지부로서의 역할을 겸하기도 하는 등 민간차원의 청소년교육과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처음 설립될 당시만 해도 영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세계적인 협력 구축을 위한 역할 수행이 목적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1980년대 이후에는 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교육, 흔히 ‘무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차원의 주요한 청소년기구라 할 수 있다.

‘영국청소년위원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외교부에 의해 설립되어졌다가 1963년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오늘날까지 영국 청소년의 대표적인 자치조직이자 청소년지원 단체가 되었다. 2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자신의 삶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삶 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방,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민주적 사회건설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활동가, 핵심 의사결정자 및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 독일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청소년지원(Jugendhilfe)’이다. 이 개념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참여를 권고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성인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지원’의 내용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내외에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사회화,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여러 대책들과 노력들, 그에 따르는 협력기관 및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지원이라는 큰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독일은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청소년지원의 법적 토대는 1922년 제정된 제국청소년복지법(Das Reichsjugendwohlfahrtsgesetz: RJWG)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과 신체, 그리고 직업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들의 교육권과 책임의 관계, 민간 청소년지원과 공적지원 간의 관계 확정, 그리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 청소년청(Jugendamt)을 설치하여 청소년복지를 위한 공공 담당기관을 확대·배치하는 등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수급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이들 취약계층의 물질적 박탈 및 빈곤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법은 1961년 청소년복지법(Das Jugendwohlfahrtsgesetz: JWG)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복지법은 수급대상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보완하기 위한 법령이 1991년 1월 1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지원법(Da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이다. 청소년복지법에서 수급대상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반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 수급대상을 수행 주체로 바라봄으로써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단순한 빈곤 구제 이상의 폭넓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청소년은 교육과 발달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청소년청에 묻고 자문받을 권리가 있으며, 긴급 상황이나 갈등상황에서 이들에게 신뢰 있는 자문을 줄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발달 상태에 따라 청소년청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개정될 당시, 청소년이 사회에 편입될 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 발달의 주체가 된다는 청소년지원이라는 개념이 반영된 것이다. 이후 독일사회는 통일이란 급변을 맞이하였고 그에 따른 시대적인 요구 또한 변하였다. 그에 발맞춰 동법은 여러 사회적 논의를 통해 2017년 다시 「아동·청소년강화법」으로 개정되었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이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원이란 개념과 사회적 지원 방안들을 발전시켰다면, 아동·청소년강화법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한 공적 조정기구와 포괄적인 공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min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FSF)는 아동보호, 장애 아동·청소년 보호, 청소년 참여, 요보호아동 등과 관련한 개혁안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또 다른 법적 근거는 2002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Jugendschutzgesetz)」으로 최근 독일의 「청소년 보호법」이 추구하는 새로운 지향점으로써 청소년의 권리침해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의 추진, 조기개입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 관계망을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추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법적 보장을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추진, 지원과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 추진 등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지원구조와 관련해 우선 연방공화국인 독일의 국가 최고 행정기구로서 연방정부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해 다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독일 연방정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각 주(州)정부의 청소년지원정책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독일연방정부는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연방청소년 자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지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을 받는다. 셋째, 각 주 정부는 임기 동안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한다. 독일의 청소년지원조직의 기본 골격은 「아동·청소년강화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상세한 사항들은 각 주의 관련 법규에서 보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적 근거들은 주 자치단체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적 근거에서는 청소년정책 업무에서 실질적인 실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청(Jugendamt)’과 ‘청소년 지원특별위원회(Jugendhilfeausschuss)’의 과제와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은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 전국에 청소년청이 구성되도록 정하여 자치단체 행정관청의 다른 영역들과 구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보고서’는 매년 새 정부가 임기 중에 청소년들의 현황과 청소년지원의 노력과 시행들에 관하여 연방의회와 상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따로 ‘청소년

보고위원회(Jugendberichtskommission)’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고 실질적인 부서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하위부서인 ‘청소년실(국)’이며, 지역차원에서는 ‘청소년청(Jugendamt)’이다. 즉, 연방정부에서는 ‘청소년실’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지역차원에서는 실무기관인 ‘청소년청’이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 아동·청소년 정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은 물론 가족 및 노인정책을 관할하는 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독일은 아동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을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과 연관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주요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는 크게 ‘세계아동권리’, ‘아동·청소년보호’, ‘통합(integration)’, ‘관용과 민주주의’, ‘참여’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 정책영역은 다시 ‘청소년복지’, ‘범죄·극우주의·외국인 적대행위 예방’, ‘아동·청소년보호와 폭력보호’, ‘사회통합’, ‘연방아동·청소년계획’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활동’, ‘사교(邪交) 집단과 사이코집단 관리’, ‘아동·청소년지원’, ‘아동보육관리’, ‘중앙과 지방연계 전국 청소년정책 공동사업’,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청소년지원’, 유럽청소년정책들과 같은 관련 청소년정책들로 나뉘어 있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세부적인 사업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보육센터의 질적 향상 및 양적 확장 지원
- ▶ 2013년 8월 1일 이후 1세부터 유아교육에 대한 법적 권리 수립
- ▶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아동보호 및 약자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 ▶ 성적 폭력과 착취, 미디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아동포르노 예방)
- ▶ 아동과 청소년의 극단적 경향에 대한 예방과 민주주의 프로젝트 추진
- ▶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
-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구현에 대한 국가적 책무
- ▶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권리 구현
- ▶ 교육, 건강, 노동시장, 청소년 복지 등 모든 정책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는 연방정부청소년위원회 설립
- ▶ 지원 및 가치의 방향,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체제 구축
- ▶ 청소년과 청년 이민자에 대한 노동 조건 불이익의 개선
- ▶ 유럽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국제교류협력 및 개발
- ▶ 독립적인 청소년 전문가를 통한 정기적인 아동·청소년 보고서의 제공 등

자료 : 장주리(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개편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여름 창간호, pp 106-111.

독일에서 청소년지원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복지, 보호 등을 모두 묶는 총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프로젝트는 작게는 사회적·교육적 취약상황에 놓여 있거나 혹은 사회적 배제 경험을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청소년복지관련 프로젝트로 볼 수 있고 크게는 모든 청소년의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조력하고 지원하는 포괄적인 청소년지원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독일의 청소년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아동·청소년강화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 수행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주별 자치권이 인정되므로, 각 주 별로 내용들이 상이하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청소년사업으로는 베를린의 ‘사회공간 집중사업’과 바이에른 주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 드레스덴의 ‘청소년 사회통합사업’ 등이 있다. 베를린의 ‘사회공간 집중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집단들이 마을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주거지 중심으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청의 전문인력이 청소년들을 상담하거나 돌보는 일과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적 워크숍과 강연, 코스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청소년청은 ‘클릭(Klick)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관련 기관에게 워크숍이나 부모강연, 교사 보수교육, 체험 교육적 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약물중독이나 폭력, 인종차별, 유해매체 등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예방차원의 프로젝트이다. 드레스덴은 베를린, 라이프찌히 등과 함께 과거 동독의 핵심 지역임을 감안할 때 동서독 성장세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민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통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다.

라. 미국

미국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제상 교육에 관한 권한이 ‘주정부(State government)’에 귀속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부처는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육 및 서비스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집행은 시나 ‘카운티(County)’ 등과 같은 지방정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정책은 소속 차관보조직인 ‘아동가족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아동가족실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60여 개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간 서비스(human service)’를 제공하며, 특히 그들 스스로를 돕기 위한 주요한 정부기관으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대표적인 부서이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 외의 부처에서도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청소년고용 및 실업대책」, 「미성년자 고용의 안전대책」, ‘청소년을 위한 공정한 고용기회 제공 프로그램’,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노동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등 청소년근로자의 고용 및 학대를 제한·보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농촌청소년활동 등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교정국, 청소년사법과 비행예방사무국 등을 두어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치유역량을 제고하고 있고, 미성년 재판 및 미성년 비행예방활동 등을 주 활동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청소년단체 등의 지원을 다루고 있으며,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도시청소년 프로그램인 ‘Youth Build’ 프로그램을 주무하고 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우, 각 단위별로 독자적인 청소년정책과 다양한 제도들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행정지원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주정부 산하에 ‘청소년 서비스국’ 및 ‘복지국’ 등을 두어 아동 및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카운티에서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규모가 거대하고 다양한 단체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National Collaboration for Youth’와 ‘US Student Association’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운영예산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청소년관련 정책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청소년관련 법은 각 부처의 청소년사업의 골격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관련 법률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청소년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하원에 소개되고 2006년 법률로써 서명된 「연방 청소년 정책조정예 관한 법률(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FYCA, 2009년 개정)」은 ‘Federal Youth Department Council’에 의해 제정되었다. FYCA는 청소년을 위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며,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2001년 의회에서 통과된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은 미국의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과 여유 있는 가정의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고자 마련되었다. NCLB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법된 연방초중등교육법이다. NCLB의 담당국은 교육부 내 ‘초·중등교육국’이다. 그러나 NCLB는 교육부는 물론이고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본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NCLB는 보편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으면서 낮은 교육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소외계층의 학생, 소수민족 학생,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이민자 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각 주에서 정한 학업성취 기준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빈부격차에 의한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즉, NCLB 프로그램을 통한 소외계층의 학력수준 향상은 고질적인 교육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국 전체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NCLB의 4대 원리는 ‘책무성(accountability)’, ‘자유성(freedom)’, ‘방법론(methods)’, ‘선택권(choice)’이다. 4대 원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바로 직결되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기본적인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통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교원들의 자질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NCLB가 제정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2012년 3월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에 다시 그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미국의 청소년정책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관련 정책과 제도가 앞으로도 점증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밖에 2003년 개정된 「가출·노숙 청소년 법(the Runway and Homeless Youth Act: RHYA)」은 ‘집이 없는 소년(homeless young people)’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해 설립된 기관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은 광범위한 청년취업 및 고용과 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동부’에 의해 제안된 「공정노동기준법(FLSA)」은 청소년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기본급과 추가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서비스 증진법(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Improvement Act)」은 안전하고 안정된 가족유지와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동 및 가족 안전유지법(The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of 2003)」은 「아동학대 방지 및 관리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2003년에 개정된 것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문화 상호교류법(The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e Exchange Act)」은 미국 국제청소년교류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청소년문제행동의 예방과 치료, 교정중심의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진단에 기초하여 '긍정적인 청소년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며, 방과 후 시간에 다양한 긍정적 기회와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지원 등에 정책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소외 청소년에 대한 보다 나은 지원, 확실한 책임, 청소년과 가족의 연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우선권 부여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대두되고 있는 긍정적인 청소년발달은 청소년의 능력을 개발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조력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개발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청소년개발은 오늘날 미국 청소년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개발은 청소년보호처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며, 청소년육성이나 지도처럼 성인을 청소년이 이끈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 스스로 충분히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청소년개발은 청소년들이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직업적, 도덕적, 정서적으로 유능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긍정적인 활동을 제공하고 경험들을 통해서 당면할 생애주기를 청소년 스스로가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청소년관련 사항 중 관심을 가질만한 새로운 변화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청소년 멘토링'에 관한 사회적 주목, '청소년 수감자' 수의 감소, 그리고 '청소년 야외활동'에 대한 장려이다. 먼저, 사이버폭력의 경우, 청소년들 사이의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이것이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사태가 급증하면서 주정부에서는 사이버폭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뉴욕, 워싱턴,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의 주에서는 이미 2008년 이전에 사이버폭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고, 사이버폭력을 법으로 규정한 주정부는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심을 가질만한 또 다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멘토링이다. 청소년 멘토링은 청소년의 학업을 도와주는 멘토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비행청소년, 위기청소년, 시설청소년, 소수청소년 등 취약계층 전반의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멘토링 대상 청소년 집단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끝으로 최근 미국 연방정부차원에서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핵심 정책 이슈들을 28개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는 오늘날 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단서라 할

수 있다. 28개 이슈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s), 아메리카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AI/AN) 청소년, 따돌림 예방(Bullying Prevention), 재정 능력 및 문해력(Financial Capability & Literacy), 갱단 참여 예방(Gang Involvement Prevention), 노숙과 가출/Homelessness and Runaway), 청소년 사법(Juvenile Justice),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LGBT), 정신건강(Mental Health), 멘토링(Mentoring), 긍정적인 청소년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 임신 예방(Pregnancy Prevention), 재해대비와 복구(Preparedness & Recovery), 학교 분위기(School Climate), 약물남용방지(Substance Abuse Prevention), 자살 예방(Suicide Prevention), 인신매매 방지(Trafficking Prevention), 성인기로의 진입(Transition & Aging Out), 폭력 예방(Violence Prevention), 청소년 재결연(Reconnecting Youth), 투옥된 부모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가족과 지역사회 참여(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출산을 앞두고나 현재 양육중인 청소년 부모(Expectant and Parenting Young Families), 취업(Employment), 운전자의 안전(Driver Safety), 장애(Disabilities), 데이트 폭력 예방(Dating Violence Prevention),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 등이다.

마. 일본

일본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65년 청소년비행 등 다양한 청소년문제들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1965년 11월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운동’ 등이 시작되며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육성을 국가 정책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광범위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청소년과 관계되는 시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중장기 계획·관계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3년 6월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내각 부(副)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대신)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추진본부’(이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에 의해 아동·청년육성지원 추진본부로 변경)를 설치한 바 있다. ‘청소년육성추진본부’ 산하에는 부(副)본부장(관방장관, 문부과학성대신, 법무대신, 후생노동대신 등)으로 구성된 회의, 청소년 관련부서의 과장급 회의, 청소년국제교류관련 연락회의, 청소년비행대책을 위한 과장급회의, 커리어교육 등 추진회의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 계획마련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수립하였고, 이어 2008년 12월에 새로운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수립하였다. 2006년 6월에는 청소년들을 비행 또는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안전 및 안심 추진계획-비행, 범죄피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2006년 12월에는 청소년들의 커리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커리어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 특명담당대신을 본부장으로 각 부처의 각료가 참가하는 커리어 교육 등 추진회의를 설치하였다. 오늘날 일본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은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법률 제71호, 2010년 4월 1일 시행)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아동·청년 육성지원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와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곤란을 겪는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정비 등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정부는 「아동·청년비전(vi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을 수립(2010. 6.)하여 모든 아동과 청년의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의 영위 지원, 취약아동·청년 및 가정 지원,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정비 등의 3가지 우선과제들을 추진하였다.

〈표 1-3-7〉 일본 아동·청년비전의 우선과제(priority issues)

구분	세부우선과제
모든 아동·청년의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의 영위 지원	1. 아동·청년의 자아형성 지원 2. 아동·청년의 사회형성 및 사회참여 지원 3. 아동·청년의 건강 및 안전 확보 4. 청년의 직업적 자립 및 취업 지원
취약 아동·청년 및 가정 지원	5. 취약 상황별 대응 6. 아동·청년의 피해방지 및 보호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정비	7. 환경 정비 8. 성인 사회구조의 재검토

자료 : 일본 내각부(2010). 아동·청년비전 <http://www8.cao.go.jp/youth/wakugumi.html>(영문판) 에서 2018년 9월 25일 인출.

일본 정부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에 근거하여 아동·청년육성지원 추진본부(본부장: 총리)를 구성하고 여기서 아동·청년육성추진대강을 수립하면 도·도·부·현과 시·정·촌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추진하는 노력의 의무를 갖는다. 2016년 2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에서 결정한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의 5대 중점과제는 아래와 같다.

1. 모든 아동·청년의 건강한 육성

-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 학력과 체력의 향상, 규범이나 리(원리, 이치)의 마음(りの心)의 함양
-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육성
-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아동·청년 육성지원에 관한 상담창구 정비 촉진

2.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 연령으로 단절되지 않는 새로운 네트워크 및 여러 기관의 유기적인 횡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
-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아웃리치(방문지원)의 충실
- 아동의 빈곤대책, 아동학대 방지대책 강화

3. 아동·청년의 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의 정비

- 지역 등에서 실시되는 각종 체험, 교류활동의 충실
-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적절한 이용

4. 아동·청년의 성장을 돕는 담당자의 양성

- 관과 민의 제휴와 협력을 통한 지역에서의 공조기능 충실
- 종합적인 지식을 가진 코디네이터의 양성

5.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하는 아동·청년 지원

- 글로벌 인재, 과학기술 인재 육성
- 정보통신기술의 진화에 적응하고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 지원

자료 :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taikou_gaiyou.pdf에서 2018년 9월 25일 인출.

둘째, 정책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을 유아기에서 성인기 이전 청년기의 단계까지 폭넓게 설정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을 보호, 지원, 육성, 개발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연계하여 수상 직속 ‘국무조정실(내각부)’과 ‘문부과학성’ 등 별도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법적 근거로 2010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을 제정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청소년기획, 지원, 환경정비, 국제교류 등 아동·청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 관계부처 사무의 연락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문부과학성’은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로서 청소년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의 지원, 유해환경 대책 및 각종 청소년교육활동 및 환경·시설 등을 관장한다. 특히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이 제정되면서 영유아기, 학령기 및 사춘기 아동·청소년, 청년기(약 18~30세 미만)와 포스트 청년기(청년기를 지났지만 원활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세 미만의 청년)에 놓인 청년 모두를 포함하는 종합적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국가 정책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최소한 0~30세 미만까지 대폭

확대시켰다.

셋째, 청소년정책을 문제 상황별로 설정함으로써 정책과제 및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는 먼저, '학습장애(LD)'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장학금제도의 확충, 생활보호,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행소년들에 대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가정폭력, 아동학대, 원조교제, 집단따돌림(이지메)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예방 및 보호, 장애, 비행 및 학교중도탈락 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이 있다.

넷째, 청소년정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정비에 관한 정책들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인력의 배치(의료, 복지, 심리상담, 진로상담분야 전문가 등), 청소년지원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환경 분위기 조성(학교 내 상담체계의 구축, 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 학교재량권의 확대, 선택제 수업의 확충 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의 조성,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충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정보사회, 소비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회 및 제도적 장치로 '타운홀 미팅', '모니터링제도' 등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권에 관한 사회 계몽활동, 사회성 함양을 위한 캠페인,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98년 11월 1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04년 지역사회개발·스포츠부(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Sports: MCDS)가 지역사회개발·청소년·스포츠부(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MCYS)로 개편하면서 MCYS가 청소년 주무부처가 되었다. 최근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로 개편되면서 아동·청소년정책 주무부처가 되었다. 오늘날 싱가포르의 아동·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MSF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천연자원이 없는 작은 섬 싱가포르에서는 사람이 유일한 자원이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발달의 결정적 단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 MSF는 싱가포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관련정책 수립과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 전통적으로 중시되었던 지역사회 및 국가와 관계되는 아동·청소년의 역동성과 역량개발 역시 여전히 중요한 국가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
- ▶ 아동·청소년이 훌륭한 시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권한(empowerment)을 부여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자료 : <https://www.msf.gov.sg/policies/Children-and-Youth/Pages/default.aspx>에서 2018년 9월 25일 인출. 재구성.

이러한 역할에 근거하여 2018년 현재 MSF가 주요하게 다루는 아동·청소년정책을 기존의 아동·청소년정책(2014년)과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아동·청소년정책들은 이전의 정책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속하고 있고, 최근 싱가포르가 「무력충돌에 휩싸인 아동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면서 주요 정책 주제로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통제 밖의 청소년’과 관련해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부모 통제를 벗어난 16세 이하의 자녀는 학교나 가정에서 행동 상에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가해자 또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때때로 그들의 행동은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할 수가 있어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CYPA) 제50조에 의거해 자녀를 통제할 수 없다고 법원에 제기하면(이는 부모로서 갖는 최후의 수단임을 명시), 법원은 MSF에게 사회보고서(social report)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최대 5주 동안 아동을 소년의 집 혹은 소녀의 집(Boys’ or Girls’ Home)에 두도록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MSF는 이 사건을 평가하여 법원에 선택적인 조치들을 권고하는데, 이후 법원은 청소년에게 주의를 주거나 사회봉사기관에 의뢰해 해당 청소년에게 상담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아동을 법원의 감독 하에 두거나 동일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년의집 또는 소녀의집에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표 1-3-8〉 2014년 및 2018년 MSF 주요 아동·청소년정책

2014년 MSF 주요 아동·청소년정책	2018년 MSF 주요 아동·청소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세 이하 부모 통제 밖의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통제 밖의 청소년(Children Beyond Parental 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HCCAICA)에 관한 의무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에 관한 의무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아동권리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의무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아동권리협약의 의무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보호법(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CYPA)에 근거한 16세 이하 청소년의 돌봄·보호·재활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정책 및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가정 및 지역사회 등에서의 재활과 지원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과 청소년의 재활과 갱생(Rebuilding Children and Youth) 지원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소년의 재활과 갱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파트너와의 협력 MSF가 자금을 지원하는 Youth-At-Risk 프로그램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기관(ISP) 구축(Integrated Service Providers for MSF-funded Youth-At-Risk Program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파트너와의 협력(Working with Partners to Help Youths-At-Ris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력충돌에 휩싸인 아동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비준

자료 : www.msf.gov.sg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HCCAICA)은 배우자 한쪽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 자녀를 신속히 원래 살던 곳으로 귀환시키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국제협약으로, 재판을 통해 양육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아이를 원래 살던 곳에 있게 하라는 취지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는 전 세계 94개국(2016년 4월 기준)이 가입한 다자간 협약으로 본 협약의 적용 대상은 16세 미만의 아동이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귀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돼 있지만, 아이를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낼 경우 혼란이 커진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이때 동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동 협약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싱가포르는 1995년 10월에 비준하였다. MSF는 UNCRC의 원칙과 이념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싱가포르 시민들과 아동들에게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근거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 3일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에 제4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2009년과 2016년 사이의 싱가포르 아동권리의 진전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UNCRC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홍보하는데 있어 지역 사회와 정부 간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싱가포르는 2008년 12월 11일 「무력충돌에 휩싸인 아동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였고, 동 의정서가 2009년 1월에 발효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주요 주제로 추가하였다.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044-415-2162

제2부 요약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생활환경’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현황과 동태, 청소년 인구 규모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고,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생활환경의 현황과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1982년 1,421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8년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약 899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145만 명 중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에 따라 2020년까지 2년간 약 47만 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청소년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의 생활환경의 현황(2017년 기준)을 가족, 학교, 미디어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약 95%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자신의 학업성취도는 보통(48.0%), 우수한 편(42.2%)순으로 나타났으며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9.8%였다. 한편, 청소년이 수업시간에 재미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였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환경에서 10대 청소년은 인터넷을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98.1%이고, 1주일간 평균 16.9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용도에 대해 중복으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은 여가활동(98.9%), 커뮤니케이션(97.1%), 자료정보검색(92.6%)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20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을 하루에 1회 이상한다는 응답은 100%였고, 주당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3.6시간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 용도는 자료정보검색 및 커뮤니케이션이 각각 100%, 여가활동이 99.4%를 차지하였다.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생활환경

제1장 청소년 인구

제2장 청소년 생활환경

2

제 1 장 | 청소년 인구

1 청소년 인구 현황

2018년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약 899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145만여 명 중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9~24세 청소년 인구 중 24세 인구가 8.0%로 가장 많은 반면, 12세 인구는 4.8%로 청소년 인구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자 1백 명당 남자의 수를 의미하는 성비는 2018년 기준 9~24세 청소년 인구의 경우 109.8명으로 청소년의 남녀 간 인구 규모 불균형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3세 인구의 성비는 115.1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세부터 5세까지의 인구 성비는 각각 105.1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2018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단위 : 천 명, %, 여자 100명 당 남자의 수)

연령	청소년 인구	구성비(9~24세)	구성비(0~24세)	남자	여자	성비
0세	411	-	3.2	211	200	105.3
1세	409	-	3.2	210	199	105.2
2세	422	-	3.3	216	206	105.1
3세	439	-	3.4	225	214	105.1
4세	434	-	3.3	222	212	105.1
5세	462	-	3.6	237	225	105.1
6세	470	-	3.6	242	228	106.0
7세	478	-	3.7	246	232	105.8
8세	441	-	3.4	227	213	106.4
9세	446	5.0	3.4	230	216	106.3
10세	479	5.3	3.7	246	232	106.2

연령	청소년 인구	구성비(9~24세)	구성비(0~24세)	남자	여자	성비
11세	450	5.0	3.5	232	218	106.6
12세	431	4.8	3.3	223	208	107.5
13세	439	4.9	3.4	227	212	107.4
14세	472	5.2	3.6	245	227	108.0
15세	474	5.3	3.7	247	227	108.5
16세	509	5.7	3.9	265	243	109.0
17세	592	6.6	4.6	309	283	108.9
18세	619	6.9	4.8	323	296	109.0
19세	615	6.8	4.7	322	293	109.6
20세	654	7.3	5.0	341	312	109.3
21세	676	7.5	5.2	356	320	111.2
22세	704	7.8	5.4	374	330	113.6
23세	709	7.9	5.5	379	330	115.1
24세	722	8.0	5.6	386	336	114.7
계(9~24세)	8,990	100.0	-	4,706	4,284	109.8
계(0~24세)	12,954	-	100.0	6,740	6,213	108.5

자료 :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 1960~2060.

2 청소년 인구 전망

우리나라의 청소년(9~24세) 인구는 1960년 796만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에는 1,401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출산율의 감소로 청소년 인구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2000년에는 1,150만 명, 2018년에는 899만여 명까지 감소하였다.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수는 2030년에 699만 명, 2040년에 650만 명, 2050년에는 59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며 2060년에는 50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에 전체 인구의 31.8%에서 1980년에 36.8%까지 계속 증가하다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0년에는 24.5%, 2018년에는 17.4%까지 낮아졌다. 향후에도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13.2%, 2060년에는 11.1%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1960년대 연평균 2%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90~1995년에는 1.02%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1%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2031년 이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인구성장률을 보인 후, 2055~2060년에는 연평균 0.94%씩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청소년 인구 증가율은 1960~1965년 2.77%로 총인구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1975~1980년 1.69%, 1980~1985년에는 연평균 0.06%씩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5~2025년까지 10년간은 -2%대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감소폭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나, 2055~2060년에도 연평균 1.70%씩 감소할 전망이다.

〈표 2-1-2〉 총 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단위 : 명, %)

연도	총 인구	연평균 성장률	청소년인구				
			전체	남성	여성	구성비	연평균 성장률
1960	25,012,374	-	7,956,903	4,072,726	3,884,177	31.8	-
1965	28,704,674	2.79	9,120,576	4,699,931	4,420,645	31.8	2.77
1970	32,240,827	2.35	11,329,714	5,848,491	5,481,223	35.1	4.43
1975	35,280,725	1.82	12,885,563	6,651,771	6,233,792	36.5	2.61
1980	38,123,775	1.56	14,014,932	7,216,195	6,798,737	36.8	1.69
1985	40,805,744	1.37	13,974,697	7,187,699	6,786,998	34.2	-0.06
1990	42,869,283	0.99	13,553,357	6,990,839	6,562,518	31.6	-0.61
1995	45,092,991	1.02	12,751,383	6,581,311	6,170,072	28.3	-1.21
2000	47,008,111	0.84	11,501,436	5,987,274	5,514,162	24.5	-2.04
2005	48,184,561	0.50	11,022,283	5,799,481	5,222,802	22.9	-0.85
2010	49,554,112	0.56	10,370,213	5,468,113	4,902,100	20.9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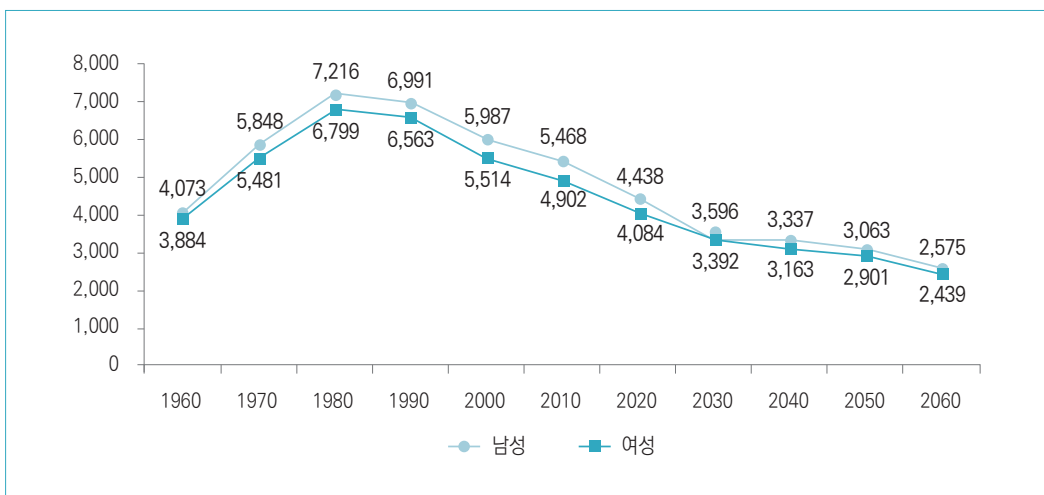
연도	총 인구	연평균 성장률	청소년인구				
			전체	남성	여성	구성비	연평균 성장률
2015	51,014,947	0.58	9,653,805	5,080,852	4,572,950	18.9	-1.42
2020	51,973,817	0.37	8,521,855	4,437,638	4,084,217	16.4	-2.46
2025	52,609,988	0.24	7,491,892	3,873,864	3,618,028	14.2	-2.54
2030	52,941,342	0.13	6,988,795	3,596,426	3,392,369	13.2	-1.38
2035	52,833,722	-0.04	6,745,203	3,464,181	3,281,022	12.8	-0.71
2040	52,197,882	-0.24	6,499,389	3,336,669	3,162,720	12.5	-0.74
2045	51,051,159	-0.44	6,331,801	3,251,241	3,080,560	12.4	-0.52
2050	49,432,752	-0.64	5,963,258	3,062,603	2,900,655	12.1	-1.19
2055	47,429,589	-0.82	5,461,270	2,804,982	2,656,288	11.5	-1.74
2060	45,245,985	-0.94	5,013,453	2,574,845	2,438,608	11.1	-1.70

주 : 연평균 인구성장률 = $((p_t/p_0)^{\frac{1}{t}} - 1) \times 100$.

자료 :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 1960~2060.

[그림 2-1-1]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 1960~2060.

3 청소년 인구동태

인구동태 통계(Vital statistics)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본적인 인구변동사건에 대한 통계로서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통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등 다양한 인구동태 지표가 작성되고 있다.

2017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약 35만 7천여 명, 사망자 수는 약 28만 5천 명이었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를 의미하는 자연증가로 인해 2017년 한 해 동안 약 7만 2천명의 인구가 증가한 셈이다.

출생아 수 추이는 1970년 1백만여 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절반 이하의 수준인 약 43만 5천 명까지 감소했다. 2010년 이후로는 3년 연속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다시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 다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다시 감소추세로 접어들어 2017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유지하였다. 반면 사망자 수 추이는 1970년 약 25만 9천 명에서 증가한 후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약 24만 명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7년 이후 약간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25만 5천여 명, 2015년에는 약 27만 6천명, 2017년에는 약 28만 6천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연간 혼인 건수는 26만 4천여 건으로 전년에 비해 1만 7천여 건 감소하였고, 2017년의 이혼 건수는 10만 6천여 건으로 2016년에 비해 1천 3백여 건 감소했다. 2014년~2015년 사이에 이혼 건수가 약 6천 4백 건 감소한 것에 비해 소폭으로 감소했다.

혼인은 1980년 40만 3천여 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2003년 30만 3천여 건까지 감소했다. 이후 2007년에는 약 34만 4천 건까지 늘어났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는 다시 약 30만 9천 건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26만 4천여 건까지 감소했다. 반면에 이혼은 1970년 약 1만 2천 건에서 2003년 약 16만 7천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점을 보이다가 2017년 10만 6천여 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단위 : 명, 건수)

연도	출생	사망	자연증가	혼인	이혼
1970	1,006,645	258,589	748,056	295,137	11,615
1975	874,030	270,657	603,373	283,226	16,453

연도	출생	사망	자연증가	혼인	이혼
1980	862,835	277,284	585,551	403,031	23,662
1985	655,489	240,418	415,071	384,686	38,187
1990	649,738	241,616	408,122	399,312	45,694
1995	715,020	242,838	472,182	398,484	68,279
2000	634,501	246,163	388,338	332,090	119,455
2001	554,895	241,521	313,374	318,407	134,608
2002	492,111	245,317	246,794	304,877	144,910
2003	490,543	244,506	246,037	302,503	166,617
2004	472,761	244,217	228,544	308,598	138,932
2005	435,031	243,883	191,148	314,304	128,035
2006	448,153	242,266	205,887	330,634	124,524
2007	493,189	244,874	248,315	343,559	124,072
2008	465,892	246,113	219,779	327,715	116,535
2009	444,849	246,942	197,907	309,759	123,999
2010	470,171	255,405	214,766	326,104	116,858
2011	471,265	257,396	213,869	329,087	114,284
2012	484,550	267,221	217,329	327,073	114,316
2013	436,455	266,257	170,189	322,807	115,292
2014	435,435	267,692	167,743	305,507	115,510
2015	438,420	275,895	162,525	302,828	109,153
2016	406,243	280,827	125,416	281,635	107,328
2017	357,771	285,534	72,237	264,455	106,03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2017년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7.0명으로 전년(7.9명)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시점인 1970년 이래 가장 낮았으며, 조사망률(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5.6명이었다.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차감한 자연증가율은 2017년 기준 1.4명이었다.

2017년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5.2건으로 2016년보다 0.3건 감소했고,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은 2.1건으로 2015년 및 2016년 수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연도별 인구동태율 추이

(단위: 건(명), 1천 명당)

연도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1970	31.2	8.0	23.2	9.2	0.4
1975	24.8	7.7	17.1	8.0	0.5
1980	22.6	7.3	15.4	10.6	0.6
1985	16.1	5.9	10.2	9.4	0.9
1990	15.2	5.6	9.5	9.3	1.1
1995	15.7	5.3	10.3	8.7	1.5
2000	13.3	5.2	8.2	7.0	2.5
2005	8.9	5.0	3.9	6.5	2.6
2010	9.4	5.1	4.3	6.5	2.3
2011	9.4	5.1	4.3	6.6	2.3
2012	9.6	5.3	4.3	6.5	2.3
2013	8.6	5.3	3.4	6.4	2.3
2014	8.6	5.3	3.3	6.0	2.3
2015	8.6	5.4	3.2	5.9	2.1
2016	7.9	5.5	2.5	5.5	2.1
2017	7.0	5.6	1.4	5.2	2.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가. 출생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8천여 명,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는 7.0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여성의 대학진학 및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20~30대의 미혼자

비중이 늘고, 초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2007년 출생아 수가 49만 3천여 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08년과 2009년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 이후에는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가 2015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6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2-1-5〉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단위 : 명, %, 인구 1천 명당)

연도	출생아 수	증감		1일 평균	조출생률
		증감	증감률(%)		
1995	715,020	-	-	1,959	15.7
1996	691,226	-23,794	-3.3	1,894	15.0
1997	668,344	-22,882	-3.3	1,831	14.4
1998	634,790	-33,554	-5.0	1,739	13.6
1999	614,233	-20,557	-3.2	1,683	13.0
2000	634,501	20,268	3.3	1,738	13.3
2001	554,895	-79,606	-12.5	1,520	11.6
2002	492,111	-62,784	-11.3	1,348	10.2
2003	490,543	-1,568	-0.3	1,344	10.2
2004	472,761	-17,782	-3.6	1,295	9.8
2005	435,031	-37,730	-8.0	1,192	8.9
2006	448,153	13,122	3.0	1,228	9.2
2007	493,189	45,036	10.0	1,351	10.0
2008	465,892	-27,297	-5.5	1,276	9.4
2009	444,849	-21,043	-4.5	1,219	9.0
2010	470,171	25,322	5.7	1,288	9.4
2011	471,265	1,094	0.2	1,291	9.4
2012	484,550	13,285	2.8	1,328	9.6
2013	436,455	-48,095	-9.9	1,196	8.6

연도	출생아 수	증감		1일 평균	조출생률
		증감	증감률(%)		
2014	435,435	-1,020	-0.2	1,193	8.6
2015	438,420	2,985	0.7	1,201	8.6
2016	406,243	-32,177	-7.3	1,113	7.9
2017	357,771	-48,472	-8.9	980	7.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2명으로 2016년 1.172명에 비해 약 0.1명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지속적으로 1.3명을 우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출생아 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이 97.7명으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25~29세)이 47.9명, 30대 후반(35~39세)이 47.2명 순으로 높았다. 미혼과 만혼이 늘면서 주 출산연령층이 높아져, 2007년에 처음으로 2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더 높아졌다. 20대 후반(25~29세)의 출산율은 2000년 149.6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에는 47.9명까지 급감했다. 반면 30대 초반(30~34세) 출산율은 2000년 83.5명에서 2017년에는 97.7명으로 나타났다. 30대 후반(35~39세)의 출산율은 2000년 17.2명에서 2017년 47.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 명,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합계출산율
2000	2.5	38.8	149.6	83.5	17.2	2.5	0.2	1.467
2001	2.2	31.4	129.2	77.5	17.0	2.4	0.2	1.297
2002	2.6	26.5	110.9	74.5	16.6	2.4	0.2	1.166
2003	2.5	23.6	111.7	79.1	17.1	2.4	0.2	1.180
2004	2.3	20.6	104.5	83.2	18.2	2.4	0.2	1.154
2005	2.1	17.8	91.7	81.5	18.7	2.4	0.2	1.076
2006	2.2	17.6	89.4	89.4	21.2	2.6	0.2	1.123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합계출산율
2007	2.2	19.5	95.5	101.3	25.6	3.1	0.2	1.250
2008	1.7	18.2	85.6	101.5	26.5	3.2	0.2	1.192
2009	1.7	16.5	80.4	100.8	27.3	3.4	0.2	1.149
2010	1.8	16.5	79.7	112.4	32.6	4.1	0.2	1.226
2011	1.8	16.4	78.4	114.4	35.4	4.6	0.2	1.244
2012	1.8	16.0	77.4	121.9	39.0	4.9	0.2	1.297
2013	1.7	14.0	65.9	111.4	39.5	4.8	0.1	1.187
2014	1.6	13.1	63.4	113.8	43.2	5.2	0.1	1.205
2015	1.4	12.5	63.1	116.7	48.3	5.6	0.2	1.239
2016	1.3	11.5	56.4	110.1	48.7	5.9	0.2	1.172
2017	1.0	9.6	47.9	97.7	47.2	6.0	0.2	1.052

주 :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기임여자 1명당 명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2017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2016년 105.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106.3으로 정상적인 출생성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출생성비는 105를 기준으로 ± 2 (103~107) 수준을 의미한다. 출생성비는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가 1994년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강화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 정상성비 범위인 106.2 수준으로 내려간 이후에는 정상 성비 범위 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생아의 출산순위별로도 출생성비는 모두 정상 성비 수준을 나타냈다. 2017년 첫째 아와 둘째 아의 성비는 각각 106.5와 106.1로 첫째 아 및 둘째 아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106.4로 2016년 107.4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 여아 1백 명당 남아 수)

연도	총 출생성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2000	110.2	106.3	107.4	144.2
2001	109.1	105.5	106.4	141.5

연도	총 출생성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2002	110.0	106.5	107.3	141.4
2003	108.7	104.9	107.0	136.9
2004	108.2	105.1	106.2	133.0
2005	107.8	104.8	106.5	128.5
2006	107.5	105.7	106.0	121.9
2007	106.2	104.5	106.0	115.7
2008	106.4	104.9	105.6	116.7
2009	106.4	105.1	105.8	114.3
2010	106.9	106.4	105.8	110.9
2011	105.7	105.0	105.3	109.5
2012	105.7	105.3	104.9	109.2
2013	105.3	105.4	104.5	108.0
2014	105.3	105.6	104.6	106.7
2015	105.3	105.9	104.5	105.6
2016	105.0	104.4	105.2	107.4
2017	106.3	106.5	106.1	106.4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나. 사망

2017년 총 사망자 약 28만 6천 명 중 청소년(10~24세) 사망은 1,91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0.7%를 차지한다. 청소년 사망자 중 10~14세는 10.3%(197명), 15~19세는 32.8%(626명), 20~24세는 56.9%(1,087명)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 전체 사망자에 비해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운수사고, 자살 등)에 의한 사망자 비중이 높다. 청소년 사망의 62.3%인 1,189명은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이었고, 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257명(13.5%),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27명(6.6%)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체 연령의 사망원인은 신생물이 28.1%, 순환기계통의 질환이 21.5%,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이 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8〉 2017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구성비

(단위 : 명, %)

사망원인	총 사망		청소년 사망						
	계	구성비	사망자 수			연령별 구성비			
			남녀 전체	남자	여자	10~24세	10~14세	15~19세	20~24세
전체	285,534	100.0	1,910	1,289	621	100.0	100.0	100.0	100.0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7,986	2.8	17	8	9	0.9	0.0	0.6	1.2
신생물	80,320	28.1	257	159	98	13.5	25.9	13.1	11.4
혈액 및 조혈기관 질환과 면역 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777	0.3	19	8	11	1.0	3.0	1.3	0.5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10,532	3.7	21	12	9	1.1	1.5	1.1	1.0
정신 및 행동장애	5,374	1.9	6	1	5	0.3	0.5	0.2	0.4
신경계통의 질환	11,197	3.9	127	89	38	6.6	13.2	6.9	5.3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0	0.0	0	0	0	0.0	0.0	0.0	0.0
귀 및 유도의 질환	6	0.0	0	0	0	0.0	0.0	0.0	0.0
순환계통의 질환	61,266	21.5	117	75	42	6.1	9.6	6.4	5.3
호흡계통의 질환	32,644	11.4	35	20	15	1.8	3.6	1.4	1.7
소화계통의 질환	12,132	4.2	17	7	10	0.9	2.0	0.3	1.0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620	0.2	0	0	0	0.0	0.0	0.0	0.0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1,521	0.5	14	3	11	0.7	0.0	1.0	0.7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7,582	2.7	1	1	0	0.1	0.0	0.0	0.1
임신, 출산 및 산후기	32	0.0	0	0	0	0.0	0.0	0.0	0.0

사망원인	총 사망		청소년 사망						
	계	구성비	사망자 수			연령별 구성비			
			남녀 전체	남자	여자	10~24세	10~24세		
							10~14세	15~19세	20~24세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523	0.2	0	0	0	0.0	0.0	0.0	0.0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371	0.1	28	18	10	1.5	2.5	1.3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25,497	8.9	62	45	17	3.2	1.0	3.0	3.8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27,154	9.5	1,189	843	346	62.3	37.1	63.4	66.1

자료 : 통계청(2017). 사망원인통계.

제2장 | 청소년 생활환경

청소년 생활환경은 가족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미디어환경이 중심이 되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가족환경

가족환경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청소년 생활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족구성 현황, 가구의 세대구성, 자녀가치관, 부모와 청소년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사회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 친화적 가족활동 요구조사를 근거로 하였다.

가. 가족구성 현황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일컫는 가구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단위이다.

〈표 2-2-1〉연도별 가구 수 및 가구원 수

(단위 : 가구, 명)

연도	총 가구 수	일반가구 ¹⁾ 수	집단가구 ²⁾ 수	평균 가구원 수
1970	5,856,901	5,792,983	63,918	5.3
1975	6,754,257	6,647,778	106,479	5.0
1980	7,992,968	7,969,201	23,767	4.5
1985	9,598,796	9,571,361	27,435	4.1

연도	총 가구 수	일반가구 ¹⁾ 수	집단가구 ²⁾ 수	평균 가구원 수
1990	11,370,160	11,354,540	15,620	3.7
1995	12,974,194	12,958,181	16,013	3.3
2000	14,326,224	14,311,807	14,417	3.1
2005	15,903,679	15,887,128	16,551	2.9
2010	17,574,067	17,339,422	20,727	2.7
2015	19,560,603	19,111,030	16,464	2.6
2017	20,167,922	19,673,875	15,949	2.5

주 : 1) 외국인 가구 제외.

2) 1970년대에는 1인 단독가구를 추정(216,706)하여 일반가구에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가구구성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적인 대가족의 해체, 친족가구의 비율 감소, 핵가족 비율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으로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감소했다. 2017년 총 가구 수는 2,017만여 가구로, 2015년에 비해 61만여 가구가 증가했고, 1970년에 비해서는 약 1,431만 가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평균 가구원 수는 2017년 2.5명으로 2015년보다 0.1명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 5.3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3명 이하로 줄었고, 2017년에는 2.5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구의 세대구성

2017년의 세대구성 유형별 가구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총 가구(일반가구 기준) 중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가 47.4%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28.6%, 1세대 가구 17.6%, 3세대 가구 4.8%, 비혈연가구 1.6%, 4세대 이상 가구 0.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2세대 가구 비율은 1.4%p 감소한 반면, 1세대 가구는 0.2%p, 1인 가구는 1.4%p, 비혈연가구는 0.5%p 증가했다.

2세대 가구의 비중은 동지역이 49.3%, 읍면지역은 39.2%로 읍면지역의 2세대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1세대 가구 비중은 동지역이 16.5%, 읍면지역이 22.5%로 읍면지역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읍면지역에서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구성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노인부부 및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2-2-2〉 세대구성유형별 가구 수 현황

(단위 : 천가구,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가구 수	구성비	가구 수	구성비	가구 수	구성비	가구 수	구성비
전국	15,887	100.0	17,339	100.0	19,111	100.0	19,674	100.0
1세대 가구	2,575	16.2	3,027	17.5	3,324	17.4	3,470	17.6
2세대 가구	8,807	55.4	8,892	51.3	9,328	48.8	9,321	47.4
3세대 가구	1,093	6.9	1,063	6.1	1,029	5.4	947	4.8
4세대 이상 가구	16	0.1	13	0.1	11	0.1	9	0.0
1인가구	3,171	20.0	4,142	23.9	5,203	27.2	5,619	28.6
비혈연가구	226	1.4	202	1.2	214	1.1	309	1.6
동지역	12,745	100.0	14,031	100.0	15,488	100.0	15,881	100.0
1세대 가구	1,793	14.1	2,182	15.5	2,504	19.1	2,615	16.5
2세대 가구	7,482	58.7	7,599	54.2	7,879	47.1	7,834	49.3
3세대 가구	842	6.6	842	6.0	810	6.0	745	4.7
4세대 이상 가구	10	0.1	9	0.1	8	0.1	6	0.0
1인가구	2,440	19.1	3,244	23.1	4,125	26.5	4,442	28.0
비혈연가구	177	1.4	156	1.1	163	1.3	240	1.5
읍면지역	3,142	100.0	3,308	100.0	3,623	100.0	3,793	100.0
1세대 가구	781	24.9	846	25.6	821	22.7	855	22.5
2세대 가구	1,325	42.2	1,294	39.1	1,449	40.0	1,487	39.2
3세대 가구	250	8.0	221	6.7	220	6.1	201	5.3
4세대 이상 가구	6	0.2	4	0.1	4	0.1	3	0.1
1인가구	731	23.3	898	27.1	1,078	29.8	1,177	31.0
비혈연 가구	49	1.5	46	1.4	52	1.4	69	1.8

자료 : 통계청(2005, 2010, 2015, 201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다. 자녀가치관

부모에게 자녀의 의미는 부모와 자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녀가치관은 <표 2-2-3>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에 대한 견해로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견해는 9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라는 자녀를 통한 부부 관계에 대한 견해 94.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8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47.9%,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는 47.0%로 거의 절반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29.5%로 이는 과거 자녀의 중요한 가치였던 ‘가문계승’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25.6%로 찬성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자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기대감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가 25세 미만과 25~29세 연령층에서는 32%가 넘는 비율을 보인 반면, 3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24~27%로 낮은 편이었다. 이를 통해 20대의 경우 결혼생활 초기에 직업이나 소득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노후를 위한 자녀에의 의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다소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견해 역시 20대에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연령층에 결혼 직후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기혼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가문계승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성을 다소나마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견해는 25세 미만의 연령층이 38.5%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는 견해에 대한 연령별 찬성 태도를 보면, 20대 전반과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20대 후반과 3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별 패턴은 자녀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생애주기에 따른 부담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대 전반의 경우 결혼을 하였으나 아직 출산을 경험한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자녀의 존재를 부모의 자유 제약으로까지 연계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이와 반대로 40대의 경우 어느 정도 자녀들이 성장하여 스스로 활동할 수 있어 돌봄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반영될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20대 후반과 30대의 경우 이제 막 출산을 하였거나 영유아 등을 양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녀 양육(주로 돌봄)이 부모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2-3〉 자녀에 대한 견해(찬성비율)

(단위 : %)

구 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전체	97.5	94.3	83.5	25.6	29.5	47.9	47.0	
연령	25세 미만	96.1	94.3	84.9	32.1	37.7	38.5	49.0
	25~29세	98.0	93.6	87.4	32.1	38.6	42.9	45.2
	30~34세	98.3	94.5	83.8	24.6	30.4	43.2	42.2
	35~39세	97.7	95.3	82.9	24.7	27.7	45.8	43.1
	40~44세	97.4	94.9	83.2	24.9	26.6	49.7	50.7
	45~49세	97.1	93.1	83.4	26.4	31.4	51.6	49.0

주 : 1) 기혼여성 15~49세를 대상으로 조사.

2) 25세 미만에는 15~19세 7명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2-4〉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는 응답(2017년 93.3%)은 2011년(85.9%)과 2014년(92.0%)에 비해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양육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매우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양육자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즉 자녀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한편 성별 및 지역별 긍정응답률(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의 차이 역시 미미하였으나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남자 양육자와 농산어촌 거주자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나 이들이 다른 양육자에 비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다소 높음을 보여준다.

〈표 2-2-4〉 양육관련 만족도 : 현재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연도별	2011년	0.9	13.1	73.5	12.4	
	2014년	1.2	6.8	70.9	21.1	
	2017년	0.6	6.1	73.2	20.1	
2017년	연령	30대 이하	0.4	5.8	69.7	24.1
		40대	0.4	5.5	73.2	20.8
		50대 이상	0.9	6.9	74.4	17.8
	성별	남자	1.1	5.9	68.2	24.9
		여자	0.5	6.1	73.8	19.6
	지역별	대도시	0.5	6.6	74.1	18.9
		중소도시	0.8	6.1	72.5	20.6
		농산어촌	0.4	4.6	72.5	22.4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 자녀의 의견 존중에 대한 견해는 〈표 2-2-5〉에 제시되어 있다. 평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라는 긍정응답률이 2014년 92.3%에서 2017년 94.3%로 2.0%p 증가하였다. 연령별, 지역별로는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남자 양육자 93.5%보다 여자 양육자 94.3%로 여자 양육자의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대체로 양육자들은 자신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과거보다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부모의 모습에 대해 높은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민주적·합리적인 양육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표 2-2-5〉 자녀의 의견 존중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연도별	2014년	0.7	7.0	70.2	22.1	
	2017년	0.2	5.6	70.7	23.6	
2017년	연령	30대 이하	0.1	5.6	67.7	26.6
		40대	0.1	5.8	70.8	23.3
		50대 이상	0.3	5.3	71.5	22.9
	성별	남자	0.4	6.1	64.8	28.7
		여자	0.1	5.5	71.3	23.0
	지역별	대도시	0.1	5.3	72.8	21.8
		중소도시	0.1	6.1	70.1	23.7
		농산어촌	0.4	5.3	66.4	27.9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2-2-6〉에서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양육책임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양육책임의 범위로 2009년에는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4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가 23.1%로 많았으며,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12.2%,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9.6%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자녀가 대학졸업까지가 49.6%,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는 20.4%,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와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각각 15.7%와 8.9%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5년에는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가 6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17.2%,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10.4%,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8.8%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5년의 3년간 변화는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2012년 이전에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를 자녀양육책임의 범위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2012년 49.6%에서 2015년 62.4%로 12.8%p 증가하였다. 반면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가 부모의 자녀양육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0.4%에서 2015년 8.8%로 크게 감소하였다. 자녀양육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다소 증가한데 비해,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는 크게 감소한 것은 자녀 양육책임의 상한선이 매우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의 비율이 대폭 감소한 것은 최근 만혼화 및 결혼기피 현상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표 2-2-6〉 자녀양육책임의 범위(2009년, 2012년, 2015년)

(단위 : %)

구분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언제까지 라도	기타	생각해 보지 않음/ 모르겠음	계
2009년	9.6	49.6	12.2	23.1	5.0	0.1	0.4	100.0
2012년	8.9	49.6	15.7	20.4	4.6	-	0.8	100.0
2015년	10.4	62.4	17.2	8.8	1.2	-	-	100.0

자료 : 1)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2-7〉에서 부모가 느끼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는 2014년 68.6%에서 2017년 71.9%로 3.3%p 증가하였다. 자녀 사교육비에 대해 70% 이상의 양육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그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 30대 이하에서는 84.1%가, 40대에서는 77.1%가 부담을 느낀데 반해 50대 이상에서는 60.3%만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 이상에서는 학령기 자녀가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 73.8%, 대도시 71.4%, 농산어촌 68.6%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양육자의 연령이나 성별, 거주 지역에 따라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경우이건 10명 중 최소 6~7명 이상이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연도별	2014년	11.6	19.7	45.2	23.4
	2017년	8.3	19.9	53.5	18.4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2017년	연령	30대 이하	2.7	13.2	60.3	23.8
		40대	5.3	17.5	55.7	21.4
		50대 이상	14.3	25.4	48.0	12.3
	성별	남자	9.2	25.7	50.5	14.6
		여자	8.2	19.2	53.8	18.8
	지역별	대도시	8.0	20.6	55.6	15.8
중소도시		6.4	19.8	53.2	20.6	
농산어촌		13.2	18.2	48.2	20.4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라. 부모와 청소년 자녀관계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및 대화시간 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부모님과 대화시간,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자, 그리고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은 <표 2-2-8>에 제시되었다. 2014년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중 저녁식사가 가장 많았다. 주 1~3회 부모님과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이 21.9%였고 매일 한다는 청소년도 37.5%였다. 반면 거의 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은 9.7%이었다. 저녁 식사 이외에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하는 활동으로 많이 하는 편인 것은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와 여가활동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는 고민에 관한 대화나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보다 많이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와 청소년의 대화 내용이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주로 학교생활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주 대화를 하지만 자신의 고민이나 관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화를 적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주제는 거의 절반 정도의 청소년이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7년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4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같이 하는 활동은 저녁식사였다. 27.0%의 청소년이 매일 부모님과 저녁식사를 같이

한다고 했고, 24.0%가 주 4~6회, 32.9%가 주 1~3회라고 하였다. 거의 안한다는 청소년은 4.5%로 2014년 보다 감소하였고 매일이라는 청소년도 감소했다. 2014년보다 2017년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이 대부분 소폭 감소 혹은 증가했다.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여가활동은 거의 안한다는 청소년이 소폭 감소하였고 매일 한다는 청소년도 감소하였다. 이는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여가활동을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은 증가하였으나 그 횟수는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대화는 2014년 59.8%의 청소년이 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2017년에는 62.0%의 청소년이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2014년보다 2017년의 경우 청소년이 부모와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2-8〉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단위 : %)

구분		거의 안함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해당 없음	계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2014년	34.7	31.2	18.7	5.5	9.6	0.2	100.0
	2017년	25.9	38.8	24.2	5.9	5.3	-	100.0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2014년	13.6	23.8	23.0	8.8	19.0	11.8	100.0
	2017년	16.3	29.8	28.1	9.2	9.1	7.3	100.0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2014년	29.8	30.0	24.4	6.8	8.6	0.3	100.0
	2017년	27.0	36.4	24.8	6.8	5.0	-	100.0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대화	2014년	59.8	24.7	9.4	2.4	3.4	0.4	100.0
	2017년	62.0	25.0	9.3	2.1	1.5	-	100.0
여가활동 (영화, 운동, 외식, 여행 등)	2014년	19.4	39.1	24.8	9.2	7.3	0.3	100.0
	2017년	19.2	41.4	26.5	7.9	5.0	-	100.0
저녁식사	2014년	9.7	15.4	21.9	15.2	37.5	0.3	100.0
	2017년	4.5	11.6	32.9	24.0	27.0	-	100.0

주 : 1) 해당없음은 부모님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계시지 않는 경우, 조부모 등과 사는 경우를 의미함.

2) 2014년에는 각각 항목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해당없음'으로 조사하였으나, 2017년에는 부모님 외에 양육자를 포함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항목만 '해당없음' 있음.

자료 : 1)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한편, 학부모와 청소년 관점에서 최근 1년간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유형을 보면 <표 2-2-9>와 같다. 지난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1순위는 학부모의 경우, 외식이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대상 응답을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1순위는 TV 보기가 84.5%로 학부모와 청소년이 인식한 여가문화활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활동에 있어서 학부모의 경우 영화보기가 82.5%, TV보기 81.2%, 쇼핑 78.3%, 국내여행 72.1%,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41.6%, 캠핑, 자연학습 34.2%, 스포츠 관람 27.5%, 해외여행 27.3%, 종교활동, 사회봉사 27.2%, 등산, 트레킹 27.1%, 스포츠 참여 17.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경우는 외식 79.0%, 영화보기 68.9%, 쇼핑 67.3%, 국내여행 49.1%, 스포츠 관람 17.3%, 해외여행 16.5%, 캠핑, 자연학습 16.4%, 등산, 트레킹 15.7%, 종교활동, 사회봉사 15.4%,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13.6%, 스포츠 참여 7.7%,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활동이 없음 2.8%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학부모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 모두 외식이 86.3%와 9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남자의 경우, TV보기가 81.5%, 영화보기 79.7%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여자는 영화보기 85.2%, 쇼핑 83.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TV보기가 77.1%와 88.2%로 가장 높았으며, 남자 청소년의 경우 외식 70.3%, 영화보기 62.7%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외식 83.3%, 쇼핑 75.0%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그 밖의 활동에 있어서 학부모는 성별에 따라서 남자는 국내여행 73.9%, 쇼핑 73.2%,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38.8% 순이었던 반면, 여자는 TV보기 80.9%, 국내여행 70.3%,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44.4%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쇼핑 52.0%, 국내여행 41.0%, 스포츠 관람 17.1%, 등산, 트레킹 15.1% 순이었던 반면, 여자 청소년은 영화보기 72.0%, 국내여행 53.2%, 캠핑, 자연학습 18.1%, 해외여행 18.0%, 스포츠 관람 1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9>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복수응답)

(단위 : %)

구분	TV 보기	영화 보기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등산, 트레킹	캠핑, 자연 학습	종교 활동, 사회 봉사	외식	쇼핑	없음	
학부모	전체	81.2	82.5	41.6	27.5	17.0	72.1	27.3	27.1	34.2	27.2	88.2	78.3	0.7
	남자	81.5	79.7	38.8	32.3	22.8	73.9	26.4	29.9	34.8	26.8	86.3	73.2	0.8
	여자	80.9	85.2	44.4	22.7	11.2	70.3	28.3	24.3	33.6	27.6	90.1	83.3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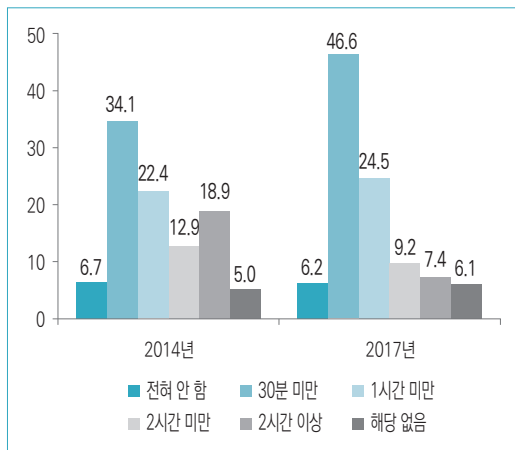
구분	TV 보기	영화 보기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등산, 트레킹	캠핑, 자연 학습	종교 활동, 사회 봉사	외식	쇼핑	없음
전체	84.5	68.9	13.6	17.3	7.7	49.1	16.5	15.7	16.4	15.4	79.0	67.3	2.8
청소년													
남자	77.1	62.7	8.2	17.1	7.4	41.0	13.7	15.1	13.1	13.3	70.3	52.0	5.4
여자	88.2	72.0	16.3	17.4	7.8	53.2	18.0	16.1	18.1	16.5	83.3	75.0	1.5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청소년 친화적 가족활동 요구(2017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부모님과의 대화여부 및 1일 평균 대화시간을 보면, 다음의 [그림 2-2-1], [그림 2-2-2]와 같다. 먼저 아버지와 청소년자녀와 대화를 하는 비율은 2014년에는 88.3%에서 2017년에는 87.7%로 0.6%p 감소하였고,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은 동 기간 95.0%에서 96.1%로, 0.6%p 증가하였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아버지는 2014년 1시간 미만은 56.5%, 1시간 이상은 31.8%이었고, 2017년에 각각 71.1%와 16.6%로 2014년에 비해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은 증가하고 1시간 이상은 감소하여 3년 간 아버지와 청소년자녀와의 대화하는 비율과 대화시간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는 2014년 1시간 미만은 41.9%, 1시간 이상은 53.1%이었고, 2017년에는 각각 58.7%와 37.4%로 3년 간 아버지와 청소년자녀와의 대화시간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2-2-1] 주중 아버지와 대화시간(1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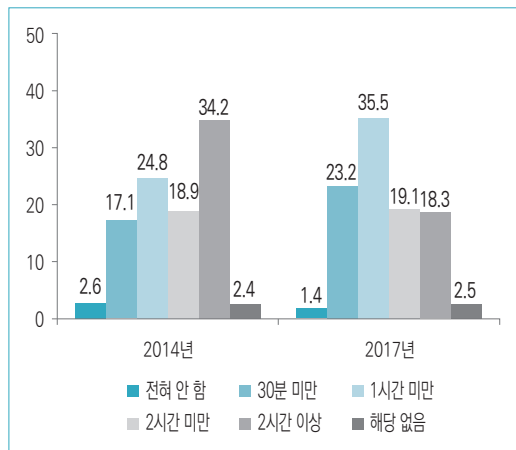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1)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그림 2-2-2] 주중 어머니와의 대화시간(1일 평균)

(단위 : %)



자료 : 1)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2-2-10〉에서 2017년 조사를 중심으로 자녀의 연령별로 부모님과 대화여부 및 1일 평균 대화시간을 보면, 만 9~12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이 91.7%로 전체보다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4.3%로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이 73.8%, 1시간 이상은 22.2%로 전체보다 1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만 13~18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이 89.5%,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5.0%로 대화하는 비율은 전체 및 만 9~12세 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이 78.0%, 1시간 이상이 16.5%로 1시간 이상은 만 9~12세 보다 낮았다. 만 19~24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이 84.5%,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7.9%로 대화하는 비율은 전체, 만 9~12세 및 만 13~18세 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이 78.2%, 1시간 이상이 14.2%로 1시간 이상은 만 9~12세 및 만 13~18세 보다 낮았다. 이는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의 경우 낮은 연령대보다 아버지와 대화 비율과 1일 평균 대화시간이 적음을 보여준다. 한편, 만 9~12세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이 97.1%로 전체보다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0.8%로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이 47.4%, 1시간 이상은 50.5%로 전체보다 1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만 13~18세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이 95.9%,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1.2%로 대화하는 비율은 만 9~12세 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이 58.5%, 1시간 이상이 38.6%로 1시간 이상은 만 9~12세 보다 낮았다. 만 19~24세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이 95.9%,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1.7%로 대화하는 비율은 전체, 만 9~12세 및 만 13~18세 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 시간은 1시간 미만이 66.8%, 1시간 이상이 30.9%로 1시간 이상은 전체, 만 9~12세 및 만 13~18세 보다 낮았다. 이는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의 경우 낮은 연령대보다 어머니와의 대화비율과 1일 평균 대화시간도 적어서 아버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2-2-10〉 부모님과 대화여부 및 대화시간(1일 평균)

(단위 : %)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 1시간 미만	1시간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없음	계
아버지	전체	6.2	46.6	24.5	9.2	7.4	6.1	100.0
	만 9~12세	4.3	39.0	30.5	12.0	10.2	3.9	100.0
	만 13~18세	5.0	47.0	26.0	8.6	7.9	5.5	100.0
	만 19~24세	7.9	49.6	20.7	8.5	5.7	7.6	100.0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 1시간 미만	1시간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없음	계
어머니	전체	1.4	23.2	35.5	19.1	18.3	2.5	100.0
	만 9~12세	0.8	13.5	33.1	23.3	27.2	2.1	100.0
	만 13~18세	1.2	21.7	35.6	20.7	17.9	2.9	100.0
	만 19~24세	1.7	28.6	36.5	16.1	14.8	2.4	100.0

주 : 해당없음은 부모님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계시지 않는 경우, 조부모 등과 사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에서 부모와의 질적인 관계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표 2-2-11>에 의하면, 2010년 청소년의 상담대상은 친구동료가 51.1%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고, 다음은 부모, 스스로 해결, 형제자매 순으로 많았다.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에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부모와 고민상담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다소 감소, 2018년 다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형제자매, 친구동료, 스스로 해결이라는 응답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서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0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부모와 고민상담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거나 친구동료, 형제자매와 고민상담하는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 자녀 중 1/4 이상은 부모와 어느 정도 신뢰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11>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

(단위 : %)

구분	부모	형제자매	친구동료	스스로 해결	기타	계
2010년	20.7	6.2	51.1	16.9	5.1	100.0
2012년	24.0	5.2	44.5	21.9	4.5	100.0
2014년	26.1	5.5	46.2	17.6	4.7	100.0
2016년	24.1	5.1	44.4	21.8	4.5	100.0
2018년	28.0	5.1	49.1	13.8	4.0	100.0

주 : 기타에는 스승, 선·후배 포함.

자료 : 통계청(2010, 2012, 2014, 2016, 2018). 사회조사.

〈표 2-2-12〉에서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정생활 만족도란 양육자(또는 부모님)와의 관계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2014년 전체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만족하는 비율¹⁾이 90.8%, 만족하지 않는 비율²⁾은 9.2%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약 9.9배 높았다. 2017년에는 각각 95.0%와 5.0%로 3년 간 청소년의 가정생활만족도는 4.2%p 증가하였다. 청소년 연령별로는 만 9~12세는 만족하는 비율이 96.5%,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3.5%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약 28배 높았고, 만 13~18세는 만족하는 비율이 95.9%,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4.1%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약 23배 높은데 비해, 만 19~24세는 만족하는 비율이 93.6%,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6.3%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약 9배 높았다. 가정생활 만족도는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높아서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표 2-2-12〉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계
2014년	1.1	8.1	54.0	36.8	100.0
2017년	0.5	4.5	72.4	22.6	100.0
만 9~12세	0.5	3.0	63.6	32.9	100.0
만 13~18세	0.4	3.7	72.5	23.4	100.0
만 19~24세	0.6	5.7	76.0	17.6	100.0

자료 : 1)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2-2-13〉에서 2017년 기준 부모님의 지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모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학졸업까지는 52.0%, 그 이후 취업할 때까지 18.6%, 결혼할 때까지 5.7%로 2012년 대학졸업까지 15.6%, 취업할 때까지 4.1%, 결혼할 때까지 3.7%보다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대학졸업까지는 5년 사이에 36.4%p나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응답이 모든 항목에서 2010년

1)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하는 편이다' 응답을 합한 비율을 뜻함

2)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와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응답을 합한 비율을 뜻함

크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까지 전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은 2008년이 2017년보다 2.4%p 여전히 높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2010년 대학졸업과 취업 이후 자립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이전의 조사에서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2017년 조사에서는 13~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도에 따른 부모의 비용지원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변화를 볼 때에는 이전 조사의 수치와 올해 모든 연령대의 청소년보다는 13~18세 청소년의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전체 청소년의 응답과 13~18세의 응답의 차이는 0.0~2.0%p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2017년 13~18세 청소년의 인식변화는 2017년 모든 청소년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최근 청년취업과 대학등록금, 결혼자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청소년기·청년기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항목별 차이를 보면, 대학졸업까지 전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반면, 취업할 때까지와 결혼할 때까지의 비율이 낮고 결혼할 때까지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40.5%인 것으로 볼 때, 대학졸업 후 취업 이후에는 자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부모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3〉 부모님으로부터의 비용 지원

(단위: %)

구분		전혀 부담할 필요 없음	일부만 부담	모든 비용 부담	
대학졸업까지	연도별	2008년	5.6	69.8	24.6
		2010년	8.1	76.4	15.4
		2012년	6.8	77.6	15.6
		2017년	3.4	44.6	52.0
	연령	13~18세	2.8	43.4	53.7
		19~24세	3.8	45.6	50.6
	성별	남자	3.8	43.3	52.9
		여자	3.0	46.1	51.0
	지역별	대도시	2.5	45.7	51.7
		중소도시	3.3	43.9	52.8
농산어촌		5.6	43.5	50.8	

구분		전혀 부담할 필요 없음	일부만 부담	모든 비용 부담	
취업할 때까지	연도별	2008년	51.3	43.1	5.7
		2010년	57.5	39.7	2.7
		2012년	50.3	45.6	4.1
		2017년	17.0	64.4	18.6
	연령	13~18세	18.0	62.4	19.6
		19~24세	16.3	66.0	17.7
	성별	남자	16.3	64.6	19.1
		여자	17.9	64.1	18.0
	지역별	대도시	17.0	63.3	19.8
		중소도시	16.3	65.6	18.1
농산어촌		18.7	64.8	16.5	
결혼할 때까지	연도별	2008년	26.6	65.4	8.1
		2010년	65.3	32.8	1.9
		2012년	60.9	35.4	3.7
		2017년	40.5	53.8	5.7
	연령	13~18세	40.5	53.4	6.1
		19~24세	40.5	54.2	5.3
	성별	남자	38.5	56.0	5.5
		여자	42.7	51.4	5.9
	지역별	대도시	39.0	54.7	6.4
		중소도시	39.7	55.3	5.0
농산어촌		46.3	48.5	5.2	

주 : 1) 무응답(2012년 무응답률(0.6%))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청소년가치관조사 문항으로 2008~2012년은 중·고등학생, 2017년은 13~24세 청소년의 응답률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학교환경

학교환경은 청소년과 가장 관련이 있는 지각된 학업성취도, 학교에 대한 느낌, 진로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통계청 자료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가. 지각된 학업성취도

2017년 청소년들이 지각한 학업성취도는 보통이 48.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우수한 편 38.2%, 못하는 편 8.6%, 매우 우수 4.0%, 매우 못함 1.2%의 순이었다. 2011년과 2014년에도 청소년들이 지각한 학업성취도의 순서는 같았다. 작은 변화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우수한 편 혹은 매우 우수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이 2011년 32.7%, 2014년 36.9%, 2017년 42.2%로 계속 증가한 반면, 못하는 편 혹은 매우 못함이라고 하는 청소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가 다소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주요 고민거리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같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3~18세 청소년은 9~12세 청소년보다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편 혹은 매우 우수하다는 응답은 적고, 매우 못함 또는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많았다. 이것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성별이나 지역별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표 2-2-14〉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

(단위: %)

구분		매우 못함	못하는 편	보통	우수한 편	매우 우수
전체	2011년	3.3	16.7	47.3	26.3	6.4
	2014년	2.5	15.7	44.9	28.0	8.9
	2017년	1.2	8.6	48.0	38.2	4.0

구분		매우 못함	못하는 편	보통	우수한 편	매우 우수	
2 0 1 7 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6	4.6	43.7	45.0	6.1
		중·고생(13~18세)	1.5	11.0	50.6	34.1	2.8
	성별	남	1.3	8.7	48.5	37.3	4.2
		여	1.0	8.5	47.5	39.1	3.9
	지역별	대도시	0.8	6.9	47.5	40.7	4.1
		중소도시	1.3	9.1	47.5	38.4	3.7
농산어촌		1.5	11.8	50.3	31.6	4.8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나. 학교에 대한 느낌

1)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의 경우, 2017년 그런 편이다 6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6%, 매우 그렇다 9.1%, 전혀 그렇지 않다 1.6%의 순이었다. 2014년의 경우에도 그런 편이다 5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8%, 매우 그렇다 13.5%, 전혀 그렇지 않다 6.7%의 순이었다.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2011년 65.9%에 이어 2014년 69.5%, 2017년 71.8%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9~12세 청소년 78.9%, 13~18세 청소년은 67.6%로 9~12세 청소년이 11.3%p 더 높았다. 이것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어려워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보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2-2-15〉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1년	6.1	28.0	55.3	10.6	
	2014년	6.7	23.8	56.0	13.5	
	2017년	1.6	26.6	62.7	9.1	
2017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8	20.3	64.6	14.3
		중·고생(13~18세)	2.1	30.3	61.5	6.1
	성별	남	1.8	27.6	61.4	9.2
		여	1.4	25.5	64.0	9.1
	지역별	대도시	1.6	26.9	63.2	8.3
		중소도시	1.8	28.4	61.9	8.0
농산어촌		1.3	21.7	63.2	13.8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의 경우, 2017년 그런 편이다 5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4%, 매우 그렇다 14.5%, 전혀 그렇지 않다 1.9%의 순이었다. 2011년 48.9%로 절반에 못 미치던 긍정응답률이 2014년 56.3%에 이어 2017년 71.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가 과거보다 학생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학교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9~12세 청소년 80.2%로 13~18세 청소년 66.5%보다 높았으며, 성별과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2-2-16〉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1년	13.8	37.3	43.0	5.9
	2014년	11.2	32.5	46.9	9.4
	2017년	1.9	26.4	57.1	14.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7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6	19.2	60.9	19.3
		중·고생(13~18세)	2.7	30.8	54.9	11.6
	성별	남	2.0	26.6	56.6	14.9
		여	1.8	26.3	57.8	14.1
	지역별	대도시	1.5	25.3	58.3	14.9
		중소도시	1.9	29.8	55.6	12.7
농산어촌		3.2	21.5	57.8	17.6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학교의 공부 분위기에 대하여 2017년에는 그런 편이다 6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2%, 매우 그렇다 15.9%, 전혀 그렇지 않다 1.7%의 순이었다. 2014년에는 그런 편이다 53.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4%, 매우 그렇다 11.9%, 전혀 그렇지 않다 10.0%로 나타났다. 좋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는 긍정응답률은 2011년 58.6%, 2014년 65.6%, 그리고 2017년에는 79.1%로 이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학교가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라고 느끼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가 점차적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9~12세 청소년 86.1%, 13~18세 청소년 74.9%로 9~12세 청소년이 13~24세 청소년보다 학교의 공부 분위기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에게서 긍정응답률이 약간 더 높았다.

〈표 2-2-17〉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1년	10.9	30.5	50.2	8.4
	2014년	10.0	24.4	53.7	11.9
	2017년	1.7	19.2	63.2	15.9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7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8	13.2	63.8	22.3
		중·고생(13~18세)	2.2	22.8	62.8	12.1
	성별	남	1.8	18.5	64.2	15.6
		여	1.6	20.1	62.1	16.2
	지역별	대도시	1.2	16.5	67.0	15.4
		중소도시	1.8	23.5	61.9	12.8
농산어촌		2.8	16.2	57.1	23.9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4)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학교교칙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2017년 그런 편이다 5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5%, 매우 그렇다 11.4%, 전혀 그렇지 않다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칙이 엄격하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과거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는데 2011년 50%, 2014년 53.5%, 2017년 64.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학교교칙이 엄격하다는 응답은 9~12세 청소년 60.6%, 13~18세 청소년 66.3%로 13~18세 청소년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2-2-18〉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1년	9.5	40.6	37.8	12.2
	2014년	10.0	36.5	41.3	12.2
	2017년	3.3	32.5	52.8	11.4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7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4.9	34.5	49.2	11.4
		중·고생(13~18세)	2.4	31.3	54.9	11.4
	성별	남	3.1	33.0	53.3	10.7
		여	3.6	32.0	52.3	12.1
	지역별	대도시	2.5	31.0	56.0	10.6
		중소도시	3.5	32.8	53.3	10.5
농산어촌		5.1	35.6	44.1	15.2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다. 진로교육 경험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63.5%의 청소년이 진로와 직업 수업을 경험하였으며, 2011년 72.3%에서 2014년 81.0%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2017년 감소하였다. 반면 진로와 직업 수업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높은 편이었으며, 2011년 57.9%에서 2014년 58.3%, 2017년 65%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진로와 직업 수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진로와 직업 수업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3~18세 청소년이 68.9%로 19~24세 61.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의 진로교육경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2-2-19〉 진로교육 경험 :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단위 : %)

구분	연도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2011년	27.7	72.3	10.3	31.9	52.0	5.9
	2014년	19.0	81.0	9.8	31.8	50.0	8.3
	2017년	36.5	63.5	4.1	31.0	59.9	5.1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2017 년	연령별	13~18세	36.9	63.1	4.2	27.0	62.3	6.6
		19~24세	36.1	63.9	4.0	34.0	58.0	3.9
	성별	남	37.2	62.8	3.8	32.2	59.3	4.7
		여	35.6	64.4	4.4	29.6	60.5	5.5
	지역별	대도시	37.4	62.6	3.6	30.4	61.7	4.4
		중소도시	35.3	64.7	4.8	32.4	56.8	6.0
		농산어촌	36.7	63.3	3.9	29.1	62.0	5.0

주 : '도움 정도'는 '경험 있음' 응답자를 기준으로 합이 100이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 미디어환경

미디어환경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 스마트폰, 매체별 중요도,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활용된 자료는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이다.

가. 인터넷

1) 인터넷 이용 빈도

2017년 10대 청소년의 98.1%는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의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이용 빈도는 2011년과 2015년에 전년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2017년에 전년보다 4.2%p 증가하였다. 20대의 경우, 2010년부터 소폭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2017년 100.0%가 인터넷을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10대 청소년보다는 20대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 이용 빈도가 높다. 이러한 현상은 2011년 이후 지속되었는데 2010년에는 20대보다 10대 청소년의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 이용 빈도가 0.5%p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더 높았다.

인터넷의 주 평균 이용시간을 보면, 2017년 10대 청소년은 16.9시간으로, 2010년 12.4시간, 2011년 13.2시간, 2012년과 2013년 14.1시간, 2014년 14.4시간, 2015년 14.5시간, 2016년 15.4시간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과 비교하면 주 평균 이용시간이 4.5시간이나 증가한 것이다. 20대의 경우에도 2012년 21.7시간에서 2013년 20.3시간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4년 20.5시간, 2015년 21.0시간, 2016년 22.8시간, 2017년 23.6시간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주 평균 이용시간은 10대 청소년보다 20대가 6.7시간이 더 많았으며, 2016년 7.4시간보다 차이가 감소하였다.

〈표 2-2-20〉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평균 이용시간

(단위 : %, 시간)

구분	인터넷 이용 빈도				주평균 이용시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2010년	10대	97.3	2.7	-	-	12.4
	20대	96.8	3.2	-	-	19.4
2011년	10대	97.8	0.2	0.1	0.0	13.2
	20대	98.5	1.5	-	0.0	20.4
2012년	10대	97.6	2.4	0.0	0.0	14.1
	20대	98.5	1.4	0.0	0.0	21.7
2013년	10대	95.8	4.1	0.0	0.0	14.1
	20대	99.3	0.7	0.0	-	20.3
2014년	10대	95.2	4.7	0.1	-	14.4
	20대	99.3	0.7	0.0	-	20.5
2015년	10대	96.6	3.3	0.1	0.1	14.5
	20대	99.8	0.2	-	-	21.0

구 분		인터넷 이용 빈도				주평균 이용시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2016년	10대	93.9	5.6	0.3	0.2	15.4
	20대	99.6	0.4	0.0	-	22.8
2017년	10대	98.1	0.9	1.0	-	16.9
	20대	100.0	-	0.0	-	23.6

자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4, 2015,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3)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0, 2011,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 인터넷 이용용도

2017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용도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은 여가활동이 98.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커뮤니케이션 97.1%, 자료정보검색 92.6%, 교육학습 73.6%, 홈페이지 운영 53.8% 등의 순이었다. 반면, 20대 청소년은 커뮤니케이션과 자료정보검색이 10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여가활동 99.4%, 홈페이지 운영 78.2%, 교육학습 64.3%, 구직활동 51.3% 등의 순이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주로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정보검색, 교육학습 등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대와 20대 청소년은 인터넷 이용용도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10대 청소년이 20대 보다 교육학습을 위하여 인터넷을 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0대가 10대 청소년보다 인터넷을 다양한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20대는 구직활동이나 홈페이지 운영, 자료정보검색을 10대 청소년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대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넷 이용용도는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홈페이지 운영은 10대와 20대 모두 지속적으로 이용이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는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교육학습의 경우, 2010년에는 이용비율이 높다가 2013년에는 급감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2010~2012년 동안 보여준 높은 수준의 비율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2014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16년에는 급증하였고 2017년에도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물론 2010~2012년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점차 인터넷을 교육학습용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21〉 인터넷 이용용도(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자료정보 검색	여가 활동	커뮤니 케이션	거래 활동	교육 학습	커뮤니티	SW 다운로드/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운영	구직 활동	파일공유 서비스	
2010년	10대	90.4	98.1	96.7	57.7	95.2	58.7	8.2	72.4	2.8	27.3
	20대	99.9	98.4	99.6	90.5	80.9	75.5	19.8	76.3	29.1	47.3
2011년	10대	90.7	98.0	96.6	58.9	92.3	56.3	8.2	71.5	2.8	25.3
	20대	99.8	98.3	99.6	91.5	77.6	72.8	19.4	75.2	28.5	48.9
2012년	10대	91.4	98.0	96.3	58.5	91.2	55.0	9.4	71.3	2.9	25.2
	20대	99.8	98.3	99.6	91.1	75.9	71.7	20.7	74.7	28.2	48.0
2013년	10대	93.7	97.2	91.9	28.6	56.9	18.1	11.6	45.2	4.3	7.0
	20대	99.8	97.6	81.4	62.1	28.7	30.8	22.1	67.3	27.0	14.1
2014년	10대	91.0	93.3	94.4	32.0	59.2	-	14.0	-	4.2	8.6
	20대	99.8	95.0	99.8	86.2	43.0	-	22.6	-	29.3	18.7
2015년	10대	85.3	96.7	95.7	-	58.7	-	-	48.5	6.5	-
	20대	99.6	97.4	100.0	-	50.6	-	-	70.3	33.8	-
2016년	10대	88.4	97.5	95.1	-	72.4	-	-	51.5	7.9	-
	20대	99.8	98.5	99.9	-	60.4	-	-	74.7	42.2	-
2017년	10대	92.6	98.9	97.1	-	73.6	-	-	53.8	7.8	-
	20대	100.0	99.4	100.0	-	64.3	-	-	78.2	51.3	-

자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4, 2015,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3)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0, 2011,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나. 인터넷 서비스 이용

청소년의 2017년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메일은 대학생이 92.3%, 고등학생 66.1%, 중학생 56.5%, 초등학생 18.0%이었으며, 인스턴트 메신저는 대학생 100.0%, 고등학생 98.8%, 중학생 97.9%, 초등학생 69.4%이었으며, SNS 이용은 대학생이

94.3%, 고등학생 87.1%, 중학생 79.8%, 초등학생 28.5%로 청소년들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할 것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서비스 중 인스턴트 메신저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인스턴트 메신저의 경우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69.4%에 달하며 중학생부터는 97%를 넘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턴트 메신저의 수준보다는 낮지만 SNS 역시 초등학생 28.5%에 달하며 중학생부터 79%를 넘는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2〉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¹⁾(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²⁾	SNS 이용 ³⁾	인터넷 쇼핑 ⁴⁾	인터넷 뱅킹 ⁴⁾
초등학생	18.0	69.4	28.5	24.4	11.9
중 학생	56.5	97.9	79.8	37.9	15.8
고등학생	66.1	98.8	87.1	54.3	25.6
대 학생	92.3	100.0	94.3	89.0	76.6

주 : 1) 최근 1년 이용자.

2)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실시간으로 메시지, 사진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톡, 라인, 네이트온, 페이스북 메신저, 구글 행아웃 등이 포함.

3) 나이, 학력 등 개인정보 및 사진, 친구목록 등이 프로필 페이지에 제공되어 이를 기반으로 인맥형성, 교류하는 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4) 인터넷 쇼핑과 인터넷 뱅킹은 12세 이상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다. 스마트폰

1) 스마트폰 이용 빈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빈도를 보면, 2017년 10대 청소년의 경우 매일이 8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한달에 1~3일 3.6%였다. 20대는 매일이 9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주일에 5~6일 1.8%였다. 이것은 대부분 청소년이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과 비교해 보면,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청소년의 경우 10대보다는 20대가 더 많이 증가했다. 10대 청소년은 2013년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80.2%였는데 2016년에는 87.6%로 7.4%p, 2017년에는

89.2%로 9.0%p 증가한 반면, 20대는 2013년 80.9%에서 2016년 94.0%로 13.1%p, 2017년 95.2%로 14.3%p 증가했다. 스마트폰을 전혀 안 보거나 이용 안 한다는 비율의 경우 10대 청소년은 2013년 13.7%에서 2017년 3.2%로 10.5%p 감소한 반면, 20대는 2013년 4.0%에서 2017년 0.2%로 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3〉 스마트폰 이용 빈도

(단위 : %)

구분		매일	1주일에 5~6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1~2일	한 달에 1~3일	2~3달에 1~2일 이하	전혀 안 봄/ 이용 안함
2013년	10대	80.2	3.3	1.6	0.3	0.1	0.8	13.7
	20대	80.9	1.9	1.6	0.9	0.3	0.3	4.0
2015년	10대	82.4	5.7	1.0	0.7	0.0	0.0	10.3
	20대	89.3	2.8	0.4	0.8	0.4	0.0	6.3
2016년	10대	87.6	4.4	1.2	0.0	0.0	0.0	6.7
	20대	94.0	2.4	1.9	0.2	0.0	0.0	1.5
2017년	10대	89.2	1.8	1.1	1.2	3.6	0.0	3.2
	20대	95.2	1.8	0.5	1.6	0.4	0.2	0.2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3, 2015, 2016, 2017).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음성통화 제외)

음성통화를 제외한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2017년 10대 청소년의 경우, 2시간 이상이 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2시간 미만 31.7%, 1시간 미만 13.9%의 순이었다. 20대의 경우, 2시간 이상이 6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2시간 28.7%, 1시간 미만 9.4%의 순이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10대의 경우 2011년 30.9%에서 2017년 54.5%로 불과 6년 사이에 23.6%p가 증가했다. 20대의 경우도 2011년 42.1%에서 2017년 61.9%로 19.8%p 증가했으나 증가폭이 10대 청소년에 비하면 적었다.

음성통화를 제외한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2017년 10대 청소년은 132.4분이고, 20대는 141.1분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보다 20대가 스마트폰을 8.7분 더 사용했다.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대 청소년이 10대 청소년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보면, 2011년 10대 청소년의 경우 104.1분에서 2013년 133.9분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124.4분으로 다시 감소한 후, 2016년 132.5분으로 증가 후 2017년에는 전년보다 0.1분 감소하였다. 20대는 2011년 120.7분에서 2013년 123.9분, 2015년 128.6분, 2016년 149.7분으로 10대 청소년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전년보다 8.6분 크게 감소하였다.

〈표 2-2-24〉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음성통화 제외)

(단위 : %)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평균(분)
2011년	10대	36.3	32.9	30.9	104.1
	20대	29.2	28.7	42.1	120.7
2013년	10대	19.8	47.9	31.3	133.9
	20대	20.7	54.6	24.7	123.9
2015년	10대	28.2	25.1	46.6	124.4
	20대	23.2	27.0	49.7	128.6
2016년	10대	20.6	25.9	53.5	132.5
	20대	15.9	25.8	58.3	149.7
2017년	10대	13.9	31.7	54.5	132.4
	20대	9.4	28.7	61.9	141.1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1, 2013, 2015, 2016, 2017).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3)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

2017년 청소년이 생각하는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를 보면, 10대 청소년은 정보검색 정보전달이 87.3%(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합함)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커뮤니케이션 74.5%, 미디어 콘텐츠 시청 72.6%의 순이었다. 20대도 10대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정보검색 정보전달이 88.5%(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합함)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커뮤니케이션 76.1%, 미디어 콘텐츠 시청 66.2%의 순이었다. 이것은 스마트폰이 커뮤니케이션보다 정보검색 정보전달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마트폰은 전화보다는 인터넷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10대와 20대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2-25〉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

(단위 : %)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정보검색 정보전달	10대	0.0	1.9	10.2	44.3	43.0	0.5
	20대	0.3	1.1	9.6	43.1	45.4	0.6
미디어 콘텐츠 시청	10대	1.6	3.4	21.9	45.1	27.5	0.5
	20대	2.3	4.8	26.1	40.8	25.4	0.6
커뮤니케이션	10대	0.0	1.1	23.8	37.8	36.7	0.5
	20대	0.8	3.4	19.1	36.9	39.2	0.6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7).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라. 매체 중요도

2017년 청소년의 매체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에서 10대는 78.8%가 스마트폰을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이 TV 11.6%, PC/노트북 6.2% 등의 순이었다. 20대 역시 스마트폰이 84.2%로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 TV 9.8%, PC/노트북 5.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잡지, 라디오, 신문, 서적 등은 0.0~1.2%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활자매체나 라디오는 덜 중요한 반면, 전자매체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해·재난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10대는 78.7%가 스마트폰을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 TV가 13.7%, PC/노트북 2.3%, 라디오 2.2% 등의 순이었다. 20대 역시 스마트폰이 82.2%로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TV 13.4%, 라디오 2.0%, PC/노트북 1.7% 등의 순이었다.

〈표 2-2-26〉 필수 매체 인식

(단위 : %)

구 분		TV	라디오	신문	잡지	PC/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서적	기타
일상생활시	10대	11.6	0.0	0.0	0.0	6.2	1.6	78.8	1.2	0.5
	20대	9.8	0.0	0.1	0.0	5.4	0.2	84.2	0.1	0.2

구분		TV	라디오	신문	잡지	PC/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서적	기타
비상상황 발생시	10대	13.7	2.2	0.9	-	2.3	2.2	78.7	-	0.0
	20대	13.4	2.0	0.1	-	1.7	0.4	82.2	-	0.1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7).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마.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2017년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6~19세는 2017년 영화 관람이 8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신문 읽기 66.8%, TV 시청 47.9%, 잡지·서적 읽기 26.2%, 라디오 청취 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해 볼 때, 모든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영화 관람과 TV 시청, 신문 읽기는 4.5~7.3%p 증가하였고, 라디오 청취와 잡지·서적 읽기는 1.6~1.9%p 증가하였다. 20대는 2017년 신문 읽기가 9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영화 관람 92.6%, TV 시청 71.2%, 잡지·서적 읽기 50.6%, 라디오 청취 32.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해 볼 때, 6~19세와 마찬가지로 모든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이 1.7~3.0%p 증가하였다.

〈표 2-2-27〉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률

(단위 : %)

구분		TV 시청	신문 읽기	라디오 청취	잡지·서적 읽기	영화 관람	
연령	6~19세	2016년	40.6	61.5	12.6	24.3	77.0
		2017년	47.9	66.8	14.2	26.2	81.5
	20대	2016년	69.2	97.5	29.3	47.6	90.0
		2017년	71.2	99.2	32.2	50.6	92.6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제3부 요약

제3부에서는 ‘청소년 권리·참여’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권리 및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과 청소년 참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과 국내에서 개최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관련 행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개소한 청소년희망센터는 청소년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기구로서, 청소년 권리교육 실시,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UN이나 EU 등 국제사회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지속적으로 운영·지원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기구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가 있다. 2018년 12월 기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230개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305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45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참여 분야)’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 참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소통·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청소년참여포털’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대표적인 행사로는 ‘청소년의 달 기념식’,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성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지도자대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제3부 청소년 권리·참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3

제1장 |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됨에 따라 국내 청소년정책은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협약에 명시된 비차별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확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위원회 도입,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2002년)」과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기본계획(2003~2007년)」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참여’가 주요 정책이념이 되는 정책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정책 참여기구가 만들어지고 청소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다음으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시민역량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중점과제 내의 세부추진 과제로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이 추진되었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이라는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였다.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청소년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자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을 활성화 하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의 정비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기본생활보장은 물론 청소년의 권리·참여, 안전·보호, 교육 및 여가 보장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2장 |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유엔총회’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아동권리협약, 2004년 9월에 2개의 선택의정서(①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②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를 비준하였다. 동 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돌봄과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국제연합의 선언을 상기하며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어떤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개발되도록 지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이념은 차별의 금지(제2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생명 존중(제6조), 아동의견 존중(제12조) 등이다.

동 협약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이행상황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후에는 5년마다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1차 및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1994. 8월, 2000. 5월)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각 보고서에 대한 권고문을 공표(1996. 2월, 2003. 5월) 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자체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3·4차부터 통합국가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2008. 12월) 하였고, 협약 제44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가정보 요청에 대해 제3·4차 추가보고서를 제출(2011. 7월) 하였으며 위원회는 권고문을 공표(2012년)하였다.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는 제3·4차 권고사항 이행결과를 협약 조항별로 작성하여 제출(2017. 12월)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추가정보 요청 및 심의(권고)가 2019~2020년(예정)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최초 국가보고서 심의(1996년)에서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1992~1996년)에 아동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비준 시 유보한 조항에 대한 철회 및 협약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권고하였다.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2003년)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1997년), 「청소년 보호법」 제정(199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2001년) 등 아동권리의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 일부조항 유보 유지, 다양한 부처에서 운영되는 아동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조정할 상설중앙기구 미설치, 정책수립단계에서의 시민사회와의 협력 부족,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미흡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정부는 ‘어린이보호·육성 종합계획(2002년)’, ‘아동안전 종합대책(2003년)’, ‘제3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2003~2007년)’ 등 아동 관련 종합대책 수립, 청소년 복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확대한 「아동복지법」 개정(2004~2007년)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한편, 아동권리 침해사태의 실질적 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보건복지부, 2006~2014년)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재 등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아동복지법」 개정(2004년)을 통해 ‘어린이주간’(5. 1.~5. 7.)을 제정·선포하고, ‘대한민국아동총회’ 및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심의(2012년)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를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2011년),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및 ‘장애인권리협약’ 비준(2006년, 2008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10년) 등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유보조항 철폐를 위한 노력, 교과 과정 내 아동권리 및 인권 관련 교육 확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2002년 유엔총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및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함에 따라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2003년)에서 제1 및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9월에 두 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제1선택의정서 제8조제1항 및 제2선택의정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각 선택의정서 이행에 대한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2007. 4월), 심의(2008. 6월) 받았다.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현역병 지원 입대 연령을 기존의 17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병역법」 개정(2004년)과 18세 미만의 아동을 무력분쟁에 참여하게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한 공군규정 개정(2005년)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무력분쟁 지역으로부터 온 망명 및 난민 아동을 접하는 자 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모든 전문가 대상 협약 및 선택의정서 인식 제고 및 교육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에서는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性)착취와 성범죄 행위로부터 아동보호 수준을 제고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2000년)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2004년) 등 성보호 관련 법률의 제·개정,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로 높인 민법 개정,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 추진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 경찰·판사·검사 등 선택의정서 이행 관련 국내 모든 전문가를 위한 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지원, 아동권리협약의 입양허가제 유보조항 철회 및 헤이그협약(1993년) 비준 등을 권고하였다.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자 제3·4차 추가보고서 제출 이후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성과와 진전상황 등을 포함하여 2017년 12월에 제출되었다.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입양특례법」 전부개정(2011. 8월), 입양허가 절차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2012. 2월) 등 입양제도를 보완하여 2017년 8월에 입양허가제 유보조항을 철회하였다. 또한, 협약의 기본원칙인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1. 7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월) 등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였다. 협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포스터 및 소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아동 관련 시설에 배포(2016년)하였으며, 협약의 정신을 반영한 ‘아동권리현장’을 제정(2016년)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 심의 전 협약 제4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고서 제출이후(2017. 12월~) 조항별 변경 사항 및 추가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 및 추가보고서(미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간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 노력 등을 평가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43

나. 청소년희망센터 운영

1) 추진배경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2008년 정부는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하여 운영모델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5월 중앙 차원의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로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차 위탁을 결정하였다. 그 후로 2012년 1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 2차 결정, 2013년 1월, 2013~2014년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차 위탁 결정, 2015년 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차 위탁 결정, 2016년 1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5차 위탁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청소년희망센터는 청소년 권리침해 및 권리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재와 국제적으로 낮은 한국 청소년의 권리 수준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을 홍보·교육하며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기반 조성, 권리 보호 강화 등 실천 이행 기관의 필요성 증대로 2017년 1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2) 사업근거(법령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8조의 2(교육 및 홍보)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다.

3) 사업목적

청소년 권리보호·증진 사업 필요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 반영 및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수행체계 마련으로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청소년 권리교육,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 권리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 권리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주요 사업내용

센터의 주요 사업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권리교육, ② 학교 밖·가출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③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양성(기초·심화·보수교육), ④ 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⑤ 청소년 권리교육 신청기관과 권리강사 매칭 시스템 활용한 연계지원, ⑥ 권리침해 유형별 검색 DB시스템 운영, ⑦ 청소년 권리교육 사업 홍보이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희망센터 051-662-3110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를 운영·지원하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화 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에 관한 UN총회 특별세션’과 ‘UN 세계청소년포럼’ 그리고 ‘UN 세계청소년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리스본 선언’ 등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 사회참여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청소년참여기구’를 운영하여 왔다.

UN에서는 각 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홍보하고 격려하고자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s: UN PSA)’을 시상하고 있다. 2012년 6월, 한국은 위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정책결정 참여부문에서 청소년참여기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청소년정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이 체계화·활성화 되는 가운데, 기관·단체·학계 등 현장의 지지와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청소년정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참여 기구이다. 정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12년 2월에는 기본적 권리로서의 청소년 참여권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근거법령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였으며,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법제화되었다(「청소년 기본법」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임시회의를 통한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 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2) 운영 현황

2018년 12월 기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총 230개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청소년자치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위원회별 운영규모는 10~30명 내외이며, 공개모집, 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성된 4,500여 명의 청소년이 2018년 현재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예산으로 17개 시·도에 대해 각 10백만 원(국비 5백만 원, 지방비 5백만 원), 171개 시·군·구에는 각 2백 8십만 원(국비 1백 40만원, 지방비 1백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1〉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단위: 개)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개소	194	197	204	216	221	230

자료: 여성가족부(2018).

〈표 3-2-2〉 2018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단위: 개)

여성 가족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	22	14	9	10	6	2	6	1	32	19	9	16	15	23	24	20	1	230

자료: 여성가족부(2018).

나. 청소년운영위원회

1) 목적 및 기능

전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998년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정책기조가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0년도부터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을 사업 지침에 담아 권장함으로써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4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급속도로 확대 설치되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시설 운영전반에 참여함은 물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청소년 대표로서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운영 현황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 2018년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 305개소에서 총 5,000여 명 청소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의 전용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 제안·참여·평가, 홍보활동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참여 청소년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매년 5개소씩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발하여 그 운영 결과와 성과를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공유하고 있다.

(표 3-2-3) 2018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4	14	9	12	6	10	7	1	62	32	15	13	16	14	13	15	22	305

자료: 여성가족부(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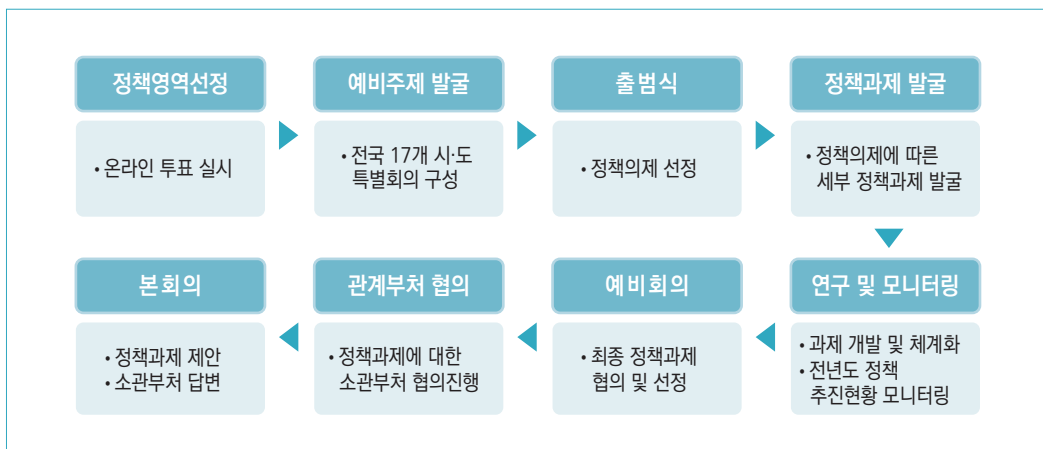
다. 청소년특별회의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참여기구이다.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선정된 정책의제에 따라 청소년 의견수렴과 토론,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한 후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제안한다.

[그림 3-2-1] 청소년특별회의 추진 절차



자료: 여성가족부(2018).

2) 운영 현황

2018년에는 청소년위원 등 450여 명이 참여하여 5~9월까지 지역회의별 논의 및 활동을 거쳐 선정된 3개 영역 22개의 정책과제를 본회의에서 보고하였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492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한 결과 88.6%인 436건의 정책과제가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연도	정책의제 및 과제	비고
2004 (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인권·참여(13개 과제 제안) - 시범사업: 청소년특별회의 연 1회 개최 정례화 	-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31개 수용 88.6%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5개 영역 37개 과제 제안 	33개 수용 89.2%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 청소년자원봉사·체험활동의 다양화 등 18개 과제 제안 	15개 수용 83.3%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29개 수용 82.9%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 20개 과제 제안 	14개 수용 70.0%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3개 영역 53개 과제 제안 	49개 수용 92.4%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87.0%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연도	정책의제 및 과제	비고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4개 수용 80.0%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올림이 되다. - 청소년 참정권 확대 등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90.9%

자료 : 여성가족부(2018).

특히, 청소년특별회의는 온라인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청소년 특별회의의 페이지¹⁾를 개설·운영하는 등 청소년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참여분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참여분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구성원 관계 개선, 지역사회 개발·개선, 청소년 권익 개선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제안 받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2년부터 참여·활동·보호 분야별로 운영되던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합함에 따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내 ‘참여분야’로 운영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공모를 통하여 75개 참여프로그램이 선정되어 활발히 활동하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9

마.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은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을 통해 수송시설,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혜택을 제공받게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2004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 청소년특별회의의 홈페이지: www.facebook.com/withy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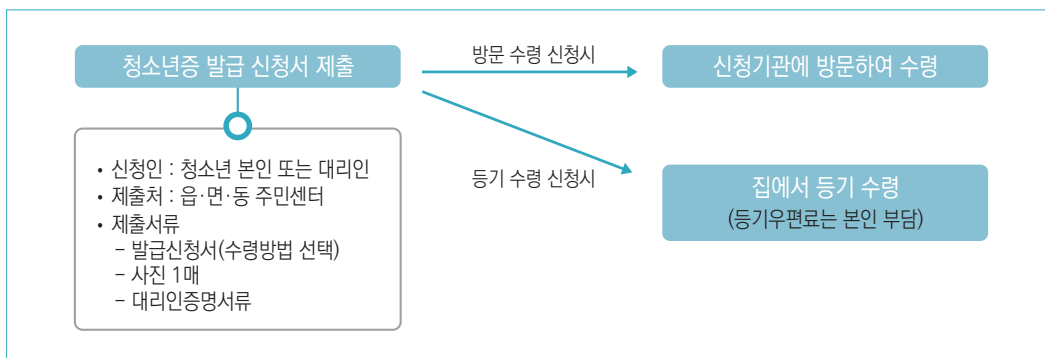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에게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이 발급한다. 2018년 현재, 청소년증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와 함께 사진 1매(반명합판)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분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기간은 14일 정도 소요된다. 2008년에는 이용 청소년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수 및 배송 직후에 발급 진행 상황을 SMS(Short Message Service)로 안내해 주었다. 또한 2011년에는 재발급 신청방법을 개선하여 청소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2014년에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증을 등기우편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 방법을 개선하였고,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2017년에는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대중교통 시설 및 편의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온라인²⁾에서 청소년증의 분실 및 분실철회 신고,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였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일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증은 위의 경제적인 혜택 외에도 예금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와 대학입시·검정고시·각종 경시대회에서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3-2-2] 청소년증 발급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18).

2)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표 3-2-5〉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2010년 이후 '행복e음시스템'으로 발급)

(단위: 건)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3 (시범)	515	436	-	-	-	-	66	-	-	-	13	-	-	-	-	-	-	-
2004	11,848	1,515	381	181	751	282	103	86	-	4,381	148	648	311	1,266	244	521	983	47
2005	14,120	1,781	672	214	353	61	287	105	-	1,966	85	995	4,275	450	175	1,597	677	427
2006	12,478	4,355	971	580	640	110	304	220	-	2,894	341	350	368	164	141	486	418	136
2007	24,455	6,975	1,724	1,754	1,676	318	607	640	-	6,243	428	479	855	498	390	810	893	165
2008	30,265	8,251	2,198	1,905	2,464	416	853	844	-	7,477	566	614	720	1,027	499	1,048	1,165	218
2009	33,656	8,480	2,492	2,212	2,216	509	917	897	-	8,863	835	845	765	1,066	616	1,229	1,440	274
2010	36,244	8,949	2,399	2,069	2,527	576	944	950	-	9,892	908	913	889	1,226	624	1,369	1,738	271
2011	40,898	9,992	2,868	2,304	2,642	813	885	1,060	-	11,007	1,071	1,129	1,205	1,437	718	1,438	2,008	321
2012	43,543	10,633	2,944	2,216	2,916	1,025	1,044	1,180	32	11,232	1,173	1,206	1,244	1,506	896	1,663	2,326	307
2013	49,438	10,624	3,202	2,573	3,012	1,215	1,446	1,590	110	12,555	1,773	1,362	1,733	1,776	1,130	1,935	2,906	496
2014	50,663	9,779	3,174	3,006	3,126	1,561	1,447	1,243	99	12,737	1,704	1,306	1,701	1,942	1,362	2,334	3,640	502
2015	93,536	9,619	3,899	3,406	3,828	1,899	2,403	2,490	473	24,187	3,585	2,519	3,488	3,407	4,143	14,179	8,253	1,758
2016	104,391	8,037	5,746	2,515	2,822	1,539	1,439	1,130	1,402	36,829	5,531	1,385	4,736	4,229	5,453	10,283	10,034	1,281
2017	188,562	13,609	11,890	8,616	5,180	6,037	4,646	3,791	2,460	63,327	9,626	3,631	9,181	9,203	7,248	12,676	14,134	3,307

자료 : 1) 한국조폐공사(2016).
2) 여성가족부(2018).

제3장 | 청소년 주요 행사

1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으며(「청소년 기본법」 제16조),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달 주제와 관련된 행사를 5월 중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한 제도 형성에 기여한 청소년과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유공자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표 3-3-1〉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 현황

(단위: 명)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계
2	4	8	16	98	128

자료 : 여성가족부(2018).

가. 청소년의 달 기념식

‘청소년의 달 기념식’은 청소년의 달의 의미를 공유하고, 청소년정책 발전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2015년 이래로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막식’과 통합하여 추진되고 있다.

〈표 3-3-2〉 ‘청소년의 달 기념식’ 주요 행사내용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청소년의 달 기념식	5. 24.(목), 전북 군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청소년 육성 및 보호유공자 포상 - 청소년 기념사 및 축하공연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미래 청소년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나.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대상 박람회로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경향과 방향을 모색하는 국내 유일의 범 청소년 축제의 장이다.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2018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전북 군산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박람회에서는 ‘청소년 정책 주장대회’, ‘청소년 모의 선거’ 등 청소년 주도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었다. 시민, 대학생 등 개최지역에 거주하는 7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박람회 성공을 견인하였다. 개·폐막식에는 특별히 군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발된 청소년 4명이 사회자로 무대에 올랐다.

또한 ‘청소년 도전 골든벨’, ‘청소년 동아리경진대회’, ‘청년 푸드트릭’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박람회 기간 동안 매일 진행된 멘토특강 프로그램에는 주한 호주대사인 ‘제임스 최’, 흥병희 서울대 화학과 교수, 스피드스케이팅 메달리스트인 이상화 선수,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가 연사로서 청소년들을 만났다.

2005년부터 개최된 박람회는 2008년부터 행사 장소를 서울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 광주, 2009년 대구, 2010년 부산, 2011년 대전, 2012년 서울, 2013년 인천, 2014년 경기, 2015년 경북, 2016년 경남, 2017년 전남, 2018년 전북에서 개최하였다.

〈표 3-3-3〉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행사개요 및 구성

구분	내 용																		
일시	2018년 5월 24일(목) ~ 5월 26일(토), 3일간																		
장소	전북 군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주최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군산시																		
주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후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사 구성 (세부 내용)	▶ 개막식 : 5. 24.(목) 14:00,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컨벤션홀 * 청소년의 달 기념식, 청소년정책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																		
	▶ 체험부스 : 141개 기관 참여, 173개 체험부스 운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808080; color: white;">구 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808080; color: white;">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미래존</td> <td>• IoT, 드론, VR, AI 등 최신 기술 체험 • 메이커 스페이스(Makerspace)를 통한 미래사회 체험</td> </tr> <tr> <td>진로존</td> <td>•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 유망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td> </tr> <tr> <td>행복존</td> <td>• 고민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및 적성검사 프로그램 • 인터넷 중독 진단·예방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td> </tr> <tr> <td>창의존</td> <td>• 창의력 증진을 위한 만들기 중심의 프로그램 • 예술·문화적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td> </tr> <tr> <td>안전존</td> <td>• 각종 재해 대응방법 및 응급처치법 교육 • 안전운전 시뮬레이션 및 가상 재난 대응 프로그램</td> </tr> <tr> <td>독립부스</td> <td>• 주최·주관기관 및 중앙부처 정책 홍보 및 체험</td> </tr> <tr> <td>이동부스</td> <td>• 버스형태 이동식 체험관 운영(전북소방본부 등)</td> </tr> <tr> <td>특수부스</td> <td>• 체험 위주 프로그램을 위한 특수 제작 부스(인공암벽 등)</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미래존	• IoT, 드론, VR, AI 등 최신 기술 체험 • 메이커 스페이스(Makerspace)를 통한 미래사회 체험	진로존	•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 유망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행복존	• 고민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및 적성검사 프로그램 • 인터넷 중독 진단·예방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창의존	• 창의력 증진을 위한 만들기 중심의 프로그램 • 예술·문화적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전존	• 각종 재해 대응방법 및 응급처치법 교육 • 안전운전 시뮬레이션 및 가상 재난 대응 프로그램	독립부스	• 주최·주관기관 및 중앙부처 정책 홍보 및 체험	이동부스	• 버스형태 이동식 체험관 운영(전북소방본부 등)	특수부스	• 체험 위주 프로그램을 위한 특수 제작 부스(인공암벽 등)
	구 분	내 용																	
	미래존	• IoT, 드론, VR, AI 등 최신 기술 체험 • 메이커 스페이스(Makerspace)를 통한 미래사회 체험																	
	진로존	•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 유망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행복존	• 고민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및 적성검사 프로그램 • 인터넷 중독 진단·예방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창의존	• 창의력 증진을 위한 만들기 중심의 프로그램 • 예술·문화적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전존	• 각종 재해 대응방법 및 응급처치법 교육 • 안전운전 시뮬레이션 및 가상 재난 대응 프로그램																	
	독립부스	• 주최·주관기관 및 중앙부처 정책 홍보 및 체험																	
이동부스	• 버스형태 이동식 체험관 운영(전북소방본부 등)																		
특수부스	• 체험 위주 프로그램을 위한 특수 제작 부스(인공암벽 등)																		
▶ 특별프로그램 - 멘토특강 : 제임스 최(주한 호주대사), 홍병희(서울대), 이상화(대한민국 국가대표), 강성태(공부의 신 대표) - 청소년참여프로그램 : 청소년정책주장대회,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모의선거, 어울림마당 등 - 학술 및 세미나 : 청소년행복토크콘서트, 청소년지도자세미나, 시민청소년행복포럼 등																			
▶ 폐막식 : 5. 26.(토) 17:00,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컨벤션홀 * 우수부스 시상, 청소년동아리 공연, 차기 개최도시(경기 수원) 박람회기 전수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18).

〈표 3-3-4〉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황

구분	기간	장소	주제	주최	주관	후원
제1회	2005. 5. 21. ~ 5. 22.	서울무역전시장 (서울)	“청소년,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제2회	2006. 5. 19. ~ 5. 21.	서울무역전시장 (서울)	“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가청소년 위원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제3회	2007. 6. 1. ~ 6. 3.	코엑스 컨벤션홀 (서울)	“청소년 미래비전”	국가청소년 위원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산업자원부, 노동부, KTF, LG전자, 내셔널지오그래픽, 알파
제4회	2008. 5. 29. ~ 6. 1.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희망/기회/ 성취의 빛”	보건복지 가족부, 광주광역시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제5회	2009. 5. 28. ~ 5. 31.	EXCO전시 컨벤션센터 (대구)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디자인하다.”	보건복지 가족부, 대구광역시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제6회	2010. 5. 27. ~ 5. 31.	부산 BEXCO (부산)	“청소년의 꿈을 찾아!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아!”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교육청
제7회	2011. 5. 26. ~ 5. 28.	대전 컨벤션 센터 (대전)	“웃어라, 청소년! 빛나라, 내일아!”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제8회	2012. 5. 24. ~ 5. 26.	SETEC (서울)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제9회	2013. 5. 23. ~ 5. 25.	송도컨벤시아 (인천)	“건강한 청소년, 함께 하는 열린 세상”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에너지관리공단
제10회	2014. 10. 23. ~ 10. 25.	KINTEX (경기)	“꿈을 만나 행복을 만들다.”	여성가족부, 경기도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분	기간	장소	주제	주최	주관	후원
제11회	2015. 5. 21 ~ 5. 23.	구미코 (경북)	"나는 국가대표다.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상북도 청소년 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회	2016. 5. 12 ~ 5. 14.	창원 CECO (경남)	"꿈꾸는대로 미래를 디자인 하라"	여성가족부, 경상남도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상남도 청소년종합 지원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제13회	2017. 5. 25. ~ 5. 27.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전남)	"꿈꾸는대로 미래를 디자인 하라"	여성가족부, 전라남도, 여주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전라남도 미래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제14회	2018. 5. 24. ~ 5. 26.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 (전북)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전북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다. 성년의 날

‘성년의 날’은 ‘성년’(만 19세)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성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1973년 매년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1975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게 됨에 따라 5월 6일로 변경되었고, 1985년부터는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2018년에는 5월 21일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1999년생)들이 참석하여 참여 프로그램, 성년선언문 발표, 특별강연, 축하공연 등을 통해 성년을 맞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3-3-5〉 ‘성년의 날’ 기념행사 현황

구분	기간	장소	내용	주최	주관	인원
2012	2012. 5. 21.	한국프레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전시상식 • 성년다짐발표 및 서명식 • 특별강연(조벽 교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00여 명
2013	2013. 5. 20.	광화문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대사(주니엘) 팬사인회 • 성년다짐발표 및 서명식 • 성년축하 뮤지컬 • 멘토강연(강남구 작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00여 명
2014	2014. 5. 18.~19.	국제청소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박 2일 성년캠프 • 내인생설계하기 • 버킷리스트 작성 • 공연(세로토닌 드럼스쿨) • 특별강연(이시형 박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90여 명
2015	2015. 5. 18.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년을 맞는 청소년이 말하다 • 성년다짐발표 • 열정을 깨워라(퍼포먼스) • 떡케이크 커팅식 • 특별강연 및 공연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00여 명
2016	2016. 5. 16.	KT스퀘어 드림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포그래픽 전시 • 성년의 날 명함 만들기 • 성년다짐발표 및 서명식 • Beautiful Balance(퍼포먼스) • 특별강연(안영일) 및 공연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20여 명

구분	기간	장소	내용	주최	주관	인원
2017	2017. 5. 15.	AW컨벤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 하나의 나, 사인 만들기 • 성년다짐발표 • 슬로건 리본 커팅(퍼포먼스) • 공연(진보라, 허진호) • 특별강연(최인아, 김수영)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100여 명
2018	2018. 5. 21.	백범김구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토존 • 버킷리스트 캘리그래피 • 공모전 시상식 • 성년선서 • 축하세리머니 • 성년인터뷰 • 공연(오브젝트) • 특별강연(강상균, 김수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120여 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3

2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는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교류와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5년 처음 실시 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1년에는 “청소년의 꿈! 지도자의 열정! 희망찬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토론회,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공모를 통하여 청소년지도자대회 CI를 제작·선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2018년에는 ‘청소년과 함께 하는 우리,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9월 14일 개최하여, 청소년지도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청소년지도사 윤리헌장 선언, 올해의 청소년지도자 시상 등을 진행하였다.

〈표 3-3-6〉 유공자 포상 현황

(단위 : 명)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계
1	2	10	13

자료 : 여성가족부(2018).

〈표 3-3-7〉 역대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구분	기간	장소	주관	참여 인원	주제	주요 프로그램
제1회	2005. 9. 26. ~ 27.	올림픽파크텔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1,000여 명	청소년지도자의 삶과 도전 그리고 희망	기념식, 위원장과 대화, 콜로키움, 청소년 지도자의 밤 등
제2회	2006. 12. 8. ~ 9.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700여 명	청소년지도자! 희망을 이끄는 사람들	개회식, 배워봅시다, 청소년지도자의 밤 및 교류회, 한마음 체육대회
제3회	2007. 9. 16. ~ 17.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4개 협이기구 공동주관)	1,500여 명	꿈과 희망을 여는 사람들, 우리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의 날 전야제 (축하공연, 기념식, 지도자 경연대회), 교류회, 청소년 지도자 체육대회(대동제)
제4회	2008. 12. 19. ~ 20.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1,000여 명	아동·청소년 지도자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소통의 장(단합, 민속 공연), 만남의 장(지도자 비전 공유), 화합의 장(지도자 친선 교류), 도약의 장(명랑 운동회 등)
제5회	2009. 8. 28. ~ 29.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750여 명	꿈 + 미래, 행복 공감 지도자대회	주제발표 및 토론, 아동청소년서비스 및 프로그램 발전방안 기념식, 우수 운영사례 경진 대회, 단합대회
제6회	2010. 10. 19.	올림픽파크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여 명	만남+소통+공감 = 청소년지도자의 행복	창의적체험활동 발표, 분야별 우수사례 발표, 제4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 소개, 기념식, 올해의 지도자상 수상, 결의문 낭독 등

구분	기간	장소	주관	참여 인원	주제	주요 프로그램
제7회	2011. 9. 27.	서울교육 문화회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1,000여 명	청소년의 꿈! 지도자의 열정! 희망찬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에 대한 주제강연, 기념식(주제영상, 비전선언, 지도자의 다짐, CI 선포), 열린토론회, 상호교류의 밤 등
제8회	2012. 9. 21. ~ 22.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꿈의 날개! 열정의 비상! 함께 만드는 희망 대한민국!	우수사례 발표, 주제강연, 기념식(올해의 지도자상 시상, 주제-축하영상) 지도자 상호교류의 장, 한마음 어울림마당 등
제9회	2013. 9. 27. ~ 28.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청소년의 꿈과 행복!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힐링페스티벌, 정책강연, 기념식(올해의 지도자상 시상, 주제 축하영상), 축하공연, 화합 및 교류의 장, 한마음 어울림마당 등
제10회	2014. 9. 24.	AW컨벤션 센터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꿈과 희망을 이끄는 청소년지도자들의 비상(飛上)	소통의 장(포토존, 기수상자와의 만남, 정책강연), 격려의 장 (올해의 청소년 지도자상 시상, 기념 퍼포먼스, 구호제창), 화합의 장 등
제11회	2015. 9. 24.	AW컨벤션 센터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대한민국 청소년의 꿈과 끼! 청소년지도자가 함께 합니다.	식전행사(청소년활동 전시, 토크콘서트 등), 본행사 (오프닝공연, 주제영상 상영, 시상식, 축하공연 등), 식후행사(특강, 교류 및 화합의 시간, 만찬 등)
제12회	2016. 11. 17. ~ 18.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청소년 희망의 별! 빛나는 청소년 지도자!	식전행사(포토존 히스토리 전시), 본행사(오프닝공연, 주제영상, 시상식, 축하공연 등), 식후행사(생생토크, 만찬)
제13회	2017. 9. 14. ~ 15.	천안상록리조트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지도자의 행복! 청소년의 희망으로~	식전행사(사랑의 책 나눔), 본행사(오프닝공연, 축하영상, 시상식, 퍼포먼스 등), 식후행사 (교류 및 화합의 시간 등)

구분	기간	장소	주관	참여 인원	주제	주요 프로그램
제14회	2018. 9. 14	AW컨벤션 센터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530여 명	청소년과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미래	식전행사(포토존, 감동계단,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준), 본행사(오프닝 공연, 청소년지도사 윤리헌장 선언, 청소년 유공 지도자 시상식, 청소년이 말한다, 청소년지도자 답변, 청소년지도자 발언대, 퀴즈대회, 만찬)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3

3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개인·단체 및 바른 성장으로 또래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청소년푸른성장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성인 부문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저한 업적을 5년 이상 쌓은 개인이나 단체, 청소년 부문은 1년 6월 이상 스스로 노력하여 바르게 성장하거나 다양한 참여·봉사활동으로 주위에 도움을 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청소년 개인 또는 동아리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총 5천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성인 부문 개인 1,500만원, 단체 2,000만원, 청소년 부문 청소년 개인 150만원, 동아리 15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후보자 추천기회를 확대하여 숨은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청소년 분야의 활동이 있는 기관 및 단체 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표 3-3-8〉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개최 현황

연도	주최	주관	시상 부문	상금	위원장	시상식		
						일자	장소	참석자
2009	보건복지 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5개 부문 (활동, 복지, 정책, 학술, 미디어)	각 10백만원	박완서 (서울대 명예문학 박사)	11. 30.(월) 16:00	대한상공 회의소	250여 명
2010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4개 부문 (활동, 복지, 보호, 청소년)	개인 10백만원, 단체 15백만원, 청소년 상품권 (20만원), 동아리 1백만원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2. 3.(금) 15:00	MBC 여의도 공개홀	250여 명
2011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원, 단체 15백만원, 청소년 상품권 (50만원), 동아리 1백만원	유인촌 (극단 유시어터 대표)	11. 25.(금) 15:00	MBC 여의도 공개홀	250여 명
2012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원, 단체 10백만원, 청소년 상품권 (50만원), 동아리 1백만원	최불암 (어린이재단 전국 후원회 회장)	11. 16.(금) 14:00	MBC 여의도 공개홀	250여 명
2013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원, 단체 10백만원, 청소년 상품권 (50만원), 동아리 1백만원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	12. 6.(금) 14:00	MBC 드림센터 공개홀	250여 명
2014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원, 단체 10백만원, 청소년 50만원, 동아리 1백만원	나승일 (서울대 교수)	12. 18.(목) 14:00	MBC 상암동 공개홀	250여 명
2015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원, 단체 10백만원, 청소년 50만원, 동아리 1백만원	나승일 (서울대 교수)	12. 3.(목) 14:00	MBC 상암동 공개홀	250여 명
2016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5백만원, 단체 5백만원, 청소년 100만원, 동아리 150만원	배규한 (백석대 교수)	12. 15.(목) 14:00	MBC 골든 마우스홀	250여 명

연도	주최	주관	시상 부문	상금	위원장	시상식		
						일자	장소	참석자
2017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5백만원, 단체 10백만원, 청소년 100만원, 동아리 150만원	최영희 (사단법인 탁틴내일 이사장)	12. 15.(금) 14:00	AW컨벤션 센터	200여 명
2018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5백만원, 단체 20백만원, 청소년 150만원, 동아리 150만원	최영희 (사단법인 탁틴내일 이사장)	12. 12.(수) 15:00	대림미술관 디라운지	100여 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제4부 요약

‘제4부 청소년활동’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청소년의 국제교류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는 청소년의 여유시간 활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청받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진로체험 분야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건강증진 관련 활동을 추가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활동은 청소년의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건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같은 문화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편,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청소년의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2월 현재까지 인증된 수련활동은 총 1,327개 기관, 8,304건에 이르며, 3,725건의 인증 수련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고제도를 통해 수련활동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 요소를 점검할 수 있고, 범죄 경력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청소년교류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환경문제 등을 고민 해보고 그 해결 방안으로 봉사활동을 스스로 기획·실행 해 보는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을 4개 시도에서 운영하였다.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청소년 교류활동의 경우, 2018년에는 13개국 파견 146명, 초청 176명 등 총 322명이 국가 간 청소년교류활동에 참여하였다. 2017년에는 한·중 청소년 교류의 실질적이고 파급적인 효과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발전 모델 개발 및 교류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내 총 10개 대학 약 1,000여명의 국내체류 중국유학생과 한국대학생의 청소년교류 활동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대상국가를 중국에서 다국가(34개국)로 확대하여 14개 대학 약 1,300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모형을 확장하였다. 아울러, 민간 청소년단체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청소년포럼, 세계야영대회 등 국제청소년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이 외에도 민간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국제 청소년단체와 국내 청소년단체의 교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국제교류·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4부 청소년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지원

제2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4

제 1 장 | 청소년활동지원

1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활동분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활동분야)’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유도 및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발굴·확산을 통하여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 역사·문화예술, 가족·인성·건강증진, 과학·환경, 모험,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한다.

2012년부터 활동·참여·보호 분야별로 운영되던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합함에 따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내 ‘활동분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민주시민·사회정서·STEAM·메이커 활동(9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60개 활동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표 4-1-1〉 2018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단위 : 개, 천원)

활동영역	선정 프로그램 수	지원 금액
1. 진로·직업	12	100,100
2. 과학·환경·4차 산업	11	123,800
3. 모험·봉사	8	56,250
4. 문화·예술·역사	9	85,100
5. 가족·인성·건강증진	11	91,250
6. 특별과제(민주시민·사회정서·STEAM·메이커)	9	151,500
계	60	608,000

자료 : 여성가족부(2018).

2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이 예술·스포츠·동아리·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통하여 입시위주의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의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을 들 수 있다.

가.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동아리활동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스포츠·과학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특기·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적 활동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시·도별 청소년 시설 및 각급 학교(초·중·고·대학교)의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해 우수청소년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2,500개의 청소년동아리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표 4-1-2〉 전국 청소년동아리 지원 현황

(단위: 개)

구분	동아리 지원 수	구분	동아리 지원 수
서울	440	강원	158
부산	139	충북	76
대구	122	충남	97
인천	93	전북	109
광주	74	전남	74
대전	115	경북	160
울산	49	경남	145

구분	동아리 지원 수	구분	동아리 지원 수
세종	14	제주	101
경기	534	합계	2,500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나.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이 생활권 주변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놀이 체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진행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표현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들의 욕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지자체경상보조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며, 2004년과 2005년에는 8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었다. 2006년부터 11개 시·도로 확대되었고, 5개 시·도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16개 시·도, 90개 시·군·구로 청소년어울림마당이 확대·실시되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16개 대표 어울림마당과 110개 시·군·구 어울림마당이 운영·지원되고 있다.

〈표 4-1-3〉 전국 시·도별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현황(2011~2017년)

(단위: 개)

구분	어울림마당 지원 수		구분	어울림마당 지원 수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서울	1	11	강원	1	6
부산	1	6	충북	1	6
대구	1	7	충남	1	6
인천	1	4	전북	1	6
광주	1	5	전남	1	6
대전	1	4	경북	1	8
울산	1	2	경남	1	11

구분	어울림마당 지원 수		구분	어울림마당 지원 수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세종	-	1	제주	1	1
경기	1	20	합계	16	110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48/6258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가. 추진배경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청소년의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문화적 역량을 개발·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기반 확립과 학교 교육과 연계한 활동 지원의 확대 요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4년 2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인증으로 양질의 활동기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인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용성’, ‘공공성’, ‘안정성’을 강조한다. 또한, 인증 받은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진로탐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인증제 추진 현황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2006년 3월부터 시작되어, 당해연도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 15인을 위촉하고, 인증심사원 192명을 선발하여 5월 인증접수를 시작으로 79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였다.

2007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인증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인증기준과 인증심사 절차의 간소화,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개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업무의 효율적 연계 운영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증심사원 91명을 추가 선발하여 283명의 인증심사원 인력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증심사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인증제 운영규정과 인증심사원 운영규정을 통합·개정하여 제도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인증 받은 활동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 기획과 만족도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제도 홍보와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부모 참관단(32명)을 구성하여 시범·운영하였다.

2009년에는 제2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고, 인증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설문조사, 현장전문가 회의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 인증수련활동 참여기록을 등재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교육정책과 인증제도와와의 연계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소년관련 학과를 설치한 9개 대학과 대입 시 가산점 반영을 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학부모참관단(107명)을 운영하고,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활동영역별 효과성 측정 연구를 통해 인증수련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0년에는 참여 청소년의 확대를 위한 중·단기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입학 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MOU 체결 대학: 15개교). 인증심의 317건 중 250건이 인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70건의 이행여부 확인을 실시하여 인증프로그램의 신뢰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에는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제도개선연구와 함께 정부부처 주관 활동프로그램 인증이 추진되었으며 인증심사원 연수와 인증제 담당자 직무연수를 연계 운영하여 인증제 담당자의 역량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지표 추가 개발 연구(건강보건활동, 자기계발 활동 영역)를 통한 각 영역별 역량 강화와 2개 지방자치단체(도청, 교육청) 및 11개 대학과 업무 협약 체결을 한 결과, 인증수련활동기록을 이용하여 대학교에 입학한 사례가 나타나 인증제가 내실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는 인증심사원 41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전문심사원을 활용한 지역별 프로그램개발 워크숍을 운영하고,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홍보하는 청소년·학부모모니터단(216명)을 구성·운영하고 인증제 홍보동영상 제작, SNS 개설, 웹메일 발송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행여부 자체 점검(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제3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국가제도로서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참여대상의 확대·다변화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운영담당자교육이 시작되었고, 인증기준을 공통기준 14개에서 6개로 통·폐합하여 인증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여 심사대상을 현실화 하였으며 수시점검 도입, 변경항목 세분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개정(2014. 7. 2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모든 인증 신청 프로그램에는 안전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청소년활동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 등 제도 수혜자의 인지도 개선을 위하여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 인증제 설명회를 통한 교육을 정례화 하고, 다양한 인증제도의 참여 대상자별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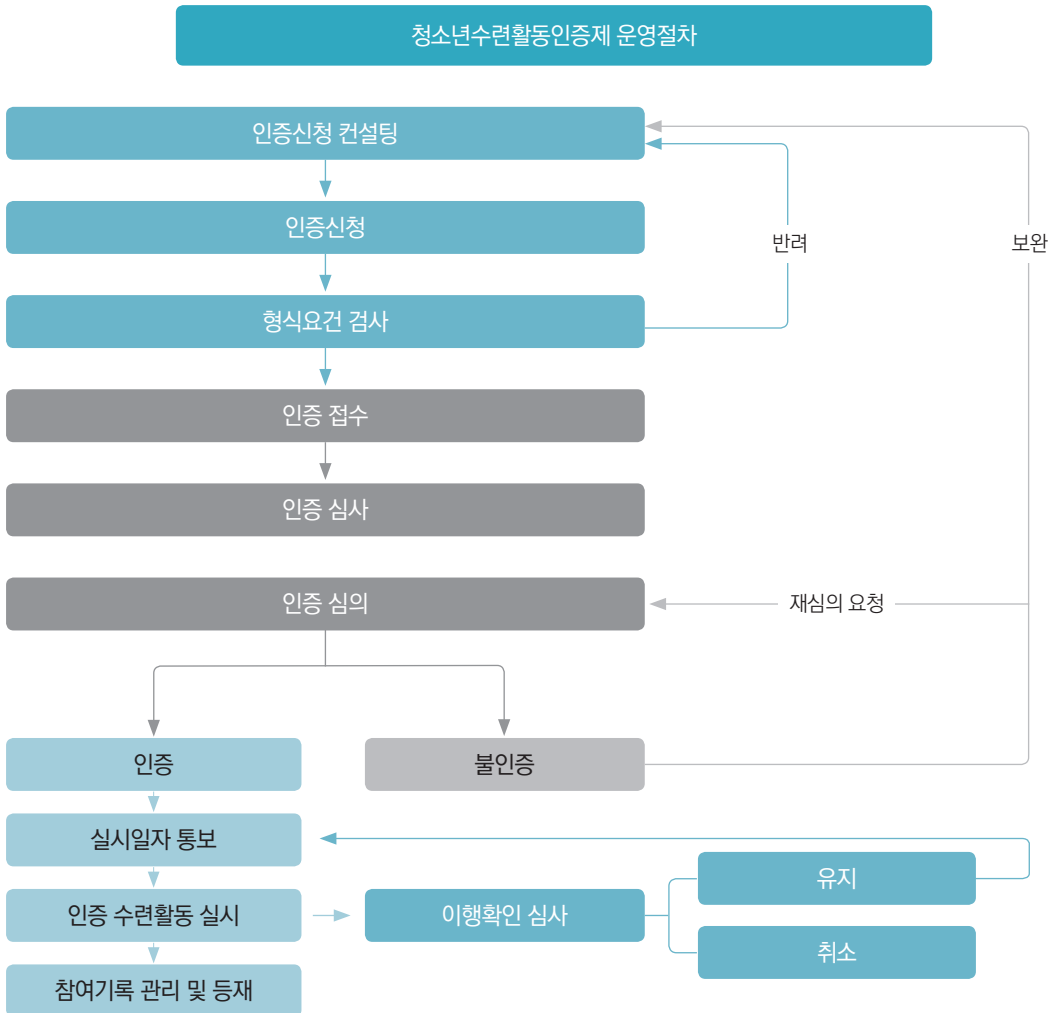
2015년에는 인증위원회의 구성과 안전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2015. 2. 3.)시 신설되어 신규로 안전전문가 2인, 법조인 1인을 위촉하였다.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의무인증)에 대한 현장심사 및 이행확인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의 인증제 지원 및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할 상근심사원 20명을 선발하여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배치하였다.

2016년에는 인증제도의 전문성 강화와 참여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을 인증제 운영규정과 인증심사원 운영규정으로 분리하였다. 이는 심사원 전문성 강화, 사후관리체계 명확화, 현장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9개 분야에 걸친 자문위원을 위촉(10명)하였고, 인증제 시행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인증마크를 선포하였으며, 2015년 5,000호 인증에 이어 1년 만에 6,000호 인증을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도 성장하였다.

2017년에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유형을 신설, 별도의 인증기준과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개별단위 프로그램의 인증 도입, 지도자 배치기준의 현실화, 수시 점검 확대 운영 등 안전한 활동 환경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8년에는 집라인, 래프팅 등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과 드론 등 안전 고려 활동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인증신청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간편 인증신청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제출되는 중복 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제출하였던 31개의 증빙서류를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반영 및 같음 등을 통해 19개로 행정서류를 간소화하였다.

[그림 4-1-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절차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다. 인증기준 및 인증수련활동 현황

수련활동 인증신청은 상시적으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접수된 청소년수련 활동은 1개 프로그램당 2명의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하고, 인증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하게 된다. 인증기준은 국내 청소년활동과 국제 청소년활동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인증기준은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었다. 공통기준은 활동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등 3가지 영역, 개별기준은 숙박형과 이동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과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은 특별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표 4-1-4〉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영역/유형		인증기준	확인요소
공통 기준	1. 활동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	9
		2. 프로그램 자원운영	
	2. 지도력	3. 지도자 전문성 확보계획	8
4. 지도자 역할 및 배치			
3. 활동환경		5.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7
		6. 안전관리 계획	
개별 기준	활동 유형	숙박형 1. 숙박관리, 2. 안전관리인력확보, 3. 영양관리자 자격	5
		이동형 1. 숙박관리, 2. 안전관리인력확보, 3. 영양관리자 자격, 4. 휴식관리, 5. 이동관리	7
특별 기준	위험도가 높은 활동	1. 전문지도자의 배치 2. 공간과 설비, 안전관리	4
	학교단체 숙박형	1.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관리	3

- 주 : 1) 프로그램: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기획 여부와 내용 구성, 평가·환류체계의 포함 유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
 2) 지도력: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 여부, 프로그램 내용 및 청소년 참여 인원 수 대비 지도자 배치 수의 적정성, 안전고려활동 운영 시 유자격자 등 배치 여부를 확인.
 3) 활동환경: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활동환경이 제공될 수 있는 가를 공간과 설비, 사용여건, 보험 가입 등으로 확인.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표 4-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유형 구분

활동유형	내 용
기본형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서,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1일 1시간 이상의 각 회기로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
숙박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학교단체 숙박형	학교의 장이 참가를 승인한 활동으로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개별 단위프로그램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현재까지 인증된 수련활동은 1,327개 기관 8,304건이며, 이 중 11건은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통해 취소되고, 4,520건은 인증유효기간이 종료, 48건은 철회되어 2018년 12월 말까지 총 3,725건의 인증 수련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표 4-1-6〉 연도별 인증제 운영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인증신청	132	352	508	348	340	329	276	1,291	2,895	2,026	1,317	1,517	2,095	13,426
인증	79	284	443	255	265	242	212	778	1,558	1,301	824	764	1,299	8,304
유지	79	359	802	1,057	1,297	1,382	1,314	1,702	2,971	3,743	4,146	4,159	3,725	3,725
종료	-	-	-	-	52	191	339	231	277	527	406	764	1,733	4,520
철회	-	5	4	12	3	-	3	11	10	-	-	-	-	48
취소	4	-	-	-	-	-	-	1	3	2	-	1	-	11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12.).

〈표 4-1-7〉 기관 유형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	1	3	1	1	1	3	-	1	8	23	6	5	53
공공기관	5	17	13	4	6	4	2	8	31	27	22	28	51	218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학교/교육청	-	-	-	3	2	3	2	4	14	38	7	3	7	83
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	20	165	273	139	175	120	85	127	215	185	149	128	162	1,943
청소년수련원	24	33	37	31	18	56	29	337	499	461	206	279	586	2,596
청소년문화의집	9	44	76	38	38	33	66	40	86	75	113	98	124	840
야영장, 유스호스텔	-	2	1	7	1	6	6	94	147	31	21	47	59	422
청소년보호복지시설	1	16	20	17	9	6	3	8	11	5	14	11	4	125
청소년단체	11	4	13	10	6	4	2	14	44	7	4	4	0	123
일반	9	2	7	5	9	9	14	146	510	464	265	160	301	1,901
합계	79	284	443	255	265	242	212	778	1,558	1,301	824	764	1,299	8,304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12.).

〈표 4-1-8〉 인증수련활동 보유기관별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건)

구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교육청	청소년수련시설						복지 시설	청소년 단체	일반	합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 의집	유스 호스텔	야영장	특화 시설				
보유기관	41	10	169	141	175	26	6	3	16	11	313	911
유지건수	113	47	523	1,403	303	114	43	8	32	15	1,034	3,725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12.).

4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가. 추진배경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 11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로 도입되어 2014년 7월부터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로 신고 대상과 활동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신고제도를 통해 수련활동의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 운영 전반에 관한 안전 요소를 점검하게 되고, 범죄 경력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지도자의 참여를 막을 수 있으며, 안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수련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 수리된 활동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¹⁾ 등에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학부모 등 정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쉽게 수련활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활동 선택과 참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나.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요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 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서류를 갖추어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 www.youth.go.kr

〈표 4-1-9〉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요건

구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수리 주체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부서)	
신고 주체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 단체)	
신고 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의 청소년(9~18세) ※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하고, 모집 예정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	
신고대상 활동범위	숙박형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비숙박형 중 일부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해당 활동)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다.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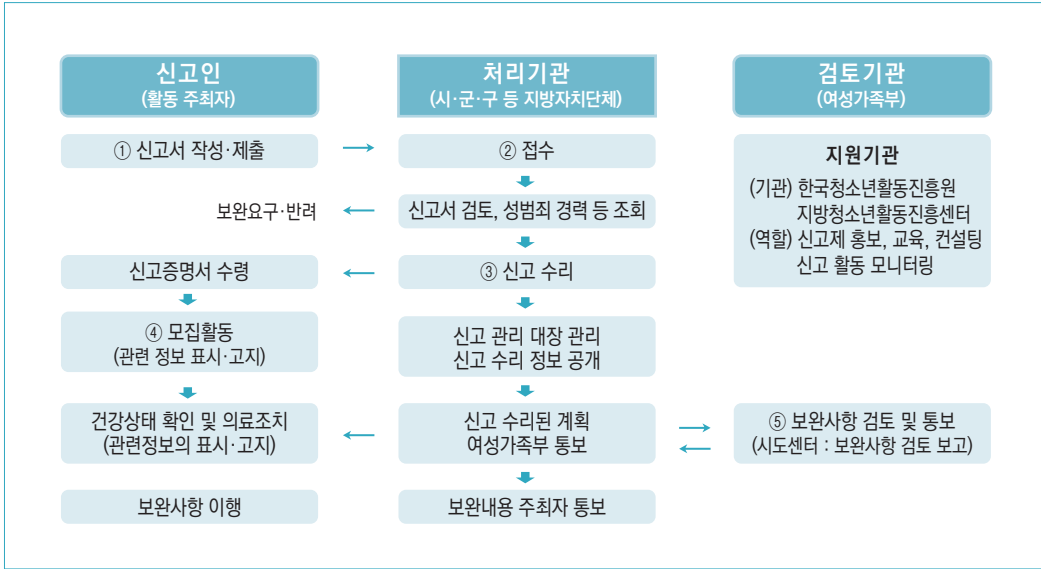
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14일 전에 운영계획서,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세부내역서,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주최자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소관과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는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²⁾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처리기관에서 구비서류의 요건을 점검하고, 주최자 등의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 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 되지 않은 경우 반려한다. 신고 수리 후 처리기관 관할 지자체에서는 신고 수리된 계획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계획을 검토한 여성가족부는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기관에 보완사항을 통보하며, 처리기관은 주최기관에 지적된 보완사항을 통보한다.

활동 주최자는 신고 수리 사항 중 안전점검, 보험가입, 수련활동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모집활동 및 계약 시 인쇄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고지하여야 하고,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활동 실시 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활동 시작 3일 전까지 그 사유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 홈페이지: www.youth.go.kr

[그림 4-1-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수리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라. 신고 현황

2018년 말까지 신고 수리된 청소년수련활동은 경기도가 4,09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가 1,917건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순으로 신고 된 수련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0> 지역별 신고 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서울	42	357	309	409	406	396	1,917
부산	5	123	131	236	300	308	1,103
대구	4	54	37	53	63	79	290
인천	8	128	174	144	136	156	746
광주	3	29	36	45	57	86	256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대전	4	84	84	98	112	114	496
울산	4	29	27	24	32	22	138
세종	-	2	5	2	4	5	18
경기	40	540	782	814	978	927	4,097
강원	15	130	283	378	478	490	1,777
충북	1	57	242	340	339	324	1,306
충남	25	184	306	289	329	344	1,476
전북	10	233	344	384	327	310	1,609
전남	6	86	161	212	284	358	1,108
경북	3	185	232	220	192	175	1,007
경남	7	233	443	344	300	299	1,627
제주	3	25	87	61	67	76	319
전체	180	2,479	3,683	4,053	4,404	4,469	19,289

자료 : 여성가족부(2018).

〈표 4-1-11〉 시설 유형별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청소년수련관	61	656	764	846	878	858	4,063
청소년수련원	33	972	2,027	2,222	2,498	2,598	10,350
청소년문화의집	21	235	232	257	304	337	1,386
청소년특화시설	-	25	69	29	38	40	201
청소년야영장	1	11	23	50	52	13	150
유스호스텔	14	173	221	268	276	241	1,193
기타(영리법인, 단체 등)	50	407	347	381	358	382	1,925
전체	180	2,479	3,683	4,053	4,404	4,469	19,288

자료 : 여성가족부(2018).

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가. 제도 현황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Korea)’는 1956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군인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135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총괄하는 ‘국제포상협회(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에는 ‘국가운영기관(National Award Operator)’ 70개국과 ‘독립운영기관(Independent Award Center)’ 65개국(380개소)이 속해 있으며, 유럽·지중해·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메리카 지역에 사무국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비경쟁성, 평등성, 균형성, 성취지향성, 과정 중시성, 지속성 등의 10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참여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 14세부터 만 24세까지로, 만 25세 생일 전까지 포상활동을 마칠 수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상활동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 단련, 탐험 4가지 활동이며 주어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금장 활동일 경우 4가지 활동에 더불어 추가로 합숙활동을 해야 한다. 포상단계는 동장(6개월), 은장(6~18개월), 금장(12~18개월)으로 4가지 활동영역 모두 포상활동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표 4-1-12〉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구분	봉 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 험	합 숙
금장 16세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3박 4일	4박 5일 ※ 금장 단계에 한함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은장 15세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박 3일	-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구분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합숙
동장 14세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박 2일	-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나. 포상제 추진 현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국제포상협회(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로부터 2008년 독립 운영기관 자격을 취득(2008년 5월)하였고, 2009년 10월 다음 단계인 임시회원국가(Provisional Membership)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포상제의 한국사무국으로서 2010년 아시아·태평양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10월 24~30일)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국제성취포상제 신규 제도에 의하여 세계 최초 정회원으로 승격되었으며 2014년 국제금장총회를 유치하여 동 제도의 국내 참가자 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포상제는 2008년과 2009년에 2단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는 한국사무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사무국과 중앙 운영기관 체제를 적용하였다. 2010년부터는 참여 청소년들의 활동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정보시스템³⁾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정보시스템 개발로 인해 포상활동 기록의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청소년 활동 기록의 포트폴리오 변환 기능 및 인증 시스템으로 관련 기록이 진학 및 취업 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상제는 포상 자체보다는 포상 활동 과정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상 활동에서 도전에 대한 실패는 없다. 다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여 도전한다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참여 청소년들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도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3)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 www.youth.go.kr

〈표 4-1-1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참가청소년	포상청소년	포상담당관	운영기관
2008년	352	-	162	15
2009년	2,139	398	1,198	194
2010년	4,169	457	1,830	309
2011년	3,692	663	1,569	220
2012년	4,398	587	1,787	214
2013년	3,823	582	1,048	139
2014년	1,498	497	1,197	137
2015년	2,226	409	567	111
2016년	1,996	588	528	95
2017년	2,021	803	778	97
2018년	1,895	845	336	53
연도별 누적계	28,209	5,829	11,000	1,063

주 : 1) 2008년 시범사업 시행으로 7월부터 청소년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포상을 받기 위한 가장 낮은 단계 동장은 평균 7~8개월 소요되어 2008년에는 포상 청소년이 없음.

2) 운영기관 누적계는 2014년도에 취소·철회한 기관 수(193개)를 반영한 수치임.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사업부 02-330-2875

6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Korea Achievement Award)

가. 제도 현황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Korea Achievement Award)’는 2008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Korea)를 모태로 2010년부터 연구되었으며, 2011년부터 3년 간 현장적용을 위한 단계별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2014년부터 정식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17개 전국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10개 중앙운영사무국(주요 청소년단체 및 종교단체로 구성)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성취지향적 활동, 단계적활동, 스스로하는 활동, 다양한 활동, 재능의 발견 및 개발의 기회, 경쟁이 없는 활동,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활동, 즐길 수 있는 활동이라는 8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만 9~13세 청소년(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상활동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 단련, 탐험 4가지 활동이며 주어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포상단계는 동장(4개월), 은장(4~8개월), 금장(6~12개월)으로 4가지 활동영역 모두 포상활동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표 4-1-14〉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구분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금장 12세 이상	6개월 24시간(회) 이상	6개월 24시간(회) 이상	6개월 24시간(회) 이상	2박 3일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은장 9세 이상	4개월 16시간(회) 이상	4개월 16시간(회) 이상	4개월 16시간(회) 이상	1박 2일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4개월(16회) 수행			
동장 9세 이상	2개월 8시간(회) 이상	2개월 8시간(회) 이상	2개월 8시간(회) 이상	1일(5시간)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2개월(8회) 수행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나. 포상제 추진 현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한국의 저연령 청소년(만 9~13세)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성취포상제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2011년 11개 기관에서 시범운영하고,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2018년 현재 광역사무국 17개,

중앙운영사무국 10개, 운영기관 446개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한국사무국은 2014년 정식 운영 이후 가족형 포상제, 쉐린지형 포상제, 자유학기제·학년제 연계 운영 등 신규 포상제 모형을 개발하여 저연령 청소년의 포상제 활동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상지도자의 불필요한 업무 소모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포상제에서는 청소년이 포상제 4가지 활동 영역에 모두 참여하고 각 단계에 맞는 활동 횟수를 충족하면 일련의 심사를 통해 포상활동 인증을 한다. 이때 포상 심사는 청소년의 목표와 활동에 대해 높고 낮음,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청소년이 스스로 세운 목표에 도전하여 목표를 성취하였는지, 계획을 세운대로 활동하였는지 등 활동 과정으로 청소년의 포상 여부를 판단한다.

〈표 4-1-15〉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참가청소년	포상청소년	포상담당관	운영기관
2011년	190	84	31	11
2012년	581	321	108	50
2013년	1,062	560	250	81
2014년	1,291	551	450	155
2015년	1,428	901	405	240
2016년	2,510	1,595	646	346
2017년	3,263	2,019	868	446
2018년	3,148	2,011	443	485
연도별 누적계	13,473	8,042	3,201	1,814

주 : 2014년부터 정식 운영됨에 따라 포상담당관 누적계는 2014년 이후 위촉된 포상담당관만 반영한 수치임.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7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가. 운영 현황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국가 정책에 따라 1996년부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출범하여 2006년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이 되어 설치되었다. 1996년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출범할 당시에는 학교교육정책에 자원봉사활동이 도입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자원봉사의 지원과 활성화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단일의 명확한 과업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가 마련되었다.

2006년도에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되면서, 중앙과 각 지방에서 ‘청소년활동의 진흥’이라는 포괄적인 과업이 강조되었고, 국가(중앙)-지방(시·도)-지역(시·군·구)으로 이어지는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책기구로서의 조직과 기능도 확대되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전달하는 전달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역할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4-1-16〉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센터명칭	운영기관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한국청소년연맹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흥사단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대전광역시교화청소년연합회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울산흥사단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지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대건청소년회

센터명칭	운영기관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천주교원주교구재단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전라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성지문화재단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과 사업내용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상의 정책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청소년활동 요구 조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도·신고제 지원 등이다.

〈표 4-1-17〉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내용

업무영역	주요 업무	주요 업무 개요
1.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1-1.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	교육훈련 등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1-2. 청소년활동 기관운영 지원	현장의 청소년활동 운영에 필요한 정보·프로그램·예산 등을 지원하는 업무

업무영역	주요 업무	주요 업무 개요
2.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2-1. 정책개발 및 제도화 지원	국가 및 지방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제도화를 지원하는 업무
	2-2. 정책사업 실행 지원	국가 및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3.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3-1. 청소년 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조사·분석·수집 관리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3-2. 청소년활동 인지도 제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업무
4.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4-1.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문화	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무
	4-2.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중앙-시·도-시·군·구의 정책네트워크와 현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제2장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도입 배경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 가치관과 부모의 지나친 보호 속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남을 먼저 배려하기보다는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풍조에 물들게 되었다. 게다가 치열한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은 청소년기에 길러주어야 할 인성을 빼앗아 버렸다. 이에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된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탐색 및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5.31 교육개혁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 현황

가.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http://dovol.youth.go.kr>) 개발·운영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리를 위해 2005년에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CS버전)을 구축하여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지역별 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실적 등을 보다 쉽게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봉사활동 신청 및 경력 관리,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등의 기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에는 사용자 편의성 확대 및 기능강화를 위한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에 지역별로 운영·관리되었던

시스템(CS버전)에서 통합 시스템(WEB버전)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기존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에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로 발전시켜 청소년 봉사활동관리의 안정성, 편리성, 정보 제공 확대 등을 꾀하였다. 2012년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통합정보시스템과 통합 작업을 추진하여 기존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youth.go.kr)를 개편하였으며,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이용자 편리성을 증대하자는 정부3.0의 일환으로 2014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와 안전행정부 자원봉사 통합관리시스템(1365나눔포털)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Dovol-1365나눔포털 간의 자원봉사 실적 연계는 물론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를 통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에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youth.go.kr)와 통합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국제교류, 자유학기제 연계 체험활동 등 타 청소년 활동 정보와의 연계도 강화하였다.

나.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현황

청소년 자원봉사는 개인, 가족, 동아리·단체 등의 유형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일손돕기·환경미화·취약계층 활동 보조 등의 노력봉사, 학습 지도·멘토링·공부방 운영 지원 등의 교육봉사, 지역행사 운영·보조, 캠페인 활동 등의 문화봉사,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재능봉사 활동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인증터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증터전'이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포털(youth.go.kr)에 봉사활동 실적을 등록·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인증한 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활동 인증터전으로는 청소년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문화·예술시설 및 단체, 체육·관광시설 및 단체, 의료보호시설 및 단체, 기업체(사회공헌재단 등) 등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청소년자원봉사의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 보장과 자발적 봉사참여 촉진을 위해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을 시작하였다. 2017년에는 자원봉사 포털(1365 나눔포털, VMS) 간 종합보험 통합 제공 추진을 통해 자원봉사 상해보험 수혜 대상자를 크게 확대⁴⁾ 하였다.

4) Dovol 회원 중 봉사활동에 1회 이상 참가한 청소년(약 9만명)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전체 회원(약 29만명)

한편, 2017년부터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나 변화가 필요한 주제를 스스로 조사·분석하고,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기존 봉사활동이 봉사시설 및 기관의 담당자(성인)가 계획한 봉사활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은 참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의 목적과 수단, 실행방법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2017년에는 4개 시·도(대전, 경기, 광주, 전남)에서 27개 팀의 청소년들이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한 바를 기념하고자, 1998년부터 매년 4월 셋째 주 주말에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Global Youth Service Day)’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2001년부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국제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Global Youth Service Day)’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청소년의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참여 계기를 확산하고자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이라는 주제로 운영되었으며, 총 12,301명(540건)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표 4-2-1〉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단위 : 개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입 터전 수	8,620	9,014	9,541	9,249	8,336	8,464	8,509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표 4-2-2〉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연간 프로그램 제공 수

(단위 : 개)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프로그램 수	171,032	185,429	281,847	303,408	313,387	447,905	506,822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표 4-2-3〉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실인원 및 지속 참여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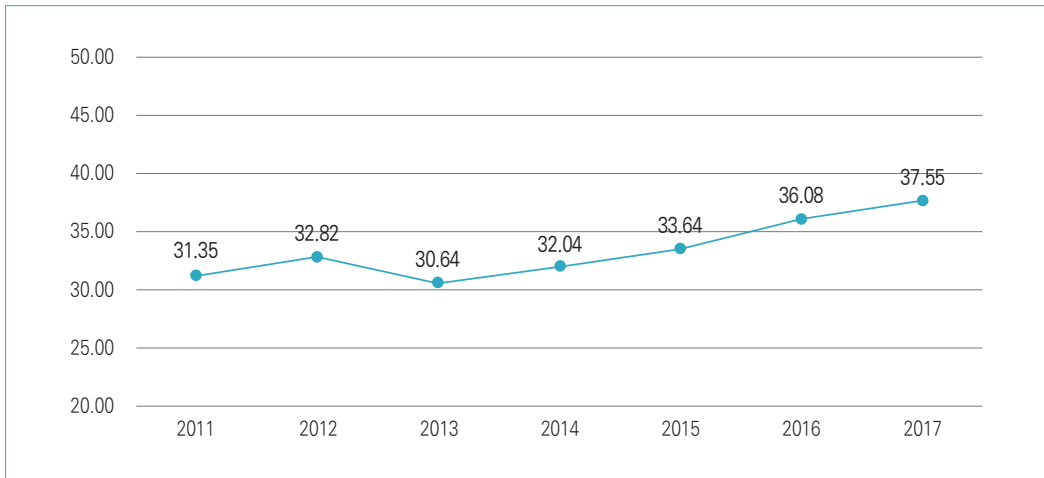
(단위 : 명,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인원(명)	275,981	277,908	241,287	231,887	250,024	275,163	260,770
10시간(명)	86,529	91,223	73,936	74,293	84,110	99,289	97,907
비율(%)	31.35	32.82	30.64	32.04	33.64	36.08	37.55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그림 4-2-1] 연도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실인원 및 지속 참여인원 비율

(단위 : %)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다.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orea Youth Volunteer Programme) 파견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가 함께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YVP) 파견사업은 2002년 첫 발을 내딛으며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세계시민의식 배양에 힘써왔다.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10년을 위한 비전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협력기관들과 함께 매년 아세안(ASEAN) 국가로 청소년들을 파견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YVP)은 국외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이를 통하여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환경, 빈곤, 평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아세안 10개국 중 최빈국인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우선 활동국으로 선정하여 봉사단을 파견한 이래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4개국, 17개 지역)에 총 304명을 파견하였다.

〈표 4-2-4〉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YVP) 추진경과

연도	파견국	파견센터/인원	주요내용
2002	7개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중국, 홍콩, 대만, 호주)	14개 센터/130명	월드컵 청소년홍보단
2003	6개국 (몽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15개 센터/269명	청소년해외봉사단으로 개칭
2004	3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16개 센터/162명	고려인 돕기 봉사활동
2005	1개국 (스리랑카)	16개 센터/176명	쓰나미 피해복구 봉사단
2006	1개국 (러시아 연해주)	16개 센터/174명	고려인 돕기 봉사활동
2007	2개국 7개 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16개 센터/182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원
2008	2개국 8개 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16개 센터/183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09	4개국 12개 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16개 센터/240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0	4개국 12개 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16개 센터/266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1	5개국 16개 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16개 센터/304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2	5개국 20개 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20개 센터/374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3	5개국 18개 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18개 센터/333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4	5개국 17개 지역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19개 센터/348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연도	파견국	파견센터/인원	주요내용
2015	5개국 19개 지역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19개 센터/357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6	5개국 17개 지역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17개 센터/337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7	4개국 17개 지역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17개 센터/304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제3장 | 청소년 교류활동

1 청소년 국제교류

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상대국 청소년 담당 부처와의 약정 등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간의 토론, 가정방문,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산업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하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8년에는 13개국 파견 146명, 초청 176명 등 총 322명이 국가 간 청소년교류활동에 참여하였다. 1979년부터 2018년까지 교류인원은 총 11,905명이다.

〈표 4-3-1〉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6개국)

구분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동북아시아(3개국)	중국, 일본, 몽골
남아시아·태평양(8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유럽(12개국)	러시아, 프랑스,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슬로바키아
중남미(4개국)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중동·아프리카(9개국)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모로코, 튀니지, 카메룬,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자료 : 여성가족부(2018).

〈표 4-3-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 및 교류 현황

(2018. 12월 기준)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초 시행년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18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 인원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한말문화협정('65) 한말 청 교류 약정('92. 4) 지도자 15명 추가-공공행정처	'79	30명, 10일간 (15명씩 2회, 각 10일간)	754명	750명	1,504명
사우디 (체육청)	양국정부합동위원회 합의('81)	'81	10명, 10일간	334명	323명	657명
일본 (내각부)	정상회담 공동선언('84)	'87	30명, 15일간	923명	1,014명	1,937명
중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양국수교시 교류합의('92) 청소년교류양해각서('98)	'93	40명, 10일간	714명	751명	1,465명
헝가리 (인적자원부)	청소년협력약정서('92)	'93	10명, 10일간	25명	57명	82명
러시아 (교육부)	청소년협력계획서('95)	'94	20명, 10일간	235명	225명	460명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청소년교류 협력계획서('95)	'96	10명, 10일간	140명	171명	311명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94)	'96	16명, 10일간	221명	251명	472명
핀란드 (교육부)	청소년협력협약각서('96) ('05 갱신)	'96	3명, 6일간	58명	87명	145명
칠레 (청소년처)	청소년협력약정서('96)	'98	20명, 10일간	43명	72명	115명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교류약정서('99) 재약정 체결('04), ('17)	'99	파견 20명, 10일간 초청 30명, 10일간	572명	396명	968명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사전합의 의거 교류시행('00) 청소년분야 협력약정서('01)	'00	10명, 10일간	204명	194명	398명
멕시코 (청소년원)	청소년협력약정서('00) 재약정 체결('08)	'01	12명, 10일간	182명	197명	379명
이스라엘 (청소년교류협회)	청소년협력약정서('02)	'02	10명, 10일간	148명	157명	305명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2)	-	10명, 10일간	2명	-	2명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초 시행년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18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 인원
체코 (교육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3)	'03	10명, 10일간	40명	40명	80명
수단 (청소년체육부)	청소년·체육협력약정서('04)	'05	10명, 10일간	82명	106명	188명
폴란드 (교육체육부)	청소년·체육교류양해각서('04)	'05	10명, 10일간	90명	90명	180명
인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05)	'06	35명, 10일간	260명	238명	498명
파키스탄 (경제부)	문화교류계획서('05)	'06	10명, 10일간	39명	9명	48명
이집트 (청소년부)	청소년교류 양해각서('05)	'06	10명, 10일간	87명	100명	187명
그리스 (교육종교부)	청소년분야 양해각서('06)	'06	3명, 6일간	10명	8명	18명
터키 (청소년체육부)	2005~2008년도 문화 및 과학 교류계획서('05)	'07	20명, 10일간	168명	142명	310명
스페인 (청소년청)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7)	'07	3명, 10~15일간	3명	3명	6명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양해각서('07)	'07	10명, 10일간	104명	105명	209명
불가리아 (청소년체육청)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7)	'07	6명, 7일간	57명	76명	133명
튀니지 (청소년체육부)	정부간문화협정근거('69)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9)	'10	10명, 10일간	76명	55명	131명
싱가폴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분야 양해각서('09)	'09	10명, 7일간(격년제)	30명	30명	60명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문화협정근거('00)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9)	'10	35명, 10일간	178명	156명	334명
브루나이 (문화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10)	'11	10명, 10일간	80명	80명	160명
카메룬 (외교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11)	-	10명, 10일간	0명	0명	0명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초 시행년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18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 인원
콜롬비아 (교육부)	청소년분야 협력 양해각서('13)	'13	10명, 10일간	0명	20명	20명
UAE (청소년체육청)	청소년분야 협력약정('14)	'15	10명, 기간명시없음	30명	31명	61명
카타르 (문화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14)	'15	12명 이내, 7일 이내	22명	47명	69명
슬로바키아 (교육연구과학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양해각서('17)	'18	10명, 10일간	6명	7명	13명
아르헨티나 (사회개발부)	청소년분야 협력양해각서('17)	-	10명, 10일간	0명	0명	0명
36개국				5,917명	5,988명	11,905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나. 한·중 청소년 교류

2003년 7월 한·중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 교류 합의에 따라 2004년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한·중 청소년교류가 시작되었다. 2012년부터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양국 청소년 500명씩 교류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21명이 상호 교류 하였다.

〈표 4-3-3〉 한·중 청소년 교류 현황

구분	초 청				파 견			총계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계	
2004년	198명 (7. 21.~7. 30.)	189명 (11. 1.~11. 10.)	100명 (11. 17.~11. 26.)	487명	-	-	-	487명
2005년	192명 (7. 6.~7. 15.)	100명 (9. 7.~9. 16.)	191명 (11. 15.~11. 24.)	483명	-	-	-	483명
2006년	96명 (5. 24.~6. 2.)	193명 (7. 5.~7. 14.)	200명 (11. 1.~11. 10.)	489명	98명 (4. 12.~4. 21.)	-	98명	587명

구분	초 청				파 건			총계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계	
2007년	200명 (4. 7.~4. 16.)	100명 (6. 13.~6. 22.)	191명 (11. 1.~11. 10.)	491명	97명 (7. 3.~7. 12.)		97명	588명
2008년	154명 (8. 18.~8. 27.)	100명 (10. 29.~11. 7.)	150명 (11. 5.~11. 14.)	404명	95명 (7. 22.~7. 31.)		95명	499명
2009년	196명 (7. 8.~7. 17.)	99명 (9. 16.~9. 25.)	185명 (11. 11.~11. 20.)	480명	96명 (5. 13.~5. 22.)	99명 (8. 3.~8. 12.)	195명	675명
2010년	192명 (6. 2.~6. 11.)	100명 (10. 13.~10. 22.)	187명 (11. 11.~11. 20.)	479명	192명 (5. 11.~5. 20.)	190명 (9. 7.~9. 16.)	382명	861명
2011년	191명 (6. 15.~6. 24.)	98명 (9. 21.~9. 30.)	193명 (10. 26.~11. 4.)	482명	197명 (5. 17.~5. 26.)		197명	679명
2012년	94명 (5. 9.~5. 16.)	200명 (6. 13.~6. 20.)	190명 (10. 21.~10. 28.)	484명	199명 (4. 13.~4. 20.)	293명 (8. 8.~8. 15.)	492명	976명
2013년	195명 (5. 21.~5. 28.)	100명 (7. 17.~7. 24.)	189명 (10. 23.~10. 30.)	484명	198명 (6. 13.~6. 20.)	287명 (9. 4.~9. 11.)	485명	969명
2014년	192명 (5. 8.~5. 15.)	98명 (9. 22.~9. 29.)	188명 (10. 22.~10. 29.)	478명	197명 (6. 4.~6. 11.)	297명 (9. 11.~9. 18.)	494명	972명
2015년	191명 (5. 14.~5. 21.)	98명 (9. 8.~9. 15.)	185명 (10. 22.~10. 29.)	474명	197명 (6. 4.~6. 11.)	294명 (9. 10.~9. 17.)	491명	965명
2016년	184명 (6. 23.~6. 30.)	-	-	184명	199명 (5. 25.~6. 1.)	-	199명	383명
2018년	97명 (10. 23.~10. 27.)	-	-	97명	100명 (11. 20.~11. 24.)	-	100명	197명

주 : 2017년에는 중국측 사정으로 인하여 한·중 청소년 교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음.

자료 : 여성가족부(2018).

2017년에는 한·중 청소년 교류의 실질적이고 파급적인 효과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발전 모델 개발 및 교류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내체류 중국유학생과 한국청소년 간 교류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대학과 민관협력을 통하여 국내 총 10개 대학 약 1,000여명의 한·중 청소년 상호교류 활동을 지원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특성화된 주제를 선택하여 오리엔테이션, 특강, 멘토링, 교류 활동, 지역, 문화, 역사, 스포츠, 생태 등 탐방, 팀별 결과 발표 등 다양한 청소년교류활동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대학 별로 전문가 컨설팅, 현장 방문, 사업성과 정리, 결과 보고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중국을 포함한다국가(34개국) 유학생으로 확대하였으며, 국내 총 14개 대학 약 1,293여명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실질적, 심층적 교류 효과를 추구하고, 참여 대학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교류 발전 모델을 개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표 4-3-4〉 한·중 청소년 교류 지원사업 프로그램 현황

구분	대학명	주제	주요 프로그램
1	경성대학교	부산, 경남 문화 중심 한중 청소년 교류	- 부산지역, 거제, 통영 문화탐방 - 부산특화산업 국제영화제, 마블영화체험관 등 체험 - 한중청소년 우호교류 : '한중 청소년 한마음 캠프'
2	군산대학교	함께 가야 할 우리, 미래의 주인인 우리	- 특강, 세미나, 토론, 공연 등 한중 문화이해 프로그램 - 한국문화체험(전주 전통문화, 군산근대문화 거리 등) - 국제 리더십 향상(생태 체험 및 스포츠 교류활동)
3	명지대학교	나랑 너 我和你 너랑 우리 你和我们	- 청소년지도학과 주관 한중 청소년 팀(셀단위) 구성 - 역량개발, 체험, 탐방, 야영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운영 - 뮤지컬, 노래 등 창작 형식의 결과 발표회
4	부산대학교	망(網, network), 중(中, China), 한(韓, Korea)	- 만남과 이해/친밀과 공감/공유와 확산 - 명사특강(배움터), 한국문화체험(채움터), - 문화교류 포스터 대전(나눔터, 한중청소년 조별 제작) 개최
5	상명대학교	한·중 청소년, 역사적 향기 속에서 공동의 미래 가치에 다가가다	- 특강에 이어 주제별 탐방, 심화토론 - 문화유적 탐방(서울, 화성, 공주, 부여, 완도, 목포) - 팀별 탐방결과 보고 발표
6	전북대학교	다담-한국의 멋을 담다	- 전통한옥, 음악, 태권도, 예절 등 한국문화 체험 - 한중 청소년 버디 매칭, 프로젝트 수행 - 중국 자매대학 초청 교류 프로그램
7	청주대학교	동심동의(同心同意)- 한·중 청소년 한국의 전통 의식주 문화를 교류하다	- 한국세계문화유산, 전통의식주 향토문화체험 - 한중청소년 영상촬영팀 구성, 단편 영화 제작 - 중국 현지 홍보 활성화(위챗 블로그, 메신저 등)
8	한국영상대학교	신라, 백제의 문화유산 탐방 및 체험을 통한 문화배우기	- 신라, 백제권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문화 체험 - 교내방송국 다큐멘터리로 제작, 상영 - 인터넷, SNS를 통해 해외교류 대학 배포
9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의 이해를 통한 한중 청소년 우호 증진	- 유네스코 문화유산 특강, 탐방(서울, 전주, 경주, 경남) - 한국 창업 특강, 소창업 성공업체 방문 - 한중 교류 확대, 한국세계유산 홍보 및 관광확대 방안 토의
10	한양대학교	한·중 학생 공동 KoreaFrontier	- 한·중 청소년 특별 한국 대학생활/유학생활 멘토링 - 문화탐방 계획 수립, 체험(경주, 제주, 수도권), - 한국의 역사, 자연, 대중문화 UCC 제작, 발표회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다.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한·중·일 3국 정상은 2007년을 ‘한·중·일 교류의 해’로 설정하고 3자간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98명을 파견하고, 399명을 초청하였으며, 3국을 순회하여 개최하였다. 2013년 이후 각각 중국 및 일본 정부의 사정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표 4-3-5〉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현황

연도(회차)	일시	개최장소	인원
2007년(1회)	8. 16. ~ 22.	중국 베이징	100명 파견(한·중·일 각국 100명 규모)
2008년(2회)	9. 17. ~ 23.	일본 동경	100명 파견(한·중·일 각국 100명 규모)
2009년(3회)	7. 21. ~ 27.	한국 서울	100명 참가(한·중·일 각국 100명 규모)
2010년(4회)	7. 21. ~ 27.	중국 베이징	100명 파견(한·중·일 각국 100명 규모)
2011년(5회)	3. 11. ~ 17.	일본 동경	98명 파견(한·중·일 각국 100명 규모)
2012년 우호의 만남(6회) 미래포럼(1회)	7. 25. ~ 31.	한국 서울	총 297명 - 우호의 만남 237명(한 78명, 중 79명, 일 80명) - 미래포럼 60명(한·중·일 각국 20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6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 파견과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실시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시민의식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 참가단’과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2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4-3-6〉 2018년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내용
1	국제회의·행사참가단 (2008~)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다양한 국제회의·행사 등에 청소년들을 파견 * UN총회 제3위원회 파견 등 4개 회의 12명(2018)
2	해외자원봉사단 (2005~)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 강화 * 5개국 7개팀 140명(2018)

자료 : 여성가족부(2018).

가.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참가단

청소년들이 국제회의 및 행사 등 다양한 해외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국제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파견대상자를 선발한다. 2018년에는 4개 회의에 12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나. “꿈과 사람 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8년에는 아시아 5개국에 7개 팀, 140명의 봉사단을 10일 내외로 파견하였다.

〈표 4-3-7〉 2018년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현황

(단위 : 팀, 명)

구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베트남	필리핀	계
파견팀 수	2	1	2	1	1	7
파견자 수	40	20	40	20	20	140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4/6257

3 민간단체 주관 청소년국제행사 지원

국제청소년행사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국제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의 장인 ‘국제청소년포럼’ 등이 있다. 2018년에는 ‘한국스카우트 세계야영대회(International Patrol Jamboree)’, ‘국제청소년 캠페스트(International Youth Campfest)’, ‘국제청소년포럼(International Youth Forum)’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4-3-8〉 2018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행사명	일시	행사 취지	참석인원	주관기관
한국스카우트 세계야영대회	8. 2.~8. 7.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청소년활동을 통해 개척정신과 협동정신 배양	약 40개국 청소년 약 6,000명	한국스카우트연맹
국제청소년캠페스트	7. 23.~7. 26.	건강한 놀이문화를 통해 새로운 경험에 대한 신뢰형성 및 야외 생활 체험	18개국 청소년 약 4,000명	한국청소년연맹
국제청소년포럼	8. 17.~8. 23.	세계 청소년들이 국제적 사안에 대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제공	53개국 청소년 약 200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4/6257








4 세계스카우트잼버리(2023년) 유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전 세계 169개국에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세계 청소년 야영대회이다. 1920년 영국 런던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34개국 8,000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한 “제1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시초가 되어 이후 4년마다 개최하는 정규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잼버리(Jamboree)는 북미 인디언의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 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경이 제1회 세계잼버리를 ‘Jamboree’라고 명명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올림픽과 같이 매 4년마다 개최국을 결정하며, 대회를 유치한 국가는 매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스카우트 회원국(1개국당 6표 투표)의 투표로 선정된다. 현재까지 23회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되었으며, 2019년 제24회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리고,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대한민국 전북 새만금에서 열릴 예정이다.

〈표 4-3-9〉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역대 개최 현황

구분	로고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가국	참가	주제	비고
1회		'20. 07. 30.~08. 08.	영국 런던	34	8,000명	Develop world peace	실내에서 실시
2회		'24. 08. 10~08. 17.	덴마크 코펜하겐	32	4,549명	World citizenship	첫 야외잼버리
3회		'29. 07. 31.~08. 13.	영국, 버킨헤드	69	30,000명	Coming of age	
4회		'33. 08. 02~08. 15.	헝가리 고돌로	33	25,792명	Face new adventures	
5회		'37. 07. 30.~08. 14.	네덜란드 보겔란쟁	54	28,750명	Lead happy lives	
6회		'47. 08. 09.~08. 18.	프랑스 무와송	71	24,152명	Jamboree of peace	프랑스 대통령참가
7회		'51. 08. 03.~08. 14.	오스트리아 배드이설	61	12,884명	Jamboree of simplicity	

구분	로고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가국	참가	주제	비고
8회		'55. 08. 18.~08. 28.	캐나다 나이아가라	71	11,139명	New horizons	비유럽 최초 잼버리
9회		'57. 08. 01.~08. 12.	영국 서튼파크	82	31,426명	50th anniversary of scouting	
10회		'59. 07. 17.~07. 27.	필리핀 마킬링	44	12,203명	Building Tomorrow Today	아시아 최초
11회		'63. 07. 31.~08. 10.	그리스 마라톤	89	11,389명	Higher and wider	
12회		'67. 08. 01~08. 09.	미국 아이다호	15	12,011명	For Friendship	
13회		'71. 08. 04.~08. 14.	일본 아사기리	87	23,758명	For Understanding	
14회		'75. 07. 24.~08. 07.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91	17,259명	Five Fingers, One Hand	
15회		'83. 07. 04.~07. 16.	캐나다 알버타	106	14,752명	The Spirit Lives On	
16회		'87. 12. 28.~ '88. 01. 08.	호주 남웨일즈	84	14,434명	Bringing the World Together	
17회		'91. 08. 08.~08. 16.	대한민국 고성	135	19,083명	Many Lands, One World	지구촌개발 프로그램 시작
18회		'95. 08. 01.~08. 11.	네덜란드 홀랜드	166	28,960명	Future is Now	

구분	로고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가국	참가	주제	비고
19회		'98. 12. 26.~ '99. 01. 08.	칠레 피카킨	157	31,534명	Building Peace Together	
20회		'02. 12. 27.~ '03. 01. 11.	태국 사타힙	147	24,000명	Share our world, Share our culture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작
21회		'07. 07. 27.~08. 08.	영국 챔스포드	155	37,868명	One World, One Promise	영국연맹 창립 100주년
22회		'11. 07. 27.~08. 08.	스웨덴 크리스티안스타	146	40,061명	Simply Scouting	
23회		'15. 07. 27.~08. 08.	일본 야마구치	155	33,628명	和(화) : A spirit of unity	평화프로그램
24회		'19. 07. 22.~08. 02.	미국 버지니아	160	5만 여명	Unlock a new world	미국연맹 창립 100주년
25회		2023	대한민국 전북 새만금	169	5만 여명	Draw your Dream	개최준비

우리나라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창립 100주년(2022년)을 기념하여 2016년 1월 세계 스카우트연맹 사무국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뒤 세계 6개 대륙 145여개 국가를 돌며 유치 활동을 펼치면서, 폴란드(그단스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7월 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거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3년)에 대한 국제행사 정부 지원 결정을 받고, 외교부와 협력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160여개 회원국 대상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였다. 2017년 2월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와 민간기업, 청소년정책 관계자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2023년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유치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만들어져 회원국 방문 등 유치활동, 온라인 홍보, 대륙별 세계총회 대표단 구성·파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에 큰 기여를 했다.

여성가족부, 외교부 및 재외공관, 새만금개발청,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으로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2017년 8월 16일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바쿠, 아제르바이잔)에서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최종 유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2회 이상 개최하는 세계 여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2023년) 새만금 유치를 알리고 붐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UCC 공모전과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계 청소년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세계 5만 여명의 청소년 및 세계스카우트 지도자 등의 한국 방문은 국내 관광자원 및 문화자원 등과 연계되어 경제적 유발효과도 기대되며,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4-3-10〉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요

- ▶ 기간 : 2023. 8월 중(12일간)
- ▶ 장소 : 전북 새만금
- ▶ 참가 규모 : 169개국 5만여 명(국외 4만여 명, 국내 1만여 명)
- ▶ 주요 내용 : 개영식, 과정활동(야영, 수상활동, 문화체험 등), 한국의 밤, 국제의 밤 등



제5부 요약

제5부에서는 '청소년 복지'에 대해 다룬다. 아동빈곤율을 파악할 때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절대아동빈곤율은 절대빈곤율 측정방법을 차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전 가구를 기준으로 절대아동빈곤율은 2007년 5.9%에서 2009년 4.9%, 2013년 3.6%, 2016년 3.7%(절대아동빈곤율에 해당된 아동은 약 33만 명으로 추산)로 감소추세에 있다. 전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상대아동빈곤율도 2007년 10.7%, 2008년 9.9%, 2013년 7.5%, 2016년 6.7%(상대빈곤율에 해당된 아동은 약 60만 명으로 추산)의 분포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빈곤아동 수는 2016년에 약 6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한부모가구 비중은 2013년 10.2%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10.8%, 2018년 10.9%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8년을 기준으로 한부모가구 수는 약 21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222,455명으로 집계되었다. 부 또는 모의 국적별 자녀수 비율은 중국(한국계 포함),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 206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를 지정·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출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등의 영역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시·군·구를 통해 위생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돌봄취약계층가정 청소년들에게는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종합적인 학습·복지·보호 서비스를,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아동 보호, 학습지도,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자 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디딤씨앗 통장(CDA)' 사업 등이 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을 보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위험에 대처하고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설치하고, 17개 시·도와 211개 시·군·구에 228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가족갈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예방 및 문제발생 이후 대응 등을 위한 '지역사회통합 청소년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또래상담'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스트레스 경험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처음 흡연과 음주 경험 연령과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13세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흡연과 음주가 비슷한 연령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 청소년의 평균 스트레스 인지율은 여학생(44.6%)이 남학생(3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 경험률에서도 여학생(30.3%)이 남학생(20.3%)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모두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제5부 청소년 복지

제1장 대상별 청소년 현황

제2장 대상별 청소년 지원

제3장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제4장 청소년의 건강



제 1 장 | 대상별 청소년 현황

1 아동빈곤율 현황

아동빈곤율은 일반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¹⁾ 절대빈곤율의 측정방법은 국가마다 상이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에 속한 가구 또는 인구의 비율을 절대빈곤율로 보아왔다. 이를 아동에 대입하여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아동 중 최저생계비 이하인 아동가구에 사는 아동 수를 백분율화하여 아동빈곤율을 측정하였다.²⁾ 한편, 상대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등에서 국가비교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체 아동 수 대비 중위소득의 40%, 50%, 6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속한 아동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는 중위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절대아동빈곤율은 전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5년 5.9%, 2010년 4.8%, 2016년 3.7%의 비율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를 아동(0~17세)수로 환산하면, 60여만 명의 아동이 절대빈곤층이었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약 33만 명의 아동이 절대빈곤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상대아동빈곤율은 2005년 11.3%, 2010년 9.1%, 2016년 7.2%의 분포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상대아동빈곤율에 따른 빈곤아동 수는 2003년 약 118만 명의 아동이었는데, 2005년에는 약 13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 현재 약 60만 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2016년 빈곤아동 수는 전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빈곤아동 수는 약 33만 명 정도이고, 도시근로자 기준으로는 약 14만 명으로 전 가구보다 다소 적은 수준이다. 상대아동빈곤수의 경우에도 전 가구 기준으로는 약 60만 명, 도시근로자 기준은 약 53만 명으로 전 가구 기준보다 도시근로자 기준 빈곤아동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아동빈곤율 계측에서 아동 연령기준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정의하였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16년 이후 자료는 분석의 연속성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산출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여 절대빈곤율을 산출하였음.

〈표 5-1-1〉 연도별 아동빈곤율 현황

(단위 : %, 명)

구분	절대아동빈곤율**		상대아동빈곤율	
	전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기준	전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기준
1인 가구* 제외				
2003년	5.6	3.5	10.0	8.9
2004년	5.5	2.9	10.9	9.9
2005년	5.9	4.0	11.3	10.1
2006년	5.9	3.5	10.4	10.0
2007년	5.9	3.1	11.0	9.3
2008년	5.6	3.6	10.4	9.2
2009년	4.9	3.1	9.5	10.0
2010년	4.8	2.7	9.1	7.6
2011년	4.3	2.2	9.1	7.2
2012년	4.4	1.6	9.3	6.6
2013년	3.6	1.7	8.1	7.1
2014년	3.3	1.0	7.5	6.4
2015년	3.6	1.6	7.4	5.8
2016년	3.7	1.6	7.2	6.1
1인 가구 포함				
2006년	5.9	3.5	10.1	9.6
2007년	5.9	3.1	10.7	9.2
2008년	5.6	3.6	9.9	9.1
2009년	4.9	3.1	8.9	9.7
2010년	4.8	2.7	8.5	7.4
2011년	4.4	2.2	8.9	7.0
2012년	4.4	1.6	8.6	6.2
2013년	3.6	1.7	7.5	6.5

구분	절대아동빈곤율**		상대아동빈곤율	
	전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기준	전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기준
2014년	3.3	1.0	7.0	5.7
2015년	3.6	1.6	6.9	5.5
2016년	3.7	1.6	6.7	5.9
2016년 아동인구 수	2016년 빈곤아동 수			
8,736,051	331,587	143,389	600,441	528,746

주 : 빈곤아동 수는 아동빈곤율을 이용하여 추계함(절대빈곤: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기준).

* 1인 가구란 아동단독가구를 의미함.

** 빈곤통계연보의 아동빈곤율 추계에서 사용한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2000~2015년: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② 2016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에서 계측한 2017년 최저생계비 자료

*** 농어가(농업 및 어업 종사 가구) 제외.

자료 : 1) 여유진, 전지현 (2017). 2017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3) 행정안전부(2017). 2016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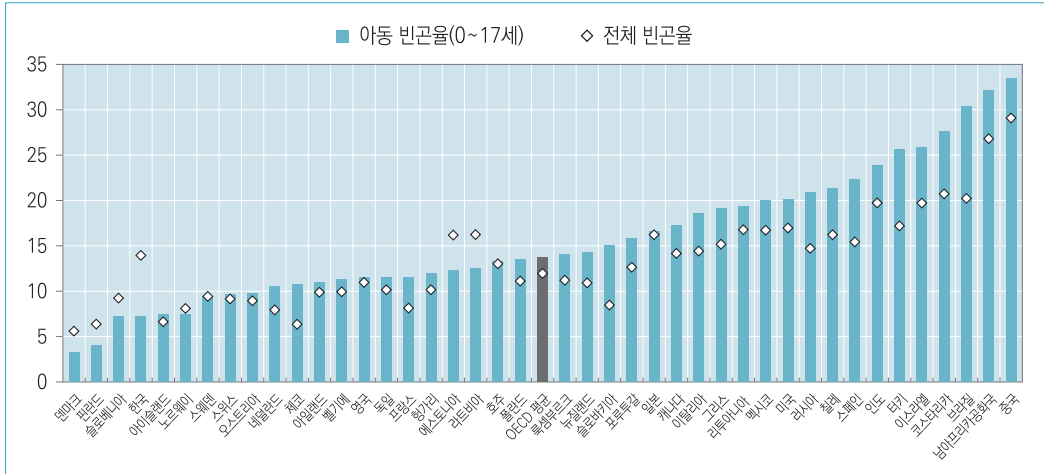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빈곤수준을 국제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 및 신흥국들과 비교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빈곤기준은 중위소득의 50%로 상대적 빈곤 기준이 사용되었으며, 전체 인구의 빈곤수준과 아동인구의 빈곤수준이 각기 제시되었다.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2.9%였고, 그 다음은 핀란드로 3.7%였다. 한국은 슬로베니아(7.0%)의 뒤를 이어 7.1%로 OECD 국가 중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었다. 한국 뒤에는 아이슬란드(7.2%), 노르웨이(7.3%), 스웨덴(9.1%)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OECD 평균은 13.4%였다.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33.1%)이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32.0%), 브라질(30.1%) 등의 국가들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 아동 3명 중 1명은 빈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25.5%), 터키(25.3%), 미국(19.9%)의 아동빈곤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국가 아동 4명 중 1명은 빈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1-1] 아동빈곤율 국제 비교(2015년, 중위소득 50%)

(단위 : %)



주 : 국가별 아동빈곤율은 가구 균등화 소득을 적용한 가처분소득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5년 자료 기준임. 단, 몇몇 국가들은 취합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였음(중국, 일본, 러시아는 2011년, 일본은 2012년, 브라질은 2013년, 호주,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 뉴질랜드는 2014년).
 자료 : OECD(n.d.).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 한부모가구 현황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에서 한부(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 한부모가구는 이혼이나 미혼가구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에는 9.0%, 약 150만 가구로 나타났는데, 2011년에는 9.3%, 약 160만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10.5%, 약 190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전체가구 중 약 10.8%에 해당하는 약 200만 가구, 2017년과 2018년에는 10.9%에 해당하는 약 210만 가구가 한부모가구였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자립,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표 5-1-2〉 연도별 한부모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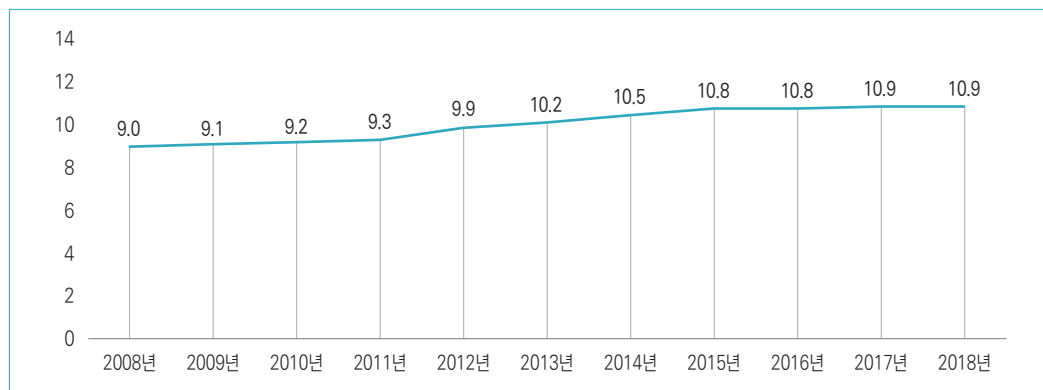
(단위 : 천가구, %)

연도	전체가구(A)	한부모가구(B)	한부모가구비율(B/A×100)
2008	16,791	1,509	9.0
2009	17,052	1,551	9.1
2010	17,339	1,594	9.2
2011	17,687	1,639	9.3
2012	18,119	1,796	9.9
2013	18,388	1,880	10.2
2014	18,705	1,970	10.5
2015	19,013	2,052	10.8
2016	19,285	2,090	10.8
2017	19,524	2,127	10.9
2018	19,752	2,158	10.9

자료 : 통계청(2018).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에서 2018년 12월 7일 인출).

[그림 5-1-2] 한부모가구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8).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에서 2018년 12월 7일 인출하여 도식화하였음).

3 다문화가족 및 아동 현황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광의의 개념으로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형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만을 의미한다.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07년에는 44,258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107,689명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 3배 증가한 121,935명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197,550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2017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222,455명으로 집계되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7년 현재 만 6세 이하는 115,085명(51.7%)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7~12세 이하는 81,826명(36.8%)이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15,753명(7.1%)이며, 고등학생 연령대인 만 16~18세 이하 아동은 9,791명(4.4%)이었다.

〈표 5-1-3〉 다문화가족 자녀 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2007	44,258(100.0)	26,445(59.8)	14,392(32.5)	2,080(4.7)	1,341(3.0)
2008	58,007(100.0)	33,140(57.1)	18,691(32.2)	3,672(6.3)	2,504(4.3)
2009	107,689(100.0)	64,040(59.5)	28,922(26.9)	8,082(7.5)	6,645(6.2)
2010	121,935(100.0)	75,776(62.1)	30,587(25.1)	8,688(7.1)	6,884(5.6)
2011	151,154(100.0)	93,537(61.9)	37,590(24.9)	12,392(8.2)	7,635(5.1)
2012	168,583(100.0)	104,694(62.1)	40,235(23.9)	15,038(8.9)	8,616(5.1)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2013	191,328(100.0)	116,696(61.0)	45,156(23.6)	18,395(9.6)	1,1081(5.8)
2014	204,204(100.0)	121,310(59.4)	49,929(24.5)	19,499(9.5)	1,3466(6.6)
2015	197,550(100.0)	116,068(58.8)	61,625(31.2)	12,567(6.4)	7,290(3.7)
2016	201,333(100.0)	113,506(56.4)	56,768(28.2)	17,453(8.7)	13,606(6.8)
2017	222,455(100.0)	115,085(51.7)	81,826(36.8)	15,753(7.1)	9,791(4.4)

자료 : 행정안전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부 또는 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의 자녀수를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부모의 자녀가 71,864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 출신 부모의 자녀가 43,197명(19.4%)이었다. 중국 출신 한국계 부모의 자녀는 세 번째로 많은 38,090명(17.1%), 필리핀 출신 부모의 자녀는 22,270명(10.0%)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이들 네 국가 출신 부모의 자녀가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78.8%를 차지하였다.

〈표 5-1-4〉 부 또는 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현황

(단위 : 명, (%))

연도	합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미국	러시아	대만	기타
2008	58,007 (100.0)	16,681 (28.8)	10,889 (18.8)	8,194 (14.1)	6,378 (11.0)	6,508 (11.2)	-	816 (1.4)	870 (1.5)	2,406 (4.1)	303 (0.5)	1,515 (2.6)	3,447 (5.9)
2009	107,689 (100.0)	18,669 (17.3)	35,932 (33.4)	22,491 (20.9)	10,687 (9.9)	6,838 (6.3)	-	1,681 (1.6)	1,563 (1.5)	683 (0.6)	736 (0.7)	770 (0.7)	7,639 (7.1)
2010	121,935 (100.0)	31,404 (25.8)	29,800 (24.4)	27,517 (22.6)	11,926 (9.8)	5,734 (4.7)	2,554 (2.1)	1,807 (1.5)	1,711 (1.4)	821 (0.7)	766 (0.6)	1,129 (0.9)	6,766 (5.5)
2011	151,154 (100.0)	33,186 (22.0)	34,852 (23.1)	34,256 (22.7)	13,937 (9.2)	14,510 (9.6)	3,565 (2.4)	2,250 (1.5)	2,082 (1.4)	1,207 (0.8)	1,090 (0.7)	1,191 (0.8)	9,028 (6.0)
2012	168,583 (100.0)	39,278 (23.3)	33,231 (19.7)	41,238 (24.5)	15,820 (9.4)	16,237 (9.6)	4,690 (2.8)	2,468 (1.5)	2,427 (1.4)	1,422 (0.8)	1,139 (0.7)	1,615 (1.0)	9,018 (5.3)
2013	191,328 (100.0)	42,294 (22.1)	37,084 (19.4)	49,458 (25.8)	18,020 (9.4)	17,806 (9.3)	5,961 (3.1)	2,802 (1.5)	2,663 (1.4)	1,697 (0.9)	1,289 (0.7)	1,758 (0.9)	10,496 (5.5)

연도	합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미국	러시아	대만	기타
2014	204,204 (100.0)	43,890 (21.5)	38,824 (19.0)	54,737 (26.8)	19,568 (9.6)	18,185 (8.9)	6,777 (3.3)	2,952 (1.4)	2,767 (1.4)	1,855 (0.9)	1,319 (0.6)	1,892 (0.9)	11,438 (5.6)
2015	197,550 (100.0)	35,439 (17.9)	40,351 (20.4)	57,464 (29.1)	19,918 (10.1)	7,773 (3.9)	7,016 (3.6)	2,771 (1.4)	2,254 (1.1)	6,140 (3.1)	1,017 (0.5)	2,877 (1.5)	14,530 (7.4)
2016	201,333 (100.0)	36,610 (18.2)	37,963 (18.9)	56,468 (28.0)	20,146 (10.0)	9,485 (4.7)	6,909 (3.4)	2,719 (1.4)	2,543 (1.3)	5,874 (2.9)	1,058 (0.5)	2,522 (1.3)	19,036 (9.5)
2017	222,455 (100.0)	38,090 (17.1)	43,197 (19.4)	71,864 (32.3)	22,270 (10.0)	6,886 (3.1)	9,448 (4.2)	3,132 (1.4)	2,609 (1.2)	4,899 (2.2)	997 (0.4)	2,995 (1.3)	16,068 (7.2)

주 : 캄보디아는 2009년 이전에는 '기타'에 포함되었지만 2010년부터 별도로 분류되었음.

자료 : 행정안전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다문화 초·중·고 학생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7년 현재 총 109,387명으로 전체 학생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의 아동 비율이 3.1%, 중학생 중 비율이 1.2%, 고등학교 중 비율이 0.6%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학생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다문화학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5〉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 명, %)

인원 수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다문화학생 수(A)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전체 학생 수(B)		6,732,071	6,529,196	6,333,617	6,097,297	5,890,949	5,725,260
다문화학생 비율(A/B×100)		0.70	0.86	1.07	1.35	1.68	1.90

주 : 2017년 전체 학생 수는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를 참조하였음(초, 중, 고등학생 수).

자료 : 교육부(2018. 2.).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표 5-1-6〉 2017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유형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계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학교급	초	68,624	4,865	9,317	82,806(3.1)
	중	12,273	1,740	1,970	15,983(1.2)
	고	8,417	1,187	994	10,598(0.6)
합계		89,314	7,792	12,281	109,387(1.9)

자료 : 교육부(2018. 2.).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4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대상아동에게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며, 국가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국내외입양 등의 형태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소년소녀가장이란 형태로 국가의 책임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존재하였으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 수는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와 2000년대 초반의 악화된 경제상황에 의해서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하였다. 특히 2000년 15,936명에서 2001년 21,816명으로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였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은 2002년에 22,34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로 점차 감소하였고, 2010년 이래로 1만 명 아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4,846명으로 199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는 아동 인구 수 감소의 영향과도 연관이 있다.

2017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총 4,846명이었고, 이 중 725명은 귀가 및 연고자에 인도되었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원인은 학대(1,437명), 미혼모·부 아동(850명),

부모의 이혼 등(75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아로 인한 발생은 1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5-1-7〉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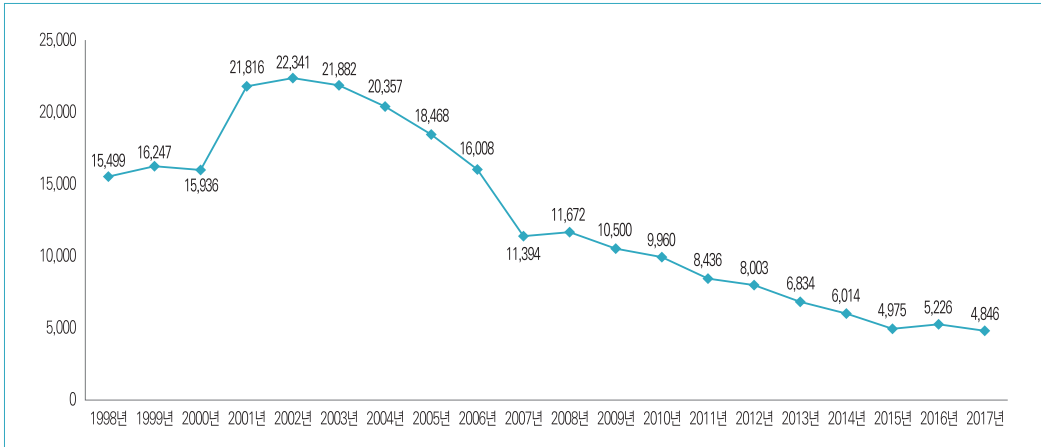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총 아동 발생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계	기아	미혼 모·부 아동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1998년	15,499	4,699	10,800	1,654	5,451	286	3,409					
1999년	16,247	7,247	9,000	1,432	4,284	216	3,068					
2000년	15,936	6,851	9,085	1,270	4,190	152	1,757	1,716				
2001년	21,816	11,230	10,586	717	4,897	98	728	4,146				
2002년	22,341	12,284	10,057	634	4,337	74	749	4,263				
2003년	21,882	11,660	10,222	628	4,457	79	595	4,463				
2004년	20,357	10,964	9,393	481	4,004	62	581	4,265				
2005년	18,468	9,048	9,420	429	2,638	63	1,413	4,877				
2006년	16,008	6,974	9,034	230	3,022	55	802	4,925				
2007년	11,394	2,533	8,861	305	2,417	37	748	5,354				
2008년	11,672	2,388	9,284	202	2,349	151	706	891	1,036	732	274	2,943
2009년	10,500	1,472	9,028	222	3,070	35	707	1,051	710	763	230	2,240
2010년	9,960	1,370	8,590	191	2,804	210	772	1,037	586	772	203	2,015
2011년	8,436	953	7,483	218	2,515	81	741	1,125	418	536	154	1,695
2012년	8,003	1,077	6,926	235	1,989	50	708	1,122	448	533	166	1,675
2013년	6,834	814	6,020	285	1,534	21	512	1,117	338	545	133	1,535
2014년	6,014	1,020	4,994	282	1,226	13	508	1,105	308	450	65	1,037
2015년	4,975	472	4,503	321	930	26	360	1,094	279	301	122	1,070
2016년	5,226	634	4,592	264	856	10	314	1,540	290	286	126	906
2017년	4,846	725	4,121	261	850	12	229	1,437	216	276	86	754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그림 5-1-3]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추이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보호대상아동의 보호형태는 크게 시설보호와 가정보호로 구분된다. 시설보호에는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가 있고, 가정보호는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입양전 위탁’ 보호가 있다. 2017년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입소 중에서는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1,467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감소 추세에 있었다. 반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배치된 아동은 625명으로 200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정보호는 가정위탁이 9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입양은 285명이었다. 입양된 아동은 2015년 239명, 2016년 243명에 비해서는 증가된 수치이나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과거의 주된 아동보호 형태 역시 변화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국가가 원가정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원가정 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대안 양육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가정위탁이나, 시설에서 보호하더라도 대규모 시설에서의 보호가 아닌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보호가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로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양의 절차가 결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제·개정 중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현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8〉 보호대상아동 보호 현황

(단위: 명)

연도	조치내용										
	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 시설 등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계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전 위탁
1998년	10,800	5,141	4,948	132	61	5,659	518	1,741	3,400	-	
1999년	9,000	4,702	4,579	78	45	4,298	572	1,776	1,950	-	
2000년	9,085	4,481	4,332	64	85	4,604	564	1,755	2,285	-	
2001년	10,586	4,774	4,671	41	62	5,812	874	1,848	3,090	-	
2002년	10,057	4,663	4,547	57	59	5,394	673	2,544	2,177	-	
2003년	10,222	4,824	4,747	42	35	5,398	500	2,506	2,392	-	
2004년	9,393	4,782	4,680	38	64	4,611	299	2,100	2,212	-	
2005년	9,420	4,818	4,769	48	1	4,602	407	1,873	2,322	-	
2006년	9,034	4,366	4,313	53	-	4,668	308	1,259	3,101	-	
2007년	8,861	3,245	3,189	39	17	5,616	247	1,991	3,378	-	
2008년	9,284	4,964	2,997	1,261	39	667	4,320	178	1,304	2,838	-
2009년	9,028	4,767	2,406	1,640	35	686	4,261	213	1,314	2,734	-
2010년	8,590	4,842	2,445	1,751	23	623	3,748	231	1,393	2,124	-
2011년	7,483	3,752	2,246	862	32	612	3,731	128	1,253	2,350	-
2012년	6,926	3,748	2,272	676	25	775	3,178	117	772	2,289	-
2013년	6,020	3,257	1,731	801	39	686	2,763	20	478	1,749	516
2014년	4,994	2,900	1,818	566	10	506	2,094	13	393	1,300	388
2015년	4,503	2,682	1,412	799	13	458	1,821	-	239	1,206	376
2016년	4,592	2,894	1,736	541	12	605	1,698	6	243	1,024	425
2017년	4,121	2,421	1,467	310	19	625	1,700	2	285	990	423

자료: 보건복지부(2017).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제 2 장 | 대상별 청소년 지원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가. 추진배경 및 연혁

매년 약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도 2016년 기준 36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스스로 진로를 찾고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러 사회적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력이 단절된 청소년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자립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동기 강화, 기초적인 자립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프로그램(두드림)이 운영되었고, 특히, 검정고시 지원 및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업으로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해밀)을 2009년부터 운영하였다. 또한 2014년 5월 28일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5년 5월 29일 법률 시행에 따라 전국에 206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이하 꿈드림센터³⁾)’가 지정·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5-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혁

연도	추진내용
2007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
201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업중단숙려제 연계, 숙려제 상담 및 자퇴 후 학업복귀 서비스 지원
2013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교육부 공동, 2013. 11.)
201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 5. 28.)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법정(法定) 명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나, 꿈드림은 ‘꿈=드림(Dream)’, ‘꿈을 드림’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도	추진내용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5. 5. 29.) • 「학교 밖 청소년 종합대책」 마련(2015. 5. 12.) • 전국 199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02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마련(2016. 6. 14.)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직업훈련 기관 '내일이룸학교' 운영(구 취업사관학교)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06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內) 자유공간 9개소 추가 설치(전체 52개소 설치)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개요

1) 꿈드림(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현황

2018년 꿈드림은 전국 206개소(시·도 센터 16개소, 시·군·구 센터 19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시·도 센터 5명씩, 시·군·구 센터 2~4명씩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표 5-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06	25	15	9	9	6	3	5	1	31	10	13	15	10	16	15	20	3
시·도	16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시·군·구	190	24	14	8	8	5	2	4	1	30	9	12	14	9	15	14	19	2

자료 : 여성가족부(2018).

2) 사업목표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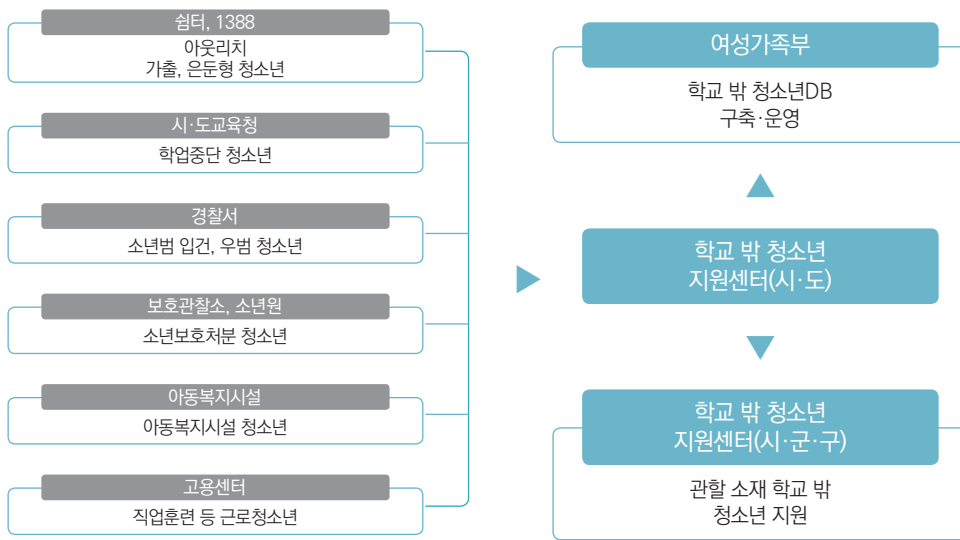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목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초·중학교 및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및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연계

꿈드림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2015. 8. 27.)」을 토대로 학교, 경찰서, CYS-Net의 연계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연계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림 5-2-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2018).

<표 5-2-3>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인원

(단위 :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연계 인원	14,953	36,468	55,909	68,459

자료 : 여성가족부(2018).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연계된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의 종류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이 있다.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형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형 청소년에게는 ‘직업역량강화사업’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장 체험’ 등의 체험을 통해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직업훈련기관인 ‘내일이룸학교’에 연계하거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 한다. 내일이룸학교에서는 전문직업훈련과 함께 상담, 검정고시 등 학력취득, 자격증 준비, 인성·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립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자유공간 지원’, ‘문화활동 지원’, ‘봉사 기회 제공’ 등 자립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건강검진 사업’은 DB구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 대해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기 검진(매 3년 단위)을 실시하는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은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부터 신규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도입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영유아, 일반, 생애, 암 검진 등) 체계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추진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생애전환기 연령(10대)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우선 대상이며, 다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림 5-2-2] 국가건강검진 추진체계

영유아(0~5세)	청소년(6~18세)	성인(19세~)
<p>영유아 건강검진</p> <p>※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p>	<p>학생 건강검사</p> <p>※ 초 1, 초 4, 중 1, 고 1 학생 건강검사</p> <p>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p> <p>※ 9~18세 청소년 (3년 주기)</p>	<p>일반건강검진</p> <p>※ (연령무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40세 이상) 피부양자,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 (의료급여) 세대주(19~64세), 세대원(40~64세)</p> <p>암검진(위, 간, 자궁, 유방, 대장)</p> <p>※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암검진 종목에 따라 대상 연령 상이</p> <p>생애전환기건강진단</p> <p>※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p>

자료 : 여성가족부(2018).

검진항목으로는 상담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검사(B형 및 C형), 결핵검진, 구강검사 등이 있으며,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후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된다. 2018년 12월 현재, 621개 전국 병·의원·보건기관 등의 검진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2/6319/6315

2 가출 청소년 지원

최근 사회적 문제인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거리생활을 하면서 건강악화는 물론 절도·폭행·성매매 등의 범죄 및 비행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6개월 이상의 장기

가출과 반복적인 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 상담,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 정책의 변화

1991년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1992년 최초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청소년 선도 예방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참여정부’에서는 ‘가출 청소년 쉼터 확대’가 대선공약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2005년 2월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법적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한 가지 유형의 쉼터로 운영되다가 가출 청소년의 상황 및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에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장기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표 5-2-4〉 청소년쉼터의 발전단계

구분	내용
1. 도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청소년 기본법」 제정(1993. 1. 1. 시행) • 1992년 최초의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 1998년 5개 광역시별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2. 확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2005. 2. 10. 시행) • 2004년 일시쉼터(드롭인센터) 설치·운영 • 2005년 중장기쉼터 설치·운영
3. 성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부터 정체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시행 • 2012년 청소년쉼터 신고제 도입 •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개정(2012. 8. 2. 시행),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항 정비

자료 : 여성가족부(2016).

나. 사업내용 및 규모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의 생활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립역량 강화, 고충처리, 문화 활동 프로그램 기회제공 등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시설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로 특성화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로서 쉼터의 활동범위에는 가출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 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 관리 등이 포함된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개입,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청소년쉼터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7개소를 확대하여 전국에 13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5-2-5〉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시	10	10	13	21	22	26	28	30	30
고정형	8	8	8	15	16	18	18	20	19
이동형	2	2	5	6	6	8	10	10	11
단기	49	48	49	50	50	52	51	53	62
남	24	24	25	26	26	26	26	27	30
여	25	24	24	24	24	26	26	26	32
중장기	24	25	30	32	37	41	40	40	38
남	10	10	11	11	16	17	18	18	18
여	14	15	19	21	21	24	10	10	20
계	83	83	92	103	109	119	119	123	130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다. 청소년쉼터 종류 및 유형별 기능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쉼터의 종류는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가 있고 그 유형별 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 청소년쉼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1992년 설립된 ‘서울YMCA 쉼터’이고, 2004년에 가출청소년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일시보호시설인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서울과 인천, 대전에 각각 설립하였으며, 2018년 현재 일시쉼터는 30개소, 단기쉼터는 62개소, 중장기쉼터는 3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표 5-2-6〉 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30개소)	단기쉼터(62개소)	중장기쉼터(38개소)
기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최장 7일까지 연장 가능)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3년 이내 중장기보호 (필요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이용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 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 쉼터와 연결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출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 청소년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7).

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내실화

청소년쉼터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일시-단기-중장기로 특성화하고, 쉼터유형별로 운영모형 및 운영목표 등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부터는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2017. 2. 4. 시행) 사회복지시설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감면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안전관리 인력 확보 등 시설안전의무를 강화하였다.

2018년에는 가출 청소년의 조기발굴·긴급구조 및 초기개입으로 신속한 가정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거리상담 전문인력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5-2-7〉 연도별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백만원)	5,874	6,262	7,287	8,137	8,710	10,002	12,666	13,565	15,570
쉼터수(개소수)	83	83	92	103	109	119	119	123	130
입소청소년수(명)	9,350	11,657	11,764	15,242	24,079	25,012	30,329	31,197	32,109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9

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가. 추진배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을 계기로 일부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 대신 인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6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를 통한 전달체계를 활용하며 물품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시·군·구를 통해 물품으로 위생물품 지원을 지속하였으며 2019년 부터 여성청소년이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건위생물품 구매 금액을 지원하고자 한다.

〈표 5-2-8〉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 및 내용

구분	2016년 9월~2017년	2018년~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원자격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연령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지원방법	현물 배송	- 2018년 : 현물 배송 - 2019년 : 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내외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개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은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청소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복지포(www.bokjiro.go.kr) 사이트, 복지포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원하는 위생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다수의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시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림 5-2-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18).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2/6242

4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은 건전한 성장과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시·군·구를 통한 전달체계를 활용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표 5-2-9〉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9세 이상~18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자 (단, 생활지원 및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사업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등 (월 10만원~연 350만원 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7).

〈표 5-2-10〉 특별지원 종류 및 지원내용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비용 지원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 지원	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 지원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지원	월 36만원 이내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연 350만원 이내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월 1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자료 : 여성가족부(2018).

5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사회적 특수성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으로 이주배경청소년(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개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표 5-2-11〉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단위: 명)

북한이탈청소년 ¹⁾	중도입국청소년 ²⁾	외국인주민 자녀 ³⁾
4,877	9,892	201,333
통일부('18. 6월)	법무부('18. 6월)	행정안전부('17. 11월)

주 : 1) 북한이탈청소년 : 입국당시 연령 기준으로 19세 이하인 자

2) 중도입국청소년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외국인등록·귀화한 미성년자

3) 외국인주민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북한이탈청소년은 입국과정에서의 심리·정서적 상흔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 입국초기부터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 학습 공백, 동급생보다 많은 나이, 교육시스템의 차이 등으로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가족부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입국초기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하나원 교육생에게 ‘비교문화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이 하나원 퇴소 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동기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대면·찾아가는 상담 등 통합 상담 및 사례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5-2-12〉 북한이탈청소년 재학 현황

(단위: 명)

구분	학교유형								대안 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¹⁾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 현황	487	445	342	340	368	383	78	95	267	2,805
	932		682		751		173			
	2,538									

주 : 1) 기타학교 :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임.

2) 정규학교, 기타학교 재학현황은 2018년 4월 기준, 대안교육시설은 2018년 6월 기준 자료임.

자료 : 1) 교육부(2018).

2) 통일부(2018).

다문화청소년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 다수의 다문화청소년이 외모의 차이, 한국어 소통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이주자로서의 어려움과 청소년기의 정체성 혼란 등을 동시에 겪게 되며,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청소년은 신분상의 불안정(미등록, 단기비자 등)으로 정규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가정의 불화나 해체 등 이주배경에서 파생된 새로운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입국초기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기초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레인보우스쿨’에서는 한국어 교육, 사회문화 체험, 특기적성 활동, 생활정보(편·입학) 등을 제공하며, 2018년 기준 전국 15개 시·도에서 2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진로탐색과정 ‘무지개 잡(job)아라’ 및 직업교육과정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함께 하는 ‘이주배경청소년 통합캠프’, ‘1:1 멘토링’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및 특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목적은 방과 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돌봄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초4학년~중3학년)에게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적인 학습·복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소년(초4~중3)은 2005년 2,350명(연인원 : 225,600명), 2006년 4,200명(연인원 : 1,260,000명), 2007년 6,300명(연인원 : 1,890,600명), 2008년 7,980명(연인원 : 2,274,300명), 2009년 7,560명(연인원 : 2,177,280명), 2010년 6,672명(연인원 : 1,754,736명), 2011년 8,200명(연인원 : 2,148,400), 2012년 8,060명(연인원 : 2,095,600명), 2013년 8,200명(연인원 : 2,205,800명), 2014년 8,043명(연인원 : 1,962,492명), 2015년 9,490명(연인원 : 2,325,050명), 2016년 9,745명(연인원 : 2,368,035명), 2017년 9,773명(연인원 2,345,520명)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공공시설에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5년 46개소로 시작하여 2008년 185개소로 매년 크게 증가하다가 2009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잠시 축소되었으나 2011년부터 200개소로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다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전환, 1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44개소를 운영하였고, 2018년 현재 26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지원형, 농산어촌형 외에 다문화 청소년 대상 아카데미 2개소, 장애청소년 대상 아카데미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2005년 시범실시 이후 2006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국비 50%)되어 지자체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5-2-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방과 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

구분	내용							
사업대상	저소득·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구분	2005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수(개소)	46	200	200	200	244	250	250
	인원(명)	2,350	8,060	8,200	8,091	9,490	9,745	9,773
	연인원(명)	225,600	2,095,600	2,205,800	1,962,492	2,325,050	2,368,035	2,345,520
시행주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운영							
설치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시설 등							
사업기간	2018. 1. ~ 12월 연중 상시 실시(토요일, 방학 중에도 운영)							
사업	260개소(기본형 : 1개소 40명, 1개반 20명) 운영							
예산	개소당 1.5억원(국비지원율 : 서울 30%, 지방 50%)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지역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 전국적으로 26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5-2-14〉 지역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2018년 계획인원 기준, 단위 : 명, 개소수)

시도	이용 대상(18. 8월 말 기준)			운영 개소수			
	계	초	중	계	초	중	초+중
서울	940	670	270	24	15	5	4
부산	640	380	260	16	9	6	1
대구	530	400	130	14	10	3	1
인천	360	160	200	9	4	5	-
광주	180	90	90	5	2	2	1
대전	250	180	70	7	5	2	-

시도	이용 대상(18. 8월 말 기준)			운영 개소수			
	계	초	중	계	초	중	초+중
울산	240	-	240	6	-	6	-
세종	120	40	80	3	1	2	-
경기	1,780	905	875	44	18	16	10
강원	635	315	320	17	8	8	1
충북	500	400	100	12	8	1	3
충남	720	240	480	18	6	11	1
전북	670	280	390	17	5	8	4
전남	1,040	350	690	27	7	16	4
경북	550	350	200	13	7	3	3
경남	750	510	240	19	10	3	6
제주	360	260	100	9	4	1	4
계	10,265	5,530	4,735	260	119	98	43

자료 : 여성가족부(2018).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0

7 지역아동센터 운영

가. 지역아동센터 일반 현황

1)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정부에서는 방임될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전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이용시설로서, 18세

미만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인지·사회성 발달을 목적으로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식,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안전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육프로그램은 아동에게 기초학습지도, 학교생활관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에는 공연관람, 견학, 캠프 등이 포함된다. 정서지원프로그램으로는 아동과 부모상담 등을 통해 아동정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은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을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기능을 수행한다.

〈표 5-2-15〉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서비스 영역	세부프로그램
보호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등
교육	숙제지도, 예체능활동, 적성교육, 인성·사회성 교육 등
문화	관람·견학, 캠프·여행, 행사 등
정서지원	상담(연고자, 아동상담), 가족지원(보호자 교육,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연계	홍보,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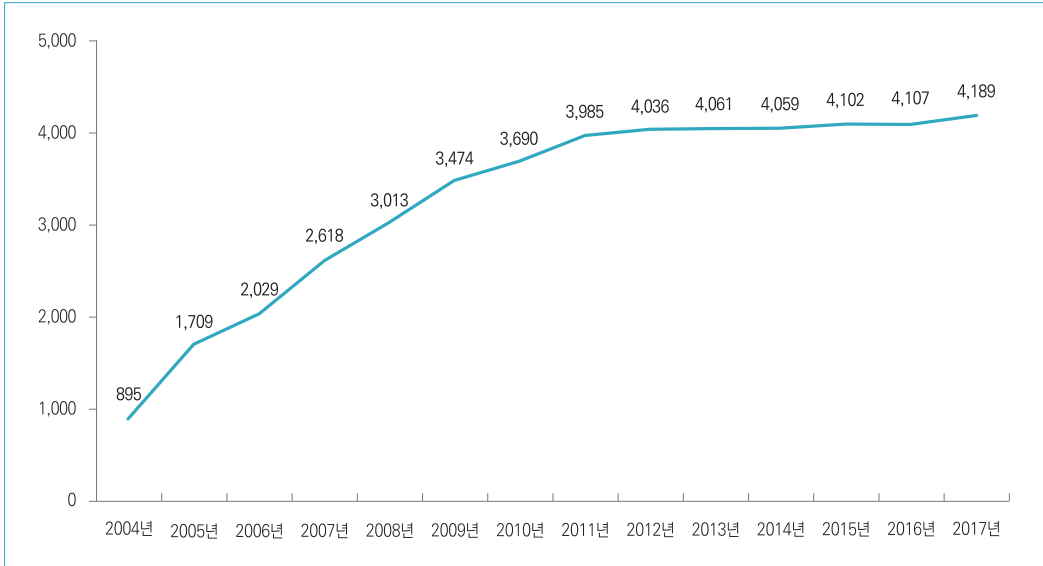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3)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이용 현황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한 보호, 학습지도, 지역사회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1년까지 3,985개소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 4,189개소로 최근 5년간 증가세가 안정화되었다. 시·도별 개소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783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450개소, 전남 379개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2-4]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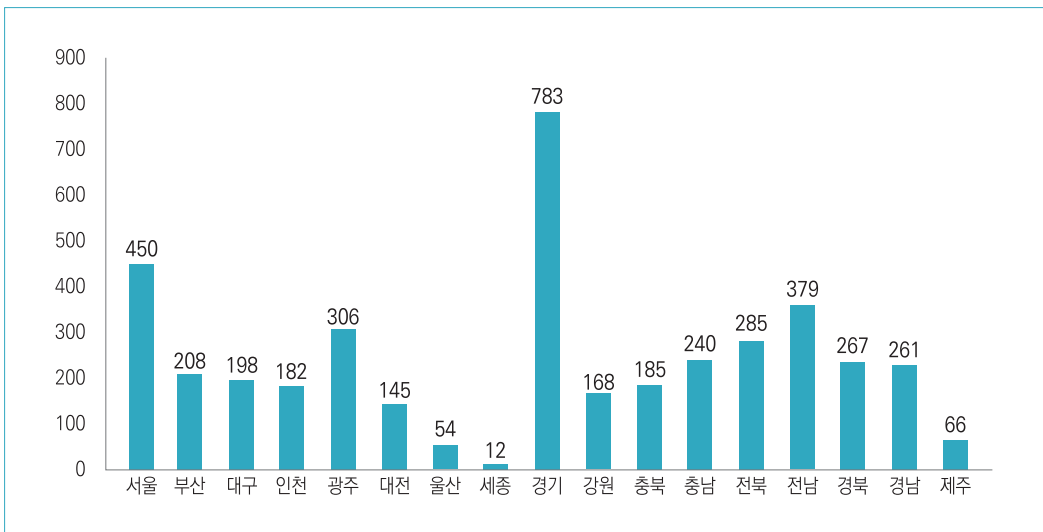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자료 :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7).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5-2-5]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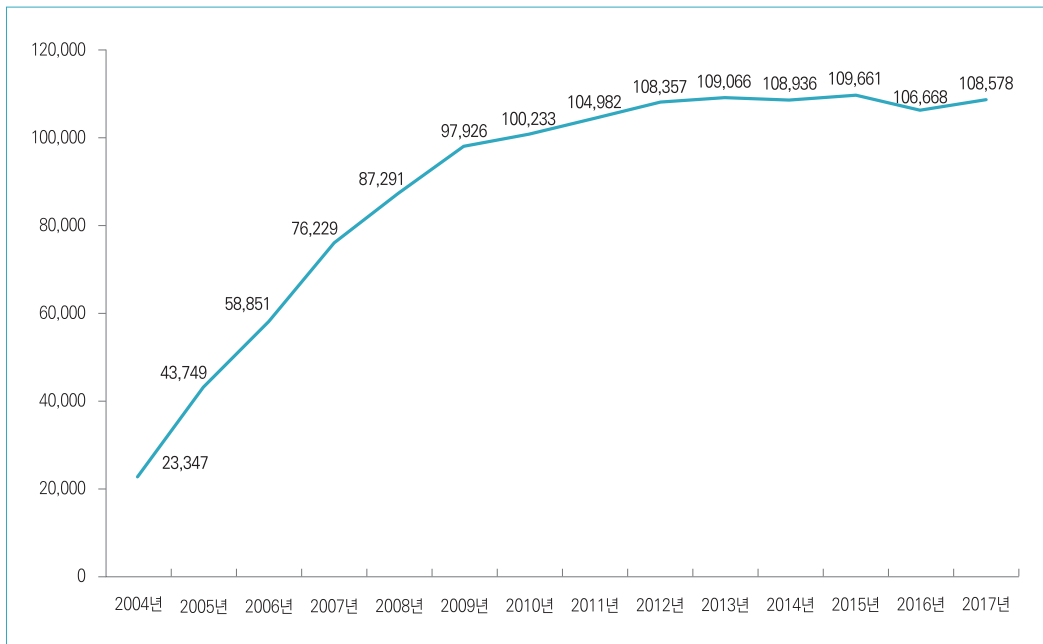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7).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4)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 증가

지역아동센터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아동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2004년 법제화 당시 23,347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08,578명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학년별 현황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이 37,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54,716명, 중학생 12,561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다문화·탈북아동 등 특별관리 아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장애아동 2,588명, 다문화가정 아동 16,358명, 탈북아동 424명으로 전체아동 중 17.8%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상황 유형별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 아동이 49.2%, 다문화 및 장애아동이 8.1%, 조손 및 한부모가정 아동이 6.3%, 다자녀 가정이 10.7%, 맞벌이 가정이 1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2-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7).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나.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긍정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시설 증가에 따라 정부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원대상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운영비 지원에 대한 단계적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에는 4,113개 시설에 대해 월평균 473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5-2-1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및 운영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편성 개소(개소)	902	1,800	2,088	2,788	2,946	3,260	3,500	3,742	3,989	4,113	4,113	4,113
지원 단가 (만원/월, 개소)	200	200	220	상:220 하:320	320	370	395	420	433	443	458	473

자료 : 보건복지백서(2017).

2007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운영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총 3,500명의 아동복지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아동복지교사는 아동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활동, 지역사회복지사 분야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평가를 실시하였고, 3년마다(1기: 2012~2014년, 2기: 2015~2017년) 의무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7

8 드림스타트 사업(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Dream Start)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지도,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를 제공해 가족기능 회복, 양육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7년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8년 드림스타트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지원대상은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으로, 복지욕구조사 및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통해서 대상아동을 선정한다. 단, 만 12세 이상의 아동이라도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동 발달수준 및 양육환경 사정을 실시하여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 등급으로 판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드림스타트 수행체계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전반적 삶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별·가구별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생활 전반에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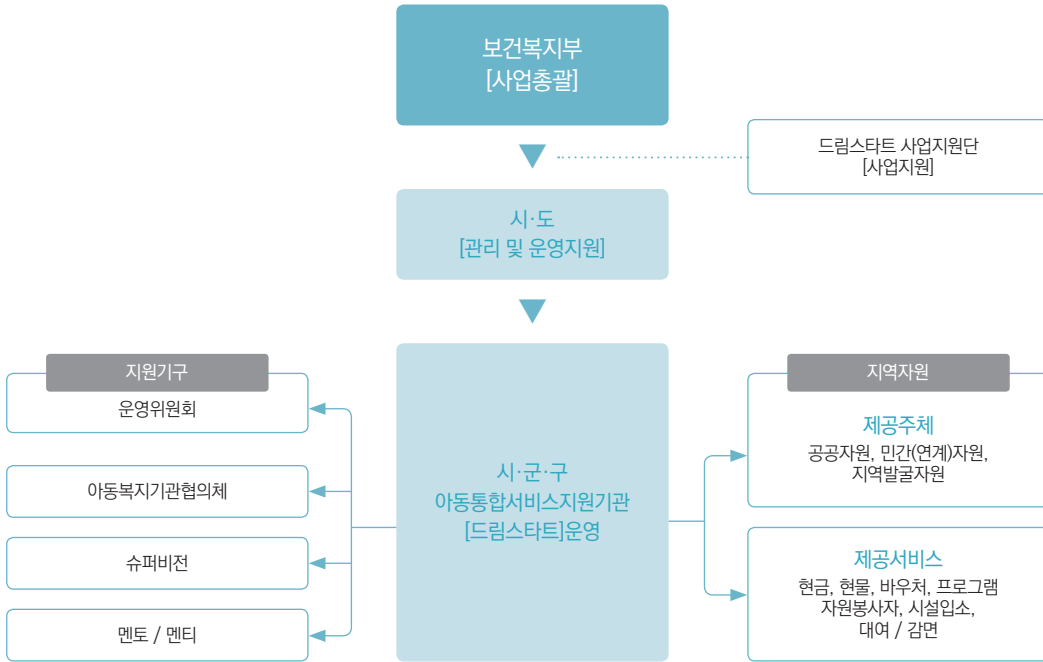
〈표 5-2-17〉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서비스	- 건강검진 및 예방(신체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검진 및 관련교육, 건강교육, 클리닉, 응급처치 및 영양 관련 교육 등) - 건강관리(질병관련 치료지원 등)
인지/언어 서비스	- 기초학습(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독서지도, 경제교육 등) - 학습지원(교구재활용학습, 공부방, 도서관운영, 보충학습, 예체능, 학습지 지원 등)
정서/행동 서비스	- 사회정서(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관련 교육, 진로지도 등) - 심리행동(심리상담 및 치료,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치료) - 보호(돌봄기관 연계, 야간 보호 및 교육 등), 문화체험
부모 및 가족, 임산부 서비스	- 부모교육(상담 및 교육, 자녀발달, 양육, 자조모임 등) - 양육지원(다문화가정지원, 취미, 여가, 안전 및 건강지원 등) 및 산전산후관리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17).

이러한 제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보건복지부가 정책결정, 재정지원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드림스타트 수행기구를 만들어 3인의 전담 공무원과 4~7인 이상의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을 배치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이나 서비스는 기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군·구 드림스타트 설치·운영 지원, 전담인력 교육, 운영모델 연구·개발, 사업평가, 후원 개발 및 홍보 등의 아동 통합서비스 실무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5-2-7]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나.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2008년부터 본격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2007년 16개에서 2008년에는 32개, 2009년에는 75개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01개, 2011년에는 131개, 2012년에는 181개, 2013년에는 211개, 2014년에는 220개, 그리고 2015년에는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서비스 수혜 아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도 2007년 3,700여 명에서 2017년에는 144,289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5-2-18〉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및 사례관리 아동 수

(단위 : 개소, 억원,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설치지역	16	32	75	101	131	181	211	220	229	229	229
증가 수	-	16	43	26	30	50	30	9	9	-	-
사업예산	50	98	225	301	372	462	576	632	658	668	668
아동 수	3,769	9,901	26,208	32,641	44,651	65,724	95,133	107,127	125,562	134,853	144,289
가구 수	2,465	6,516	17,141	21,699	29,332	42,387	61,630	66,551	80,102	86,681	93,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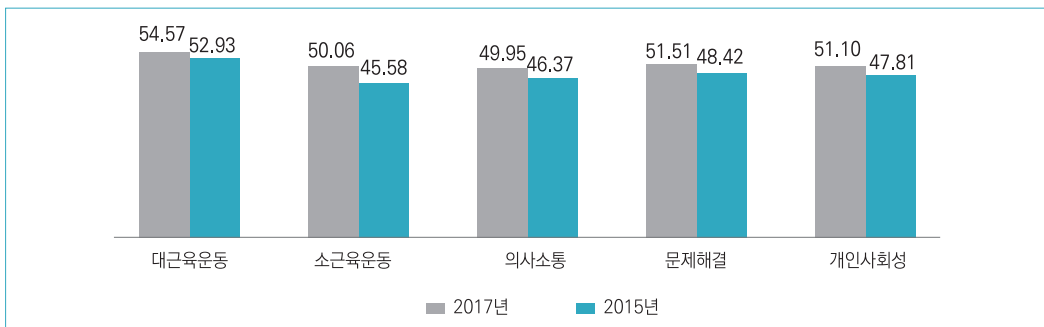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화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러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사업의 핵심기능인 사례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아동 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아동과 부모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영유아의 경우는 근육 운동 발달과 의사소통,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학령기 아동의 경우는 문제행동, 건강증진행위, 학습습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아동이 어릴수록 서비스 수혜에 대한 효과가 다른 연령대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가족기능 제고로 화목한 가정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8] 드림스타트 개입을 통한 영유아의 발달 산물 변화(2015년, 2017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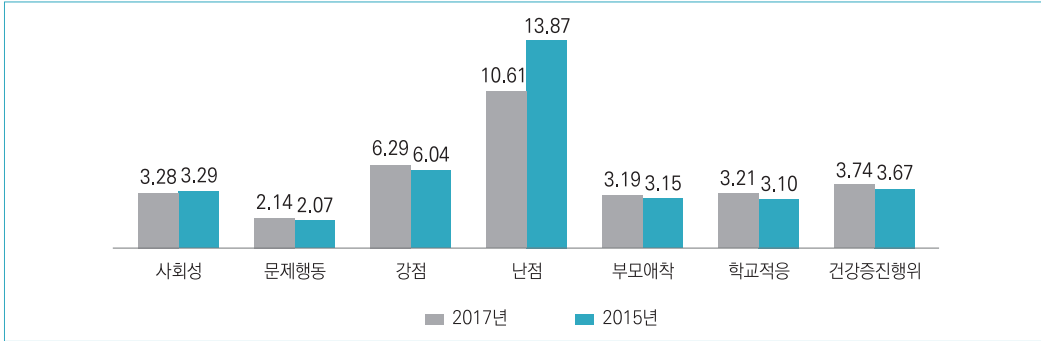
(단위 : 점)



자료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2017).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연구.

[그림 5-2-9] 드림스타트 개입을 통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발달 산물 변화(2015년, 2017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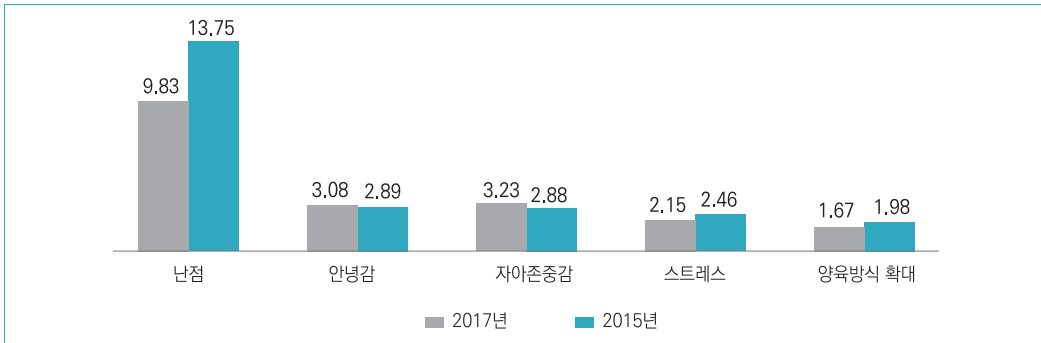
(단위: 점)



자료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2017),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연구.

[그림 5-2-10] 드림스타트 개입을 통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발달 산물 변화(2015년, 2017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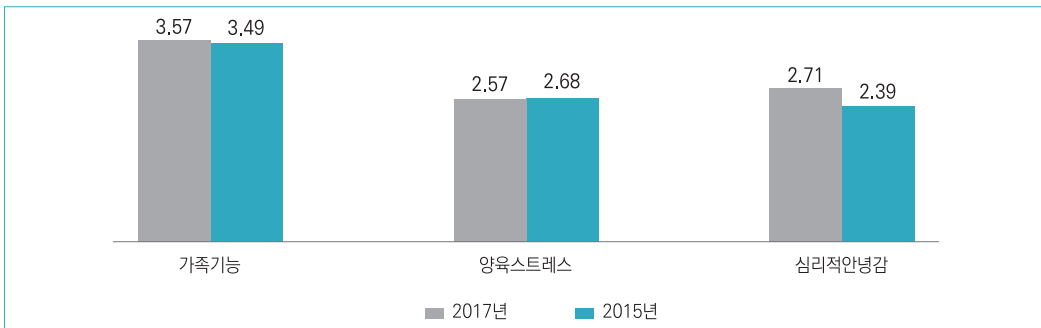
(단위: 점)



자료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2017),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연구.

[그림 5-2-11] 드림스타트 개입을 통한 양육자의 적응지표 변화(2015년, 2017년 비교)

(단위: 점)



자료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2017),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연구.

통합형 사례관리란, 서비스의 통합과 전달체계의 통합을 뜻한다. 먼저 서비스의 통합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의 총 3개 영역에 대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달체계의 통합이란, 민간과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의 통합으로 민간전문인력(아동통합사례관리사/보건, 복지, 보육 전문가)과 전담 공무원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적인 고위험 대상자의 경우, 개별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원 및 전문성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또한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맞춤형 사례관리란, 단순히 서비스를 모아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수혜적 복지 개념을 지양하고, 아동 및 가정의 상태에 따라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대상 아동과 가정을 선정할 때, 우선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을 선별하고, 선별된 시점에서부터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 비사례관리 대상으로 사례관리 등급을 구분하여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동 등급에 따라 재사정 주기 및 사례회의(사례점검) 주기를 정하여 대상자의 양육환경, 제공되는 서비스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표 5-2-19〉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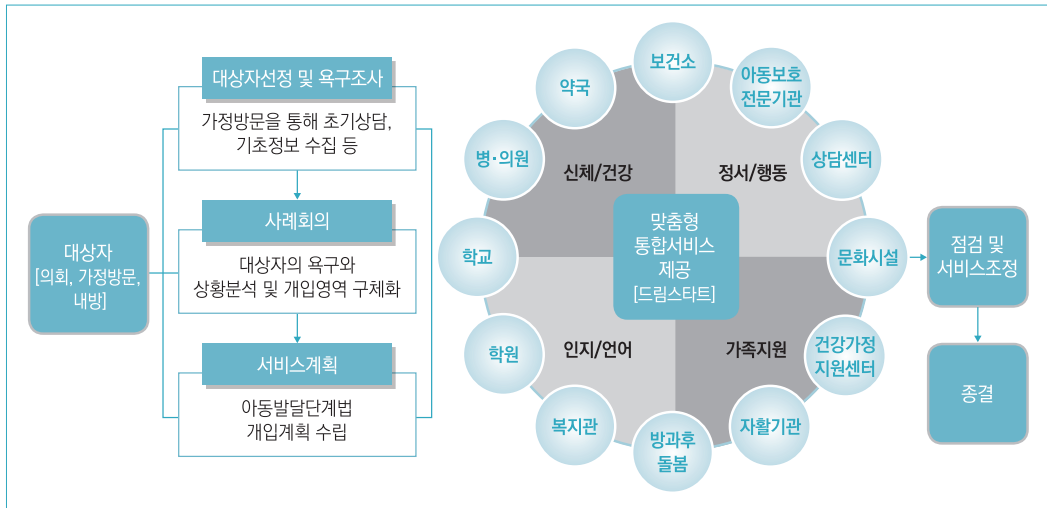
특징	내용
예방적 사례관리	• 문제가 심각해진 뒤의 사후치료와 개입보다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예방과 보호의 사례관리를 지향
통합적 사례관리	• 서비스의 통합 : 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서비스 • 방법론의 통합 : 개별실천, 집단실천, 가족실천, 지역 사회실천 • 민간과 공공의 전달체계의 통합
맞춤형 사례관리	• 일률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아동 및 가족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드림스타트 사업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체계화되었다. 시·군·구에 드림스타트가 설치되면, 드림스타트에서는 아동육구와 인프라 조사, 가정방문 인테이크(가정방문 인테이크는 통합서비스 제공 전 단계로서 개별아동과 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조사)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육·복지 등 세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치료,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 대하여는 방과 후 교실을 연계하거나 지역 학원들과

연계하여 학력 보충 기회 등을 제공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로, 드림스타트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 복지관, 문화시설, 보육시설, 학원 등을 자원기관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5-2-12]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3

9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최근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들에게까지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저소득 아동의 자립의지 함양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근감을 갖도록 2009년

1월부터 ‘디딤씨앗 통장’이라는 대국민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디딤씨앗 통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설보호·가정위탁·소년소녀 가정·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개인 용돈이나 물품으로 주는 것이 아닌 만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 혼자서 살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 적게나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 0~18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아동이 저축한 만큼 국가가 한도 내에서 추가로 적립하여 저축액이 두 배가 되게 한다. 정부지원금액은 2016년까지 월 최대 3만원 한도였으나 2017년부터 4만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2011년부터 저소득 가구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해당 아동은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디딤씨앗 통장으로 모아진 저축은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디딤씨앗 통장이 기존의 기부와 다른 것은 우리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국가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의 디딤씨앗 통장에 매월 40,000원을 후원하면 국가에서 추가로 40,000원을 적립하여 총 80,000원이 아이들의 디딤씨앗 통장에 적립된다. 즉, 기부한 후원금이 두 배가 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 주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 디딤씨앗 통장은 단순히 자립을 위해 저축액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목표와 계획에 맞게 돈을 모으게 하는 경제교육 효과도 있으며, 아이들 나름대로 디딤씨앗 통장으로 사회 진출 시 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하여 자립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장점도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아동이 매월 8만원(아동 4만원, 국가 4만원)을 0~18세까지 적립 시 1,936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12월 말 기준, 월 평균 4만 2천원을 저축하고 있다.

〈표 5-2-20〉 연도별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연도	지원아동수*(명)	월평균 적립액(원)	적립금 누계(억 원)		
			아동	정부	계
2009	32,197	28,186	258	223	481
2010	34,608	29,416	377	308	685
2011	41,180	30,903	510	409	919
2012	46,703	31,792	670	527	1,197
2013	51,670	35,172	854	660	1,514

연도	지원아동수*(명)	월평균 적립액(원)	적립금 누계(억 원)		
			아동	정부	계
2014	56,479	36,601	1,061	807	1,868
2015	61,000	38,247	1,296	969	2,265
2016	70,417	39,196	1,562	1,150	2,712
2017	71,457	42,416	1,861	1,369	3,230

주 : *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연도말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7

10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정부는 부모의 빈곤·실직·실종 등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시설보호, 입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호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 내에 보호하는 것으로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 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주택형 기숙사에서 소규모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우선 선정해 생계·의료 보호 및 교육보호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

요보호아동이 가정과 같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후된 아동시설부터 기능보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아동시설의 다기능화와 함께 가정

단위의 형태로 전환하여 가정 친화적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2012. 8. 5.)을 통해 보육사 배치기준을 아동의 연령에 따른 기준으로 강화하여 보육사 배치를 확대하였다. 또한, 건강하고 건전한 아동 양육을 위해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사무원, 영양사의 배치기준도 강화하였고, 자격증 기준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동 1인당 공간을 넓히고(3.3㎡ → 6.6㎡), 침실 1개의 정원도 현행 6인에서 3인 이하로 축소하였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사회부적응이나 정서불안 장애가 있는 아동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행동 개선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6억원, 약 600명)하였으며, 2017년에는 문제아동과 아동의 원가족 및 주양육자까지 사업을 확대(9억원) 하였다.

〈표 5-2-21〉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계(현원)		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2008	285	17,992	242	16,706	2	69	10	477	12	257	14	341	5	142
2009	280	17,586	239	16,239	2	65	11	514	12	262	13	368	3	138
2010	280	17,119	238	15,787	2	69	11	495	12	235	14	402	3	131
2011	280	16,275	242	15,313	1	32	10	455	12	249	12	113	3	113
2012	281	15,916	243	14,700	-	-	11	497	12	256	12	335	3	128
2013	281	15,239	243	14,038	-	-	11	486	13	250	11	359	3	106
2014	278	14,630	242	13,437	-	-	10	481	12	252	11	336	3	124
2015	281	14,001	243	12,821	-	-	11	447	12	243	12	350	3	140
2016	281	13,689	243	12,448	-	-	11	485	12	230	12	356	3	170
2017	280	12,789	242	11,665	-	-	11	497	12	221	12	279	3	127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아동복지시설현황.

시설아동을 중심으로 요보호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의지·자립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퇴소 후 실제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2008~2010년 3년간 전국 13개 시설(양육시설 11개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2개소)에서 4세 이상~24세

자립연장아동까지 자립지원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을 개발하여 2011년부터 전체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그 대상을 그룹홈, 가정 위탁아동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2012. 8. 5. 시행)에 자립지원 및 아동자립지원계획 수립, 전담기구설치, 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의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생활(퇴소) 아동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자립지원서비스에는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전세자금 우선지원, 영구임대·주택 우선 분양, 자립지원시설 거주, 폴리텍 대학 입학 우선기회 부여, 뉴스타트 프로젝트/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나. 가정위탁 지원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200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2012. 8. 5. 시행)하여 가정위탁 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시·군·구에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위탁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017년 말 9,575세대, 11,983명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다.

〈표 5-2-22〉 연도별 가정위탁 보호 현황

(단위 : 세대, 명)

연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2007	11,622	16,200	6,975	10,112	3,651	4,850	996	1,238
2008	11,914	16,454	7,488	10,709	3,436	4,519	990	1,226
2009	12,170	16,608	7,809	10,947	3,438	4,503	923	1,158
2010	12,120	16,359	7,849	10,865	3,365	4,371	906	1,123
2011	11,630	15,486	7,463	10,205	3,351	4,260	816	1,021
2012	11,030	14,502	7,230	9,732	3,037	3,831	763	939
2013	11,173	14,584	7,352	9,829	3,068	3,803	753	952
2014	11,077	14,385	7,162	9,550	3,089	3,816	826	1,019

연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2015	10,706	13,728	6,944	9,127	2,927	3,556	835	1,045
2016	10,197	12,896	6,642	8,578	2,773	3,348	782	970
2017	9,575	11,983	6,207	7,950	2,605	3,100	763	933

자료 : 2018년 아동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통계현황 등.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2004년 7월 중앙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월 20만 원이상 권고)을 지원하고 있고, 2012년부터 위탁이 종결될 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준하여 자립지원정착금, 대학진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 및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가정을 위해서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위탁아동 1인당 150만원의 과세공제 혜택을 위탁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부모의 책임을 경감하고,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을 위해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장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 16,454명의 아동으로 시작해, 2017년 11,983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험가입으로 사고나 질병에 의한 치료비 및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 받아 위탁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정위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1인당 기준 10만원의 상해보장비가 2013년에는 65천원으로 단가가 낮아졌지만, 담보내용은 확대되어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서 심리정서 검사·치료비를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20만원)로 증액하였으며, 치료기관 선정 시 상담사 요건 기준에서 '한국미술치료학회'를 추가하여 심리치료의 범위를 넓혔다. 진료비 청구 부분에서 심리치료지원사업과 관련한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월 2만원 이내, 택시 이용 시 월 4만원 이내)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가정을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41세대, 59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보조금(월 20만 원 이상 권고)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피복비, 영양급식비 및 학용품비·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통해 정서적인 측면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후견인, 결연 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이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는 추진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 5~7인으로 가구를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형태로서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 종류로 편입되었다.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가정위탁과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우선 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공동생활가정 수는 2016년 510개에서 2017년 533개로 확대되었고, 보호아동 수도 2016년 2,758명에서 2017년 2,811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에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5-2-23〉 연도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시설		보호인원
	신고시설	지원시설	
2009	397	290	1,993
2010	416	348	2,127
2011	460	348	2,241
2012	489	416	2,438
2013	480	416	2,481
2014	476	416	2,588
2015	480	448	2,636
2016	510	448	2,758
2017	533	448	2,811

자료 : 2018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보건복지부 통계현황 등.

마. 입양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입양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1년 8월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 절차 전반에 아동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하고, 「입양특례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를 도입하여, 미혼모 등이 출산 후 일주일 이상 지나야 입양동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양부모 자격심사 강화와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친가족 찾기 등을 위해 본인의 입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양정보공개청구권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입양특례법」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1) 입양제도의 개선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된다. 이에 따라 입양 성립요건이 입양신고(국외 입양은 복지부 이주허가)에서 법원의 입양허가로 강화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는 양부모 자격을 제한하고, 양부모가 될 자는 입양 성립 전 입양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부모 자격심사를 강화하였다.

친생부모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가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지나야 입양 동의를 할 수 있게 하여 숙려기간을 두었다. 한편, 입양 동의 전 입양기관은 친생부모가 직접 양육 시 양육정보 및 정부지원 내용, 입양의 효력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해 온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의 법적근거를 신설하였다.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아동이 입양 의뢰 된 때부터 5개월 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6개월 → 1년)하였으며 입양아동과 양부모 간 상호적응 관찰, 아동양육 정보 제공, 입양가정에 수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1년 동안 4회 이상 가정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2회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입양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입양원에 입양아동 및 그 친생부모, 양부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다.

2) 국내 입양 활성화

요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귀가조치가 어려운 경우 우선 국내 입양을 추진하고, 국내 입양이 어려울 경우 국외 입양조치 되도록 2007년부터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앞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입양 중 장애아동 입양비율이 매우 낮으며, 아동 양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6년부터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 개정(2003. 2. 9.)을 통해 입양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입양절차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16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표 5-2-24〉 국내·외 입양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내	1,332 (41.2)	1,388 (52.3)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683 (64.6)	546 (62.0)	465 (53.9)
국외	1,899 (58.8)	1,264 (47.7)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374 (35.4)	334 (38.0)	398 (46.1)
계	3,231 (100.0)	2,652 (100.0)	2,556 (100.0)	2,439 (100.0)	2,475 (100.0)	2,464 (100.0)	1,880 (100.0)	922 (100.0)	1,172 (100.0)	1,057 (100.0)	880 (100.0)	863 (100.0)

자료 : 1) 보건복지부(2018).
2) e-나라지표(<http://index.go.kr>).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은 기존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 1인당 월 55만 1천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2010년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월 5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 중증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월 62만 7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를 기존 연 252만 원에서 2011년 26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2012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당 지원액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심리치료 지원한도를 월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13세 미만 입양아동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2016년부터는 16세 미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표 5-2-25〉 국내 입양가정 지원제도 현황

지원 내용	지원 액
입양비용 지원(2007년~)	100~270만원
양육수당(2007년~)	(만 16세 전까지) 월 15만원/월

지원 내용		지원액
의료급여(2005년~)		(만 18세 전까지) 의료급여 1종
심리치료지원(2010년~)		(만 18세 전까지) 월 20만원 한도/월
장애아동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양육보조금(1996년~)	월 627천원, 월 551천원
	의료비(1996년~)	연간 260만원 한도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공개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11월부터 입양한 공무원에 대해 20일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기업 근로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에서부터 국내 보호 인프라 확충 등 국내가정 보호, 입양 후 사후관리 및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관련 국내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0

11 아동 급식 지원

정부는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또는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발생하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2000년 10월부터 아동급식을 실시하여 아동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급식은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2001년 11월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급식지원 확대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취학아동에 대해 조·석식,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조·중·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 주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2000년 사업 시작 이후 1만 5천여 명의 결식 또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2004년부터 방학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여 급식을 실시하게 되면서 여름방학에는 3만 9천 명에 대하여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였다.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 대상을 결식우려 아동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확대하는 적극적 급식지원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학기 중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7만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이 지원되었다.

결식아동의 누락방지를 위해 2008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급식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에서 결식을 하는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2009년에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조사 및 선정 주체를 담임교사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결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2005년 지방이양 이후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비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구에 설치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방법, 급식단가, 소요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다.

급식지원 대상자는 연중 조사하되, 전화, 서면 및 방문조사, 교사·통장·이장·반장·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개인별로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실시하고 급식지원 대상자 조사·선정(방문조사 또는 전화상담 등)시 아동의 심리적 상처 등 낙인(stigma) 방지에 유의하고 있다. 아동급식 전달 방법은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급식소 급식과 인근지역의 일반음식점 급식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였고, 지역의 도시락업체를 통해 도시락 배달이 불가하고,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식지원과 식품만 교환이 가능한 식품권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급식 전달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식지원대상의 확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 등 인적자원과 종교·시민단체 등의 급식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물적 자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표 5-2-26〉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 대상자	13,792	235,202	214,009	257,276	271,606	415,519	476,444	485,811	471,961	438,042	416,092	381,838	350,109	332,865	317,234

자료 : 보건복지부(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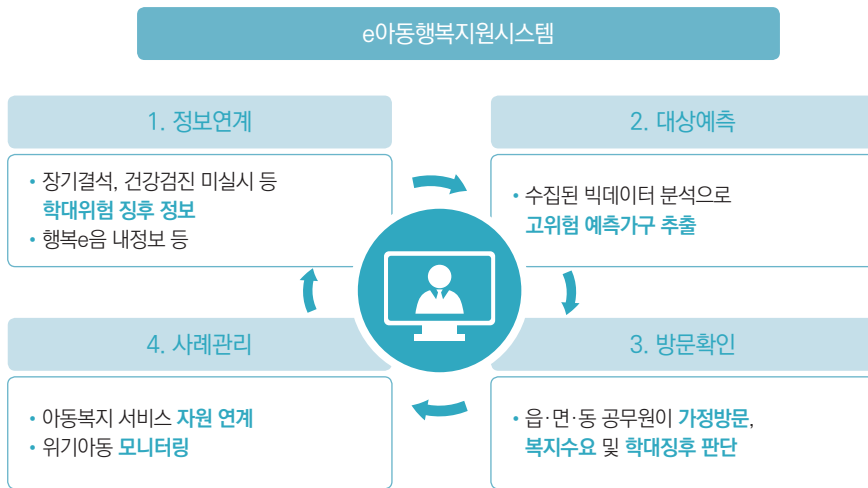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3

12 보호대상아동 조기 발견·지원(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여러차례에 걸쳐 다각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폐된 공간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서야 발견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들을 활용 및 가공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선제적으로 예측 및 발굴하기 위해서 2018년 3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해당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또한 연계가 가능하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 여부’,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여부’, ‘병원기록’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추정하여 각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읍·면·동으로 확인이 요구되는 아동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면, 읍·면·동 공무원은 해당 아동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드림스타드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 조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기아동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서비스 연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5-2-13]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추진 체계



지난 2018년 9월 기준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의심 아동으로 추정된 아동의 수를 살펴보면 1차 기간 동안에는 21,992명, 2차 기간에는 18,602명으로 총 40,594명이며, 해당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확인율은 86.3%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2-27〉 위기의심 아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진행기간	전체	현장조사 완료	확인율
'18년 1차	3. 19.~6. 1.	21,992	19,888	90.4
'18년 2차	6. 25.~9. 14.	18,602	15,155	81.4
계		40,594	35,043	86.3

주 : 2018년 9월 14일 기준 현황임.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2018).

다음으로 현장조사 완료 현황을 살펴보면, 빈집,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대상 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은 2,674명, 현장확인을 완료한 아동은 30,519명이었다. 이 중에서 현장조사 결과, 사례관리 또는 트림스타트 사업으로의 연계가 필요한 가정의 아동은 1,820명이었으며 대상아동이 위기 또는 학대피해아동으로 나타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로 신고가 필요한 아동의 수는 30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5-2-28〉 현장조사 완료 현황

(단위 : 명)

구분	현장조사 완료					
	계	비대상	현장확인	소개	서비스 연계대상	위기아동 신고대상
'18년 1차	19,888	1,571	17,125	1,192	1,169	23
'18년 2차	15,155	1,103	13,394	658	651	7
계	35,043	2,674	30,519	1,850	1,820	30

주 : 1) 2018년 9월 14일 기준 현황임.

2) 비대상 : 빈집, 장기입원 등 대상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현장확인 : 아동의 가정 및 생활환경이 양호하여 서비스연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4) 서비스연계대상 : 현장조사 결과 사례관리 또는 트림스타트 사업 연계가 필요한 가정.

5) 위기아동 신고대상 : 대상아동이 위기, 학대피해아동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신고가 필요한 경우.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2018).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044-415-2162

제3장 |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1 상담서비스

가. 청소년상담서비스 배경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빈번하게 경험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과 문제를 방치할 경우 성인기에 악화된 형태로 나타나 개인과 사회에 파괴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 내 청소년들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족갈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사회적 압력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어려움들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개입 및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당시 체육부)'가 청소년상담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청소년종합상담실(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2018년 현재 17개 시·도와 211개 시·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0년에 설치된 체육부 청소년종합상담실은 1993년에 '청소년대화의 광장(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법인화됨으로써 중앙지도 차원의 상담시설과 지역 중심의 상담지원을 위한 기관설치 및 운영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과 학부모 및 지도자 대상의 제반 상담 서비스 제공과 각종 교육 및 연수, 학술 및 연구 활동, 각종 매체상담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개발과 함께 이러한 서비스의 직·간접 제공에 힘써왔다. 그러던 중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과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의 보호 업무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청소년 육성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등 청소년정책 환경의 일대 변혁이 단행되면서, 기존 청소년상담 기관의 위상과 역할 및 조직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 8월 2일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원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전문상담 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업중단·취약계층·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되어 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급속한 문화적 변동, 전통적 가치관과 가정기능의 붕괴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심화되었으나 이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 등의 1차적 사회안전망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문제(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폭력피해(성·가정·학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교 밖 청소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위기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상담 활동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상담 활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 기존 활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해결 및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상담기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교육 연수 및 상담 실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많은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 영역별 보수교육을 통해 실제 청소년 상담업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선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밖에 지속적인 또래상담지도자 양성교육과 활성화 대회를 개최하여 또래상담자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였으며, 품성계발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지침서를 개발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상담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고품질의 양성교육을 지원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도를 위한 꿈드림 프로그램 활용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업은 전문상담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체계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청소년상담 증추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상담복지 전문기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상담복지 전문기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5-3-1〉 2017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단위: 명)

구분		수료인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2,724
또래상담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5,552
품성개발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879
부모교육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1,232
센터직원 직무연수		698
센터직원 이리닝 직무연수		18,702
사업별 직무 연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	1,269
	꿈드림센터 전문인력 양성과정	2,328
	자살예방교육 지도자	261
총 계		33,645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7).

2017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의 이용건수는 2,520건이었다. 개인상담 총 건수는 1,489건이었으며, 위기상담이 700건, 고위기상담이 789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상담의 문제 유형별 상담 이용률은 ‘대인관계문제’가 2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신건강’ 28.5%, ‘가족문제’ 18.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시·도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황과 실적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 8월 2일 전부개정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서 지역의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Net) 운영,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 운영,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심리상담 및 놀이치료, 또래상담사업, 학부모상담자원봉사회 운영, 청소년상담관련 심리교육, 지도자 양성,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0년에 대구, 광주에 최초로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91년도에 부산(현재 진구), 대전(현재 동구), 충북(청주), 1992년도에 인천(현재 남구), 전북(전주), 1993년도에 경기(수원), 강원(춘천), 경남(창원), 1994년도에 충남(천안), 전남(순천, 현재 무안), 경북(안동), 1995년도에는 제주(제주), 1997년도에 서울(중구), 1999년 울산(중구)에 설치되었다. 이후 2006년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 8월부터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8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인 청소년상담체제를 구축하고자 2018년 기준 211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로 운영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지역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초자치단체수 대비 설치비율은 전국 91.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사회 내 전문 인력 활용 등의 통합적이고 문제영역별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5-3-2〉 2018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개), %)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11	24	12	8	8	5	2	4	-	31	11	12	15	14	22	21	20	2
계	228	25	13	9	9	6	3	5	1	32	12	13	16	15	23	22	21	3
설치율	91.9	96.2	76.5	100.0	81.8	100.0	50.0	83.3	100.0	100.0	63.2	100.0	100.0	100.0	100.0	91.7	100.0	100.0

주 : 설치율은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비율.

자료 : 여성가족부(2018).

3)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활동

2017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CYS-Net 서비스 지원 실적은 5,682,274건으로 2016년 이용건수(5,289,673건)보다 7.4%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2,731,834건(48.1%), 여자 2,950,440건(51.9%)으로 남자 이용자보다 여자 이용자가 더 많았다.

또한, 2017년 CYS-Net 서비스 유형별 이용추세를 살펴보면, ‘집단 상담’이 26.9%(1,525,853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개별지원서비스’ 26.8%(1,521,195건), ‘그룹지원서비스’ 18.3%(1,038,646건), ‘개인상담’ 14.4%(815,84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은 집단상담의 특성상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여러 회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과 성인이용자를 비교하면 ‘청소년’이 78.5%(4,461,404건), ‘성인’이 21.5%(1,220,870건) 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이용자 중 ‘초등학생’이 25.3%(1,436,086건), ‘중학생’ 25.9%(1,471,194건), ‘고등학생’ 21.8%(1,241,286건), ‘대학생’ 3.0%(170,327건), ‘근로청소년’ 0.7%(40,141건), ‘무직청소년’ 4.8%(272,697건)로 중학생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성인 이용자는 ‘보호자’가 9.9%(560,974건)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지도자’가 6.0%(341,635건), ‘기타’가 2.6%(147,934건)이었다.

〈표 5-3-3〉 2017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별 상담실적

(단위: 건)

구분	대상별										
	초	중	고	대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보호자	청소년 지도자	기타	소계	
개인상담	225,605	222,032	194,590	24,366	5,172	44,250	80,186	17,643	2,005	815,849	
집단상담	603,126	447,442	305,058	14,918	1,272	43,023	50,661	48,959	11,394	1,525,853	
전화상담	12,346	41,128	59,767	25,761	2,396	16,858	102,154	89,659	78,027	428,096	
심리 검사	개별	23,393	31,529	23,297	2,591	369	3,754	7,226	359	258	92,776
	집단	29,139	48,098	29,619	3,925	647	597	3,062	983	1,165	117,235
사이버 상담	메일	4,781	17,474	14,381	2,874	26	1,312	980	262	1,346	43,436
	채팅	4,220	9,875	26,500	12,916	661	6,917	781	166	3,518	65,554
사업수행 프로그램	10,154	10,266	7,107	476	75	523	1,012	205	98	29,916	
자원 서비스	개별	258,864	336,642	340,626	41,451	14,406	132,460	261,935	125,832	8,979	1,521,195
	그룹	264,020	306,086	239,708	40,986	15,052	22,801	52,678	56,519	40,796	1,038,646
기타상담	438	622	633	63	65	202	299	1,048	348	3,718	
합계	1,436,086	1,471,194	1,241,286	170,327	40,141	272,697	560,974	341,635	147,934	5,682,274	

주 : 기타는 부모 및 가족을 제외한 교사, 지역사회 보호자 등을 의미함.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7).

2017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볼 때 ‘대인관계’ 27.1% (1,257,287건)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학업 및 진로 문제’가 17.8% (826,084건), ‘정신건강’ 12.2%(567,981건), ‘일탈 및 비행’ 9.5%(442,572건), ‘컴퓨터/인터넷 사용’ 8.4%(389,34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전년도 24.8%)’, ‘정신건강(전년도 12.2%)’에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친구관계 고민’이 80.8%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및 왕따’ 7.9%, ‘교사와의 관계’ 2.4%, ‘이성교제’ 2.2%, ‘어른과의 관계’ 1.0% 순이었다. 청소년이 겪는 학업 및 진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진로정보탐색’ 36.7%, ‘학업흥미/학업 동기 부족’ 17.9%,

‘학교생활부적응’ 13.2%,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7.0%, ‘진로의식부족’ 6.3%, ‘학습능력 부족’ 6.1% 순이었다. 정신건강 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우울/위축 문제’가 37.0%로 가장 많았고, ‘강박/불안 문제’가 17.9%, ‘충동(분노) 조절 문제’ 8.2%, ‘자살관련 문제’ 7.0%, ‘주의산만 및 과잉행동’ 6.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일탈 및 비행 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35.4%, ‘금품갈취/절도/도박’ 21.0%, ‘가출’ 10.0%, ‘음주/흡연/약물오남용’ 6.6%, ‘비행친구와 어울림’ 6.2%, ‘학교 외의 폭력’ 5.3%, ‘늦은 귀가/ 잦은 외박’ 2.7% 순이었다.

〈표 5-3-4〉 2017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건)

구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외모	컴퓨터/정보 인터넷 사용	정보제공	법률정보	활동	기타	합계	
개인 상담	88,891	81,924	140,123	14,084	86,068	192,958	126,933	9,049	65,299	4,849	265	3,522	1,884	815,849	
집단 상담	40,817	149,879	283,921	29,228	46,917	623,111	106,611	3,465	173,026	15,641	1,075	51,560	602	1,525,853	
전화 상담	29,583	28,727	38,841	13,209	16,442	52,333	36,881	2,968	18,356	146,349	1,241	4,783	38,383	428,096	
심리 검사	개별	7,839	8,239	18,021	1,108	10,055	14,852	15,483	534	16,030	295	18	106	196	92,776
	집단	1,211	5,573	45,356	445	32,412	10,638	10,380	8	8,716	1,252	-	1,159	85	117,235
사이버 상담	메일	3,357	746	8,488	3,945	2,175	13,974	5,119	2,888	337	2,201	89	63	54	43,436
	채팅	6,176	957	9,967	1,856	2,856	17,699	14,941	1,138	457	2,779	84	336	6,308	65,554
사업수행 프로그램	736	3,180	5,178	88	687	8,043	1,297	192	9,156	440	4	914	1	29,916	
지원서비스 (개별)	178,593	163,041	275,689	26,108	131,965	323,166	250,037	19,907	97,730	34,817	494	16,328	3,320	1,521,195	
기타 상담	268	306	500	41	232	513	299	24	238	1,089	7	171	30	3,718	
총합계	357,471	442,572	826,084	90,112	329,809	1,257,287	567,981	40,173	389,345	209,712	3,277	78,942	50,863	4,643,628	

주 : 집단지원서비스의 경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따로 산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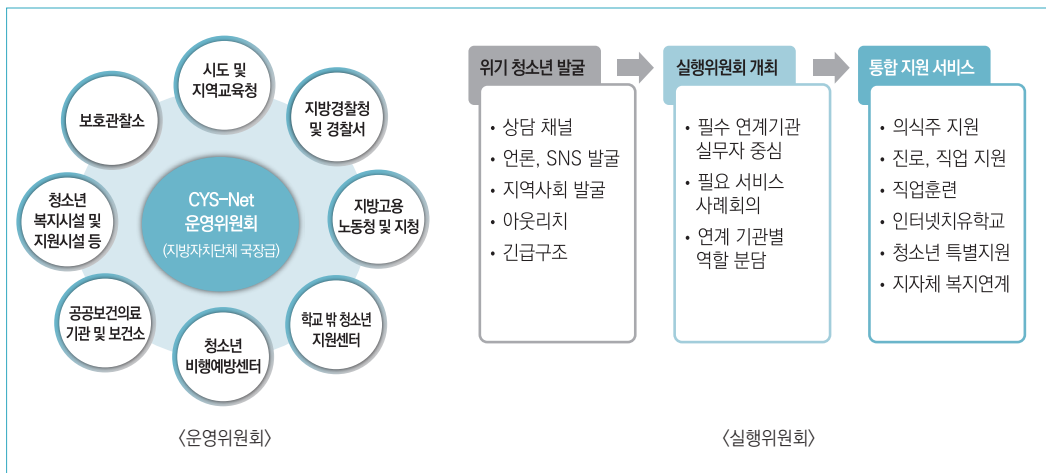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7).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속적인 이혼율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한 가장의 실직 등으로 가정해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별로 인프라의 편차가 있거나 상호협력체계가 부재하여 대상자 조기발견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별화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정신건강문제’, ‘가출’, ‘폭력피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림 5-3-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8).

CYS-Net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CYS-Net 사업은 2017년 전국 16개 시·도 및 208개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178,128명의 위기청소년에게 2,559,841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다. 더불어

CYS-Net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연계망의 범위를 민간사회로 확대하여 가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의 업소를 주축으로 위기청소년의 발견·긴급구조 및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해왔고, 점차적으로 의료, 법률, 자활 등의 전문분야에서도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민간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며 CYS-Net의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CYS-Net 서비스 이용 실인원은 구체적으로 남자가 51.0%(90,779명)이며 여자가 49.0%(87,349명)로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5〉 연도별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

(단위: 명)

연도	남자	여자	합계
2008	40,977	40,025	81,002
2009	47,825	50,195	98,020
2010	67,035	61,391	128,426
2011	77,836	67,540	145,376
2012	78,900	70,407	149,307
2013	94,901	88,427	183,328
2014	122,681	119,549	242,230
2015	113,482	111,310	224,792
2016	95,783	90,553	186,336
2017	90,779	87,349	178,128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7).

CYS-Net을 통해 청소년에게 지원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전체 2,559,841건으로 2016년 대비 10.2% 증가하였다.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61.2%로 가장 많이 지원된 서비스로 나타났고,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이 16.3%,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6〉 연도별 CYS-Net 지원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건)

연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합 계
2008	286,069	30,497	80,857	10,740	2,754	5,759	1,362	16,243	434,281
2009	504,540	43,517	109,428	18,210	3,387	5,431	1,283	29,793	715,589
2010	882,001	62,456	225,721	84,535	11,544	6,254	1,728	129,255	1,403,494
2011	1,102,858	64,147	237,072	146,621	18,565	8,513	4,981	191,135	1,773,892
2012	1,094,027	67,300	228,533	172,502	15,486	6,872	1,409	189,707	1,775,836
2013	1,207,143	53,946	255,286	101,809	15,475	5,036	3,749	278,829	1,921,273
2014	1,249,266	68,958	246,078	99,013	20,317	14,391	2,487	180,879	1,881,389
2015	1,288,115	61,151	311,197	80,118	20,703	4,966	1,803	232,547	2,000,600
2016	1,363,329	80,908	352,116	105,745	9,231	9,322	1,644	400,269	2,322,564
2017	1,566,866	71,396	417,669	84,188	18,138	11,404	1,986	388,194	2,559,841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7).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3 청소년전화 1388

2005년 4월 27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가출청소년 상담전화 1588-0924,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전화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전화 등을 1388로 통합(2005. 9. 1.)하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관문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일반국민 누구나 청소년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화로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및 수련활동 정보제공, 인터넷 중독치료

등 청소년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388 전화 일평균 이용 수는 2005년 9월 통합 이후 하루 17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도 270건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1,173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생활환경 변화와 발맞춰 사이버 및 모바일 상담 등 상담채널을 다양화 하였다. 2018년은 17개 시·도 및 211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국 228개 센터에서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다(CYS-Net 운영센터는 226개).

〈표 5-3-7〉 2017년 청소년전화 1388 주요 실적

(단위: 건)

주요사업 내용		실적		증감	
		2016년(A)	2017년(B)	B-A	%
청소년전화1388 이용실적	통화횟수	403,538	428,096	24,558	6
	일평균	1,103	1,173	70	6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7)

한편, 청소년전화 1388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1388 상담서비스 홍보 동영상을 스마트폰 앱(아이엠스쿨), 인터넷 배너, 네이버웹툰, 피시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및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했으며, 인터넷포털 ‘네이버’, ‘다음’ 등을 통한 인터넷 홍보, 페이스북, 지상파 TV 협찬광고 등 방송 매체 홍보와 월간 웹진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였다.

〈표 5-3-8〉 연도별 청소년전화 1388 호소문제 유형별 이용건수

(단위: 건)

연도	가족	일탈/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외모	컴퓨터/인터넷사용	근로	정보제공	법률정보	활동	기타	합계
2009	25,937	40,669	35,118	21,473	9,901	25,532	16,419	2,522	12,101	-	181,906	976	7,649	44,539	424,742
2010	22,839	41,690	34,725	21,702	9,775	24,246	16,888	2,436	13,901	-	157,544	857	5,692	70,348	422,643
2011	25,687	44,511	48,648	17,935	11,967	30,449	21,231	2,617	19,047	-	141,464	880	6,509	61,671	432,616
2012	24,477	36,524	43,471	16,449	12,328	33,295	27,987	2,416	16,382	-	129,779	975	7,814	54,034	405,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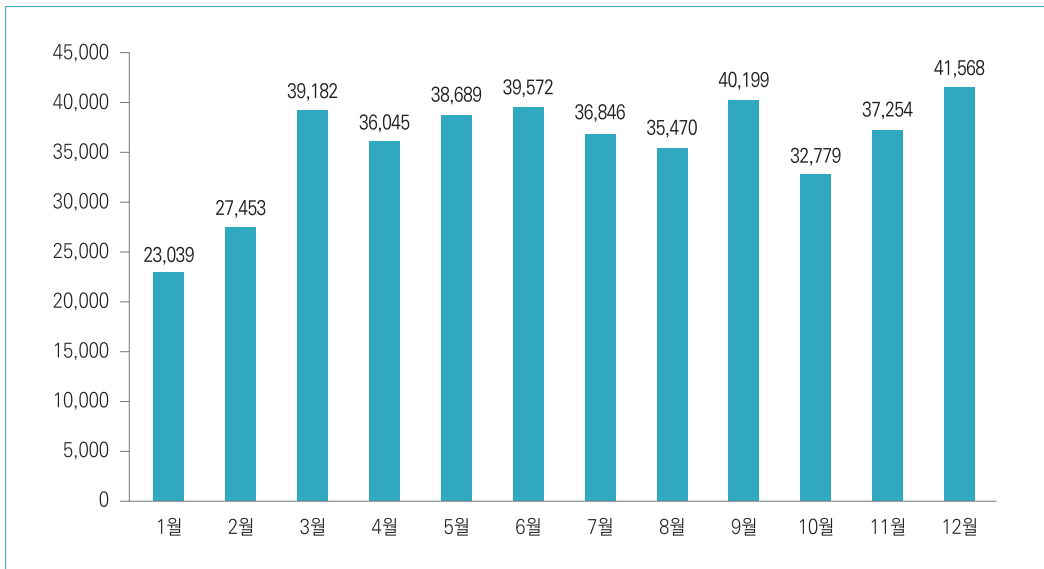
연도	가족	일탈/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외모	컴퓨터/인터넷사용	근로	정보제공	법률정보	활동	기타	합계
2013	23,437	30,682	42,580	17,519	13,152	37,555	30,238	2,739	16,179	-	135,764	843	6,169	56,374	413,231
2014	22,937	28,017	44,742	15,735	13,762	39,726	30,016	2,649	16,329	-	118,980	805	6,439	60,174	400,311
2015	25,173	25,688	39,178	14,501	14,206	39,797	32,638	3,159	14,276	-	108,823	1,016	4,182	53,400	376,037
2016	28,479	26,623	39,948	11,859	15,660	43,744	35,525	3,103	14,280	-	125,051	981	4,194	54,091	403,538
2017	29,583	28,727	38,841	13,209	16,442	52,333	36,881	2,968	18,356	386	146,349	855	4,783	38,383	428,096

주 : 상담유형 중 근로는 2017년부터 실적관리.

자료 : 여성가족부(2017).

[그림 5-3-2] 2017년 청소년전화 1388 월별 이용실적

(단위 : 건)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7).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위기청소년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아 상담이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상담전문가가 상담 및 심리,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후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을 돕고 위기요인을 개선하고자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중심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에 힘쓰고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s)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청소년동반자들은 위기청소년에게 각종 상담, 심리·정서적 지지, 자활 지원, 학습·진로 지도,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도에 4개 시·도(서울·경기·광주·경남)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동반자 223명이 활동하였고, 2008년도에는 16개 시·도로 확대 운영되면서 청소년동반자도 470명으로 확대되었다. 2017년에는 1,146명의 청소년동반자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되어 활동함에 따라 38,456명의 청소년이 지원받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보다 많은 고위기 청소년들이 개인 특성과 필요에 따른 수준 높은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표 5-3-9〉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청소년동반자 수	470	1,270	880	880	980	985	1,000	1,044	1,066	1,146
수혜 청소년 수	14,510	24,515	25,675	26,324	31,226	31,190	33,471	34,775	35,710	38,456

자료 : 여성가족부(2017).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가. 또래상담 사업 개요

또래상담은 교육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청소년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효과를 인정받은 또래상담은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2018년 현재까지 전국 8,205개교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5-3-10〉 2018년 또래상담 사업 실적

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또래상담 운영학교 운영	8,200개교	8,205개교	100.1%
또래상담 지도교사 양성	5,600명	6,219명	111.1%
또래상담자 양성	250,000명	367,876명	147.2%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나. 또래상담 추진현황

1994년에 처음 시작된 또래상담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급·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범정부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사업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되었다.

또래상담의 취지는 함께 생활하는 또래상담자의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있으며, 교사나 부모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발견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는 또래상담 지도자 및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해 지도자 지침서, 또래상담 홈페이지⁴⁾를 운영하여 관련 정보를 현장과 공유하고 있으며, 또래상담자용 스마트수첩을 개발하여

4) 또래상담 홈페이지: www.peer.or.kr

또래상담자 스스로 상담활동을 쉽고 효율적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또래상담 운영학교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대상, 운영 형태별로 또래상담 지도교사, 또래상담자에 대한 교육 및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또래상담의 본보기를 제시하기 위해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사례집 제작·배부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우수사례 확산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센터-학교 간 또래상담 운영 노하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또래상담 연합회를 구축하고 지도교사 간담회, 또래상담자 캠프, 사례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운영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운영결과 분석을 토대로 학교운영 지침서, 교사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권역별 현장컨설팅, 또래상담 운영학교 컨설팅, 사업평가회 등을 통해 또래상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또래상담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신문, TV, 라디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더불어 홍보물(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UCC 공모전, 홈페이지 및 SNS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또래상담 활동 주간 운영 등 다방면의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여 사업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또래상담 교육 프로그램

또래상담은 일정시간 이상의 상담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조력하는 상담활동으로, 또래상담 동아리를 통해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청소년 자치활동이다. 또래상담자는 학교 내에서 따돌림, 학교폭력 등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활동이 가능하도록 훈련받는다.

1) 기본교육

또래상담 기본교육은 12시간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좋은 친구 되기’, ‘대화하는 친구 되기’, ‘도움 주는 친구 되기’라는 주제로 집단 토의와 역할연습 등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의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에는 비밀보장의 원칙, 위기 상담의 경우 전문가에게 연계하기 등 또래상담자의 윤리 및 역할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표 5-3-11〉 또래상담 기본교육 프로그램 내용

회기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1	들어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 프로그램 소개, 또래상담의 의미, 또래상담자의 역할 인식 • 자기소개 및 프로그램 참여 동기 나누기 • 함께 지킬 약속 정하기/또래상담 비밀 보장 약속하기 •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한 친밀감 및 신뢰감 형성하기
2	친한 친구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나누기 • '내가 생각하는 친구의 의미' 표현하기
3	나의 친구관계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벽 뚫기' 게임을 통해 친구를 따돌리는 혹은 따돌림 당하는 간접 경험하기 • 친구관계 유형 살펴보기 및 자신의 친구관계 나누기
4	친구에게 다가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관계에서의 걸림돌 알아보기 • 우정곡선 그리기를 통해 자신의 걸림돌 해결방법 및 친구에게 다가가는 방법 나누기
5	대화하는 친구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자의 기본자세인 '적극적 경청' 연습하기 • 감정카드 및 역할극을 통한 '공감하기' 연습하기
6	대화 잘 이끌어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를 이끌어가는 전략 알아보기 • '어기역차 전략' 이해하기, 연습하기, 실습하기
7	감정조절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대처방법 탐색 및 감정 조절방법 배우기 • '잠하듯 전략' 이해하기, 연습하기, 실습하기 • 'I-message' 이해하기, 연습하기
8	도움 주는 대화방법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 알아보기 • '원무지계 전략' 이해하기, 연습하기, 실습하기
9	대화 종합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청하기, 공감하기, 어기역차 전략, '잠하듯 전략', '원무지계' 전략을 활용한 역할극 준비 및 발표하기
10	도움 되는 활동들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 찾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찾기 • 또래상담자의 역할 및 전문가 연계 상황 알아보기
11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 프로그램 복습하기 • 또래상담자의 자세 및 마음가짐 낭독하기 • 롤링페이퍼 작성 및 소감 나누기, 프로그램 평가, 수료식
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 역할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의 유형, 피해학생 징후, 돕는 방법 배우기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 역할 및 활동 계획 • 또래상담자 윤리 이해하기(비밀보장, 전문가 상담연계 등)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2) 심화교육

심화교육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기본교육을 이수한 또래상담자들을 대상으로 8시간 동안 운영된다. 크게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친구를 돕는 또래상담자’, ‘공감·배려문화를 촉진시키는 또래상담자’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6가지 또래상담자의 역할별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역할별 훈련프로그램은 이론 교육과 활동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론적으로 상담기법을 습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또래상담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표 5-3-12〉 또래상담 심화교육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또래상담자의 역할)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
성장하는 또래상담자	또래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 들어가기	· 학교폭력, 또래상담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나는 또래상담자다	· 내가 생각하는 나 · 나는 내가 관리한다
		2. 또래상담자 행동다짐	· 또래상담자의 역할한계 알기 · 또래상담자 윤리 알기
친구를 돕는 또래상담자	정서적 지지자	3. 또래 토닥이-이해하기	· 다양한 감정의 단어와 수준 알아보기 · 감정반영에 대해 알아보기
		4. 또래 토닥이-실천하기	· 대면상담·사이버상담 · 다양한 감정다루기
	조력자	5. 또래 도우미-이해하기	· 관심 vs 무관심 · 도움행동에 대한 이해 · 도움행동의 효과
		6. 또래 도우미-실천하기	· 도움행동의 3단계 “다알죠?” · 다가가기·알아보기·조력하기
	문제해결자	7. 갈등다루기	· 갈등의 이해 · 갈등이 있는 친구를 돕는 대화 · 갈등을 지닌 두 친구 사이의 화해 돕기
		8. 사례회의	· 사례지도의 필요성 · 사례기록지 작성 및 사례 선정 · 또래상담자 간 사례지도

프로그램명(또래상담자의 역할)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
공감배려 문화를 촉진시키는 또래상담자 공감배려	학교 공감배려문화 촉진자	9. 심리극-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기 마당 심리극 마당(이중자아 기법, 빈 의자 기법)
		10. 심리극-공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 극화 만들기 심리극 공연 단계 이해하기
	지역사회 공감배려문화 촉진자	11. 지역 이꿈이-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의식에 대해 알아보기 지역 내 상담기관 연계하기
		12. 지역 이꿈이-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연합회 활동 지역 캠프 참여 캠페인 활동 길거리 이동 상담하기 자원봉사 활동 튜터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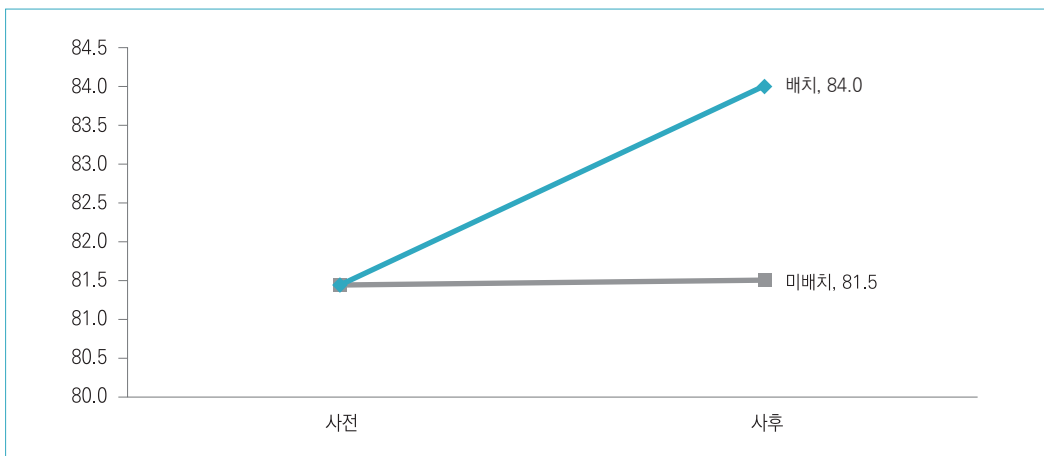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7).

라. 또래상담 사업의 효과

또래상담 사업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또래상담자 배치 학급과 미배치 학급의 또래상담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래상담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미배치 학급에 비해 교우관계, 학교적응, 학교생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또래상담 사업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림 5-3-3] 2017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학교폭력예방 효과성)

(단위 : 점)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7).

이와 같이, 각 학급 또래상담자들의 활동이 학생들 간의 교우관계와 학교 적응을 높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학교생활 문화 조성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3-13〉 2017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성 분석

(단위: 점)

구분	배치 학급		미배치 학급	
	사 전	사 후	사 전	사 후
또래상담 사업 효과성	81.4	84.0	81.4	81.5
교우관계	79.6	82.6	79.6	80.6
학교적응	84.7	87.4	84.7	83.5
학교생활 만족도	80.0	81.9	80.0	80.4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7).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8

제4장 | 청소년의 건강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2017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만 6~17세)의 체격검사 결과, 17세의 평균 신장은 남학생이 173.3cm, 여학생이 160.7cm로 2016년 남학생 173.5cm, 여학생 160.8cm와 비교할 때, 남학생은 0.2cm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0.1cm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7세 청소년의 평균 신장을 10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남학생은 0.6cm, 여학생은 0.2cm 씩 감소하였다.

2017년 연령별 체격의 성차를 살펴보면, 6~8세까지는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장이 약 1cm 정도 크지만, 9세에는 0.6cm로 그 차이가 줄어들다가 10세부터 11세까지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평균 신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2세가 되면서부터 다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평균 신장이 커지기 시작하여 16세가 되면 12c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 성별·연령별 신장의 추이

(단위 : cm)

측정 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8	119.8	118.5	125.7	124.0	130.9	129.5	136.2	135.6	141.2	142.0	147.3	148.8
1999	120.1	118.6	125.7	124.3	131.0	129.8	136.2	135.5	141.6	142.4	147.5	149.1
2000	120.1	118.9	125.8	124.9	131.3	130.1	136.6	136.0	141.9	142.3	148.1	149.2
2001	120.3	118.8	126.2	124.8	131.4	130.3	136.8	136.2	142.2	142.5	148.2	149.1
2002	120.3	119.1	126.4	125.0	131.9	130.6	136.9	136.5	142.4	143.1	148.6	149.6
2003	120.8	119.4	126.7	125.4	132.2	130.9	137.1	137.0	142.9	143.5	148.7	149.8
2004	120.6	119.6	126.7	125.2	132.1	131.1	137.6	137.0	142.9	143.7	149.1	150.3
2005	120.6	119.3	126.5	125.3	132.0	131.0	137.3	137.1	143.0	143.7	149.1	150.3

측정 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6	121.7	120.2	127.1	125.8	132.6	131.5	138.7	138.3	143.5	144.4	150.0	150.9
2007	121.6	120.4	127.4	126.1	132.9	131.8	138.6	138.4	143.7	144.7	150.4	151.1
2008	122.0	120.7	127.4	126.2	133.1	131.7	138.7	138.5	143.5	144.6	150.2	151.0
2009	121.9	120.6	127.7	126.2	133.0	132.0	138.3	138.0	143.9	144.7	150.5	151.0
2010	121.8	120.6	127.7	126.4	133.1	132.0	138.4	138.1	144.0	144.6	150.2	151.2
2011	121.7	120.5	127.8	126.4	133.5	132.3	138.7	138.4	143.9	144.8	150.4	151.1
2012	121.6	120.2	127.8	126.5	133.4	132.3	139.1	138.5	144.1	144.9	150.6	151.1
2013	120.6	119.6	125.5	124.4	131.7	130.4	137.1	136.6	142.7	143.2	148.8	149.5
2014	120.5	119.4	125.9	124.5	131.6	130.3	137.1	136.4	142.5	142.7	148.9	149.8
2015	120.5	119.6	125.7	124.5	131.5	130.5	137.1	136.5	142.9	142.9	148.9	149.8
2016	120.5	119.3	125.7	124.5	131.8	130.2	137.4	136.6	142.7	143.1	149.2	150.1
2017	120.4	119.3	125.7	124.6	131.6	130.6	137.1	136.5	142.9	143.3	149.5	150.1

측정 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8	153.6	153.7	160.8	156.8	166.3	158.7	169.8	159.3	172.0	159.9	172.6	160.5
1999	154.3	153.9	161.3	157.0	166.6	158.7	170.3	159.6	171.9	159.9	172.7	160.6
2000	154.9	154.4	161.8	157.3	167.2	158.9	170.4	159.5	172.2	160.2	173.0	160.5
2001	155.2	154.3	162.2	157.5	167.2	159.0	170.9	159.7	172.2	160.2	173.1	160.7
2002	155.5	154.3	162.4	157.5	167.2	159.3	170.7	160.0	172.5	160.3	173.3	160.9
2003	155.9	154.8	162.5	157.6	167.7	159.3	171.1	160.1	172.6	160.6	173.6	161.0
2004	156.2	154.8	163.3	157.7	167.8	159.4	171.4	160.3	172.7	160.6	173.6	161.6
2005	156.4	154.9	163.2	157.9	168.5	159.3	171.6	160.2	172.8	160.7	173.6	161.0
2006	158.1	156.1	164.2	158.2	168.7	159.5	171.8	160.4	173.0	160.7	173.9	161.1
2007	158.3	156.1	164.2	158.3	169.2	159.7	172.0	160.4	173.1	160.7	173.9	160.9
2008	158.1	155.9	164.3	158.4	169.1	159.7	172.0	160.5	173.3	160.8	173.9	161.2

측정 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9	157.8	155.7	164.3	158.0	169.1	159.6	171.9	160.4	173.2	160.7	173.8	161.1
2010	157.9	155.5	164.2	158.2	168.9	159.6	171.8	160.6	173.0	160.7	173.7	160.9
2011	158.2	155.8	164.6	158.1	168.9	159.5	171.8	160.3	173.1	160.7	173.7	161.1
2012	158.2	155.7	164.3	158.0	168.7	159.3	171.8	160.2	172.9	160.6	173.6	160.9
2013	156.3	154.8	163.0	157.6	167.9	159.2	171.2	160.0	172.6	160.5	173.2	160.8
2014	156.4	155.1	163.4	157.7	168.1	159.5	171.3	160.2	172.7	160.5	173.4	160.9
2015	156.6	155.4	163.7	158.1	168.4	159.4	171.5	160.4	172.7	160.5	173.4	160.8
2016	157.2	155.3	164.0	158.4	168.9	159.7	171.6	160.3	172.8	160.6	173.5	160.8
2017	157.3	155.5	164.2	158.4	168.7	159.8	171.8	160.5	172.9	160.6	173.3	160.7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017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중은 17세 남학생 평균 70.2kg, 여학생은 57.6kg로 2016년 남학생 평균 69.6kg에 비해 0.6kg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평균 57.1kg에 비하여 0.5kg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17세 남학생과 여학생 체중은 평균 12.6kg 차이가 있었고, 10년 전인 2007년에도 남학생은 68.3kg, 여학생은 55.4kg으로 평균 12.9kg 차이가 있었다. 2017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중은 2007년 남학생과 여학생보다 각각 1.9kg, 2.2kg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성별·연령별 체중의 추이

(단위 : kg)

측정 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8	23.1	22.1	26.0	24.9	29.3	27.8	32.8	31.5	36.4	35.9	40.6	40.9
1999	23.2	21.9	26.1	24.9	29.3	28.0	32.8	31.4	36.5	36.1	41.0	41.2
2000	23.3	22.4	26.4	25.4	29.9	28.5	33.6	32.2	37.8	36.3	42.0	41.8
2005	24.0	22.9	27.3	26.0	31.0	29.4	34.8	33.4	39.4	38.1	44.5	43.6

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6	24.5	23.2	27.7	26.4	31.6	29.7	35.8	34.0	39.8	38.6	44.7	43.7
2007	24.4	23.3	27.9	26.4	31.7	29.9	35.9	34.2	40.2	38.9	45.1	44.0
2008	24.7	23.5	27.9	26.4	31.9	29.9	36.0	34.3	40.1	38.6	45.5	44.0
2009	24.7	23.5	28.2	26.6	31.7	30.0	35.9	33.9	40.6	38.8	45.9	44.0
2010	24.9	23.7	28.4	26.9	32.1	30.3	35.9	34.2	41.1	39.2	46.1	44.4
2011	24.8	23.6	28.5	26.8	32.4	30.5	36.3	34.3	40.6	39.4	46.0	44.4
2012	24.7	23.5	28.4	26.8	32.4	30.4	37.0	34.9	41.0	39.6	46.2	44.2
2013	24.3	23.4	27.1	26.1	31.4	29.4	35.4	33.5	40.2	38.4	45.0	43.2
2014	24.1	23.1	27.2	25.7	30.9	29.1	35.3	33.0	39.7	37.8	45.1	43.6
2015	24.1	23.2	26.9	25.8	31.0	29.4	35.3	33.2	40.2	37.8	44.7	43.5
2016	24.2	22.9	27.1	25.7	31.4	29.0	35.6	33.1	40.3	38.0	45.9	43.6
2017	24.2	23.1	27.2	25.8	31.4	29.8	35.7	33.4	40.7	38.3	46.2	44.0

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8	45.9	45.8	51.5	49.6	56.0	52.2	60.0	53.4	62.3	54.1	64.1	54.8
1999	46.5	45.7	51.7	49.6	56.6	52.0	60.1	53.4	62.5	54.1	64.6	54.5
2000	47.4	46.7	52.9	49.9	57.7	52.5	60.8	53.3	63.2	54.2	65.3	54.9
2005	50.2	47.8	55.7	51.0	61.0	53.1	64.1	54.4	66.1	55.2	68.1	56.1
2006	50.7	48.0	56.6	51.2	60.5	52.9	64.3	54.2	66.5	54.8	68.2	55.4
2007	50.9	48.1	56.7	51.4	61.1	53.2	64.0	54.0	66.3	54.8	68.3	55.4
2008	50.8	48.1	56.7	51.5	61.4	53.3	63.8	53.8	65.8	54.4	67.7	55.1
2009	51.9	48.0	57.0	51.2	61.5	53.3	64.2	54.3	66.5	55.2	68.1	56.0
2010	51.7	48.2	57.2	51.5	61.5	53.2	64.7	54.9	66.6	55.5	68.1	55.6
2011	52.0	48.6	57.7	51.8	61.6	53.6	64.5	54.8	66.5	55.7	68.3	56.2
2012	51.7	48.7	57.6	51.7	61.6	53.7	64.9	55.1	66.6	55.9	68.4	56.2

측정 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3	50.5	48.4	56.1	51.7	60.8	53.6	64.7	55.3	66.5	56.3	68.2	56.0
2014	50.4	48.2	56.3	51.6	60.7	53.9	64.5	55.4	67.0	56.1	68.1	56.7
2015	50.6	48.2	56.8	51.7	61.3	53.9	64.8	55.4	67.3	56.5	68.9	56.9
2016	52.0	48.4	57.6	52.0	62.4	53.9	65.4	55.6	68.1	56.8	69.6	57.1
2017	52.2	48.4	57.8	51.9	62.3	54.4	66.0	55.7	68.4	57.0	70.2	57.6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017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50m 달리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9.3초, 여학생 9.9초이고, 중학교 3학년 남학생 7.9초, 여학생 9.7초이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7.8초, 여학생 9.9초이다. 50m 달리기의 경우 남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록이 단축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기록에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기록은 5분 27초, 여학생 6분 1초, 중학교 3학년 남학생 8분 9초, 여학생 7분 43초이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은 모두 8분 4초로 나타났다.

2017년 제자리멀리뛰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165.9cm, 여학생 145.4cm,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남학생 202.1cm, 여학생 150.7cm,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216.0cm, 여학생 153.3cm 이다. 윗몸일으키기(2011-윗몸말아올리기)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73.1회, 여학생 56.4회, 중학교 3학년은 남학생 83.2회, 여학생 45.6회,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69.2회, 여학생 36.3회이다.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7.8cm, 여학생 14.1cm,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남학생 10.4cm, 여학생 16.5cm,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1.9cm, 여학생 16.8cm이다.

〈표 5-4-3〉 성별·연령별 50m달리기의 추이

(단위 : 초)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9.8	10.3	9.4	10.2	8.8	10.0	8.4	10.0	8.0	10.0	7.8	9.9	7.7	9.9	7.7	10.1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7	9.9	10.5	9.5	10.3	8.8	10.1	8.4	10.2	8.1	10.3	7.9	10.1	7.8	10.1	8.1	10.4
2008	9.9	10.4	9.5	10.4	8.9	9.9	8.4	10.1	8.1	10.1	7.9	10.2	8.0	10.1	8.0	10.3
2009	10.0	10.5	9.6	10.4	8.7	9.9	8.4	9.9	8.1	9.9	7.8	9.9	7.7	9.9	7.7	10.1
2010	10.1	10.5	9.7	10.4	8.9	10.0	8.5	10.1	8.2	10.1	7.8	9.9	7.7	9.9	7.9	10.1
2011	9.9	10.3	9.5	10.2	8.9	10.0	8.4	10.0	8.1	10.0	7.9	10.0	7.9	10.1	7.9	10.2
2012	9.7	10.2	9.3	10.0	8.8	9.9	8.4	9.9	8.0	9.9	7.9	9.9	7.8	10.0	7.9	10.1
2013	9.6	10.1	9.2	9.9	8.7	9.7	8.3	9.8	8.0	9.8	7.8	9.8	7.8	9.9	7.8	9.9
2014	9.6	10.1	9.2	9.9	8.7	9.7	8.3	9.8	8.0	9.8	7.8	9.7	7.7	9.8	7.8	9.9
2015	9.6	10.0	9.2	9.8	8.6	9.6	8.2	9.7	7.9	9.7	7.8	9.7	7.7	9.7	7.8	9.9
2016	9.7	10.1	9.3	9.8	8.6	9.6	8.2	9.6	7.9	9.6	7.7	9.6	7.7	9.7	7.7	9.8
2017	9.7	10.1	9.3	9.9	8.7	9.6	8.2	9.7	7.9	9.7	7.8	9.6	7.7	9.8	7.8	9.9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4〉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단위 : 분, 초)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6:02	6:04	5:05	6:03	9:03	7:05	8:05	7:05	8:03	7:05	8:00	7:05	7:05	7:05	7:06	8:01
2007	6:27	7:06	6:15	6:57	9:49	8:26	9:20	8:36	9:07	8:36	8:29	8:14	8:20	8:19	8:37	8:36
2008	6:26	6:55	6:14	7:00	9:43	8:30	9:17	8:22	8:54	8:26	8:28	8:07	8:20	8:17	8:40	8:42
2009	6:29	6:56	6:15	7:00	9:34	8:20	9:20	8:36	8:44	8:22	8:23	8:03	8:15	8:08	8:19	8:23
2010	6:31	6:59	6:15	6:57	9:57	8:44	9:31	8:44	9:06	8:41	8:07	8:01	7:97	7:91	8:21	8:24
2011	6:10	6:40	5:54	6:39	9:36	8:33	9:13	8:35	8:46	8:26	8:26	8:08	8:18	8:11	8:20	8:21
2012	5:54	6:24	5:37	6:19	9:13	8:15	8:53	8:17	8:29	8:11	8:18	8:08	8:10	8:08	8:10	8:14
2013	5:47	6:14	5:29	6:10	8:57	7:58	8:40	8:02	8:17	7:54	8:07	7:53	7:59	7:52	7:58	7:58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4	5:40	6:06	5:23	6:00	8:47	7:42	8:31	7:49	8:13	7:45	8:00	7:47	7:54	7:49	7:54	7:56
2015	5:40	6:04	5:21	5:57	8:46	7:40	8:27	7:43	8:10	7:42	8:01	7:44	7:55	7:46	7:55	7:53
2016	5:44	6:07	5:26	5:58	8:56	7:41	8:29	7:41	8:11	7:40	8:02	7:44	7:58	7:48	7:59	7:54
2017	5:45	6:07	5:27	6:01	8:53	7:43	8:29	7:44	8:09	7:43	8:02	7:48	7:59	7:55	8:04	8:04

주 : 초등학교 1,000m. 중·고 여자 1,200m. 중·고 남자 1,600m.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5〉 성별·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단위 : cm)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153.4	138.3	165.2	144.6	144.6	153.6	203.0	157.1	214.7	158.6	226.9	165.2	231.4	164.8	236.7	164.8
2007	151.8	136.0	163.9	139.8	139.8	149.9	195.8	151.7	207.5	153.9	216.9	156.9	223.4	159.4	222.8	155.4
2008	155.0	140.4	163.7	141.3	141.3	148.3	196.9	151.5	209.2	155.3	219.3	156.4	224.4	156.6	226.2	157.2
2009	151.2	134.5	161.6	137.9	137.9	151.1	199.3	153.9	210.1	155.3	217.8	156.5	222.9	158.5	226.6	158.4
2010	148.5	132.6	157.8	135.9	135.9	140.7	186.6	142.4	197.5	144.6	219.5	155.6	223.4	156.8	226.0	156.6
2011	150.3	134.6	159.7	138.8	138.8	140.8	186.8	142.2	196.7	143.7	205.0	147.6	209.5	147.8	211.8	147.5
2012	152.9	136.7	162.7	140.9	140.9	143.6	188.9	144.3	199.1	146.1	205.9	148.4	211.1	149.2	215.0	149.6
2013	155.7	138.8	165.2	143.0	143.0	144.3	190.0	145.4	200.8	148.1	208.1	150.8	214.1	152.5	217.8	153.0
2014	154.9	138.4	165.0	142.6	177.1	145.2	188.2	145.6	198.6	147.9	207.4	150.2	213.3	150.8	16.6	152.2
2015	156.8	140.8	166.6	144.9	181.1	148.4	192.9	149.1	201.7	150.2	209.9	152.6	215.4	153.2	218.5	153.7
2016	156.3	141.4	166.9	146.2	180.7	149.0	193.4	151.0	202.8	152.4	209.8	152.8	214.0	153.8	216.7	154.9
2017	155.3	140.4	165.9	145.4	179.7	148.3	192.1	150.0	202.1	150.7	209.5	152.8	213.7	152.9	216.0	153.3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6〉 성별·연령별 윗몸일으키기의 추이(2011-윗몸말아올리기)

(단위 : 회)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32.2	24.5	34.9	26.3	27.7	26.4	40.5	27.7	43.2	29.2	45.6	30.1	47.0	31.0	49.4	32.2
2007	31.9	24.1	35.7	26.1	26.2	26.4	40.1	26.2	42.9	27.0	44.6	28.0	46.0	29.1	44.5	28.6
2008	31.9	25.3	35.8	25.8	27.6	26.4	40.8	27.6	43.0	28.3	45.6	29.2	47.1	29.9	44.4	29.3
2009	48.4	-	56.3	-	28.4	27.1	41.0	28.4	43.6	28.9	45.5	29.9	47.1	30.8	46.6	29.9
2010	49.7	39.0	55.9	38.9	33.0	32.6	58.2	33.0	59.2	33.0	45.6	30.9	47.0	31.2	45.6	30.3
2011	56.1	43.8	62.3	43.8	35.3	37.0	63.9	35.3	63.5	35.6	57.6	31.3	58.1	32.1	52.5	31.3
2012	62.2	49.0	69.8	50.1	38.6	40.2	65.2	38.6	67.4	38.0	61.4	32.6	60.1	33.0	56.4	32.8
2013	65.3	50.9	73.3	53.8	43.7	44.0	73.2	43.7	71.5	40.6	68.2	35.2	69.6	36.7	63.7	34.3
2014	69.7	55.4	76.2	56.0	75.7	47.9	77.7	46.2	79.2	45.5	68.8	35.9	68.3	36.3	64.9	35.9
2015	67.7	54.6	75.7	56.6	78.0	47.9	81.8	47.8	79.7	46.0	69.6	37.0	71.3	36.9	66.3	36.3
2016	66.9	54.5	74.1	56.5	80.1	48.7	82.2	48.0	82.9	46.1	72.7	36.4	70.9	36.9	68.5	35.5
2017	65.6	53.5	73.1	56.4	79.3	48.4	83.3	48.6	83.2	45.6	76.0	37.0	73.0	36.3	69.2	36.3

주 : 2011년부터 윗몸말아올리기로 개정.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7〉 성별·연령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추이

(단위 : cm)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8.4	11.6	8.1	12.1	9.2	14.0	10.7	14.8	12.6	16.1	14.7	17.2	16.1	16.1	17.5	17.4
2007	8.2	12.0	8.2	12.8	9.0	14.4	9.9	14.9	11.2	15.6	12.4	16.5	13.4	13.4	13.8	16.1
2008	8.8	12.5	7.9	12.3	8.8	14.2	9.7	14.9	11.1	16.0	12.5	16.3	12.8	12.8	13.1	16.0
2009	7.7	12.0	7.5	12.8	9.0	14.7	10.2	15.6	11.4	16.3	12.4	17.3	14.5	14.5	13.4	16.7
2010	7.5	11.9	7.0	12.6	7.6	13.7	8.6	14.4	9.8	15.1	12.8	17.3	13.0	13.0	13.7	16.9
2011	7.8	12.4	7.3	13.1	7.5	13.7	8.5	14.4	9.6	15.1	11.0	15.8	11.7	11.7	11.9	15.9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2	8.1	12.5	7.7	13.3	7.8	14.0	8.7	14.7	9.8	15.4	10.9	15.9	11.6	11.6	12.0	16.1
2013	8.6	13.0	8.3	13.8	8.4	14.5	9.1	15.1	10.1	15.8	11.2	16.2	11.7	11.7	12.2	16.5
2014	8.7	13.2	8.5	14.2	8.6	15.0	9.5	15.8	10.3	16.5	11.3	16.7	11.8	16.7	12.2	16.8
2015	8.6	13.4	8.4	14.6	8.7	15.4	9.5	16.1	10.5	16.8	11.4	17.0	11.9	17.0	12.1	16.7
2016	8.2	13.1	8.0	14.3	8.5	15.4	9.5	16.2	10.5	16.8	11.5	17.1	11.9	17.0	12.0	16.9
2017	8.0	13.0	7.8	14.1	8.3	15.1	9.3	15.9	10.4	16.5	11.5	16.9	11.9	16.9	11.9	16.8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 청소년의 영양

아동·청소년의 연령층별로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평균 섭취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영양소에 대해 모든 연령층에서 권장섭취량에 근접한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칼슘과 비타민A는 모든 연령층에서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12~18세 청소년의 칼슘과 비타민A의 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약 50%를 웃돌았다. 반면에 나트륨은 모든 연령층에서 기준보다 섭취량이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충분섭취량의 2배 이상으로 섭취량이 증가해 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4-8〉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

(단위 : %)

영양소 \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에너지	109.4	97.6	105.2	91.7	92.7
단백질	245.6	224.5	192.5	140.7	137.9
칼슘	81.9	68.8	62.3	52.1	60.2
인	144.7	137.2	123.5	89.4	159.7

영양소 \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나트륨	133.7	181.1	206.2	230.4	262.5
칼륨	76.6	80.6	82.2	72.9	76.2
철	125.8	152.1	142.8	107.2	144.0
비타민A	96.4	89.8	79.4	51.2	59.7
티아민	190.0	238.0	207.6	170.0	174.9
리보플라빈	167.6	167.2	134.9	102.4	111.5
나이아신	119.8	128.2	125.3	100.8	114.9
비타민C	152.6	184.0	117.8	72.2	65.1

주 :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에너지, 필요추정량; 나트륨, 칼륨, 총분섭취량; 그 외 영양소, 권장섭취량.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다음은 영양소별로 섭취량이 영양섭취기준 미만인 대상자 분율을 연령층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칼슘 섭취량은 전 연령층에서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한 사람이 약 50% 이상이었는데, 특히, 12~18세의 경우에는 84.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칼슘에 대한 섭취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칼슘 다음으로는 비타민A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 많았고, 비타민C와 리보플라빈 등의 영양소는 평균 필요량 미만 섭취자 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

(단위 : %)

영양소 \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에너지	16.0	29.8	18.5	34.7	38.9
단백질	1.7	1.7	2.5	15.7	24.4
지방	31.7	13.2	10.0	8.1	9.5
칼슘	56.4	68.7	76.5	84.1	76.4
인	12.7	16.9	28.9	48.3	14.1
철	13.5	14.8	11.8	40.0	32.7

영양소 \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비타민A	42.6	47.5	65.1	82.3	79.5
티아민	3.6	2.7	2.2	12.5	13.5
리보플라빈	23.6	14.8	17.9	40.7	38.5
나이아신	15.9	12.6	20.7	37.6	32.4
비타민C	42.2	37.1	49.6	69.2	73.5

주 :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75%; 지방, 지방에너지적정비율의 하한선; 그 외 영양소, 평균필요량.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영양섭취부족 대상자 비율은 12~18세에 19.8%, 19~29세에 17.3%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6~11세 연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19~29세는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 비율도 높게 나타나 영양 부족과 과잉 섭취에 대한 관리가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4-10〉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비율

(단위 : %)

연령 \ 구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¹⁾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비율 ²⁾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2세	5.4	2.9	8.4	3.5	5.0	1.6
3~5세	7.1	6.7	7.4	5.9	5.9	6.0
6~11세	4.9	5.5	4.3	7.5	10.5	4.5
12~18세	19.8	14.0	26.5	7.5	7.7	7.3
19~29세	17.3	8.7	26.9	12.3	17.2	6.8

주 : 1)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인 경우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경우.

2)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125% 이상인 경우 지방 섭취량이 지방에너지적정비율의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3)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아침식사 결식률은 19~29세 52.6%, 12~18세 34.6%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6~11세(10.0%), 3~5세(7.1%), 1~2세(6.7%) 순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12~18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녀모두 34.6%로 나타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3~5세의 경우에는 여성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았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남성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1〉 아침식사 결식률

(단위 : %)

구분 \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전체	6.7	7.1	10.0	34.6	52.6
남자	8.0	5.0	10.4	34.6	55.1
여자	5.2	9.3	9.6	34.6	49.9

주 : 조사 1일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분율.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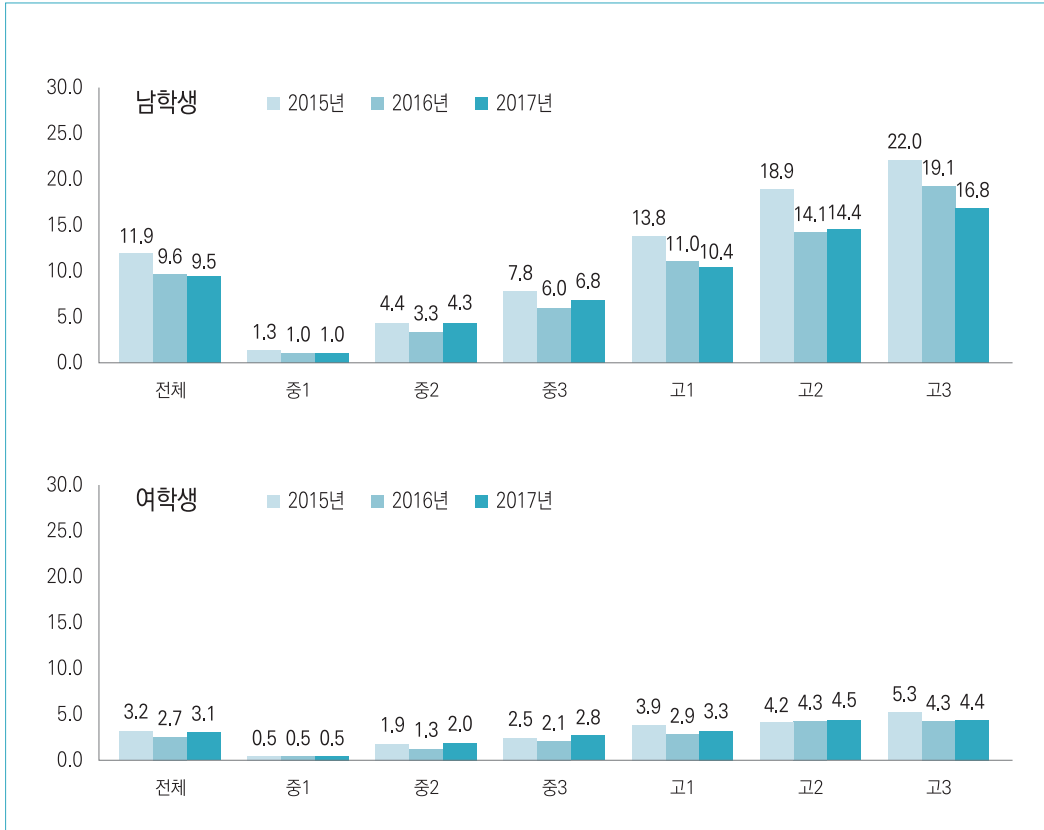
3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2017년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의 경우 9.5%, 여학생은 3.1%로 나타나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이 여학생의 현재 흡연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2015년 3.2%, 2016년 2.7%로 나타나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3.1%로 2016년 대비 0.4%p 증가하였다.

2017년 청소년의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2.9세,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13.8세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2.8세, 여학생은 13.1세로 나타났으며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남학생 13.8세, 여학생 13.7세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주 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남학생 27.3%, 여학생 28.4%로 나타났다.

[그림 5-4-1] 학년별 현재 흡연율

(단위 : %)



주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표 5-4-12> 흡연 관련 지표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처음 흡연 경험 연령(세) ¹⁾	12.7	12.7	12.8	12.7	12.7	12.9	12.9	12.8	13.1
매일 흡연 시작 연령(세) ²⁾	13.6	13.7	13.5	13.7	13.7	13.4	13.8	13.8	13.7
주 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 ³⁾	29.0	28.3	29.7	29.1	28.4	29.9	27.9	27.3	28.4

주 : 1) 평생 흡연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 피워본 연령의 평균.

2) 최근 30일 동안 매일 흡연자 중에서 담배를 매일 피우기 시작한 연령의 평균.

3)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었던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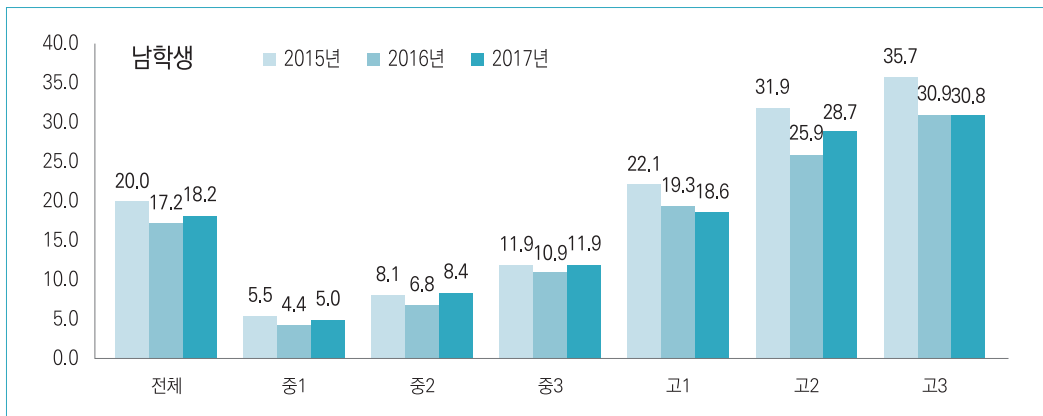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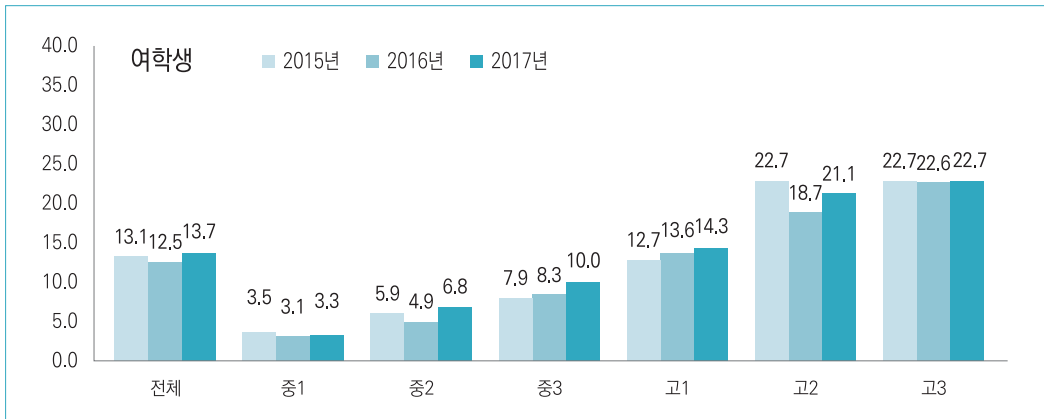
2017년 청소년의 현재 흡주율은 남학생 18.2%, 여학생 13.7%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고학년일수록 현재 흡주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학년별 현재 흡주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남녀 학생 모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간 증감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청소년의 처음 흡주 경험 연령은 남학생 12.9세, 여학생 13.5세로, 남녀 학생 간 차이는 0.6세였다. 위험흡주율은 남학생이 8.8%로 여학생의 위험흡주율(7.6%)보다 높았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년 대비 위험흡주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2] 학년별 현재 흡주율

(단위 : %)





주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표 5-4-13〉 음주 관련 지표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처음 음주 경험 연령(세) ¹⁾	13.1	12.9	13.3	13.2	13.0	13.5	13.2	12.9	13.5
위험음주율 ²⁾	8.4	9.6	7.0	7.5	8.5	6.5	8.2	8.8	7.6

주 : 1) 평생 음주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1잔 이상 술을 마신 연령의 평균.

2)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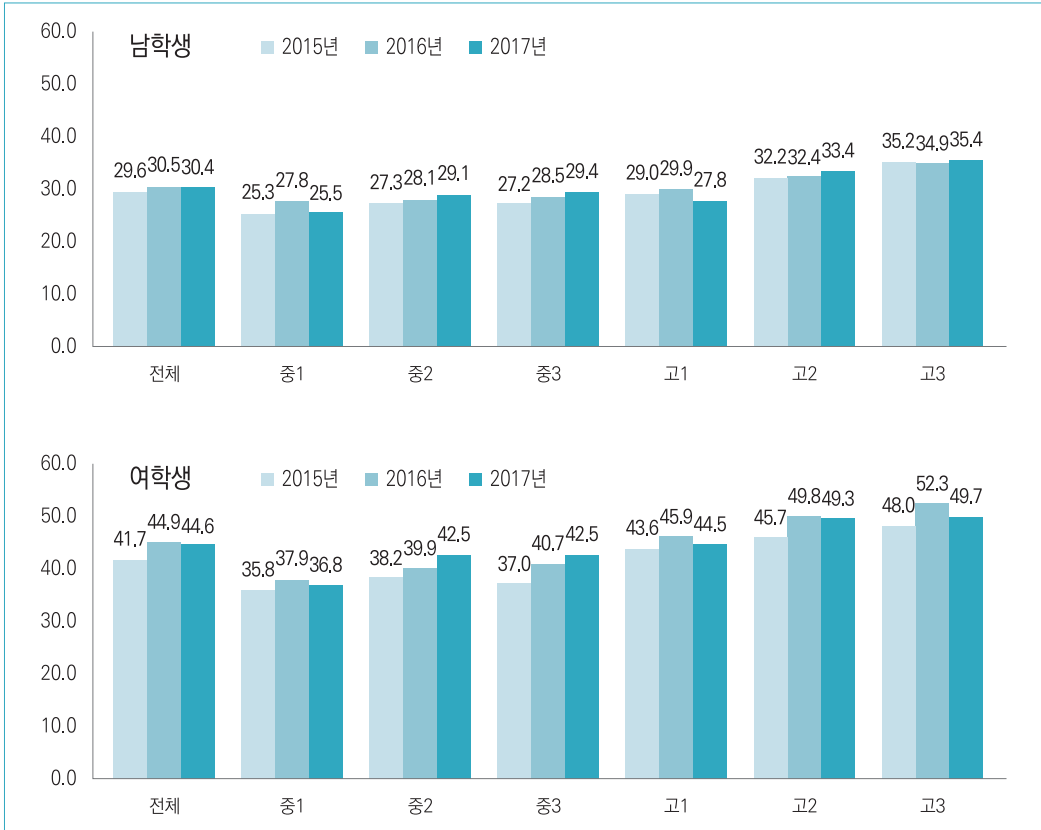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4 청소년의 정신건강

2017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학생 30.4%, 여학생 44.6%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녀 학생 모두 2015년에 비해서는 2016년에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한 반면,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4-3]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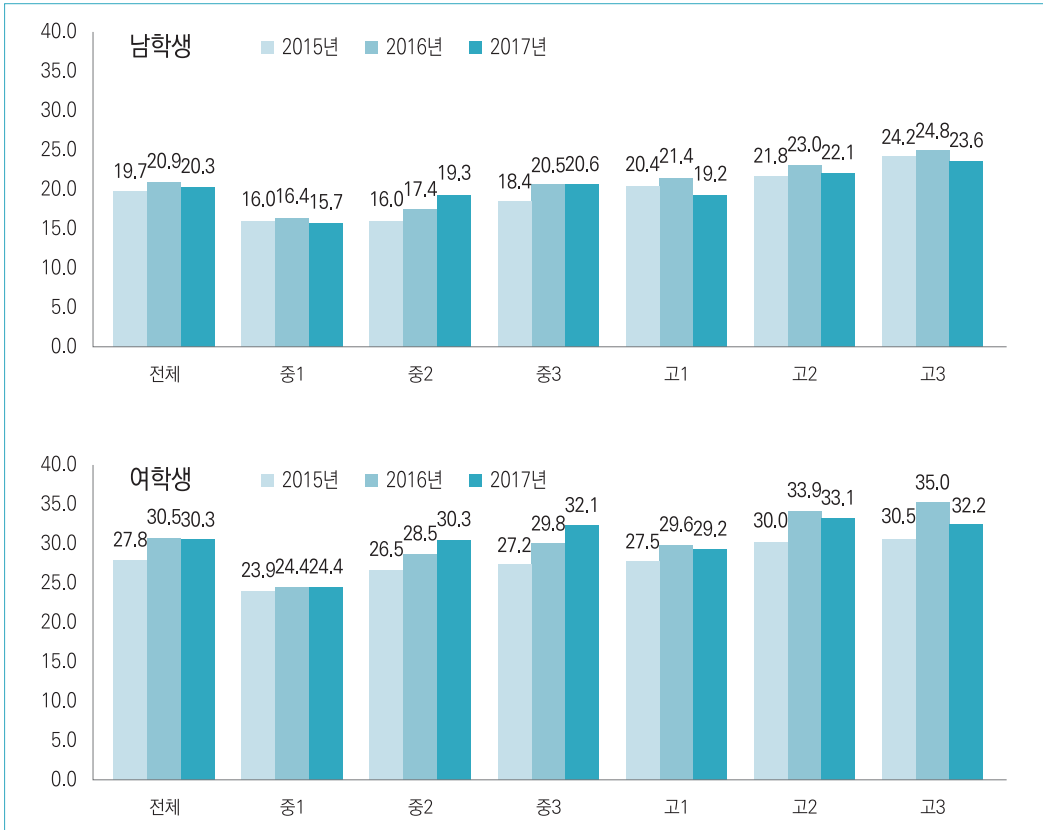
주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7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0.3%, 여학생 30.3%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감 경험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 2016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4]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단위 : %)



주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제6부 요약

제6부는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에 대해 다룬다. 정부에서는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을 각 분야별 안전점검 전문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17. 12. 22.) 및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18. 8. 31.)을 발표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 약물관련 제도 및 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약물예방에 관한 국제적 표준에 적합한 제도와 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0월에는 껌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하였고, 12월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를 추가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하였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대응의 일환으로 2018년 전국 220여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한 상담 외에도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와 관련하여 2018년 7월부터는 우편고지 된 고지정보에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경우 누구든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정청구의 처리절차를 마련하였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데, 2018년 7월 17일부터는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가, 2018년 9월 14일부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등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되었다.

제6부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제3장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제4장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제5장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6

제 1 장 | 청소년 안전

1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가. 도입 배경 및 경과

청소년수련시설 내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총 7개 분야별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은 안전한 수련활동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2006년부터 ‘청소년수련관·청소년 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특화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4년 7월 22일부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년 주기로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2017. 3. 21.)에 따라 위생 분야에 대한 점검이 추가되었다.

나.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추진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안전점검은 해당 분야 전문 공공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건축, 토목, 기계 분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소방분야는 ‘한국소방안전원’, 전기 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분야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위생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각 분야별 점검등급과 안전점검 주요내용 및 평가기준은 <표 6-1-1>~<표 6-1-3>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 시에도 반영된다.

〈표 6-1-1〉 분야별 점검등급 구분(2018년 기준)

점검분야	등급 구분	비고
건축·토목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기계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소방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전기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가스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위생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자료 : 여성가족부(2018).

〈표 6-1-2〉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주요 내용(2018년 기준)

분야	주요 점검 내용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자체안전점검 수행여부 확인 및 검토 • 분야별 설비 및 각종 구비서류 현황 • 시설 환경(쾌적성 등) •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관리 계획 • 보험가입여부 확인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대장 작성·비치 여부 및 실태 • 건축물 내·외부 균열 • 주요 부재 변형 상태(기울기, 처짐) • 콘크리트 부재 결함 상태(철근 부식 노출, 콘크리트 파손) • 철골 부재 결함 상태(철골 부식, 내화 피복 상태) • 마감재 결함 및 미끄럼 방지 상태(복도, 욕실, 계단 등) • 배수 상태(지붕, 욕실, 주방) • 증축 시 접합부 결함 상태 • 누수 여부(지붕, 외벽, 욕실, 주방, 수영장 등) • 비상구 통로 관리 상태 • 각종 안전 난간 상태 • 방화 벽체, 각종 안전 표지판 등 부착 상태 등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축·옹벽 전도 및 토사 안전성 • 담장 전도 여부 • 파고라·벤치·담장 시설 등 결함상태 • 단지 내 포장 및 배수상태 • 부속시설 안전 상태(천막, 각종 수련시설) 등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설비 상태 • 반송설비 상태 • 위생설비 상태

분야	주요 점검 내용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관리 및 위험물 관리상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상태 소화활동설비 및 피난활동설비 상태 감지기 및 소방펌프 상태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연저항, 누전차단기, 개폐기, 인입구 배선, 옥내내선 상태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기보관실, 정압실,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등에 대한 가스안전공사 및 공급자 점검상태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환경, 개인위생, 사용원료, 공정관리, 보관 등에 대한 위생점검

자료 : 여성가족부(2018).

〈표 6-1-3〉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평가기준(2018년 기준)

분야	평가기준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등급) 문제점이 없거나 극히 경미한 최상의 상태 (B등급) 경미한 문제점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 (C등급) 문제점이 있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통의 상태 (D등급) 주요 부재에 발생한 노후와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 (E등급) 주요 부재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금지하고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등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 결함이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등급) 보통의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등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 결함이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등급) 보통의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분야	평가기준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등급) 결함이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등급) 보통의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여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태 • (B등급)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 • (C등급) 시설물의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요소가 일정 부분 존재 • (D등급) 점검항목 중 부적합사항이 발생하여 즉시 개보수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등급) 점검항목 중 부적합사항 3개 이상 발생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 합)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 • (부적합) 용기보관실, 정압기, 압력조정기, 기화장치, 가스계량기, 매몰배관, 입상관, 중간밸브, 노출배관(호스포함), 연소기, 가스누출, 경보차단장치, 기밀시험(누출검사) 등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 합)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 • (부적합) 급식 시설환경, 개인위생, 사용원료, 공정관리, 보관 등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다.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휴·폐업 등을 제외한 294개소 중 291개소가 종합 안전점검에 응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수행하였으며, 2014년부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각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는 <표 6-1-4>와 같으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¹⁾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youth.go.kr

〈표 6-1-4〉 2018년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2018년 기준)

●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분야

분야	항목	계	A	B	C	D	E
건축	개소	291	119	161	11	-	-
	백분율	100%	40.9%	55.3%	3.8%	-	-
토목	개소	291	235	56		-	-
	백분율	100%	80.8%	19.2%		-	-
기계	개소	291	161	125	5	-	-
	백분율	100%	55.3%	43.0%	1.7%	-	-
소방	개소	291	233	42	12	-	4
	백분율	100%	80.1%	14.4%	4.1%	-	1.4%
전기	개소	291	142	126	21	2	-
	백분율	100%	48.8%	43.3%	7.2%	0.7%	-

● 가스 분야(가스설비 미설치 시설 제외)

분야	항목	계	적합	부적합
가스	개소	252	252	-
	백분율	100%	100%	0.0%

● 위생 분야(급식소 미설치 시설 제외)

분야	항목	계	적합	부적합
가스	개소	234	230	4
	백분율	100%	98.3%	1.7%

자료 : 여성가족부(2018).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정책이 수립·시행되었으나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은 2004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고, 2005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을 수립·시행하였다. 이어 2007년 2월 정부는 ‘5대 폭력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년간 추진해 왔던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저해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중점 과제 15개를 선정·추진하였으며, 2009년에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2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시행하였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걱정과 학교폭력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집단 따돌림, 학생들의 자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 2월 6일 정부는 관계 장관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표 하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2012. 2. 6.)하였다.

7대 영역 54개 과제로 구성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기존의 학교폭력 관련 대책 및 제도가 학교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학생들의 배려·공감 등 인성 함양 교육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에 학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끝까지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 조치한다는 점, 학교 및 학부모의 책임을 의무화함과 더불어 인성교육 강화와 같은 학교폭력 근절의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한 점 등이 과거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비해 달라진 점이다.

더 나아가 2013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학교폭력을 4대 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2012. 2. 6.)된 지 1년 반 만인 7월 23일에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2013. 7. 23.)하였다.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 하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특히, 7.23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부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고자 전국적인 규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학교폭력 실태 및 발생원인 등에 대해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차원의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추진되면서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학교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한편, 스마트폰 발달에 따라 ‘사이버폭력’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대책의 분석,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2014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 3월에 마련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2014년 추진계획」은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등 유형별 학교폭력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등 5대 영역, 16개 중점 과제로 재편·정비되어 추진되었다.

이후 정부는 2014년 12월에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삼고,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목표 하에 전반적인 학교문화 개선과 함께 취약 요인을 중점 관리하고, 학교폭력 대상별·유형별·시기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그러나 2015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의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 피해응답률 감소율에 비해 미비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등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2015년 8월 7일 교육부는 4대 중점 추진과제와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2015. 8. 7.) 하게 되었다.

또한, 2017년 잇따른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과 2018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기존 학교폭력 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2017. 12. 22.) 및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2018. 8. 31.)을 발표하게 되었다.

가.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 하에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분석된 학교급별, 지역별 실태와 경향을 반영하여 2013년 7월 23일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였다.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수립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보호는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은 따뜻하게 지원하겠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시각에서 기존 대책을 평가하여 개선·보완 하되, 학교폭력 유형별·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학교급·성별 특성 등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 점이다.

셋째, 단위학교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책무성과 권한을 가지고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여건 조성 및 지원을 확대하고 단위학교, 시·도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와의 전 방위적 연계·협력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 점이다.

넷째, 학교 구성원의 의사소통·공감·배려 등 사회관계 형성·유지 역량과 모든 학생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향 하에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비전으로 삼고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와 피해학생 보호·지원 강화, 가해학생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 6-1-5>와 같이 크게 5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표 6-1-5>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중점과제

영역	중점과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강화	1.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예방교육 내실화 2.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 3.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적극 지원 및 유도 4.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및 대안교육 활성화

영역	중점과제
학교폭력 유형별·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5.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6. 사이버폭력 신고 및 예방교육 활성화 7. 처벌보다는 관계회복에 역점을 둔 집단 따돌림 해소 8.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9.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강화 10.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11. 학교폭력 진단 및 관리 강화 12.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13. 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 강화 14.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여건 등 조성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5. 학교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16. 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감독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및 전 사회적 대응 강화	17.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18.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19.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20. 학교폭력대책 추진체계 재정비

자료 : 교육부(2013).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5대 영역별 추진과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현장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지원하였다. 즉,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단위학교의 체험형 예방교육을 체계화하고,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연극 및 뮤지컬 등 감성 중심의 문화 체험형 예방교육 활성화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등 또래활동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또래가 중심이 되는 자율적인 학교폭력 문제 해결 문화를 확산하였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일명 ‘어깨동무학교’)를 선정·육성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였다.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욕설 퇴치 아이디어 공모전’ 등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전개하였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즉시 폭력상황에 개입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설치 및 유관기관(상담복지센터)과 연계하여 ‘인터넷 중독 전담 전문상담사’를 양성·배치하였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내실화하였다. 시·도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전담 지원기관’을 구축함은 물론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 위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상담, 치료연계, 사례관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가해학생을 위한 가족단위의 다양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를 확대하였다.

넷째, 학교폭력 대처 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전국 교육장 및 학교장 대상 연수 실시를 강화하였으며, 학교폭력 은폐·축소 등 관련 민원을 즉시 신고하여 신속·공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및 ‘사안처리점검단’을 운영하였다. 또한 상담수요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한 학교상담 강화 방안으로 전문상담교사 증원, 일반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확대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였고, 학생보호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확대를 통해 경찰-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책임교사와 전담경찰관 간 정례 협의체계’를 구축·지원하였다.

나.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 추진계획

「7.23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향후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대책 운영을 내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여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에 대한 밀도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를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현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정책과제의 추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2014년 3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 추진계획」이 마련되었다.

2013년에 추진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은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에서 관련 지침 개정 등 완료과제와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대책,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등 보완과제를 정비하여 5대 영역, 16개 중점과제로 재편·정비되었고 다음과 같다.

〈표 6-1-6〉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 추진계획」의 중점과제

영역	중점과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1. 연극교육, 청소년 경찰학교 등 체험형 교육 확대 2. '어울림 프로그램' 등 예방교육 내실화 3.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
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4.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맞춤형 대응 5. 관계 회복을 통한 집단따돌림 해소 6.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7. 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8.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확대 9.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0.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여건 개선 11. 단위학교 대응역량 제고 12. 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감독 강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	13. 학교폭력 조사 및 신고 시스템 개선 14.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운영 내실화 15.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16.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자료 : 교육부(2014).

첫째, 학교현장의 자율적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중점과제는 ‘연극교육 및 청소년 경찰학교’ 등 체험형 교육 확대, ‘어울림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국가수준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보급, 단위학교 맞춤형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가 중점과제로 포함되었다. 둘째,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을 위한 세부 과제는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예방 교육 강화, 관계 회복을 통한 집단따돌림 해소,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이 포함된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를 위한 세부 과제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확대와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넷째,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여건 개선과 단위학교 대응역량 제고, 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폭력 조사 및 신고 시스템’ 개선,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운영 활성화,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확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다.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및 「7.23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과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 추진계획」이 시행됨으로써 20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낮아지고,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센터’ 신고 및 처리 건수가 감소하는 등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의 배치가 확대되고, 대다수 학교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교육시간도 증가하고, ‘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예방활동이 확산되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와 함께 ‘Wee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전문기관의 증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내실화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지원이 강화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진상의 한계점도 일부 발견되었다. 첫째, 학교폭력 발생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학교 현장 문화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학교폭력이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의 양적 확충에 상응하는 질적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CCTV 설치 대수(설치율)는 2013년 141,790대(10.5%)에서 2014년 164,282대(25.5%)로 양적인 확충은 이루어졌으나, 고화질 CCTV 비율이 여전히 낮고, 실시간 관제에 필요한 통합관제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셋째, 일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 중 ‘신고효과를 봤다’는 학생은 36%에 불과하여 신고 후 처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관이 달라 상호 상충·모순된 결정이 나오는 사례가 있는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넷째, 학교폭력과 연계된 가정·사회의 전반적인 폭력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상당수는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을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과 사회 전반의 폭력적인 문화 및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법률상 규정된 5개년 기본계획의 체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2014년 12월에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발표·시행되었다.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의 자세한 내용은 [그림 6-1-1] 과 같다. 2015년부터 시행된 제3차

기본계획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3차 기본계획은 5대 영역(①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②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③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④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⑤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6-1-1]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학교문화 개선과 함께 취약요인 중점관리 • 대상별·유형별·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 •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5대 분야		16개 추진과제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2.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3.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4.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2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6. 학생보호인력 확충 7.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9.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10.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12.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1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5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15.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6.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자료 : 교육부(2014).

라.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05~2009년, 2010~2014년, 2015~2019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이 수립·추진되어 학교폭력 발생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이나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중·고등학생 피해 응답률에 비해 감소폭이 낮고,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피해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2015. 8. 7.)했다.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2015. 8. 7.)함에 있어 초등학생의 피해·가해 응답률이 여전히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의학적 요인의 측면에서 초등학생들의 경우 감정 조절 기관이 발달하는 시기로 공감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신체-정신의 불균형적 성장으로 인해 감정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사회성 발달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학대 등을 경험한 초등학생의 경우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유해 매체의 영향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대중영상매체에 자주 노출될수록, 폭력·선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한 유해물에 대한 노출 증가로 초등학생들이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쉽게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즉, 여성가족부의 ‘2015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 중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23,483(5.7%)명으로 전년대비 4,006명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16,735명(4.7%)으로 전년대비 3,552명 증가하였다.

셋째, 가정 요인으로 최근 맞벌이·한부모 가족 등 자녀에 대한 집중적 보호가 어려운 가족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한 학생이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넷째, 학교 요인으로 2013년부터 ‘어울림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오고 있으나, 전체 학교 수에 비해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공감·의사소통 등 사회적 관계유지 능력 배양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초등학교에서의 ‘어울림 프로그램’(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교사-학생 간 긍정적 관계가 학생의 공격성 억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교원에 대한 학생 생활지도 및 사안처리 방법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은 4대 중점과제, 12개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2015년 하반기부터 세부과제별로 추진되어오고 있다.

〈표 6-1-7〉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의 4대 중점 추진과제 및 12개 세부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1. 정신 의학적 지원 강화	1. 위기 의심학생 조기감지 2.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 3.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
2. 유해매체 노출 대책	4.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조치 5.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 6. 유해요인 예방교육 지원 강화
3. 가정의 역할 제고	7.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 교육 확대 8. 학부모 소통 활성화 및 체험형 치유 강화
4. 학교의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9.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 추진 10.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예방교육 강화 11. 담임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 강화 12.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

자료 : 교육부(2015).

마.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

2014년 4월 초등학교에서 한 남성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이래 본드 흡입 남성의 돌봄교실 침입, 학교 부적응 학생의 방화사건, 학교 인근 성범죄자 증가 등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 개최, 학교안전 관련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를 비롯한 경찰청, 구청, 병무청 관계자들과의 협의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생보호 인력과 학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과거 발생하였던 학생 및 학교 안전 침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학생보호인력 실질 배치율이 85.4%에 그치고 있어 출입자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 CCTV 설치율은 99.2%로 높으나 고화소 설치 비중은 35.8%로 여전히 낮고, 통합관제센터 연계도 57%로 낮아 실효성이 의심되며, 외부인의 무단출입 제한을 위한 자동개폐 출입문 설치율이 24.9%로 낮고 출입증 발급 미이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고위험학생에 대한 학교 및 상담·보호·치유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가 부족하여 부적응 학생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보호를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은 5개 영역에서 11개 세부과제가 마련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다.

〈표 6-1-8〉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의 5대 개선과제 및 11개 세부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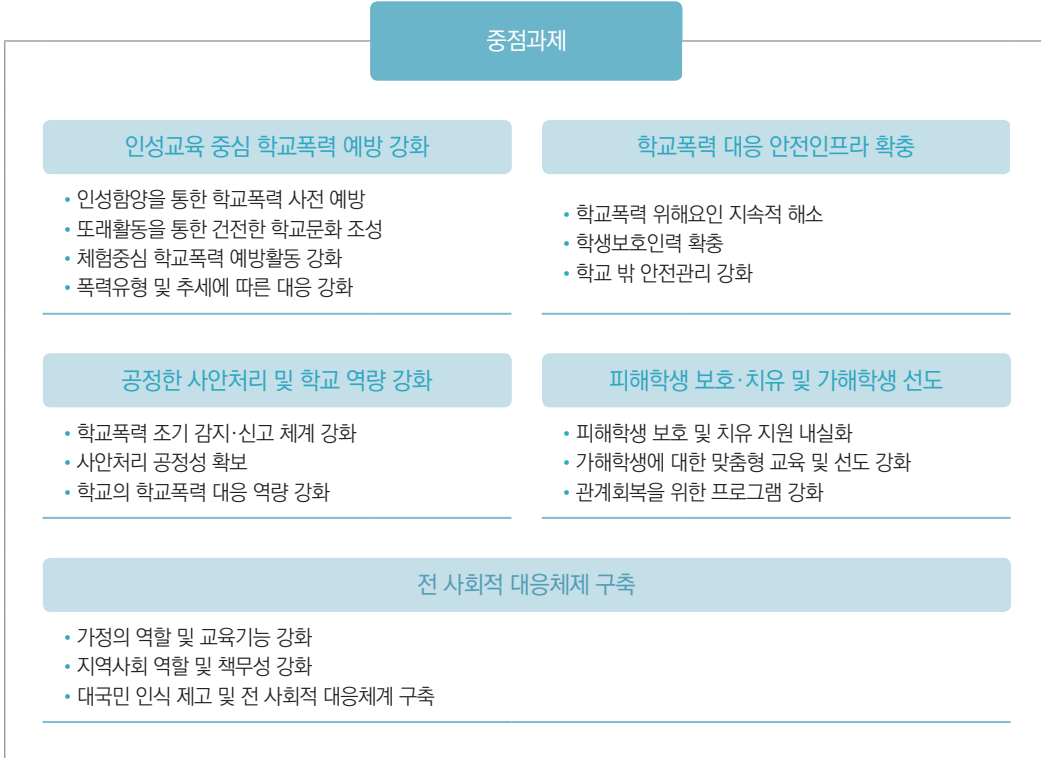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1. 학생보호인력 확충 및 내실화	1.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확충 및 내실화 2. 학교전담경찰관 지원 체계 구축
2. 안전 인프라 확충	3. 외부출입자 통제 및 관리 강화 4. CCTV 성능 개선 및 관제 강화 5.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선편드 점진적 확대
3. 학생안전서비스 확대	6. U-안심알리미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 7. 스마트폰 보유 학생을 위한 앱서비스 확충
4. 안전 인식 제고	8. 기관장의 책무성 강화 9.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5. 부적응 학생 관리 강화	10. 부적응 학생 조기 감지·진단 기능 강화 11. 학교-Wee센터-전문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자료 : 교육부(2015).

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8년도 시행계획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시행계획에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5개 영역에서 16개 과제가 추진·시행되었다.

[그림 6-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8년도 시행계획」 중점 과제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강화되었다. 학생들의 공감, 배려, 의사소통,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수준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을 확대·운영(2016년 1,011개교 → 2017년 1,515개교 → 2018년 9,000개교)하였으며, 경찰활동 체험을 통해 학생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청소년 경찰학교’(2016년 39개소 → 2017년 50개소 → 2018년 53개소)도 확대되었다.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언어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언어폭력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200개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150개교)하고,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서 사이버폭력 관심·위험군 대상 상담·치유 등을 위한 현장상담지원단을 시범운영(9개 교육청)하고 사이버폭력 대응 거점 Wee센터를 통해 사이버폭력 가·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학생보호 및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1인 10개교 체제로 운영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2016. 7. 14.)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1학교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 대상 ‘U-안심알리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학교폭력 위해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모든 학교 신·개축 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화소 CCTV설치를 확대하고,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셋째, 고위기 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였다.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단위학교에 Wee클래스를 확대 설치하고(2018년, 6,965개교), 전문상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2018년, 484명)해오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적 요인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돌봄·교육·상담 기능이 통합된 ‘가정형 Wee센터’(2018년 19개소 운영, 2019년 1개소 확충 예정)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2017년 학생 96.9%, 보호자 95.0% 이수)을 실시하고,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를 시범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고위기 학생 심리치료 이행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레일-교육부-산림청-시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위기학생 대상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를 운영(2018년 학생 12회, 243명, 가족캠프 2회, 154명)하고, 교육부와 GS칼텍스가 협업하는 ‘마음톡톡’과 같은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2018년 1학기 60개교 운영, 577명)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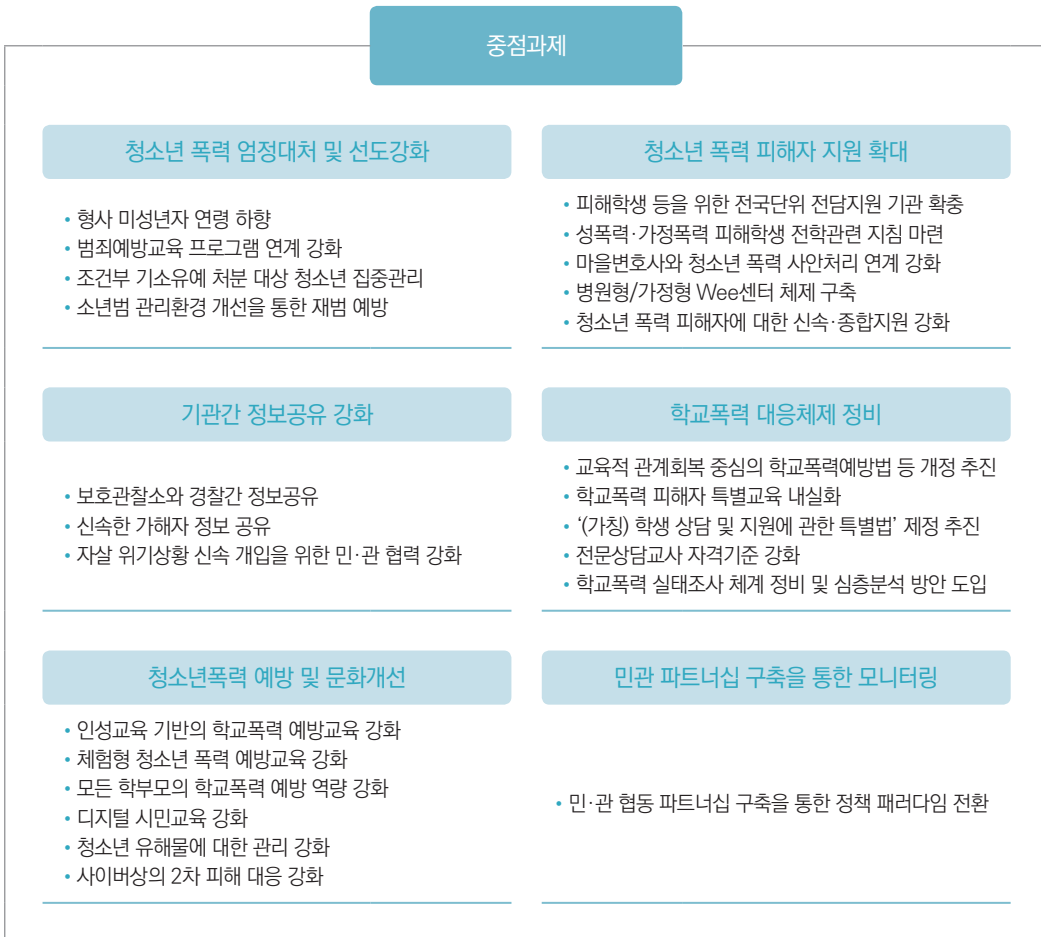
넷째,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역량이 강화되었다. 매년 2회에 걸친 ‘학교폭력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조기에 감지·예방하고,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117 신고·상담 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폭력예방누리집 ‘도란도란²⁾’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익명으로 신고·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치위원회 위원 연수를 내실화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확대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고시(2016. 9. 1.)하여 시행하고 있다.

2) 도란도란 홈페이지: http://www.edunet.net/nedu/doran/doranMainForm.do?menu_id=140

사.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및 보완 대책

2017년 12월과 2018년 8월에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과 가해학생 선도·교육,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2017. 12. 22.)과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2018. 8. 31.)이 발표되었다.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6대 영역에서 24개 과제가 추진·시행되었다.

[그림 6-1-3]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중점 과제



자료 : 교육부(2018).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선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10~13세) 현황을 보면(16년 기준) 13세의 비중이 66.4%에 이르고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율(18년 상반기 기준)은 전체적으로는 7.9%인데 비해 13세는 14.7%에 달해, 현재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의 형법·소년법 개정을 법무부 주도로 국회와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부 Wee프로젝트,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협력하여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청소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1곳인 전국 단위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2019년 이후 3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가정형 Wee센터 확충, 병원형 Wee센터 모델 추가개발 등 Wee프로젝트 내실화도 진행하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CYS-Net을 기반으로 청소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청과 협의하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학생 전학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경찰 중심으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대한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경찰과 학교가 가해자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자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학교폭력 대응체제를 정비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경미한 가해학생 조치에 한하여 학생부에 미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할 경우 징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교육적 관계회복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치유·상담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임용과정을 내실화한다.

다섯째, 청소년 폭력 예방 및 문화 개선을 추진한다.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인성교육 기반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게임형 교구 및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활동(뮤지컬 등) 등 체험형 청소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나아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상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 유해물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여섯째, ‘(가칭)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단’ 등을 구축하여 민간기관이 청소년들의 참여와 함께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협업관계를 형성한다.

3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실행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입 이후부터이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된 후 20년 동안 특별한 수정 없이 존속되어오다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1991년에는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의 4대 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후,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라는 UN의 권고를 받았으며, 1996년 OECD가입 시에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화된 안전수단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받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보호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11개의 아동학대 관련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함과 동시에 신고의무,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도입된 아동보호체계는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어왔으며, 아동보호에 있어서 공적책임성의 부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2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아동학대는 범죄로 규정되고 강력한 신고 및 처벌을 통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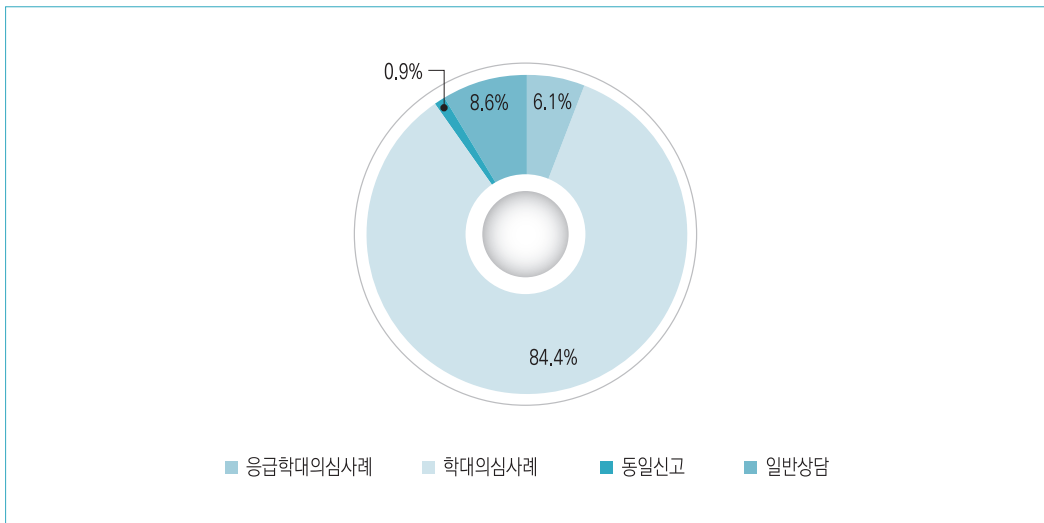
가. 아동학대 실태

1) 아동학대 사례유형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매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발생현황 및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서 2017년 2.64%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0.49%p 증가하였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6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34,169건으로 전년대비 약 15.2%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에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2,094건) 및 ‘아동학대의심사례’(28,829건)는 총 30,923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0.5%를 차지했으며, ‘일반상담’은 2,951건(8.6%), ‘동일신고’는 292건(0.9%)으로 나타났다.

[그림 6-1-4] 신고접수건수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학대피해로 인한 피해아동의 보호건수는 총 22,367건으로 2016년보다 3,66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학대보호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큰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되고 신고의무가 강화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및 처벌규정의 강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세부유형별로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되며,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는 ‘중복학대’로 분류될 수 있다. 2017년 아동학대 세부유형별 분석결과, 중복학대가 10,875건(48.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정서학대(21.1%), 신체학대(14.7%), 방임(12.5%), 성학대(3.1%)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의 경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8,757(39.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1-9〉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단위 : 건, (%))

연도	계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중복학대
2002	2,478 (100.0)	254 (10.3)	184 (7.4)	65 (2.6)	1,026 (41.4)	949 (38.3)
2003	2,921 (100.0)	347 (11.9)	207 (7.1)	134 (4.6)	1,078 (36.9)	1,155 (39.5)
2004	3,891 (100.0)	364 (9.4)	350 (9.0)	177 (4.5)	1,492 (38.3)	1,508 (38.8)
2005	4,633 (100.0)	423 (9.1)	512 (11.1)	206 (4.4)	1,782 (38.5)	1,710 (36.9)
2006	5,202 (100.0)	439 (8.4)	604 (11.6)	249 (4.8)	2,111 (40.6)	1,799 (34.6)
2007	5,581 (100.0)	473 (8.5)	589 (10.6)	266 (4.8)	2,166 (38.8)	2,087 (37.4)
2008	5,578 (100.0)	422 (7.6)	683 (12.2)	284 (5.1)	2,294 (41.1)	1,895 (34.0)
2009	5,685 (100.0)	338 (5.9)	778 (13.7)	274 (4.8)	2,054 (36.1)	2,241 (39.4)
2010	5,657 (100.0)	348 (6.2)	773 (13.7)	258 (4.6)	1,884 (33.3)	2,394 (42.3)
2011	6,058 (100.0)	466 (7.7)	909 (15.0)	226 (3.7)	1,836 (30.3)	2,621 (43.3)
2012	6,403 (100.0)	461 (7.2)	936 (14.6)	278 (4.3)	1,713 (26.8)	3,015 (47.1)
2013	6,796 (100.0)	753 (11.1)	1,101 (16.2)	242 (3.6)	1,778 (26.3)	2,922 (43.0)
2014	10,027 (100.0)	1,453 (14.5)	1,582 (15.8)	308 (3.1)	1,870 (18.6)	4,814 (48.0)
2015	11,715 (100.0)	1,884 (16.1)	2,046 (17.5)	428 (3.7)	2,010 (17.2)	5,347 (45.6)
2016	18,700 (100.0)	2,715 (14.5)	3,588 (19.2)	493 (2.6)	2,924 (15.6)	8,980 (48.0)
2017	22,367 (100.0)	3,285 (14.7)	4,728 (21.1)	692 (3.1)	2,787 (12.5)	10,875 (48.6)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각 년도).

2) 아동학대행위자, 학대 발생장소, 학대후 조치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2001년 학대피해아동현황 통계가 집계된 이래 현재까지 부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부모의 비중은 2011년 83.1%에서 2017년 76.8%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및 초중고 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및 아동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발생은 2011년 8.0%에서 2017년 1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학대행위자는 친인척으로 파악되었고, 그 비중은 2011년 5.8%에서

2017년 4.8%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2017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0.4% (17,989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보육기관이 5.0%로 나타났다. 학교에 발생한 아동학대건수는 1,344건(6.0%)으로 전년대비 741건 (2.8%p) 증가하였다.

〈표 6-1-10〉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연도 \ 관계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파악안됨	기타	계
2011년	5,039 (83.1)	349 (5.8)	482 (8.0)	92 (1.5)	1 (0.2)	95 (2.4)	6,058 (100.0)
2012년	5,370 (83.9)	435 (6.8)	397 (6.2)	108 (1.7)	23 (0.3)	70 (1.1)	6,403 (100.0)
2013년	5,454 (80.3)	351 (5.2)	786 (11.6)	85 (1.3)	35 (0.5)	85 (1.3)	6,796 (100.0)
2014년	8,207 (81.8)	559 (5.6)	990 (9.9)	124 (1.2)	18 (0.2)	129 (1.3)	10,027 (100.0)
2015년	14,369 (81.4)	812 (4.6)	2,007 (11.4)	213 (1.2)	26 (0.1)	235 (1.3)	17,662 (100.0)
2016년	15,048 (80.5)	795 (4.3)	2,173 (11.6)	201 (1.1)	29 (0.2)	454 (2.4)	18,700 (100.0)
2017년	17,177 (76.8)	1,067 (4.8)	3,343 (14.9)	294 (1.3)	45 (0.2)	441 (2.0)	22,367 (100.0)

주 : 대리양육자에는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위탁부, 위탁모, 베이비시터 등이 포함됨.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각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과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 기타로 구분된다. 최종 조치결과는 당해연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실시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결과를 의미한다. 2017년 기준 아동학대사례 22,367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10,874건 (48.6%), 서비스 지원 등 지속적인 개입을 진행한 사례는 51.4%로 나타났다. 2017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22,367건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에 보호되는 사례는 17,589건(78.6%)을 기록하였는데, 분리보호된 사례가 3,527건(15.8%)으로 나타났으며, 분리보호에는 여러 유형이 포함되는데, 이중 장기보호

1,274건(5.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족보호 1,230건(5.5%), 일시보호 824건(3.7%), 연고자보호 110건(0.5%), 병원입원 60건(0.3%)의 순이었다. 분리보호 후 가정에 복귀한 사례는 1,139건(5.1%)이었으며, 아동이 사망한 경우가 58건(0.3%)에 달했다.

〈표 6-1-11〉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2017)

구분		발생수(건)	발생비율(%)
원가정보호		17,589	78.6
분리보호	친족(친인척)보호	1,230	5.5
	연고자에 의한 보호	110	0.5
	가정위탁	29	0.1
	일시보호	824	3.7
	장기보호	1,274	5.7
	병원입원	60	0.3
	소계	3,527	15.8
사망		58	0.3
가정복귀		1,139	5.1
기타		54	0.2
계		22,367	100.0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나. 아동학대 예방 대책

1) 아동방임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정부에서는 2006년 4월부터 ‘보건소 아동보호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방문간호서비스’에 ‘아동보호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시범사업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방문건수 대비 16.5%로 나타나는 등 사업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전국 16개 지역에서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착수했다. 2008년 희망스타트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16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최근 급증해왔던 아동학대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강화 및 현장출동,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특히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특례법 내에 과거에는 「형법」에만 있었던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부모는 검사의 청구로 친권을 상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신고의무자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신고의무자제도(Mandatory Reporting)의 강화는 신고 및 조사를 기초로 하는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작동기제로 간주된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신변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15년부터 의료인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교육 및 강사양성 사업추진, 신고 직군의 지속적 확대 등을 통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2017년 기준, 아동학대 의심사례 가운데 28.6%(8,830건)가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로, 2001년(686건)에 비해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약 12배 이상 증가했다.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정부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 10월에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2001년 10월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체계를 갖추었다. 2004년부터는 지역 기관 23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2004년에는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치료·보호 및 가정 복귀까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을 부과하여 시·도별 1개소씩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014년 2월 28일에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9월 28일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국가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이 마련되었고, 별도로 운영되어온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통합하고, 신고접수 당시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의심되는 응급아동학대 신고인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하여 출동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경찰단독 또는 동행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표 6-1-12〉 현장조사동행현황

(단위 : 건, %)

구분	현장조사동행 건수	비율
상담원	57,333	58.7
경찰	13,166	13.5
상담원, 경찰	22,418	22.9
상담원, 공무원	1,213	1.2
경찰, 공무원	235	0.2
상담원, 경찰, 공무원	3,327	3.4
계	97,692	100.0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역할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전문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8년 기준 중앙아동보호기관 1개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6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46조를 근거로 수행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 사례슈퍼비전과 모니터링, 그리고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고, 아동학대예방사업 연구 수행 및 자료 발간,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담원 직무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된다. 부모 또한 아동이 실종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아동을 찾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 아동의 실종은 부모로 하여금 실종아동에 대한 죄책감과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여 최악의 경우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실종아동 문제를 개인의 문제 또는 실종아동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04년 개구리소년들(1991년 실종)의 유골 발견, 2004년 부천초등생, 포천여중생 실종사건 등으로 인해 실종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가 차원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 구축 및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3년 이전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는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보호시설의 아동카드 송부누락 및 지연, 미신고시설 관리부실, 관련 법률의 부재, 일반 국민들의 인식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5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을 제정하여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한 가정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5년 12월 시행된 「실종아동법」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반아동의 실종 발생 건수는 2012년에는 27,295명에서 2017년 11월 18,534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18,425명, 약 99% 이상이 보호자에게 인계되었고, 소수만이 미발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발견사례가 2016년 16건에서, 2017년 109건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실종 발생 건수가 2012년 7,224건에서 2016년까지 8,54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7년 11월에는 7,855건으로 감소하였다. 장애아동의 실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표 6-1-13〉 실종 일반아동·장애아동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

(단위: 건)

연도	일반아동			장애아동		
	발생건수	발견건수 (보호자인계)	미발견건수	발생건수	발견건수 (보호자인계)	미발견건수
2012년	27,295	27,291	4	7,224	7,217	7
2013년	23,089	23,089	0	7,623	7,613	10
2014년	21,591	21,589	2	7,724	7,719	5
2015년	19,428	19,424	4	8,311	8,308	3
2016년	19,870	19,854	16	8,542	8,528	14
2017년 11월	18,534	18,425	109	7,855	7,783	72

주: 개정(2013. 6. 4.) 「실종아동법」 적용 산출.

자료: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2017). 홈페이지 통계자료(www.missingchild.or.kr/CMSPage/CMSPage.cshtml 에서 2018년 12월 14일 인출).

실종아동 예방 및 대응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3년 6월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실종아동의 대상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 기준 전체 실종신고 건 중 14~16세의 아동이 76.4%로 나타났으며, 이중 가출이 원인이 경우가 63.5%에 달했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호 및 지원하도록 하였다. 둘째, 실종업무를 전담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실종 아동·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종가족 지원 등 실종예방 및 가족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장의 신상카드 송부를 의무화하고, 시설보호 대상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실종아동찾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경찰의 수색·수사를 의무화하여 경찰의 초동수사 및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미신고보호행위를 금지하여 개인의 불법 입양이나 미신고시설 등의 불법 보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일곱째, 보호시설에 대한 경찰의 현장 조사권한을 명시화하여 시설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전자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였으며 동 대책에

따라 신고의무자,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의무 불이행자 및 불법양육자의 처벌규정에 관한 홍보도 병행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2008년 4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차원의 아동범죄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부도 실종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놀이터, 공원, 학교주변 및 아동범죄 다발지역 등 아동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전개·지원하였다. 둘째,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지정(2010. 6. 8., 60개소)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및 장애인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일시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고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가족 또는 경찰서에서 이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셋째,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의 실종신고 자료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신상카드 자료 간 전산연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넷째,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2008. 12. 14. 시행)하고, 실종예방 인형극 순회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연령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종예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다섯째, 유괴예방 3단계 구호 100만인에게 알리기, 실종예방 공익광고 송출, 어린이안전 특별생방송 방영 등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날’, ‘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하여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였다. 여섯째, 실종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모활동비·전단지제작지원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실종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실종아동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신상카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이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을 방문하는 때에는 실종아동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유전정보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2011년 8월에는 실종·유괴경보(엠버경보), 실종신고를 경찰청으로 일원화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7월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을 빨리 찾도록 하였으며,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지침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고,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관련한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 명의 아동 및 장애인이라도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종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대책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5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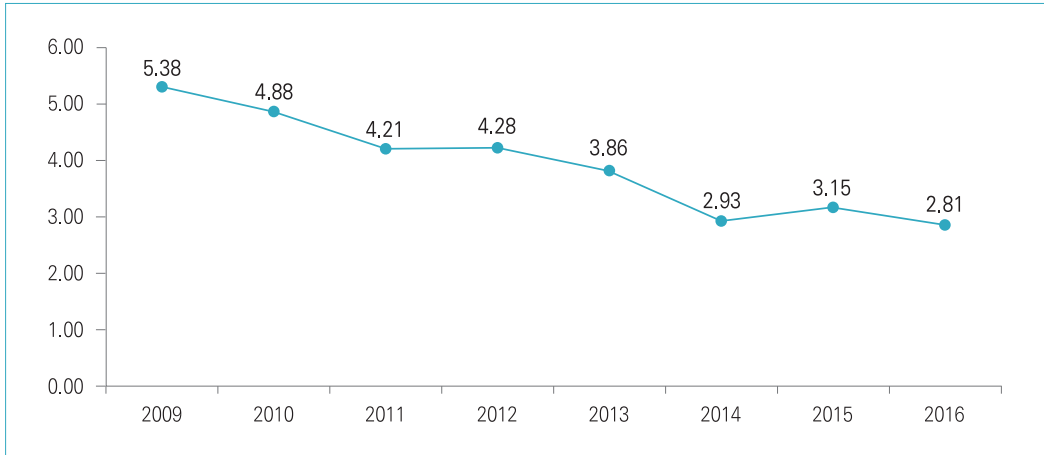
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어린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2003. 5. 5.)하고, 2003년 6월부터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향후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1/2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어린이 사고사망 2001년 1,269명 → 2007년 538명). 그리고 OECD 회원국 최하위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상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제를 조정해 나갔다.

「어린이 안전종합대책」과 각종 안전대책의 효과로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9년 5.38명에서 2014년 2.93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5년 3.15명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6년에 2.81명으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5]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14세 이하)

(단위 : 명/10만명당)



자료 : 통계청(2017). 사망원인통계.

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6년의 경우 총 안전사고 사망 아동 수는 총 196명이었고, 사망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사 및 추락사는 각각 19명, 28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화재에 따른 사망은 5명,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며, 아동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교통사고 및 놀이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6-1-14〉 연도별·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교통사고	익사	추락	질식	화재	중독	기타
1998	1,664	805	326	115	161	64	21	172
1999	1,524	726	306	152	131	88	21	100
2000	1,417	728	306	155	78	41	13	96
2001	1,269	616	236	138	102	76	7	94
2002	1,210	594	198	134	114	55	6	109
2003	1,016	497	156	108	96	70	4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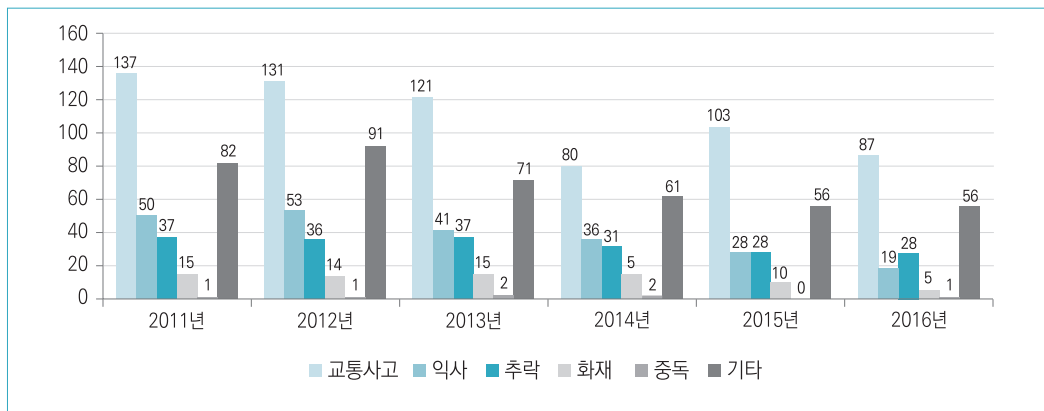
연도	계	교통사고	익사	추락	질식	화재	중독	기타
2004	891	374	183	88	90	46	7	103
2005	756	337	156	67	72	25	4	95
2006	645	318	78	58	69	42	5	75
2007	538	259	78	58	70	7	4	62
2008	508	214	78	50	67	19	2	78
2009	440	201	62	39	47	10	5	76
2010	386	194	44	41	-	15	3	89
2011	322	137	50	37	-	15	1	82
2012	326	131	53	36	-	14	1	91
2013	287	121	41	37	-	15	2	71
2014	215	80	36	31	-	5	2	61
2015	225	103	28	28	-	10	-	56
2016	196	87	19	28	-	5	1	56

주 : 1) 1년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에서 자살·타살·질병 제외.
 2) 2010년부터 질식사고는 기타로 집계.

자료 : 통계청(2017). e-나라지표.

[그림 6-1-6]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14세 이하)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2017). e-나라지표.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국제비교 하면 우리나라는 2016년 2.8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가 평균수준 5.6명보다 낮은 수치이다.

〈표 6-1-15〉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국제 비교

(단위 : 아동 10만 명당, 명)

국 가 (연 도)	OECD 평균 (2005년)	한국 (2016년)	스웨덴 (2005년)	영국 (2005년)	독일 (2005년)	일본 (2005년)
사망률	5.6	2.8	2.7	3.3	3.7	4.6

자료 : 1) 통계청(2017). e-나라지표(14세 이하).
2) WHO(2008). Mortality Database.

나. 아동안전종합계획의 배경과 주요내용

아동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결정짓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안전 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합계출산율은 1.0명 이하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저출산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워내는 일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안전사고는 성인에 비해 사망 및 중상의 비율이 높고, 인격발달과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사고로 인한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의 아동안전문제는 단지 피할 수 없는 일로 간주되거나, 부모들이 알아서 예방하여야 할 일로 여겨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아동안전 관련 정책 또한 소관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체계적, 종합적인 정책 개발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된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10만 명당)는 2002년 12.4명에 비해 2007년 6.2명으로 감소한 것에 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 「제2차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년)」과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에서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추락, 익사사고 등 주요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한 정책이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여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한국소비자원 등 아동안전 관련기관 간 업무협조체계 강화,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아동 안전체험 행사개최 등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안전 통계의 주요지표인 '통계청'의 '사망통계'와 '질병관리본부'의 '손상관리정보',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시스템' 간 협력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각 부처별·기관별 어린이 안전관련 통계를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반영하도록 추진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아동·청소년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만 5세 이하)와 사고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부모교육 실시, 가정 안전꾸러미를 배포하는 등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등·하굣길을 동행하고, 등·하교 상황, 학교 결석여부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확산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보호 장구 개발지원 및 표준화, 저소득층 무상대여 등 어린이 보호 장구 착용률 제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등하굣길 안전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고자 행정자치부(2017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익사 등 어린이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2016. 4. 27.)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집중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이 포함되었다. 둘째, 학교 주변 교통 및 유해환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 점검을 엄격하게 하는 등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셋째,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및 수상안전교육 확대를 포함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것이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4대 분야와 14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6-1-16〉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주요 내용

4대 분야	14대 추진과제
1.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집중 감축	1.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 육성전파
	2. 안전시설 확충 및 사고위험구역 진단개선
	3. 법규위반 단속 및 교통안전 홍보캠페인 전개
	4. 어린이 보호장구(카시트) 착용 확대
2.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 강화	5. 학교 주변 위해요소 합동점검개선
	6. 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8. 가정 어린이 안전 체크리스트 개발 등
	9.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 인증
	10. 어린이 급식 등 안전 식생활 확보
3.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	11. 유치원, 초중학교 정규 안전교육 강화
	12.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13. 어린이 수상 안전교육 확대
4. 어린이 안전 평가환류체계 구축	14. 지방자치단체별 어린이 안전수준 평가환류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6).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이러한 종합대책을 통해서 아동의 안전정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의 아동을 위한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은 반기별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안전교육 콘텐츠, 안전체험시설, 안전교육 강사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마련하여 연령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실천이 생활화되고, 안전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체험 중심형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에 종합체험관은 총 11개소(이용인원: 일반인 포함 연 713천명)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손쉽게 안전체험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안전체험교육(가칭 “안전행복버스”)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이동식 안전체험교실은 4개(버스 4대)이고, 종합안전체험관은 8개소이며, 안전체험환경의 점차적 확대가 필요하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044-415-2162

제2장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1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청소년유해약물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등이며, 이 외에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약물중독은 약성 약물에서 강성 약물로 전이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한번 사용하게 되면 습관성과 의존성 및 중독성과 내성이 강하여 중단하기 힘든데, 특히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예방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주류나 담배의 유통규제 제도의 한계 등으로 청소년의 흡연·음주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 관련 제도 및 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정책과 제도에 대한 효과적·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 약물 중 빈번한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음주 및 흡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약물예방에 관한 국제적 표준에 적합한 제도와 법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제 위주의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실태

2018년도 청소년 흡연율은 6.7%로, 2014년 9.2%, 2015년 7.8%였다가 2017년 6.4%로, 최근에는 감소하는 정도가 주춤한 추세이다. 이 중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9.4%, 여자 청소년 흡연율은 3.7%로 나타났으며, 최초 흡연 시작연령은 평균 만 13세로 나타났다.

〈표 6-2-1〉 청소년 현재 흡연율, 평생 흡연 경험률 및 처음 흡연 연령

(단위 : %, 세)

구분	현재 흡연율	평생 흡연 경험률	처음 흡연 연령
2014년	9.2	19.9	12.6
2015년	7.8	17.4	12.7
2016년	6.3	14.8	12.7
2017년	6.4	13.7	12.9
남성	9.5	20.1	12.8
여성	3.1	17.3	13.1

주 : 1) 현재 흡연율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2) 평생 흡연 경험률 : 평생 동안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년도.

청소년 음주의 경우, 2017년도 현재 음주율은 16.1%, 평생 음주 경험률은 40.2%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의 최초 음주 시작연령은 2017년 13.2세로 나타났다.

〈표 6-2-2〉 청소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및 처음 음주 연령

(단위 : %, 세)

구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처음 음주 연령
2014년	16.7	43.0	12.9
2015년	16.7	40.8	13.1
2016년	15.0	38.8	13.2
2017년	16.1	40.2	13.2
남성	18.2	44.0	12.9
여성	13.7	36.1	13.5

주 : 1) 현재 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2) 평생 음주 경험률 : 평생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년도.

나.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기반 구축

1)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기반 구축

2005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회원국에 음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서는 회원국에 담배의 광고, 판촉 및 후원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은 2006년 12월 연방의회에서 「청소년음주예방법」 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흡연·음주 환경 규제내용이 각 개별법에 분산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즉, 청소년 흡연규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는 「주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주류소매(면허)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달리 면허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류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성이족부에서는 청소년 흡연·음주예방을 위한 기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류·담배의 청소년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시행(2012. 9. 16.)하였다.

또한,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시행(2015. 3. 25.)하였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주류 및 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등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인해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시행(2016. 3. 2.)하였다.

2017년 10월에는 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하였고, 12월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를 추가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하였다.

2) 청소년 흡연예방 대책 추진

최근 들어 청소년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세계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된 담배에 대한 청소년 대상 불법판매 모니터링과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 편의점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 등과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BIS(버스안내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흡연을 자제하고, 흡연은 좋지 못한 사회적 행동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흡연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표 6-2-3〉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관계부처	추진과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강화 및 유통업자 종사자 교육 • 유통업체, 시·군·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 신분증 확인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 및 다양한 홍보 실시(방학, 수능전·후 등 계기별) •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추진 •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추진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운영 • 보건소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프로그램(금연교실, 금연지도자 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등) 제공 • 매스미디어 홍보(언론매체, 인터넷, 금연월간지, 스티커 등)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 실태에 대한 주기적 파악 •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흡연·음주예방 교육 실시(금연학교 운영) •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유해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관람가 영화 속의 흡연장면 노출문제 개선(영상물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사업법」 제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규제 방안(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심의 강화 및 기준 보완)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흡연 장면 노출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판매 업소 특별계도 및 단속

자료 : 1) 여성가족부(2016).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3) 청소년 음주예방 대책 추진

그동안 우리 사회 특유의 관대한 음주문화의 영향 등으로 사회전반에서 음주로 인한 수조원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였고,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채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건강한 성장 발달권을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주류협회, 주류관련 유통업체 등에 청소년신분증 확인 교육 동영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고, 청소년 음주예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UCC공모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하계휴가치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캠페인’, ‘애니메이션 제작 홍보’, ‘학교 스쿨터치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 ‘흡연·음주예방 카드뉴스 온라인 홍보’ 등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연중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표 6-2-4〉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관계부처	대책 추진과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업체, 시·군·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 신분증 확인 캠페인 전개 청소년 대상 음주예방 교육 및 다양한 홍보 실시(방학,수능전·후 등 계기별)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추진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추진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폐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국민인식 제고 생애집단별 교육 및 홍보(학생과 비행청소년, 또래 지도자와 교사, 주류 판매업자 대상 교육) 정신건강검진사업을 통한 조기발견과 음주폐해 예방(학교와 연계해 방과 후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중학생과 초등학생까지 적용) 주류 판매자의 자정노력 강화(클린판매점 선정 및 운영) 절주 상담실 운영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의 음주를 증가 및 저연령화 문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학생의 체계적 음주예방 교육(정규수업, 학교장 재량시간 활용) - 학생 음주예방 교육을 위한 지도능력 배양과 인식제고 -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청소년(소년원)들의 음주를 증가 문제 관련: 갱생프로그램에 최소한의 음주예방 교육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관람가 영화 속의 음주장면 노출문제 개선: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 주류 유통물 규제 방안: 인터넷상의 주류 유통물 심의 강화 및 기준보완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관련 범죄 수사 시 “피의자 원표”에 음주여부 조사항목 신설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

관계부처	대책 추진과제
방송통신위원회	•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음주장면 노출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 주류판매 업소 특별계도 단속

자료 : 1) 여성가족부(2016).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301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다양한 유흥문화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해업소 및 신·변종 유해업소의 수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8년에 들어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5〉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

(단위 : 개소)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10,816	849,723	854,868	875,329	892,092	930,531	943,383	398,167

자료 : 행정안전부(2018. 12. 31.).

도시지역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생애 이용률은 노래방 80.7%, PC방 70.1%, 전자오락실 36.5%, 만화방 22.2%, 멀티방/룸카페 12.0%, 주점 3.8%에 달한다.

특히,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이 확산되고 있고, 주거지역 인근에도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 등을 통해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있다. 즉, 기존 시가지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주거지, 학교, 학원

등이 혼재되어 입지하면서 청소년에게 교육적·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인 ‘레드 존(RED ZONE)’을 설정하였다.

2016년 11월 9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부산, 서울에서 제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8)에 대한(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위헌소원에 대해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3. 영업형태의 가항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이 불확실한 개념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진 마사지업소 및 피부미용실 등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되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33곳, ‘통행제한구역’ 19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 추진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신도시 개발 도시계획 수립 시 유해업소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사업의 시범도입(국토교통부)을 적극 추진하여, 2010년 화성·동탄 2신도시 실시계획에 중심상업용지 등 4개 구역에 한하여 위락시설, 숙박시설, 청소년 유해업소 건축을 허용하는 ‘레드존’을 지정, 격리·구획화하도록 반영하고 시범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격리·구획화 사업의 시범실시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 주관부처 및 시행자간의 지속적인 업무협조 체계 유지를 통하여 추후 신도시 개발 시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 사업을 적극 확대·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표 6-2-6> 2018년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무도학원 (무도장)	이용업 (목욕장)	숙박업 숙박업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게임 제공업			
										게임 제공업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일반 (청소년) 게임장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398,167	28,317	13,570	88,793	147,255	921	24,181	27,301	34,019	717	257	21,337	9,028	2,471

주 : 1) 출입·고용금지업소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기타(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

2) 고용금지업소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용업, 숙박업, 게임제공업을 자칭(일반음식점의 경우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되며, 숙박업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자료 : 행정안전부(2018. 12. 31.).

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학교보건법」상 절대·상대 정화구역의 지정·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거리를 벗어난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업소들이 유혹에 약한 청소년들을 퇴폐향락으로 이끌고 있다. 경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을 2017년 9,750명 단속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 11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의 불건전서비스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2011년 7월 해당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하였다. 2012년 9월에는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업소’로,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 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였다. 2014년 3월에는 「한국마사회법」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경정법」의 장외매장을 경기 개최일에 한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였고,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2015년 3월에는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영업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 6-2-7〉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단위: 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	
	총계	유해업소 출입·고용	유해약물 등 판매	청소년이용 유해행위	유해 매체물	구속	불구속
2013	13,438	1,707	9,980	464	1,287	8	13,430
2014	8,393	870	6,933	401	189	5	8,388
2015	9,268	327	8,364	392	185	0	9,268
2016	9,313	412	8,444	371	86	1	9,312
2017	9,750	360	8,927	393	70	2	9,748

자료 : 경찰청(2017).

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 활동

최근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상채팅방, 모텔, PC방 등 신·변종 업소가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단속 및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신도시 개발계획 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업종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기존 유해업소 및 신·변종유해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전국 267개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운영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및 각 지자체 조례에 의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19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권변동 및 도시재정비 사업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7년 12월 말 기준 총 53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표 6-2-8〉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계	53	35	18
서울	8	5	3
부산	4	2	2
대구	1	1	-
인천	2	1	1
광주	2	1	1

구분	계	동행금지구역	동행제한구역
대전	3	3	-
울산	0	-	-
세종	0	-	-
경기	7	5	2
강원	5	5	-
충북	1	1	-
충남	2	2	-
전북	8	4	4
전남	2	1	1
경북	5	3	2
경남	3	1	2
제주	0	-	-

주 : 1) 동행금지구역 : 유흥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지역(24시간 동행금지).

2) 동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등 판매·대여 등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지역(일정시간 동행제한).

자료 : 여성가족부(2017).

2)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여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신도시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하여, 신도시 계획 시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해 주거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특정용도제한구역을 설치하며, 도시의 건전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모델을 제시하고, 주거지나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격리·구획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2010년 6월 29일 화성·동탄2 신도시개발계획에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가 반영되었다.

3)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보호

‘교육환경 보호구역(구, 학교교육환경정화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설정되는데,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의미하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종래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학교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학교 주변 학생의 안전 및 정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업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2016년 2월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총 304개소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수가 121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31,259개소 중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이 약 33.2%(10,368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9〉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2018년 6월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대기/수질/약취/소음·진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0	1	0	4	1	0	0	7	0	0	67	5	0	1	35	0	0	121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가축사체처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화장시설, 보안시설, 도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축시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한상영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화방, 화상방	1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3
성기구취급여소	5	1	0	2	0	0	0	0	5	0	0	0	0	0	0	0	0	13
신변중업소	19	37	0	0	0	0	0	0	35	0	0	0	0	0	0	0	0	91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폐기물수집장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총포, 화약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감염병 격리소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담배자동판매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2	0	0	0	0	0	0	0	0	0	1	0	1	0	0	0	0	4
미니게임기	0	3	0	0	0	0	0	0	0	2	0	26	1	0	0	0	0	32
당구장	1	0	0	2	0	0	0	0	0	0	1	0	0	0	0	0	0	4
무도학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행행위장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노래연습장	7	6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비디오감상실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유흥·단란주점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숙박업, 호텔업	2	0	2	0	0	0	0	0	0	0	0	0	0	0	6	0	1	11
만화가게	6	0	0	2	0	0	0	1	0	0	0	0	0	0	0	0	0	9
사고대비물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44	48	3	10	2	0	0	8	40	2	69	31	4	1	41	0	1	304

자료 : 교육부(2018).

〈표 6-2-1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2018년 6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축사체처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화장시설, 봉안시설, 도축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가축시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한상영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화방, 화상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기구취급업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신변중업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80	79	11	11	0	5	3	1	42	7	9	11	9	11	10	18	6	313
폐기물수집장소	0	5	0	0	0	0	4	0	10	0	1	0	2	1	1	0	0	24
총포, 화약류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2
감염병 격리소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담배자동판매기	9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752	80	140	131	202	133	10	1	392	100	62	158	278	92	80	166	18	2,795
미니게임기	0	4	0	0	0	0	0	0	4	0	1	0	2	1	0	0	0	12
당구장	623	134	78	210	69	57	28	8	406	75	87	129	113	87	58	122	26	2,310
무도학원	4	1	10	1	0	4	0	0	9	1	3	0	4	2	3	1	2	45
사행행위장 등	1	0	0	0	0	1	0	0	6	0	0	0	0	0	0	0	0	8
노래연습장	2,013	634	542	497	161	387	259	14	1,924	223	293	340	291	264	470	527	72	8,911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비디오감상실업	48	3	8	4	0	4	0	0	9	2	3	4	5	1	6	1	0	98
유희·단란주점	1,743	1,457	375	521	46	100	341	15	1,669	416	273	374	375	565	665	1,006	427	10,368
숙박업, 호텔업	1,269	672	276	141	48	145	146	6	743	321	245	424	225	337	477	442	203	6,120
만화가게	10	7	2	2	0	3	3	0	22	4	5	4	54	2	2	25	1	146
사고대비용질	0	0	0	0	0	2	1	0	0	1	3	0	0	0	3	1	0	11
계	6,638	3,077	1,442	1,518	526	841	795	45	5,237	1,151	985	1,444	1,358	1,363	1,775	2,309	755	31,259

자료 : 교육부(2018).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044-415-2162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개설·운영을 시작으로 민간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었다. 1994년에는 서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되었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서울 등 6대 도시에 6개 시민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 보급되었다. 1997년에 제정·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상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17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295개의 감시단(총 20,873명)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8개 학교에서 학교감시단을 구성하여 별도 운영하고 있다.

〈표 6-2-1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단위 : 개, 명)

시·도	합계		시민단체		학교감시단	
	단체 수	단원 수	단체 수	단원 수	학교 수	단원 수
합계	295	20,873	267	20,680	28	193
서울	63	8,871	54	8,779	9	92
부산	20	964	18	928	2	36

시·도	합계		시민단체		학교감시단	
	단체 수	단원 수	단체 수	단원 수	학교 수	단원 수
대구	8	534	7	534	1	-
인천	8	241	7	241	1	-
광주	9	460	8	460	1	-
대전	4	234	3	234	1	-
울산	9	942	8	942	1	-
세종	3	294	2	294	1	
경기	68	4,670	67	4,670	1	-
강원	14	535	13	509	1	26
충북	7	237	6	237	1	-
충남	18	922	18	922	-	-
전북	11	578	10	578	1	-
전남	17	506	15	493	2	13
경북	14	280	11	254	3	26
경남	14	413	13	413	1	-
제주	8	192	7	192	1	-

출처: 여성가족부(2017).

제3장 |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1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여성가족부에서는 매체물 등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심의·결정 및 고시를 통하여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요청 등 시정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의 경계 붕괴,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등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시의적, 실효적 규제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 법·제도 개선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를 통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체환경의 급속한 발달과 변화로부터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곧, 국가지속발전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규제·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보호·교육 지원 등의 사전 예방적 보호조치와 인터넷 중독 등 매체역기능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에서 효율적인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우리나라의 매체물 심의기관은 각 정부기관 산하의 유관기관 및 매체별로 분리되어 있는 다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방송 및 통신매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 및 등급분류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이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의 심의 및 등급분류, 음반 및 음악파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매체물 심의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연령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연령등급제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와 문화관련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등급분류 제도가 병행되고 있으며, 심의 및 등급분류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심의기관의 법적 성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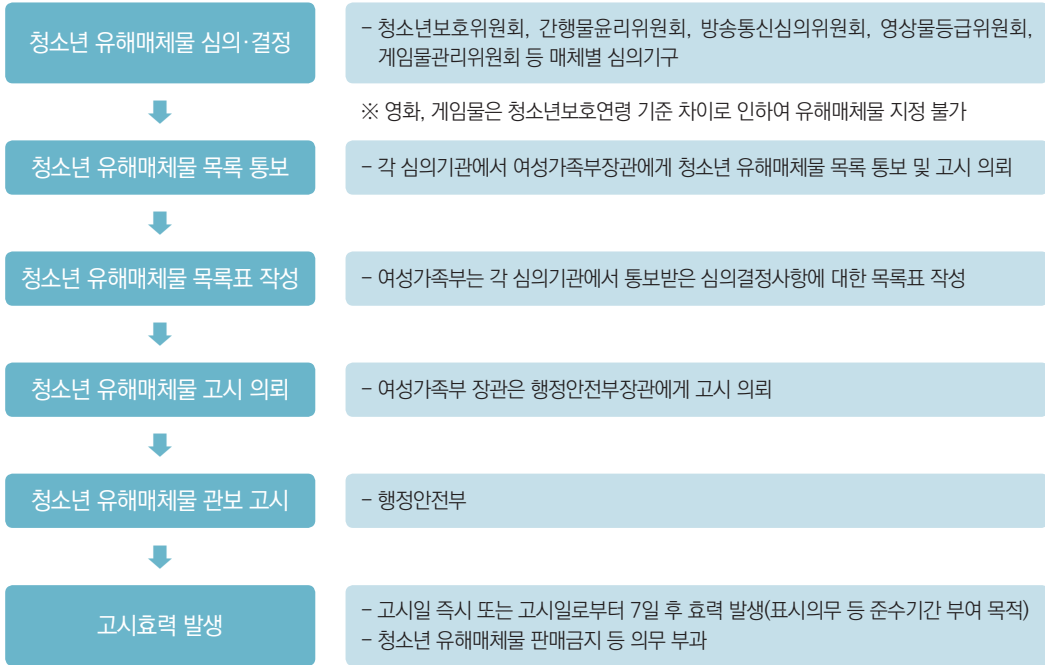
〈표 6-3-1〉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심의기관	담당 매체	소관부처·법률	심의형태
청소년보호위원회	음반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사후심의
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사후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비디오CD	문화체육관광부, 「영화비디오법」	사전등급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법」	사전등급분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사후심의
	방송 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사전자율/사후심의병행

자료 : 여성가족부(2015).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등에 따라 소관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에서 제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 고시를 의뢰하고 있다.

[그림 6-3-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절차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5).

<표 6-3-2>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단위 : 건)

연도	고시 횟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게임물 등급 위원회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계			
		도	정기간행물	만화 단행본	만화 잡지	광고	전자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무직비디오	방송프로그램						통신 분야									
													영화	드라마	다큐	만화	음악	버라이어티	데이터방송	인포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PC통신	전기통신				
97	14	59	105	1,994	29	11	0	102	444	0	0	0	1,688	0	1	19	9	0	0	0	0	0	0	8	607	0	5,076	
98	43	173	416	1,140	52	0	0	151	762	0	0	0	808	30	12	52	14	0	0	0	0	0	0	0	0	755	0	4,365
99	45	304	388	1,501	14	1	0	71	428	0	4	0	271	2	5	2	0	0	0	0	0	0	0	4	61	31	3,087	
00	28	366	699	1,227	0	0	0	0	0	0	0	0	158	0	9	4	0	0	0	0	0	0	0	67	53	10	2,593	

연도	고시 희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게임물 등급 위원회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계
		도 서	정 기 간 행 물	만 화 단 행	만 화 잡 지	광 고	전 자 출 판	영 화	비 디 오 물	게 임 물	음 반	뮤 직 비 디 오	방송프로그램												통신 분야		
													영 화	드 라 마	다 큐	만 화	음 악	버 라 이 어 티	데 이 터 방 송	인 포 데 인 먼트	스 포 츠	기 타	P C 통 신	전 기 통 신			
																									영 화	드 라 마	
01	42	289	983	1,387	1	0	0	0	0	0	0	0	597	58	5	99	451	0	0	0	0	962	7	41	4,880		
02	51	259	1,098	1,492	8	0	0	0	0	0	0	0	1,399	33	1	114	19	0	0	0	0	189	435	836	5,883		
03	66	611	1,220	1,802	131	0	0	0	0	0	0	0	2,623	145	0	3	510	0	0	0	0	284	0	3,510	10,839		
04	62	371	528	1,810	269	2	0	0	0	0	0	0	202	67	2	0	0	0	0	0	0	0	0	7,641	10,892		
05	35	324	307	1,413	191	0	0	0	0	0	0	0	1,067	237	0	15	2	0	0	0	0	179	0	17,115	20,850		
06	45	351	324	1,347	72	0	0	0	0	0	4	0	2,794	207	0	29	3	0	0	0	0	480	0	18,715	24,326		
07	63	414	377	1,867	46	0	0	0	0	0	344	0	6,316	190	0	151	1	0	0	0	0	840	0	16,044	26,590		
08	45	433	264	1,653	48	0	584	0	0	0	651	0	1,041	1,059	0	142	0	0	0	0	0	626	0	884	7,385		
09	48	809	223	1,756	229	0	658	0	0	0	941	0	2,557	1,462	0	436	0	0	0	0	0	3,109	0	227	12,407		
10	36	822	276	2,066	188	0	1,131	0	0	0	991	0	1,041	902	0	459	0	491	0	63	3	412	0	280	9,125		
11	51	874	404	2,882	16	0	1,031	0	0	0	672	171	1,628	1,706	0	340	0	3,350	0	177	52	217	0	351	13,872		
12	62	844	445	3,037	0	0	1,075	0	0	0	1,049	101	2,218	2,077	0	555	0	4,424	2	0	0	61	0	448	16,336		
13	32	766	425	2,196	0	0	834	0	0	0	1,000	0	1,215	984	0	544	0	2,134	0	0	0	64	0	390	10,552		
14	35	824	518	1,840	0	0	926	0	0	0	1,140	0	969	795	0	1,015	0	1,880	0	0	0	0	0	263	10,170		
15	57	783	504	2,095	0	0	821	0	0	0	2,033	0	2,243	793	0	549	0	3,442	0	0	0	0	0	132	13,395		
16	50	626	436	1,786	0	0	563	0	0	0	804	0	1,282	379	0	398	0	3,459	0	0	0	0	0	142	9,875		
17	43	525	457	1,821	0	0	660	0	0	0	1,078	0	489	272	4	280	0	1,590	0	0	0	0	0	70	7,246		
18	50	465	394	1,564	0	0	887	0	0	0	975	0	845	635	17	821	0	3,729	0	0	0	2	0	93	10,465		
계	1,003	11,292	10,791	39,676	1,294	14	9,170	324	1,634	0	11,686	272	33,451	12,071	56	6,027	1,009	24,499	2	240	55	7,504	1,918	67,223	240,208		
총계				71,655				1,958	0		11,958						84,914						69,141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다. 음반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음반 심의제도는 그 근거가 되었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6. 11.) 되면서 주로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심의임을 고려하여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업무를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음반·음악파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유해성 심의, 유통 차단 등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매년 음반·음악파일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음반심의 이후(2006. 11. 이후) 2018년(10월)까지 유해결정 곡은 총 11,469곡(국내 4,381곡, 외국 7,088곡)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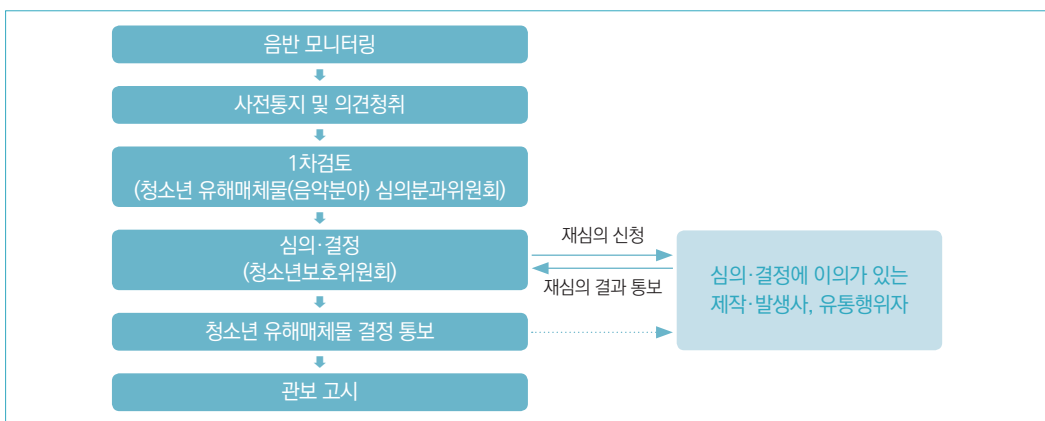
〈표 6-3-3〉 청소년 유해음반 결정·고시 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2006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1,689	8	344	651	941	991	672	1,049	1,000	1,140	2,033	804	1,078	975
국내곡	4,440	4	151	228	445	427	253	361	382	438	566	399	475	311
국외곡	7,246	4	193	423	496	564	419	688	618	702	1,467	405	603	664

자료 : 여성가족부(2018).

[그림 6-3-2]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청구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8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및 게임 이용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매체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규범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세계에서의 행동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가정과 학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된 바, 업계자율정화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시스템의 구축

업계의 자율정화활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청소년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인 청소년에게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모니터링, 감독 등 내부정화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정화시스템은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약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기준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미지를 개선하여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자율의지의 실현이다. 또한, 법위반 행위 예방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차단과 청소년 보호법 준수에 노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한층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나. 청소년보호책임자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터넷사업자 및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자율정화 의지를 제고하고자 2007년부터 인터넷·게임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를 통한 관련사업자 집합교육과 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사업장 방문을 통해 포털사이트, 게임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분야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교육은 각 사업체에서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개발자, 프로그래머 등 모든 분야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 보호법」 해설, 유해매체물의 심의 절차 기준, 고시제도 등의 강의를 청취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청소년보호 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다. 사업자의 자율정화 지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사이버 상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를 강화하고자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지원하고 불법 및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그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정화활동으로 추진된 고객센터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게임업계의 자율규약선언, 이동통신사의 성인서비스 중단, 인터넷신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청소년 보호정책과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활동을 유도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자율정화를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자율규제단체 등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자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약 제·개정 및 자율심의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016. 1.)하였다.

이러한 자율정화 활동은 앞으로도 법이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제 4 장 |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1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대응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학업성적·사회성 저하, 가정불화, 건강 악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체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정책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매체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의 주요한 분야로서, 이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잠재적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상담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2018년 현재, 전국 220여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심각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돕기 위해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167개 치료협력 병원 연계를 통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치료 기반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허브로 하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지역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자체, 교육청, 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지역협력망을 통하여 지역 내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기관 간 연계·협력은 물론, 지역 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조기 발굴 및 상담·치료 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상담실적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와 연계하여 지역별 과의존 해소 서비스지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림 6-4-1] 여성가족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사업 추진

여성가족부와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는 심각한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치료·재활기반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적 고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프로파일 연구와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장·단기적 서비스의 총괄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2005년부터 ‘심각한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기반 조성 및 임상적 치료-재활 모델개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1차년도인 2005년에는 서울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4대 권역에 각각 4개의 중심센터(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연세대병원, 중앙대병원) 및 협력병원 8개소를 치료·재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심각한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의 심층적 개인 심리치료, 입원치료 및 가족치료, 공존질환치료, 집단치료모델을 개발하였다.

이후, 치료모델을 수정 및 보완, 매뉴얼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협력병원의 전문의들에게 인터넷 과의존 치료 모델을 교육시키는 등 치료 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서울지역에 국한되었던 치료협력병원을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전국의 대상 청소년들에게 좀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역협력망 내에서 상담과 치료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전국 16개 시·도

96개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2007년)하여 청소년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원을 확대하고,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치료모델을 국제적으로 공유한 바 있다.

2014년에는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대상 전문적, 체계적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상담·치료 매뉴얼' 보급을 위해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전문의 대상 지역별 순회 교육(11회, 242명)을 실시하였다.

2018년 현재, 심각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돕기 위해 전국 220여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167개 치료협력 병원 연계를 통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치료 기반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다. 학령전환기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통한 예방·과의존 피해 해소 강화에 초점을 두고, 2009년부터 '학령전환기 청소년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진단조사는 2009년 초등 4학년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등 총 125만 명, 2011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등 총 186만 명, 2012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등 총 180만 명, 2013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등 총 17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3년 진단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동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학령기간 동안 최소 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점검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조기 진단하여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13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약 19만 7천여 명을 발굴하였으며, 상담·치료, 치유평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단계별 상담·치료 지원

1) 위험단계별 맞춤형 상담·치료 지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단계별(주의

사용자군과 위험사용자군)로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한 1차 선별결과를 근거로 지역 상담복지센터에서 위험군에 대한 공존질환 등 추가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위험사용자에게는 개인상담 및 병원치료 연계(저소득계층 50만원 이내 치료비 지원, 일반계층 30만원 이내) 등을 지원하며, 주의사용자에게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과의존 청소년 대상 단계별 맞춤 상담·치료지원 외에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1박 12일의 기숙형 치유캠프(인터넷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치유캠프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터넷·스마트폰과 단절된 환경에서 상담지원(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부모교육, 심리검사), 활동지원(체험, 대안활동, 자치활동, 봉사활동, 가족캠프), 생활지원(멘토링, 숙식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캠프 종료 후에도 청소년동반자, 멘토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사후모임을 실시하여 참여 청소년 치유 효과가 지속되도록 돕는다. 인터넷치유캠프 프로그램은 평균 70%를 넘는 치유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선현장 및 학부모들의 지지와 인지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7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실시된 인터넷치유캠프는 참가자 및 보호자들의 높은 호응과 지지를 받아 2009년에는 전국 4개 권역, 2011년에는 총 8회, 2012년에는 전국 16개 시·도 센터에서 총 24회로 확대 운영되었고, 2013년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캠프를 운영하였다. 2014년부터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설립·운영에 따라 연 17회(시·도당 1회)로 조정 운영하였고, 2015년부터는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치유캠프(3회)’를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며, 2016년 5회, 2017년 6회, 2018년 7회로 여자청소년 대상 치유캠프를 점차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6학년 초등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가족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치유캠프에서는 가족 간 소통·친밀감 향상과 올바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지도를 위한 상담지원(집단상담, 가족/부모교육, 심리검사), 활동지원(체험활동, 대안활동), 생활지원(멘토링, 숙식 제공), 사후관리지원(사후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1년에 시작한 가족치유캠프는 2014년에는 10회, 2015년에는 15회 운영하였으며, 2016년에는 32회 745가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총 35회를 실시하였다.

마.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설치유기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설립·운영

여성가족부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해 전문적, 효과적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설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이하 ‘드림마을’)을 2014년 8월 전라북도 무주군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총 47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173명의 청소년을 지원하였다. 드림마을은 과의존 정도에 따라 1주·2주·3주·4주 과정의 치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집단상담, 가족상담 및 대안활동, 관계증진활동 등을 통해 참가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용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3~6개월간 참가 청소년들에 대해 ‘청소년 동반자’와 ‘멘토’ 등을 통한 사후관리로 치유효과가 지속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22회 6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성 및 대응 강화

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인터넷게임 과의존 청소년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및 온라인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06년 상반기에 청소년상담사를 위한 인터넷 과의존 전문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06년 200여 명의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교육을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급증한 인터넷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동반자, 학교상담사 등 총 30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치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전문화를 기하였다.

2008년부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 상담·치료전문가 과정을 신규 및 심화과정으로 이원화했고, 2013년부터는 인터넷 과의존 상담·치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신규, 심화 및 보수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2008년 478명, 2009년 472명, 2010년 502명, 2011년 457명, 2012년 417명, 2013년 509명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포함한 상담인력 892명, 2015년에는 1,228명을 양성하였고, 2016년에는 1,481명,

2017년에는 교육과정을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개편하여 1,269명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1,501명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2)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상담 실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상담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 면접 상담(9~18시)을 원하는 경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매체인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상담에 대한 거리감을 허물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³⁾에 접속하면 사이버상담(24시간)을 통해 비밀상담, 채팅상담을 받을 수 있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수신번호에 ‘#1388’을 누르면 24시간 문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및 과의존 저연령화 대응 강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 치료 매뉴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2014년에 청소년 상담기관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9회, 650명) 하였고, 정신의학회 전문의 대상 지역별 순회 교육 개최(11회, 242명) 등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진단조사 결과 나타난 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치유캠프를 2015년 15회에서 2016년 32회, 2017년 33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총 35회 839가족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였다 2015년부터는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4,463명, 2016년 6,527명, 2017년 6,864명이 참여하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6

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www.kyci.or.kr

2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실시 및 효과

가. 제도 도입 배경

과도한 인터넷게임중독은 학습시간을 침해하고 수면부족을 야기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셋다운제')'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권장하는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수면권, 건강권)를 실현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 게임과몰입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교) 전체 응답자의 게임행동 유형 비율은 과몰입군 0.7%, 과몰입위험군 1.9%, 일반사용자군이 81.5%, 게임선용군이 16.0%로 나타났으며, 성별 게임행동 유형 비율은 과몰입군의 경우 남자 0.9%, 여자 0.4%로 나타났다. 과몰입위험군에서는 남자 2.8%, 여자 0.8%로 나타났다. 게임선용군은 남자 22.9%, 여자 7.2%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게임행동 유형 비율은 과몰입군의 경우 초등학교 0.9%, 중학교 0.7%, 고등학교 0.4%로 나타나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과몰입위험군의 경우 초등학교 2.3%, 중학교 2.2%, 고등학교 1.2%로 나타나 과몰입위험군 비율도 역시 초등학교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학급별 과몰입군 비율은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고등학교는 점차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과몰입위험군의 비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하루 평균 게임 이용시간(평일기준)이 길수록 과몰입군 비율 및 과몰입위험군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급별 하루 평균 게임 이용시간(주말, 휴일기준) 비율은 전체적으로 중학교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보다 2시간 이상 이용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별 게임행동 유형별 비율을 보면 오전 0~6시(1.5%), 오전 9~12시(1.0%), 오전 6~9시(0.8%)에 이용하는 경우 과몰입군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전 0~6시(4.7%), 오전 9~12시(2.8%), 오후 12~3시(2.4%)에 이용하는 경우 과몰입위험군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제도 추진 현황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의해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0~6시)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2011년 5월 19일 개정, 2011년 11월 20일 시행).

이 제도는 PC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청소년들에 대한 보급률이 낮은 기기를 통해 진행되는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을 2년간 유예하였다. 이후, 법 규정에 의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 여부를 매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3년, 2015년과 2017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제도 적용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를 고시하였다.

2012년 8월 「정보통신망법」 등 시행 및 2014년 8월 인터넷 상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에 따라 타인의 주민번호 도용이 어려워져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법제도 이행여부 점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취지에 따라 섯다운제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제도 효과 분석

매년 실시되는 ‘인터넷 게임 과몰입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과몰입 위험군 이상(과몰입군+과몰입 위험군)이 '11년 6.5%에서 제도 도입 이후인 '12년은 2.0%로 4.5%p(69.2%) 감소하였으며, '13년 1.9%, '14년 2.2%, '15년 2.5%, '16년 2.5%, '17년 2.6% 수준으로 2%대의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도입·실시 후 만 9~14세 청소년의 경우 게임이용시간대가 밤 10시에서 아침 6시인 경우가 2011년 10.2%에서 2012년 1.5%로 8.7%p(85.3%) 감소하는 등 청소년의 게임이용 주 시간대가 심야시간 이전으로 앞당겨져 수면권과 건강권 확보가 가능해지는 정책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13 게임이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섯다운제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들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0에 가까운 이용시간을 보여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2010~2013년 게임이용자실태조사를 분석한 ‘게임시장의 규제가 산업생태계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서는 섯다운제 시행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이용시간대를 앞당겨 청소년 수면권 확보의 관점에서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산업연구원, 2013).

또한, '2018년도 게임이용자 실태조사(10~65세 대상)'에 따르면 섯다운제의 명칭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게임이용자 중 68.1%(강화 29.5%+현행유지 38.6%)는 적용 시간대, 74.9%(강화 34.7%+현행유지 40.2%)는 적용 연령대가 강화·유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게임 과의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세계 동향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중독(게임장애)을 의학적 치료와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판단(2017. 12월)하여 2019년 5월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포함한 국제질병분류(ICD) 통과 예정이며, 게임산업육성책을 펼쳐오던 중국(세계시장의 27%)이 미성년자의 총 게임 이용시간 제한, 온라인게임 총량제 등 게임규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2018. 8. 30.)하였다.



제5장 |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1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선도보호(재유입방지교육)

가. 성매매 피해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검사가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게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40시간)을 개발하고 전국에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 및 상담·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 중이며, 법적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교육 강화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 지원에 두고 있다.

운영 대상은 검찰에서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과정 이수결정이 통보되거나 경찰에서 발견사실이 통보된 대상 청소년, 성매매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 청소년지원시설 대안학교 등 관련시설에서 추천한 성매매 피해청소년 및 사이버 또래상담을 통해 연계된 성매매 피해 노출 청소년이다. 운영 내용은 전문가가 4박 5일(40시간) 동안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며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 활동, 진로탐색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 의료·법률·학업·자립·자활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17년 현재 1개의 중앙센터 및 10개의 권역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표 6-5-1〉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	운영기관
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의 교육상담이수 결정 통보자 • 경찰의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자 • 성매매 피해상담소, 아웃리치 등을 통해 연계된 청소년 • 지적 장애를 가진 성매매 피해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대여성인권센터(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사)인권희망 강강술래(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춘천길잡이의집(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성공회 대전 나눔의집(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 부산광역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 광주YWCA(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 대구여성회(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 평화의 샘(평화위기청소년센터)
중앙지원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7).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서비스 목표는 청소년들이 ‘미래 가능성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청소년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발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진로계획을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탈성매매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미래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성과 주체성을 기르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40시간 교육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사전검사(OT)’, ‘심리검사(MMPI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동작치료, 미술치료)’, ‘성주체성 향상 프로그램(성교육, 건강검진, 섹슈얼리티)’,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개인브랜드 가치 높이기, 롤모델 만나기, MBTI)’, ‘사회통합 프로그램(자원봉사 활동, 진로 프로그램, 학교탐방, 직업체험, 미래설계 등)’, ‘성매매 바로알기(생존자 증언 등)’, ‘수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5-2〉 교육프로그램 구성

분야	프로그램
심리검사 프로그램	MMPI 등 심리검사 및 상담, MBTI, NEO 등 성격검사 및 해석상담, 자기이해, 문장완성 검사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	미술치료, 푸드아트테라피, 놀이치료, 연극치료,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의료지원 프로그램	건강검진, 치료 및 상담, 의료(보건)교육 등
법률지원 프로그램	법교육, 인권교육, 법률상담 등
진로지원 프로그램	진로 및 직업탐색, 미래설계, 직업체험, 검정고시, 자격증 및 취업준비, 대학 및 기업탐방, 자원봉사활동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	아이스브레이킹, 레크레이션, 문화예술, 스포츠, 친목활동 등

분야	프로그램
성주체성 프로그램	섹슈얼리티, 성교육, 성교육장 체험 등
탈성매매 프로그램	성매매 바로알기, 탈성매매 여성과의 만남, 100분 토론, 위기상황 대처활동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안내.

〈표 6-5-3〉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연도	중앙센터	일반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적장애	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2013	12	22	30	31	29	27	32	26	16	30	23	278
2014	-	39	42	43	36	40	18	41	17	42	37	355
2015	-	34	40	39	43	42	24	38	34	40	35	369
2016	-	35	40	39	49	34	36	39	30	39	36	377
2017	-	39	39	44	52	37	40	40	38	34	34	397
2018. 9	-	23	19	25	29	22	29	31	9	24	22	233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내부통계자료.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47

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가. 신상정보 공개제도 목적과 의의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의 성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줌과 동시에 지속적인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최초로 제정·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6월 30일에 개정·시행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2월 4일에 다시 법을 개정·시행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 열람에서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관리 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는 10년 이내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는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미국은 1994년 「제이콥웨터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을 만들어 성범죄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6년 「메간법(The Megan's Act)」을 만들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또한 2006년에 「아담월쉬 아동 보호 및 안전법(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제정하여 일반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 내 성폭력전과자들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각 주별로 운영되던 등록·열람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드루 소딘 국가 성범죄자 공개 웹사이트(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를 만들어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나. 신상정보 공개제도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공개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된다. 법원은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 명령”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기간은 징역·금고 3년 초과인 경우 10년, 징역·금고 3년 이하인 경우 5년이다.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된다. 공개 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전과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이다. 신상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⁴⁾’에서 공개되며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다. 공개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2016년도에는 성범죄 예방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식별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성범죄자의 사진(4장) 중 전신사진을 정면·좌측·우측 사진보다 크기를 확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성범죄자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하여 성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홍보·보급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성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국민들이 여름철 피서지, 놀이터나 공원 등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알림기능을 활용하여 이동 중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자신의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받고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2011년 1월 1일부터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한다. 고지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고지정보를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 명령”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4)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www.sexoffender.go.kr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고지기간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이며, 고지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를 포함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전과 및 횡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이다. 고지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실제 주소지 읍·면·동 행정구역에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읍·면·동 주민센터의 장 등을 대상으로 고지정보서 1부를 우편으로 송부하게 된다. 2018년 7월부터는 우편고지 된 고지정보에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경우 누구든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정청구의 처리절차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우편고지서 이면에 성범죄로 위급할 경우에 경찰의 긴급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민SOS 안심서비스’와 저녁 10시 이후 귀가 시 자택까지 스카우트가 동행해 안전한 귀가 지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성·학생 안전귀가 서비스’ 등을 함께 안내하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라.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현황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등록이 완료된 자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8,053명(법무부)이고, 공개명령이 선고되어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고 있는 사람은 4,892명이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6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6. 6. 30.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8년 2월 4일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2010년 1월 1일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0년 4월 15일에는 개인과외교습자, 2012년 8월 2일에는 의료기관(의료인만 해당),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2013년 6월 19일에는 경비업 법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 연습장업, 2016년 11월 30일에는 위탁 교육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 추가되었다. 2018년 7월 17일부터는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2018년 9월 14일부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기관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최초 도입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간이 5년이었으나 2008년 2월 4일부터 10년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 4월 15일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시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취업중인 자 포함)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첩부하여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해당 경찰서는 조회대상자의 성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조회를 요청한 기관장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는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⁵⁾’에서도 온라인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5)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운영하려는 자,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도 가능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연 1회 이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하도록 법제화되었다. 일부 위헌결정으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17일부터 법원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취업제한자로 규정된 자가 법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면 해당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폐쇄를 요구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기관으로는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대학이 해당된다.

아울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 13,436명, 2016년 15,550명, 2017년 19,021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2

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립목적 및 의의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 2007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시설인 청소년성문화센터는 'Education'과 'Entertainment' 개념을 혼합한 'Edutainment'라는 신개념의 성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Sexuality'를 재미와 감동이 함께 하는 놀이터로 이미지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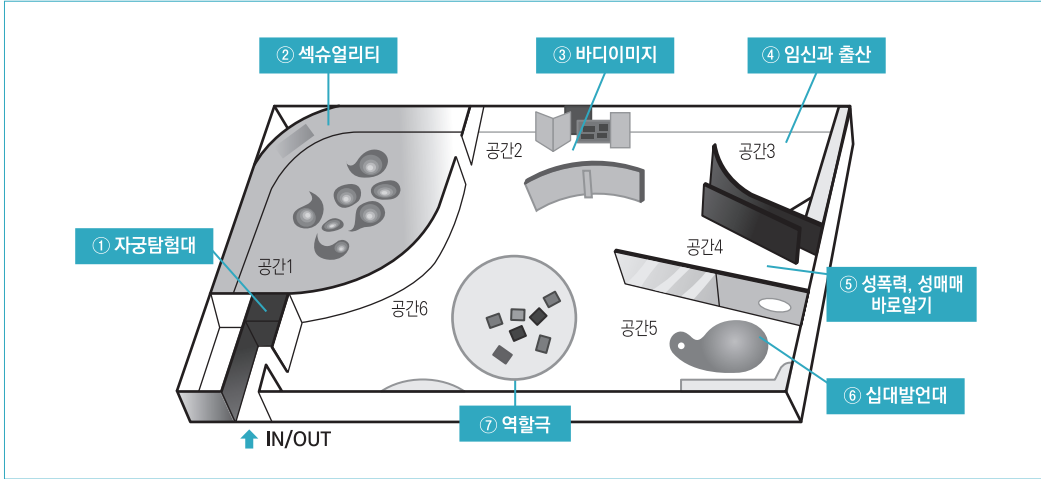
나. 추진배경 및 경과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성인물, 음란성 게임, 미디어 또는 포대를 통해 얻고 있는데 반해 기존 학교의 성교육은 이론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되어 그 효과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멀티미디어와 다양한 설치물을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이 실시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정된 지역에서만 교육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청소년정책자문위원회 성문화분과위원회가 전국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여성가족부에 건의(2006년 7월)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년 여성가족부 소관 정부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2007년 4월, 민간 성교육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추진단에 의해 표준 콘텐츠 및 운영매뉴얼이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콘텐츠를 갖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6-5-1]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 시설 배치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8).

2011년에는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주요 콘텐츠를 탑재하여 농·산·어촌 등에 찾아가는 성교육이 가능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2개소를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2014년에 7개소, 2015년에 9개소, 2016년에 10개소를 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탁틴내일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노후화로 인해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시설 운영 형태를 변경하여 현재 11개소의 이동형성문화센터를 운영 중이다.

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과 사업내용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목적은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 구축·운영 또는 이동형 버스를 통해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지원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센터는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로 특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발달단계별 성인직적 인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사업은 우선적·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통사업’과 각 센터별로 자체실정에 따라 수행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통사업에는 ①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이동·청소년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②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성교육 ③ 관내 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내 교육 및

홍보활동 ④ 학교관리자 및 성교육 담당교사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⑤ 농·산·어촌 지역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등이 있다. 지역특성화 사업은 ① 주말/방학 캠프 등 특별기획 프로그램 운영 ②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성교육·성문화 프로그램 운영 ③ 성폭력 가해·피해학생 상담 및 교육 ④ 청소년 성문화동아리 및 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을 위해 2007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표준 프로그램인 SAY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매뉴얼을 리뉴얼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별 특성 등을 반영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인 SAY2를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그간 교육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 6-5-4〉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실적

(단위: 명)

연도	계	유아	초등	중등	고등	기타 청소년	부모 등
2013	1,550,447	112,585	442,670	386,732	208,108	207,555	192,797
2014	1,989,951	139,941	547,854	457,098	277,684	260,960	306,414
2015	1,823,194	141,152	529,542	379,057	251,823	227,058	294,562
2016	2,154,367	172,746	646,346	477,354	282,339	229,936	345,646
2017	2,235,751	191,403	701,774	470,491	269,093	224,973	378,017
2018	1,527,530	145,141	575,229	262,391	152,080	153,779	238,910

주 : 2018년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실적은 2018년 9월을 기준 조사하였음.

자료 : 여성가족부(2018. 9.).

라.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현황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21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9월 현재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1개소 총 5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6-5-5〉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정형	47	7	3	2	2	2	2	1	6	3	2	2	4	4	3	2	2
이동형	11	1	2	-	-	-	-	-	3	1	1	1	-	-	1	1	-

자료 : 여성가족부(2018. 9.).

〈표 6-5-6〉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58개소		기관명
	고정형	이동형	
합계	47	11	
서울	7	1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광진구),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송파구), 탁틴내일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서대문구),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영등포구),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도봉구), 드림센터(강남구),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중랑구),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동작구)
부산	3	2	부산청소년성문화센터(사상구),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동래구),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금정구), 탄생의신비관이동형(I , II) 청소년성문화센터(금정구)
인천	2	-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부평구)
대전	2	-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중구),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서구)
대구	2	-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달서구),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광주	2	-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북구), 광주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광산구)
울산	1	-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경기	6	3	경기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 와~(안산시), 경기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소행성'(안산시),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말골달궁'(파주시), 경기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큰키나무'(파주시),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용인시),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화성시),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부천시), 안양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안양시),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수원시)
강원	3	1	강원청소년성문화센터(춘천시), 강원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춘천시), 시소!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강릉시),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원주시)
충북	2	1	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청주시),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청주시) 충주호암청소년성문화센터(충주시)
충남	2	1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전안시),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홍성군)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예산군)

구분	58개소		기관명
	고정형	이동형	
합계	47	11	
전북	4	-	전주청소년성문화센터(전주시), 군산청소년성문화센터(군산시), 정읍청소년성문화센터(정읍시), 익산청소년성문화센터(익산시)
전남	4	-	목포청소년성문화센터(목포시), 여수청소년성문화센터(여수시),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완도군), 순천청소년문화센터(순천시)
경북	3	1	경북청소년성문화센터(김천시), 새들청소년성문화센터(포항시), 경북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안동시), 경북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안동시)
경남	2	1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사천시), 창원청소년성문화센터(창원시)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창원시)
제주	2	-	서귀포청소년성문화센터(서귀포시),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제주시)

자료 : 여성가족부(2018. 9.).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3

5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시

가. 성 인권교육 실시 목적 및 의의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아동·청소년에게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예방교육을 제공토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이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통칭한다. 2011년 2개 시·도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점차 사업 실시 지역이 확대되어 왔다. 2012년부터는 ① 학교 성 인권교육, ②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학교 성 인권교육’의 경우에는 현재 8개 시·도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의 경우에는 시범실시를 거쳐 2015년에 전국 17개 시·도로 사업이 확대되었다⁶⁾. 또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사용 교수·학습안 및

6) 2012년 4개 시·도 → 2013년 12개 시·도 → 2014년 14개 시·도

학생용 핸드북을 2013년에 제작하였고,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매뉴얼 제작도 2012~2013년에 걸쳐 완료하였다. 특히 학교 성 인권교육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재 개발을 확대하여 2014~2015년에 걸쳐 유아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4종도 추가 개발하여 총 5종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성 인권교육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온 각각의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적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시범사업결과 성 인권교육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⁷⁾ 또한, 성 인권교육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⁸⁾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2015년에 전국으로 확대된 것처럼 현재 8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학교 성 인권교육’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여 학교에서의 폭력 예방교육을 통합적 관점에서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사업내용

성 인권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별로는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과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을 진행할 시·도별 지역 운영기관을 각각 8개소, 29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선정된 지역운영기관에서는 ‘성 인권교육의 실시’ 및 ‘교육만족도 조사’, ‘사업실적 제출’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중앙지원기관은 ‘성 인권교육 사업의 실적관리’, ‘컨설팅’ 등 지역운영기관을 지원하게 된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은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주로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 및 성평등, 관계와 소통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와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과제를 작성하고 발표도 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하며, 학교의 보건교사 또는 전문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어 표준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되지만 보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성화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이 경우 한

7) 2016년 사전·사후 만족도 : 학교 성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성 인권 의식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개 시·도 평균 6.5점 향상되었으며, 또한 교육을 받은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성 인권 의식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17개 시·도 평균 17.9점 향상되었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학급당 인원이 3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표준교안은 2013년 개발된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수·학습안’ 및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핸드북’을 활용한다. 해당 학교 보건교사 등이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연 15차시 내외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표 6-5-7〉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실인원	11,466	20,309	22,339	14,244	15,436	13,645
연인원	118,393	184,975	240,343	148,472	167,651	91,360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 인권교육으로 실시된다. 지정된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초등 4~6학년, 중고등학교 지적·시각·청각·중복 장애아동·청소년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세부추진방법은 장애유형별로 마련된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교육기자재를 이용하여 수업이 실시된다.

〈표 6-5-8〉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실인원	1,554	1,690	2,504	2,700	2,799	2,802
연인원	14,266	15,951	24,154	25,574	27,250	21,356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어린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아동 성 인권교육을 참여형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47

제7부 요약

제7부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18년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는 약 824만 명으로 1980년 약 1,44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이후부터 저출산 현상의 지속화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의 조기유학 현황은 초등학생이 4,103명(41.1%), 중학생 2,761명(27.7%), 고등학생 3,119명(31.2%)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조기유학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기 유학생은 2006년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다가 2017년에 접어들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2018년 현재, 대안교육 학교는 총 43개교이고, 학생 수는 4,424명, 교원 수는 749명으로 대안교육 학교 수 및 학생 수, 교원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학교급별 진학률은 2017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과정 진학률은 99.9%,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과정 진학률은 99.7%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한편, 2016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69.7%로 201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7학년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0.6%, 0.7%, 고등학교는 1.5%로 나타났으며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예산은 2018년을 기준으로 약 68조 5,490억 원으로 2018년 전체 정부 예산의 18.6%에 해당하는 예산액이다.

다음으로 2016학년도 기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은 77.7%,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3.6%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2학년은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82.7%,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은 4.5%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모두 전체 학생의 5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방과후학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등에 대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7부 청소년의 교육

제1장 학교교육 현황

제2장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제3장 교육복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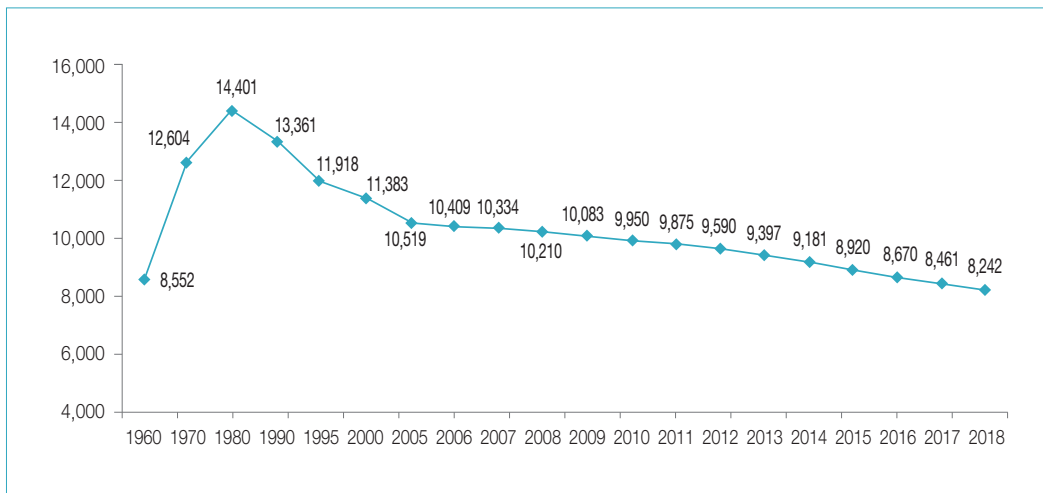
제 1 장 | 학교교육 현황

1 학령인구

2018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8,242천명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학령인구를 살펴보면, 6~11세(초등학교)가 2,763천명, 12~14세(중학교)가 1,342천명, 15~17세(고등학교)가 1,575천명, 18~21세(대학교)는 2,563천명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1980년 1만 4,401천 명을 정점으로 이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저출산 현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7-1-1] 연도별 학령인구

(단위 : 천명)



주 : 6~21세 기준.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표 7-1-1〉 연도별 학령인구

(단위 : 천명)

연도	계 (6~21세)	학교급별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1960	8,552	3,629	1,566	1,417	1,941
1970	12,604	5,711	2,574	2,101	2,218
1980	14,401	5,499	2,599	2,671	3,632
1990	13,361	4,786	2,317	2,595	3,663
1995	11,918	3,901	2,443	2,349	3,225
2000	11,383	4,073	1,869	2,166	3,275
2005	10,519	4,018	2,064	1,841	2,596
2006	10,409	3,919	2,104	1,888	2,497
2007	10,334	3,808	2,095	1,966	2,465
2008	10,210	3,631	2,070	2,039	2,471
2009	10,083	3,446	2,034	2,089	2,514
2010	9,950	3,280	1,985	2,084	2,601
2011	9,785	3,109	1,914	2,062	2,700
2012	9,590	2,926	1,867	2,028	2,769
2013	9,397	2,783	1,818	1,985	2,811
2014	9,181	2,751	1,719	1,912	2,799
2015	8,920	2,720	1,578	1,868	2,755
2016	8,670	2,688	1,457	1,816	2,709
2017	8,461	2,726	1,386	1,716	2,633
2018	8,242	2,763	1,342	1,575	2,56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2 학생 인구 및 학교 수

2018년 현재, 학교급별 재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2,711,385명, 중학생은 1,334,288명, 고등학생은 1,538,576명이다. 고등학교 학생 수의 경우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학생 수는 1,096,331명, 특성화고 학생 수는 252,260명이며, 특수목적고 학생 수는 66,693명, 자율고 학생 수는 123,292명이다.

초등학교 재학생 수는 1980년 565만여 명에서 1990년 486만여 명, 2000년 401만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에는 약 267만명, 2018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중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1980년 247만여 명에서 2000년 186만여 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 접어들면서 약 197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1980년 169만여 명에서 1990년 228만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0년에는 약 207만명, 2010년에는 196만여 명으로 2000년 대비 2010년에는 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재학생 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각각 142만여 명, 34만여 명에서 2018년 일반고 재학생 수는 109만여 명, 특성화고 재학생 수는 25만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의 경우에는 2011년 6만 3천여 명에서 2018년 6만 6천여 명으로 소폭 증감을 반복하였다. 자율고의 경우에도 2011년 11만 3천여 명에서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8년에는 12만 3천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4년제 일반대학 학생 수는 2,030,033명이고, 전문대 학생 수는 659,232명, 대학원생은 322,232명이다.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재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대학생 수(2,130,046명)는 1990년(1,040,166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며, 1980년(402,979명)에 비해 약 5.3배 증가하였는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2,030,0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문대학 재학생 수는 1980년(165,051명)에 비해 약 3.9배 증가하였고, 대학원생 수는 1980년(33,939명)과 비교해 약 9.5배(322,232명)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7-1-2〉 학교급별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성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대학	전문대학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1980	계	5,658,002	2,471,997	1,696,792	932,605	764,187	-	-	-	-	402,979	33,939	9,425	165,051
	여	2,745,382	1,161,351	722,394	400,316	322,078	-	-	-	-	90,534	5,786	7,723	39,883
1990	계	4,868,520	2,275,751	2,283,806	1,473,155	810,651	-	-	-	-	1,040,166	86,911	15,960	323,825
	여	2,362,050	1,103,222	1,073,179	645,092	428,087	-	-	-	-	296,129	19,560	10,290	119,345
2000	계	4,019,991	1,860,539	2,071,468	1,324,482	746,986	-	-	-	-	1,665,398	229,437	20,907	913,273
	여	1,890,575	888,709	993,328	627,279	366,049	-	-	-	-	596,389	80,072	15,032	339,233
2010	계	3,299,094	1,974,798	1,962,356	1,496,227	466,129	-	-	-	-	2,028,841	316,633	21,618	767,087
	여	1,575,200	937,760	918,719	707,996	210,723	-	-	-	-	778,186	152,367	14,712	304,846
2011	계	3,132,477	1,910,572	1,943,798	-	-	1,425,882	340,227	63,727	113,962	2,065,451	329,933	20,241	776,738
	여	1,497,652	910,783	910,258	-	-	690,453	147,455	33,679	38,671	802,075	158,523	13,765	310,247
2012	계	2,951,995	1,849,094	1,920,087	-	-	1,381,130	330,797	64,468	143,692	2,103,958	329,544	18,789	769,888
	여	1,413,356	883,808	904,153	-	-	673,361	144,386	34,417	51,989	821,875	159,032	12,751	307,350
2013	계	2,784,000	1,804,189	1,893,303	-	-	1,356,070	320,374	67,099	149,760	2,120,296	329,822	17,500	757,721
	여	1,335,941	859,506	900,713	-	-	668,341	143,309	34,977	54,086	835,703	158,952	11,828	303,169
2014	계	2,728,509	1,717,911	1,839,372	-	-	1,314,073	313,449	66,928	144,922	2,130,046	330,872	16,566	740,801
	여	1,312,526	819,331	878,843	-	-	651,989	139,212	35,185	52,457	846,971	159,894	11,201	296,987
2015	계	2,714,610	1,585,951	1,788,266	-	-	1,278,008	302,021	67,529	140,708	2,113,293	333,478	15,967	720,466
	여	1,310,066	756,033	856,046	-	-	636,169	133,335	34,953	51,589	848,423	162,374	10,892	290,941
2016	계	2,672,843	1,457,490	1,752,457	-	-	1,256,108	290,632	67,607	138,110	2,084,807	332,768	15,903	697,214
	여	1,292,430	696,393	836,508	-	-	625,300	125,966	34,823	50,419	846,344	163,179	10,970	284,738
2017	계	2,674,227	1,381,334	1,669,699	-	-	1,193,562	274,281	67,960	133,896	2,050,619	326,315	15,839	677,721
	여	1,294,670	661,045	797,705	-	-	595,811	118,237	34,932	48,725	839,929	162,008	10,988	278,246

구분	성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대학	전문대학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2018	계	2,711,385	1,334,288	1,538,576	-	-	1,096,331	252,260	66,693	123,292	2,030,033	322,232	15,788	659,232
	여	1,315,080	640,686	733,769	-	-	546,101	108,561	33,939	45,168	841,808	161,393	10,948	273,328

주 : 1)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2)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임.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018년 현재, 학교급별 학교 수는 초등학교 6,064개교, 중학교 3,214개교, 고등학교 2,358개교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1,556개교, 특성화고 490개교, 특목고 157개교, 자율고 155개교이다. 2018년 초등학교 수는 1980년 6,487개교보다 423개교 줄어들었지만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학교는 1980년 2,100개교보다 1,114개교가 늘어났고, 고등학교의 수 역시 1980년 1,353개교보다 1,005개교 늘어났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일반고는 2014년까지 줄어들다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목고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99개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다가 2017년에는 491개교, 2018년에는 490개교로 감소하였다. 자율고의 경우에는 2011년 109개교에서 2016년 159개교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에는 4개교 줄어든 155개교로 나타났다.

대학은 1980년에 96개교에서 2018년 191개교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문대학은 2018년 137개교로, 200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접어들면서 138개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3〉 학교급별 학교 수

(단위 : 개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대학	전문대학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1980	6,487	2,100	1,353	748	605	-	-	-	-	96	121	11	128
1990	6,335	2,474	1,683	1,096	587	-	-	-	-	118	298	11	117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대학	전문대학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1995	5,772	2,683	1,830	1,068	762	-	-	-	-	142	421	11	145
2000	5,267	2,731	1,957	1,193	764	-	-	-	-	172	829	11	158
2005	5,646	2,935	2,095	1,382	713	-	-	-	-	184	1,051	11	158
2006	5,733	2,999	2,144	1,437	707	-	-	-	-	186	1,051	11	152
2007	5,756	3,032	2,159	1,457	702	-	-	-	-	186	1,042	11	148
2008	5,813	3,077	2,190	1,493	697	-	-	-	-	185	1,055	10	147
2009	5,829	3,106	2,225	1,534	691	-	-	-	-	188	1,115	10	146
2010	5,854	3,130	2,253	1,561	692	-	-	-	-	179	1,138	10	145
2011	5,882	3,153	2,282	-	-	1,554	499	120	109	183	1,167	10	147
2012	5,895	3,162	2,303	-	-	1,529	499	128	147	189	1,177	10	142
2013	5,913	3,173	2,322	-	-	1,525	494	138	165	188	1,200	10	140
2014	5,934	3,186	2,326	-	-	1,520	499	143	164	189	1,209	10	139
2015	5,978	3,204	2,344	-	-	1,537	498	148	161	189	1,197	10	138
2016	6,001	3,209	2,353	-	-	1,545	497	152	159	189	1,195	10	138
2017	6,040	3,213	2,360	-	-	1,556	491	155	158	189	1,153	10	138
2018	6,064	3,214	2,358	-	-	1,556	490	157	155	191	1,198	10	137

주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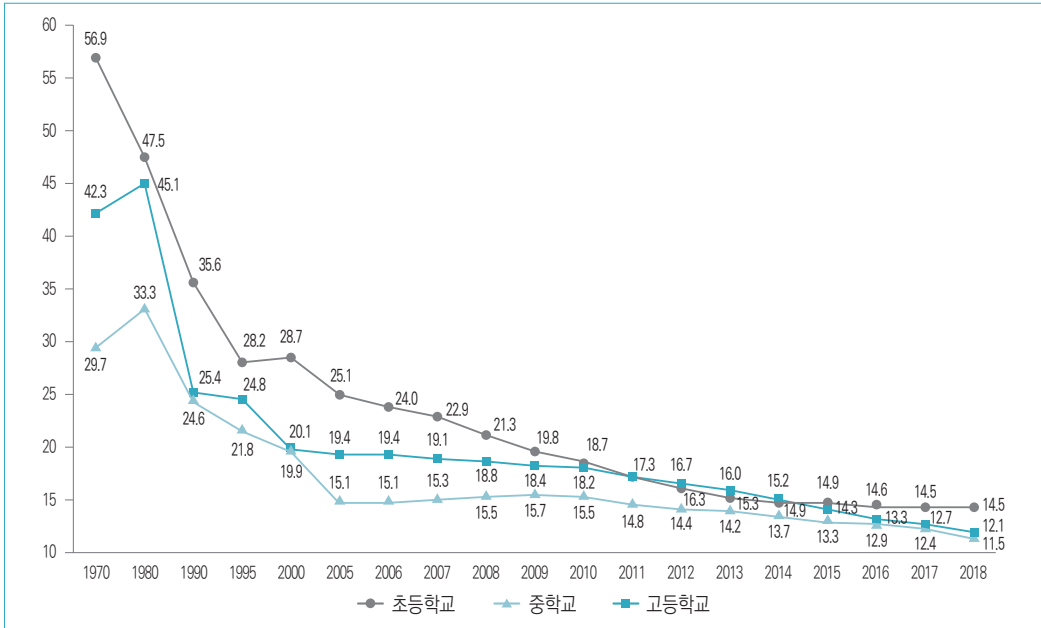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학교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재적학생 수를 교원 수로 나누어 산출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8년 현재 초등학교는 14.5명, 중학교 12.1명, 고등학교 11.5명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70년 이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급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18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0년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비교하면 초등학교 14.2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8.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자율고 12.4명, 일반고 12.1명, 특성화고 9.8명, 특목고 8.6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자료 : 교육부(2018. 8.). 2018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표 7-1-4>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학교	특목고	자율고
1970	56.9	42.3	29.7	32.0	27.5	-	-	-	-
1980	47.5	45.1	33.3	33.9	32.6	-	-	-	-
1990	35.6	25.4	24.6	25.4	23.4	-	-	-	-
1995	28.2	24.8	21.8	22.1	21.4	-	-	-	-
2000	28.7	20.1	19.9	20.9	18.2	-	-	-	-
2005	25.1	19.4	15.1	15.9	13.5	-	-	-	-
2006	24.0	19.4	15.1	15.8	13.5	-	-	-	-
2007	22.9	19.1	15.3	16.1	13.5	-	-	-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학교	특목고	자율고
2008	21.3	18.8	15.5	16.4	13.4	-	-	-	-
2009	19.8	18.4	15.7	16.7	13.3	-	-	-	-
2010	18.7	18.2	15.5	16.5	13.1	-	-	-	-
2011	17.3	17.3	14.8	-	-	15.8	11.0	12.5	15.2
2012	16.3	16.7	14.4	-	-	15.4	10.3	12.1	14.6
2013	15.3	16.0	14.2	-	-	15.2	10.0	12.0	14.3
2014	14.9	15.2	13.7	-	-	14.6	11.6	9.7	13.7
2015	14.9	14.3	13.2	-	-	14.1	11.4	9.3	13.7
2016	14.6	13.3	12.9	-	-	13.7	11.0	9.1	13.5
2017	14.5	12.7	12.4	-	-	13.1	10.6	8.9	13.2
2018	14.5	12.1	11.5	-	-	12.1	9.8	8.6	12.4

주 : 1)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생 수/교원 수.

2) 교원은 정규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사서·실기·보건·영양교사) 및 기간제교원 포함(휴직교원 포함/강사 및 퇴직교원 제외).

3)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학교,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3 조기유학 현황

2017학년도(2017. 3. 1.~2018. 2. 28.) 조기유학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등 학생 수는 총 9,983명으로 2016학년도 8,742명보다 1,241명 증가한 수치이다.

조기 유학생 현황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4,103명(41.1%), 중학생 2,761명(27.7%), 고등학생 3,119명(31.2%)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조기유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기 유학생은 2006학년도 이후부터 2016학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학년도에 접어들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5〉 연도별·학교급별 출국 현황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2005	8,148	6,670	5,582	20,400
2006	13,814	9,246	6,451	29,511
2007	12,341	9,201	6,126	27,668
2008	12,531	8,888	5,930	27,349
2009	8,369	5,723	4,026	18,118
2010	8,794	5,870	4,077	18,741
2011	7,477	5,468	3,570	16,515
2012	6,061	4,977	3,302	14,340
2013	5,154	4,377	2,843	12,374
2014	4,455	3,729	2,723	10,907
2015	4,271	3,226	2,428	9,925
2016	3,796	2,700	2,246	8,742
2017	4,103	2,761	3,119	9,983

주 : 1) 연도는 학년도를 의미하며 2017학년도(2018년)의 경우 2018년도에 조사된 자료임.

2017학년도(2018년도) 자료기준일은 2017. 3. 1.~2018. 2. 28일.

2)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학교, 자율고가 포함됨.

3) 해외이주 및 부모의 해외파견으로 인한 동행은 제외하였음.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4 대안교육 학교

2018년 현재, 대안교육 고등학교는 26개교, 중학교는 17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2018년 대안교육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4,424명으로 이는 2017년 4,244명에 비해 180명 증가한 것이다. 교원 수는 2018년에는 749명으로 2017년 660명에 비해 89명 증가하였다.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수, 학생 수, 그리고 교원 수 모두

증가하였으나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7년에 학생 수가 2,835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2,830명으로 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단위 : 개교, 명)

연도	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2007	29	2,823	392	8	669	86	21	2,154	306
2008	29	2,984	419	8	766	95	21	2,218	324
2009	29	3,410	416	8	974	94	21	2,436	322
2010	32	3,565	465	9	1,007	109	23	2,558	356
2011	33	3,829	519	10	1,101	131	23	2,728	388
2012	34	4,034	564	10	1,145	141	24	2,889	423
2013	34	4,060	573	10	1,131	142	24	2,929	431
2014	36	4,115	623	12	1,265	183	24	2,850	440
2015	38	4,179	660	13	1,381	210	25	2,798	450
2016	38	4,241	649	13	1,381	197	25	2,860	452
2017	39	4,244	660	14	1,409	212	25	2,835	448
2018	43	4,424	749	17	1,594	258	26	2,830	491

주 : 1) 조사기준일: 해당 연도별 4월 1일.

2) 학교수는 폐교 제외, 휴교 포함됨.

3) 교원수는 기간제 교원 및 휴직자 포함, 시간강사 및 퇴직자 제외.

자료 : 1) 교육부(2018), 2018. 4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2) 학교알리미 홈페이지(2018). <https://www.schoolinfo.go.kr>에서 2018년 12월 16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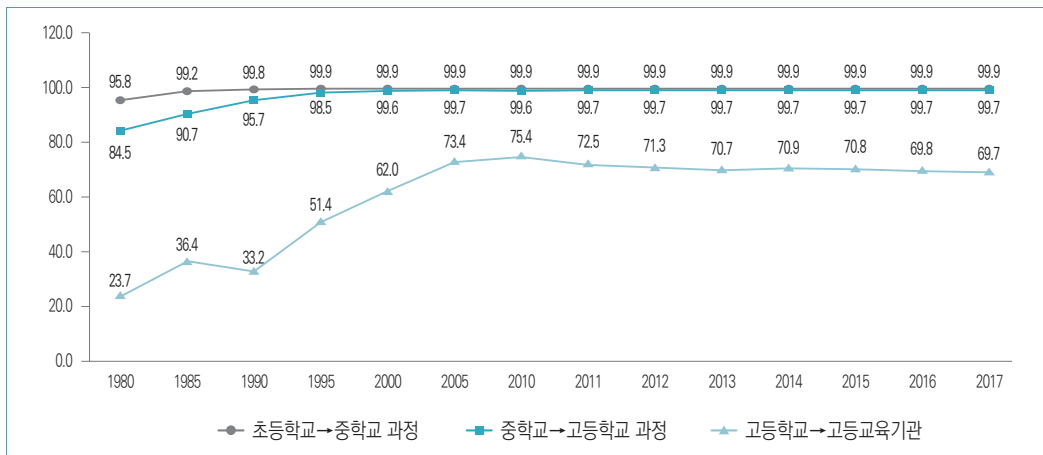
5 진학률

2017년 기준,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과정 진학률은 99.9%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과정 진학률은 99.7%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69.7%로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가 2014년에 소폭 상승한 후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지만, 1990년의 33.2%와 비교했을 때 2017년 현재 진학률은 36.5%p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과거에 비해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일반계고는 2005년(88.3%) 이후 2010년(81.5%)까지 감소하는 경향인 반면, 전문계고는 2005년(67.6%)부터 2010년(71.1%)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반고와 자율고의 진학률은 2015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와 특목고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2016년까지 공통적으로 감소하였다. 2017년의 경우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2016년 35.0% 대비 0.9%p 증가하였고, 특성화고의 진학률은 2016년 55.9% 대비 1.7%p 증가한 57.6%로 나타났다.

[그림 7-1-3] 학교급별 진학률

(단위 :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7-1-7〉 학교급별 진학률

(단위 : %)

연도	초등학교 → 중학교 과정	중학교 →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계	계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학교	특목고	자율고
1980	95.8	84.5	23.7	39.2	5.0	-	-	-	-
1985	99.2	90.7	36.4	53.8	9.9	-	-	-	-
1990	99.8	95.7	33.2	47.2	6.3	-	-	-	-
1995	99.9	98.5	51.4	72.8	17.2	-	-	-	-
2000	99.9	99.6	62.0	83.9	42.0	-	-	-	-
2005	99.9	99.7	73.4	88.3	67.6	-	-	-	-
2010	99.9	99.6	75.4	81.5	71.1	-	-	-	-
2011	99.9	99.7	72.5	-	-	75.8	61.0	67.4	69.3
2012	99.9	99.7	71.3	-	-	76.6	50.0	64.2	72.6
2013	99.9	99.7	70.7	-	-	77.7	41.7	60.0	74.7
2014	99.9	99.7	70.9	-	-	78.7	37.9	59.6	75.7
2015	99.9	99.7	70.8	-	-	78.9	36.1	58.4	75.8
2016	99.9	99.7	69.8	-	-	78.0	35.0	55.9	74.9
2017	99.9	99.7	69.7	-	-	77.6	35.9	57.6	72.6

주 : 1) 진학률(%) = (해당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해당연도 졸업자) × 100.

2) 2011년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학교, 특목고, 자율고로 개정되어 기존 유형 졸업자는 2013년까지 발생함. 2014년 이후 개정된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임.

3) 고등교육기관 진학자는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진학자 포함(2005년부터 국외진학자 포함).

4) 중학교 과정 :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

5) 고등학교 과정 :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

6) 대학 진학자 기준 : 2010년까지 대학 합격자 기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등록자 기준으로 변경됨.

7)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이 넘으므로 절사하였음.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6 학업중단율

2017학년도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1.5%,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각각 0.7%, 0.6% 수준으로 나타난다. 학업중단자의 개념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정의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퇴와 퇴학한 자를 학업중단자로 보고 있다.

학업중단율은 2000학년도 이후 초등학교는 소폭 상승하여 최근 0.5~0.6%를 유지하고 있고, 중학교는 0.8~1.0% 내외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학년도에는 0.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는 0.7%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는 증감을 반복하다 2007학년도 이후 1.8%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학년도에는 2.0%까지 높아졌다. 이후부터 2017학년도까지는 소폭 증감을 반복하여 1.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학업중단율의 감소에는 학업중단숙려제 등과 같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7-1-8〉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단위: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80	0.1	1.2	2.5
1985	0.0	1.1	3.0
1990	0.0	1.0	1.9
1995	0.0	1.0	2.5
2000	0.4	1.0	2.5
2005	0.5	0.8	1.3
2006	0.6	0.9	1.6
2007	0.5	1.0	1.8
2008	0.5	1.0	1.8
2009	0.3	0.8	1.8
2010	0.6	1.0	2.0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1	0.6	0.9	1.9
2012	0.6	0.9	1.8
2013	0.6	0.8	1.6
2014	0.6	0.7	1.4
2015	0.5	0.6	1.3
2016	0.6	0.6	1.4
2017	0.6	0.7	1.5

주 : 1) 연도는 학년도임.

2)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전년도 재적학생수 × 100.

3) 학업중단자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자퇴, 퇴학한 자들을 말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유예 및 면제자로 정의함.

4)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7 교육재정

가.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2018년도 교육부 예산은 약 68조 5,490억 원으로 1980년의 약 1조 992억 원, 1990년의 약 5조 624억 원에 이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2018년 전체 정부 예산 중 교육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로 2005년 이후 2016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부터 소폭 증가하였다.

〈표 7-1-9〉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단위 : 천원, %)

연도	정부 예산(A)	교육부 예산(B)	비율(B/A)
1970	446,273,301	78,478,212	17.6
1980	5,804,061,441	1,099,159,170	18.9
1990	22,689,432,968	5,062,431,258	22.3
2000	93,937,057,000	19,172,027,920	20.4
2001	102,528,518,000	20,034,364,710	19.5
2002	113,898,884,000	22,278,357,817	19.6
2003	120,477,623,000	24,404,401,310	20.3
2004	126,991,802,000	26,399,680,082	20.8
2005	134,370,378,000	27,982,002,000	20.8
2006	144,807,610,439	29,127,258,513	20.1
2007	156,517,719,000	31,044,747,984	19.8
2008	183,515,764,000	35,897,425,012	19.6
2009	214,563,409,000	38,696,405,000	18.0
2010	211,992,599,000	41,627,519,000	19.6
2011	264,092,862,000	45,116,643,669	17.1
2012	282,687,337,000	49,644,828,392	17.6
2013	303,847,514,000	50,424,128,000	16.6
2014	309,692,464,000	50,835,377,000	16.4
2015	322,787,071,000	51,224,093,676	15.9
2016	329,909,201,404	52,082,779,330	15.8
2017	339,661,568,102	61,832,103,743	18.2
2018	368,646,277,167	68,549,213,485	18.6

주 : 1) 정부 예산(-2004) = 일반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2) 정부 예산(2005-)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교육부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본예산기준).

4) 2009~2012년 (구)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나. GDP 대비 교육재정

2017년도 교육부 예산¹⁾ 중 교육 분야 예산은 약 57조 1,575억 원이며 이 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47조 1,494억 원(82.5%)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예산은 9조 2,807억으로 교육예산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 3.0%, 2011년 3.1%, 2012년 3.3%, 2013년 3.5%, 2014년 3.4%, 2015년과 2016년은 3.1%, 2017년은 3.3% 수준으로 나타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GDP 대비 교육예산 비율의 증가추세가 소폭 상승하였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7-1-10〉 GDP 대비 교육재정

(단위: 조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	유아 및 초·중등	32.5	35.5	38.6	41.2	41.1	39.6	41.4	47.1
	고등교육	4.8	4.7	6.0	7.6	8.7	9.0	9.3	9.3
	평생·직업교육	0.5	0.6	0.6	0.7	0.5	0.6	0.6	0.7
	교육일반	0.1	0.1	0.1	0.1	0.1	0.1	0.1	0.1
	소계	38.0	40.9	45.2	49.6	50.4	49.2	51.4	57.2
GDP 규모		1,265.3	1,332.7	1,377.5	1,429.4	1,486.1	1,564.1	1,641.8	1,730.4
GDP 대비 비율		3.0%	3.1%	3.3%	3.5%	3.4%	3.1%	3.1%	3.3%

주: 위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소계와 각 값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1) 교육부(2016). 201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통계청(2018).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다.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7(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4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1) 교육부 예산은 분야(부문)별로 교육분야(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와 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공적연금)로 구분함.

5.2% 보다 1.1%p 높은 6.3% 수준이다.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구성 비율은 4.6%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4.4% 보다 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민간재원 비율은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0.8% 보다 0.9%p 높은 1.7%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1-11〉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4)

(단위 : %)

구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GDP 대비 공교육비	5.2	6.3	6.2	5.3	4.3	6.6	4.4
정부재원	4.4	4.6	4.2	4.8	3.7	4.8	3.2
민간재원	0.8	1.7	2.1	0.5	0.6	1.9	1.2

- 주 : 1) 위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소계와 각 값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정부부담=(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정부가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납입금+기타민간이전금)/GDP×100
 3) 민간부담=(민간부담금(등록금 등)+기타 민간 교육부담금(학교법인 등)-정부가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납입금 및 기타민간이전금)/GDP×100
 4) GDP대비 공교육비 산출식=(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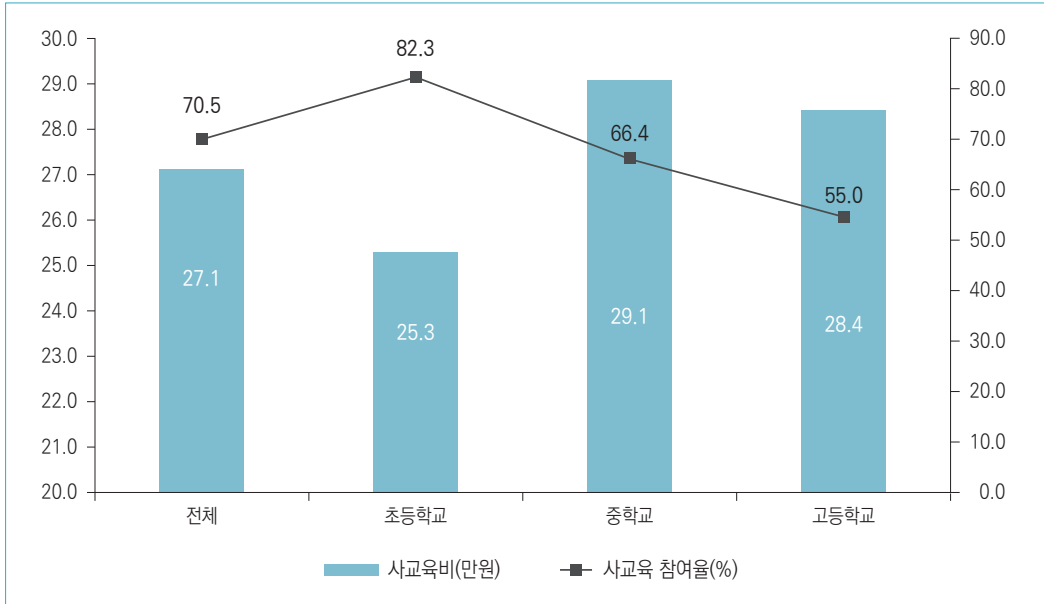
자료 : OECD(2017). 2017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라.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

2017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만원으로 2016년 대비 1.5만원(5.9%)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보다 1.2만원(5.0%) 증가하였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1.6만원(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4만원으로 전년대비 2.2만원(8.4%)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유형 가운데 일반고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3.0만원으로 전년대비 2.6만원(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평균 70.5%로 나타났는데, 전년대비 4.0% 증가한 수치이고,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2.3%로 초중고 학교급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66.4%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55.0%로 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 일반고는 61.2%로 2016년 58.8%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4]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2017)



자료 : 통계청(2018).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표 7-1-12>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구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					사교육 참여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4.2	24.4	25.6	27.1	5.9	68.6	68.8	67.8	70.5	4.0
초등학교	23.2	23.1	24.1	25.3	5.0	81.1	80.7	80.0	82.3	2.9
중학교	27.0	27.5	27.5	29.1	5.8	69.1	69.4	63.8	66.4	4.1
고등학교	23.0	23.6	26.2	28.4	8.4	49.5	50.2	52.4	55.0	5.0
일반고	26.9	27.6	30.4	33.0	8.6	56.2	56.8	58.8	61.2	4.1

자료 : 통계청(2018).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제2장 |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1 청소년의 학업성취도²⁾

우리나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의 추이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학업성취도와 교육맥락변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탐색하고 학생, 교사, 학교의 구성 요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보정 교육으로 연계하기 위함이다. 넷째, 질 높은 평가 도구의 개발을 통하여 단위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평가 방법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인용 외, 201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실시되었는데 2012년부터 직업능력평가가 도입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3년부터는 초등학생들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일반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의 평가 교과 중 국어, 수학, 영어는 전수평가를 실시하였고,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사회와 과학 교과는 표집 평가로 시행되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준거참조평가(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로 학생의 성취는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과 이에 도달하지 못한 ‘기초학력 미달’의 성취수준으로 구분된다(박인용 외, 2017).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2015년 대비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국어, 영어교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국어와 영어교과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의 경우 수학과 영어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5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교급별(중학교, 고등학교)로 작성된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보고서(박인용 외, 2017)를 정리·요약한 것임.

2015년 대비 수학, 영어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2016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약 78%로 2013년 75.9% 이후 2014년 76.4%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73.1%로 감소한 후 다시 4.6%p 증가한 수치이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013년 86.2%, 2014년 87.3%, 2015년 82.6%로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에는 90.1%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비율의 경우에는 2013년 12.6%, 2015년 14.8%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에는 7.9%로 2015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경우에는 2013년 1.2%에서 2015년 2.6%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는 2.0%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수학교과의 경우에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약 66%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소폭 증가한 68.3% 수준으로 나타났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3년 28.5% 대비 소폭 감소한 26.8%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약 5%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부터는 약 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영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은 2013년과 2014년에는 약 75%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70.4%로 감소하였는데, 2016에는 소폭 증가하여 74.7%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3년 21.7%, 2016년 21.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의 경우에는 2013년 3.3%에서 소폭 증가하여 2016년에는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학력 및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교과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7-2-1〉 중학교 3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3			2014			2015			2016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국어	보통학력 이상	86.2	81.5	91.4	87.3	82.2	92.7	82.6	76.2	89.5	90.1	86.2	94.2
	기초학력	12.6	16.6	8.1	10.7	14.6	6.5	14.8	19.7	9.5	7.9	10.8	4.8
	기초학력 미달	1.2	1.9	0.5	2.0	3.2	0.8	2.6	4.1	1.1	2.0	3.0	0.9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3			2014			2015			2016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수학	보통학력 이상	66.4	65.6	67.2	66.8	65.5	68.1	66.2	64.7	67.8	68.3	67.5	69.2
	기초학력	28.5	28.1	29.0	27.5	27.3	27.7	29.2	29.5	28.9	26.8	26.6	27.0
	기초학력 미달	5.1	6.3	3.8	5.7	7.2	4.2	4.6	5.7	3.3	4.9	5.9	3.8
영어	보통학력 이상	75.0	69.8	80.7	75.2	69.6	81.3	70.4	65.3	76.0	74.7	69.7	80.2
	기초학력	21.7	25.4	17.7	21.5	25.5	17.1	26.2	29.8	22.3	21.3	24.5	17.8
	기초학력 미달	3.3	4.8	1.7	3.3	4.9	1.6	3.4	4.9	1.7	4.0	5.8	2.0
평균	보통학력 이상	75.9	72.3	79.8	76.4	72.5	80.7	73.1	68.8	77.8	77.7	74.5	81.2
	기초학력	20.9	23.4	18.3	19.9	22.5	17.1	23.4	26.4	20.2	18.7	20.6	16.5
	기초학력 미달	3.2	4.3	2.0	3.7	5.1	2.2	3.5	4.9	2.0	3.6	4.9	2.2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 '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박인용 외(2017).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학업성취도 결과.

고등학교의 경우, 2016년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 평균은 82.7%로 2015년 81.8%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은 84.0%로 전년 81.2%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기초학력 비율은 12.8%로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2%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수학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은 78.2%로 2015년 대비 감소하였고, 기초학력 비율은 2015년 14.2%에서 2016년 16.5%로 증가하였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경우에는 2015년과 2016년 모두 약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13년 85.2%에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여 2016년에는 86.0%로 나타났고,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2013년 12.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8.9%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3년 2.7%에서 약 2배가량 증가하여 2016년에는 5.1%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국어, 수학, 영어 전 교과에서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2-2〉 고등학교 2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3			2014			2015			2016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국어	보통학력 이상	83.8	78.2	89.8	86.5	81.3	92.1	81.2	74.2	88.6	84.0	78.6	89.7
	기초학력	13.5	17.7	8.9	12.2	16.7	7.4	16.2	21.8	10.3	12.8	16.6	8.7
	기초학력 미달	2.8	4.1	1.3	1.3	2.1	0.5	2.6	4.0	1.1	3.2	4.8	1.5
수학	보통학력 이상	85.3	85.1	85.5	84.5	83.6	85.5	80.3	79.3	81.3	78.2	77.4	79.1
	기초학력	10.2	10.0	10.4	10.2	10.7	9.6	14.2	14.1	14.4	16.5	16.8	16.3
	기초학력 미달	4.5	4.9	4.1	5.4	5.7	5.0	5.5	6.7	4.3	5.3	5.9	4.6
영어	보통학력 이상	85.2	82.0	88.7	84.7	79.9	89.8	83.9	79.3	88.8	86.0	82.0	90.1
	기초학력	12.1	14.4	9.6	9.4	11.6	7.0	11.7	14.3	8.8	8.9	10.6	7.1
	기초학력 미달	2.7	3.6	1.7	5.9	8.5	3.2	4.4	6.4	2.4	5.1	7.3	2.9
평균	보통학력 이상	84.8	81.8	88.0	85.2	81.6	89.1	81.8	77.6	86.2	82.7	79.3	86.3
	기초학력	11.9	14.0	9.7	10.6	13.0	8.0	14.0	16.7	11.2	12.7	14.7	10.7
	기초학력 미달	3.3	4.2	2.4	4.2	5.4	2.9	4.2	5.7	2.6	4.5	6.0	3.0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 '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박인용 외(2017).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결과.

지역규모에 따른 성취수준별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평균 기초미달 학생 비율은 2013년을 제외하고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대도시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평균 80.6%였으며, 중소도시는 77.2%, 읍면지역은 71.0%였다.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보통학력 비율 격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약 7.0%p 내외를 유지하였다가 2015년에는 10.2%p로 소폭 상승하였고, 2016년에는 9.6%p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목별로는 국어과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90.9%, 중소도시 90.0%, 읍면지역 87.9%이었다. 수학과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대도시 72.6%, 중소도시 67.5%, 읍면지역 58.0%였으며, 영어과의 경우에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대도시 78.2%,

중소도시 74.0%, 읍면지역 67.0%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대도시는 3.3%, 중소도시 3.8%, 읍면지역 4.4%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국어과는 대도시 2.0%, 중소도시 2.0%, 읍면지역 2.3%였으며, 수학과는 대도시 4.2%, 중소도시 5.1%, 읍면지역 6.3%, 영어과는 대도시 3.6%, 중소도시 4.2%, 읍면지역 4.7%로 나타났다.

〈표 7-2-3〉 중학교 3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3			2014			2015			2016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어	보통학력 이상	87.3	85.7	84.5	87.8	87.2	85.6	83.8	82.5	79.2	90.9	90.0	87.9
	기초학력	11.6	13.0	14.5	10.0	10.8	12.6	13.6	15.0	18.1	7.1	8.1	9.8
	기초학력 미달	1.2	1.3	1.1	2.1	2.0	1.9	2.7	2.5	2.8	2.0	2.0	2.3
수학	보통학력 이상	69.5	65.8	59.2	70.1	66.4	58.0	70.2	65.4	56.7	72.6	67.5	58.0
	기초학력	25.9	28.8	35.5	24.7	27.7	35.5	25.6	29.9	37.8	23.2	27.4	35.7
	기초학력 미달	4.6	5.5	5.3	5.2	6.0	6.5	4.2	4.7	5.5	4.2	5.1	6.3
영어	보통학력 이상	77.4	74.2	70.3	77.7	74.8	69.1	74.1	69.7	61.6	78.2	74.0	67.0
	기초학력	19.5	22.3	26.4	19.1	21.7	27.5	22.8	26.8	34.7	18.2	21.8	28.3
	기초학력 미달	3.1	3.6	3.3	3.2	3.5	3.4	3.2	3.5	3.8	3.6	4.2	4.7
평균	보통학력 이상	78.0	75.2	71.4	78.5	76.1	70.9	76.0	72.5	65.8	80.6	77.2	71.0
	기초학력	19.0	21.3	25.4	17.9	20.1	25.2	20.6	23.9	30.2	16.2	19.1	24.6
	기초학력 미달	3.0	3.5	3.2	3.5	3.8	3.9	3.4	3.6	4.0	3.3	3.8	4.4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 '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박인용 외(2017).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학업성취도 결과.

고등학교 2학년의 지역규모에 따른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평균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2015년과 2016년에는 평균적으로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84.4%, 중소도시 약 81.8%, 읍면지역 80.4%였다. 과목에 따라서는 국어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85.1%, 중소도시 83.8%, 읍면지역

81.6%이었으며, 수학과는 대도시 80.5%, 중소도시 76.5%, 읍면지역 76.4%, 영어과는 대도시 87.7%, 중소도시 85.2%, 읍면지역 83.2%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대도시 4.3%, 중소도시 4.6%, 읍면지역 4.9%로 지역 간 차이가 0.3%p씩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국어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대도시 3.5%, 중소도시 2.9%, 읍면지역 3.2%로 나타났고, 수학과와 영어과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대도시 4.7%, 중소도시 5.6%, 읍면지역은 5.8%, 영어과의 경우에는 대도시 4.7%, 중소도시 5.4%, 읍면지역 5.7%로 나타났다.

〈표 7-2-4〉 고등학교 2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3			2014			2015			2016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어	보통학력 이상	84.5	83.5	81.5	87.1	86.2	85.3	82.2	80.9	78.9	85.1	83.8	81.6
	기초학력	12.7	13.7	15.9	11.4	12.6	13.5	14.9	16.8	18.6	11.4	13.3	15.2
	기초학력 미달	2.8	2.7	2.5	1.5	1.2	1.1	2.9	2.3	2.5	3.5	2.9	3.2
수학	보통학력 이상	86.5	84.4	83.9	85.7	83.5	83.4	82.1	79.0	78.4	80.5	76.5	76.4
	기초학력	9.3	10.8	11.5	9.3	10.8	10.8	12.7	15.3	15.9	14.8	17.9	17.9
	기초학력 미달	4.2	4.8	4.6	4.9	5.7	5.9	5.3	5.7	5.7	4.7	5.6	5.8
영어	보통학력 이상	86.6	84.4	82.3	86.1	83.8	82.4	85.7	83.0	81.1	87.7	85.2	83.2
	기초학력	10.9	12.8	14.7	8.3	10.0	11.5	10.2	12.4	14.2	7.6	9.5	11.2
	기초학력 미달	2.5	2.8	3.0	5.6	6.2	6.1	4.2	4.6	4.7	4.7	5.4	5.7
평균	보통학력 이상	85.9	84.1	82.6	86.3	84.5	83.7	83.3	81.0	79.5	84.4	81.8	80.4
	기초학력	11.0	12.4	14.0	9.7	11.2	11.9	12.6	14.8	16.3	11.3	13.6	14.8
	기초학력 미달	3.2	3.5	3.4	4.0	4.4	4.4	4.1	4.2	4.3	4.3	4.6	4.9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 '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박인용 외(2017).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결과.

2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46.7%로 나타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58.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 42.8%에서 2014년 47.7%, 2016년 48.6%, 2018년 53.1%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의 경우에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 36.0%에서 2014년 44.0%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42.9%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8년에는 1.8%p 증가한 44.7%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 2012년 66.5%에서 2014년 69.5%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는 68.8%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8년에는 76.6%로 전년대비 7.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 44.5%, 2014년 50.8%, 2016년 53.1%, 2018년 61.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 시설 및 설비 만족도의 경우에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2012년 33.5%, 2014년 38.7%, 2016년 41.0%, 2018년 47.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 환경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 31.7%, 2014년 37.5%, 2016년 39.8%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47.1%로 전년대비 7.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학교생활, 교육내용, 교사와의 관계,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방법과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는 소폭 감소한 뒤 2018년에는 또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중 2018년 기준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항목은 교우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5〉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반적인 학교생활	46.7	45.8	7.5	49.7	43.8	6.4	52.3	41.8	6.0	58.0	37.3	4.6
교육 내용	42.8	43.7	13.5	47.7	42.5	9.8	48.6	42.3	9.1	53.1	38.7	8.2
교육 방법	36.0	44.9	19.1	44.0	41.6	14.4	42.9	43.3	13.8	44.7	41.9	13.4
교우 관계	66.5	28.9	4.6	69.5	26.8	4.6	68.8	27.1	4.1	76.6	21.3	2.0
교사와의 관계	44.5	46.9	8.6	50.8	42.1	7.1	53.1	40.4	6.5	61.1	34.0	4.9
학교시설 및 설비	33.5	42.6	23.9	38.7	43.3	18.0	41.0	43.1	15.9	47.4	40.8	11.9
학교주변 환경	31.7	44.1	24.2	37.5	44.7	17.7	39.8	42.8	17.4	47.1	41.9	11.0

주 : 1) 통계청 “사회조사”의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2~2016년까지는 13세 이상 재학생을 조사하였고, 2018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조사대상임.

2)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것이고, 불만족은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제3장 | 교육복지정책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게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예컨대 학습 결손 학생에게는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 결손을 치유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문화적 욕구 결핍을 느끼는 학생에게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성취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삶의 질적 수준까지 제고하는 것이다. 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핵심 원리는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의 개별 여건을 진단하여 그에 맞게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인해 사업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시·도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된 것이 큰 특징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1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우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의 경과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2003년에 서울, 부산 2곳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일종의 시범사업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시범 사업 2년 후인 2005년부터는 공모제를 도입하고, 사업대상지역을 광역시로 확대하는 등 총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에는 인구 25만 명 이상의 중소 도시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여 16개 시·도에 걸친 총 30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 말에는 모든 시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10년까지 전국의 534개 초·중·고에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0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11년에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개칭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재원의 성격은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대상은 기존의 지역 단위에서 개별 학교로 변경되었다.

2011년 교육복지우선사업으로 전환된 후 1,356교(초 670·중 681·고 5)가 지원 받았으며, 2012년 이후로는 매년 1,800여 개교 이상이 지원을 받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현황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은 약 1,426억으로 총 3,573개교(사업학교 1,720교, 연계학교 1,853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나. 추진 체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추진 체계는 크게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연수 등을 위해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가 운영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사업학교 선정기준, 학교별 예산 배부 기준 등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도의 기본 계획에 따라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배포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관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교육청 내 담당자 연수, 우수사례 발굴,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등을 실시하여 시·도의 자체적인 교육 복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단위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관내 사업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복지 프로그램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학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내 담당부서에 프로젝트 조정자와 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선 현장인 단위 학교에서는 교육 복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이외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한다.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교내 담임교사, 부장교사 등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 학생을 발굴하게 된다. 사업 대상 학생에게는 학생 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학습, 문화체험, 심리치료 등)이 제공된다. 또한 교육복지사와 담임교사의 판단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외적으로 현물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이외에도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연구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단위의 사업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관련 담당자 연수, 자체 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협의회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육복지협의회, 학교 단위의 교육복지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한다.

다. 사업 내용 및 효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업대상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중 사업 학교의 장이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학생에게 필요에 맞는 학습, 문화체험, 심리치료,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추진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학교 선정, 사업대상학생 선정 등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학교에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크게 3가지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데,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프로그램,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현물 서비스로 분류 된다. 우선 학교는 지원 대상 학생에게 특기적성,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일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예시로 학습결손 학생을 위한 1:1 보충학습 프로그램,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다. 다만 특정 학생에게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학생이 노출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일반학생도 함께 참여하여 그룹 활동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학생에게는 프로그램 참여 비용의 전부가 지원되나, 일반학생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초기에 일부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 안내의 편의성을 위하여 학습영역, 문화영역, 정서·심리 발달영역, 복지 프로그램 영역 등으로 구분 지은 경우가 있었으나, 복지 프로그램 영역을 임의로 구분 짓게 되면 학생 개개인의 수요 파악에 충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사업 방향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일반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이외에도 사업학교의 장은 의·식·주, 보건, 위생, 건강 등 학생의 기본적인 욕구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물서비스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 단,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 예컨대

담임교사와 교육복지사가 사업대상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쌀을 전달할 수 있으며, 교육복지사가 학생을 데리고 치과에 동행해서 치과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년 연구(교육복지 콘서트)에 따르면, 많은 시·도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의 학습태도, 기초학력, 자아존중감 등이 향상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조사(2016년도 운영성과) 결과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의 무단결석 비율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14년 연구에서도 사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역량(수업참여, 독서, 진로설계)이 비 사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부수적으로 사업학교 내부의 교육 복지 체계가 강화되었다.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 실시 이후 사업학교(초·중학교)의 교육 복지 전담부서 설치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교내 교육복지위원회 설치율은 두 학교급 모두 98% 이상으로 학교 자체의 교육 복지 체계가 매우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습, 문화, 심리, 의료 등 다양한 방면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수업료, 급식비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던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향후 발전방향

교육 취약 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꾸준히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방과후학교 사업, Wee프로젝트 등 다양한 성격의 교육복지사업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학교 사업은 수준별 수업 및 특기계발이 주 내용이며, Wee프로젝트는 위기 학생을 위한 심리 상담·치료를 주 내용의 사업으로 각기 다른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31

2 방과후학교

가. 방과후학교 개요

1) 개념 및 추진 근거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이다(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2018).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수요자 중심 선택, 수익자 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학생의 요구 조사를 토대로 기획되어야 하며,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은 폐강 되는 등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된다.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에게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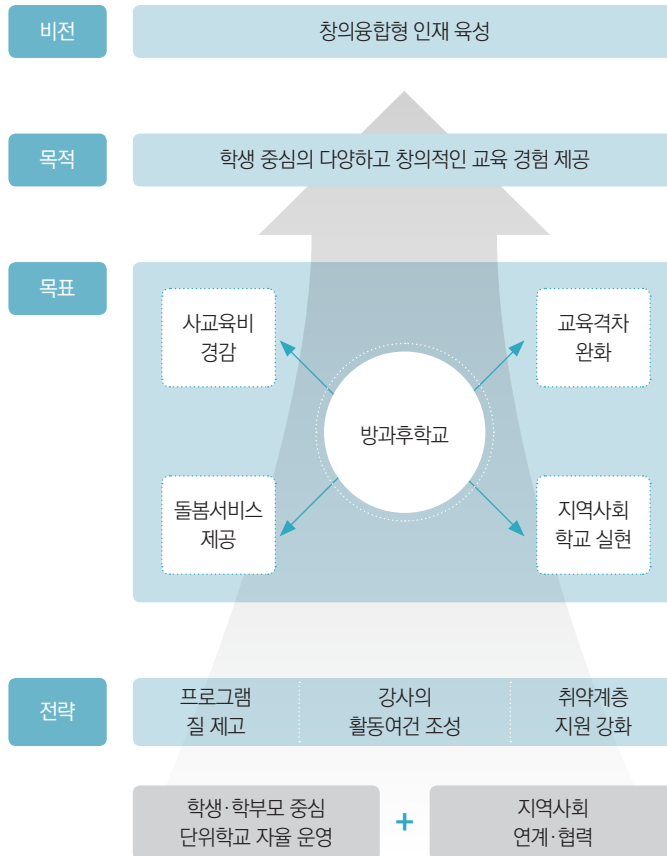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및 제2015-74호에 운영 근거를 두고 있다.

2) 비전 및 목표

방과후학교의 비전과 목표는 2011년 이후 최근까지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에 두고 있다.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및 확대를 위해 방과후학교의 세부 목표는 첫째, 예체능 등을 통한 소질·적성·진로계발과 교과와의 심화 및 보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 및 대체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둘째,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소재 학생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셋째,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지자체와 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학교를 실현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목표 중 특히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49-2)로 선정하여 국가 책임돌봄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하였다.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며, 부처 간(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을 개발·확산할 예정이다.

[그림 7-3-1] 방과후학교 비전·목적·전략



자료 : 2018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3) 방과후학교 운영 체제

방과후학교정책의 주요 추진 주체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이며, 행정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참여도 이루어진다.

각 운영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을 지원하며,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시·도교육청의 역할은 2008년 이후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확대되었는데,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자체 예산 등을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교육지원청에 배분하여 지역 사정에 적합한 방과후학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단위학교는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주요 주체이다.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교장과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또는 담당교사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단위학교는 학교운영비(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또는 수용비 범위 내에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와 보조 인력을 계약 채용하여 방과후학교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나. 방과후학교 정책 변천

방과후학교 정책의 전신은 1995년 5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된 ‘특기·적성교육’이며, 1996년 2월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명칭으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시되었다. 1998년 10월 ‘교육비전 2002’에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의 탈피를 통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계발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1999년 2월 방과후 교육활동의 명칭을 ‘특기·적성 교육 활동’으로 변경하여 입시 중심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의 연차적 폐지를 목표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발굴하고,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2004년 사교육의 학교 내 흡수, 경쟁력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 활용,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등 방과후학교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특기적성, 보충 수업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의 명칭을 ‘방과후학교’로 명명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에 학교에서 방과 후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였다.

2006년에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도입, ‘대학생 멘토링’ 지원, ‘초등 방과후 보육’ 지원 등의 방과후학교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2007년 전국 확산을 위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2008년 학교자율화 추진에 따라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차원에서 2009년 제1회 ‘방과후학교 대상’을 개최하였다. 2013년 방과후학교는 초등돌봄교실 강화와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 체제 구축 위주로 운영되었으며, 2014년부터 돌봄대상의 확대, 무상돌봄의 확대, 돌봄시간 연장, 돌봄대상 학년의 연차적 확대 등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역 방과후 돌봄협의체 및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016년 5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다양한 영역과 방법으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의 4대 중점과제와 그에 따른 실행과제는 <표 7-3-1>과 같다.

〈표 7-3-1〉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4대 중점과제	실행과제
1. 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1. 학생 수요에 맞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편성·운영 1-2. 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2.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2-1.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수강여건 개선 2-2. 농어촌 방과후학교 교육여건 개선
3. 초등 돌봄교실 강화	3-1. 돌봄교실 서비스 질 제고 3-2. 돌봄연계형 예체능 프로그램 발굴확산
4.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4-1.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 내실화 4-2. 시·도교육청의 역할 강화

자료 : 교육부 발표자료(2016).

다.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연간 60만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한다. 자유수강권을 지급받는 학생 수와 연간 지원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원 학생 수는 증감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연간 지원액은 60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금액(백만원)	115,210	127,116	141,021	176,581	289,188	340,745	371,960	173,790	346,116	323,876	336,968
지원학생수(명)	320,374	353,445	392,070	482,070	602,480	567,907	622,933	362,062	721,077	698,761	624,015
연간지원액(만원)	30	30	36	36	48	60	60	60	60	60	60

자료 : 교육부(2008~2018),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2)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학교 운영비를 도시보다 많이 지원하는 등 농산어촌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수강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표 7-3-3〉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금액	528	382	421	515	657	973	975	782	923	876	915
지원학급수	14,645	14,605	16,210	17,162	46,948	46,323	46,401	46,508	46,660	47,513	46,952

자료 : 교육부(2008~2018).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044-203-6413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가.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 현황

정부는 도시 지역에 비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불리한 농어촌 교육 환경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60년대 후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1967)」을 제정하여 교육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에 학교시설, 교과서 무상공급, 통학지원 등을 통한 교육여건개선 및 해당 교원들에게 도서·벽지수당을 지원하였다. 1980년대부터 농어촌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교육내실화를 위한 통폐합 정책(1982)시행은 도·농간 교육격차해소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인접 학교 간 통·폐합을 추진하여 경제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나, 질적 통합이 아닌 양적지표만을 고려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1995년의 '5.31 교육개혁'에서는 '농어촌 지역 우수학교 육성'을 개혁 과제로 삼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지역 거점학교 육성을 추진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날로 소규모화 되는 농어촌 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체기준에 따라 통·폐합

및 통합학교 운영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04년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농어촌 학교의 교원, 학생, 시설 등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근 10년간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 기숙형 공립고 사업, 연중 돌봄학교 육성, 전원학교 사업,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사업, 농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농어촌 학교 특색활동 운영 지원 사업이 실시되어왔다. 실시된 사업들의 개요는 <표 7-3-4>와 같다.

<표 7-3-4> 2004~2018년 농어촌교육 지원정책 개요

사업명	내용 및 성과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 (2004~2009년)	(목적) 우수인재 도시 유출 방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농산어촌 고교의 자생적 발전 기반 마련 (지원규모) 86개교 운영 (지원예산) 총 1,619억원 (성과) 우수고 재학생수 평균 28명 증가, 중학생 신입생 진학률 : 8.9%('04) → 16.5%('09)
기숙형 공립고 사업 (2008~)	(목적) '돌아오는 농어촌학교'가 되도록 거점단위로 지역의 우수 기숙형 학교 육성 (지원규모) 150개교 운영 (지원예산) 총 6,200억원 (성과) 저소득층 학생 기숙사비 지원, 중학교 우수졸업생 유출 방지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 (2009~2011년)	(목적) 취약 지역 학교의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 복지 실현 (지원규모) 383개교, 33,862명 지원 (지원예산) 총 806억원 (성과) 사업학교와 비사업학교간 보통 이상 학력 비율 비교 시 국어 5.9%, 영어 6.7% 이상 높게 나타남
전원학교 사업 (2009~2015년)	(목적) 자연 친화적 환경과 첨단e-러닝 시설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이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육성 (지원규모) 399개교 (지원예산) 총 1,602억원 (성과) 초6 영어·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전원/전체) : 영어(1.1%/2.1%), 수학(0.7%/1.2%), 학생만족도(전원/비전원) : 74.1점/68.4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사업 (2013. 10.~2019년)	(목적) 농어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를 막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중학교를 육성, 농어촌 중학교의 선도 모델을 제시 (지원규모) 총 80개교 (지원 예산) 매년 교당 3~5억 원 내외 총 860억원 지원 (성과) 보통학력 이상 학생 평균 2016년 기준, 64.7%, 기초학력 이상 학생 평균 2016년 기준 28.3%으로 예년 수준 유지. 성과 평가 결과 농어촌 학교 교육 만족도는 교과 외 교육 활동, 능력개발, 동기유발, 학교생활, 자녀의 학교생활, 학교의 교육결과, 교원의 학교 만족도를 통해 평가됨. 농어촌 학교 교육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

사업명	내용 및 성과
농어촌 학교 ICT 지원사업 (2013~2018년)	(목적) ICT 콘텐츠 및 스마트 기술을 통해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학생에게 풍부한 학습·체험 기회 제공 (지원규모) 총 4,068개교 (지원예산) 총 271억원 (성과) - 농산어촌 ICT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교원 대상 만족도(5점 likert 척도) : 3.73 - 농어촌 학교 ICT지원 대상교 학생 정규수업 만족도(2017년, 5점 likert 척도) : 초3(3.59), 초6(3.73), 중1(3.43), 중3(3.35)
농어촌 학교 특색활동 운영 지원사업 (2018~2022년)	(목적) 지리적·문화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원규모) 미정 (지원예산) 15억('18) → 35('19) (성과) 성과 평가 진행 중

자료 : 교육부(2018), 내부자료.

나.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은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최근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하여 꾸준한 지원을 하였으나, 중학교 지원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을 조사하였을 때 중학교의 도·농간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농어촌 중학교에 대한 낮은 신뢰로 교육 이농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우수 중학교를 육성하여 우수한 입학자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농어촌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중심적인 중학교를 육성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지속 발전이 가능한 중학교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여 농어촌 중학교 선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에서 시작했다.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초등학교(전원학교 육성 사업), 고등학교(기숙형 공립고지원)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군 단위 면지역 중학교를 집중 육성, 둘째, 지리적·문화적 여건 부족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 셋째, 기숙사 또는 통학차량 등의 지원을 통해, 주변 학생 및 도시 유학생의 거점별 우수중학교로의 진학을 유도하겠다는 데 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청은 광역학구제의 도입을 통해 인근 지역 희망학생 유치 여건을 마련하였고, 초빙형 학교장 공모제 운영,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우수교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시·군 지자체와의 행·재정적 지원 MOU 체결(교육지원청, 학교 등) 추진, 중학교 육성 계획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학교 필수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운영, 학교 스포츠클럽,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 예술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기기 및 무선 인터넷 구축 등 ICT 사업 프로그램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지원대상학교는 면 소재 중학교(재학생 60명 이상)로서 폐교예정 대상 학교는 제외하였다. 2013년에 20개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0개교를 선정, 2018년까지 859억 원을 지원하였다.

다. 농어촌 학교 ICT 지원사업

농산어촌 학교의 ICT 교육환경 구축은 농산어촌의 사회경제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7월 18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농어촌 지역 스마트 교육활성화’의 실행 방안 수립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농산어촌의 지리적, 문화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축적된 교육정보화 역량과 학습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근 보편화 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 격차를 줄임으로써 보다 많은 지적·문화적 소양과 체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농어촌 학교의 약 40%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복식수업, 방과후학교 운영 제약, 또래학습 결여 등 열악한 여건이나, 적은 교원 숫자 및 외부 강사 부족으로 학습결손 보충이 어렵고 영어 및 예·체능 능력 계발에도 한계가 큰 상황이다. 또한, 농어촌의 열악한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으로 체험학습 기회 제공 기관 및 장소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기초수급자, 조손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 돌봄 기능이 취약한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정책적으로 보강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생 수 60명 이하의 면·도서벽지 지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300개교를 지정한 후 2013년 농산어촌 ICT기반구축 시범사업을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실시하였다. 2013년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반으로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에는 참여학교 수를 2,000개교로 확대하였다. 2015년에는 전체 농산어촌

초등학교 및 중학교 4,008개교, 2017년에는 4,068개교가 사업에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관계로 120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사업 현황 개요는 <표 7-3-5>와 같다. 2017년 이전에는 ICT 콘텐츠 및 개발된 스마트 기술의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면 2017년과 2018년에는 주로 농산어촌 소재 고등학교 ICT 인프라 구축사업 및 점점 사업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표 7-3-5> 농어촌학교 ICT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표		ICT 콘텐츠 및 스마트 기술을 통해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학생에게 풍부한 학습·체험 기회 제공
사업 지원 대상		- (초·중학교) 읍면지역 소재 학교 - (고등학교) 도서 및 면지역 소재 학교
사업 기간		2013~2018년
사업 규모	지원 학교	사업 기간 동안 총 4,068개교
	지원 예산액 (지원 형태)	사업 기간 동안 총 271억원 지원(특별교부금)
지원 내용		스마트 기기 보급 : 스마트패드(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 무선 인프라 구축 : 무선 인터넷망, AP 등 스마트 멘토링 : 방과후 스마트 기기 활동 능력이 뛰어난 멘토의 지원 사업 관리 ICT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배포, 농산어촌 ICT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ICT담당자 사이버 연수(예: ICT담당자 학습, 동아리 운영 등)

자료 : 교육부(2018). 내부자료.

라. 농어촌 학교 특색활동 운영 지원사업

2018 교육 소외계층 지원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농어촌 학교 특색활동 운영 지원사업이 201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2020년 1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예산은 2018년에 15억, 2019년에 35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다. 사업 내용은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 지원, 주민 개방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 농어촌 관련 단체와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특색 활동 추진 지원, 지역 기관과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으로 구성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8년 세 개의 특색 활동 운영 모델이 다음과 같이 제시

되었다. 첫째,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 모델, 둘째, 학교 간 협력 활동 모델, 셋째, 지역 단위 교육 공동체 강화 활동 모델이다. 이 중 첫째,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 모델은 단위 학교에서 사업을 하되 학부모 등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개방형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포함한다. 둘째, 학교 간 사업의 경우 두 학교 이상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동아리 협력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단위 사업의 경우 교육 공동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소속 학교와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 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도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업 개요는 아래의 <표 7-3-6>과 같다.

<표 7-3-6> 농어촌 학교 특색활동 운영 지원 사업

구분		내용
사업 목표		지리적·문화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여건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사업 지원 대상		면 소재의 초, 중, 고등학교
사업 기간		2018~2022년
사업 규모	지원 학교	2018년 현재 274교
	지원 예산액(지원 형태)	15억(2018년) → 35억(2019년)
사업 모델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연계 모델	지역사회 연계 활동 지원(예: 학부모 등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교당 500만원)
	학교간 협력 활동 모델	학교간 협력활동(예: 교육자원 연계, 교육활동 통합운영, 학생 집단 통합 동아리 운영 등)(협력교 전체 당 10백만원)
	지역 단위 교육 공동체 강화 모델	교육 공동체 강화(예: 소속학교와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도 교육활동 운영)(공동체 당 20백만원)
	교육청(교육지원청) 자율프로그램	지역 사회 연계 20백만원, 교육지원청 지원 300백만원 지원

자료 : 교육부(2018). 내부자료.

마. 향후 발전방향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된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들은 저마다 계획되었던 목표대로 그 성과를 달성하여 어느 정도 우수한 정책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지원 사업들이 3~5년 미만의 단기 사업으로 추진되어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산규모 등의 이유로 정책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학교 수 또한 제한적인 실정이어서 농어촌 교육 전체의 활성화를 추구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과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추진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044-203-6413

4 다문화학생 교육

가. 다문화학생 현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주배경을 지닌 사회 구성원이 증가하면서 학교에도 다문화학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다문화학생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122,212명이다. 다문화가정의 6세 미만 유아 수(약 12만 명)를 고려하면 향후 초·중·고 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학생 수와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7-3-7〉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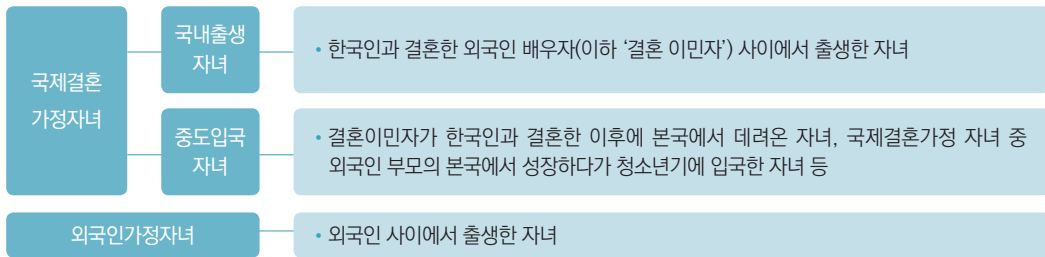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다문화학생 수(A)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전체 학생 수(B)	6,294,148	6,097,297	5,890,949	5,733,132	5,592,792
다문화학생 비율 (A/B×100)	1.08%	1.35%	1.68%	1.91%	2.19%

주: 매년 4월 1일 기준.

자료: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초기 다문화교육 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2010년부터는 중도입국자녀도 정책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발표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방안」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그림 7-3-2] 다문화가정 학생 구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이 분류에 따라 2018년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출생자녀가 80.4%, 중도입국자녀가 6.8%, 외국인가정자녀가 12.8% 정도이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다문화학생의 76.2%가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14.8%가 중학교에, 9.0%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초등학생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중·고등학생 수가 전년대비 2,515명 증가하는 등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7-3-8> 다문화학생 유형별·학교급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7년				2018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계	82,806	15,983	10,598	109,387	93,116	18,127	10,969	122,212
국내출생	68,624	12,273	8,417	89,314	76,201	13,617	8,445	98,263
중도입국	4,865	1,740	1,187	7,792	5,046	1,933	1,341	8,320
외국인가정자녀	9,317	1,970	994	12,281	11,869	2,577	1,183	15,629
비율	75.70	14.60	9.70	100.00	76.19	14.83	8.98	100.00

주 : 매년 4월 1일 기준.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정책 추진 경과

학교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다문화학생 교육을 위해 2006년부터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2017년 2월 고시)을 통해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문화교육’을 포함하는 등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내 다문화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의 공교육 적응지원을 위해 일반 학교 내 특별학급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는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도입(2012. 7.)함으로써 한국어를 예비학교의 정규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기회를 폭넓게 보장 하기 위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이외에도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지 증명만으로도 초·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2008년, 2010년). 이에 더해 외국 학교를 다니다가 국내 학교에 편입학하려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력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2013년).

그 외에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수립되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의 명칭이 초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2006년)」에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2016년~)」으로 변화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문화교육 정책은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에서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으로 확장하여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 2018년 주요 정책 내용

1)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교육부는 유치원 단계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언어 및 기초학습 등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유아에게 동등한 출발점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다문화 유치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유치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유아와 다문화 유아를

통합하여 교육하되, 필요할 경우 다문화 유아의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추가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문화 유아 추가지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유치원은 2015년 5개 시·도 30개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2018년에는 전국 131개원을 다문화 유치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OO 유치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학기 초에 제가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아이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유치원에서 도움을 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내년에도 계속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
- (OO 유치원 교사) 다문화 유치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언어 교육을 실시하니, 언어 발달도 좋아지고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성도 좋아졌어요.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기초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4,000여 명, 한국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링은 다문화학생과 대학생을 1:1 매칭하여 제공하는데, 신청 다문화학생 중 저소득층,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우선 매칭한다. 2017년부터는 외국어에 능통한 대학생이 멘토가 되어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의 부(모)국 언어로 직접 멘토링을 실시하는 ‘모국어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 다문화학생 증가 추세에 맞추어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에게 언어·수학·과학·예체능 등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글로벌브릿지 사업’은 2011년부터 운영되었고, 2018년 현재 20개 사업단이 운영 중이다. 기존의 다문화교육 정책이 복지·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글로벌브릿지는 다른 정책과는 달리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고 이중언어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제6회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2018년 6월에 체결된 교육부-LG연암문화재단-한국외국어대학교 업무협약에 따라 입상 다문화학생이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17년부터 전체 학급이 함께 다문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원격영상으로 진로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울림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국 80개교가 참여한다.

2)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학생도 「유엔아동권리협약」(우리나라 1991년 비준)에 따라 의무교육기회를 보장받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거주지 증명만으로도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한국 교육제도, 입학절차, 교육기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 책자를 10개 언어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법무부와 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학교 편·입학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에는 보다 많은 학부모에게 교육제도 안내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문-외국어 양면 1매로 구성된 리플릿을 추가로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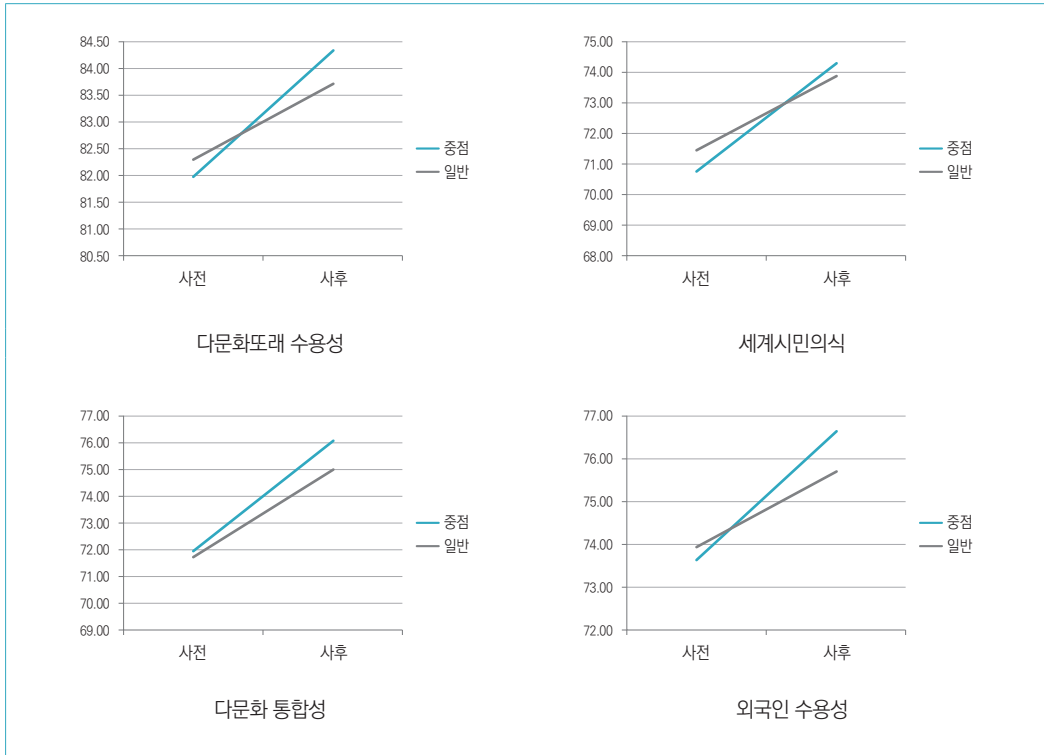
일반 학교 내 특별학급 형태로 운영되는 ‘예비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정규 학교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예비학교는 2017년에 165교(총 179학급) 참여하였고, 2018년에는 197교(223학급)로 더욱 확대되었다. 2016년부터는 중도입국자녀 등이 예비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에도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예비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예비학교는 교육청(또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해당 학교에 한국어 강사를 지원하거나, 인근 예비학교에 있는 한국어 강사가 순회 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확대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전체 학교 구성원이 다문화교육에 참여하여 학교현장의 다문화 감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다문화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이해, 차별해소, 반(反)편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문화 중점학교는 2016년 258개교에서 2018년 318개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다문화 수용성 측정 결과, 다문화 중점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다문화 수용성 각 영역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교과 및 비교과와 연계한 다문화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를 지원하고, 중앙 및 각 시·도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각 학교에 우수한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수업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그림 7-3-3] 2017년 다문화 중점학교 및 일반학교 다문화 수용성 변화 비교

(단위: 점)



자료 : 교육부(2018). 내부자료.

다문화교육의 경우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연수가 의무화되었다. 교육부는 중앙교육연수원 및 시·도별 교육연수원을 통해 기초연수(15시간), 심화연수(30시간)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직무·자격연수에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을 2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일선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감) 및 교육전문직 등 관리자를 위한 집합 연수(중앙교육연수원 주관 ‘공감하고 존중하는 다문화교육 관리자과정’)도 연 4회 운영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진학상담, 위기학생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수업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지도하거나 다문화학생을 지원한 교사,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09년부터 전국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하여 우수한 교육 자료를 현장에 안내하고 있으며, 2018년 제10회 공모전부터는 ‘다문화 상담사례’ 부문을 신설하여 다문화학생 정서·심리·진로상담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개편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다문화교육 시행 10년을 맞아, 그간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감과 홍보의 장’으로 ‘다문화 너나들이 축제’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였다. 2017년에는 ‘미래교육박람회’를 통해 다문화교육을 홍보하고 확산하였다.

4)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확립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다문화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중앙다문화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교육 관련 통계 수집 및 분석, 사업 성과의 평가, 시·도 다문화교육 지원, 관계자 워크숍 개최, 자료개발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2015년부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각 시·도 단위에서 해당 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다양한 다문화교육 자원을 연계·활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그 결과를 관내 학교에 공유 및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2015년 5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8년에는 14개 지역으로 점차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5 탈북학생 교육 지원

가. 탈북학생 개념 및 현황

탈북학생이란 북한 또는 중국 등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³⁾의 자녀이다. 최근에는 북한 외에 중국 등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한국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부모의 탈북과정 중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습 결손 등이 크고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부는 이들을 탈북학생 범주에 포함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원칙적으로 통일부 정착지원 및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대상은 아니다.

〈표 7-3-9〉 탈북학생 지칭 용어 및 지원 비교

구분	탈북청소년	탈북학생		탈북가정 한국 출생 자녀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한국 출생
개념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집단을 포괄하는 용어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결정이 된 청소년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 후 국내에 입국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한국 출생
연령대	만 6~24세 이하	나이 구분		없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원 사업 참여 여부	학교 재학 시 가능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탈북학생 멘토링 매뉴얼. 재구성.

3)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으로 온 북한주민을 의미함. 법령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을 보면 1948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누적 집계로 1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한국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10년 말 2만 명에 이르렀고, 2018년 9월에는 잠정적 통계 숫자로 32,147명에 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탈북학생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남한 입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 탈북학생의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 7-3-10〉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구분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남(명)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11	9,104
여(명)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697	23,043
합계(명)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808	32,147
여성비율(%)	75	71	73	76	78	80	79	83	86	72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통계(2018. 9.).

〈표 7-3-11〉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 현황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남(명)	2,263	2,335	785	274	226	242	139	244	326
여(명)	4,711	7,001	2,012	762	860	806	531	996	1,169
합계(명)	6,974	9,336	2,797	1,036	1,086	1,048	670	1,240	1,495
구분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명)	141	181	131	148	122	156	74	7,787	
여(명)	473	566	482	457	409	383	240	21,858	
합계(명)	614	747	613	605	531	539	314	29,645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통계(2018. 9.).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탈북학생의 재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탈북학생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4월 조사 결과, 총 2,805명의 탈북청소년이 학교 안팎의 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다. 이 가운데 2,538명(전체의 90.5%)은 정규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학교(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으며, 267명(전체의 9.5%)의 청소년이 정규학교가 아닌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에서 수학 중이다. 이 밖에 정규학교나 대안교육시설에서 수학하지 않고 사설 학원을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탈북청소년이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학생의 정규학교 급별 재학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재학생이 932명으로 36.7%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교 재학생은 682명(26.9%), 고등학교 재학생은 751명(29.6%), 기타학교 재학생은 173명(6.8%)으로 집계되었다.

〈표 7-3-12〉 탈북청소년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단위: 명)

구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 현황	487	445	342	340	368	383	78	95	267	2,805
	932		682		751		173			
	2,538									

주 : 1) 기타학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함.

2) 대안교육시설(전일제) 재학생 현황은 2018. 6. 기준임(통일부 제공).

자료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2018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2018. 4. 1.).

지역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재학 중인 학생이 29.6%로 가장 많고, 서울이 23.2%, 인천 8.5%로 나타나 전체 학생의 61.3% 가량이 수도권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표 7-3-13〉 지역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18. 4)

(단위 : 개교, 명, %)

구분	재학 학교 수	학생 수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서울	227	211	125	162	91	589	23.2
부산	57	28	30	32	1	91	3.6
대구	38	20	18	23	0	61	2.4
인천	68	74	82	56	4	216	8.5
광주	59	31	25	32	0	88	3.5
대전	30	25	13	8	0	46	1.8
울산	32	19	12	16	0	47	1.9
세종	5	1	1	3	0	5	0.2
경기	276	271	184	234	62	751	29.6
강원	35	17	20	18	0	55	2.2
충북	55	41	34	18	1	94	3.7
충남	86	51	45	37	9	142	5.6
전북	41	20	15	14	0	49	1.9
전남	38	23	8	21	0	52	2.0
경북	83	40	25	39	1	105	4.1
경남	66	47	35	31	4	117	4.6
제주	19	13	10	7	0	30	1.2
계	1,215	932	682	751	173	2,538	100.0

자료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2018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2018. 4. 1.).

전체 정규학교 재학 탈북학생 중 60.3%가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들이다. 탈북학생 중에서 제3국 배경중학생의 규모는 2011년에는 4.5%에 불과했지만, 2018년은 53.8%로 증가했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탈북학생의 순차적인 상급학교 진학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될 제3국 출생 학생 비율도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3-14〉 정규학교 재학 탈북학생 출생지별 재학현황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북한출생	262	28.1	315	46.2	353	47	78	45.1	1,008	39.7
중국 등 제3국 출생	670	71.9	367	53.8	398	53	95	54.9	1,530	60.3
계	932	100.0	682	100.0	751	100.0	173	100.0	2,538	100.0

자료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2018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2018. 4. 1.).

〈표 7-3-15〉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정규 학교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2005. 4	247(58.7)	131(31.1)	43(10.2)		421
2006. 4	248(52.3)	166(35.0)	60(12.7)		474
2007. 4	341(49.6)	232(33.8)	114(16.6)		687
2008. 4	495(51.2)	288(29.8)	183(19.0)		966
2009. 4	562(49.2)	305(26.7)	276(24.1)		1,143
2010. 4	773(54.5)	297(21.0)	347(24.5)		1,417
2011. 4	1,020(60.7)	288(17.1)	373(22.2)		1,681
2012. 4	1,204(60.4)	351(17.6)	437(21.9)		1,992
2013. 4	1,159(57.3)	478(23.6)	385(19.0)		2,022
2014. 4	1,128(51.7)	684(31.3)	371(17.0)		2,183
2015. 4	1,224(49.5)	824(33.3)	427(17.2)		2,475
2016. 4	1,143(45.4)	773(30.7)	601(23.9)		2,517
2017. 4	1,027(40.5)	726(28.6)	785(30.9)		2,538
2018. 4	932(36.7)	682(26.9)	751(29.6)	173(6.8)	2,538

자료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2018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2018. 4. 1.).

나. 탈북학생 배경·특성 이해

탈북학생들이 북한이나 제3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은 많은 위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은둔 생활을 하다가 신분이 노출되어 중국의 공안에 잡히거나 심지어는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한 생활을 겪은 경우 남한 입국 후에도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부 탈북학생은 탈북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경험으로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으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때문에 마음의 큰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또한 부모와 장기간 떨어져 생활하다가 재결합한 경우 부모에게 친근함보다 불편함을 느끼며, 간혹 부모가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경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심하게 겪기도 한다. 중국에서 출생한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져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탈북학생마다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 탈북과정에서의 교육 공백이나 심리적 상처, 복잡한 가정환경 등에 따라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양하며 따라서 학습 수준이나 적응 양상도 천차만별이다. 이는 모든 탈북학생에게 적용되는 ‘일관된 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탈북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탈북학생들은 그 특성이 일반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남북한 학교교육의 차이, 탈북학생임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 등에 의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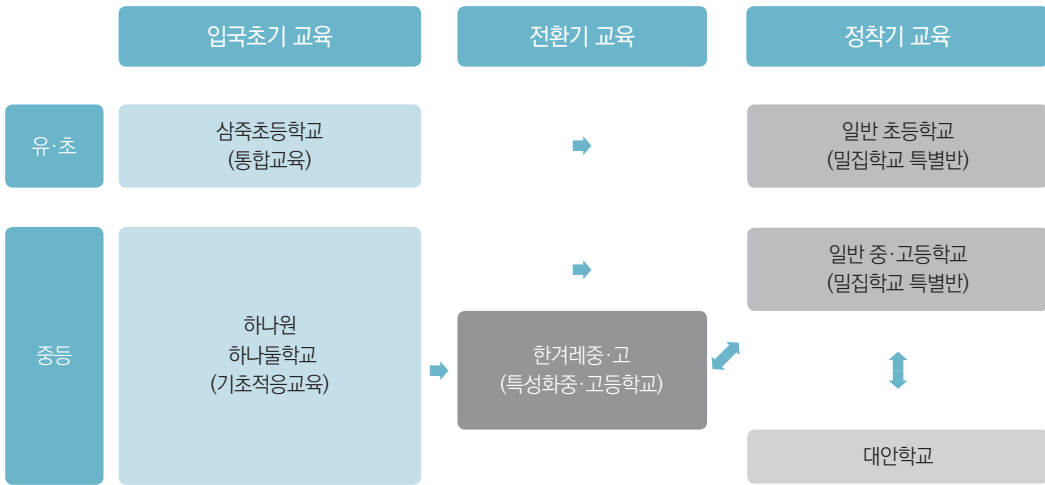
다. 탈북학생 교육의 목적 및 지원 체계

탈북학생 교육은 기본적으로 탈북학생을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성장시키고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은 탈북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온 입국 초기 단계부터 지역 사회 정착에 이르는 정착기 단계까지를 포괄하여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탈북학생의 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입국 초기 교육’ → ‘전환기 교육’ → ‘정착기 교육’ 순으로 교육경로를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교육지원을 한다. 정규 학교의 교육을 기본 토대로 하는 가운데 대안교육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탈북학생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및 통일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지역 단위의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학교 내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밖 탈북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7-3-4] 탈북학생 단계별 교육지원 체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8).

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현황

교육부에서 2018년 실시한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①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②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③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의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탈북학생 지도교원 연수, 탈북학생 교육연구회 운영 사업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다. 각 영역별 지원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림 7-3-5] 2018년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

비전 및 목표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성장시키고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로 육성

중점 추진 방향

- 학습, 언어, 심리 등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취업중심 교육으로 실질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학교·교원 교육력 제고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추진 방향	주요 추진 과제	교육 단계
1.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① 삼죽초 맞춤형 교육	입국초기
	② 한겨레중·고 맞춤형 교육	전환기
	③ 정착기 학교 맞춤형 교육	정착기
2. 탈북학생 진로·직업 교육 내실화	① 하나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입국초기
	② 한겨레중·고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환기
	③ 정착기 학교 진로·직업교육 기회 제공	정착기
3.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① 하나원 (하나들학교) 교사 파견	입국초기
	② 한겨레중·고 협의체 운영 지원	전환기
	③ 탈북학생 교육자료 개발·보급	전 단계
	④ 관계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8).

1)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영역은 하나원에서 시작하여 정규학교에 이르는 교육경로별 적응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첫째, 삼죽초 맞춤형 교육, 둘째, 한겨레중·고 맞춤형 교육지원, 셋째, 정착기 학교 맞춤형 교육 사업을 실시하였다.

각 사업별 개요를 살펴보면 첫째, 삼죽초(입국초기) 맞춤형 교육 사업은 입국 초기 하나원에서 생활하며 삼죽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탈북학생들에게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특별학급을 운영하여 학업과 사회적응을 지원한다. 즉, 제3국 은신, 부모와의 격리, 기타 탈북과정의 경험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탈북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삼죽초 재학 탈북학생의 학습, 체험활동 등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죽초등학교의 탈북학생들은 오전에는 일반학급에서 한국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특별학급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한다. 이와 함께 삼죽초에서는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들을 위해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한국어 강사를 채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겨레중·고(전환기) 맞춤형 교육’ 사업은 한겨레중·고와 정착기 일반 학교간의 협력사업 실시,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이중언어 강사 및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한겨레중·고 협력학교 운영 사업에서는 한겨레중·고등학교와 일반 중·고등학교가 참여하는 협력학교 운영을 통해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의 정착기 학교 통합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이 이후 정착기 정규학교로 이동할 경우 새로운 학교에 원활히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었다. 또한 중국배경 탈북학생의 한겨레중·고등학교 입학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은 제3국 배경 학생이 원만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가 배치되었고, 입국초기 교육기관에서의 심리상담 결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상담사가 배치되었다.

‘정착기 학교 맞춤형 교육’ 사업에서는 정규학교를 중심으로 탈북학생이 정착지 학교에서 원만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우선 정착기 초기에 탈북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다. 또한 탈북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사(담임, 교과)의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지원인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과 탈북학생의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멘토링을 2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성장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습,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이 실시되었다.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해 탈북학생 밀집지역의 초·중학교에서 탈북학생의 학습 부진을 보충하고 사회문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탈북학생 밀집학교 특별반’을 운영하였다. 탈북학생 밀집지역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습, 진로, 상담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토요거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였다. ‘제3국 출생 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을 다문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학생 및 학부모의 상호 교류를 통한 가정·학교·사회의 상호이해·협력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남북한 상호이해 교육’ 사업도 실시하였다.

2)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에서는 탈북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둘째, 한겨레중·고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셋째, 정착기 학교 진로·직업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에서는 입국초기 교육기관인 하나원 재원 학부모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남북한 학교제도 비교, 취·진·편입학 관련 행정 절차, 한국 학교에서 학부모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교육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하나원 퇴소 후 자녀의 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정착기 학교 적응을 지원하였다. 둘째, 한겨레중·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전환기 교육 단계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고교 진학 및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직업 교육과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즉, 중장비, 바리스타, 피부미용 등의 다양한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진로설정을 지원하였다. 셋째, 정착기 학교 진로·직업교육에서는 정착기 단계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먼저 정착기 학교 진로·직업교육 캠프 운영에서는 정책연구학교, 교육연구회, 지역 하나센터 등과 연계하여 탈북학생의 희망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캠프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탈북학생의 흥미와 소질, 그리고 적성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진로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잠재능력을 갖추고 있는 탈북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1:1 결연을 통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였다. 즉, 인문, 과학, 수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잠재능력을 갖춘 탈북학생을 선발한 후 각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 연극배우, 화가 등)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도를 실시하는 등 학생의 잠재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전담교육사 배치교 등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정착기 학교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교육’을 실시하여 지도교사와 학부모 간 상호 이해도 제고 및 소통을 강화하였다.

3) 탈북학생 교육 지원 기반 공고화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영역에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원(하나둘학교) 협력 강화, 둘째, 한겨레중·고 협의회 운영 지원, 셋째, 탈북학생 교육자료 개발·보급, 넷째, 관계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실시되었다. 먼저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영역의 첫 번째 사업으로 입국초기 교육기관인 하나둘학교 재학 학생의 중등학교 취·편입학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학력심의를 하나원 퇴소 전에 실시하였다. 또한, 하나원 하나둘학교에 총 11명(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중국어 등)의 중등 교사와 하나원에 1명의 초등교사를 파견함으로써 하나원 재원 탈북학생들에게 교과학습 지도 및 진로진학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실질적인 정착기학교 적응 준비를 지원하였다.

둘째, 한겨레중·고 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에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입국 초기-전환기 교육 유관기관의 정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교육과정, 학교 운영, 학생 현황 등 자료공유 등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였다.

셋째, 탈북학생 교육자료 개발·보급 사업에서는 탈북학생 교육을 헌신적으로 실천한 개인 및 단체의 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사례집을 보급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 지도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탈북학생 맞춤형 지도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여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한 현장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선도하였다.

넷째,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유관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탈북학생 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 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상시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착근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협의를 추진하였다.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는 탈북학생 교육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였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교육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 개발, 교원 연수, 관계기관 협력 및 상시 현장지원 등의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탈북학생의 남한사회 적응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통일 후 교육통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의 공고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였다.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044-203-6523

제8부 요약

제8부는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다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2017년 기준)은 30.3%로 OECD 국가 평균(47.3%) 보다 낮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 함께 최하위 국가군에 속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등학교 졸업자 중 70%에 달하는 높은 대학진학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실업률(2017년 기준)은 10.3%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6%p 낮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고용률은 27.2%이며, 전체 취업자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취업자 비중은 6.0%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2%에서 2017년 14.0%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 청소년 근로자 중에 절반 이상(51.4%)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5~29세의 졸업자 및 중퇴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로 취업 중인 청(소)년 취업자가 첫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0.7개월로, 2016년 10.2개월, 2017년 10.6개월에 비해 미미하지만,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노동시장 이행기간이 다소 길어졌다.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2년 11월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처우를 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현장에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수도권과 경상권, 전라권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과 8월에 50개 시·도 899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20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위반사례로는 근로계약 미작성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외에 청소년의 창업지원과 청소년고용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창업지원을 위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15~34세)의 창업활동은 22만 6,000개로 전체 창업의 22.9%를 차지하고 있다. 창업업종으로는 통신판매업, 한식음식점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2018년 3월 청년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구직자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고자 하며 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8부 청소년 노동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제3장 청소년의 고용·직업·진로정책



제 1 장 |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2017년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생산가능인구는 594만 6천 명으로 2016년에 비해 16만 4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산가능인구는 2%대의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2014년 동안은 0~1%대로 증가했으나 2015년부터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된 이후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15~24세 청소년의 인구감소 영향으로 청소년의 경제활동인구는 2017년 180만 1천 명으로 2016년 대비 4만 2천 명 감소했으나, 이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대비 0.1%p 상승한 30.3%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26.1%)에 비해 여자(34.3%)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는데, 청소년 남자의 경우 군 입대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지연 등의 영향으로 여성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런데 2017년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0.3%p)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63.2%) 보다 32.9%p 낮은 수준이며, 15~1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9.2%로 나타났다.

다음 <표 8-1-1>에서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33.0%에서 2017년 30.3%로 2.7%p 낮아졌으며 2000년 이후 30%를 유지하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7년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떨어졌고, 2009년에는 25.1%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정책 등에 힘입어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조금씩 회복되어 2017년 현재 30.3%까지 상승하였고, 전연령대와 청소년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2009년 35.9%p → 2017년 32.9%p). 성별 추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2000년 : 2017년 = 28.5% : 26.1%)에 비해 여자 청소년(2000년 : 2017년 = 37.0% : 34.3%)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폭이 더 크다. 이같이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 진학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전문대 포함)은 1995년 51.4%에서 2010년 정점(75.4%)에 도달한 이후 2017년 68.9%까지 하락했으나 2018년에는 69.7%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생산가능인구 ¹⁾	6,949	6,164	5,953	6,053	6,113	6,165	6,180	6,163	6,110	5,946
경제활동인구 ²⁾	2,295	2,075	1,503	1,544	1,617	1,628	1,758	1,841	1,843	1,801
경제활동참가율 ²⁾	33.0	33.7	25.2	25.5	26.5	26.4	28.5	29.9	30.2	30.3
남자	28.5	27.3	20.0	21.0	21.9	22.2	24.4	25.7	25.8	26.1
여자	37.0	39.2	30.1	29.8	30.7	30.3	32.3	33.8	34.3	34.3

주 : 1)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2)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15세 이상 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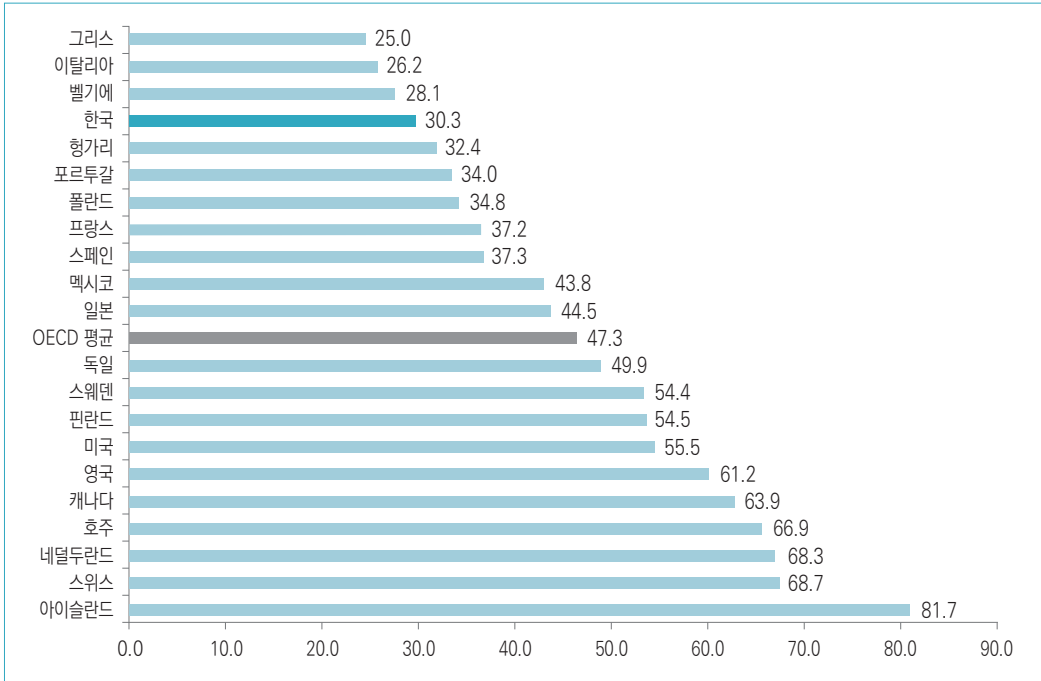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그 비율이 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7년 OECD 국가들 청소년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47.3%로 우리나라보다 17.0%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실업률이 40%를 넘고 있는 그리스를 포함하여 이탈리아, 벨기에와 함께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위국가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OECD 회원국은 아이슬랜드(81.7%)였으며, 다음으로 스위스(68.7%)나 네덜란드(68.3%), 호주(66.9%), 캐나다(63.9%), 영국(61.2%) 등은 OECD 청소년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연령 계층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5~19세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12.0%에서 2009년 6.2%로 저점에 도달한 이후 2014년 8%대로 회복하였고 2017년에는 9.2%를 기록하였다. 20~24세 청소년은 2000년 57.9%에서 2013년 47.6%까지 꾸준히 하락하다가 2014년 49.9%로 소폭 반등한 이후 2016년에는 51.6%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최근 증가추세에서 주춤한 50.6%를 기록하였다. 특히 20~24세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대비 1.3%p 감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20~24세 남자 청소년도 0.7%p 감소하였다.

[그림 8-1-1] 2017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2018).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OECD 회원국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자에 비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다. 이는 우리나라 남자의 경우 의무복무제의 영향으로 대학졸업 시점이 여자보다 늦고, 입영대기로 보내는 시기 등이 있어 여자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에도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등의 국가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OECD 회원국의 청소년 평균 경제활동참가율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남자,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24.9%p, 9.2%p 낮다.

<표 8-1-2>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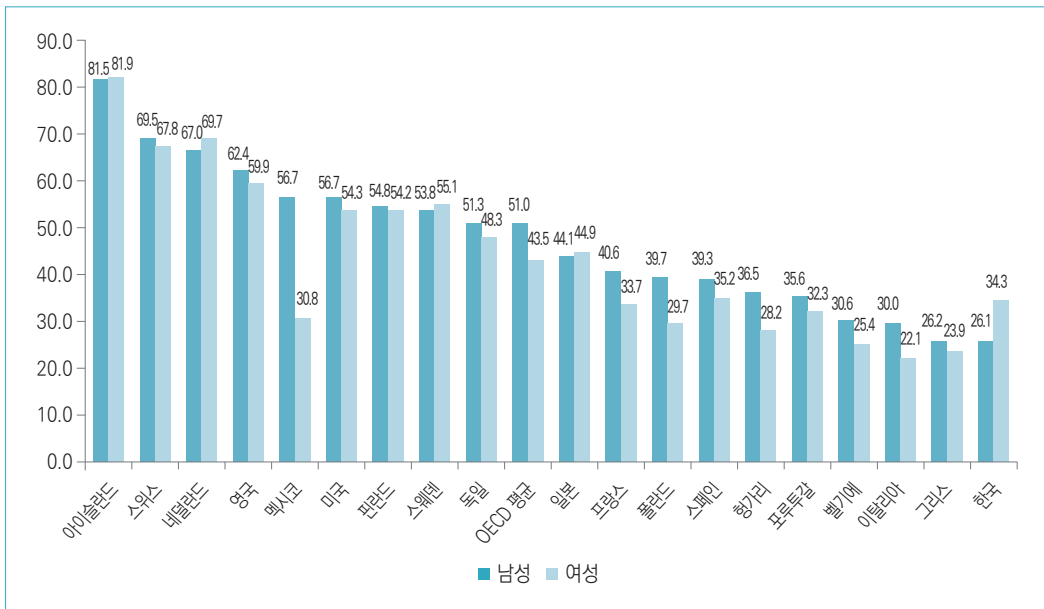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5~24세	33.0	33.7	25.2	25.5	26.5	26.4	28.5	29.9	30.2	30.3
남자	53.1	50.1	42.8	42.3	43.4	42.2	44.4	46.0	45.8	45.1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여자	37.0	39.2	30.1	29.8	30.7	30.3	32.3	33.8	34.3	34.3
15~19세	12.0	9.1	7.0	7.6	7.7	7.7	8.5	8.8	8.8	9.2
남자	11.6	8.1	5.5	6.3	6.3	6.6	7.5	7.7	8.1	8.5
여자	12.5	10.2	8.5	9.0	9.1	8.7	9.4	9.9	9.6	10.1
20~24세	57.9	57.3	48.9	47.9	49.0	47.6	49.9	51.6	51.6	50.6
남자	53.1	50.1	42.8	42.3	43.4	42.2	44.4	46.0	45.8	45.1
여자	61.2	62.6	53.5	52.3	53.5	52.2	54.5	56.3	56.6	55.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그림 8-1-2] 2016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2018), Employment Outlook 2018.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2017년 15~24세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414만 5천 명으로 2016년에 비해 약 12만 3천 명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집 안에서 가사를 맡고 있는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학생, 연료자와 심신장애자 등이 포함된다.

육아와 가사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1.4%로 나타났고, 이는 2016년 대비 0.2%p 감소한 수치이며,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을 통학하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은 21만 8천 명으로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연령대 특성상 비경제활동인구의 85.9%는 학교에 다니거나 학원 수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도 아니면서 취업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를 추려내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15~24세) 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7년 18만 4천 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4.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중 구직단념자는 8만 3천 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현황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비경제활동인구		육아 가사		재학 수강		쉬었음		취업 준비생	
	활동인구	구성비	가사	구성비	수강	구성비	쉬었음	구성비	준비생	구성비
2005	4,090	100.0	93	2.3	3,481	85.1	190	4.6	173	4.2
2010	4,538	100.0	78	1.9	3,887	85.7	138	3.0	186	4.1
2011	4,509	100.0	83	2.0	3,921	87.0	183	4.1	184	4.1
2012	4,496	100.0	79	1.9	3,920	87.2	184	4.1	177	3.9
2013	4,538	100.0	72	1.8	3,955	87.2	186	4.1	192	4.2
2014	4,422	100.0	67	1.6	3,880	87.8	169	3.8	192	4.4

1)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로서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여기서 노동시장적 이유는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 등을 의미함.

연도	비경제 활동인구		육아 가사		재학 수강		쉬었음		취업 준비생	
	인구	구성비	가사	구성비	수강	구성비	쉬었음	구성비	준비생	구성비
2015	4,322	100.0	68	1.7	3,721	86.1	188	4.4	225	5.2
2016	4,268	100.0	67	1.6	3,682	86.3	160	3.7	213	5.0
2017	4,145	100.0	57	1.4	3,562	85.9	184	4.4	218	5.3

주 : 재학, 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과 기관수강 등을 포함. 취업준비생은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과 취업준비를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2017년 15~24세 청소년 취업자는 161만 5천 명으로 2016년 대비 3만 1천 명 감소하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전연령대(60.8%) 보다 33.6%p 낮은 27.2%이다. 전체 취업자(2,672만 5천 명) 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청소년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9.2%에서 2017년 13.5%로 줄어들었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9.7%에서 2017년 6.0%로 감소하였다. 청소년 취업자 비중은 2009년과 2010년에 5.6% 저점을 확인한 후 2014년 6% 대를 회복하였으나 2017년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 취업자 비중이 증가한 데는 2009년 들어 하락하기 시작한 대학진학률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 계층별로 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취업자 중 15~1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0%에서 2017년 15.3%로 3.7%p 감소한 가운데 20~24세의 취업자 비율은 동기간 81.0%에서 84.7%로 증가하였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 취업자 비중이 훨씬 높지만 남자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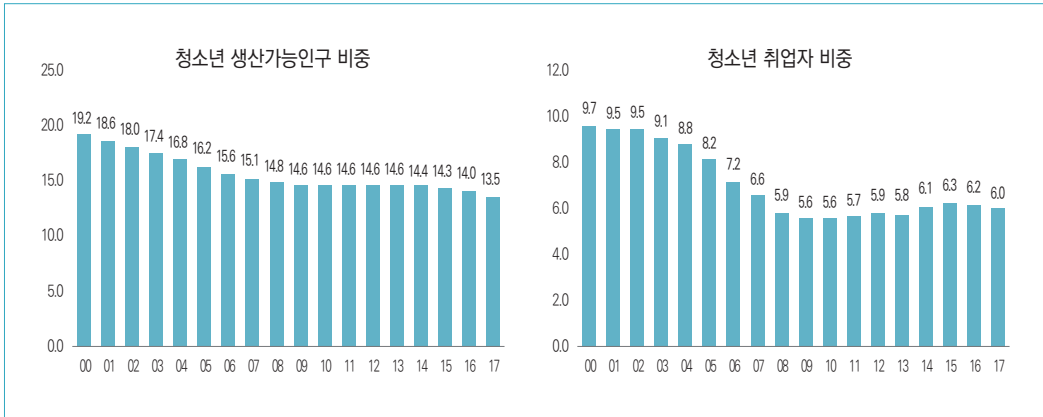
제9부

제10부

부록

[그림 8-1-3]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중 청소년 비중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표 8-1-4>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15~24세	2,047	100.0	1,864	100.0	1,356	100.0	1,647	100.0	1,646	100.0	1,615	100.0
남자	796	38.9	693	37.2	508	37.5	684	41.5	681	41.4	665	41.2
여자	1,251	61.1	1,171	62.8	849	62.6	963	58.5	966	58.7	950	58.8
15~19세	388	100.0	241	100.0	207	100.0	245	100.0	244	100.0	247	100.0
남자	188	48.5	110	45.6	83	40.1	110	44.9	113	46.3	114	46.2
여자	200	51.5	132	54.8	124	59.9	135	55.1	131	53.7	133	53.8
20~24세	1,659	100.0	1,623	100.0	1,150	100.0	1,402	100.0	1,402	100.0	1,368	100.0
남자	608	36.6	583	35.9	425	37.0	574	40.9	567	40.4	551	40.3
여자	1,051	63.4	1,039	64.0	725	63.0	828	59.1	835	59.6	817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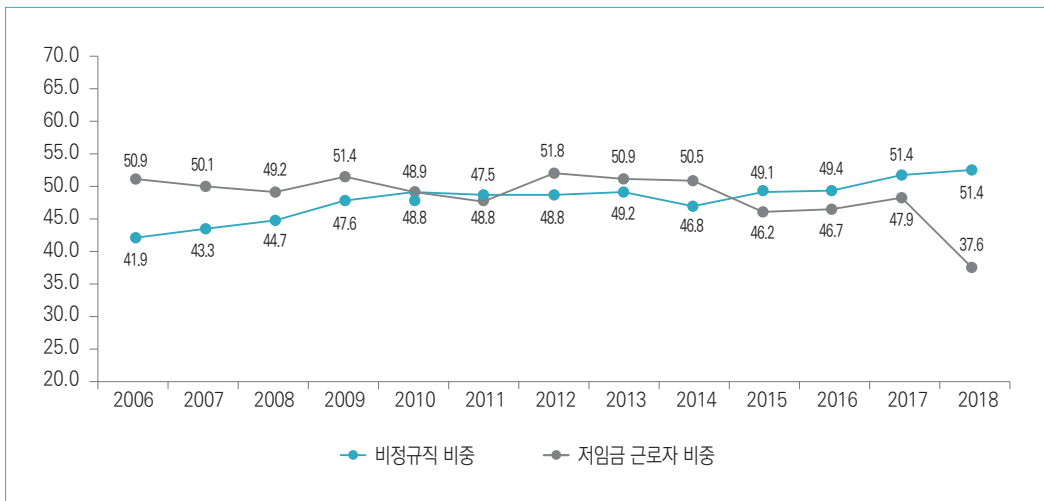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한편 노동시장에 진입한 15~24세 청소년 임금근로자의 51.4%가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 등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3.0%가 비정규직임을 볼 때, 청소년의 비정규직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소년 중 평균임금의 2/3 미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37.6%로 2017년 51.4%에 비해 감소했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²⁾

청소년의 학력별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고졸의 경우 2018년 60.4%로 2017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10명 중 6명이 여전히 비정규직이었으며, 전문대졸은 35.6%로 2017년 대비 0.5%p 하락함으로써 2013년 저점 이후 증가하던 추세가 다소 꺾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졸과 전문대졸 청소년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대비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은 35.6%로 2017년 대비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1-4] 청소년(15~24세)의 비정규직 비중·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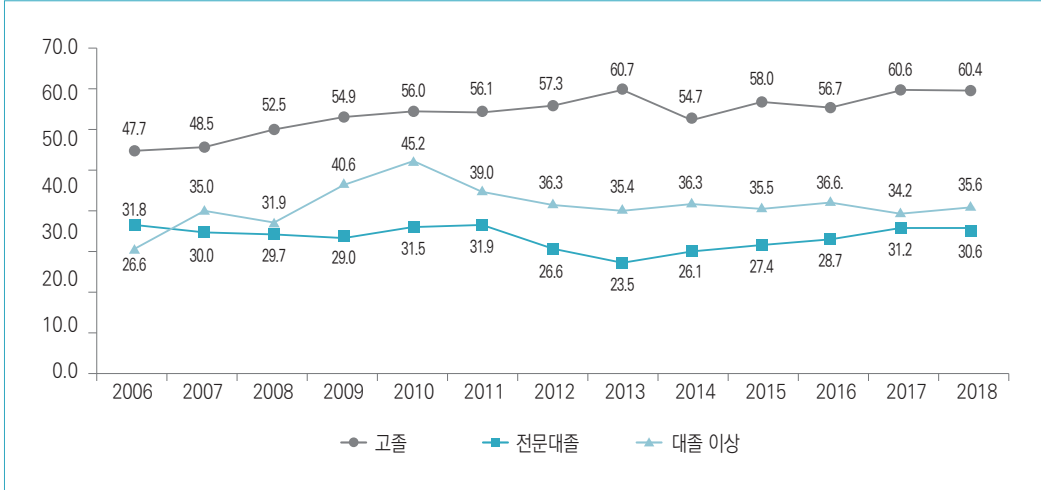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2) 저임금근로자는 시간당 평균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하며,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0%로 나타남

[그림 8-1-5] 청소년(15~24세)의 학력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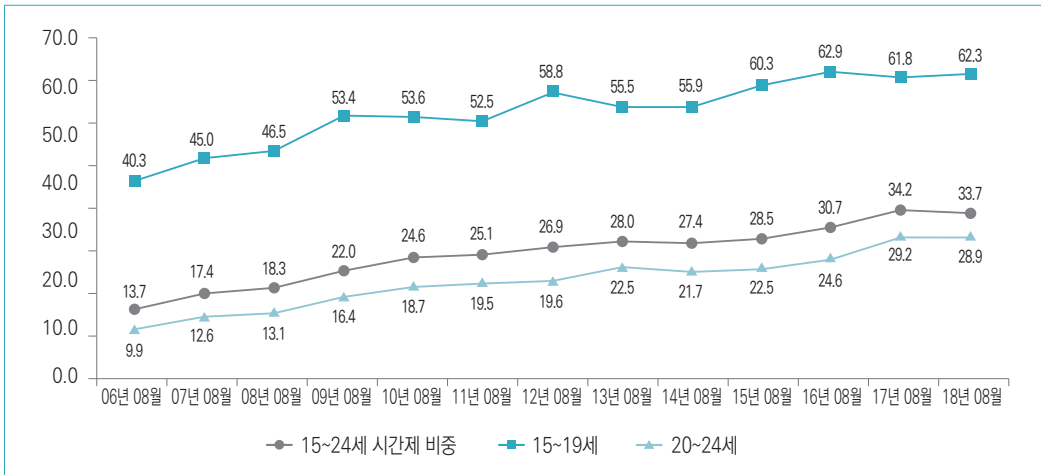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청소년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는 33.7%였으며, 15~19세 연령층 10명 근로자 중 6명 이상이 시간제 근로로 나타나 65세 이상 고령층(50.4%)과 함께 시간제 근로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림 8-1-6] 청소년(15~24세)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2018년 15~29세의 졸업자 및 중퇴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로 취업 중인 청(소)년 취업자가 첫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0.7개월이 소요되어 2016년 10.2개월, 2017년 10.6개월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노동시장 이행기간이 다소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이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6개월 미만이 12.0%, 1~2년 미만이 11.5%, 6개월~1년 미만이 10.8%, 3년 이상이 9.1%, 2~3년 미만이 7.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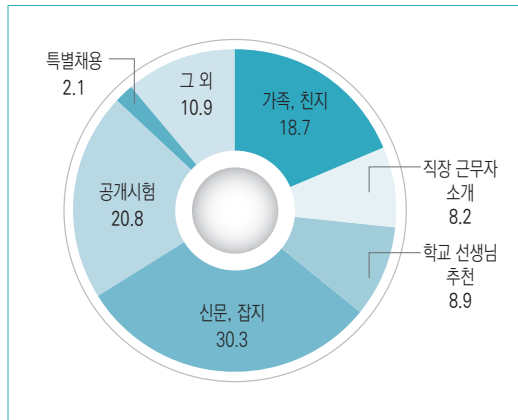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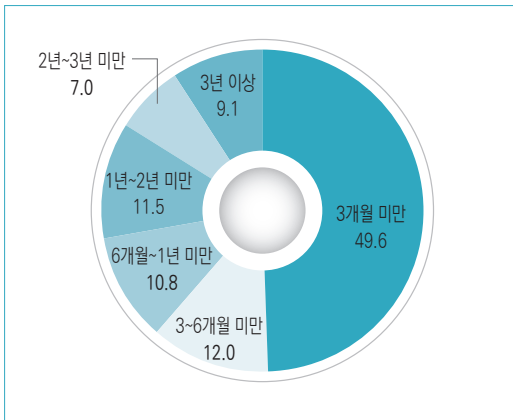
15~29세 청년 취업자의 취업경로를 살펴보면 가족, 친지나 직장 근무자, 학교 선생님 등의 추천을 통한 이른바 ‘연고취업’이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신문·잡지·인터넷 등 응모 30.3%, 공개채용시험 20.8% 순으로 나타났다. 연고취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족, 친지의 소개나 추천이 18.7%로 가장 높고, 학교 선생님 추천 그리고 직장 근무자의 소개나 추천이 각각 8.9%, 8.2%로 나타났다.

[그림 8-1-7]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그림 8-1-8]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단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18년 5월)」.

자료 :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18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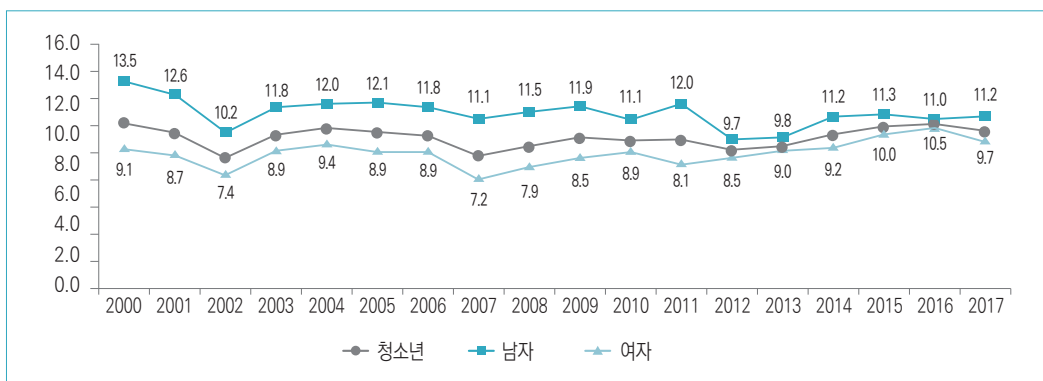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2017년 청소년 실업자는 18만 6천 명, 실업률은 2016년 대비 0.4%p 하락한 10.3%이다.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11.2%로 전년대비 0.2%p 상승한 반면 여자 청소년 실업률은 9.7%로 전년대비 0.8%p 하락하였고,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여자에 비해 다소 높다. 2017년 전체 실업률(실업자 102만 3천 명)이 3.7%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실업률은 이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률이 급증해 2006년까지 1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다 2007년 8%대로 떨어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9.9%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4년에 10%대에 재진입하는 등 청소년 실업률은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7년 현재 10.3%이다. 청소년의 높은 실업률은 여자보다는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02년 10.2% 이후 줄곧 11~12%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 2013년에 각각 9.7%, 9.8%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대로 재진입한 이후 2017년은 전년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2007년(7.2%)이래 상승하다가 2011년 8.1%로 잠시 하락한 이후 다시 상승해 2016년 10.5%로 나타나 성별 청소년 실업률 격차가 0.5%p까지 좁혀졌다. 그러나 2017년 남자 청소년 실업률이 증가한 반면 여자 청소년 실업률 전년대비 0.8%p 하락하면서 성별 실업률 격차는 1.5%p로 다시 확대되었다.

[그림 8-1-9] 연도별 청소년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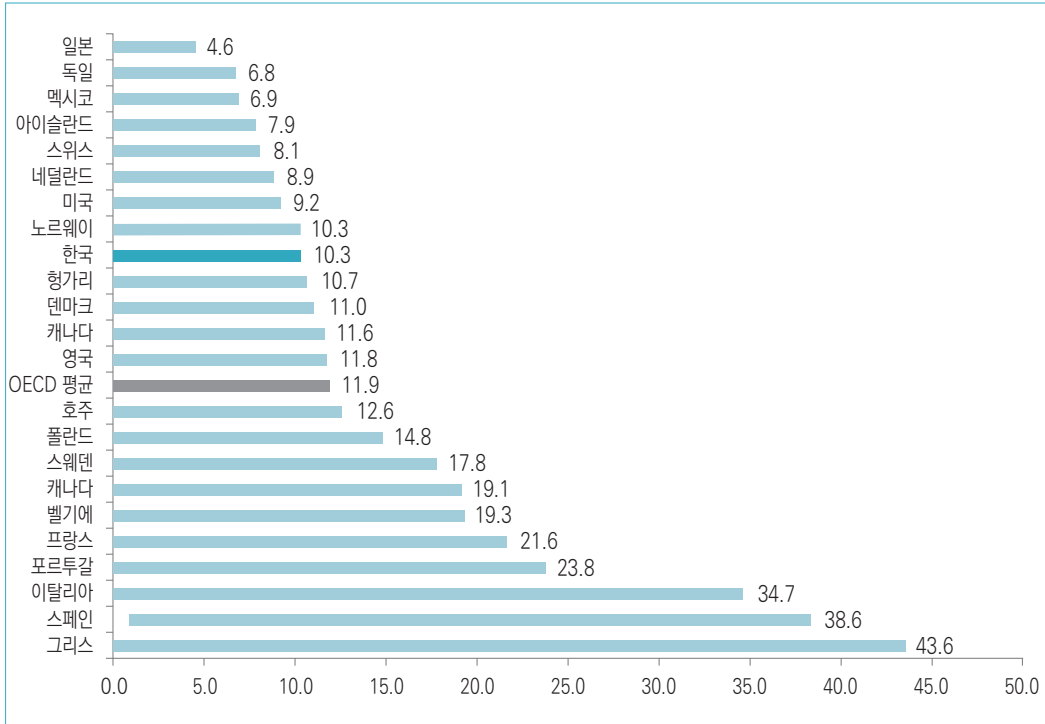
주 :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하므로 청소년을 15~24세로 하였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었음.

2)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그림 8-1-10] 2017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2018). Employment Outlook 2018.

2017년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은 OECD 회원국 평균(11.9%)보다 1.6%p 낮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실업 문제가 최대 사회 현안 중 하나인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청소년 실업률이 각각 43.6%, 38.6%, 34.7%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산학협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비교적 원활한 독일, 스위스 및 일본은 각각 6.8%, 8.1%, 4.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제활동참여율이 OECD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규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표 8-1-5〉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15~24세	249	10.8	211	10.2	146	9.7	194	10.5	197	10.7	186	10.3
남자	124	13.5	96	12.1	64	11.1	87	11.3	84	11.0	84	11.2
여자	125	9.1	115	8.9	83	8.9	107	10.0	113	10.5	102	9.7
15~19세	66	14.5	34	12.3	28	11.9	29	10.6	27	10.0	23	8.7
남자	34	15.2	16	13.0	15	15.1	13	10.4	14	10.9	12	9.8
여자	32	13.8	18	11.7	13	9.6	16	10.7	13	9.2	11	7.7
20~24세	183	9.9	177	9.8	119	9.4	165	10.5	170	10.8	163	10.6
남자	90	12.9	79	12.0	49	10.3	74	11.5	70	11.0	72	11.5
여자	93	8.1	97	8.6	70	8.8	90	9.8	100	10.7	9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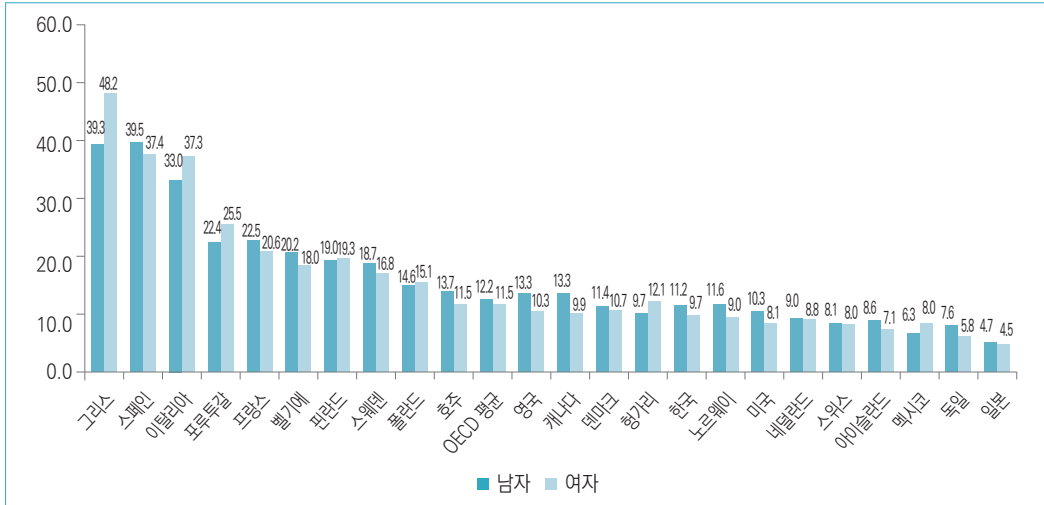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연령 계층별로 청소년 실업률을 살펴보면, 20~24세가 10.6%로 15~19세(8.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4세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11.5%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15~24세의 남자 청소년 실업률은 11.0%에서 11.2%로 0.2%p 상승하였고, 여자 청소년 실업률은 10.5%에서 9.7%로 0.8%p 하락하였다. 15~19세의 남자 청소년 실업률은 9.8%로 2016년도 대비 1.1%p 하락하였지만, 20~24세 남자 청소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5%p 상승하였다. 15~19세의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전년의 9.2%에서 7.7%로 1.5%p 하락하였고, 20~24세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10.7%에서 10.0%로 0.7%p 하락하였다.

OECD 회원국 청소년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은 남부 유럽국가인 그리스, 스페인의 경우 청소년 실업률은 30~4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탈리아도 30% 중반대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독일, 일본 등은 OECD 평균(전체: 11.9%, 남자: 12.2%, 여자: 1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청소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남녀 청소년 실업률은 모두 4%대 중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1-11] 2017년 성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2018). Employment Outlook 2018.

5 임금 및 노동시간

2017년 청소년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를 합한 기준으로 183만 원으로 2016년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의 월 평균 임금이 156만 3천 원으로 2016년 대비 13.5%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4세는 185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2.0% 상승하였다. 청소년 연령별 임금증감률을 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근로조건이 외부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준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명목임금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상승하였는데, 지난 3년간의 명목임금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1년 큰 폭의 증감이 있었으나 이후 증감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2015년에는 월 평균 임금이 전년대비 3.6% 하락하였고, 2016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었으나 2017년에는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³⁾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월평균 임금 기준)'에서도 15~19세 청소년의 임금은 2017년에 전년대비 3.0%p 상승한 8.4%를 기록했으며, 20~24세 청소년의 임금상승률 2.6% 보다 큰 폭이었음이 확인되었음.

다음으로 2017년 20~24세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179만 원, 전문대졸의 경우 182만 4천 원, 대졸 이상은 201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2001년 고졸자와 전문대졸자간의 상대임금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99.9%) 2012년에는 94.9%까지 확대되었고, 이후 상대임금수준이 좁혀져 2017년에는 98.1%로 나타났다. 최근 2015년 이후 고졸자와 전문대졸자 간의 상대임금수준 격차가 소폭 확대되고 있다. 대졸이상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학력별 상대임금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자 88.8%, 전문대졸업자 90.5%로 전년대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대졸이상자의 임금상승폭이 다른 학력집단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20~24세 청소년의 학력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2017년 대졸 이상자의 임금상승폭은 5.3%로 2016년 대비 3.3%p 상승한 가운데 고졸과 전문대졸자의 경우는 각각 1.0%, 1.3%로 임금상승폭이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1-6)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 천원, %)

구분	임금수준		증감률	
	19세 이하	20~24세	19세 이하	20~24세
2001	792	877	10.8	5.3
2005	1,059	1,200	8.8	7.9
2010	1,022	1,427	-7.6	3.3
2011	1,267	1,575	24.0	10.4
2012	1,363	1,618	7.6	2.7
2013	1,398	1,672	2.6	3.3
2014	1,429	1,748	2.2	4.5
2015	1,377	1,763	-3.6	0.9
2016	1,377	1,819	0.0	3.2
2017	1,563	1,855	13.5	2.0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 천원, %)

구분	임금수준			증감률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2001	868	869	994	4.6	5.6	8.4
2005	1,174	1,190	1,306	7.2	8.4	7.2
2010	1,365	1,403	1,563	2.3	2.8	3.3
2011	1,523	1,548	1,712	11.6	10.3	9.5
2012	1,536	1,618	1,768	0.9	4.5	3.3
2013	1,605	1,667	1,808	4.5	3.0	2.3
2014	1,746	1,714	1,800	8.8	2.8	-0.4
2015	1,725	1,726	1,876	-1.2	0.7	4.2
2016	1,772	1,801	1,914	2.7	4.3	2.0
2017	1,790	1,824	2,015	1.0	1.3	5.3

주 : 20~24세 이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2017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휴일근로일수 포함)는 21.0일이며 19세 이하(20.0일)에 비해 20~24세(21.1일)가 1.1일 길다. 장시간근로관행 축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영향과 저성장세 지속의 영향으로 월평균 근로일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10년 22.5일에 달하던 월평균 근로일수가 2017년 21.0일로 1.5일이 감소하였으며, 월평균 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포함) 역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0년에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192.8시간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174.5시간으로 6년 동안 18.3시간이 감소하였다. 2017년의 경우 19세 이하 청소년 노동시간(165.0시간)이 20~24세(175.5시간) 보다 10.5시간 짧았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8〉 연령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도	연령별	전체		남자		여자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2010	전체	22.5	192.8	22.5	195.7	22.5	186.9
	19세 이하	19.8	163.5	19.7	165.4	19.9	162.2
	20~24세	22.5	189.9	22.6	200.3	22.4	184.9
2011	전체	22.2	189.3	22.2	192.7	22.2	182.4
	19세 이하	20.7	172.6	20.3	172.6	20.9	172.6
	20~24세	22.1	187.9	22.4	200.0	22.0	181.5
2012	전체	21.4	182.3	21.4	185.8	21.3	175.7
	19세 이하	20.1	170.5	19.7	166.9	20.4	172.7
	20~24세	21.3	181.6	21.7	194.3	21.1	174.9
2013	전체	20.7	175.3	20.9	186.2	20.5	169.2
	19세 이하	19.7	165.6	19.9	174.4	19.6	159.5
	20~24세	20.8	176.3	21.1	187.6	20.6	170.1
2014	전체	20.5	173.8	20.7	182.8	20.4	168.5
	19세 이하	19.1	161.5	19.5	168.9	18.9	155.0
	20~24세	20.7	175.1	20.9	184.7	20.5	169.7
2015	전체	21.8	178.3	22.0	184.4	21.7	174.5
	19세 이하	20.2	158.8	20.8	164.9	19.6	151.9
	20~24세	22.0	180.3	22.2	187.2	21.9	176.2
2016	전체	21.2	177.0	21.4	184.3	21.1	172.4
	19세 이하	19.2	155.5	20.0	165.4	18.4	144.4
	20~24세	21.4	179.4	21.7	187.2	21.3	174.8
2017	전체	21.0	174.5	21.4	182.7	20.8	169.1
	19세 이하	20.0	165.0	20.6	175.5	19.4	155.6
	20~24세	21.1	175.5	21.4	183.6	20.9	170.3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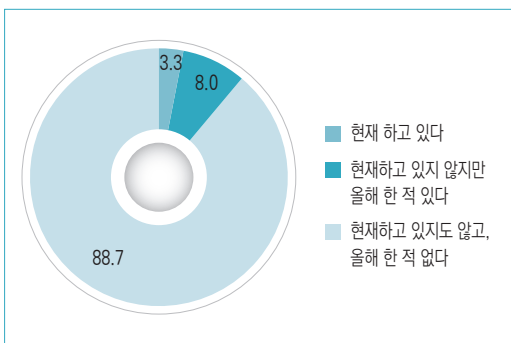
6 청소년 아르바이트

2018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15~24세 청소년 중 시간제 근로자는 33.7%로 나타나 청소년 10명 중 3명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생활과 직업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는 많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매체, 행위, 약물, 업소, 근로보호 및 사회 인구학적 배경 등 총 6개 영역을 15,54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11.3%이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나 용돈 마련 등 경제적 목적이 가장 컸다.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50.0%)’가 가장 높았으며, 여기에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번다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어서(14.7%)’ 등을 포함하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64.7%를 차지한다. 한편 경제적 이유보다는 ‘스스로 사회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전체 응답 청소년의 약 19.4%로 나타났다.

[그림 8-1-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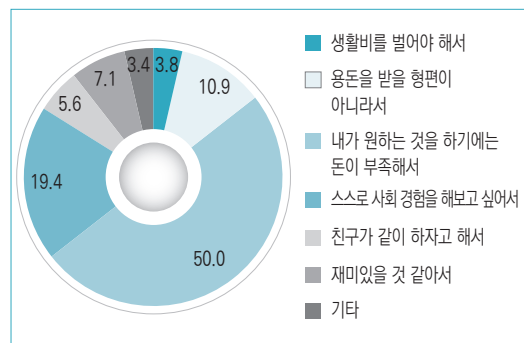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그림 8-1-13]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2016년)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청소년이 2016년 한 해 동안 가장 장기간 일한 아르바이트는 서빙/주방관련 일(68.6%)로 주로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한 것이며, 사무보조업무는 1.3%에 불과했다. 이런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은 주로 친구 또는 선후배 소개(55.4%)로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26.2%), 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소개(13.5%) 순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평균 근속기간은 '1~6일' 단기 아르바이트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도 14.1%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근무일수는 2.8일로 주당 2일이 가장 많았으며, 5일 이상 근무하는 청소년은 20.0% 정도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은 6.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기준은 시급으로 받았다는 응답이 약 72.1%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급여 수준은 평균 6,575원이었으며 7,000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 청소년의 약 16.7%를 차지하였다.

〈표 8-1-9〉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 및 근로조건 현황(2016년)

(단위 : %)

아르바이트 업종	매장관리	서빙/주방	생산/기능	사무/회계	기타
근속기간	1~6일	7일~1개월 미만	15일~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35.6	15.9	22.0	12.4	14.1
급여기준	시급	일당	주급	월급	기타
	72.1	14.6	3.1	7.1	3.1
급여금액 (시급기준)	6,030원 미만	6,030원	6,030원~7,000원 미만	7,000원	7,000원 초과
	25.8	15.0	33.0	9.5	16.7
근로시간 (하루기준)	2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4~6시간 미만	6~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0.9	8.4	32.3	22.5	36.0

자료 :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제활동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최근 1년간 노동인권 등 근로 권익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우는 26.5% 불과하며 73.5%가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라는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업무내용,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10명 중 4명 정도였으며,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절반 이상(59.3%)이었다. 청소년의 72.5%가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2016년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 미만을 받는 청소년이 25.8%이었으며,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는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기도 하고, 초과근무를 요구(16.9%)받고도 초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6.6%)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다양한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각종 부당한 처우에 대해 ‘참고 계속 일했다’는 비중이 6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을 그만두었다(21.1%)’, ‘묻고 따졌다(11.0%)’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는 0.8%에 불과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귀찮고 번거로워서(42.3%)’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신고, 항의를 해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7.8%)’,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3.7%)’, ‘보복이 두려워서(0.9%)’ 응답도 있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항의나 신고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29.9%나 되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대다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하며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 등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2 장 |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2018년도 우리나라의 중학교 신규졸업자(2018년 2월 졸업자)는 457,771명이었으며, 대부분(99.7%)이 고등학교 및 기타 학교로 진학하였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진학자 중 중졸 취업 인구수는 2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천 3백여 명은 무직 혹은 미상자이다. 한편 진학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비율이 70.6%로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특성화고 진학률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일반고 진학률을 보면 남자(68.1%)에 비해 여자(73.4%)의 일반계 고교진학률이 높았다.

〈표 8-2-1〉 2018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수		진학자												
			총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기타	
	계	여	비율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총계	457,771	217,878	99.7	456,407	217,220	323,236	159,959	81,894	35,645	21,102	10,510	27,081	9,618	3,094	1,488
국립	1,537	728	99.8	1,534	726	940	456	340	169	77	42	174	58	3	1
공립	375,668	179,526	99.7	374,537	178,990	265,759	131,752	66,384	28,840	17,556	8,878	22,285	8,249	2,553	1,271
사립	80,566	37,624	99.7	80,336	37,504	56,537	27,751	15,170	6,636	3,469	1,590	4,622	1,311	538	216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연보.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2018년도 고등학교 신규졸업자는 566,545명이었으며, 이 중 취업자는 52,359명으로 취업률은 30.7%이다. 2017년 취업률 33.9%에 비해 3.2%p 하락한 것이다. 이는 무직자/미상이 증가한 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고교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특성화고가 65.1%로 취업률이 가장 높고 이어서 특수목적고 53.9%, 일반고 9.7%, 자율고 3.5% 순이었으며, 특수목적고와 자율고의 취업률은 2017년 대비 상승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자는 상당수가 재수생으로 추정된다. 특성화고 신규졸업자들 중 진학자와 취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취업자 비율(65.1%)이 진학률(36.0%)보다 훨씬 높은 편이지만, 2017년 취업률(74.9%)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34.9%)에 비해 여자(37.5%)의 진학률이 소폭 높다.

〈표 8-2-2〉 2018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무직자/ 미상	입대자	특수학교 전공과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전체	566,545	271,222	394,923	200,278	69.7	73.8	52,359	30.7	117,528	1,047	688
일반고	407,600	203,864	316,559	164,630	77.7	80.8	8,756	9.7	81,358	484	443
특수목적고	22,818	11,681	13,160	8,383	57.7	71.8	5,187	53.9	4,412	32	27
특성화고	91,886	39,638	33,072	14,854	36.0	37.5	37,995	65.1	20,137	489	193
자율고	44,241	16,039	32,132	12,411	72.6	77.4	421	3.5	11,621	42	25

주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100.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연보.

3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2018년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들의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졸업자 2,453명 중 취업자는 132명에 그쳐 진학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취업률은 5.8%에 불과했다.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에 비해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특수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여자(6.8%)에 비해 남자(8.5%)의 취업률이 높다.

〈표 8-2-3〉 2018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및 미상		취업률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합계	2,453	823	173	59	132	52	767	259	5.8	6.8
시각장애	140	61	58	23	19	7	17	11	23.2	18.4
청각장애	116	41	39	14	24	8	26	13	31.2	29.6
정신지체	1,850	604	43	12	77	36	638	199	4.3	6.1
지체장애	210	83	15	8	5	1	72	32	2.6	1.3
정서장애	137	34	18	2	7	0	14	4	5.9	0.0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연보.

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상황

고등교육기관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17년 2월+2016년 8월 졸업자)는 57만 4,009명으로 2016년 대비 6,686명이 감소하였다. 건강보험DB와 연계해서 본 취업률은 취업대상자 51만55명 중 33만 7,899명이 취업하여 2016년 67.7%보다 감소한 66.2%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69.8%로

일반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62.6%보다 높았으며, 기능대학과 교육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6년 84.5%에서 11.6%p나 감소한 72.9%로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2016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산업학교와 각종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6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 남자 졸업자의 취업률이 여자에 비해 높았으며, 2011년 성별 취업률 격차가 6.2%p로 벌어진 이후 그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였으나,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과 일반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남자의 취업률이 여자보다 높은 반면 전문대 졸업자는 여자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8-2-4〉 2017년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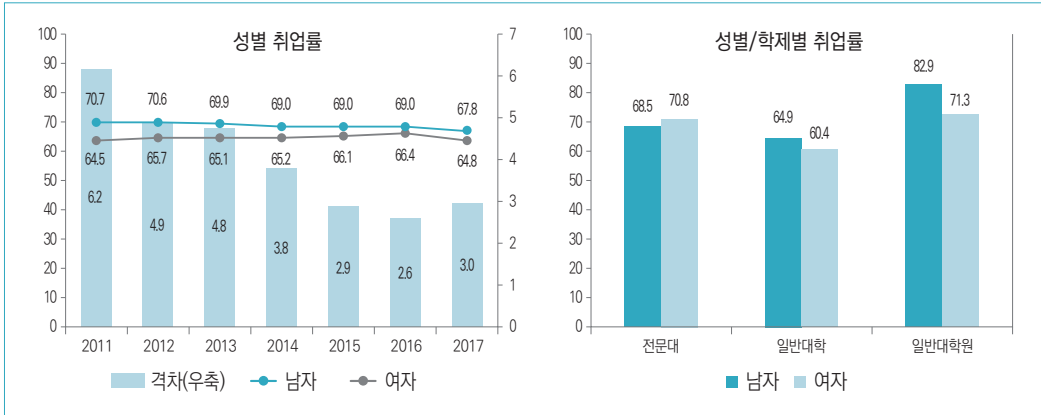
구분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전체	574,009	510,055	337,899	66.2
전문대학	171,210	154,031	107,543	69.8
대학	335,646	299,522	187,480	62.6
교육대학	3,857	3,674	2,679	72.9
산업대학	9,270	8,864	5,995	67.6
각종학교	577	470	265	56.4
기능대학	7,372	6,958	5,532	79.5
일반대학원	46,077	36,536	28,405	77.7

주 : 취업률 = (취업자/취업대상자) × 100.

자료 : 교육부(2018).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그림 8-2-1] 고등교육기관 성별, 성별·학제별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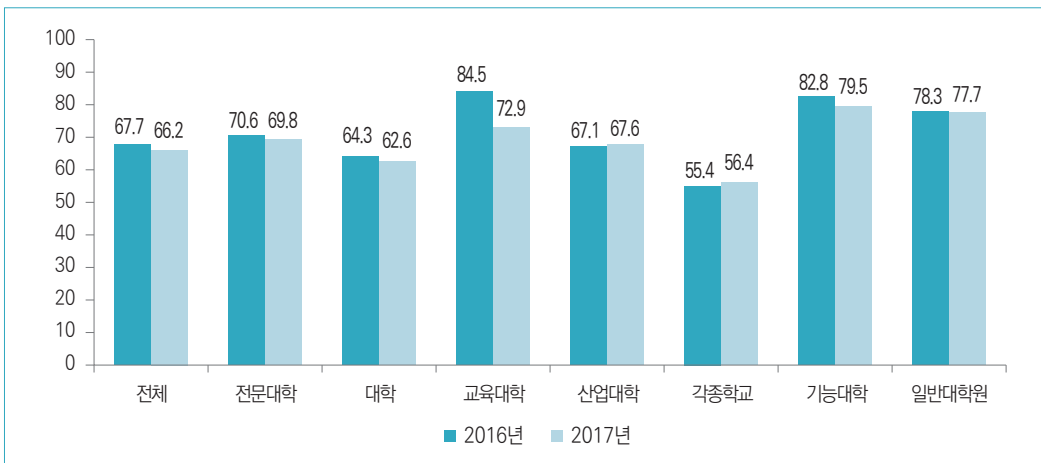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교육부(2018).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그림 8-2-2]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취업률(2016년·2017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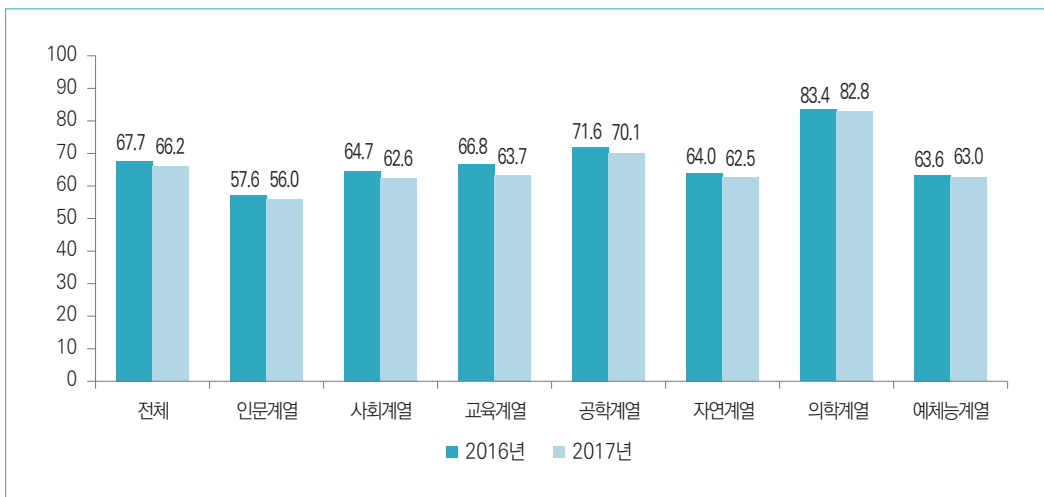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2018).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률을 보면 2016년에 비해 모든 계열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계열 2017년 졸업자의 취업률이 8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공학계열(70.1%), 교육계열(63.7%), 예체능계열(63.0%), 사회계열(62.6%), 자연계열(62.5%), 인문계열(56.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계열 취업률이 2016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의학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계열에서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일반대 졸업자의 취업률보다 높았으며, 교육계열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67.2%)와 일반대 졸업자(50.4%)의 취업률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학제·계열별 가장 낮은 취업률은 일반 대학 교육계열 여성 졸업자(47.7%)였으며, 교육계열 중에서도 중등교육 여성 졸업자의 취업률은 31.6%로 가장 저조한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2-3]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취업률(2016년·2017년 비교)

(단위 : %)



자료 : 교육부(2018).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제3장 | 청소년의 고용·직업·진로정책

1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가.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정부는 2005년 6월 20일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은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종합적·체계적인 보호대책으로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의 강화방안,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의 제고방안,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방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연소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성과점검을 통한 평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8년 6월 「연소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2012년 11월)」을 마련하고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신고체계 구축,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홍보실시, 사업주들의 법 준수 의식 확립 및 청소년들도 노동관계법을 인지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에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2014. 5)」을 마련하였는데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제재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취업사이트 등에 제공하고, 또한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사례에 대해 24시간 문자상담(#1388) 제공 및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의 부당처우를 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현장에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편성, 수도권 외에도 경상권, 전라권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현장 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중재해결하고 있으며, 권익침해 사례 및 성희롱·폭언·폭행 등이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신고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여건, 사유 등을 파악하여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과 연계하고,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해서는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상담 32,882건 및 중재해결 18,112건으로 집계되었다.

나.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정부는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의거해 연중 4회 이상 감독을 실시하는 등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사업장의 10%는 확인감독을 실시하여 반복적인 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방학시점에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업체별 위반율을 발표함으로써 법 위반 예방 및 청소년 근로조건 개선효과를 꾀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와 청소년 리더들의 활동을 통하여 법 위반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과 8월, 50개 시·도 899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202건의 위반사건을 적발하였다. 적발사건을 살펴보면,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명시 위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고지,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었으며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업주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방안(2014. 5.)」에 의거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근로가 제한되며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서면근로계약 교부의무 위반,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의무 위반 시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기준을 2014년 8월부터 강화하였다. 아울러 방학기간동안 실시되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감독과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이 아닐 때도 PC방이나 주점 등과 같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을 감독할 방침이다.

다.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 제고

정부는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주, 각급학교 교사 및 학생 등에 대한 연소근로자 근로관련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진로상담 교사에 대해 청소년 근로 및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연소자 근로조건 및 피해사례별 구제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외의 종합대책에서는 사례별 구제방법 지정, 직업교육 연구시범학교 워크숍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전문계 고교 CEO 연수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은 관련 교과와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전문계 고교 및 평생직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인문계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중·고교생 대상 일터 현장체험 프로그램인 잡 스쿨(Job School) 운영 시 학생에 대한 직업의식 및 법정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교실 운영 시 취업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교실에는 경찰서장 등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범죄예방교실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 순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랑의 교실,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1:1 집중상담이 진행되는 상담교실 등이 있다. 한편,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다수고용업종 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연소자 근로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2018년에는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제고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외에도 청소년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으로 근로권익 전문강사를 파견, ‘찾아가는 노동권익 교육’을 실시·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법령, 부당처우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근로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 권익침해 유형별 노동법·사회보험·민사법 등 법률제도 및 구제절차, 행정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모바일 앱,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등)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건전한 직업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통해 유관기관,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주 협회 등과 협약 체결, 온라인 사이트 운영, 지역 청소년단체와 공동 캠페인 전개, 팸플릿·포스터 제작·배포 등 중·고등학교 및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정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매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2006년에 구축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관련 싸이월드 타운 홈페이지에 이어, 2008년 3월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고 블로그 이웃맺기 이벤트, 오행시 콘테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령 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2010년부터는 청소년 스스로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정책프로슈머가 될 수 있도록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를 선발하였고, 월별 홍보미션을 부여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노동관계법령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청소년 리더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이 연계해 지역 밀착형 홍보를 전개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알바십계명 홍보를 위한 ‘알·지·최·서·방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활용해 청소년 근로권익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2013년에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중·고·대학생을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45개 팀 220명)’로 선발하여 또래 집단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블로그 개설 및 운영, 교내 홍보활동, 가두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참여도와 홍보 효과를 높였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267개 단체, 1만 8천여 명 활동)을 활용하여 편의점, 카페,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길잡이 책자를 배포하여 업주의 청소년 근로자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노동관계법·청소년 보호법 제도 및 캠페인 활동을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민·관 협업체계(경찰청, 지자체 등)를 구축하여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등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청소년층의 진로·직업·진학·취업가이드, 직업심리검사, 청소년 직장체험, 진로와 직업 이러닝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잡영(jobyoung)을 통해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워크넷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소근로자들이 권리구제방법을 몰라서 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1318 알바신고센터'를 2011년 도입하였다.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알바신고센터를 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는 1318 알바신고센터에 배치된 전담교사(생활지도교사 등)가 수집된 피해사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총 47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면, 근로감독관은 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2년 12월에는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구축하고 전국노동관서에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48명)을 지정하는 등 청소년들이 실시간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였다.

최근에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퇴 전문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반기별 130명)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역별 알바신고센터(10개소)를 지정·운영해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국공인노무사 131명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무료로 권리구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취업지원센터)에 제출된 현장실습 현황자료를 활용해 지방고용청별로 현장실습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보다 많은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침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3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방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4

2 청소년 창업지원 대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창업활성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취업난에 따른 고학력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의 해결책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개척하는 창직(創職)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도래로 민간 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따라서 창업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창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업 활력 또한 저하되었는데, 기업가정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업기업의 등장은 창업기업에서의 일자리창출에 그치지 않고 경제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우수한 청년창업가 발굴양성’이나 ‘원활한 제도전 환경조성’을 추진과제로 명시하여 청년일자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창업교육에서부터 시설공간제공, 멘토링·컨설팅, 사업화지원, R&D, 판로·마케팅·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정책자금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청년창업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조 5백억 원의 예산(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포함)을 바탕으로 창업 초기 운영자금과 창업에 필요한 멘토링,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대상이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기업당 1억 원 이내에서 6년간 지원한다. 일반창업기업지원과 달리 청년 전용창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운영하며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을 결정(용자상환금 조정형)한다. 창업기업자금은 2016년 10월말 기준 신청기업 12,920개사 중 9,299개사가 선정·지원되었다.

창업성공패키지(구,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청년CEO들의 원활한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화과정 및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예비)창업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공간(개별·공동) 제공에서부터 전문 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코칭,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교육, 제품설계(CAE·역설계 등),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관련 기술 및 장비 지원, 1년간 최대 1억 원 총 사업비의 70%이내 사업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관학교 졸업기업에는 성장 촉진을 위한 신속 지원 프로그램(Fast-track)도 제공되어 창업과 관련한 제반 지원을 제공한다.

2014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17개 지역의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자금에서부터 법률, 회계, 기술 등 창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데 지역주도로 선정된 특화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창업인턴제는 2014년 중소기업청이 청년창업가 발굴 및 양성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우수한 청년 예비 창업가가 유망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으로 근무한 이후 벤처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턴참여자는 선배 창업가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인턴채용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인턴참여자와 인턴기업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창업플랫폼이다. 2014~2016년 동안 총 216명에게 지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창업 절차를 모르는 경우에는 각 대학에 마련된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예비)창업기업에 사무 공간 제공 및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이나 연구소가 사업자로 지정받는데 2016년 말 기준 266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ion: BI)가 지정되어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창업 관련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사한 사업으로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창업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 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사업이 있다. 전국적으로 65개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운영 중이며, 2016년 9월 말 기준 2,103개사에 경영자문 870건, 교육 4,885건을 지원하였다.

2015년 정부는 「창업지원사업 효율화방안(2015. 10. 14.)」을 발표하고, 복잡한 창업지원 사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바 있다. 유사 목적·방식의 사업들을 통합(9개 → 72개)하고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K-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연계해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분야 지원 사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8개 범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K-스타트업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정부의 성장 단계별로 주요 지원 사업정보(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마케팅·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에서 원스톱 서비스, 전국 12개 벤처·창업 입지정보, 창업기초·창업실전·창업특화 등 창업단계별 온라인 창업 강좌, (예비)창업자의 사업역량과 사업 아이템에서 부족한 점을 스스로 진단 및 보완할 수 있는 창업역량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창업교육 분야로는 청소년 비즈쿨, 창업 아카데미,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청소년 비즈쿨은 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의 경우 448개교(초등 124개, 중등 109개, 고등 202개, 특수학교 13개)에서 특강, 캠프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창업아카데미는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에게 실전형 창업교육, 멘토링 지원, 네트워킹 조성 등 창업을 위한 기초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창업강좌 115개에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는 앱/웹, 콘텐츠, SW, 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만 39세 미만의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에게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창업교육, 개발 멘토링 및 마케팅 등 창업 및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의 경우 전국의 4개 창업학교에서 170개 창업팀을 지원하였다. 창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업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는 창업 대학원은 2016년에 5개 대학원에 9억 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대학의 풍부한 자원 극대화를 통해 교육, 네트워크, 연구개발을 통한 창업모델 도입·확산을 목표로 하는 대학기업가센터,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업을 대상으로 체험형 창업교육과 사업 아이템의 시장검증, 시제품 구체화 등 초기사업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창작터도 중요한 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키 위한 '창업선도대학육성',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CEO 발굴과 전 국민 창업분위기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창업리그', 대학·연구소의 일정지역을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하여 공장 설치를 허용하고, 각종 특례제도 등을 통해 신기술창업을 촉진키 위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제도', 도심 내 벤처기업의 입주 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일정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세제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문제를 핵심정책으로 다루고 있어 2019년 창업지원사업 규모는 2018년 대비 43% 증가한 1조 1,180억 원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창업가, 투자가 등 혁신 주체가 교류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기반의 스타트업 파크 조성, 지역 내 청년창업촉진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청년CEO들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교육, 시제품개발, 제품판매 등 사업화과정 및 투자유치, 정책자금 용자 등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구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7년 470명(팀)에 지원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청년상인 집적지구인 청년몰 조성으로 청년인력의 신규 고용창출 및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청년몰 12곳이 조성되었다.

2017년 국제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15~34세)의 창업활동은 22만 6천 개로 전체 창업의 22.9%를 차지하는 가운데 통신판매업, 한식음식점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청년창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청소년고용촉진대책

가. 청년고용촉진 대책 수립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기별 청년고용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종합대책, 부문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왔다. 2003년에는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해외취업 등 장단기 대책을 종합한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2005년에는 학교-노동시장 간 이행 원활화에 중점을 둔 「청년고용촉진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었다. 2006년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취업촉진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고졸이하 학력 청년층의 실업자가 전체 청년실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실업률도 전체 청년실업률보다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2007년도에는 그간의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청년고용장려금사업’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청년학생층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학교의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 취약청년층을 위한 고용지원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 들어서서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무대를 국내노동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성장을 주도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산·학·관 협약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취업으로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 친화적 일자리지원, 직업체험 확대,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청년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청년실업 대책차원에서 「청년고용 추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말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향후 2년간 청년친화적 일자리 7만 개 이상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2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계발과 재도약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2013년 10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청년 나이를 만 34세로 상향조정해 30대 미취업자들의 취업기회 제한을 해소하였다. 청년고용지원정책 일환으로 ‘청년취업 인턴 제도’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2014년 4월에는 「일자리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에 주력하며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기활성화, 5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7월에는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아울러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청년 고용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해소,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라는 3가지 추진과제를 통해 2015~2017년간 20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기회창출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 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일자리 발굴 및 채용연계, 중소기업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18년 3월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고착화되고, 체감실업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년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체감도를 제고하고,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수요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즉, 취업 청년 소득, 주거, 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업·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를 통해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2018~2021년까지 18~2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형성을 돕고 청년을 고용한 사업체에 지원을 강화하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하고,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모험펀드로 투자를 유도하고, 창년 창업기업에 5년간 법인,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을 지원하고 현진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 및 매칭서비스로 제대로 된 해외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창업 청년에게도 지원을 한다.

정부는 청년에게 와 닿는 정책을 위해 청년대표,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청년일자리대책TF’가 주체가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청년구직자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여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대상 훈련을 확대하고 진로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의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의 내실화·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통해 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표 8-3-1〉 2018년 청년일자리 대책(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4대 중점과제	실행과제
1.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청년지원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기존 산단 리모델링, 신규 산단 모범사례 조성을 통해 주거·복지·문화·교통여건 등 개선으로 청년이 가고 싶은 산단을 조성 - 지역특구 세제지원 시 청년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개편 -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중심 R&D 지원체계 개편 - 건축물 화재안전 조사 및 DB 구축 사업시 청년 중심 고용 - 국유재산 총 조사 시 조사인력 50% 이상 청년 중심 채용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활용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사전컨설팅 등 지원 - 대기업이 협력사 일자리 창출 지원시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부여 -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우선 선정 -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 확대로 연결되도록 신규채용·임금보전 등 지원 강화,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등 생산성 제고 지원

4대 중점과제	실행과제
2. 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일자리 매칭펀드(1천억원)' 조성 - 도시재생 지역 내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해 청년 창업(집수리·마을카페 등) 활성화 및 업사이클 분야 청년 창업 촉진 - 청년창업농·어 사업을 확대하고, '복합형 청년몰'을 조성하여 청년상인 육성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유희공간(국유재산·주민센터 등)을 조사하여 특성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청년창업자에게 저가 공급 - 글로벌 창업특화 BI 운영(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국 엑셀러레이터 DB 구축), TIPS·창업선도국 창업플랫폼(英 Enterprise-Hub 등) 연계
3.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아세안 정책지원 집중(2018~2022년, 1.8만 명) - 세제, 입지 등 유턴기업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확대
4.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 개선 - 일반계고 비진학자 사전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확대 등 취업지원 강화 - 병 봉급인상과 연계하여 목돈마련저축제도(희망적금) 확대 - 유급지원병 보수 일반하사 수준 인상, 장기복무 선택 허용 등으로 유급지원병 기회 확대 - 기업 채용 공고시 서류전형 평가기준 공개 유도 및 워크넷에 SI 매칭 도입 -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확충 : 운영비 등 재정지원 강화

자료 : 기획재정부(2018), 「2018년 청년일자리 대책」, 보도자료.

2018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의 일자리 정책은 주로 15~34세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만 15~34세까지 청년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때 청년 본인과 정부가 공동 적립(2년형, 3년형)함으로써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둘째, 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협력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 타대생·인근지역 청년들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청년의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 병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한 후 체계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 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 형성 및 자격까지 연계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이다. 넷째,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을 15~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 조기진입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경험기회가 부족하고 취업률이 낮은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대학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직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재학생 직무체험사업도

있다. 다섯째, 위에서 언급한 국내에서의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등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고, 해외일자리 매칭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외에도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확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등이 있다.

2018년 청년일자리 주요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성장유망업종으로 제한되었으나 2018년 5인 이상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지원요건과 지원금액도 기존보다 확대되어 제도개선 이후 기업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 29,566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기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128,251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 2년형 5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인원을 4만 명 추가하고, 3년형 2만 명을 신설하였다. 2018년 한 해 동안 총 108,486 명의 청년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각각 18만 8천 명, 25만 5천 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나. 직업탐색·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고용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올바른 직업탐색 기회 제공 및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CAP+’, ‘성취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올라 프로그램’, ‘취업특강프로그램’, ‘Hi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면,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자신의 직업흥미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꿈을 설계해 나가는 가운데 합리적인 진로 및 직업 선택과 취업을 돕기 위해 개발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진로탐색과 기업탐색, 취업서류 준비, 실전 모의면접, 취업성공요소의 분석을 통한 취업준비행동 실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취프로그램’은 구직의욕과 취업자신감이 낮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 효능감 제고 및 구직기술 습득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취업희망프로그램’ 역시 구직자의 원만한 사회진출 및 적응지원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생활 적응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라(all-A)’는 청년 중 특히 오랜 실직이나 취업 실패로 인해 취업 의욕이 꺾이고 자신감이 낮아진 청년들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직장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협력적 문제 해결에 관련된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Hi(하이)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고졸예정 취업준비생과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졸청년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미래 삶을 고민해보고 일터와 채용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서류와 면접 요령, 그리고 취업과 직장적응을 위한 기초상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스펙초월채용 시대에 맞게 지원하려는 회사의 산업특성과 조직특성, 직무특성을 이해하고 직무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구직처를 탐색하고 구직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한국잡월드’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 및 근로의식 형성을 유도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다.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심리검사를 비롯한 직업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취업지원관, 직업상담원, 커리어코치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고용센터와 워크넷⁴⁾을 통해 각종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의 능력과 흥미, 적성 등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수준 및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만족할만한 직업들을 탐색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검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하였는데, 청소년용 10종, 성인용 13종으로 총 23종의 검사가 있다. 검사는 온라인과 지필검사 모두 받을 수 있고,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검사는 검사 실시 후 결과표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 검사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을 위한 검사들이 있으며, 적성, 흥미, 성격 등 다양한 심리특성을 파악하여 진로 및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는 검사들이 있다. 워크넷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심리검사는 실시간 검사를 통해 워크넷의 방대한 직업정보 및 구직정보 탐색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4) 워크넷 홈페이지: <http://www.work.go.kr>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직업심리검사 수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로발달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진로결정과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상담원 및 교사들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가능하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탐색지원을 위해 11가지 유형의 직업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직업심리검사는 개인별 자기탐색 및 진로방향 설정에 유용한 도움을 주고 있다.

〈표 8-3-2〉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

검사명	대상	검사 목적
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초등학생 5~6학년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수준 파악 및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검사로 자기이해, 직업인식, 진로태도의 3개 영역으로 구성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중 2~고 3	직업흥미에 적합한 학과/직업정보 제공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중·고등학생	진로/직업 설계 및 직업흥미에 적합한 학과/직업정보제공
청소년 적성검사(중학생)	중학생	학업적성 측정으로 적합 학업분야 추천
청소년 적성검사(고등학생)	고등학생	직업/학업적성 측정으로 적합 직업/학업분야 추천
직업가치관검사	15세 이상	직업가치관 이해/직업안내
청소년 진로발달검사	중 2~고 3	진로 성숙도 수준/진로미결정 원인 측정
청소년 직업인성검사	중·고등학생	성격의 5요인(민감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을 측정해 자신의 진로 및 성격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
고교계열흥미검사	고등학생	흥미에 기초한 고교계열 및 전공계열 추천 학업 흥미에 따른 적합 고교계열 안내 및 진로지도
대학학과(전공) 흥미검사	고등학생	흥미에 적합한 전공계열 및 학과 추천

자료 : 워크넷(<http://www.work.go.kr>).

〈표 8-3-3〉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의 직업심리검사 개요

검사명	대상	검사 목적
직업가치관 검사	대학생 및 성인	직업가치관 이해 및 직업선택
직업선호도 검사(L형)		직업흥미, 성격, 생활경험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해 및 이를 통한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직업선호도 검사(S형)		직업흥미를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성인용 직업적성 검사		적성에 따른 적합 직업탐색 및 추천

검사명	대상	검사 목적
영업직무 기본역량 검사	대학생 및 성인	영업직 직무수행관련 기초능력 진단 및 적합수준 제시
IT직무 기본역량 검사		IT직종 직무수행관련 기초능력 진단 및 적합수준 제시
대학생 진로준비도 검사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진로발달 및 행동수준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취업준비 지원
구직준비도 검사	성인	구직활동과 관련한 특성을 측정하여 실직자에게 구직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창업진단 검사		창업에의 소질여부를 확인하고 성공 가능한 최적의 업종을 추천
직업전환검사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1년 이상 유지할 전환직종을 추천
구직욕구진단검사		구직동기 파악/구직활동 증진

자료 : 워크넷(<http://www.work.go.kr>).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서, 초·중·고·대·특성화고용 진로지도프로그램(CDP), 사회과·과학과 진로탐색자료(중·고), 특성화고 취업지원로드 맵, 대학교 취업지원로드 맵, 직업카드, 직업동영상 활용매뉴얼, 사이버진로교육원 이러닝콘텐츠 등의 진로교육 자료와 진로지도기법이 개발·보급되고 있다.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용으로 2003년도에 개발·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초등 2007년 개정, 중학교 2011년 개정)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는 2010년 개발 보급되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진로지도프로그램(CDP)은 초·중·고·특성화고·대학 등 각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 학기용 자료로서 총 5종으로 개발·보급되었으며, 교사용 매뉴얼과 학습자용 워크북, 수업진행용 슬라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화고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학교급(특성화고/대학교)에 따라 학년별로 강조해야 할 구직역량과 이를 위한 활용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학교급별 취업지원 로드 맵을 개발·보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및 교과통합형 진로지도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사회과·과학과 세부 과목들에 대해 단위별 진로지도를 위한 탐색자료집을 개발하여 보급했고, 학부모대상 진로특강 자료, 직업심리검사 해석을 위한 동영상과 슬라이드 등을 개발하여 단위학교로 보급하였다. 카드형태의 직업진로교육 매체인 ‘직업카드’ 역시 전국 고용센터와 학교에서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도 개발되어 청소년워크넷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다. 직업진로지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기주도적 진로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진로교육센터⁵⁾을 개원하여 이력서 작성과 면접준비에 필요한 강좌 등 다양한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취업지원을 위해 학년별

5)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홈페이지: www.work.go.kr/cyberedu/main.do

진로·취업지원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대학생들이 학년별로 특화된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체계화하고, 전담진로교수 매칭, 컨설팅트 연계, 진로실적 관련 교수평가제 도입 등 대학 내 교수·학사제도 또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다. 아울러 대학 내 학생경력개발시스템과 워크넷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맞춤형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심리검사결과와 관심 있는 직업과 직무, 자격, 훈련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 산업 및 직업전망을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맞춰 체험형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3D프린팅, 로봇, 드론 등), 「근로기준법」 강의, 일터 안전보건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4대 유망분야 12개 신산업에서 총 17만 명(신규인력 9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신산업 고급직업훈련과정 Test-Bed를 구축하여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훈련으로 신산업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하이테크 과정을 만들어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신산업 분야 학과·직종에 고급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였다. 2017년 9개 학과에서 2018~2022년 총 40개 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훈련분야, 즉 스마트 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핀테크, 무인이동체, 실감형 콘텐츠 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제시하고 운영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선도훈련과정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라. 직업정보의 수집 제공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직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직업별 직무내용, 임금수준, 직업전망 및 직업과 관련된 학과(전공), 자격, 훈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및 취업문제를 온라인으로 상담해주고 있다. 직업에 대한 이해제고 및 종합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직종별 직업사전’, ‘진로진학 Q&A’ 등 초등학교에서 성인까지의 수요자 맞춤형 직업정보자료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업명이나 학과명 키워드만으로 관련 직업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및 취업지원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직업동영상은 전 산업분야에 걸친 다양한 직업들을 선정, 해당 직업의 생생한 현장모습 및 인터뷰를 담고 있고 취업지원동영상은 구직자에게 필요한 면접기법, 이력서 작성 등의 구직기술과 직장생활 적응, 비즈니스 매너, 기업직무 등 직장생활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자료는 각급 학교에 DVD로 배포되며, 방송 송출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매체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기법이 소개된 직업동영상 활용 매뉴얼도 함께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1년부터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학과정보 동영상(캠퍼스 매거진)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과정보 동영상은 해당학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분야를 소개하고 취업을 위해 대학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교수님과 학과 선배인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학과의 변화양상과 관련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소개하고 다양한 진로모색의 필요성과 새롭게 등장하거나 부각되는 진출 직업 및 분야를 소개해주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마.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취업지원 확대

취업지원서비스는 1987년 5월 텍스트위주의 서비스제공으로 시작했으나 1996년 9월 국내의 취업알선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이후 1998년 11월 인터넷 방식의 '워크넷(Work-Net)'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업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직접 일자리정보, 직업정보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에 맞춰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여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고용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력서작성과 구직신청, 채용정보 북마크, 알선요청, 직업상담 등의 개별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 메일링 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취업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워크넷에 '대기업채용정보' 항목을 신설하여 주요 대기업의 구인정보를 취합·제공하였고, '지역고용동향' 항목의 신설을 통해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제작한 각종 지역단위 고용정보를 구인·구직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그밖에 '구인·구직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소개를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동영상 이력서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취업자료실' 항목을 별도로 제공하여 취업관련 뉴스와 가이드, 동영상, 직업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채용정보와 인재정보를 직종별, 지역·산업단지별, 역세권별, 대기업채용정보, 단시간근로채용정보, 전공계열별,

청년인턴인재정보 등 특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2011년 7월부터는 민간취업포털과 지자체 일자리정보를 워크넷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3.0 공동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Open API 제공과 지역 워크넷, 정부지원 일자리, 시간선택제, 강소기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였으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PC외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워크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워크넷을 통해 개인 구직자는 지역별, 역세권별, 직종별, 기업형태별 등 다양한 일자리정보를 비롯하여 온라인 구직신청, 이메일 입사지원, 맞춤형 서비스, 구직활동 내역 조회/출력, 메일링 서비스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구인기업은 지역별, 직종별, 전공계열별 등 다양한 인재정보를 비롯하여 온라인 구인신청, 인재정보관리, 맞춤형 서비스, 째하기, e-채용마당 등의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직업심리검사, 직업·학과정보검색, 직업탐방, 진로상담 등 직업·진로 서비스와 Job Map, 일자리/인재 동향, 통계간행물/연구자료 등의 고용동향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청년실업문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자 산재되어 있는 범부처 취업지원 사업 정보를 모아 한 번에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청년워크넷을 구축하여 2016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취업지원사업을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규모, 혜택, 지원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가 업로드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을 통한 취업지원사업 모니터링, 청년친화적 안내문으로 대체하는 등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메뉴구조 단순화, 검색기능 개선 등의 노력에 힘입어 청년 워크넷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청년정책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청년센터를 구축하여 맞춤형 정책 정보 검색과 정책 간 핵심정보를 비교해주고, 상담원 50명을 일자리·창업·주거 등 분야별로 수요에 따라 배치하여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기반으로 실시간 채팅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제9부 요약

제9부는 '청소년범죄'에 대해 다룬다.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법의 범위가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되고,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체 범죄자 중 청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5%에서 2015년 3.6%까지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3.9%로 다소 증가하였다. 2017년 청소년범죄 유형별 현황은 재산범(39.9%), 폭력범(28.9%), 교통사범(12.7%)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2005년 교육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으로는 2012년 폭행·상해(61.3%), 금품갈취(24.8%)가 많은 유형을 차지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폭력범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에는 폭행·상해(71.7%), 성폭력(12.1%)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예방 대책 외에도 검찰의 '우범소년 결연사업', '학교담당검사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법무부의 '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실', '청소년심리검사실', '보호자특별교육'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은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각종 교과교육 및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비행청소년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제9부 청소년 범죄

제1장 청소년범죄의 현황

제2장 청소년범죄 예방활동

제3장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제4장 청소년범죄에 대한 교정교육



제 1 장 | 청소년범죄의 현황

1 청소년범죄의 동향

19세 미만 청소년범죄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범죄자 대비 청소년범죄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08년에는 5.5%이었다가 2012년 5.1%(107,490명)를 나타내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7년 3.9%를 기록하였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청소년범죄자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범죄가 심각하게 문제시되고 있으나 실제로 전체범죄자 중 청소년범죄자의 비율은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2015년 이후 청소년범죄자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계는 필요하다.

〈표 9-1-1〉 연도별 청소년범죄자 현황 및 구성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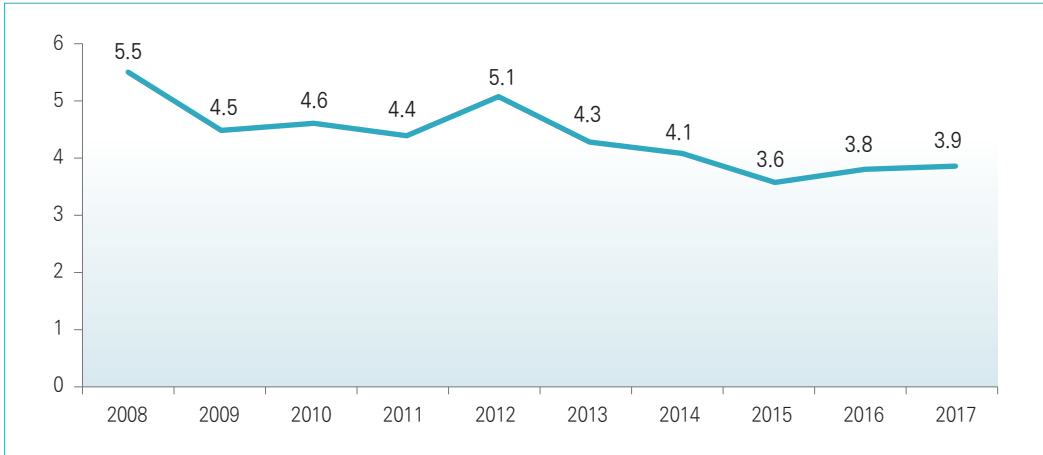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범죄자	2,472,897	2,519,237	1,954,331	1,907,641	2,117,737	2,147,250	1,879,548	1,948,966	2,020,196	1,861,796
청소년범죄자	134,992	113,022	89,776	83,068	107,490	91,633	77,594	71,035	76,000	72,759
구성비	5.5	4.5	4.6	4.4	5.1	4.3	4.1	3.6	3.8	3.9

주 : 2009년 이후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범죄자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자' 임.

자료 : 대검찰청(2009~2018). 범죄분석.

[그림 9-1-1] 연도별 전체범죄자 대비 청소년범죄자 구성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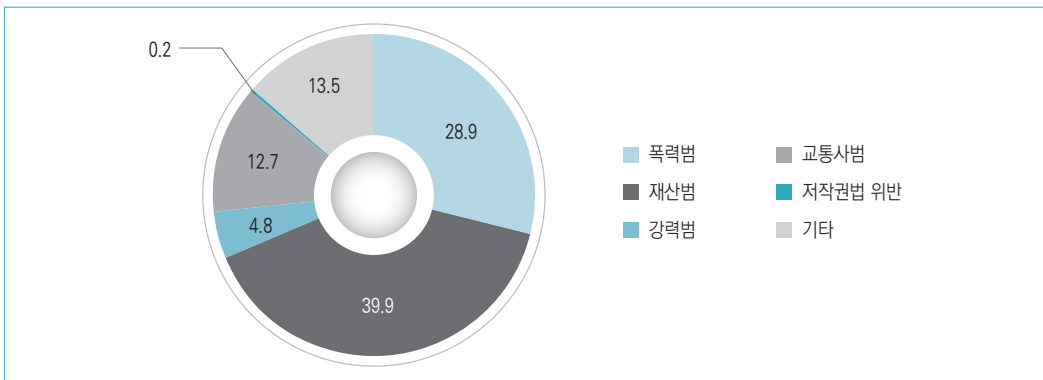


자료 : 대검찰청(2009~2018). 범죄분석.

2017년 청소년범죄 유형별 분포현황을 보면, 전체 청소년범죄자 72,759명 중 재산범죄 29,056명(39.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폭력범죄 21,043명(28.9%), 교통사범이 9,239명(12.7%), 강력범죄 3,463명(4.8%),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128명(0.2%) 순이었다. 재산범죄의 수는 2008년에 39,688명(29.4%)이었던 것에 반해, 2017년에 29,056명(39.9%)으로 재산범죄의 비율이 10.5%p 증가하였다. 특히, 재산범죄 중 절도범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약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계형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9-1-2] 범죄유형별 청소년범죄 현황(2017)

(단위 : %)



청소년범죄 유형 중 주목할 것은 강력범죄자의 비율이다. 2017년 전체 청소년범죄 유형 중 청소년강력범의 비율이 전년대비 0.4%p 상승하였다. 이는 청소년성폭력범의 비율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자의 비율이 4~5%에 불과하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전체범죄자 대비 청소년범죄자의 비율이 3.9%인데 반해 전체 강력범 36,583명 중 청소년강력범이 3,463명으로 9.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강력범죄자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표 9-1-2〉 청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2008~2017)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34,992	113,022	89,776	83,060	107,490	91,633	77,594	71,035	76,000	72,759
강력범	소계	3,016	3,182	3,106	3,289	3,107	2,775	3,158	2,713	3,343	3,463
	홍악범	1,427	1,608	999	1,268	1,104	786	594	506	483	380
	성폭력	1,589	1,574	2,107	2,021	1,686	1,735	2,564	2,207	2,860	3,083
폭력범	소계	34,067	29,488	23,276	22,233	32,774	22,119	19,352	17,473	19,476	21,043
	공갈	1,046	1,495	1,422	1,509	2,827	1,127	1,974	1,285	1,499	1,597
	폭행·상해 등	33,021	27,993	21,854	20,724	29,947	20,992	17,378	16,188	17,977	19,446
재산범	소계	39,687	45,774	40,478	37,978	47,605	45,735	36,271	32,068	33,088	29,056
	절도	33,073	38,494	33,534	31,380	37,256	33,092	26,047	21,170	22,534	20,008
	횡령 등	1,855	1,664	1,483	1,528	2,448	2,545	2,143	2,253	2,481	2,380
	장물	571	820	722	454	1,200	1,498	830	801	591	443
	사기	4,188	4,796	4,739	4,616	6,701	8,600	7,251	7,844	7,482	6,225
교통사범	27,658	18,138	13,842	11,530	12,101	9,845	9,216	8,567	9,259	9,239	
저작권법 위반	20,272	7,720	275	318	759	446	249	260	146	128	
기타	10,292	8,720	8,799	7,712	11,144	10,713	9,348	9,954	10,688	9,830	

- 주: 1) 홍악범: 살인, 강도, 방화.
- 2) 폭행·상해 등: 폭행·상해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법(공갈죄 제외) + 기타.
- 3) 횡령 등: 횡령 + 배임 + 손괴.
- 4) 교통사범: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자료: 대검찰청(2009~2018). 범죄분석.

2017년 전체 청소년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8세가 25.9%(18,83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17세 23.9%, 16세 22.5%, 15세 17.0%, 14세 10.6%, 14세 미만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청소년범죄자의 연령추세를 볼 때 17~18세 청소년범죄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15세 청소년범죄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표 9-1-3〉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2008-2017)

(단위 : 명, (%))

연도 \ 연령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8	134,992 (100.0)	3,800 (2.8)	16,638 (12.3)	26,385 (19.5)	26,932 (20.0)	21,784 (16.1)	20,808 (15.4)	18,645 (13.8)
2009	113,022 (100.0)	1,989 (1.8)	15,431 (13.7)	24,657 (21.8)	26,153 (23.1)	23,307 (20.6)	21,485 (19.0)	-
2010	89,776 (100.0)	445 (0.5)	8,870 (9.9)	19,280 (21.5)	21,611 (24.1)	19,637 (21.9)	19,933 (22.2)	-
2011	83,068 (10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
2012	107,490 (100.0)	856 (0.8)	12,978 (12.1)	21,009 (19.5)	26,080 (24.3)	24,140 (22.5)	22,427 (20.9)	-
2013	91,633 (100.0)	471 (0.5)	11,338 (12.4)	16,645 (18.2)	20,463 (22.3)	21,208 (23.1)	21,508 (23.5)	-
2014	77,594 (100.0)	37 (0.0)	9,712 (12.5)	14,041 (18.1)	16,940 (21.8)	17,517 (22.6)	19,347 (24.9)	-
2015	71,035 (100.0)	64 (0.1)	7 (0.0)	14,387 (20.3)	17,624 (24.8)	18,231 (25.7)	20,722 (29.2)	-
2016	76,000 (100.0)	84 (0.1)	7,530 (9.9)	13,789 (18.1)	17,589 (23.1)	17,607 (23.1)	19,401 (25.5)	-
2017	72,759 (100.0)	93 (0.1)	7,703 (10.6)	12,376 (17.0)	16,391 (22.5)	17,358 (23.9)	18,838 (25.9)	-

주 :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소년범죄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

자료 : 대검찰청(2009-2018). 범죄분석.

최근 10년간 전과가 있는 청소년범죄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전과를 가진 청소년범죄자의 비율은 2008년 30.8%에서 2013년 41.6%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나타나 2017년 37.4%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4범 이상 청소년범죄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7.0%에서 2017년 14.1%로 2배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범죄의 상습화가 심각한 수준에 있고, 향후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정교육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9-1-4〉 청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 연령	계	소계 (미상 제외)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2008	134,992	114,699 (100.0)	79,285 (69.1)	15,476 (13.5)	7,553 (6.6)	4,299 (3.7)	8,086 (7.0)
2009	113,022	102,573 (100.0)	65,990 (64.3)	15,103 (14.7)	7,637 (7.4)	4,799 (4.7)	9,044 (8.8)
2010	89,776	82,368 (100.0)	50,830 (61.7)	12,091 (14.7)	6,546 (7.9)	4,070 (4.9)	8,831 (10.7)
2011	83,068	75,658 (100.0)	45,047 (59.5)	11,391 (15.1)	6,254 (8.3)	3,900 (5.1)	9,066 (12.0)
2012	107,490	96,728 (100.0)	56,527 (58.4)	14,403 (14.9)	7,669 (7.9)	5,001 (5.2)	13,128 (13.6)
2013	91,633	82,548 (100.0)	44,502 (53.9)	12,388 (15.0)	6,782 (8.2)	4,552 (5.5)	14,324 (17.4)
2014	77,594	70,648 (100.0)	40,996 (58.0)	9,853 (13.9)	5,244 (7.4)	3,429 (4.9)	11,126 (15.7)
2015	71,035	62,705 (100.0)	35,650 (56.9)	8,636 (13.8)	4,518 (7.2)	3,110 (5.0)	10,791 (17.2)
2016	76,000	67,433 (100.0)	41,173 (61.1)	8,444 (12.5)	4,493 (6.7)	2,978 (4.4)	10,345 (15.3)
2017	72,759	64,208 (100.0)	40,168 (62.6)	8,039 (12.5)	4,191 (6.5)	2,773 (4.3)	9,037 (14.1)

자료 : 대검찰청(2009-2018). 범죄분석.

2017년도 청소년범죄의 남녀별 비율을 보면 남자가 82.8%, 여자가 17.2%로, 남자의 비율이 약 5배 정도 많다. 2008년 남자청소년의 범죄율이 80.4%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과 2015년 85.2%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여 2017년 82.8%를 나타냈다. 여자청소년 범죄의 경우, 2015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과 2017년 범죄비율이 16.1%, 17.2%로 증가했다. 전체 청소년범죄인원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인 반면, 여자청소년 범죄 인원수와 비율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여자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표 9-1-5〉 청소년범죄의 성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인원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8		134,992	108,482	80.4	26,510	19.6
2009		113,022	93,509	82.7	19,513	17.3
2010		89,776	72,461	80.8	17,315	19.2
2011		83,068	68,742	82.8	14,326	17.2
2012		107,490	89,339	83.1	18,151	16.9
2013		91,633	76,767	83.8	14,866	16.2
2014		77,567	66,087	85.2	11,480	14.8
2015		71,035	60,534	85.2	10,501	14.8
2016		76,000	63,777	83.9	12,223	16.1
2017		72,759	60,264	82.8	12,495	17.2

자료 : 대검찰청(2009~2018). 범죄분석.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마약이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양귀비, 아편, 헤로인, 코데인, 모르핀, 코카인 등)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체 마약류사범과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00명을 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에게 마약류가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여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9-1-6〉 청소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2008~2017)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전체 마약류 사범	청소년 마약류 사범	
			인원	비율
2008		9,898(100.0)	23	0.2
2009		11,875(100.0)	82	0.7
2010		9,732(100.0)	35	0.4
2011		9,174(100.0)	41	0.4
2012		9,255(100.0)	38	0.4
2013		9,764(100.0)	58	0.6
2014		9,984(100.0)	102	1.0
2015		11,916(100.0)	128	1.1
2016		14,214(100.0)	121	0.9
2017		14,123(100.0)	119	0.8

자료 : 대검찰청(2009~2018), 마약류범죄백서.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남용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써, ‘메스암페라민(속칭 히로뽕)’, ‘MDMA(엑스터시)’, ‘LSD(무색·무미·무취 환각제)’ 등을 가리킨다. 2017년 청소년 마약범죄중 마약류의 종류를 살펴보면 대체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중이 59.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이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문의약품보다는 ‘본드’ 등의 흡입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최근 대마로 인한 청소년의 중독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표 9-1-7〉 청소년 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2008~2017)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전체	청소년 마약류			
			합계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마약
2008		9,898	23 (100.0)	16 (69.6)	7 (30.4)	-
2009		11,875	82 (100.0)	55 (67.1)	25 (30.5)	2(2.4)
2010		9,732	35 (100.0)	16 (45.7)	19 (53.3)	-

연도	구분	전 체	청소년 마약류			
			합계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마약
2011		9,174	41 (100.0)	34 (82.9)	7 (17.1)	-
2012		9,255	38 (100.0)	26 (68.4)	12 (31.6)	-
2013		9,764	58 (100.0)	39 (67.2)	17 (29.3)	2(3.4)
2014		9,742	102 (100.0)	48 (47.1)	54 (52.9)	-
2015		11,916	128 (100.0)	78 (60.9)	50 (39.1)	-
2016		14,214	121 (100.0)	91 (75.2)	28 (24.6)	2(0.2)
2017		14,123	119 (100.0)	70 (59.0)	49 (41.0)	-

자료 : 대검찰청(2009~2018). 마약류 범죄백서.

3 학생범죄의 동향

전체 청소년범죄자 대비 학생범죄자의 구성 비율은 2008년 65.7%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7년에는 75.7%로 최근 10년간 10.0%p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전체범죄자 1,861,796명 가운데 72,759명(3.9%)이 청소년범죄자이고, 이 중 55,074명(75.7%)이 학생범죄자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학교밖청소년의 범죄율이 높았으나 최근 학생신분을 가진 청소년범죄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 내에서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제1부
- 제2부
- 제3부
- 제4부
- 제5부
- 제6부
- 제7부
- 제8부
- 제9부
- 제10부
- 부록

〈표 9-1-8〉 연도별 학생범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전체범죄(A)	청소년범죄		학생범죄	
		인원(B)	구성비 (B/A×100)	인원(C)	구성비 (C/B×100)
2008	2,472,897	134,992	5.5	88,701	65.7
2009	2,519,237	113,022	4.5	78,077	69.1
2010	1,954,331	89,776	4.6	62,173	69.3
2011	1,907,641	83,068	4.4	57,672	69.4
2012	2,117,737	107,490	5.1	73,684	68.5
2013	2,147,250	91,633	4.3	60,438	66.0
2014	1,879,548	77,567	4.1	54,627	70.4
2015	1,948,966	71,035	3.6	57,672	81.2
2016	2,020,196	76,000	3.8	56,625	74.5
2017	1,861,796	72,759	3.9	55,074	75.7

주 : 학생범죄자는 전체 학생범죄자 가운데 2008년까지는 7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2009년 이후부터는 7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만 그 대상으로 함.

자료 : 대검찰청(2009~2018). 범죄분석.

제2장 | 청소년범죄 예방활동

1 경찰의 예방활동

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경찰은 2005년 초, 고교연합 폭력서클이 주도한 여중생 집단성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강력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왔다.

특히 2005년부터는 피해학생들이 보복의 두려움에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학교폭력이 음성화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학교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신학기 초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주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법무부 등 6개 관련 부처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신고기간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학생 등 경미초범 가해학생은 처벌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선도하는 조건으로 불입건’ 한 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피해신고 학생은 비밀보장과 함께 담당경찰을 서포터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2012년에 ‘폭행·상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금품갈취’가 많은 유형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폭력범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폭행·상해를 저지른 청소년이 71.7%이었고, 성폭력을 저지른 청소년이 12.1%를 차지하였다.

〈표 9-2-1〉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2012~2017)

(단위: 명)

연도 \ 구분	전체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2012	23,877	14,637	5,912	509	2,819
2013	17,385	11,048	2,603	1,067	2,667

연도	구분	전체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2014		13,268	8,974	1,582	1,295	1,417
2015		12,495	9,188	1,153	1,253	901
2016		12,805	9,396	1,161	1,364	884
2017		14,000	10,038	1,191	1,695	1,076

자료 : 경찰청(2013~2018). 경찰백서.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로 인해 경찰단계로 들어오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까지 감소하였다가 최근 2년간 다시 증가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보면 불구속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7년 입건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운데 10,556명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61명이 구속 입건되었다. 특히 사안에 따른 맞춤형 대응과 경미초범에 대한 즉심·훈방 등 선도조치로 인해 불입건되는 비율은 2011년 18.9%에서 2017년 14.9%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9-2-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입건			불입건				소년부 송치	
			소계	구속	불구속	계	훈방	즉결심판	내사종결		기타
2011		21,957	16,331	103	16,228	4,153	-	-	-	4,153	1,473
2012		23,877	15,948	333	15,615	5,272	1,550	86	1,982	1,654	2,657
2013		17,385	11,310	294	11,016	4,251	981	230	1,134	1,906	1,824
2014		13,268	8,753	167	8,586	3,324	406		2,918		1,191
2015		12,495	9,250	93	9,157	2,186	189		1,997		1,059
2017		14,000	10,617	61	10,556	2,087	228		1,859		1,296

주 : 2016년 통계수치 없음.

자료 : 경찰청(2012~2018). 경찰백서.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2012년 6월 18일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117신고센터’를 개소하여 경찰·교육부·여성가족부 합동으로 24시간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117채팅신고앱인 ‘117챗’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117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콜백(call back)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학교폭력 신고·상담건수는 71,985건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하였다.

2012년 6월부터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활성화되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건처리는 물론이고, 가·피해학생 사후관리도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2017년에 전국 지역별로 1,138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1인당 10.3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2017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영역을 폭력사안 대응 및 위기청소년 집중관리 중심으로 전문화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주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및 교사 면담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현황을 파악하며 117홍보 및 학교폭력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2017년 40,122건의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117로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 또는 수사팀에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2017년 학교폭력 사안 17,382건을 접수하였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의 역할을 하고, 2017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21,065회 참여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사안의 사후관리를 위해 피해자 대상으로 추가피해방지 및 사안별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7년 피해학생에 대한 멘토링 12,549건을 실시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선도프로그램 및 사후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으며, 2017년에 15,737건의 선도활동을 하였다.

〈표 9-2-3〉 연도별 학교전담경찰관 주요 활동성과

(단위: 횟수, 명, 건)

구분	범죄예방교육		신고 접수	사건처리		사후관리		교사활동지원	
	횟수	인원		선도위 참여	자치위 참여	피해학생 멘토링	가해학생 선도	학생지도	교권확립
2012	15,175	2,026,015	4,157	528	5,258	7,849	7,111	841	239
2013	50,651	6,647,719	5,638	1,173	13,437	15,527	15,515	1,475	224
2014	51,845	6,163,756	7,125	941	15,716	13,163	14,167	-	-
2015	39,725	4,843,922	13,373	1,269	17,182	14,147	19,538	-	-
2016	49,712	5,948,301	66,959	-	-	-	-	-	-
2017	40,122	4,374,903	17,382	1,322	21,065	12,549	15,737	-	-

자료 : 경찰청(2013-2018). 경찰백서.

나. 유해환경 정화활동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및 미디어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종 풍속업소 등 유해업소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청소년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각종 음란·폭력성 매체물과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유흥주점·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연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총 9,750명을 적발하였다. 이 가운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 유해약물 단속 위반자가 8,9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적퇴폐나 풍기문란 등 유해행위를 한 자는 393명,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시키거나 출입하게 한 자는 360명,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통해 판매·대여하거나 포장 표시한 자는 70명에 이르렀다.

〈표 9-2-4〉 연도별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단속내용				조치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행위	구속	불구속
2008		8,645	1,305	220	6,677	443	9	8,636
2009		8,567	1,544	291	6,230	502	4	8,563
2010		8,154	1,351	442	5,882	479	10	8,144
2011		9,575	1,690	1,039	6,337	509	6	9,569
2012		14,067	1,414	870	11,158	625	46	14,021
2013		13,438	1,707	1,287	9,980	464	8	13,430
2014		8,348	870	189	6,888	401	5	8,343
2015		9,268	327	185	8,364	392	0	9,268
2016		9,313	412	86	8,444	371	1	9,312
2017		9,750	360	70	8,927	393	-	-

주: 2017년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치관련 통계 미추출
 자료: 경찰청(2009~2018). 경찰백서.

다. 선도프로그램 운영

경찰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소년단체와 협조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소년범죄 예방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성인이 되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총 9,559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교실’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전문단체와 연계하는 ‘사랑의 교실’ 외에도 신경정신과 병원과 연계하여 실시되는 ‘표준선도프로그램’과 경찰관서 자체에서 개발하여 실시하는 ‘자체선도프로그램’이 있다. 2014년에는 29,654명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나, 2017년에는 20,092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표 9-2-5〉 연도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구분	참여 인원	사랑의 교실		표준선도 프로그램		자체선도프로그램	
			운영단체	참여인원	운영병원	참여인원	운영관서	참여인원
2014		29,654	96	5,661	42	627	237	23,366
2015		21,789	118	5,985	45	463	228	15,341
2016		20,105	126	5,861	52	254	235	13,990
2017		20,092	145	9,559	60	179	195	10,354

자료 : 경찰청(2015-2018). 경찰백서.

라.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스스로가 각종범죄 및 제반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6학년과 중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을 발대할 것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3일 명예경찰소년단 전국 확대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전국학교로 선발대상을 확대하여 2016년 전국 1,327개교 15,883명의 명예경찰소년단이 활동하였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는 명예경찰소년단을 희망하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학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159개 경찰서에서 632개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7,606명의 학생을 명예경찰소년단으로 선발하였다.

〈표 9-2-6〉 연도별 명예경찰소년단 현황

(단위 : 개교, 명)

연도	구분	실시학교	명예경찰소년단
2008		3,295	25,120
2009		2,153	24,323
2010		1,719	20,053
2011		1,510	19,250
2012		1,422	16,935
2013		1,644	17,853
2014		1,520	17,395
2015		1,431	17,690
2016		1,327	15,883
2017		632	7,606

자료 : 경찰청(2009~2018). 경찰백서.

명예경찰소년단은 청소년의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이나 저학년 어린이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과 연대감 쌓기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교통캠페인, 경찰서 견학 및 112 순찰, 도보순찰 체험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명예경찰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도교사 및 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방지활동도 하고 있다. 명예경찰소년단은 2017년도에 경찰서 견학 및 체험활동을 505회(1,177개교, 12,038명), 교통캠페인 3,023회(27,707명), 봉사활동 870회(9,036명) 등을 수행하였다.

〈표 9-2-7〉 연도별 명예경찰소년단 활동 현황

(단위 : 회, 개교, 명)

연도	구분	경찰서 견학 및 체험			교통캠페인			봉사활동			학교폭력방지활동					
		신 고		취약지역 순찰		친구 맺기		신 고		취약지역 순찰		명예 경찰		대상자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2008		485	1,889	19,972	4,514	3,849	39,609	1,396	1,836	10,014	185	493	4,769	3,197	520	585
2009		445	1,763	17,057	3,543	2,850	37,303	867	917	9,443	102	208	3,830	2,672	476	655
2010		542	1,823	18,431	4,192	3,152	30,758	1,169	1,328	10,736	189	273	5,034	3,179	554	541
2011		477	1,382	16,517	4,295	3,390	28,465	1,096	1,136	10,398	51	75	4,124	2,169	454	426
2012		586	1,527	15,925	3,370	1,953	22,817	818	829	8,356	34	40	2,676	1,966	719	844
2013		611	1,876	19,757	4,557	2,045	39,556	1,272	890	13,616	210	271	4,198	3,084	2,052	2,150
2014		819	2,189	20,683	8,611	4,375	63,452	2,431	1,304	19,528	103	225	10,009	58,390	6,073	5,239
2015		769	2,152	21,452	6,046	3,637	50,139	4,211	1,167	13,196	91	116	10,897	54,386	4,573	5,377
2016		766	1,947	19,453	5,508	-	48,491	5,250	-	14,619	54	61	11,049	487,457	5,087	10,757
2017		505	1,177	12,038	3,023	-	27,707	870	-	9,036	130	152	5,329	34,487	2,358	2,077

자료 : 경찰청(2009~2018), 경찰백서.

마. 학교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경찰청은 2015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선도·지원계획 및 발굴 강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8,607명의 학교밖 청소년을 발견하였고, 이 중 7,129명에 대하여는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연계하였다.

〈표 9-2-8〉 학교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현황(2016~2017)

(단위 : 명, 건)

구분	발견인원	연계조치건수						미연계
		계	지원센터	가정복귀	학교복귀	CYS-Net등 기타 연계	선도 프로그램	
2016	7,556	6,209	4,072	1,373	316	171	277	1,347
2017	8,607	7,129	5,158	-	412	876	683	1,608

자료 : 경찰청(2017~2018). 경찰백서.

2 검찰의 예방활동

가. 우범소년 결연사업

‘우범소년 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 1일부터 서울·부산·광주·제주지검 및 산하 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1995년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하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회의’에서 검찰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범죄예방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 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연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서클에 가입하거나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연대상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결연활동 중 소년이 소재불명이 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범소년 선도를 위한 결연 회의와 결연대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도 우범소년 결연사업 가운데 선도결연 회의 및 간담회는 2,718회 개최되었고, 범죄예방위원 교육은 654회 실시되었다. 우범소년 중 결연 대상을 6,129명을 선정하여 실제로 7,169명과 결연을 맺었다.

〈표 9-2-9〉 연도별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실적

(단위 : 회, 명)

연도	구분	선도결연 회의 및 간담회	결연대상 선정인원	결연인원	지역추진 대회	법사랑위원 교육
2008		1,825	4,933	4,535	387	563
2009		2,030	6,970	6,389	512	997
2010		1,730	5,336	4,511	460	1,491
2011		1,721	3,546	3,545	386	1,857
2012		2,206	7,049	7,205	473	2,348
2013		2,221	5,332	7,101	465	1,271
2014		1,956	4,868	5,723	353	401
2015		2,581	5,050	6,032	342	602
2016		2,447	5,925	6,567	349	1,118
2017		2,718	6,129	7,169	372	654

자료 : 대검찰청(2009~2018). 검찰연감.

나. 학교담당검사제

학교담당검사제는 1995년 11월 27일 대통령의 학교주변 폭력근절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검찰의 3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학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원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 내의 수개의 중·고교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유관기관이나 민간 봉사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는 선도보호위원 및 교사선도위원, 학부모위원 등 구성원들과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원폭력 정보수집 및 예방선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탈선 초기의 학생 상대 개별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학교담당검사의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합동순찰 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범학생대상 면담이나 선도강연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담당검사는 2017년 8,040회 합동순찰을 실시하였고, 2,387건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7,762명의 우범학생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1,645건의 선도강연을 하였다.

〈표 9-2-10〉 연도별 학교담당검사제 활동실적

(단위 : 회, 명)

연도	구분	합동순찰	간담회	우범학생 면담인원	선도강연
2008		4,953	1,924	9,052	1,126
2009		5,651	2,063	10,576	1,466
2010		6,691	1,631	11,997	1,176
2011		6,125	1,667	8,971	879
2012		6,632	2,079	15,360	1,904
2013		8,537	1,917	12,750	1,377
2014		7,430	2,259	13,398	1,380
2015		7,464	2,120	8,752	1,501
2016		6,840	2,346	8,310	1,472
2017		8,040	2,387	7,762	1,645

자료 : 대검찰청(2009~2018), 검찰연감.

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도입의 배경은 소년이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개선의 가능성도 많으므로 죄질이 다소 중하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범사랑위원회에 맡겨 선도·보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초점이 있다.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하였고, 1981년 1월 20일 법무부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에 확대 실시된 뒤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는 1996년 12월 27일 개정된 법무부훈령 제373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소년선도보호 방법은 ‘접촉선도’, ‘원호선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접촉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있는 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을 말한다. ‘원호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대하여 선도보호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1981년 4,070명에 대하여 선도유예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3,495명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전체 기소유예 대상청소년 중 법사랑위원의 선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대상청소년의 비율은 2012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9-2-11〉 연도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단위 : 명, %)

연도	구분	소년범죄(A)	기소유예(B)	선도조건부 기소유예(C)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C/B×100)
2008		134,992	62,977	5,886	9.3
2009		113,022	56,715	7,104	12.5
2010		89,776	42,021	2,967	7.1
2011		89,068	36,582	1,363	3.7
2012		107,490	43,013	5,812	13.5
2013		91,633	34,914	4,548	13.0
2014		77,594	27,601	3,473	12.6
2015		71,035	19,623	3,413	17.4
2016		76,000	21,044	3,409	16.2
2017		72,759	20,108	3,495	17.4

자료 : 1) 대검찰청(2009~2018). 검찰연감.
2) 대검찰청(2009~2018). 범죄분석.

기존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소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이외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소년범에게 적용함으로써 선도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서 전문가를 통해 일정기간 ‘심리검사’, ‘정신교육’, ‘분노 조절 훈련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범방지’, ‘인성개발’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자원봉사 대학생이 범 죄 청소년과 1:1로 결연하여 상담·스포츠·문화활동·봉사활동 등의 일정한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대상 청소년을 선도하는 ‘멘토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전문상담가로부터 전문적 상담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소년범을 기소유예 처분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이 있다.

2017년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중 절도범죄자의 비율은 40.7%로 전년대비 2.2%p 증가하였고, 폭력행위자의 비율도 16.7%로 전년대비 1.4%p 증가하였다.

〈표 9-2-1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2012-2017)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폭력행위 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사범	재산범죄	기타
2012		5,812	1,680	2,277	25	36	569	275	950
2013		4,548	1,015	2,068	12	32	424	345	652
2014		3,473	672	1,477	6	12	375	241	690
2015		3,413	664	1,503	1	23	328	325	569
2016		3,409	521	1,314	3	39	368	353	811
2017		3,495	582	1,422	3	8	515	293	672

자료 : 대검찰청(2013~2018). 검찰연감.

2017년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중 17세 청소년의 비율이 2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6세, 15세, 18세, 14세 순으로 높았다.

〈표 9-2-1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2012~2017)

(단위: 명)

연도 \ 구분	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12	5,812	790	1,296	1,388	1,247	701	390
2013	4,548	649	928	1,122	1,081	607	161
2014	3,473	477	723	874	830	488	81
2015	3,413	341	671	866	780	534	221
2016	3,409	258	492	755	856	643	405
2017	3,495	334	662	877	893	585	144

자료 : 대검찰청(2013~2018). 검찰연감.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을 일부 개정하여 ‘검사결정전조사제도(「소년법」 제49조의2)’를 도입하여 검사 처분 전에 비행원인을 진단함으로써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 비행인자를 사전에 제거하여 소년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3).

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동법 제15조제3호(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에 근거하여 1995년 4월 15일 법무부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선도위탁규정이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는 개정된 법무부 훈령 제620호(2008. 6. 3.)에 따라 위탁·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선도보호위원회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선도교육·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 보조, 취학·취업 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소년범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2017년 4,371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실시하였고, 그 중 재범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인원은 205명이었다.

〈표 9-2-1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 제	취 소
2008		361,907	3,421	3,967	2,614	116
2009		467,132	3,807	3,669	2,382	129
2010		363,106	4,411	4,038	1,915	163
2011		353,564	4,950	6,716	2,833	313
2012		348,146	4,976	7,423	2,912	408
2013		330,407	4,495	7,900	2,439	269
2014		324,748	5,112	4,360	2,638	255
2015		354,370	5,184	4,052	3,098	353
2016		368,001	4,419	2,776	2,087	253
2017		325,215	4,371	2,549	1,679	205

자료 : 대검찰청(2009~2018). 검찰연감.

3 법무부의 예방활동

가.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

법무부는 2007년 7월 23일 부산, 광주, 대전, 청주, 창원, 안산 등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직원 56명을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1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교육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2013년 11월부터 대외명칭을 ‘청소년꿈키움센터’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그동안 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던 부적응학생(일반학교에서 의뢰)과 초기단계의 비행 청소년(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의뢰)에 대한 대안교육과 비수용 범죄소년에 대한 비행진단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교육, 일반학생 및 국민에 대한 법교육,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문제 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비행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표 9-2-15〉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임무

구분	기관명	설립일	교육과정
청소년 꿈키움 센터	부산·대전	2007. 7.	청소년꿈키움센터 ※ 설립일 : 부산(07. 7.), 대전(17. 4.) - 상담조사 - 결정 전 조사 -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 청소년 심리상담 솔로몬로파크 ※ 설립일 : 대전(07. 7.), 부산(16. 7.) - 법교육 및 법문화 직무연수 -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안산	2007. 7.	- 대안교육, 보호자 교육 - 청소년심리상담 - 연구·개발 및 직무연수

구분	기관명	설립일	교육과정
청소년 꿈키움 센터	창원·청주·광주	2007. 7.	- 상담조사 - 결정 전 조사 -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 청소년 심리상담
	대구·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	2012. 6.	
	순천·전주·춘천	2013. 11.	
	부산동부·울산·수원	2014. 12.	

주 : 부산·대전센터는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슬로몬로파크 기능 병행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2018).

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이 추진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가족캠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말 학교폭력 예방캠프,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 등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7년에 310,651명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300,19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3,504명을 대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1,333명을 대상으로 보호자교육, 2,012명을 대상으로 주말캠프를 각각 실시하였다.

〈표 9-2-16〉 청소년꿈키움센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 명)

연도	구분	합계	가해학생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주말캠프	교원직무연수	찾아가는 예방교육	가족·사제캠프
2016		303,202	3,420	1,121	2,290	615	293,429	2,327
2017		310,651	3,504	1,333	2,012	767	300,197	2,838

자료 : 법무부(2017~2018). 법무연감.

나.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 대안교육 실시

2002년부터 지역사회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중·고등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부산·창원·광주·대전·안산 등 6개 지역 청소년꿈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하였고, 2012년부터 서울남부 등 10개 기관이 추가 신설되어 현재 전국 1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제주지역과 비행예방교육기능을 미실시하는 대전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비행예방교육을 대행하고 있다.

대안교육으로 진로·성격 등 심리검사, 심성훈련, 체험교육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안교육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학생 생활지도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학부모에게 적성검사 결과 등 자녀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학교와 협조하여 교육수료 학생에 대한 추수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자 등에 대한 대안교육 실시

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해당 지방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 선도유예자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성의 조기개선과 함께 재비행 방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교육은 비합숙 체험교육방식으로 심리검사, 심성훈련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2008년부터 소년원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42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대안교육명령을 받은 소년에 대해 1개월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대부분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등으로 의뢰되는 일반학생이고, 다음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대상자 비율도 높은 편이다. 특히, 2017년에는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총 266,741명이 대안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해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은 230,913명이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되어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이 31,346명, 법원에서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은 4,482명이다.

〈표 9-2-17〉 대안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검찰 기소유예	법원 보호처분
2008		6,410	4,683	1,516	211
2009		7,348	5,629	1,425	294

연도 \ 구분	계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검찰 기소유예	법원 보호처분
2010	12,862	11,396	1,124	342
2011	23,382	21,280	1,191	911
2012	30,122	26,814	2,034	1,274
2013	23,013	19,739	2,767	507
2014	23,630	18,359	4,993	278
2015	36,638	31,298	5,123	217
2016	49,317	43,305	5,757	255
2017	54,019	48,410	5,416	193
합계	266,741	230,913	31,346	4,482

자료 : 법무부(2009~2018). 법무연감.

라.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1996년 2월부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분류심사업무를 대행하는 4개 소년원에서 청소년심리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심리검사실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능·적성·성격 등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소질과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지침을 제공,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도 비행성향을 규명하여 구체적인 개선지침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문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심리검사실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2008년 5,481명에서 2017년 12,93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9-2-18〉 연도별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현황

(단위 : 명)

연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5,481	5,256	6,438	7,973	9,445	9,377	10,020	11,046	12,473	12,933

자료 : 법무부(2009~2018). 법무연감.

마. 법교육

법교육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5년 3단계 5개년 법교육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교육시설 및 법문화 체험관 조성, 법교육 교사 양성,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 28일 「법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대국민 법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 '청소년의 법과 생활', '나는야 법쟁' 등 맞춤형 법교육 학습교재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교육 출장강연제, 학생자치법정, 교사 직무연수와 법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에서의 법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7년 새터민청소년을 위한 우리법 바로알기는 244회 실시되었고, 법교육 출장강연은 10,301회, 1,030개교에서 학생자치법정이 실시되었다.

〈표 9-2-19〉 연도별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연도	구분	새터민청소년을 위한 우리법 바로알기		법교육 출장강연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교 수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08		33회	-	-	16만여 명	23개교
2009		44회	-	865회	165,345명	34개교
2010		63회	999명	828회	146,131명	49개교
2011		67회	1,227명	1,560회	475,913명	388개교
2012		82회	1,480명	1,811회	455,847명	660개교
2013		116회	1,351명	2,290회	574,034명	1,045개교
2014		151회	1,606명	2,222회	347,180명	1,580개교
2015		161회	1,730명	2,988회	480,170명	1,720개교
2016		179회	1,808명	5,547회	777,239명	1,139개교
2017		244회	2,068명	10,301회	1,175,705명	1,030개교

주 : 2008년 통계에서는 법교육 출장강연 횟수가 표기되지 않음.

자료 : 법무부(2018). 법무연감 재구성.

바. 보호자특별교육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법원소년부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보호자특별교육을 위하여 법무부는 청소년 이해, 자녀지도방법, 자녀-부모관계 회복 등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다.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은 대상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보호자 특별교육은 보호자교육명령을 받은 9,506명을 대상으로, 위탁소년 보호자 67,339명을 대상으로 각각 보호자교육이 실시되었다. 2017년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 받은 인원은 2,111명, 일반위탁소년의 보호자는 7,666명이었다.

〈표 9-2-20〉 연도별 보호자교육 실적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의무)	일반위탁소년 보호자(자원)
2008		3,511	59	3,452
2009		5,465	455	5,010
2010		6,626	293	6,333
2011		7,498	483	7,015
2012		8,101	527	7,574
2013		8,246	1,038	7,208
2014		9,192	1,237	7,955
2015		8,964	1,432	7,532
2016		9,465	1,871	7,594
2017		9,777	2,111	7,666
합계		76,845	9,506	67,339

주 : 청소년꿈키움센터 및 소년원의 보호자교육 실적.

자료 : 법무부(2018). 법무연감.

제3장 |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있다.

1 경찰단계의 사건처리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내용과 신상 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2012년부터 청소년범죄자 수가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 경찰이 검거한 청소년범죄자 수는 72,752명이었다.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이 21,996명, 절도범이 20,032명, 강력범이 2,312명이었다.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강력범죄자 가운데 강간범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6년에 비해 폭력범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절도범과 강력범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9-3-1〉 청소년범죄자 유형별 검거현황(2012~2017)

(단위: 명)

구분 연도	계	강력범					절도	폭력	특별법범 등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12	107,018	3,243	23	861	2,160	199	37,058	33,351	33,366
2013	90,694	3,081	21	616	2,303	141	32,819	22,739	32,055
2014	78,794	2,630	33	414	2,026	157	26,209	20,082	29,873

연도	구분	계	강력범				절도	폭력	특별범범 등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15		80,321	2,392	18	448	1,830	96	26,100	20,144	31,685
2016		76,356	2,418	19	316	1,936	147	22,589	20,468	30,881
2017		72,752	2,312	17	243	1,933	119	20,032	21,996	28,412

자료 : 경찰청(2013~2018). 경찰백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2년 37.3%에서 증가하여 2013년 41.6%를 기록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7년에는 33.0%(24,008명)를 차지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1.4%p 감소한 수치이다.

〈표 9-3-2〉 연도별 청소년범죄자의 재범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검거인원	청소년 재범자	재범률
2012		107,018	39,900	37.3
2013		90,694	37,752	41.6
2014		78,794	29,798	37.8
2015		80,321	28,979	36.1
2016		76,356	26,244	34.4
2017		72,752	24,008	33.0

자료 : 경찰청(2013~2018). 경찰백서.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란 청소년범죄자의 조사과정에서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가정·학교 환경 등 43개 비행촉발요인과 공격성·반사회성 등 344개 인성평가 항목을 심층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범의 선도 및 재범가능성을 판단하여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과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2003년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이후, 2004년 5개 경찰서를 시작으로 2017년 254개 경찰서에서 운영 중이다.

2007년부터는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시, 가해학생 조사에 전문가 참여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저위험군 학생은 사랑의 교실과 연계하여 경찰단계에서 선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위험군 학생은 재범방지를 위해 법원·검찰이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을 연결해 주고 있다.

전문가 참여비율은 2008년 5.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전체 청소년범죄자의 16.3%에 해당하는 11,879명이 전문가 참여조사를 받았다.

〈표 9-3-3〉 연도별 청소년범죄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현황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운영관서(개소)	52	60	70	100	120	137	180	251	252	254
전체소년범(명)	123,044	118,058	94,862	86,621	107,018	90,694	78,794	80,231	76,356	72,752
참여소년범(명)	6,266	5,507	7,172	7,639	10,258	11,548	8,968	10,401	15,312	11,879
참여비율(%)	5.1	4.7	7.6	8.8	9.6	12.7	11.4	12.9	20.1	16.3

자료 : 경찰청(2009~2018). 경찰백서.

2 검찰단계의 사건처리

검찰에서는 경찰로 넘겨받은 청소년사건을 범죄혐의가 없거나 죄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불기소 처분을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재범가능성이 희박하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소년법」 제49조제1항).

최근 10년간 검찰의 청소년범죄 처리내역을 보면, 청소년범죄의 기소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에 불기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소년보호 송치 비율은 2011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5년 32.5%이었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청소년범죄자 58,218명 중 소년보호 송치 35.3%, 기소유예 34.5%, 구공판 5.9%, 구약식 4.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인범죄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낮은 반면에, 기소유예 등 불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소년범죄에 대하여 일반범죄와 달리 선도 위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년보호 송치는 2008년 21.0%에서 2011년 36.8%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

후,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검찰단계에서 소년부송치율과 불기소처분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은 검찰단계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형사사건화하기 보다는 다이버전이나 보호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표 9-3-4〉 연도별 청소년범죄 처리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	기소			불기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성매매 보호 송치	아동 보호 송치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소계	공공판	구약식	소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08	134,992 (100.0)	15,150 (11.2)	4,823 (3.6)	10,327 (7.6)	88,932 (65.9)	4,944 (3.7)	62,977 (46.7)	2,073 (1.5)	18,938 (14.0)	28,360 (21.0)	30 (0.0)	46 (0.0)	-	104 (0.1)	2,370 (1.8)
2009	113,022 (100.0)	7,795 (6.9)	3,929 (3.5)	3,866 (3.4)	71,100 (62.9)	4,684 (4.1)	56,715 (50.2)	1,184 (1.0)	8,517 (7.5)	32,453 (28.7)	37 (0.0)	16 (0.0)	-	86 (0.1)	1,535 (1.4)
2010	89,776 (100.0)	5,443 (6.1)	2,913 (3.2)	2,530 (2.8)	52,685 (58.7)	4,801 (5.3)	42,021 (46.8)	339 (0.4)	5,524 (6.2)	30,143 (33.6)	9 (0.0)	11 (0.0)	-	93 (0.1)	1,392 (1.6)
2011	83,060 (100.0)	4,691 (5.6)	3,025 (3.7)	1,666 (2.0)	46,224 (55.7)	4,151 (5.0)	36,582 (44.0)	272 (0.3)	5,219 (6.3)	30,587 (36.8)	10 (0.0)	7 (0.0)	-	86 (0.1)	1,455 (1.8)
2012	102,871 (100.0)	7,877 (7.7)	4,898 (4.8)	2,979 (2.9)	56,668 (55.1)	6,113 (5.9)	43,013 (41.8)	324 (0.3)	7,218 (7.0)	36,478 (35.5)	21 (0.0)	-	-	141 (0.1)	1,686 (1.6)
2013	88,062 (100.0)	8,758 (9.9)	5,293 (6.0)	3,465 (3.9)	47,486 (53.9)	5,925 (6.7)	34,914 (39.6)	202 (0.2)	6,445 (7.3)	29,641 (33.7)	35 (0.0)	2 (0.0)	-	108 (0.1)	2,032 (2.3)
2014	72,964 (100.0)	7,038 (9.6)	4,191 (5.7)	2,847 (3.9)	39,559 (54.2)	5,379 (7.4)	27,601 (37.8)	182 (0.2)	6,397 (8.8)	23,743 (32.5)	50 (0.1)	4 (0.0)	-	130 (0.2)	2,440 (3.3)
2015	56,050 (100.0)	6,252 (11.2)	4,034 (7.2)	2,218 (4.0)	30,198 (53.9)	4,518 (8.1)	19,623 (36.0)	105 (0.2)	5,952 (10.6)	18,216 (32.5)	119 (0.2)	-	-	54 (0.1)	1,211 (2.2)
2016	60,669 (100.0)	6,113 (10.1)	3,755 (6.2)	2,358 (3.9)	32,235 (53.1)	4,815 (7.9)	21,044 (34.7)	136 (0.2)	6,240 (10.3)	20,597 (33.9)	147 (0.2)	-	4 (0.0)	34 (0.1)	1,539 (2.5)
2017	58,218 (100.0)	5,833 (10.0)	3,449 (5.9)	2,384 (4.1)	31,371 (53.9)	4,636 (8.0)	20,108 (34.5)	121 (0.2)	6,506 (11.2)	20,578 (35.3)	136 (0.2)	-	2 (0.0)	29 (0.0)	269 (0.5)

자료 : 대검찰청(2009-2018). 범죄분석.

3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비행진단 및 처우

가. 개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처분이 적합한가를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1977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처음 개원하였고,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설치되었다가 2007년 7월 소년보호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심사원은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등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7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소년원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수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소년의 수용관리와 분류심사업무를 맡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소년의 개체적 원인 규명, 소년비행의 조기발견과 치료, 소년비행의 실증적 요인 규명,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위탁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법원 소년부에 보내 조사·심리 시에 참고하도록 하며, 소년원·보호관찰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사후지도 방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위탁소년의 수용

위탁소년의 수용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위탁결정서에 의한다. 새로 수용된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수용사실을 통지한다. 위탁소년은 성별, 연령, 비행의 질, 공범 및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류·수용되고, 인권보호와 보건·위생, 비행의 감염방지에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소년들이 교육적 환경에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08년 소년분류심사원의 신수용인원은 5,620명이었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여 2017년 5,909명을 기록하였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8년 341명에서 2009년 399명, 2010년 419명, 2011년 456명, 2012년 464명, 2013년 471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가 2014년 메르스의 여파 등으로 집단수용 자제분위기로 인해 위탁인원이 42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2017년에 443명이 수용되었다.

〈표 9-3-5〉 연도별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수용인원	5,620	6,065	6,295	6,682	6,582	6,711	5,909	6,178	5,408	5,909
1일 평균 수용인원	341	399	419	456	464	471	422	439	398	443

자료 : 법무부(2018). 법무연감.

다. 처우·교육활동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차림표에 따라 급식하며 피복, 침구류, 세면용품, 학용품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마다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여 위탁소년의 건강관리 및 질병을 치료하고, 시설 내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병원에 통원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회는 위탁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탁소년의 교육은 언어·행동·예절·규범 등 기초적인 생활지도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심리극·분노조절훈련·감수성훈련 등 다양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체육활동·시청각교육·독서지도·레크리에이션 등 심성순화 교육과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종교별 관계 인사를 초빙하여 신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탁소년의 신상 및 진로문제에 관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어머니회를 운영하여 무의탁소년 등 불우소년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라. 분류심사

분류심사란, 비행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교정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요보호성이란 소년의 성격과 행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할 경우 범죄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말하며, 요보호성 여부의 판단이 분류심사에서 중요요소가 된다.

분류심사는 심사대상에 따라 ‘수용분류심사’와 ‘외래분류심사’, 실시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구분한다. ‘수용분류심사’는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분류심사’는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분류심사는 수용된 모든 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비교적 간단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표준화검사, 자기기록 및 행동관찰 등을 주로 실시하며, 일반분류심사를 한 결과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자료조회 및 현지조사 등의 특수분류심사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담당 분류심사관과 심리학·교육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재비행 위험성 정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처우지침, 예후(豫後) 및 판정 종류 등을 기재한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 소년부에 송부함으로써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소년원·보호관찰소 또는 위탁소년의 보호자 등에게 지도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 수용된 소년 중 분류심사를 받은 소년은 5,614명이었는데, 이 중 일반분류심사를 받은 인원은 3,905명(69.6%)이고, 특수분류심사를 받은 인원은 1,709명(30.4%)이었다.

〈표 9-3-6〉 연도별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분류심사 실시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구분	계	5,198 (100.0)	5,627 (100.0)	5,723 (100.0)	6,007 (100.0)	5,435 (100.0)	6,357 (100.0)	5,543 (100.0)	5,804 (100.0)	5,116 (100.0)	5,614 (100.0)
	수용분류심사	3,796 (73.0)	3,729 (66.3)	4,380 (76.5)	4,634 (77.1)	4,008 (73.7)	4,160 (65.4)	3,467 (62.5)	3,477 (59.9)	2,969 (58.0)	3,905 (69.6)
	특수분류심사	1,402 (27.0)	1,898 (33.7)	1,343 (23.5)	1,373 (22.9)	1,427 (26.3)	2,197 (34.6)	2,076 (37.5)	2,327 (40.1)	2,147 (42.0)	1,709 (30.4)

자료 : 법무부(2018). 법무연감.

마. 소년심판절차 개선

법무부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송치 대상자 위주로 시행해 오던 분류심사제도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상담조사제’와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대법원과 최종 협의를 거쳐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 보호소년 상담조사제 도입

2003년 7월에 새롭게 도입된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겐 위탁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원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법원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청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주간에만 3~5일 출석하여 상담과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대상청소년의 성격과 행동 특징, 능력과 욕구 등 개인의 자질과 환경적 특성에 대한 조사와 비행원인 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담당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자료로 송부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는 소년의 훈육과 지도지침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소년의 비행성을 없애기 위한 ‘특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설수용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모든 소년사건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처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판사의 소년사건 심리 시 심층적·과학적 판단에 기여하며, 상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보호자에게 자녀의 지도방향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제도는 대상청소년에게 집단상담, 봉사활동, 체험교육 등을 통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담조사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7개의 대행소년원(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소년원)에서 2008년 5,952명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7년 4,179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표 9-3-7〉 연도별 청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합계	분류심사	상담조사	결정전 조사
2008		11,729	5,198	5,952	579
2009		11,028	5,627	5,106	295
2010		11,421	5,723	5,301	397
2011		11,429	6,007	5,296	126

연도 \ 구분	합계	분류심사	상담조사	결정전 조사
2012	10,590	5,435	5,148	7
2013	10,739	6,357	4,382	-
2014	9,804	5,543	4,261	-
2015	9,924	5,805	4,119	-
2016	9,134	5,116	3,993	25
2017	11,222	5,614	4,179	1,429

주 : 상담조사 인원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꿈키움센터, 소년원의 실적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2018). 법무연감.

2)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는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각 소년부판사가 분류심사결과 통지서에 의문이 있거나 그 보고서만으로는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년의 성행과 비행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에서 참여시켜 직접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의 일환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의 국가 후견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소년법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4 소년법원에서의 사건처리

소년법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와 가정지원을 말한다.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울산 가정법원 외에, 인천·수원·춘천·청주·창원·의정부·전주·제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이 있다. 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문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 4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가정법원으로 승격되면서

소년부가 설치되었고, 2012년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울산 지방법원 가정지원도 가정 법원으로 승격되어 단독 소년부가 설치되었다.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위·재비행성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2017년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인원은 34,110명으로, 검사 송치된 인원이 24,014명(7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찰서장 송치가 7,743명(22.7%), 법원 송치가 1,124명(3.3%), 다른 법원 소년부에서 이송된 인원이 876명(2.6%)이었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접수된 인원도 매년 증가하여 2017년 353명(1.0%)을 차지하였다.

〈표 9-3-8〉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접수 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법원 송치	검사 송치	경찰서장 송치	타법원 소년부에서 이송	보호자등에 의한 통고
2008		41,754 (100.0)	1,745 (4.2)	29,124 (69.8)	10,781 (25.8)	84 (0.2)	20 (0.0)
2009		48,007 (100.0)	2,050 (4.3)	33,385 (69.5)	11,609 (24.2)	949 (2.0)	14 (0.0)
2010		44,200 (100.0)	2,212 (5.0)	31,715 (71.8)	9,213 (20.8)	1,026 (2.3)	34 (0.1)
2011		46,497 (100.0)	2,417 (5.2)	32,803 (70.6)	9,401 (20.2)	1,818 (3.9)	58 (0.1)
2012		53,536 (100.0)	2,848 (5.3)	36,133 (67.5)	12,799 (23.9)	1,588 (2.9)	168 (0.3)
2013		43,035 (100.0)	2,695 (6.3)	29,284 (68.0)	9,500 (22.1)	1,368 (3.2)	188 (0.4)
2014		34,165 (100.0)	1,610 (4.7)	24,110 (70.6)	7,104 (20.8)	1,146 (3.3)	195 (0.6)
2015		34,075 (100.0)	1,494 (4.4)	24,527 (72.0)	6,756 (19.8)	989 (2.9)	309 (0.9)
2016		33,738 (100.0)	1,357 (4.0)	24,319 (72.1)	6,788 (20.1)	915 (2.7)	359 (1.1)
2017		34,110 (100.0)	1,124 (3.3)	24,014 (70.4)	7,743 (22.7)	876 (2.6)	353 (1.0)

자료 : 법원행정처(2009~2018). 사법연감.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최근 10년간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처분 비율은 다소 감소하는 반면에, 불처분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검사의 불처분결정률은 2008년 5.1%에서 2012년 4.5%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8.7%까지 증가한 반면에, 검사송치율은 2008년 0.4%에서 2017년 1.1%로 증가하였다. 타법원으로 송치되거나, 형사처분을 위해 검사에게로 다시 송치되는 비율이 4~5%를 기록하고 있어 소년사건처리절차의 지연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9-3-9〉 연도별 소년보호사건의 처분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타법원 이송	검사송치
2008	39,532 (100.0)	30,222 (76.4)	2,020 (5.1)	6,801 (17.2)	337 (0.9)	152 (0.4)
2009	47,865 (100.0)	35,819 (74.8)	3,041 (6.4)	7,377 (15.4)	1,234 (2.6)	394 (0.8)
2010	45,090 (100.0)	32,416 (71.9)	3,105 (6.9)	7,338 (16.3)	1,840 (4.0)	391 (0.9)
2011	48,713 (100.0)	35,072 (72.0)	2,579 (5.3)	7,905 (16.2)	2,536 (5.2)	621 (1.3)
2012	50,771 (100.0)	36,150 (71.2)	2,278 (4.5)	9,209 (18.1)	2,441 (4.8)	693 (1.4)
2013	45,393 (100.0)	31,952 (70.4)	2,663 (5.9)	8,065 (17.8)	2,179 (4.8)	534 (1.2)
2014	34,600 (100.0)	24,529 (70.9)	2,543 (7.4)	5,669 (16.4)	1,403 (4.0)	456 (1.3)
2015	35,920 (100.0)	25,911 (72.1)	2,763 (7.7)	5,703 (15.9)	1,093 (3.0)	450 (1.3)
2016	33,142 (100.0)	23,526 (71.0)	2,650 (8.0)	5,547 (16.7)	1,106 (3.4)	313 (0.9)
2017	34,474 (100.0)	24,383 (70.7)	2,986 (8.7)	5,676 (16.5)	1,059 (3.0)	370 (1.1)

자료 : 법원행정처(2009-2018). 사법연감.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현재 10가지의 보호처분이 운용되고 있다. 기존에 보호관찰과 병합되었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독립처분으로 활용되고,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단기보호관찰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10가지 보호처분 중 실제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은 보호자감호위탁과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이다. 2017년 기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사건(34,110명) 중 보호처분을 받는 비율은 71.5%(24,383명)이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호처분 가운데 50% 이상이 1호 보호자감호위탁과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형태로 받고 있고, 소년원 송치가 10% 정도에 이르고 있다. 2017년 소년법원에서 처리한 보호처분의 현황을 보면, 1호 처분이 12.9%로 가장 높고, 1, 2, 4호 병합처분의 비율이 12.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 2호 병합처분(10.3%)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10〉 소년보호사건처분의 유형별 현황(2012~2017)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36,150 (100.0)	31,952 (100.0)	24,529 (100.0)	25,911 (100.0)	23,526 (100.0)	24,383 (100.0)
1	4,222 (11.6)	3,822 (11.9)	2,960 (12.1)	3,771 (14.6)	3,142 (13.4)	3,135 (12.9)
1+2	4,518 (12.4)	3,522 (11.0)	2,420 (9.9)	2,609 (10.0)	2,554 (10.9)	2,504 (10.3)
1+2+3	1,040 (2.8)	646 (2.0)	445 (1.8)	581 (2.2)	557 (2.4)	727 (3.0)
1+2+4	5,180 (14.3)	4,020 (12.5)	3,163 (12.9)	3,696 (14.3)	3,255 (13.8)	3,025 (12.4)
1+2+5	1,118 (3.0)	1,496 (4.6)	1,026 (4.2)	803 (3.1)	1,009 (4.3)	969 (4.0)
1+2+3+4	2,266 (6.2)	1,557 (4.8)	1,160 (4.7)	1,627 (6.3)	1,272 (5.4)	1,393 (5.7)
1+2+3+5	1,831 (5.0)	1,901 (5.9)	1,541 (6.3)	1,571 (6.1)	1,413 (6.0)	1,519 (6.2)
1+3	1,405 (3.8)	1,297 (4.0)	982 (4.0)	1,133 (4.4)	851 (3.6)	851 (3.5)
1+3+4	2,087 (5.7)	1,868 (5.8)	1,844 (7.5)	1,832 (7.1)	1,194 (5.1)	1,086 (4.4)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3+5	1,560 (4.3)	1,843 (5.7)	1,535 (6.3)	1,082 (4.2)	891 (3.8)	802 (3.3)
1+4	3,054 (8.4)	2,746 (8.5)	2,354 (9.6)	2,299 (8.9)	1,923 (8.2)	1,508 (6.2)
1+5	637 (1.7)	900 (2.8)	742 (3.0)	647 (2.5)	522 (2.2)	505 (2.1)
2	51 (0.1)	107 (0.3)	70 (0.3)	16 (0.1)	59 (0.3)	159 (0.6)
3	104 (0.2)	125 (0.3)	92 (0.4)	49 (0.2)	87 (0.4)	67 (0.3)
4	103 (0.2)	91 (0.2)	63 (0.3)	40 (0.2)	154 (0.7)	270 (1.1)
4+6	56 (0.1)	22 (0.0)	39 (0.2)	46 (0.2)	33 (0.1)	41 (0.2)
5	71 (0.1)	41 (0.1)	32 (0.1)	19 (0.1)	27 (0.1)	80 (0.3)
5+6	1,164 (3.2)	1,150 (3.5)	834 (3.4)	883 (3.4)	1,063 (4.5)	986 (4.0)
5+8	2,607 (7.2)	1,879 (5.8)	1,257 (5.1)	1,316 (5.1)	1,012 (4.3)	1,099 (4.5)
6	14 (0.0)	13 (0.0)	9 (0.0)	2 (0.0)	5 (0.0)	7 (0.0)
7	195 (0.5)	149 (0.4)	183 (0.7)	141 (0.5)	105 (0.4)	198 (0.8)
8	7 (0.0)	3 (0.0)	-	5 (0.0)	3 (0.0)	-
9	1,206 (3.3)	1,153 (3.6)	812 (3.3)	794 (3.1)	770 (3.3)	972 (4.0)
10	1,169 (3.2)	1,252 (3.9)	813 (3.3)	866 (3.3)	770 (3.3)	756 (3.1)
병과 기타	485 (1.3)	349 (1.0)	153 (0.6)	83 (0.3)	855 (3.6)	1,724 (7.1)

자료 : 법원행정처(2013~2018). 사법연감.

5 형사법원에서의 사건처리

소년법원이 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거나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형사법원으로 이송된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19세 미만 청소년의 제1심 소년형사사건의 재판현황을 살펴보면, 소년부송치 처분을 제외하고 2011년까지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부터는 부정기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정기형도 매우 낮은 비율로 선고되고 있다.

2017년에 중국처리된 소년범 2,716명 중 사형이 선고된 예는 없었고, 무기형이 선고된 사례는 1건 있었다. 부정기형이 502명(18.5%)으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가 386명(14.2%), 벌금형이 109명(4.0%), 정기형이 4명(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9-3-11〉 연도별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계	사형	무기	정기형	부정기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 유예	무죄	소년부 송치	기타
2008	5,026 (100.0)	-	1 (0.0)	215 (4.3)	531 (10.6)	1,504 (29.9)	554 (11.0)	2,222 (44.2)			
2009	6,160 (100.0)	-	-	462 (7.5)	587 (9.5)	1,828 (29.7)	681 (11.1)	93 (1.5)	20 (0.3)	1,971 (32.0)	518 (8.4)
2010	5,294 (100.0)	-	-	472 (8.9)	503 (9.5)	1,577 (29.8)	590 (11.1)	85 (1.6)	25 (0.5)	1,584 (29.9)	458 (8.7)
2011	3,499 (100.0)	-	-	14 (0.4)	492 (14.1)	610 (17.4)	133 (3.8)	24 (0.7)	10 (0.3)	1,958 (56.0)	258 (7.3)
2012	4,377 (100.0)	-	-	7 (0.2)	804 (18.4)	557 (12.7)	118 (2.7)	28 (0.6)	20 (0.5)	2,561 (57.4)	327 (7.5)
2013	4,268 (100.0)	-	-	3 (0.1)	676 (15.8)	407 (9.5)	15 (0.4)	3 (0.1)	12 (0.3)	2,689 (63.0)	321 (7.5)
2014	3,574 (100.0)	-	-	14 (0.4)	634 (17.7)	405 (11.3)	110 (3.1)	15 (0.4)	7 (0.2)	2,082 (58.3)	307 (8.6)

구분 연도	계	사형	무기	정기형	부정기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 유예	무죄	소년부 송치	기타
2015	3,516 (100.0)	-	-	7 (0.2)	630 (17.9)	440 (12.5)	102 (2.9)	18 (0.5)	18 (0.5)	1,981 (56.3)	320 (9.1)
2016	3,242 (100.0)	-	-	1 (0.0)	697 (21.5)	395 (12.2)	94 (2.9)	15 (0.5)	8 (0.2)	1,721 (53.1)	311 (9.6)
2017	2,716 (100.0)	-	1 (0.0)	4 (0.2)	502 (18.5)	386 (14.2)	109 (4.0)	20 (0.7)	19 (0.7)	1,428 (52.6)	247 (9.1)

주 : 본 통계는 2010년까지는 20세 미만자, 2011년부터는 19세 미만자가 기준임.

자료 : 법원행정처(2009~2018), 사법연감.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제 4 장 | 청소년범죄에 대한 교정교육

1 소년원의 교정교육

가. 임무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1988년에는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하여 소년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999년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배양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1958년 공포된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출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과정의 일반교육과정과 전체 교육시간의 70~80%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운영하는 특성화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영농, 축산, 원예로 시작된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 '법무부 제1공공직업훈련소'로 지정되고, 뒤이어 1974년 서울소년원 등 전국의 9개 소년원이 '법무부 제2~10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부산·광주·안양소년원에서 자동화용접, 카일렉트로닉스, 증장비, 건축환경설비,

제과제빵,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사무자동화, 영상미디어 등 1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도의 및 종교교육으로 출발한 소년원 인성교육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국토순례, 야영훈련, 문화예술교육, 공연관람, 사회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함께 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특성 등을 고려한 집단지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소년원 학생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대구·춘천 소년원을 인성교육 전담소년원으로 개편하고, 2007년 이를 제주소년원으로 확대하여 현재 3개 소년원에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담소년원 이외 소년원에서도 인성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9년 교육현장의 자료와 전문가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교재를 발간한 이래 2007년까지 총 30여 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6년 (구)대전소년원을 ‘약물남용원생 전담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약물남용,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재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덕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 「소년법」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까지 수용하여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는 대덕소년원을 ‘대산학교’로 개교하고 8호 처분자의 경우 개방형 단기집중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대덕소년원을 대전소년원으로 직제상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9년 7월 1일부터는 청주소년원의 직제를 개정하여 여자소년원으로 개칭하고, 안양소년원에서 여자소년원생 중 8호, 9호 처분 대상자를 청주로 인수하였다. 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안양·청주·춘천·제주 등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년원에서는 과거의 수용 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적극적·개방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표 9-4-1〉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구분	기관(학교명)	대상	교육과정
서울 경 기 권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사진영상, 한식조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교과교육(女)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피부미용, 제과제빵, 서비스마케팅)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구분	기관(학교명)	대상	교육과정
중부권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7호, 8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재활교육, 8호처분자교육(男)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8호, 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호처분자교육(女) • 직업능력개발훈련(예술분장, 커피바리스타)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호남권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공간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용접,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축환경설비, 자동차외장관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영남권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바리스타, 케이크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 자동차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강원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가발전문, 스포츠마사지)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제주권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8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호처분자(제주지역男) 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골프매니지먼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자료 : 법무부(2018). 법무연감.

나. 보호소년의 수용

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이다.

소년법 개정 이전의 처우과정은 단기과정(6호), 일반과정(7호)으로 구분되었다. 단기과정은 6개월 이하를 수용하고, 일반과정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A과정,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의 B과정, 15개월 이상 19개월 미만의 C과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 이후의 소년원 처우 과정은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 과정(8호), 단기과정(9호), 장기과정(10호)으로 구분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 처분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7호 처분의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대덕소년원에서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호 처분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고, 9호 처분의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7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 수용자가 902명이었고, 6개월 미만자가 777명, 12개월 이상자가 370명 순으로 많았다. 평균수용인원은 2008년 7.90개월에서 2017년 4.85개월로 감소하였다.

〈표 9-4-2〉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단위 : 명, 월)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728	2,672	2,755	2,716	3,399	3,005	2,531	2,171	2,138	2,275
1월 미만	161	1,221	1,356	1,370	1,680	1,348	969	883	773	902
3월 미만	132	98	86	76	125	96	80	62	62	47
6월 미만	588	590	653	649	796	894	769	670	676	777
6월 이상 12월 미만	311	262	177	160	209	232	208	181	189	179
12월 이상	536	501	483	461	589	435	505	375	438	370
평균 수용기간	7.90	5.71	4.61	4.66	4.66	4.90	5.18	4.80	5.35	4.85

자료 : 법무부(2018). 법무연감.

보호소년은 교육과정을 마치면 퇴원 또는 가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퇴원은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결정하고, 6개월~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소년원에 수용된 신수용 보호소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2017년에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한 2,450명을 기록하였다. 1일 평균 수용인원도

2008년부터 증가하였다가 201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1,166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9-4-3〉 연도별 보호소년 수용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수용인원	1,732	2,775	2,822	2,960	3,429	3,037	2,363	2,288	2,096	2,450
1일 평균 수용인원	1,171	1,191	1,163	1,264	1,390	1,380	1,236	1,112	1,131	1,166

자료: 법무부(2018). 법무연감.

다. 소년원 교육

소년원 교육혁신의 결과, 지난 1999년 9월 이후 일반학교 학생이 참가한 ‘전국 중·고등부 영어 말하기 대회’ 및 ‘컴퓨터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소년원학생이 각종 수상을 하였으며, 컴퓨터 및 각종 기능 자격을 취득하였다. 최근 10년간 소년원생의 자격 취득현황을 보면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최근에 컴퓨터, 외국어 등의 분야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훈련분야인 자동차정비, 용접, 헤어디자인 등의 직종에서 전문기능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7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한 소년원생은 총 4,710명이고, 이 중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1,524명, 일반기능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1,524명이었다.

〈표 9-4-4〉 연도별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950	2,674	2,644	2,980	3,125	2,687	3,301	3,106	3,681	4,710
외국어	222	74	45	41	48	-	-	-	-	-
컴퓨터	1,478	1,389	1,387	1,642	1,581	1,292	1,590	1,288	1,415	1,524
일반기능	600	584	634	670	900	774	947	992	1,238	1,524
기타	650	627	578	627	596	621	764	826	1,028	1,662

자료: 법무부(2018). 법무연감.

보호소년들이 임시퇴원 후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더 이상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민·관 합동의 총체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417명이 취업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였다.

〈표 9-4-5〉 연도별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단위: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취업인원	339	335	328	261	313	273	327	234	423	417

자료 : 법무부(2018). 법무연감.

소년원에서는 지속적인 교과교육을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7년 상급학교에 진학한 인원은 고등학교 79명, 대학교 88명 등 총 167명이었다.

〈표 9-4-6〉 연도별 상급학교 진학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13	166	108	111	137	115	134	154	159	167
대학교	49	52	38	22	45	45	71	91	93	88
고등학교	64	114	70	89	92	70	63	63	66	79

자료 : 법무부(2018). 법무연감.

라.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정관을 운영하여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소년원에 16명 규모의 가정관을 신축하여 학생과 가족이 함께 2~3일간 생활하며,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여 심리적 안정 하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13동 26세대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가족합숙제 1,160명, 1일 생활제 5,462명, 가정관 면회제 17,048명으로 총 23,676명이 가정관을 이용하였다.

한편, 소년원생 상당수가 문신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법무부는 2000년 4월부터 서울소년원에 레이저시술실을 설치한 이후 전국 10개 소년원 및 1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자체 의료진을 두어 문신제거수술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나 시술 비용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문신제거수술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일반인 10,747명을 포함 총 29,931명에게 지원을 하였다.

전국소년원에서는 ‘취업 및 사회정착지원계’와 민관 합동으로 ‘사회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출원 후 취업 및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과 취업 추천, 구인업체 발굴 등을 하고 있다.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취업후견인제도’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 취업후견인 56명, 취업알선 174명, 산업체 현장실습 394명, 구인업체 방문 130회 실적을 거두었다.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2001년 5월부터 기숙사형태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경기를 시작으로 2005년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안양(여자 전용) 등 5개 지역에 추가 설치되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주와 춘천지역에 대리부모가 24시간 상주하며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 형태의 자립생활관을 신축하였다.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2,589명이 입주하였고, 취업알선, 학업연계, 심리치료, 가족찾기, 결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2014년 12월에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숙형 직업훈련학교인 YES센터를 신축하여, 자동차정비, 용접, IT, 골프매니지먼트,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등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소년원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관리·지원하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 통신지도 36,859회, 방문지도 2,502회를 실시하였다.

마.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하도록 하고 있고, 22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 중인 학생이 교과 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년원장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심사를 신청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보호소년의 인격, 교정성적,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부를 심사·결정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시퇴원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임시퇴원생이 임시퇴원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재수용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소년원 출원 사유별 인원현황을 보면, 퇴원이 5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임시퇴원이 40.3%였다.

〈표 9-4-7〉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2008-2017)

(단위 : 명, (%))

연도	출원사유	계	퇴원	임시퇴원	처분변경 취소	기타
2008		1,780 (100.0)	871 (48.9)	857 (48.2)	41 (2.3)	11 (0.6)
2009		2,729 (100.0)	1,722 (63.1)	950 (34.8)	47 (1.7)	10 (0.4)
2010		2,820 (100.0)	1,821 (64.6)	934 (33.1)	44 (1.6)	21 (0.7)
2011		2,761 (100.0)	1,790 (64.8)	926 (33.6)	33 (1.2)	12 (0.4)
2012		3,400 (100.0)	2,151 (63.2)	1,195 (35.2)	38 (1.1)	15 (0.5)
2013		3,086 (100.0)	1,919 (62.2)	1,086 (35.2)	60 (1.9)	20 (0.7)
2014		2,608 (100.0)	1,442 (55.3)	1,089 (41.7)	54 (2.1)	23 (0.9)
2015		2,242 (100.0)	1,283 (57.2)	889 (39.7)	56 (2.5)	14 (0.6)
2016		2,216 (100.0)	1,192 (53.8)	946 (42.7)	51 (2.3)	27 (1.2)
2017		2,349 (100.0)	1,329 (56.6)	946 (40.3)	44 (1.8)	30 (1.3)

주 : 기타는 유죄판결, 사망, 이탈 등 인원.

자료 : 법무부(2018). 법무연감.

2 소년교도소의 교정교육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처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장소에 수용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3조). 다만,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소년교도소는 2004년까지는 천안교도소와 김천교도소에서 나누어서 수용하고 있었으나, 2006년 1월 법무부예규에 의해 천안교도소는 20세 미만 남자소년 수형자를 전담 수용하였다. 그러나 교정본부 직제 개편으로 2009년 12월 31일부터 소년범죄자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다.

가. 수용현황

최근 10년 동안 소년교도소 수형인원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2008년 156명이었던 것이 2017년 128명이 수용되어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소년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소년수형자 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되면서 인원이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소년법에 대한 형사처벌의 자제 경향으로 인해 수형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표 9-4-8〉 연도별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

(단위: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형인원	156	169	146	114	170	152	131	130	150	128

자료 : 법무부(2018). 법무연감.

최근 10년간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절도·살인·강도 등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강간 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도 소년수형자 중 강간범 등이

44명(34.4%), 절도범이 24명(18.7%), 사기·횡령범이 12명(9.4%), 강도범 등이 8명(6.3%), 폭력·상해범이 4명(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4-9〉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08~2017)

(단위: 명, %)

연도 죄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56 (100.0)	169 (100.0)	146 (100.0)	114 (100.0)	170 (100.0)	152 (100.0)	131 (100.0)	130 (100.0)	150 (100.0)	128 (100.0)
절도	73 (46.8)	62 (36.7)	45 (30.8)	26 (22.8)	42 (24.7)	43 (28.3)	34 (26.0)	26 (20.0)	23 (15.3)	24 (18.7)
사기·횡령	1 (0.7)	3 (1.8)	3 (2.1)	-	2 (1.2)	1 (0.7)	2 (1.5)	10 (7.7)	2 (1.3)	12 (9.4)
폭력·상해	9 (5.8)	3 (1.8)	1 (0.7)	5 (4.4)	17 (10.0)	17 (11.2)	5 (3.8)	10 (7.7)	27 (18.0)	4 (3.1)
강간 등	24 (15.4)	44 (26.0)	32 (21.9)	33 (28.9)	54 (31.7)	46 (30.2)	34 (26.0)	27 (20.8)	35 (23.3)	44 (34.4)
강도 등	24 (15.4)	32 (18.9)	33 (22.6)	18 (15.8)	24 (14.1)	16 (10.5)	11 (8.4)	14 (10.8)	19 (12.6)	8 (6.3)
살인	9 (5.8)	6 (3.55)	11 (7.5)	10 (8.8)	11 (6.5)	7 (4.6)	6 (4.6)	5 (3.8)	5 (3.3)	4 (3.1)
과실범	5 (3.2)	2 (1.2)	3 (2.1)	1 (0.9)	2 (1.2)	-	2 (1.5)	2 (1.5)	2 (0.1)	-
기타	11 (7.1)	17 (10.1)	18 (12.3)	21 (18.4)	18 (10.6)	22 (14.5)	37 (28.2)	36 (27.7)	37 (24.7)	32 (25.0)

주: 폭력에는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포함됨.

자료: 법무부(2018). 법무연감.

청소년 수형자의 형명을 보면 유기징역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고형은 거의 없다. 최근 10년간 청소년수형자의 형기를 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 '5년 이상'의 징역형, '1년 미만' 징역형 순으로 높았다. 대체로 장기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단기징역형의 비율은 늘어가는 추세였으나, 2012년 이후 장기징역형의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다. 2017년도 1년 이상 유기징역형의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36.7%,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7.0%, 1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9-4-10〉 청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2008-2017)

(단위 : 명, (%))

형명·형기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56 (100.0)	169 (100.0)	146 (100.0)	114 (100.0)	170 (100.0)	152 (100.0)	131 (100.0)	130 (100.0)	150 (100.0)	128 (100.0)
정형	무기	-	-	-	-	-	-	-	-	-	-
	20년 이상	-	-	-	1 (0.9)	2 (1.8)	4 (2.6)	1 (0.7)	-	-	-
	10년 이상	3 (1.9)	3 (1.8)	5 (3.4)	4 (3.5)	5 (2.9)	4 (2.6)	3 (2.3)	2 (1.5)	2 (1.3)	-
	5년 이상	14 (9.0)	15 (8.9)	15 (10.3)	12 (10.5)	13 (7.6)	10 (6.6)	11 (8.4)	12 (9.2)	13 (8.7)	9 (7.0)
	3년 이상	27 (17.3)	42 (24.8)	45 (30.8)	38 (33.3)	44 (25.9)	39 (25.7)	42 (32.1)	48 (37.0)	56 (37.3)	47 (36.7)
	1년 이상	87 (55.8)	89 (52.7)	58 (39.7)	48 (42.1)	94 (55.3)	87 (57.2)	67 (51.2)	56 (43.1)	69 (46.0)	64 (50.0)
	1년 미만	24 (15.4)	19 (11.2)	23 (15.8)	10 (8.8)	12 (7.1)	8 (5.3)	7 (5.3)	11 (8.5)	8 (5.3)	8 (6.3)
	6개월 미만	1 (0.6)	1 (0.6)	-	1 (0.9)	-	-	-	1 (0.7)	1 (0.7)	-
고형	3년 미만	-	-	-	-	-	-	-	-	-	-
	1년 미만	-	-	-	-	-	-	-	-	1 (0.7)	-

자료 : 법무부(2018). 법무연감.

나. 교정교육

교정교육은 범죄적 심성을 순화시킴으로써 재범에 이르지 않고 사회에 유용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교화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7년 소년교도소에서 학과교육을 받아 검정고시를 합격한 인원은 59명,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은 7명이다.

〈표 9-4-11〉 연도별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검정고시 합격인원	35	35	38	30	10	55	71	54	67	59
방송통신고 졸업인원	8	6	13	10	5	10	6	7	6	7

자료: 법무부 교정본부(2018).

다. 출소

청소년수형자는 해당 형기가 종료하면 출소하게 되지만, 형기가 종료하기 전에도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1/3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65조). 청소년수형자 중 가석방된 자의 비율은 2008년에 18.3%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7년에 12.0%를 차지하였다.

〈표 9-4-12〉 청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2008~2017)

(단위: 명, (%))

연도 \ 석방사유	계	가석방	만기석방	기타
2008	317 (100.0)	58 (18.3)	164 (51.7)	95 (30.0)
2009	101 (100.0)	17 (16.8)	59 (58.4)	25 (24.8)
2010	114 (100.0)	21 (18.4)	75 (65.8)	18 (15.8)
2011	69 (100.0)	10 (14.5)	45 (65.2)	14 (20.3)
2012	86 (100.0)	17 (19.8)	45 (52.3)	24 (27.9)

연도 \ 석방사유	계	가석방	만기석방	기타
2013	101 (100.0)	10 (10.0)	68 (67.2)	23 (22.8)
2014	103 (100.0)	12 (11.7)	78 (75.7)	13 (12.6)
2015	74 (100.0)	8 (10.8)	53 (71.6)	13 (17.6)
2016	94 (100.0)	9 (9.6)	64 (68.1)	21 (22.3)
2017	83 (100)	10 (12.0)	38 (45.8)	35 (42.2)

주 : 1) 집행종료결정은 단기만료 후 장기도래 전의 석방, 만기석방은 장기만료로 인한 석방을 의미함.

2) '기타'는 특별사면, 형집행정지, 사망, 노역종료 등을 포함함.

자료 : 법무부(2018), 법무연감.

3 보호관찰소의 교정교육

가. 개요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조사,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에 관련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원호를 받게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하게 하거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법에 대하여 최초로 시행된 보호관찰은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어 성폭력사범(1994년), 성인형사범(1997년), 가정폭력사범(1998년), 성매매사범(2004년),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2008년)로까지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전체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청소년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나, 청소년 대상자의 높은 변화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우수자원과 연계하여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보호관찰의 재범방지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호관찰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조직

보호관찰행정 중앙조직으로는 인사 및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보호관찰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보호법제과, 보호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보호관찰과가 있고, 5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고등검찰청 소재지(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지방검찰청 및 주요지청 소재지에 17개 보호관찰소와 40개 보호관찰지소, 서울지역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대전지역에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다. 보호관찰 실시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 「형법」 제62조의 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소년법」의 개정으로 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보호관찰 부과연령이 10세로 하향되었다.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2017년 현재 소년보호관찰 인원은 47,493명으로, 전체보호관찰 중 소년보호관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에 불과하다.

〈표 9-4-13〉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 비율

(단위 : 명, %)

연도 \ 구분	전체 보호관찰	소년보호관찰	소년보호관찰 비율
2008	184,813	54,824	30.0
2009	218,049	66,789	31.0
2010	196,233	71,015	37.0
2011	179,767	70,549	40.0
2012	178,199	71,760	41.0
2013	175,318	65,815	38.0
2014	184,362	57,064	31.0
2015	199,713	51,978	26.0
2016	227,141	49,687	22.0
2017	240,073	47,493	20.0

자료 : 법무부(2009~2018), 법무연감.

청소년보호관찰 실시현황을 보면, 소년법에 근거한 보호관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건부 기소유예의 한 유형으로 실시되는 선도위탁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2017년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소년보호처분이 38,67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선도위탁이 5,894명, 임시퇴원 1,807명, 집행유예 709명 순이다. 최근 10년간 변화를 보면 집행유예율과 소년보호처분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임시퇴원율이나 선도위탁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표 9-4-14〉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 실시현황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형법			소년법		가정 폭력법	성폭력 법	성매매 법	선도 위탁	성구매자 교육	벌금 대체	아청법	아동 학대법	치료 감호법
		선고 유예	집행 유예	가 석방	보호처분	임시퇴원									
2008	54,824	5	3,093	143	46,187	1,250	12	190	36	3,870	32	-	-	-	-
2009	66,789	5	3,480	119	56,700	1,640	10	339	37	4,419	36	-	-	-	-
2010	71,015	5	3,259	72	59,751	1,696	6	330	22	5,852	10	86	13	-	-

연도	구분 계	형법			소년법		가정 폭력법	성폭력 법	성매매 법	선도 위탁	성구매자 교육	벌금 대체	아청법	아동 학대법	치료 감호법
		신고 유예	집행 유예	가 석방	보호처분	임시퇴원									
2011	70,549	-	1,679	44	60,116	1,650	3	236	11	6,694	9	50	54	-	-
2012	71,760	1	1,365	51	61,850	2,009	10	193	1	6,172	9	34	61	-	-
2013	65,815	1	1,073	45	55,724	2,091	13	153	1	6,585	10	50	67	-	-
2014	57,064	-	1,025	28	45,831	2,043	28	145	5	7,774	3	85	97	-	-
2015	51,978	1	801	21	42,318	1,732	31	118	7	6,714	2	91	142	-	-
2016	49,687	2	731	12	38,967	1,726	61	105	8	7,864	17	67	122	5	-
2017	47,493	5	709	13	38,675	1,807	55	107	12	5,894	11	68	129	5	3

자료 : 법무부(2009~2018). 법무연감.

보호관찰 기간 중 청소년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의 법정 준수사항(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및 외출제한명령 등 법원 및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지키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청소년대상자와의 초기면담,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일반 대상자, 주요 대상자, 집중 대상자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등급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통제를 위해 출석지도 위주의 보호관찰 방식을 탈피하여 주거지 방문, 생활 근거지에서의 면접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역동적 보호관찰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년 전담 직원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특화된 처우와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등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등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형의 집행 등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인하고 유치한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또는 부정기형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의지를 북돋우고 보호관찰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전국 57개 보호관찰(지)소에서 각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특성별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 상담교육,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자특별교육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2017년에 총 22,033명에게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표 9-4-15〉 연도별 청소년대상자 보호관찰 성적에 따른 조치 현황

(단위 : 명)

연도	성적양호자				수강명령					
	계	임시 해제	부정기형 종료	가정보호 처분종료	계	경고	구인	유치	취소· 변경 등	기타
2008	183	183	-	-	19,459	14,674	1,538	1,490	1,638	119
2009	367	367	-	-	24,903	18,827	1,987	1,943	2,033	113
2010	105	105	-	-	25,873	19,037	2,153	2,095	2,444	144
2011	626	626	-	-	27,890	21,305	2,007	1,936	2,449	193
2012	862	861	1	-	32,853	26,671	1,759	1,670	2,538	215
2013	836	836	-	-	32,216	25,880	1,917	1,815	2,431	173
2014	746	746	-	-	27,310	21,766	1,543	1,456	2,399	146
2015	1,176	1,176	-	-	24,076	18,948	1,351	1,256	2,364	157
2016	615	615	-	-	22,217	17,469	1,162	1,116	2,371	99
2017	603	602	-	1	22,033	17,693	1,051	1,015	2,158	116

주 : 1) 취소·변경 등은 집행유예취소, 보호처분변경,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선도위탁 취소, 가정보호 취소임.

2) 기타는 기간연장, 보호관찰 정지, 사회봉사허가 취소를 포함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2018).

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 청소년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주로 처벌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노인, 장애인 등 생활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봉사체험을 통해 범죄에 속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사회봉사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연령은 14세로 낮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다(「소년법」 제33조제4항). 2017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은 8,321명, 수강명령은 6,139명에게 실시되었다.

〈표 9-4-16〉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형태(2008~2017)

(단위 : 명)

연도	구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2008		972	767	205	196	150	46
2009		1,051	738	313	226	170	56
2010		932	703	229	193	146	47
2011		300	255	45	139	114	25
2012		10,347	7,482	2,865	13,792	9,339	4,453
2013		10,606	7,291	3,315	10,176	7,088	3,088
2014		9,442	6,017	3,425	7,297	4,991	2,306
2015		8,677	5,641	3,036	6,056	4,250	1,806
2016		7,616	4,973	2,643	5,587	3,999	1,588
2017		8,321	5,465	2,856	6,139	4,446	1,693

자료 : 법무부(2009~2018). 법무연감.

2017년도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6,656명이고,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1,122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5,534명이다. 협력집행은 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서의 봉사로 실시되고 있다.

〈표 9-4-17〉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2008-2017)

(단위: 명)

연도	구분	총계	직접 집행	협력 집행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08		5,726	1,477	4,249	11	3,990	166	17	65
2009		8,178	1,443	6,735	7	6,429	184	48	67
2010		7,394	1,324	6,070	2	5,812	157	80	19
2011		8,346	1,481	6,865	51	6,490	168	89	67
2012		8,175	1,510	6,665	10	6,259	192	130	74
2013		8,857	1,941	6,916	1	6,293	220	314	88
2014		7,742	1,816	5,926	2	5,291	152	386	95
2015		7,222	1,553	5,669	3	5,208	133	301	24
2016		6,026	1,282	4,744	1	4,373	130	215	25
2017		6,656	1,122	5,534	4	5,246	159	99	26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2018).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수강명령을 통해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의 범죄내용에 따라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강의, 가정폭력방지교육 등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수강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강명령 부과 연령은 12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소년법」 제33조제4항). 2017년 청소년 수강명령 집행인원은 9,779명으로 전년대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9,212명이었고,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567명이었다.

〈표 9-4-18〉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2008-2017)

(단위: 명)

구분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08	5,847	5,620	227	-	40	77	-	14	96
2009	10,397	9,954	443	3	-	2	-	46	382
2010	9,779	9,212	567	-	-	78	2	43	444
2011	10,135	9,518	617	-	11	277	-	74	255
2012	10,612	10,026	586	4	8	152	-	63	359
2013	7,864	7,374	490	2	9	240	-	48	191
2014	5,526	5,340	186	-	2	103	2	23	56
2015	4,410	4,375	35	-	2	26	1	4	2
2016	3,915	3,882	33	-	-	21	2	6	4
2017	9,779	9,212	567	-	-	78	2	43	444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2018).

마. 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결정전조사는 법원이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명하기 위하여 결정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청함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범죄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의 제반사항에 관해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처분의 적합성 판별과 법원의 적정판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 결정전조사는 2008년 3,311건에서 2012년 12,719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여 2017년 16,606건이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대해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검사결정전조사제도’가 신설되었다(「소년법」 제49조의2). 검사의 결정전 조사비율도 2008년 첫 실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 3,626건이었다.

환경조사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용자, 보호감호소의 감호처분자에 대한 범죄의 동기 및 현재의 환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교정 교육자료와 가석방·임시퇴원·가출소 등의 심사자료, 그리고 보호관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내용은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이며, 면접, 사실조회, 자료분석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환경조사 결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소장은 본인, 가족, 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수용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 소년원에 의뢰된 환경조사는 2008년 1,477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 1,693건으로 나타났다.

〈표 9-4-19〉 연도별 청소년대상자 판결(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실적

(단위: 건)

연도	구분	환경조사(소년원 의뢰)	법원 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2008		1,477	3,311	1,415
2009		1,668	4,234	3,670
2010		1,454	6,398	4,524
2011		1,380	9,242	3,906
2012		1,500	12,719	5,547
2013		1,555	12,141	5,084
2014		1,395	12,399	5,855
2015		1,432	17,678	3,805
2016		1,419	16,931	4,379
2017		1,693	16,606	3,626

자료 : 법무부(2018). 법무연감.

제10부 요약

제10부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에 대해 다룬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보호·복지시설로 구분되며,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된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텔이 포함되며, 약 800개의 시설(2017년 기준)이 설치·운영 중에 있다.

청소년이용시설에는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그리고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써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의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있으며, 별도로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이 있다. 이들 시설은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운영된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은 크게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로 구분된다. 청소년보호시설로는 청소년보호·재활센터가 있으며, 청소년복지시설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단체 관련기관 종사자를 총칭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관련 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이나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마친 자이다. 지속적인 청소년지도자 양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8년을 기준으로 누적된 청소년지도자 양성 인원은 청소년지도사는 총 49,846명, 청소년상담사는 총 19,598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청소년관련 단체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으며, 행정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과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관련 부서 등이 존재한다. 그 중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각각의 설립목적에 맞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관련 연구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있으며, 청소년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수행, 청소년정책평가 및 자문·지원,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정책 및 연구자료 제공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으로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대학원에 청소년관련 학과나 전공을 둔 학교는 2018년 현재 전국 13개 시도, 총 56개교에서 달하고 있으나, 최근 학생수감소와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협의체로서 세계 각국의 청소년 연구개발기관 간 정보 및 학술교류 확대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자 세계청소년 연구개발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Youth: WARDY)가 설립되어 2018년 현재 9개국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8년 청소년정책 예산은 총 2,683억여 원이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쉼터·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제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제1장 청소년시설

제2장 청소년지도자

제3장 청소년 단체

제4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제5장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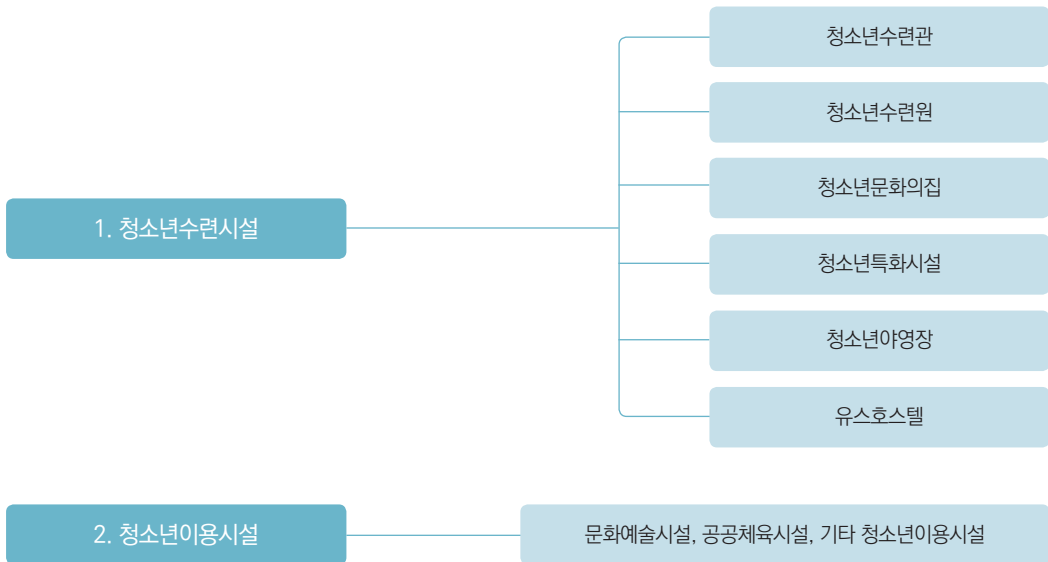
10

제 1 장 | 청소년시설

1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의 민간분야도 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 10-1-1]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



자료 : 여성가족부(2018).

가. 청소년수련시설

1) 수련시설 현황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2년 이전에는 수련시설이 150여 개에 불과 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2월 기준 800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800	185	258	189	43	115	10
공공	551	184	253	64	19	21	10
민간	249	1	5	125	24	94	0

자료: 여성가족부(2018).

〈표 10-1-2〉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800	185	258	189	43	115	10
서울	60	32	15	3	0	4	6
부산	26	8	12	3	2	1	0
대구	14	5	4	2	0	2	1
인천	29	8	5	5	6	5	0
광주	11	5	4	1	0	0	1
대전	15	4	7	3	0	1	0
울산	10	1	8	1	0	0	0
세종	2	1	1	0	0	0	0
경기	157	33	58	42	9	15	0
강원	80	15	30	18	4	12	1
충북	47	6	13	21	1	6	0
충남	49	11	12	15	2	9	0
전북	53	10	18	14	3	7	1
전남	58	10	20	14	6	8	0
경북	64	15	15	14	4	16	0
경남	75	18	15	28	4	10	0
제주	50	3	21	5	2	19	0

주 : 국립청소년시설(5개)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청소년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군), 국립청소년해양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라북도 김제시).

자료 : 여성가족부(2018).

2) 수련시설의 설치

가) 중앙정부의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시설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및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를 건립·운영 중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수련시설 간의 네트워크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내(동곡)에 부지 474,386㎡, 연면적 35,144㎡ 내외 규모로 약 6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6월에 준공되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 청소년수련활동의 시범적 운영 및 총괄·지원을 위한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에 부지 483,818㎡, 연면적 18,539㎡ 규모에 약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우주분야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청소년 우주체험 활동의 장을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우주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에 부지 282,617㎡ 연면적 14,075㎡ 규모의 우주체험관, 우주생활관 등을 약 4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7월에 준공하였다.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는 농업생명체험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생명과학·농업기술·생태환경의 특화된 체험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 시설이다.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에 부지 37,932㎡, 연면적 10,871㎡ 규모의 농·생명 실험시설 등을 약 22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 7월에 준공하였다.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해양환경체험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해양자원 개발 및 기술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에 부지 49,730㎡, 연면적 13,506㎡ 규모의 해양환경체험시설 등을 약 372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13년 7월에 준공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많은 생활권 시설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1990년부터 지방양여금이 청소년시설 건립에 사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지원으로 건립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생활권수련시설로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신규건립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부지 선정 시 청소년의 접근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37개소 신규건립, 65개소 기능보강, 2017년도에는 51개소 신규건립, 79개소 기능보강, 2018년도에는 49개소 신규건립, 74개소 기능보강을 지원하였다.

다) 수련시설 설립 사전검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국립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입지조건이나 내부구조,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각각 5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수련시설 운영지원

정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수련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구조부의 균열, 내구성 저하 등의 위험사항, 석축, 옹벽, 담장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전기, 기계, 소방 및 냉·난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기타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및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으며,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였다.

특히, 2014년 7월부터는 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에 따라 수련시설에 대한 감독 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가 의무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 제19조의2)되었다.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한 분야별 종합 안전점검과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을 통하여 시설운영 전반사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설 종류별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위생분야를 추가하여 점검분야를 확대하였으며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시설 붕괴 우려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운영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리·감독 주체의 안전관리 강화와 수련시설 운영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었다.

나. 청소년이용시설

1) 청소년이용시설 개념과 유형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이지만,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 활동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이용시설로는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②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④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⑤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⑥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⑧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시설 중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이용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청소년이용시설 현황

가) 문화시설

문화예술시설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국가가 건립한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의 시설이 있다. 문화공간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으로 분류된다.

나) 과학관

과학관 중 대표적인 이용시설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상설전시관에는 4개 분야 약 4,100여 점의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 밖에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 및 휴식 공간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다) 체육시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집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선수의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 등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로는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농구대, 시·군 기본체육시설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9

2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가.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시설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2003년 9월부터 운영된 ‘청소년보호 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가 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와 폭력을 받는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 성범죄 피해 청소년, 임금체불 등 근로 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활동하는 NGO와 경찰, 행정당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였으며, 2004년에는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드롭 인 센터(Drop-in center)를 개설하였다. 2005년부터는 서울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1년 「청소년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되었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매체 및 환경에 대한 보호와 인터넷 게임 중독 등에 대한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해 상시적으로 전문적·효과적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설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2014년 8월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따라 1주, 2주, 3주, 4주 과정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집단상담, 가족상담 및 대안활동, 관계증진활동 등을 통해 참가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용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보호시설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지원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규정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등이 있다. 그리고 상담시설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있다.

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1)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청소년쉼터는 9~24세의 청소년들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쉼터유형에 따라 일시 7일 이내, 단기 3개월(최장 9개월) 이내, 중장기 3년(1년 단위 연장)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1992년 최초로 서울 YMCA에 청소년쉼터를 설치·지원하였으며, 1996년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7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전국에 총 123개소의 쉼터를 운영중이며, 2018년에는 가출 청소년의 조기발굴·긴급구조 및 초기개입으로 신속한 가정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거리상담 전문인력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2012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 시설의 한 유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2017년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서울 및 경기도 각각 1개소가 신규 개소하여 총4개소에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지원 및 시설 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최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청소년 시설에서는 보호, 치료, 교육, 자립 등에 대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재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 보호, 자립지도, 교육 등 종합적·전문적 치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거주형 치유기관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2012년 12월에 개원하였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입교대상자는 ADHD, 우울증, 불안장애,品行장애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가진 만 9~18세 청소년이고,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개원 이후 2017년까지 약 4,900여 명의 청소년이 장·단기 치료·재활 서비스를 지원 받았으며, 이중 상당수가 정서적 안정감이 향상되고 문제행동이 감소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청소년의 치유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 치유기관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2016년 11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그동안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을 위해 민간 차원(일명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시설이 운영되어 왔는데, 법적근거의 마련을 통해 해당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되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주요기능은 처분 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지원, 심리지원, 학업·진로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호 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며, 법적근거 마련을 토대로 향후 시설 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5/6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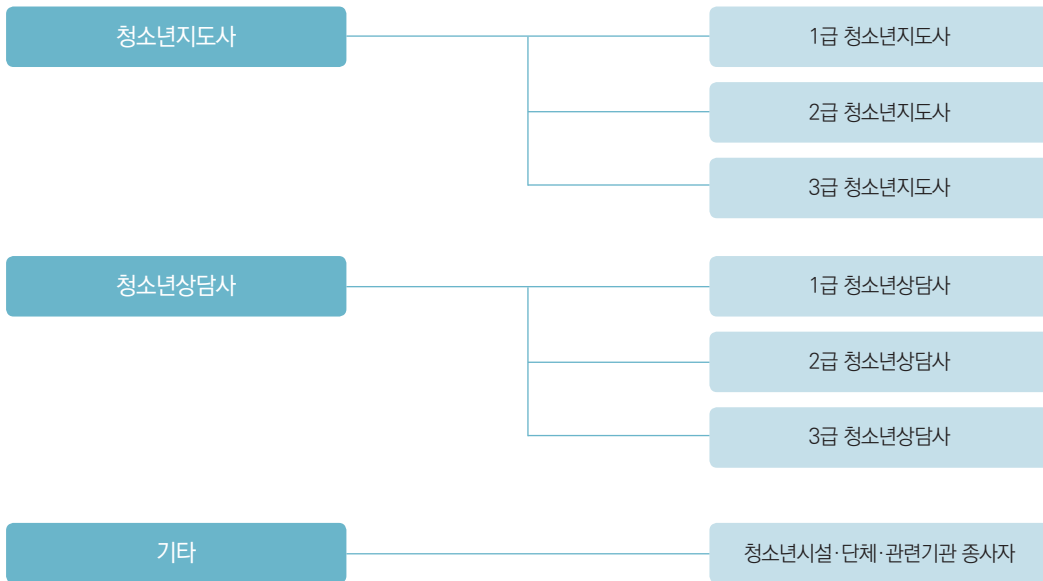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8/6279

제 2 장 | 청소년지도자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 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2018년까지 총 49,846명이 배출되었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도 11,453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림 10-2-1]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자료 : 여성가족부(2018).

2 청소년지도사

가.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관련 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지도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등급	응시자격 기준
3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료 : 여성가족부(2017).

〈표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	
1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객관식 필기시험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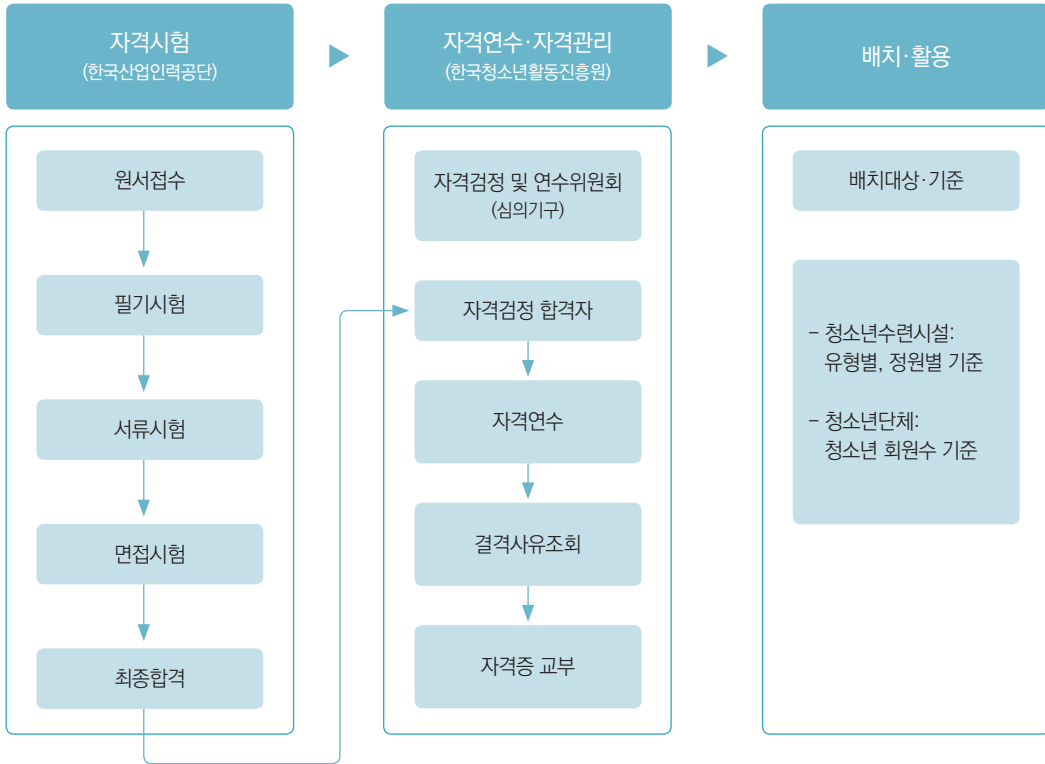
주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연수를 실시한 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2급 자격기준 중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와, 3급 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31시간으로 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실적

청소년지도사 양성계획에 따라 1993년부터 2018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1,730명, 2급 청소년지도사 35,425명, 3급 청소년지도사 12,691명 등 총 49,846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다. 2018년도의 경우 총 3,872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는 데 이 중 여성이 2,780명으로 7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1급은 64명, 2급은 3,024명, 3급은 784명이었다. 연도별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명)

연도별	1급		2급		3급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93	-	-	311	174	156	72	467	246	713
1994	78	18	229	146	137	100	444	264	708
1995	81	20	193	168	137	116	411	304	715
1996	36	11	105	88	54	47	195	146	341
1997	98	33	167	147	110	80	375	260	635
1998	87	33	122	158	93	100	302	291	593
1999	77	51	266	264	96	114	439	429	868
2000	70	43	255	330	139	151	464	524	988
2001	58	39	421	569	221	275	700	883	1,583
2002	78	39	310	527	189	286	577	852	1,429
2003	47	43	269	431	194	386	510	860	1,370
2004	28	46	232	431	180	400	440	877	1,317
2005	14	17	160	296	217	688	391	1,001	1,392
2006	43	47	314	478	148	218	505	743	1,248
2007	11	20	247	448	37	146	295	614	909
2008	7	20	342	1,744	114	517	463	2,281	2,744
2009	11	23	359	1,806	186	546	556	2,375	2,931
2010	20	33	437	1,937	177	691	634	2,661	3,295
2011	30	52	436	1,826	140	567	606	2,445	3,051

연도별	1급		2급		3급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2012	3	5	454	2,048	163	589	620	2,642	3,262
2013	13	28	697	2,344	225	530	935	2,902	3,837
2014	-	-	12	50	13	31	25	81	106
2015	9	19	837	2,438	216	543	1,062	3,000	4,062
2016	39	37	906	2,440	192	482	1,137	2,959	4,096
2017	19	32	831	2,201	182	516	1,032	2,749	3,781
2018	32	32	843	2,181	217	567	1,092	2,780	3,872
누 계	989	741	9,755	25,670	3,933	8,758	14,677	35,169	49,846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49

라.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1.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 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 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 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청소년단체		청소년 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 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 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자료 : 여성가족부(20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9

마. 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역량강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4조2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2017년 1월,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개정('17. 1. 1. 시행)으로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에서 15시간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청소년정책 및 권리교육, 양성평등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청소년활동과 안전, 직업윤리 등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49

3 청소년상담사

가.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이나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는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중·고·대학의 학생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경찰청이나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시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대상 병원, 일반 청소년관련 사업체, 근로청소년관련 사업체 등에서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비고 :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은 별표 1의 비고 제4호와 같다.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 과목은 1급 5과목, 2급과 3급은 각각 6과목이며,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을 볼 수 있다.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과한 자를 자격검정 최종 합격자로 본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구분	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면접시험
	선택	•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시험	면접시험
	선택	•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필기시험	면접시험
	선택	•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주 : 「청소년 관련 법」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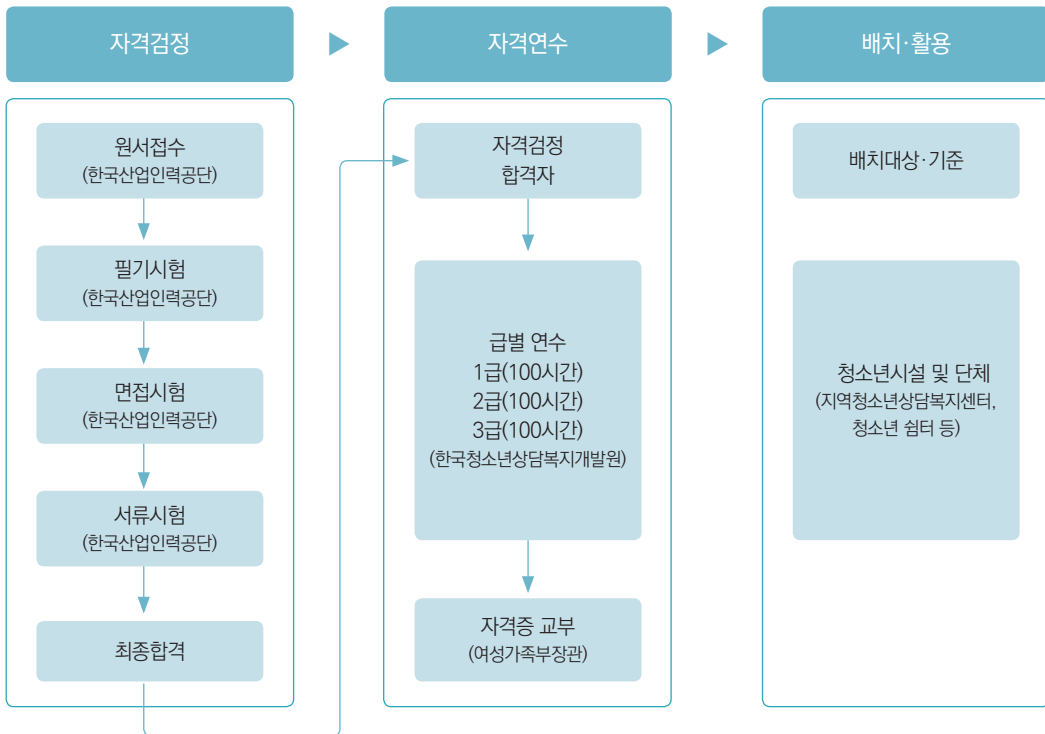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 4.

나.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100시간 이상 의무 연수를 실시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배치·활용된다.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은 청소년 상담관련 이론과 실제적인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급·2급·3급 모두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연수 형태는 급별 책무에 맞는 질적 교육을 위하여 이론, 세미나,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표 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등급	연수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수퍼비전 • 청소년 위기개입Ⅱ •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 • 청소년상담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문제세미나
2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과정과 기법 • 부모상담 • 청소년 진로·학업상담 • 지역사회상담 • 청소년 위기개입Ⅰ
3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개인상담 • 청소년매체상담 • 청소년 발달 문제 • 청소년집단상담 • 청소년 상담 현장론

자료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별표 5.

다. 청소년상담사 양성실적

청소년상담사 양성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총 16회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이 있었으며, 청소년상담사 1급 619명, 2급 5,965명, 3급 13,014명으로 총 19,598명의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였다.

〈표 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	1급		2급		3급		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03	8	99	22	271	37	247	684
2004	4	17	6	84	11	92	214
2005	5	16	21	150	19	132	343
2006	6	24	17	154	10	196	407
2007	0	1	11	166	17	279	474
2008	6	41	23	171	39	411	691
2009	3	12	20	219	56	461	771

연도	1급		2급		3급		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10	1	13	12	128	21	311	486
2011	1	18	16	282	27	391	735
2012	3	26	31	304	65	863	1,292
2013	3	9	17	208	94	896	1,227
2014	3	12	39	370	142	1,416	1,982
2015	9	43	48	516	135	1,396	2,147
2016	5	34	74	756	239	1,902	3,010
2017	10	78	98	944	193	1,401	2,724
2018	15	94	84	703	193	1,322	2,411
계	82	537	539	5,426	1,298	11,716	19,598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라.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배치대상 청소년시설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0-2-9〉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배치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별표 5.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3조).

마.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청소년 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청소년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장 | 청소년 단체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내·외 청소년단체의 상호연락과 제휴 및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5년 12월 8일 국내 15개 민간 청소년단체의 협의기구로 창립되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교환, 청소년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관련 정부부처, 유관 사회단체, 각급학교 및 세계청소년기구와의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1966년 8월 10일에는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orld Assembly of Youth : WAY)’에 가입하였으며, 1972년 8월 15일에는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sian Youth Council : AYC)’의 창설멤버가 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청소년육성 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 제정 등 청소년정책이 추진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1988년 11월 11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2005년에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수행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현재 8개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포함하여 65개 청소년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274만여 명의 청소년회원과 27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자 등 총 301만여 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회원단체 가입은 「청소년 기본법」에 준하여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신청하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목적에 따라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WAY, AYC, UN Youth Unit, AUN 등)활동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우수 청소년단체와 모범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의 포상, 국제청소년센터의 운영 및 관리, 기타 청소년 및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회원단체, 유관기관, 청소년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년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소년정책토론회 등 관련 활동에 진력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소속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국내외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회의 및 청소년기자단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청소년 분야 정보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포털사이트 운영하고, 특히 청소년학과목의 기본·전문지식 습득과 청소년지도자의 교양함양을 위해 2017년부터 청협 사이버평생교육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청소년학술정보지인 「오늘의 청소년」과 연간 사업실적을 망라한 사업 활동 종합보고서 발간 등 홍보·출판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회원단체 협력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소통을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인 ‘제14회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성년이 된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격려하여 청소년 분야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더불어 여성가족부, 교육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맺은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012. 7. 16.)」에 의거하여 2013년부터 초·중·고·특수 모든 학교 내에서 청소년 단체활동 내역을 학교생활기록부 상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란에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22개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와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청소년국제기구의 정회원국으로서 역할을 다하였고, ‘제29회 국제청소년포럼’, ‘한·일 청소년지도자 상호 국제교류(파견)’ 등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아울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국·내외 청소년 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유스호스텔인 ‘국제청소년센터’를 2000년에 개원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의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이 열리고 있고, 이 외에도 기업 및 기관의 교육연수 장소이자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청소년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The Korea Association Of Youth Centers)’는 전국의 800여 개 공공 및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발전을 위한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간 연계 협력을 위한 협의와 조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정책 제안 등을 위해 1989년 10월 1일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중심으로 창립하였고, 2002년도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 하였으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 명칭을 정하여 2004년 2월에 공포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 의거 2005년 2월에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였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청소년활동 기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시설협회의 회원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사업, 청소년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극대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의 연계사업 개발·운영지원, 청소년활동을 통한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실천 방안 수립,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방협회 구성 및 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지원체제 구축 등이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 수용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지원, 청소년활동 기반 확대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운영 여건 개선 및 안전관리 능력 향상,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간담회 개최 및 홍보,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 사업과 국제교류사업, 청소년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지도자 양성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및 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오픈강좌 등 청소년수련시설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10개소)와 시설유형별협의회(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를 중심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책 개발 및 추진 체제 구축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인 청소년이 직접 자문·평가·참여토록 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및 사례 발표,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 안전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국가 성장 동력이 됨은 물론 그들과 함께 땀 흘려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4장 |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 설치 경위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최초의 정부조직은 청소년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당시 체육부에 설치된 청소년국이다. 이후 체육부의 청소년국은 1991년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변화되었다. 이후 1997년 3월, 늘어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에 대한 유통규제와 단속,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행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7월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다.

청소년 조직은 다시 1998년 2월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실이 청소년국으로 변화되어 문화관광부에 존치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되어 활동하여 왔다. 이렇게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행정기관 분리에 따라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이 곤란하였고,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능력이 미비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시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정책 기능(육성 및 보호)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 설치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법률(「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정부조직법」)을 개정·공포하였다. 또한 2005년 4월 11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위원회 직제를 제정, ‘청소년위원회’를 공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이후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 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여성부 보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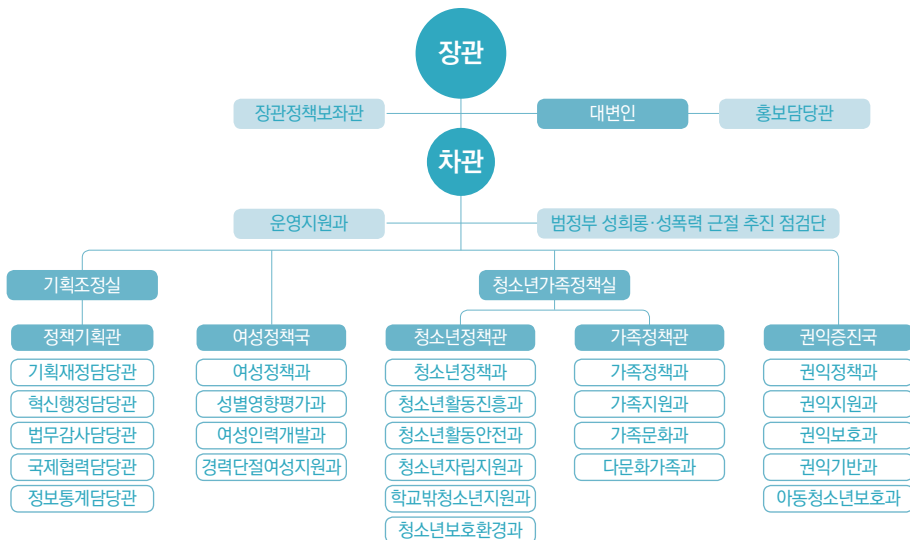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개편되었다. 이와 함께 2008년 2월 29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수행했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2010년 1월 18일 가족해체 및 다문화가족 등 현 사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가족정책 및 청소년 육성·보호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구조 및 업무

청소년가족정책실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등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보하고 있다.

[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¹⁾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10-4-1〉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구분	내용
청소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의 교육·훈련 •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 •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홍보 •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도·감독 •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청소년활동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활동 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련 법령은 제외한다)의 관리·운영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지원 •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활동 등 지원 • 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아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구분	내용
청소년활동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업무 관리 및 운영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온라인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활동 이행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청소년활동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지도·감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지도·감독 ·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건립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모델 개발 및 보급 ·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청소년자립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도·감독 ·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가출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 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 청소년 전화·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밖청소년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분	내용
청소년보호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보호 관계자 교육 등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 간 조정·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 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 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등에 관한 사항 •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유해 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치료·재활 지원 •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포장·전시·진열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등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유익매체물 제작·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조직은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의 정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4-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 현황

(단위 : 명)

직급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	2	4	3	20	14	7	3	2	57

자료 : 여성가족부(2018).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41

2 청소년관련 업무 추진기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부처는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의 청소년관련 업무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상 정책 영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4-3〉 청소년정책 영역별 소관부처 현황

영역	세부과제	소관부처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1-1. 청소년 참여 확대	1-1-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1-1-2.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1-1-3.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전 부처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1-2-1.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2.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2-3. 아동·청소년 여가권 신장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1-2-4.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1-2-5.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1-3-1.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선거관리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1-3-2. 양성평등 의식제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1-3-3.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영역	세부과제		소관부처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2-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2-1-1.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교육부, 중소기업부
		2-1-2.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2-1-3. 과학기술·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특허청
		2-1-4.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여성가족부
	2-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2-2-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2-2-2.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2-2-3.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2-2-4.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여성가족부, 통일부
		2-2-5.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2-3. 청소년 진로교육 체계 강화	2-3-1.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2-3-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부
		2-3-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교육부
		2-3-4.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3-5.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3-1-1.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3-1-2.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3-1-3.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3-1-4.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교육부
3-1-5.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영역	세부과제	소관부처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3-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2-2.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2-3.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2-4.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3-2-5.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3-2-6.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2-7.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3-3-1.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3-3-2.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3-3.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4-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4-1-1.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1-2.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4-1-3.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	여성가족부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4-2-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여성가족부
		4-2-2.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4-2-3. 청소년 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이어주는 플랫폼 마련	여성가족부
	4-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4-3-1.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여성가족부
		4-3-2.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여성가족부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부처별 청소년 업무의 특성을 보면 ‘부’단위 기관에서는 고유의 정책기능과 관련된 사업 중 청소년이 대상고객인 사업에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청’단위 기관에서는 정책예산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예산을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청소년관련 시·도 행정조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구분되어 추진되던 아동·보육·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추진되어 오다가 2010년 1월에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17개 시·도의 청소년관련 행정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시·도 청소년 업무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청소년 업무 연계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8년 현재, 각 시·도 청소년관련 행정조직은 다음과 같다.

〈표 10-4-4〉 시·도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현황

구분	담당 시·국	청소년 분야
서울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부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대구	시민행복교육국	교육청소년정책관
인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광주	자치행정국	청년정책과
대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울산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종	행정복지국	여성아동청소년과
경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강원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충북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충남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
전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전남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경북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경남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제주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41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중 세부추진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성격은 각 시·도별로 상이한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북, 제주는 심의기구로 운영되고 있고,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강원, 경기, 전남은 자문기구와 심의기구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표 10-4-5〉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

구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구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서울	심의/자문	강원	심의/자문
부산	심의	충북	자문
대구	심의	충남	자문
인천	심의(심사)	전북	심의
광주	심의	전남	심의/자문
대전	심의	경북	자문
울산	자문	경남	자문
세종	자문	제주	심의
경기	심의·의결/자문	-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5 정부 산하기관

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의해 청소년활동 현장과 정책을 총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기록 관리, 청소년들이 신체단련·자기개발·자원봉사·탐험활동을 고르게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원 및 안전 관련 컨설팅 홍보, 그리고 국내·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여 2018년 말 현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 평창), 국립청소년우주센터(전남 고흥),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 국립청소년해양센터(경북 영덕) 총 5개소의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각 원별 특성을 살려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관련하여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1급, 2급, 3급) 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연수와 함께 현직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전문연수를 개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한 전문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 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청소년활동을 조성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KYCI)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의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관계자 회의, 지도·지원 등을 실시하고, 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청소년 문제들을 분석·연구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하고 심각해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청소년 유관 기관에 보급·운영하는 등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 자료의 제작·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청소년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의 전문화, 청소년상담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위탁 운영하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친구의 문제해결을 돕는 또래상담자 양성, 건강한 청소년 성장에 목적을 둔 인성 및 품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진로를 포기하거나 보호시설 등에 입소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의지를 심어주고, 학교복귀,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건강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인터넷치유캠프(11박 12일, 중고생 대상), 가족치유캠프(2박 3일, 초등생 및 보호자 대상)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을 위탁 운영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서·행동장애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상담·치료, 대안교육, 자립지원 등의 장·단기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 등의 전문상담과 사이버상담 등 청소년상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 ▶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 ▶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 ▶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 ▶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 ▶ 청소년에 관한 상담·복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 그 밖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상담복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소년 가족이 가진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

제5장 |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가. 설립배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송병국)은 「청소년육성법」 제19조에 의거하여 1989년 7월 1일에 ‘한국청소년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으로 설립되어 청소년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 청소년정책 수립에 기여해오고 있다.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청소년 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993년 1월 1일에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 및 개편되었고,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었다. 한편, 2005년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가 통합되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iences: NRC)’로 소속이 이관되었고, 2007년 5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수행, 청소년정책평가 및 자문·지원,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정책 및 연구자료 제공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청소년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분야의 중추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기초조사 및 이론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한다. 둘째, 청소년정책 연구 및 평가·분석을 통한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 셋째, 국내·외 교류협력과 결과 홍보를 통하여 청소년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

이와 같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기능에 따른 주요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종합적 조사연구를 통해 청소년 정책 수립의 시계열적 기초자료를 축적한다.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자문 등을 지원한다. 넷째, 국내·외 청소년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한다. 다섯째, 청소년 연구 및 정책 개발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협의회 등을 개최하며 정책연구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나. 조직 및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93년 1월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개편될 당시 원장을 중심으로 부원장과 5실 7부의 체계였으나, 1995년 12월 이후 기획조정실, 홍보사업단, 복지환경실, 수련활동실, 정보자료실, 행정실 등 5실 1단 12부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1997년 1월에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팀제를 도입하여 4실 5부 8팀으로 재개편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부설기구로 설치하여 청소년자원봉사중앙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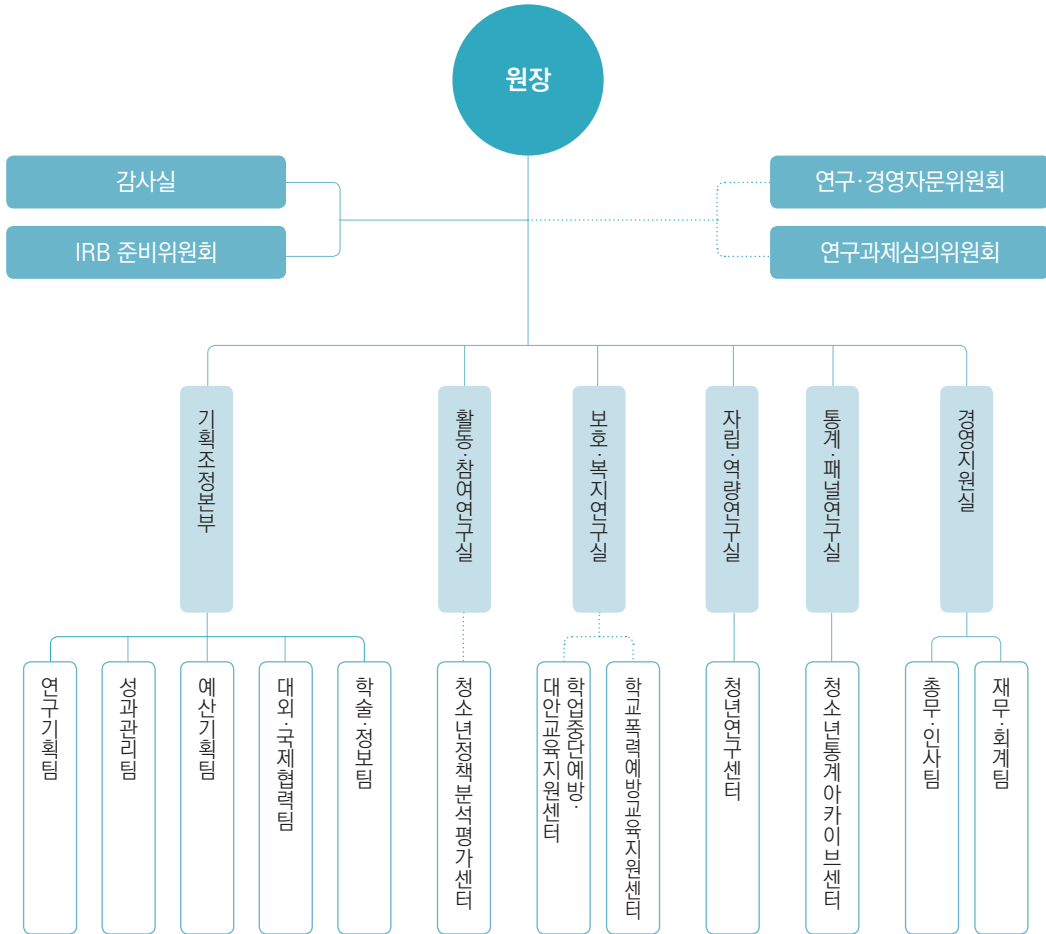
1998년에는 자립경영 기반구축 및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육성정책연구실, 복지정책연구실,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연구기획부, 총무부 등 2실 1센터 2부로 기구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기획부와 총무부를 기획조정실과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주요영역별 업무를 팀제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부서인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3실 1국 1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5년 초반에는 청소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종합적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자 정책기초연구실을 신설하여 4실 1국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9년에는 1본부, 1국, 4실, 5팀 체제로 개편하였다. 기획조정본부에 연구기획팀, 예산기획팀, 대외협력·자격검정팀 등 3팀으로, 감사실 외에 청소년정책연구실, 아동정책연구실, 통계조사연구실 등 3개의 연구실로, 사무국에 총무팀과 경리팀 등 2팀으로 각각 개편하였다.

이후 201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실적 분석·평가를 위해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14년에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정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015년에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동북아청소년분석센터’를 설치하였다. 연구실의 경우 2012년 활동·역량연구실, 보호·복지연구실, 통계·기초연구실로 개편하였고, 2015년에는 현안정책전략실을 신설하였으며 2016년에는 활동·참여연구실, 보호·복지연구실, 자립·역량연구실, 통계·기초연구실의 4개 연구실로 개편하였다. 기획조정본부는 2011년에 연구기획·대외협력팀과 예산기획·성과관리팀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에 정보자료전산보안팀이 추가되었다. 2016년에는 연구·성과기획팀, 예산기획팀, 현안·협력팀, 학술·정보팀의 4팀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2017년에는 부원장 직제가 신설되면서 기획조정본부는 기획조정실로 개편되었고, 원내 통합조사 등 기타 통계·기초조사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통계아카이브센터’가 신설되었다. 또한, ‘동북아청소년분석센터’는 연구 대상을 동북아지역으로 특정하지 않고, 확대하기 위해 ‘청년연구센터’로 센터명이 변경되었으며,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는 ‘학업중단예방센터’와 ‘대안교육지원센터’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2018년에는 1본부, 5실, 5센터로 다시 개편되었다. 부원장 제도가 폐지되고 기획조정실이 기획조정본부로 승격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성과기획팀을 연구조정팀과 성과관리팀으로 분리하였고, 글로벌 역량 강화차원에서 현안·협력팀을 대외·국제협력팀으로 변경하였으며, 패널조사 강조를 위해 통계·기초연구실을 통계·패널연구실로 변경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학업중단예방센터’와 ‘대안교육지원센터’는 통합되어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로 변경되었으며, 지난 5월부터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가 신설되어 운영중이다.

[그림 10-5-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직 현황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2018). <http://www.nypi.re.kr>(2018.11.24 인출).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관련 기초연구와 정책연구에 기반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으로써 융합적인 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의 바른 성장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융합적 청소년정책연구 추진, 둘째, 청소년정책연구 허브기관으로서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강화와 고객체감 연구성과 확산, 셋째, 조직의 윤리성·공공성 강화와 조직의 역량 극대화를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오고 있다.

다. 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 사업목표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연구기획의 체계화·과학적 연구관리 체제 확립, 둘째, 고객중심 현장중심 연구체제 구축, 셋째, 연구 성과의 정책반영·사회적 확산 강화, 넷째, 청소년정책 관련 교류·협력체제 강화이다. 이를 토대로 2018년도 연구과제는 ① 연구주제, 연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② 정관상의 기관설립 목적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③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④ 사회적 환경 및 정책 환경 변화 부합성, ⑤ 연구결과의 정책 실효성 및 현장 적용성, ⑥ 연구원내 각 실별 고유기능 및 주요 연구영역에의 부합성 등 6개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사업은 크게 기관고유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기관 고유사업 중 기본연구사업은 5가지 연구목표와 방향을 토대로 추진된다. 첫째, 연구원의 정관상 설립목적 및 전문화된 특성, 둘째,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셋째, 국정과제 및 국가의제, 넷째, 연구목표 및 방향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다섯째, 사회적·정책적 환경 및 시대적 요구 변화 관련 사항이다. 2018년 기본연구사업 과제로 총 10개의 연구과제가 수행중이다. 수행중인 기본연구사업은 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②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③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④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연구 I, ⑤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 방안 연구, ⑥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⑦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⑧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⑨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⑩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를,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와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국가들의 청년 연구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과 청년 연구 교류협력 증진, 공동사업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청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중앙과 지방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 구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의 책임성 강화와 정책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 개소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분석평가 사업 추진, 둘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분석·지표개발, 셋째, 청소년정책 포럼·세미나 개최 및 컨설팅 추진, 넷째,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다섯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종합분석, 여섯째, 청소년백서 발간 지원 등이 있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는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및 대안학교의 대안교육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3월 교육부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학업중단예방센터를 지정하고, 동년 8월 추가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함에 따라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업중단예방사업으로는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실태 조사연구,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진과 프로그램 개발, 학교 담당자 및 관리자 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안교육 지원사업으로는 대안교육위탁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연구, 사업모니터링, 학교내 대안교실 성과분석 및 컨설팅 추진과 프로그램 개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가이드북 및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매뉴얼 및 사례집 발간, 대안학교·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교육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5월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설치되었다. 정책 추진전략은 크게 3가지로, 단위학교 국가수준 예방 프로그램 적용 확대 및 자율적 예방 활동 강화, 언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체제 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학교폭력예방 교육 지원체제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연구센터’는 국내·외 국가들의 청년 연구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정책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며, 청년연구를 위한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공동사업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개소하였다. 기본 방향으로서는 연차별 단계적 투자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청년연구를 위한 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연차별로 청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청년연구의 교두보와 허브(Hub)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연구 관련 교류협력 및 공동사업 발굴, 청년연구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분석, 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청년 온라인 웹진 및 뉴스레터 발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청소년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관련 연구기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문제가 대두되었지만, 1990년 초반까지는 청소년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학문적 기반이 충분하게 조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내에서는 1991년부터 대학에 청소년관련 학과들이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 현재, 청소년관련 학과(대학 및 대학원 포함)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56개교²⁾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학위과정별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총 10개교로, 2년제 9개교, 사이버대학 1개교가 운영중이다. 다음으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총 27개교로 일반 4년제 대학교(20개교)와 방송통신대학(1개교), 4년제 사이버대학(6개교)이 포함된다. 이 중 일반 4년제 대학교 2곳은 단과대학 내에 개설된 단독 학사학위 과정이 아닌, 복수전공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³⁾ 다음으로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은 31개 대학교(대학원대학교 포함)의 39개 대학원에 존재한다. 이들 대학원 과정은 일반대학원(11개교)과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등을 포함하는 특수대학원(28개교)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에 있다.⁴⁾

1991년에 청소년관련 학과가 최초로 개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 관련 분야의 발전과 확장에 기인하여 청소년관련 학과의 수가 증가해왔으나, 최근 학생 수 감소와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청소년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창출하며,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행하는 청소년 관련 학회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연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학회로는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상담학회 등이 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청소년 분야 일반의 공익을 위한 사단법인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청소년(관련)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연구자 상호 간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 교환을 통하여 청소년학의 정립과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청소년학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는 2004년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미래청소년학회지’를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육체와 정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2년 창립되었다.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확대방안 및

2) 2018년 11월 기준, 청소년 관련 학과(대학 및 대학원 과정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는 서울(16개교), 경기(8개교), 충남(6개교), 경북(4개교), 전남(4개교), 부산(3개교), 대구(3개교), 전북(3개교), 광주(2개교), 대전(2개교), 강원(2개교), 충북(2개교), 인천(1개교)에 소재하고 있음.

3) 총신대학교 청소년상담학전공, 한림대학교 청소년학(협동)전공임.

4) 청소년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명 및 학과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1에서 제시하고 있음.

기존 시설의 활성화 방안, 청소년 시설물의 연계 활용 방법, 시설물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국제교류, 봉사활동, 국제심포지엄, 학술대회, 작품집 발간, 월례세미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청소년시설환경’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1998년에 청소년복지의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청소년복지연구’ 학술지를 발간하고, 부정기적으로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학회는 2013년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청소년문제 예방 및 해결, 청소년 상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학회이다. 부설기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연구소’를 두어 현장상담사례 중심의 학술지인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를 발간하고, 청소년상담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학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청소년 관련 이슈에 대해 세미나, 학술대회 등도 개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대구한의대학교 부설 청소년문제연구소, (사)청소년 교육전략21 등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044-415-2164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세계 각국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 및 개발관련 기관 간의 협의회로 세계청소년연구개발 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Youth: WARDY)가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의 설립목적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연구개발기관 간 정보 및 학술교류 확대를 통하여 서로 협력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연구에 도움이 되고 21세기 지구촌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협의회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95년 11월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본청소년연구소, 중국 사회과학원(청년사회학연구회)은 이러한 취지의 세계협의기구 구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1997년 10월 7일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6개국의 8개 기관 대표들이 한국에 모여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를 발족하였고, 2018년 현재까지 9개국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의 주요 사업은 크게 4개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 둘째,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상호방문 추진, 셋째, 청소년관련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회원국 간의 상호 교류와 연대 강화, 넷째, 청소년관련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등이다.

협의회의 주요 실적은 크게 국제세미나 개최와 공동연구 수행으로 구분된다. 국제세미나는 1997년 협의회 발족 이후 매년 1~4회 개최되고 있다. 제1차 WARDY 국제학술회의는 1997년 10월 7일 ‘청소년폭력의 국제 비교’란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차 WARDY 국제학술회의는 1999년 10월 11일에는 중국 북경에서 ‘21세기를 지향한 청소년과 청소년 연구’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청소년 육성정책 수립의 과제’,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 강화’,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다문화주의’,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정책 이슈에 대한 공통의 내용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협의회는 1997년 이후 매년 1~3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행한 연구 주제로는 1997년 ‘청소년의식에 관한 한·중·일 국제비교연구’, 1999년 ‘청소년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한·중·일을 중심으로’, 2000년 ‘새천년 청소년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한·미·일·프를 중심으로’, 2001년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연구’ 등이 있다. 최근에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4개국(한·중·미·일) 청소년 건강실태조사’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10-5-1〉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회원 현황

연번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1	한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 연구단지 사회정책동 6~7층	www.nypi.re.kr	82-44-415-2208
2	중국	중국청년정치학원 (Chinese Youth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25 Xisanhuan Beilu, Haidian District, Beij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100089	http:// international.cyu.edu.cn/	86-10-88567233
3		중국상해청년관리간부학원 (Shanghai Youth College of Management)	Hongkou District, 573 West Bay Road, Shanghai, China	http:// www.shqgy.com.cn	86-21-56662668

연번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4	일본	아시아진로발달학회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Career Development)	1-1, East 9, North 16, Higashi-ku, Sapporo, Hokkaido 065-8567, Japan	http://www.aracd.asia/	81-11-742-1965
5		슈레대학교 (Shure University)	28-27, Wakamatsu-cho, Shinjuku-ku, Tokyo, Japan	http://shureuniv.org	81-3-5155-9801
6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UST)	International Affairs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8th khoroo, Baga toiruu 34,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14191	http:// www.must.edu.mn	976-11-329081
7	호주	멜버른 대학 청소년연구센터 (Youth Research Centre)	Youth Research Centre Melbour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Melbourne Victoria 3010	http:// web.education.unimelb. edu.au/yrcc/	61-3-8344-9633
8		호주 태즈메이니아대학교 청소년 연구센터 (Center for Applied Youth Research)	PO Box 5011 UTAS LPO, Sandy Bay Tasmania 7005, Australia	http://cayr.info/	61-3-5294-0444
9	핀란드	핀란드 청소년연구네트워크 (The Finnish Research Network)	Finnish Youth Research Society Asemapäällikönkatu 1 (2nd and 3rd floors) FI-00520 Helsinki Finland	http:// www.youthresearch.fi/	358-0-20-755-2662
10	미국	아이오와대 국립가족중심실천센터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Family Centered Practice)	The University of Iowa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Iowa Research Park 100 MTP4, Room 162 Iowa City, IA 52242-5000	https://clas.uiowa.edu/ nrcfcp/	1-319-335-4965
11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김영옥 센터 (UCR, The Young Oak Kim Center for Korean American Studies)	900 University Ave. 4031 CHASS INTN Riverside, CA92521	http:// www.yokcenter.ucr.edu	951-827-5661
12		재외한인사회연구소 (The Research Center for Korean Community)	Kissena Hall I, Room 333 Queens College 65-30 Kissena Blvd Flushing, New York 11367	https:// www.qc.cuny.edu/ Academics/Centers/ RCKC/	718-570-0300

연번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13	베트남	청소년 연구소 (Youth Research Institute)	No.5 Chua Lang st., Dong Da dist. Hanoi, Vietnam	http://www.yri.edu.vn	0084-4-3-7754263
14	말레이 시아	사회과학연구원 (Institute Pengajian Sains Sosial: IPSAS)	43400 UPM Serd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http:// www.ipsas.upm.edu.my/	60-3-8947-1865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http://wardy.nypi.re.kr/wrdmb/wrdmbUserView.do?menu_nix=dO6w5yrV&srch_mu_site=WRD 에서 2018. 12. 09. 인출.

제 6 장 |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2018년도 청소년정책 예산은 총 2,683억여 원으로 일반회계 779억여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879억여 원, 청소년육성기금 1,024억여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6-1〉 연도별 청소년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관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책실	문화부청소년국		청소년 보호 위원회	국가 청소년 위원회	예비비 (일반 회계)	광득회계 (군특)	청소년육성기금		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육성사업	시설용자	
1995	-	-	28,098	2,000	-	-	-	13,654	4,309	10,000	58,061
1996	-	-	37,896	3,000	-	-	-	18,984	6,300	10,000	76,180
1997	-	-	52,591	3,000	-	-	-	21,645	10,803	10,000	98,039
2000	-	-	25,954	1,000	4,111	-	-	26,525	10,814	12,350	80,754
2003	-	-	25,084	-	7,077	-	-	36,607	13,979	7,000	89,747
2004	-	-	23,149	-	8,817	-	-	30,248	41,610	6,000	109,824
2005	-	-	10,872	-	9,950	-	8,138	37,643	52,436	6,000	125,039
2006	-	-	-	-	-	19,825	321	45,442	67,727	4,500	137,815
2007	-	-	-	-	-	35,388	-	43,128	74,812	-	153,328
2008	-	116,433	-	-	-	-	-	39,251	75,182	-	230,866
2009	-	182,641	-	-	-	-	-	36,522	81,741 (증진기금 3,463 포함)	-	300,904
2010	20,885	-	-	-	-	-	-	34,215	90,652	-	145,752

연도	구분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관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책실	문화부청소년국		청소년 보호 위원회	국가 청소년 위원회	예비비 (일반 회계)	광특회계 (균특)	청소년육성기금		계
	연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육성사업	시설용자	
2011		21,671	-	-	-	-	-	-	49,417	73,491	144,579	
2012		47,435	-	-	-	-	-	320	41,477	58,036	147,268	
2013		58,427	-	-	-	-	-	-	50,550	62,435	171,412	
2014		67,694	-	-	-	-	-	-	44,991	64,405	177,090	
2015		67,711	-	-	-	-	-	-	65,564	80,472	213,747	
2016		68,691	-	-	-	-	-	-	48,117	89,364	206,172	
2017		87,469	-	-	-	-	-	-	62,491	95,310	245,270	
2018		77,948	-	-	-	-	-	-	87,931	102,404	268,283	

주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권익기반과(구 폭력예방교육과) 청소년예산은 제외되었음.
 - 2010년 : 4,603백만원(일반회계 1,085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518백만원).
 - 2011년 : 5,687백만원(일반회계 1,580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원, 여성발전기금 181백만원).
 - 2012년 : 5,979백만원(일반회계 2,053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원).
 - 2013년 : 8,623백만원(일반회계 3,441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182백만원).
 - 2013년 : 8,623백만원(일반회계 3,441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182백만원).
 - 2014년 : 11,664백만원(일반회계 6,310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354백만원).
 - 2015년 : 13,97백만원(일반회계 8,032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965백만원).
 - 2016년 : 13,785백만원(일반회계 8,040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745백만원).
 - 2017년 : 12,292백만원(일반회계 6,813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479백만원).
 - 2018년 : 12,359백만원(일반회계 7,029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330백만원).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일반예산은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청소년시설 확충에 사용되고 있다.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청소년 기본법」 제54조)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에 의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청소년 기본법」 제55조)는 ① 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③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④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⑥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⑦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⑧ 기금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⑨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그밖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이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은 기금 조성 초기에는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액 등이 수입 재원이었으나 현재는 경륜경정사업 법정 분담금과 복권기금전입금으로 주로 조성되고 있다. 그나마 2011년에 「경륜·경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익금의 30%를 받던 것이 19.5%로 축소되었다.

2019년까지의 누계 조성규모는 약 14,031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정부출연금 350억여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전입금 766억여 원, 경륜사업수익 법정출연금이 약 4,546억 원, 복권기금전입금 5,925억여 원, 이자수입 등 운용수익 적립금이 2,445억여 원 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사용액을 살펴보면, 2019년까지 청소년육성 사업 지원에 약 13,097억 원, 기타 경비 등에 90억여 원, 기금전출 148억여 원을 합하여 총 13,335억여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순 조성액은 2019년 기준으로 약 696억 원이다.

〈표 10-6-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조성액(A)					사용액(B)				순 조성액 (A-B)	계
		정부 출연금	민간 출연금	경륜사업 수익법정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이자 등 기타	계	청소년 사업지원	기타 경비	기금 전출		
1989	-	5,000	-	-	206	5,206	132	-	-	132	5,074	5,074
1990	-	5,000	-	-	1,363	6,363	847	3	-	850	5,513	10,587
1991	-	5,010	-	-	2,299	7,309	1,031	9	-	1,040	6,269	16,856
1992	-	8,150	-	-	3,415	11,565	1,507	12	-	1,519	10,046	26,902
1993	10,000	5,000	-	-	3,965	18,965	1,613	6	-	1,619	17,346	44,248
1994	-	11,000	-	-	5,285	16,285	9,034	13	-	9,047	7,238	51,486
1995	10,000	10,000	-	-	7,749	27,749	4,484	15	-	4,499	23,250	74,736
1996	10,000	10,000	-	-	8,739	28,739	5,415	8	-	5,423	23,316	98,052
1997	5,000	10,000	111	-	11,598	26,709	8,209	6	-	8,215	18,494	116,546
1998	-	4,400	5,888	-	15,453	25,741	6,245	6	-	6,251	19,490	136,036
1999	-	3,000	6,251	-	13,271	22,522	12,547	7	-	12,554	9,968	146,004
2000	-	-	11,836	-	11,201	23,037	9,905	7	-	9,912	13,125	159,129
2001	-	-	32,320	-	13,160	45,480	7,284	84	-	7,368	38,112	197,241
2002	-	-	46,920	-	10,094	57,014	9,443	21	-	9,464	47,550	244,791
2003	-	-	70,805	-	14,725	85,530	14,363	31	-	14,394	71,136	315,927
2004	-	-	40,786	-	14,686	55,472	40,670	72	-	40,742	14,730	330,657
2005	-	-	24,623	-	19,710	44,333	48,721	57	-	48,778	-4,445	326,212
2006	-	-	14,330	-	16,878	31,208	68,857	48	-	68,905	-37,697	288,515
2007	-	-	2,846	735	17,634	21,215	74,750	62	-	74,812	-53,597	234,918
2008	-	-	17,489	255	8,141	25,885	75,138	45	-	75,183	-49,298	185,620
2009	-	-	15,672	860	11,085	27,617	61,060	262	22	61,344	-33,727	151,893
2010	-	-	19,312	2,964	5,947	28,223	69,473	113	213	69,799	-41,576	110,317
2011	-	-	20,266	4,318	2,841	27,425	70,247	3,286	306	73,839	-46,414	63,903

연도	조성액(A)						사용액(B)				순 조성액 (A-B)	계
	정부 출연금	민간 출연금	경료사업 수익법정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이자 등 기타	계	청소년 사업지원	기타 경비	기금 전출	계		
2012	-	-	22,235	34,417	1,955	58,607	58,650	3,207	30	61,887	-3,280	60,623
2013	-	-	16,933	43,403	2,074	62,410	68,238	49	622	68,909	-6,499	54,124
2014	-	-	12,744	46,694	4,707	64,145	70,096	1,088	1,408	72,592	-8,447	45,677
2015	-	-	9,655	76,412	1,744	87,722	85,568	38	1,118	86,724	998	46,675
2016	-	-	16,441	85,230	3,236	104,907	95,499	41	1,179	96,719	8,188	54,863
2017	-	-	17,285	91,235	3,897	112,417	101,548	320	3,527	105,395	7,022	61,885
2018	-	-	15,853	97,605	3,206	116,664	108,758	37	3,219	112,014	4,650	66,535
2019	-	-	14,066	108,373	4,231	126,670	120,396	39	3,160	123,595	3,075	69,610
계	35,000	76,560	454,578	592,501	244,495	1,403,134	1,309,728	8,992	14,804	1,333,524	69,610	-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2018 청소년백서

부록

부 록

부록 1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부록 4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부록 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부록 8 청소년백서 용어집

부록 1 |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2018년 11월 기준)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소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전공(석사)	(1697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Tel: 031-280-3471~7
경기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청소년전공(학사)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박사) 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상담교육전공(석사)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Tel: 031-249-9490
경북과학대학교	청소년복지상담학과(전문학사)	(39913)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634 Tel: 054-979-9001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전공(석사)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053-580-6332
고구려대학교	청소년복지상담학과(전문학사)	(58280)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Tel: 061-330-7400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학사)	(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6 Tel: 02-6361-1862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상담전공(석사)	(32553)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7 Tel: 041-850-1361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전공(석사)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Tel: 041-850-8159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청소년상담지도학과(석사)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Tel: 062-605-1125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전공(석사)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Tel: 02-940-5411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학사)	(61743)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Tel: 062-670-2057
군장대학교	청소년교육지도과(전문학사)	(5404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Tel: 063-450-8240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학전공(학사)	(3117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Tel: 041-570-7772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소
대구과학대학교	아동청소년지도과(전문학사)	(41453)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47 Tel: 053-320-1139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심리전공(석사)	(42411)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대명동) Tel:053-620-1400
대구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학사) 보건복지대학원 청소년가족상담학과(석사)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사)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Tel: 053-819-1348
대원대학교	청소년지도과(전문학사)	(27135)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316 Tel: 043-645-3143
대전대학교	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3452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지 59 Tel: 042-470-9308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학습컨설팅전공(석사)	(11159)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선단동) Tel: 031-539-2128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심리상담학과 (석·박사·석박통합)	(38066)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Tel: 054-770-2508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상담심리전공(학사)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Tel: 051-320-1908
동아보건대학교	청소년교육·평생교육복지전공(전문학사)	(58439)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76-57 Tel: 061-470-1746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학사)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상담전공(석사)	(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Tel: 051-890-2180
디지털서울문화 예술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학과(학사)	(1549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1길 26 Tel: 031-400-8551~2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박사) 사회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사)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아동 및 청소년복지전공(석사)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Tel: 02-300-0620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전문학사)	(036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34 Tel: 02-300-1207, 3961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과(학사) 상담대학원 청소년상담학전공(석사)	(310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 Tel: 041-550-2527, 2597-8
부산디지털대학교	상담치료학부 아동청소년상담학전공(학사)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Tel: 051-320-2782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소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03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Tel: 02-2287-5120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전공(석사)	(36339)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우산동) Tel:033-730-0196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전공(학사)	(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 Tel: 02-944-5631~3
서울여자대학교	청소년학전공(학사)	(0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Tel: 02-970-7931
서정대학교	상담아동청소년과(전문학사)	(11426) 경기도 양주시 온현면 화합로 1049-56 Tel: 031-860-5100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석박통합)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760-0525
성신호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석·박사)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43 Tel: 032-433-1996
세종사이버대학	아동가족학부 청소년코칭상담학과(학사)	(05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21 Tel: 02-2204-8666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청소년교육상담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청소년교육학과(석·박·석박통합)	(31538)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22 Tel: 041-530-1146
송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코칭상담학과(학사)	(069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3 Tel: 02-708-7804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교육전공(석사)	(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22 Tel: 031-467-0700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전공(석사)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Tel: 063-270-2739
전주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석사)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Tel: 063-220-2693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전공(학사)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석박통합)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학과(석사)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 02-820-5149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58530)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Tel: 061-450-1881
총신대학교	청소년상담학전공(학사)	(0698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Tel: 02-3479-0200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 소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보건보육청소년과(전문학사)	(28150)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덕암길 10 Tel: 043-210-8260
갈빈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상담학과(학사)	(16911)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84 Tel: 031-284-4752-5
평택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아동·청소년복지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사) 상담대학원 상담학과 청소년상담전공(석사) 사회복지대학원 아동청소년복지학과(석사)	(17869)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Tel: 031-659-81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학대학 청소년교육과(학사) 일반대학원 청소년교육학과(석사)	(0308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Tel: 02-3668-4400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청소년복지상담학과(전문학사)	(38695)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46-10 Tel: 1644-9775
한국체육대학교	생활체육대학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학사) 사회체육대학원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석사)	(055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Tel: 02-410-6753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사)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Tel: 042-629-7226~7, 8098
한려대학교	사회복지청소년학과(학사)	(5776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한려대길 94-13 Tel: 061-760-1177
한림대학교	청소년학(협동)전공(학사)	(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Tel: 033-248-1700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전공(석사)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Tel: 02-2220-2611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부 청소년상담학과(학사)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Tel: 02-2290-0340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문화·상담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청소년문화·상담학과(석사)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청소년문화·상담학과(석사)	(3106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호서대길 12 Tel: 041-560-8140, 8114

자료 : 대학알리미 홈페이지(<http://www.academyinfo.go.kr>), 각 대학별 홈페이지.

(2018년 11월 기준)

부록 2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회원수 (명)	청소년 회원수(명)	설립목적
	직위	성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서상기	1965-12-08	3,016,910	2,744,311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이사장	이용권	1996-12-30	83,537	83,327	아동·청소년 육성, 복지, 자선사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존엄성 실현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원장	유정희	2009-03-03	6,214	5,974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청소년 교육, 자원봉사 활동, 국제교류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국제청소년연합	회장	박문택	2001-05-31	106,267	105,665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화 시대 주도 청소년 양성
기독교청소년협회 (CYA)	이사장	정진해	1995-10-30	3,854	3,140	기독교정신에 의한 청소년상담 교육으로 인재양성
대건청소년회	이사장	이성호	1998-09-21	1,136	1,000	청소년활동을 통해 건전 사회기풍 조성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올바른 청소년육성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김성권	1920-06-20	9,311	8,389	불타의 가르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심신계발과 사회정화
대한안전연합	대표	정현민	2008-06-05	4,468	3,813	재해·재난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홍보 활동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 (RCY)	회장	박경서	1953-04-05	259,522	245,936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현 및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공헌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이사장	강신경	1929-12-01	9,627	9,004	종교, 지육, 체육, 봉사생활로 바른 교회생활 기여
대한청소년총후단연맹	총재	김영희	1997-12-30	16,960	15,930	총·후·예의 연구와 교육 및 수련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비로자나청소년협회	회장	이연우	2000-07-24	6,018	5,956	청소년에게 불교이념을 통한 인류공영에 이바지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회원수 (명)	청소년 회원수(명)	설립목적
	직위	성명				
빅드림	대표	주용학	2011-09-02	5,487	5,350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
삼동청소년회	이사장	양재호	1989-01-18	8,270	7,508	일원주의 사상의 도덕적 품성 함양과 세계평화에 기여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이사장	정순택	1999-09-01	22,026	21,262	가톨릭정신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육성
성산청소년효재단	이사장	최성규	1994-02-28	110,042	107,200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보호·지도육성 및 가치관 확립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	차광선	1948-06-21	41,157	40,457	절대 정직·순결·무사·사랑으로 청소년 건전지도 육성
세계화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이돈희	2009-02-13	3,880	3,580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단체활동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안구현	1992-06-29	451	431	지·덕·체가 균형잡힌 청소년육성과 한민족의 주체성 전파
아이세코리아	중앙위원장	Fathurrahman	1962-11-26	700	700	미래의 유능한 경영인 양성과 국제적 교류
어린이재단	대표이사	지훈상	1948-10-15	614,221	587,029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보호 및 지원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회장	이성희	1977-03-17	3,514	1,013	선도활동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신언항	1961-04-01	4,027	0	가족계획, 모자보건, 청소년 성교육 및 가정복지 도모
청소년과사랑사랑	이사장	신명철	1994-12-22	5,560	5,161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
청소년교육전략21	이사장	김영성	2002-01-15	307	220	아동, 청소년과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도자연수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소년교회연합회	총재	차재희	1966-04-16	45,057	44,179	청소년불자 신행활동 지도와 청소년육성
탁틴내일	이사장	최영희	1995-03-01	334	95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황영대	1996-09-30	47,216	46,396	민족의 주체성 확립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회원수 (명)	청소년 회원수(명)	설립목적
	직위	성명				
푸른나무 청예단	이사장	문용린	1995-10-31	400,132	398,830	청소년 수련활동·선도·유해환경 정화, 복지증진
한국119소년단연맹	총재	윤명오	2013-03-21	17,203	16,442	청소년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교육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
한국4-H본부	회장	고문삼	1954-11-09	77,080	66,313	4-H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소양과 기술 지원
한국B.B.S중앙연맹	총재	이재영	1964-09-05	29,163	17,811	우애와 봉사의 이념아래 청소년 보호와 지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안재웅	1903-04-03	12,123	9,327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문화 창조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영수	1922-04-20	11,526	5,683	젊은 여성의 기독교 생활 실천 및 평화와 정의사회 건설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종희	1946-05-10	109,558	94,969	소녀와 젊은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민주시민 자질 함양 및 봉사 실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총재	서상기	1989-03-11	58,042	55,042	우주시대 인재양성 및 정보화 선진과학입국 실현
한국라보	이사장	유시경	1973-12-31	3,932	3,512	각국 간의 상호민박을 통한 친선 문화교류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이사장	정주화	1997-07-15	161,192	39,232	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와 국제간의 이해 증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이사장	김명전	1991-07-24	4,835	4,369	국토보전을 위한 나무심기 운동 전개 및 푸른숲선도원 선발·육성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함중환	1922-10-05	158,153	136,443	민주시민 자질향상 도모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총재	임성준	1967-04-17	28,389	28,235	야외여행활동을 통한 풍부한 지식과 건전 청소년육성
한국청소년골프협회	회장	김창연	2005-12-24	1,988	1,877	청소년골프선수 선발 및 육성
한국청소년발명영재재단	총재	한미영	2002-03-22	2,543	2,411	발명영재의 발굴지원을 통해 유능한 발명인 육성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회장	최노사	1991-05-04	22,079	21,809	복음선교와 후원활동을 통한 청소년육성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회원수 (명)	청소년 회원수(명)	설립목적
	직위	성명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총재	유주영	2011-04-19	18,155	15,507	국제사회에 기둥이 될 청소년세대를 육성하는데 기여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이사장	추성춘	1997-10-24	4,774	4,753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 및 인성교육을 위한 교화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상임의장	강경순	2003-10-06	10,548	10,000	해양스포츠 지도교육 능력 함양 및 해양환경보전활동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한기호	1981-03-19	243,868	240,313	청소년 전인교육을 통한 민족·국가관 확립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박문서	1964-09-11	3,879	3,151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전활동 지도로 민주시민 육성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이사장	강병연	1993-08-25	388	256	심신단련과 지도육성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 확립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	황인국	2000-02-25	360	350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한국항공소년단	총재	김조원	2005-08-02	6,876	6,849	항공, 우주교육을 통한 도전, 개척정신 함양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	정호섭	1980-05-24	106,453	100,021	해양개척정신 고취를 통한 진취적 기상증진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이사장	이경희	2004-09-10	28,131	27,835	향토봉사 활동을 통한 향토사랑 및 조국 사랑기여
한국회랑청소년육성회	회장	박계홍	1989-07-10	62,335	62,321	강건한 신체와 올바른 품성 및 국가관 확립
한국환경청소년단	총재	양광선	2001-05-09	5,909	5,149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정착과 자연환경 계몽 감시운동
행복함께나누는재단	이사장	이원희	2011-04-21	358	200	소외계층·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 및 청소년 활동을 지원
흥사단	이사장	류종열	1913-05-13	7,775	6,586	무실, 역행, 총의, 용감의 정신으로 인재 양성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회원수 (명)	청소년 회원수(명)	설립목적
	직위	성명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백현옥	2008-03-24	30개 지역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상호 간의 협력· 지원과 청소년건강육성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김경민	1996-03-01	22개 지역청소년단체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김종남	2002-10-11	36개 지역청소년단체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백명숙	2001-09-07	36개 지역청소년단체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정종희	1998-03-05	18개 지역청소년단체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김말숙	2001-12-04	16개 지역청소년단체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김경희	1995-05-11	13개 지역청소년단체		
진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김일식	1992-09-26	9개 지역청소년단체		

주 : 청소년단체 현황은 2018년 11월 기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2018).

부록 3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2018년 11월 기준)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서울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남구청장	(사)홀리비전
서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문화의집	노원구청장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관악청소년회관	수련관	관악구청장	(사)온터두레회
서울	구립강남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남구청장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서울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마포구청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송파구청장	(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
서울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마포구청장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서울	구립서초유스센터	수련관	서초구청장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구립용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용산구청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	국제청소년센터유스호텔	유스호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서울	도봉숲속마을	수련원	(재)송석문화재단	(재)송석문화재단
서울	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문화의집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
서울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작구청장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마포구청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	수련원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작구청장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	서울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학)광운대학교
서울	서울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흥사단
서울	서울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푸른나무청예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서울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푸른나무청예단
서울	서울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서울	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서울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송석문화재단
서울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서울카톨릭청소년회
서울	서울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서울시립서울유스호텔	유스호텔	서울특별시장	(사)흥사단
서울	서울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서울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서울	서울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세상
서울	서울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엔젤스헤이븐
서울	서울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학)광운대학교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특화시설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재)대산문화재단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장	(재)푸른나무청예단
서울	서울시립하이서울유스호텔	유스호텔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흥사단
서울	서울올림픽파크텔	유스호텔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중구청장	(사)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서울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	수련관	서초구청장	(재)푸른나무청예단
서울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동구청장	서울YWCA
서울	송파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송파구청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양천구청장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서울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도봉구청장	(사)청소년교육전략21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서울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등포구청장	(재)청소년과사람사랑
서울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신나는애프터센터	문화의집	은평구청장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서울	창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도봉구청장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서울	흥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대문구청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용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산구청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	성북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스카우트연맹
부산	구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금곡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장	(사)삼동청소년회
부산	금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장	(재)범어청소년동네
부산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기장군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기장문화예절학교	수련원	기장군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	부산광역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부산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장	(재)불국토청소년도량
부산	부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북구청장	(사)삼동청소년회
부산	부산사상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사상구청장	부산YMCA
부산	부산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산진구청장	(재)부산기독교청년회유지
부산	사하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사하구청장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재)안국청소년도량
부산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장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해운대구청장	대한적십자사
대구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달성군수	(재)달성복지재단
대구	달성군청소년센터	수련관	달성군수	(재)달성복지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특화시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덕문화전당(청소년창작센터)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대구광역시장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대구광역시장	(재)대구가톨릭청년회
대구	대구달서구청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달서구청장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동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대구동구청	(사)대한불교조계종 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서구청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함께하는 마음 재단
대구	대구수성구청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수성구청장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수성구청장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수련관	북구청장	(재)대구광역시 북구청소년회관
대구	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구	팔공산맥섬석유스호텔	유스호텔	곽성근	(주)팔공산맥섬석유스호텔
인천	가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강화로얄호텔	유스호텔	(주)강화로얄호텔	(주)강화로얄호텔
인천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계양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계양구청장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	그레이스힐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유승배, 박근원	(주)서울도시가스
인천	남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동구청장	남동구
인천	마니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마니산수련원	(주)마니산수련원
인천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정신철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평구청장	(재)인천부평구문화재단
인천	서해청소년유스호텔	유스호텔	(주)서해교육문화	(주)서해교육문화 고재룡
인천	성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인천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연수구청장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남구청장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광주	광주광역시광산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산구청	(재)광주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
광주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남구청장	(학)송원대학교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구청장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광주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북구청장	(사)한국청소년인권센터
광주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재)광주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장	(사)광주흥사단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광주광역시장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광주	광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박금호	(사)광천사랑숲
광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특화시설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광주	시립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장	한국스카우트광주연맹
대전	갈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한국걸스카우트대전연맹
대전	대전대덕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대덕구청장	(사)대전청소년교육연구원
대전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수련원	대전광역시장	(사)대전청소년심신수련회
대전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대전 YWCA
대전	도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사)대전흥사단
대전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희일	(사)월드유스비전 대전시지부
대전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대전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유성구청장	백석대학교
대전	장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유성구청장	백석대학교
대전	탄방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대전광역시장	(사)대전청소년교육연구원
대전	대전청소년위캔센터	수련관	대전광역시장	대전YMCA
울산	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구청장	(사)마이코즈
울산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구청장	울산YMCA
울산	문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구청장	한국걸스카우트울산연맹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울산	삼동배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순식	(사)삼동청소년회
울산	성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울산YWCA
울산	울산동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구청장	한국유네스코울산광역시협회
울산	울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북구청장	(사)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	울산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울산YWCA
울산	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울주군수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산	울주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울주군수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세종특별자치시장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세종시지부
세종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세종특별자치시	(사)삼동청소년회
세종	새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세종특별자치시	세종YMCA
경기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군포시장	(재)군포문화재단
경기	서울YMCA 일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서울YMCA	(재)서울YMCA
경기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산시장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경기	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가평군	(사)월드유스비전
경기	가평힐링캠프	야영장	남상환	남상환
경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기도지사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경기도지사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천시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고양시마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고양시탄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과천시장	과천시청
경기	광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명시장	(재)광명시인재육성재단
경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군포시장	(재)군포문화재단
경기	광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주시장	광주시청
경기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YMCA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구리시장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경기	국제광림비전랜드	수련원	광림교회	광림교회
경기	권선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금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영삼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경기	금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청소년문화원
경기	김포로그밸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형금	김형금
경기	김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오산시	오산시
경기	나래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화성시장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경기	나름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인재육성재단
경기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남양주시장	남양주도시공사
경기	당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군포시장	(재)군포문화재단
경기	대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윤은도	사회복지법인 대순진리회복지재단
경기	덕평수련원	수련원	덕평골프장	덕평수련원
경기	덕풍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하남시장	청소년비전센터
경기	동안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드림아일랜드수련원	수련원	(주)하나레저	(주)하나레저
경기	디딤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인재육성재단
경기	떡따구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신필호	신필호
경기	리치빌리지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리치빌리지	(주)리치빌리지
경기	만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문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청소년문화원
경기	미리내캠프	수련원	이광섭	(주)미리내
경기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천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천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문화의집	부천시장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쁘띠프랑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흥섭	(주)쁘띠프랑스
경기	사동디지털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장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경기	사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상천수련원	수련원	남상순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선교재단
경기	새싹동산청려수련원	수련원	조선피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봉사회
경기	서경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서경대학교	(학)서경대학교
경기	서봉서원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은희문	은희문
경기	서삼릉청소년야영장	야영장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사)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경기	서울YMCA다락원캠프장	수련원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다락원)
경기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선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장	(사)아름다운 청소년들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천시장	(재)부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경기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시흥시꾸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시흥시장	시흥YMCA
경기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시흥시장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경기	신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아침햇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바로교육	(주)바로교육
경기	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장	안산YWCA
경기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안양시호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안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양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양주시장	양주시
경기	양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양주시장	양주시청
경기	양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임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계두	임계두
경기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동만	김동만
경기	여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여주시장	여주시청
경기	여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홍영광	홍영광
경기	연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연천군수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경기	영산수련원	수련원	(재)순복음선교회	(재)순복음선교회
경기	영통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오름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인재육성재단
경기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오산시장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경기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오산시장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운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기독교청년회
경기	유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유스토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성식	김성식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의왕시장	(재)의왕시인재육성재단
경기	의정부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의정부시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의정부시장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이천시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이천시시장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이천시희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이천시시장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장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경기	자연나라수련원	수련원	정신	(주)자연나라
경기	장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축구마을	수련원	(주)축구마을	(주)축구마을
경기	창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이천시시장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청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이천시시장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민용	청심국제문화재단
경기	청학서당예절교육수련원	수련원	서재욱	서재욱
경기	캠프그리브스 유스호텔	유스호텔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	토당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통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평택시 북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평택시 팽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련관	포천시시장	포천시청
경기	포천염광수련원	수련원	(학)염광학원	(학)염광학원
경기	포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포천시시장	포천시청 가족여성과
경기	하내테마파크	수련원	전학열	전학열
경기	한국스카우트 곤지암청소년야영장	야영장	(재)한국스카우트재단	(사)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한울유스센터	수련원	임화순	임화순
경기	한터캠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용실	김용실
경기	해냄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인재육성재단
경기	해찬여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정영섭	(주)해찬여울청소년수련원
경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화성시장	(재)화성시문화재단
경기	수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연천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연천군수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칠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누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화성시장	(재)화성시여성가족재단
경기	동두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두천시장	동두천시청
경기	원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서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안양시평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천시장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강원	간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황민혜	황민혜
강원	강릉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강릉시장	강릉시청
강원	강릉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릉시장	강릉시
강원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수련원	강릉시장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강원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수련원	강원도지사	한국스카우트연맹
강원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강원도청	(재)춘천교구 천주교회
강원	강원도치악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강원도지사	(사)한국청소년야외활동협회
강원	거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성군	고성군
강원	고성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성군수	고성군
강원	기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인제군수	기린면사무소
강원	도계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집	삼척시장	삼척시청
강원	동서울유스호텔	유스호텔	(주)동서울레스피아	(주)동서울레스피아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강원	동해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해시장	동해시청
강원	둔내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둔내유스호스텔	(주)로얄관광
강원	만해마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만해사상실천선양회	동국대학교
강원	미리내 캠프	수련원	이지연	(주)미리내 캠프
강원	북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인제군수	인제군
강원	사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화천군수	화천군청
강원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집	정선군수	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삼척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삼척시장	삼척시청
강원	설악청소년수련의집	수련원	(주)세진디엔씨	(주)세진디엔씨
강원	세계유스호스텔·인재개발원	유스호스텔	세계유스호스텔	세계유스호스텔·인재개발원
강원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속초시장	속초YMCA
강원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문화의집	정선군수	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신안종합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주)신안종합리조트(주)	(주)신안종합리조트
강원	안전문화수련원	수련원	정기성	안전문화수련원
강원	양양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양양군수	양양군청(주민생활지원과)
강원	영월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월군수	원주YMCA
강원	원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삼척시장	삼척시청
강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원주시장	원주YMCA
강원	원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원주시장	원주YMCA
강원	원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금광교회	고명학
강원	유토피아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엄지용	(주)유토피아유스호스텔
강원	임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정선군청	(사)한국BBS중앙연맹
강원	정선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정선군수	(사)한국BBS중앙연맹
강원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원주시장	원주기독교사회복지회
강원	철원군병영체험수련원	수련원	철원군수	철원군수
강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수련관	철원군수	철원군수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강원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춘천시장	춘천 YWCA
강원	춘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춘천시장	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강원	춘천시청소년여행의집	유스호스텔	춘천시장	춘천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강원	치악산환경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성주	(주)피노키오
강원	평창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주)리드패밀리	(주)리드패밀리
강원	함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해시장	동해시청
강원	현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성군	고성군
강원	호림오대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호림오대산청소년수련원	(주)호림동산 평창점
강원	홍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홍천군수	춘천YMCA
강원	화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화천군수	화천군청
강원	화천청소년야영장	야영장	화천군수	화천군청
강원	횡성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횡성군수	횡성군
충북	괴산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괴산군수	괴산군수
충북	괴산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괴산군수	대한청소년총효단
충북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음성군수	한국BBS충북연맹 음성군지회
충북	나인밸리포레스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박주희	박주희, 최지수
충북	단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단양군수	단양청소년문화의집
충북	매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단양군청	매포청소년문화의집
충북	문장대유스타운	수련원	장정자	이용태
충북	박달재수련원	수련원	이종진	이종진
충북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보은군수	한국BBS충북연맹보은군지회
충북	생활습관힐링센터 로하시아카데미	수련원	유창하	(주)로하시아카데미
충북	속리산알프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창환	(주)속리산알프스수련원
충북	속리산유스타운	수련원	(주)계룡산업	(주)계룡산업
충북	송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묘진	(재)선불교
충북	영동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동군	영동군청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속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충북	음성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음성군수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충북	음성꽃동네사랑의연수원	수련원	오웅진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충북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음성군수	음성군수
충북	제천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제천시장	(사)아름다운대한민국
충북	제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진경수, 김미숙	(주)제천청소년수련원
충북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천시장	(사)아름다운청소년들
충북	증평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증평군수	(재)증평복지재단
충북	진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천군수	진천군청
충북	진천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진천군수	진천군
충북	청소년수련마을보람원	수련원	서윤덕	(재)오운문화재단
충북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청주시장	(학)주성학원
충북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청주시장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충북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충주시장	충주YWCA
충북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수련원	충청북도지사	(학)주성학원
충북	한국전통문화체험학교	수련원	박명숙	월악민속놀이학교
충북	화양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남상신	화양청소년수련원
충북	황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동군	영동군청
충남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공주시장	(사)한국B.S 대전충남연맹 공주지회
충남	공주유스호텔	유스호텔	서경원	공주유스호텔
충남	광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하광학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군포시	(재)군포문화재단
충남	당진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당진시장	(재)인천ymca청소년재단
충남	당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당진시장	당진시청
충남	대천오성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경석	대천오성청소년수련원
충남	마달피삼육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황춘광	(재)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충남	만리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오인근	(주)만리포수련원
충남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보령시장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
충남	보령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보령시장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충남	부여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부여군수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충남	삼정부여유스타운	수련원	박명길	(주)삼정관광호텔
충남	서산문화복지센터	수련관	서산시장	(재)서산시복지재단
충남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산시장	(재)서산시복지재단
충남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서천군수	(재)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
충남	서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천군수	(사)서천청소년문화마당 봄
충남	서해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차균규	(재)서해안청소년수련원
충남	서해천수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반채홍	(사)한국인성문화원
충남	아산늘푸름수련원	수련원	(재)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대한청소년총화단
충남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련관	아산시장	(학)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충남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	문화의집	예산군수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예산군수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천안시장	호서대학교
충남	천안시태조산수련관	수련관	천안시장	백석문화대학교
충남	청양송의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충남	청포대썬셋수련원	수련원	함승우	(주)케이와이엠
충남	태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태안군수	태안군청
충남	한양여자대학교 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종량	한양여자대학교
충남	합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당진시장	당진시청
충남	해가든유스호텔	유스호텔	오백근	(주)해가든유스호텔
충남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홍성군수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충남	금산청소년미래센터	문화의집	금산군수	금산군청
충남	케이티엔지 상상마당 논산	수련원	(주)케이티엔지	(주)컴퍼니에스에스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전북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군산시장	(사)군산기독교청년회(군산YMCA)
전북	군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군산시장	(사)군산기독교청년회(군산YMCA)
전북	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제시장	김제시장
전북	남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원시장	남원YMCA
전북	대광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장흥기	장흥기
전북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사)흥사단
전북	만경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제시장	김제시장
전북	모악산유스타운 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최지승	최지승
전북	무주수련원	수련원	이장호	이장호
전북	무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무주군수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부안군청림청소년수련시설	특화시설	부안군수	부안군청
전북	부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안군수	부안군청
전북	부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부안군수	부안군청
전북	상생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사)상생복지회	(사)상생복지회
전북	솔내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전주시장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무주군수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완주군수	(사)봉상청소년육영회
전북	우석수련원	수련원	(학)우석학원	우석대학교
전북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익산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익산시장	익산YMCA
전북	익산유스호텔	유스호텔	익산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임실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실군수	임실군청소년수련원
전북	전북 JK유스호텔	유스호텔	조희천	전주기전대학 학교기업 jk여행사
전북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재)한기장복지재단
전북	정읍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정읍시장	정읍YMCA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전북	진실되게하는 지리산유스캠프	수련원	이종범	(주)진실되게하는 지리산유스캠프
전북	진안군마이산청소년야영장	야영장	진안군수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진안지회
전북	진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안군수	진안YMCA
전북	청정테마힐링센터 청정인성수련원	수련원	이강동	이강동
전북	한국스카우트송광훈련장	야영장	홍오남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
전북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사)아모스청소년회
전북	무주덕유산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이길범	주식회사
전남	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흥군수	고흥군청
전남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곡성군수	(사)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전남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광양시장	광양기독교청년회(광양YMCA)
전남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양시장	광양YMCA
전남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나주시장	(사)광주기독교청년유지재단(광주YMCA)
전남	담양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담양군수	담양군청
전남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목포시장	목포YMCA
전남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목포시장	목포YMCA
전남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보성군수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남	삼호읍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암군수	(사)청우인재육성회
전남	순천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순천시장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남	신안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최호성	신안군청소년수련원
전남	영암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암군수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전남	완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완도군수	(사)꿈틀
전남	완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사)삼동청소년회	(사)삼동청소년회
전남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장성군수	(사)광주기독교청소년협회(CYA)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전라남도지사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남	진도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도군수	(사)삼동청소년회
전남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함평군수	(재)광주기톨릭청소년회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전남	해남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창완	임창완
전남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보성군수	(사)흥사단
경북	Remember유스호텔	유스호텔	김성기	김성기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상북도지사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북	경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경주시장	경주시청
경북	고우이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울진군수	울진군
경북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포항시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경북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구미시장	구미시청
경북	국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주환	(주)국민관광농원
경북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천시장	김천시청
경북	문경새재유스호텔	유스호텔	문경시장	문경관광진흥공단
경북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문경시장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문경시장	문경관광진흥공단
경북	보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보문청소년수련원	(주)보문청소년수련원
경북	산내유스호텔	유스호텔	경주시장	(사)청소년서라벌문화원
경북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상주시장	상주시
경북	상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상주시장	상주시
경북	선유동유스파크	수련원	(주)휴먼레저산업	(사)한국청소년문화협회
경북	성덕수련원	수련원	재단법인 성덕도유재단	(재)성덕도유지재단
경북	성보촌유스호텔	유스호텔	(주)성보문화재단	(주)성보문화재단
경북	안동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동시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북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영양군수	영양군청
경북	영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영주시장	한국BBS경북지회
경북	영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천시장	영천시
경북	영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천시장	영천시
경북	오케이그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노장환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북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울진군수	울진군
경북	칠곡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칠곡군수	칠곡군
경북	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안동시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북	봉화군청소년센터	수련관	봉화군수	봉화군청
경북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김형수	(재)고운청소년재단
경남	가배랑리조트수련원	수련원	(주)거제해양복합리조트	(주)거제해양복합리조트
경남	거제그린유스타운	수련원	임만규	임만규
경남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거제시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거창군	흥사단
경남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거창군수	거창YMCA
경남	거창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거창군청	거창군평생교육센터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상남도지사	한국스카우트경남연맹
경남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성군수	고성군청
경남	고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거제시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김해수련장	수련원	김은진	김은진
경남	김해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김해시장	김해시복지재단
경남	남해유스타운	수련원	조문권	박희택
경남	남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대섭	한려개발
경남	늘푸른전당	수련관	창원시장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남	덕유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강철훈	덕유산청소년수련원
경남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원시장	마산청소년문화의집
경남	몽양당청학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보곤	김보곤
경남	밀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밀양시장	법무부법사량위원밀양지역연합회
경남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원시장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봉화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선진규	선진규
경남	부일수련원	수련원	윤영화	윤영화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속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남	사랑도천문대수련원	수련원	김학	(주)사랑도천문대
경남	산청경호강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신영철	한영지
경남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양산시청	양산시청
경남	양산시청소년회관	수련관	양산시청	양산시청
경남	영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녕군수	(재)푸른쉼터장학회
경남	옥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거제시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온누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윤희	김윤희
경남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창원시장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남	알펜라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엔데버주식회사	(주)엔데버주식회사
경남	지리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조임순	조임순
경남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주시청	진주시청
경남	진해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창원시장	(재)반석청소년재단
경남	진해청소년전당	수련관	창원시장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창녕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창녕군수	(재)푸른쉼터 장학재단
경남	창원시봉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창원시장	(사)봉림
경남	청학동서당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서흥석	서흥석
경남	통영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통영시장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경남	하동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하동군수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경남	함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함안군	함안군수
경남	합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합천군수	(사)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경남본부
경남	해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인순	(주)해운개발
경남	홍의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학)문화교육원	(사)경남청소년교육개발원
경남	황석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정철상	박미화
경남	남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녕군수	(재)푸른쉼터장학회
경남	밀양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밀양시장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제주	강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강정마을회	강정마을회

시도	시 설 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제주	구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도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도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법환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귀포시장	법환동청소년문화의집
제주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흥사단
제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YWCA
제주	송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송산동청소년지도협의회	송산동청소년지도협의회
제주	아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시장	제주시
제주	애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예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예래마을회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제주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조이빌제주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주)아트오브리빙	(주)아트오브리빙
제주	추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자면사무소
제주	한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주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은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8).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부록 4 |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2018년 11월 기준)

지역	쉼터명	유형	성별	정원(명)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일시(고정형)	공용	10	02-718-1318
서울	서울시립드림일시청소년쉼터	일시(고정형)	공용	20	02-2051-1371
서울	서울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일시(고정형)	공용	10	02-6435-7979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권)	일시(이동형)	공용	15	02-722-1318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	일시(이동형)	공용	15	02-722-1318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일시(이동형)	공용	7	02-6239-2014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일시(이동형)	공용	5	02-6239-2014
서울	서울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단기	남	20	02-876-7942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단기	여	20	02-3281-8200
서울	서울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단기	여	20	02-493-1388
서울	서울시립신림청소년증장기쉼터	증장기	남	10	02-3281-7942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증장기쉼터	증장기	여	10	02-6259-1011
서울	서울시립은평여자증장기청소년쉼터	증장기	여	10	02-6959-2401
서울	강남구청소년쉼터	단기	남	15	02-512-7942
서울	강서구청소년쉼터	단기	남	8	02-2697-7377
서울	어울림청소년쉼터	증장기	여	7	02-302-9006
부산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일시(고정형)	공용	15	051-303-9670
부산	부산광역시이동청소년쉼터	일시(이동형)	공용	15	051-303-9677
부산	부산광역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단기	남	15	051-303-9672
부산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15	051-756-0924
부산	부산광역시증장기청소년쉼터(남자)	증장기	남	7	051-303-9671
부산	부산광역시여자증장기청소년쉼터	증장기	여	10	051-581-1388

지역	센터명	유형	성별	정원(명)	전화번호
대구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일시(고정형)	공용	10	053-764-1388
대구	대구광역시이동형일시청소년쉼터	일시(이동형)	공용	10	053-754-1388
대구	달서구청소년쉼터	단기	남	15	053-526-1317
대구	대구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10	053-659-6293
대구	대구광역시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7	053-426-2275
대구	대구광역시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7	053-426-2276
인천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꿈꾸는별)	일시(고정형)	공용	15	032-817-1318
인천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한울타리)	일시(고정형)	공용	15	032-516-1318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바다의별)	단기	남	20	032-438-1318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우리들)	단기	남	20	032-442-1388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하늘목장)	단기	여	15	032-528-2216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하모니)	단기	여	15	032-468-1318
인천	인천시청소년중장기쉼터(남자,별마루)	중장기	남	10	032-875-7718
인천	인천시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예꿈)	중장기	여	9	032-465-1393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일시쉼터	일시(이동형)	공용	12	062-527-1318
광주	광주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10	062-525-1318
광주	광주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10	062-227-1388
광주	광주광역시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맥지쉼터)	중장기	여	7	062-366-1318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중장기남자쉼터	중장기	남자	10	062-714-1388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드롭인센터	일시(고정형)	공용	-	042-673-1092
대전	대전광역시이동일시청소년쉼터	일시(이동형)	공용	-	042-221-1092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남자쉼터	단기	남	15	042-223-7179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	단기	여	15	042-256-7942
대전	대전광역시중장기청소년남자쉼터	중장기	남	7	042-528-7179
대전	대전광역시중장기청소년여자쉼터	중장기	여	10	042-534-0179
울산	울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일시(고정형)	공용	-	052-245-1388
울산	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10	052-261-1388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지역	센터명	유형	성별	정원(명)	전화번호
울산	울산남구여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여	10	052-269-1388
울산	울산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센터	중장기	남	10	052-223-5186
울산	울산남구여자중장기청소년센터	중장기	여	10	052-265-1388
경기	수원남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남	15	031-232-4866
경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여	21	031-232-7982
경기	용인푸른꿈남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남	14	031-276-0770
경기	용인푸른꿈여자중장기청소년센터	중장기	여	10	031-264-7733
경기	부천시청소년일시센터	일시(고정형)	공용	15	032-654-1318
경기	부천모퉁이여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여	12	032-343-1880
경기	성남시일시청소년센터	일시(고정형)	공용	12	031-758-1388
경기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남	15	031-722-6260
경기	성남시여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여	15	031-758-1213
경기	성남시남자중장기청소년센터	중장기	남	10	031-752-5090
경기	성남시여자중장기청소년센터	중장기	여	10	031-758-1720
경기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센터(한신)	단기	여	15	031-485-0078
경기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센터(징검다리)	단기	남	19	031-481-8231
경기	화성시여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여	14	031-227-7935
경기	안양시청소년센터(민들레뜨락)	일시(고정형)	공용	12	031-464-1388
경기	안양단기청소년센터(FORYOU)	단기	남	15	031-455-9182
경기	안양여자중장기청소년센터(호숙)	중장기	여	10	031-468-5141
경기	평택시여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여	12	031-652-1384
경기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여	14	031-434-1318
경기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남	14	031-314-9071
경기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센터	중장기	남	10	031-399-7997
경기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여	14	031-374-1388
경기	고양남자단기청소년센터(동지)	단기	남	15	031-969-0091
경기	고양열린여자중장기청소년센터	중장기	여	10	031-918-1366

지역	센터명	유형	성별	정원(명)	전화번호
경기	이천시여자단기청소년센터(그루터기)	단기	여	7	031-631-1388
경기	남양주시일시청소년센터	일시(고정형)	공용	12	031-591-1319
경기	의정부시이동청소년센터	일시(이동형)	공용	-	031-871-1318
경기	의정부시남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남	15	031-829-1318
경기	의정부시여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여	15	031-837-1318
경기	구리여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여	10	031-564-7707
강원	강원도일시청소년센터	일시(고정형)	공용	10	033-256-0924
강원	강원도단기청소년센터(남자)	단기	남	15	033-255-1002
강원	강원도단기청소년센터(여자)	단기	여	15	033-255-1004
강원	강릉여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여	15	033-655-1424
강원	강원도중장기청소년센터(남자)	중장기	남	8	033-244-5117
강원	강원도중장기청소년센터(여자)	중장기	여	8	033-256-7179
충북	청주시청소년일시이동센터	일시(이동형)	공용	-	010-4654-1388
충북	청주남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남	15	043-231-2676
충북	청주시여자단기청소년센터(느티나무)	단기	여	15	043-276-1318
충북	충청북도중장기청소년센터	중장기	남	7	043-266-2204
충북	친구청소년센터(남자)	단기	남	7	043-911-3479
충북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센터	중장기	여	7	043-852-0924
충북	제천여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여	7	043-641-5412
충남	천안청소년단기남자센터	단기	남	15	041-578-1388
충남	천안청소년단기여자센터	단기	여	15	041-576-1316
충남	천안청소년중장기남자센터	중장기	남	8	041-578-1380
충남	공주시중장기청소년센터	중장기	남	8	041-853-1337
충남	아산시남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남	14	041-548-1326
충남	홍성남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남	8	041-634-6564
충남	홍성여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여	8	041-631-6560
전북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센터	단기	여	10	063-903-1091

지역	쉼터명	유형	성별	정원(명)	전화번호
전북	전주청소년한울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10	063-251-3530
전북	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8	063-244-1774
전북	꽃동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7	063-451-1091
전남	목포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10	061-278-1388
전남	목포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10	061-283-1088
전남	목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9	061-287-1388
전남	여수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10	061-644-0918
전남	여수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10	061-661-0924
경북	경상북도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12	054-455-1234
경북	구미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12	054-444-1388
경북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7	054-857-6137
경북	포항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7	054-284-1388
경북	포항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7	054-244-1318
경남	경상남도일시청소년쉼터(남.여)	일시(고정형)	공용	10	055-285-7361-3
경남	창원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하라)	단기	남	10	055-237-1318
경남	김해YMCA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10	055-332-1318
경남	경상남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마야)	중장기	남	7	055-274-0924
경남	경상남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클라라의 집)	중장기	여	7	055-745-1316
제주	제주청소년일시쉼터	일시(고정형)	공용	12	064-796-0922
제주	제주청소년이동쉼터	일시(이동형)	공용	8	064-723-0179
제주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	10	064-751-1388
제주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남	7	064-759-1388
제주	서귀포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남	8	064-739-9805
제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	여	10	064-733-1376

자료 : 여성가족부(201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www.cyber1388.kr:447).

부록 5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2018년 4월 기준)

시도명	센터명	도로명 주소	상담전화
서울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54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길 23	02-2285-1318
서울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38)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77 2층	02-2091-1388
서울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99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1층	02-2642-1318
서울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4길 15 유스스퀘어 올림관 2층	02-844-0924
서울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슬기동 2층	02-834-1355-6
서울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44	02-2226-8555
서울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54)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17	02-490-0222
서울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1012)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강북청소년수련관 3층	02-6715-6661~7
서울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1412)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청소년수련관 1층	02-950-9642
서울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0 성동청소년수련관 3층 308호	02-2299-1388
서울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86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30길 54	02-803-1873
서울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6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30길 45-9 휴먼센터 3-4층	02-3141-1318
서울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사로 4길 16	02-384-1318
서울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7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5길 11 3층(방배유스센터 내)	02-525-9128
서울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834)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4길 4, 3층	02-407-7179
서울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1층 (성산동, 서울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내)	02-3153-5985

시도명	센터명	도로명 주소	상담전화
서울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07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4길 17 공공힐링센터 3층(자양4동 13-28)	02-2205-2300
서울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64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 42길 23-19 강서청소년회관 3층	02-2649-1318
서울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882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	02-871-7942
서울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신설동복지지원센터 2-3층	02-2236-1318
서울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원효로 1가) 꿈나무종합타운 4층	02-706-1318
서울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8256)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949 3층	02-867-1318
서울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서울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2층	02-6252-1384
서울	종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0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가길 13	02-762-1318
서울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42 성북아동청소년센터 4층	02-3292-1780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73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20, 2층(전포동)	051-804-5043, 5053
부산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9113) 부산광역시 절영로 321	051-405-5224
부산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85	051-868-0950
부산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26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차로 96번길 47 금정청소년수련관 2층	051-581-2072
부산	부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57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3	051-334-3000
부산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08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국제빌딩 11층	051-715-1388
부산	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308)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10-1 (남천동 18-25), 자미빌딩 2층	051-759-8411
부산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94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161	051-207-7179
부산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49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24, 5층	051-621-4831
부산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06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86	051-792-4880
부산	동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7710)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3동 06호	051-555-1388

시도명	센터명	도로명 주소	상담전화
부산	부산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9206) 부산광역시 서구 시약로 125	051-714-0701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934)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81길 66-5 대구청소년지원재단 3층	053-659-6240
대구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726)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7길 39(월성동)	053-638-1378
대구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범어동 범어도서관 5층)	053-666-4204
대구	대구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155)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6길 20, 아인빌딩 2층	053-984-1318
대구	대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770)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222, 3층	053-216-8310
대구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434)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21, 1층	053-324-1388
대구	대구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98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읍 농공로 252	053-614-1388
대구	대구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41, 8층	053-423-1388
대구	대구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41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49길 25, 2층	053-624-1388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인천교구 청소년센터 1층	032-721-2300
인천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9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83 연수3동 주민센터 4층	032-819-7308
인천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02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37 계양구청소년수련관 4층	032-547-0856
인천	인천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543)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2 3층	032-777-1389
인천	인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136)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82 청소년미디어센터 5층	032-862-8751
인천	인천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77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92 서구청소년수련관 내 3층	032-584-1388
인천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38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번길 1	032-509-8910
인천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5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70, 3층	032-453-2990
인천	인천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309)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5, 동인천동행정복지센터 3층	032-773-1318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948)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4~5층	062-232-2000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시도명	센터명	도로명 주소	상담전화
광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132)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86	062-268-1388
광주	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2359)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1번길 28	062-951-1380
광주	광주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727)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93	062-675-1388
광주	광주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2048)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국민생활관 2층(풍암동)	062-375-1388
광주	광주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6 (금남로1가), 3층	062-229-3308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463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대전청소년위캔센터 6층	042-257-2000
대전	대전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5334)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72	042-527-3112, 1112
대전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4097)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유성대로 158, 3층	042-862-7942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532) 울산광역시 중구 강북로 105, 롯데캐슬스카이 상가 2층(성남동)	052-227-2000
울산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011)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9길13(서부동), 남목청소년문화의집 4층	052-233-5279
울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224)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6, 나운빌딩 4층	052-283-1390
울산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692)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106, 마이코즈 3층	052-291-1388
울산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500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명봉거남로 4	052-229-963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028)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 2길 5, 태원빌딩 4층	044-867-2000
경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3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행정동우회관 1층	031-249-5358
경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439) 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 997번길 25-9 3층	031-729-9100
경기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7 청소년수련관 3층	031-872-1388
경기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9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63번길 31	031-8045-2745
경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596)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3층	032-325-3002
경기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241)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 34 노뚝들 1호동 1층	02-809-2000
경기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903)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16 청소년문화센터 4층	031-654-1388

시도명	센터명	도로명 주소	상담전화
경기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361)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95 청소년수련관3 층	031-861-1388
경기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4층	031-414-1318
경기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5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 고양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970-4003
경기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922)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32-10 구리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557-2000
경기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51-47 남양주시청소년수련과 2층(본소)	031-590-8097
경기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136)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278번길 3(오산동 2층)	031-372-4004
경기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914)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79 별관 1층 (대야동, 청소년수련관)	031-318-7100
경기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지층	031-790-6680
경기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829)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2, 3층	031-397-1388
경기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077) 경기도 의왕시 문화공원로 33	031-458-5037
경기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청소년수련관 4층	031-324-9300
경기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894)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6층	031-946-0022
경기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371)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60, 3층	031-634-2777
경기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591) 경기도 안성시 낙원길 108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 2층	070-7458-1323
경기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099) 경기도 김포시 결포로 76 중봉청소년수련관 2층	031-985-1387
경기	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492)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205 양주청소년문화의집 2층	031-858-1318
경기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636) 경기도 여주시 신록사길 6-8	031-882-8889
경기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370)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유엔아이센터 2층	031-267-8773
경기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744)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7, 1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60-2219
경기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026)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연천군종합복지관 내 2층	031-832-4452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시도명	센터명	도로명 주소	상담전화
경기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41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20 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 1층	031-582-2000
경기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55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83 삼진빌딩 2, 3층	031-770-2715
경기	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18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23번길 59-56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	031-538-2219
경기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28) 경기도 과천시 참마늘로 9 과천시청소년수련관 1층	02-502-1318
경기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48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수원청소년문화센터 B1층	031-212-1318
강원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241)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67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층	033-256-2000 033-256-9801~9802
강원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474)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강릉시청소년수련관 2층	033-655-1388 033-646-8666
강원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475)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34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744-1388
강원	철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3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39번길 52	033-450-5622
강원	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23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00	033-375-1328
강원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867)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63번길 14	033-633-0741
강원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15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 6길 12-6	033-591-1311
강원	동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759) 강원도 동해시 천곡 2길 8 (1층)	070-4278-8325
강원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046)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558	033-582-7500
강원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13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 2길 31 청소년수련관 2층	033-432-1386
강원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401)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19번길 45	033-818-1389
강원	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236)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청소년수련관	033-340-2078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5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문화동 69-1)	043-220-6826
충북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411) 충청북도 충주시 증원대로3324	043-856-7804

시도명	센터명	도로명 주소	상담전화
충북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54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30 청하빌딩 5층	043-223-0755
충북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152)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제천시보건복지센터 4층	043-642-7939
충북	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012)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187-18 단양군청소년수련관 2층	043-420-3142
충북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43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51번길 56 (청주시수련관 내)	043-297-8802
충북	영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14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8 청소년수련관2층	043-744-5700
충북	음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703)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16 음성청소년문화의집 1층	043-873-1320
충북	옥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04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 청소년수련관1층	043-730-4981
충북	진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0, 4층	043-539-3430
충북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02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격정로 99-15	043-830-3827
충북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2	043-835-4189
충북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93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4	043-544-1388
충남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3~4층(두정동, 진암빌딩)	041-554-2130
충남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546)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 1길 57	041-854-2862
충남	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737)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17	041-751-1383
충남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424 논산시청소년수련관 1층 내	041-746-5920~4
충남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772)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 7길 142-26	041-360-6961
충남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466) 충청남도 보령시 문화원길 9,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3층	041-936-3894
충남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149)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041-836-1898
충남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967)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136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3층	041-660-2255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시도명	센터명	도로명 주소	상담전화
충남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644)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향교길 3, 2층	041-953-4040
충남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513)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303호	041-541-0039
충남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42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 예산군청소년수련관 2층	041-335-5700
충남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339)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 청양군문화의집 3층	041-944-1024
충남	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9 청소년수련관1층	041-674-2800
충남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293)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744번길 14	041-634-4858
충남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829)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문화로 31 계룡문화예술의전당 3층	042-841-0393
충남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12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1 4층(원도심재생지원센터 4층)	041-521-3292
전북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93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6	063-274-1388
전북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08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4(3층)	063-227-1005
전북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121) 전라북도 군산시 동리2길 7	063-468-2870
전북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621)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32	063-853-1388
전북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190)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중앙로14 청소년문화체육관 3층	063-536-1388
전북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762) 전라북도 남원시 광한북로 94-13번지	063-633-1977
전북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378)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길 45 지평선어울림센터 2층	063-540-2972
전북	진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432)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54-14 청소년수련관 3층	063-432-2388
전북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34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125 완주군청소년수련관 2층	063-291-3303
전북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514)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한봉루로 326-34	063-324-6688

시도명	센터명	도로명 주소	상담전화
전북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638)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한누리전당 가람관 3층	063-351-2000
전북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926)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59-7	063-644-2000
전북	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047) 전라북도 순창군 장류로 192	063-653-4646
전북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45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36 고창청소년수련관 2층	063-560-8925
전북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 오복청사 2층	063-580-4518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4층	061-280-9000
전남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254)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길 34, 2층	061-333-1368
전남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684)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83번길 14, 복지동 2층(옥암동, 목련아파트)	061-272-2546
전남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739)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4길 6-4	061-662-4646
전남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 9번지, 2층	061-537-1318
전남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327)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37-23	061-863-1317
전남	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927)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 진도여성플라자 2층	061-540-3156
전남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941)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 25, 2층	061-749-4234
전남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11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41	061-555-1318
전남	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79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 청소년문화센터 2층	061-795-7008
전남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04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3길 6-10, 2층	061-353-9188
전남	화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114)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31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2층	061-375-7443~4
전남	영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418)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로 1511	061-470-1004
전남	고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535)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93	061-830-6652-3, 061-830-6959
전남	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453)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7	061-853-1381

시도명	센터명	도로명 주소	상담전화
전남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23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1길 10 강진복지타운 3층	010-3626-7764 061-432-1387
전남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341)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83	061-381-9845~7
전남	무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517)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공향로 347-83	061-454-5283
전남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222)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장성군청소년수련관 별관	061-393-1388
전남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53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3층	061-363-9586
전남	함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149)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54	061-324-9995
전남	구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63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로 508, 청소년문화의 집 2층	061-782-0881 061-782-0884
전남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824)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보건소동 1층	061-240-8701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옥야동, 398-22번)	054-850-1000
경북	경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827)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75, 2층	053-815-4105-6
경북	경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088)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131	054-760-7740-6
경북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3	054-634-1320
경북	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844) 경상북도 영천시 운동장로 92 청소년수련관 2층	054-330-6246
경북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6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533, 청소년수련관	054-240-9141~5
경북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570) 경상북도 김천시 다삼로3	054-431-2009
경북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22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 11길 13	054-472-2000
경북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949)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50	054-550-6600
경북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159) 경상북도 상주시 북상주로 24-42	054-534-8047
경북	울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324)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나리항길 2 고우이청소년수련관 2층	054-783-8284
경북	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433)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44-30, 청소년 수련관 2층	054-874-4004

시도명	센터명	도로명 주소	상담전화
경북	의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33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68	054-830-6947
경북	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885) 경상북도 철곡군 왜관읍 2번도리길 83, 3층	054-971-0419
경북	청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333)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 청소년수련관 3층	054-373-1611
경북	예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708)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	054-650-8237
경북	성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0025)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4길 25 성주군민회관 1층	054-931-1397
경북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42 안동시청소년수련관2층	054-841-7933
경북	봉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238)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20, 봉화군청소년센터2층	054-674-1318
경북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 4층	054-956-1384
경북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427)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324	054-730-7371
경북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58, 군위국민체육센터 3층	054-380-6862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13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 경상남도대표도서관청소년관 3/4층	055-711-1303~5
경남	창원시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4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늘푸른전당 1층	055-225-3900
경남	창원시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35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2층	055-225-7293~7300
경남	창원시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62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호	055-225-6812~5
경남	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686)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로 6번길 9(인사동) 1층	055-744-2000, 8484
경남	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078)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 194 통영시청소년수련원 3층	055-641-0079
경남	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561)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4길 23	070-8145-8021~23 070-8145-8017~18
경남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912)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	055-330-2654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시도명	센터명	도로명 주소	상담전화
경남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436)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송림길 26, 밀양시청소년수련관 2층	055-352-7942
경남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246)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46, 고현청소년문화의 집 2층	055-639-4981~7
경남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620)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3길 36 양산시청소년회관 2층 (50520)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대로 1009-2 웅상도서관 지하1층 (웅상분소)	055-372-2000 055-367-1318
경남	의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15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길 44, 종합사회복지관 3층	055-570-2427
경남	함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04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 1길 10 (청소년수련관 2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580-2377-8
경남	창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332)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6, 5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533-4288
경남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93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 4길 13,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3층	055-670-2920
경남	남해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41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3층	055-860-3885
경남	하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32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2, 하동군청소년수련관 3층	055-883-3000
경남	산청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226)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92, 산청군청소년수련관 2층	055-970-6591
경남	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03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번지, 종합사회복지관내 3층	055-960-5157
경남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1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청소년수련관 3층	055-940-3966~7
경남	합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236)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2길 15	055-930-391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63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7길 4 2층	064-759-9954
제주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35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94, 3층	064-763-9190
제주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30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95 단일빌딩 3층	064-725-3799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부 록 6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2018년 11월 기준)

시도명	센터 명칭	운영기관	센터 주소
서울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한국청소년연맹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1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41934)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흥사단	(61477)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26번길 13-3번지 흥사단회관 2층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대전광역시청소년교화연합회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 평송청소년문화센터 3층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마이코즈	(44660)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30026) 세종특별자치시 마무로 284
경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대전청소년회	(163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2층
강원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천주교 살레시오수녀회(본원)	(26428)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 원주시민복지센터 4층
		(재)천주교 춘천교구유지재단(분소)	(25474)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강릉시청소년수련관 2층
충북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285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충북도청 제3별관
충남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3~4층
전북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5504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203 4층
전남	전라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4층
경북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경남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514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늘푸른전당 3층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성지문화재단	(63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로7길 4

자료 : 각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2018).

부록 7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2018년 8월 기준)

시도	기관명	주소
서울	서울특별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54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 7층 Tel: 02)2285-1318
서울	강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44 2층 Tel: 02)2226-8555
서울	강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1012)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3층 Tel: 02)6715-6665~7
서울	도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1412)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청소년수련관 1층 Tel: 02)950-9640
서울	중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254)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17 Tel: 02)490-0222
서울	강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64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2길 23-19 강서청소년회관 3층 Tel: 02)3662-1388
서울	용산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318)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9가길 2 1층 Tel: 02)706-1318
서울	구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256)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949(궁동 204-4) 3층 Tel: 02)863-1318
서울	서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6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30길 45-9 Tel: 02)3141-1318
서울	금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6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30길 54 Tel: 02)803-1873
서울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166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193-25 Tel: 02)2091-1388
서울	영등포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3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로 110 Tel: 02)2637-1318
서울	광진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505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길 47, 육영빌딩 3층 Tel: 02)2205-2300
서울	마포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Tel: 02)3153-5900

시도	기관명	주소
서울	서초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67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로5길 11, 3층 Tel: 070)4858-1837-8
서울	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Tel: 02)384-1318
서울	동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065)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슬기동 2층 Tel: 02)834-1358
서울	관악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82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길 35 문화복지기념관 1층 Tel: 02)877-9400
서울	성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8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42 Tel: 02)3292-1780
서울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Tel: 02)2237-1318
서울	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52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Tel: 02)6252-1388
서울	송파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57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14길 7, 2층(문정동 67-17번지) Tel: 02)3402-1318
서울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596)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5길 19 Tel: 02)2250-0543
서울	성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0 Tel: 02)2299-1388
서울	양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99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Tel: 02)2646-8342
부산	부산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94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동성로 20, 2층 Tel: 051)304-1318, 1381
부산	동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736)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 06호(3층) Tel: 051)558-8833
부산	해운대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0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51-21 Tel: 051)780-1855
부산	사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94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161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층 Tel: 051)207-7179
부산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949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24 5층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Tel: 051)621-4831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시도	기관명	주소
부산	영도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9113)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321 Tel: 051)405-5224
부산	부산진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Tel: 051)868-0950
부산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57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3(구포동) Tel: 051)334-3003
부산	기장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02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86 대라다목적도서관 4층 Tel: 051)792-4926~7
부산	금정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26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96번길 47 Tel: 051)581-2079
부산	연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526)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46번길 45, 거제종합사회복지관 Tel: 051)507-7658
부산	수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30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42(광안 2,4동 새마을금고) 2층 Tel: 051)759-8422
부산	사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931)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129 Tel: 051)316-2214
부산	강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7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31 Tel: 051)972-4595
부산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9234)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45번길 20 Tel: 051)714-0701
대구	대구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918)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106 신동영빌딩 2층 두드림존 Tel: 053)431-1388~7
대구	수성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범어동, 범어도서관 5층) Tel: 053)666-4205~6
대구	달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609)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11길 33 Tel: 053)592-1378
대구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452)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4 Tel: 053)652-5656
대구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41 5층 Tel: 053)422-2121
대구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099)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22길 3 2층 Tel: 053)963-9400
대구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727)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30길 5-15 Tel: 053)262-8310

시도	기관명	주소
대구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516)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7 Tel: 053)384-6985
대구	달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98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Tel: 053)617-1388
인천	인천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134)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864번길 아카데미프라자 3~4층 Tel: 032)721-2300
인천	계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02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37(방축동) 계양구청소년수련관 4층 Tel: 032)547-0853
인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77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92 서구청소년수련관 3층 Tel: 032)584-1387
인천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136)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82 Tel: 032)868-9846~7
인천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309)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5동 인천동주민센터 3층 Tel: 032)765-1009
인천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38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번길 1 부평1동주민센터 3층 Tel: 032)509-8916
인천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543)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2 Tel: 032)777-1383
인천	남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복지관 1층 Tel: 032)453-5877~8
인천	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9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429 4층 Tel: 032)822-9840~1
광주	광주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985)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179번길 63 Tel: 062)376-1324
광주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998)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백개로 156 Tel: 062)710-1388
광주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727)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93 Tel: 062)716-1324
광주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132)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86(문흥동) Tel: 062)268-1318
광주	광산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2359)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28(우산동) Tel: 062)951-1378
광주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502)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34 Tel: 062)673-1318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시도	기관명	주소
대전	대전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463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청소년위캔센터 6층 Tel: 042)222-1388
대전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5334)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72(도마동) Tel: 042)527-1388
대전	유성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4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80 청영빌딩 6층 Tel: 042)826-1388
울산	울산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532)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76(성남동) 알리안츠생명빌딩 3층 Tel: 052)227-2000
울산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692) 울산광역시 남구 돈질로 106 마이코즈 3층 Tel: 052)291-1388
울산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011)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9길 13(서부동) Tel: 052)232-5900
울산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22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81(호계동) 중앙빌딩 4층 Tel: 052)283-1388
울산	울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500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명봉거남로4, 4층 Tel: 052)229-9634~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003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 2길 5 태원빌딩 6층 Tel: 044)867-2000
경기	경기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63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35 동양파라곤 101동 113호 Tel: 031)253-1519
경기	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43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25-9 Tel: 031)756-1388
경기	안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9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 Tel: 031)8045-2745
경기	광명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241)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4 Tel: 02)809-2000
경기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초지종합사회복지관 4층 Tel: 031)414-1318
경기	용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처인노인복지관 1층 꿈드림 Tel: 031)328-9838-9841
경기	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779)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350-17 광주시청소년수련관 4층 상담실 Tel: 031)760-8741
경기	구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922)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 54, 원촌경로당 2층 Tel: 031)568-6353

시도	기관명	주소
경기	남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76, 2층 Tel: 031)590-3951
경기	부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59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5층 Tel: 032)325-3002
경기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5829)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2, 3층 Tel: 031)390-1450
경기	시흥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914)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79(은행동) Tel: 031)318-7100
경기	양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553)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137번길 18 양평어린이집 4층 Tel: 031)775-1317
경기	하남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지하1층 Tel: 031)790-6304
경기	과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828) 경기도 과천시 참마들로 9 Tel: 02)2150-3991
경기	김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099) 경기도 김포시 결포로 76 Tel: 031)980-1680
경기	동두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357)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1002번길 8 Tel: 031)865-2000
경기	수원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648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수원청소년문화센터 B1 Tel: 031)237-0327
경기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492)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205 청소년문화의집 2층 Tel: 031)8082-4121
경기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371)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60, 3층(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 Tel: 031)634-2777~5
경기	평택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903)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16(합정동 392) Tel: 031)646-5434~5
경기	고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5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3-39 Tel: 031)970-4003
경기	오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8136)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278번길 3 Tel: 031)372-4004
경기	파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894)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6층 Tel: 031)946-0022
경기	여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636) 경기도 여주시 신록사길 6-8 Tel: 031)882-8889

시도	기관명	주소
경기	가평군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1241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120 Tel: 031)582-2000
경기	포천시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1118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523번길 59-56 Tel: 031)538-3398-9
경기	의정부시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7 Tel: 031)872-1388
경기	의왕시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16077) 경기도 의왕시 문화공원로 33번지 Tel: 031)452-1388
경기	안성시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17591) 경기도 안성시 낙원길 108 Tel: 031)676-1318
경기	화성시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1837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진등1길 47-2 영서빌딩 2층 Tel: 031)278-0179
강원	강원도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24272)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167 Tel: 033)257-9805
강원	강릉시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25474)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교동) 2층 Tel: 033)655-1388
강원	원주시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26475)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34 4층 Tel: 033)744-1388,1318
강원	속초시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24867)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363번길 14(속초청소년수련관 1층) Tel: 032)633-0741
강원	홍천군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2513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 2길 31 Tel: 033)432-1386
강원	영월군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2623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00 Tel: 033)375-1318
강원	철원군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2403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길 139번길 52호 Tel: 033)450-5388
강원	정선군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2615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12-6 Tel: 033)591-1311
강원	동해시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25728) 강원도 동해시 천곡2길 8 Tel: 033)535-1038
강원	춘천시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5541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외송길19번길 45 Tel: 070)4009-2491
충북	충청북도 청소년자원센터 꿈드림	(285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충청북도청 제3별관 3층 Tel: 043)257- 0105-6

시도	기관명	주소
충북	청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54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30 청하빌딩 5층 (북문로 2가 113-19) Tel: 043)223-0753
충북	충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411)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324 충주시청소년수련원1층 Tel: 043)856-1356
충북	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152)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번지 제천시 보건복지센터 4층 Tel: 043)642-7939
충북	서청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43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51번길 56번지(송정동) 청주시청소년수련관 3층 Tel: 043)264-8807-8
충북	단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012)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187-18 2층 Tel: 043)421-8370
충북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702)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천동길 122 2층 Tel: 043)872-9024
충북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93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4 Tel: 043)542-1388
충북	옥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904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 Tel: 043)731-1388
충북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914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 Tel: 043)744-5700
충북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복지로 64-2 Tel: 043)835-4193
충북	진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0 4층 Tel: 043)536-3430
충북	괴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02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객정로 99-15 Tel: 043)830-3828
충남	충청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3-4층(두정동진암빌딩) Tel: 041)554-1380
충남	서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967)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 136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3층 Tel: 041)669-2000
충남	아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513)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29 시민문화복지센터 3층 Tel: 041)532-2000, 541-0039
충남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12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1 4층 Tel: 041)523-1318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시도	기관명	주소
충남	논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424 논산시청소년수련관 1층 Tel: 041)736-2041
충남	공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546)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1길 57 Tel: 041)854-7942
충남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466) 충청남도 보령시 문화원길9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3층 Tel: 041)935-1388
충남	홍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293)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744번길 14 Tel: 041)642-1388
충남	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42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 Tel: 041)335-1388
충남	계룡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829)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문화로 31 문화예술의전당 3층 Tel: 042)841-0343
충남	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737)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17 Tel: 041)751-2007
충남	서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643)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46 2층 Tel: 041)953-4040
충남	청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330)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221 Tel: 041)942-1387
충남	태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9 Tel: 041)674-2800
충남	당진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772)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42-26 Tel: 041)360-6961
전북	전라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93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6 Tel: 063)273-1388
전북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121) 전라북도 군산시 동리2길7(삼학동) Tel: 063)468-2870
전북	무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514)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4 Tel: 063)324-6688
전북	전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08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4 Tel: 063)227-1005
전북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762) 전라북도 남원시 광한북로 94-13 Tel: 063)633-1977
전북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34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 Tel: 063)291-3303

시도	기관명	주소
전북	순창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6047)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192 Tel: 063)652-1388
전북	익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621)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32 익산시여성회관 1층 Tel: 063)852-1388
전북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6190)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4 Tel: 063)531-3000
전북	김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378)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길 45 Tel: 063)545-0112
전남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726)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길 22 반딧불작은도서관 2/3층 Tel: 061)242-7474
전남	나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254)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길 34, 2층 Tel: 061)335-1388
전남	광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79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중동 1658번지) Tel: 061)795-7008
전남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04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6-10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 2층 Tel: 061)353-6388
전남	목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684)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83번길 14(목련아파트복지동 2층) Tel: 061)284-0924
전남	여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739)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4길 6-4(고소동 636-4) Tel: 070)8824-1318
전남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 9, 2층 Tel: 061)537-1318
전남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941)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 25번지, 2층 Tel: 061)749-4236
전남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341)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83 담양읍사무소 2층 Tel: 061)381-1382
전남	보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453)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9 2층 Tel: 061)853-1381
전남	강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23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1길 10 강진복지타운 3층 Tel: 061)432-1388
전남	곡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53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문화의집 3층 Tel: 061)363-9586
전남	장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1층 Tel: 061)393-1387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시도	기관명	주소
전남	함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149)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54(기각리 893) Tel: 061)323-9995
전남	신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내 보건소동 3층 Tel: 061)240-8703
전남	무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517)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공항로 345 Tel: 061)454-5283
경북	경상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Tel: 054)850-1003
경북	고령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Tel: 054)656-1320
경북	칠곡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9906)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8 Tel: 054)971-0419
경북	포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76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533 청소년수련관 1층 Tel: 054)280-9479, 9481
경북	구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922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1길 13(원평동 120-18번지) Tel: 054)472-2000,1388
경북	문경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949)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50 Tel: 054)550-6600
경북	울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324)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연호로 47 Tel: 054)781-0079
경북	안동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42 안동시청소년수련관 2층 Tel: 054)841-7937
경북	경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8088)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131 Tel: 054)760-7744~5
경북	김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9570) 경상북도 김천시 다삼로 3(다수동) Tel: 054)431-2009
경북	영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3 Tel: 054)639-5865
경북	영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8844) 경상북도 영천시 운동장로92(교촌동) 2층 Tel: 054)338-2000
경북	상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7159) 경상북도 상주시 북상주로 24-42 상주시청소년수련관내 1층 Tel: 054)537-6723~4
경북	경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8627)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75 Tel: 054)815-4106

시도	기관명	주소
경북	봉화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238)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20 Tel: 054)674-1318
경남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4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3층(삼동동) Tel: 055)273-1310
경남	창원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41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호 Tel: 055)225-3893-4
경남	양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583)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길 36 2층(중부동, 청소년회관)(본원) (50520)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대로 1009-1 지하1층(웅상분소) Tel: 055)372-2000(본원), 055)367-1318(웅상분소)
경남	거창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1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리 100-30번지 Tel: 055)940-3969
경남	김해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912)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구산동) Tel: 055)324-9190
경남	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561)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4길 23 Tel: 055)832-7942
경남	거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3246)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46 Tel: 055)639-4980
경남	통영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3078)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 194 통영시청소년수련원 3층 Tel: 055)644-2000
경남	진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695)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60 신안동주민센터 3층 Tel: 055)744-2000
경남	밀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436)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송림길 26 Tel: 055)352-0924
경남	고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93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4길 13 청소년문화의집 3층 Tel: 055)670-2921
경남	함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04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 함안군청소년수련관 2층 Tel: 055)930-3911
경남	합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236)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2길 15 Tel: 055)930-3911
경남	의령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15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 Tel: 055)573-1388
경남	남해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401) 경상남도 남해 읍망으로 32 종합사회복지관 3층 Tel: 055)863-5279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
록

시도	기관명	주소
경남	하동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32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2 청소년수련관 3층 Tel: 055)883-3000
경남	산청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226)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92 Tel: 055)970-6591
경남	함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03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필본산길 55 종합사회복지관 3층 Tel: 055)963-7922
경남	창원시 마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35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Tel: 055)245-7945
경남	창녕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332)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6 Tel:055)533-867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3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4 (2F) Tel: 064)759-9951
제주	서귀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35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94 3층 Tel: 064)763-9191
제주	제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30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95 단일빌딩 3층 Tel: 064)725-7999

자료 : 여성가족부(2018).

부록 8 | 청소년백서 용어집

○가족치유캠프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 가족치유캠프와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가족치유캠프가 있다. 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제로 인하여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4~6학년 초등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2박 3일간 진행되는 캠프이다.

○경제활동인구(經濟活動人口,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 가운데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있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같은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학생, 주부, 환자 등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인구이며,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教育福祉于先支援事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업대상 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중에서 사업 학교의 장이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학생에게 필요에 맞는 학습, 문화체험, 심리치료,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현물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학교 및 학교 주변에 교육 환경 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쾌적하고, 명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의미하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國民基礎生活保障受給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 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건 불이행시 생계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국제금장총회
(International Gold Event : IGE)

영국의 에든버러 공작과 교육학자들이 고안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을 통해 금장을 포상 받은 청소년 중 20~3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으로 매 3년마다 개최되며 한국이 주최한 2014년에는 40개국에서 100명의 금장 포상 청소년인 차세대 리더들이 참석해 자신의 포상활동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만 14~24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 개발, 봉사활동 및 탐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적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1956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140여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 파악 및 소양 수준에 영향을 주는 배경변인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식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강조하는 평가로 평가 주기는 3년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15세 학생을 대 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5세 학생의 대부분(약 98%)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한다.

○기소유예제도(起訴猶豫制度)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소송 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 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함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이다.

○꿈드림(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공간'으로, 학교 밖에서 학업을 희망하거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를 원하는 등,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꿈'과 '드림(Dream)'의 합성어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다는 의미

○ 내일이룸학교

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내일이룸학교는 ‘청소년의 내일(미래 또는 나의일)을 이룬다’는 의미로 학교밖청소년, 비진학청소년, 청소년한부모, 가출청소년 등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이다.

○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이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反)편견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학교로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 드림스타트(Dream Start)

드림스타트의 시초는 학대, 방임 아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06년 20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이다. 2007년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으로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사업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레드존(Red Zone)

윤락가나 유흥가, 숙박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의 범죄비행탈선 위험이 있는 유해 환경에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일컫는 말이다. 레드존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명시되어 있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 (Maastricht Treaty)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표한 조약으로 유럽 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유럽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사용의 경제 통화 동맹, 노동조건 통일의 사회부문, 공동방위정책, 유럽시민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명목임금(名目賃金, Nominal Wage)

현행 구매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임금으로, 명목임금은 생활용품 구입량이 물가변동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즉, 가격이 오르면 생활용품의 구입이 줄고 가격이 내리면 구입량이 증가하므로 이것으로는 생활 실태 변화의 파악이 어렵다.

○ 명예경찰소년단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스스로가 각종범죄 및 제반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이다.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서에서 호신술을 배우는 명예경찰 무도학교, 경찰관서 치안시스템 견학, 지역경찰관과 합동순찰 등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내에서도 학교폭력예방활동, 교통질서·기초질서 캠페인,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방과후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을 말한다.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상 '보호대상아동'을 의미한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사랑의교실

폭력, 절도 등 범죄나 비행으로 인해 경찰조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선도하여 재비행 방지를 위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이다. 보호자와 청소년이 사랑의 교실 입교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경찰관서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전문선도기관에 의뢰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및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 산학협동(産學協同)

학계와 산업계가 교육의 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산업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자매결연·협정 등의 방법을 통해 서로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을 산업체에 파견하여 현장실습 경험을 얻게 하거나 학계와 산업계 인사가 상호 교류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계 자원인사들의 교육 참여 등 각종 인적·물적 교류 관계가 모두 이에 포함된다.

○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

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서밋에서 채택된 빈곤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당시에 참가했던 191개의 국제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①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 유아 사망률 감소, ⑤ 임산부의 건강개선, ⑥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른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운영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8년 7월 17일부터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대학이 추가되었다.

○ 소년·소녀가정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등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여기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Devotion to Best Interests of the Child)

무차별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원칙, 어린이 의견 존중 원칙과 함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동법 제3조에서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행정·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모든 아동 관련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도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Child Protection Agency)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 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 아동빈곤율(兒童貧困率)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아동 중 최저생계비 이하인 아동가구에 사는 아동 수를 백분율화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에 속한 가족의 비율을 절대 빈곤율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아동에 대입한 빈곤율이다.

○ 아동학대(兒童虐待, Child Abuse)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웃리치(Outreach)

일반적으로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아웃리치는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현장에 나가 그들에게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러 이유로 인해 복지 기관이나 상담소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구제지원활동을 말한다. 한 예로, 노숙인 지원 단체나 청소년 단체 등에서도 직접 거리로

나가 노숙인이나 청소년을 만나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우범소년(虞犯少年)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일컫는다.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범 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본인을 보호교도 개선시키기 위하여 형사정책적으로 보안처분(보호처분)을 과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예로 되어 있다. 한국의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矯正)을 위하여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7가지로 구성되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를 의미한다.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인프라구축, 대내외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및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한다.

○인터넷치유캠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11박 12일의 인터넷중독 기숙형 치료캠프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과 단절된 환경에서 상담지원, 활동지원, 생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캠프 종료 후에도 청소년동반자, 멘토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사후모임을 실시하여 참여 청소년 치유 효과가 지속되도록 돕는다.

○조사망률(粗死亡率, crude death rate)

1년간의 사망수를 그 해의 인구로 나눈 것으로 보통 1,000배하여 인구 1,000대로 표시한다. 연령, 계층, 성별, 사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정하지 않은 채로 나타난 사망률을 말한다.
 ※ 조사망률(%) = (특정 1년간의 총 사망건수 /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 조이혼율(粗離婚率, crude divorce rate)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난 것이다.
 ※ 조이혼율(%) = (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 /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 조출생률(粗出生率, crude birth rate)

특정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난 것이다.
 ※ 조출생률(%) =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 /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 조혼인율(粗婚姻率, crude marriage rate)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난 것이다.
 ※ 조혼인율(%) = (특정 1년간의 총 혼인 수 /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 ADHD)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된다.

○ 중도입국 청소년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재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를 말한다.

○ 지방양여금(地方讓與金)

국가에서 국세로 징수한 일부 세목의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 지원 제도의 일종이다. 지방교부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양여금 사용대상 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5곳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별 사용규모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양여금을 배분한다.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상의 정책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청소년활동 요구 조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청소년 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수련 활동인증제도·신고제 지원 등이다.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 Safety Net : CYS-Net)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 구조, 치료하는 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이용시설로서, 18세 미만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소속하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기본법」 48조의 2에 의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거해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 보호법」규정에 따른다. 동법 제7조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곳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다.

○ 청소년 유해약물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및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약물을 말한다.

○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근거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 청소년(靑少年, Youth)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의거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소년동반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핵심인력으로 위기청소년들에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전일제 동반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실시하되, 청소년의 시간에 맞추어 저녁, 휴일 등에 탄력적으로 근무한다. 반면 시간제 동반자는 주 12시간 근무하며 이들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근거로 움직이나 실제적인 사무실은 '청소년이 있는 현장'이다.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매체물 모니터링 사업이다(인터넷, 음반, 게임물, 영상물 등).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며, 주요 업무로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청소년유해 매체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문화의 집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

○ 청소년 보호법(靑少年 保護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3. 7., 법률 제 5297호).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구성 되어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靑少年福祉 支援法)

「청소년 기본법」 제49조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2004. 2. 9., 법률 제7164호).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4호). 청소년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의 조건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2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현장 중심의 성교육장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기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 가치관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및 운영할 의무가 있다.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 운영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게 되고, 범죄경력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지도자의 활동 운영을 막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련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 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교육·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기능을 하며 자기 계발 및 진로모색 등에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을 관리하고 제공한다.

○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라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 활동 등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법적 근거 한다.

○ 청소년어울림마당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 체험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공간(상설 공간)을 의미한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용 육성을 위해 놀이 마당식 체험 공간에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 제61조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조성 재원은 기금 조성 초기에는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액 등이었으나 2018년 현재 경륜경정사업 법정 분담금과 복권기금전입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 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한 달로, 해마다 5월이다(「청소년 기본법」 제16조). 행사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및 직장별로 각각 실정에 따라 기념행사를 연다. 행사 내용은 ①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②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③ 모범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④ 대중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⑤ 그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이다.

○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도서관 및 문고,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체육시설, 사회교육시설, 사회복지관, 근로 청소년회관,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문화 예술회관, 지방문화원, 기타 어린이회관 등 청소년이용시설 중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시·군·구로부터 청소년이용 권장시설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중 저연령인 만 9~13세(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모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 및 탐험활동 4가지 활동영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 복지사 등 국가자격을 소지하거나 일정기간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상담 선생님과 상담이 진행되며,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 청소년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 적용이 된다. 2017년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대중교통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도 가능하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 친화적 정책의 구현이 가능하다.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참여기구이다.

○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각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등을 담당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강의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담으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선도 및 보호하며 학부모, 교사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것이다.

○ 학교폭력(學校暴力)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학교 내외 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말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 되어 있다.

○ 학령인구(學齡人口)

학령인구는 교육인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일차적 요인으로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21세 인구, 즉 6~11세는 초등학교 해당 인구이고, 12~17세는 중등학교, 18~21세는 고등교육인구에 해당한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내 청소년단체들의 자발적인 민간협의체로 약칭 '청협(靑協)'이라 한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교환, 청소년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관련 정부부처, 유관 사회단체, 각급학교 및 세계청소년기구와의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청소년 상담 복지 관련업무의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 자료의 제작보급,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이 있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의해 청소년활동 현장과 정책을 총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주요 정책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과 기록 관리, 청소년들이 신체단련·자기개발·자원봉사·탐험활동을 고르게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원 및 안전 관련 컨설팅 홍보, 국내·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 Wee센터

Wee는 We(우리들)와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종의 통합 지원 서비스망이다.

2018 청소년백서 편집위원 및 집필진, 감수자 명단

기획·편집

류기욱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이수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서기관
전재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문위원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선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조예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집필진(가나다순)

강정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	김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애영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김영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연구관
김제중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주무관	김태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사업부 과장
류기욱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경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희망센터 선임상담원	박귀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주무관
박선옥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박윤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연구관
신환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사업부 담당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성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승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주무관
이기원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사무관	이금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종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임지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주무관	장미경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장
장선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조남익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수
조예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
한성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주무관	한승우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

감수진(가나다순)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방은령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2018 청소년백서

발행인 | 진 선 미

발행처 | 여성가족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기 획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 화 | 02-2100-6000

인 쇄 |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발행일 | 2018. 12.

발간등록번호 | 11-1383000-000102-10

www.mogef.go.kr
